인권의 이해

인권교육매뉴얼

"인권정책연구소, Korea Human Rights Policy Institute

European Training and Research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ETC GRAZ

HUMAN SECURITY Network
GRAZ AUSTRIA 2003

인권의 이해

인권교육매뉴얼[1]

편집자 WOLFGANG BENEDEK

/ ETC (European Training and Research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번역 인권정책연구소 인권교재번역팀[2]

1) 본 번역본은 2차 교열본으로, 최종본이 아님을 밝힙니다. 법률적 검토 및 한국(문화) 사례를 더하여 최종본을 작업중입니다.

2) (사)인권정책연구소 회원 및 국내 인권활동가들이 자원 활동을 통해 본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참여한 분에 대한 기록은 본 자료 말미에 정리합니다.
번역에 있어, 국내 법률 용어나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럼에도 번역과정에서의 오류나 용어상의 표현 오류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매뉴얼은 오스트리아 개발청의 자금지원을 바탕으로 한 오스트리아 연방 유럽국제외교부(the Federal Ministry for European and International Affairs)와 인간안보 네트워크 (Human Security Network)의 지원으로 진행되었다.

Austrian Development Cooperation

독일국립도서관에 서지정보 등록함.

독일국립도서관의 등록정보는 http://dnb.nb.d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ll rights reserved.

출판

오스트이라 개발청과 오스트리아 연방 유럽국제외교부의 자금으로 출판함.

3판 편집자

Wolfgang Benedek

© 2012, ETC, Graz

© NWV Neuer Wissenschaftlicher Verlag.

Wien - Graz 2012

한국어판 서 문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귀에 익숙한 ‘평범한’ 이 문구는 그러나 결코 만만치 않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 우선 ‘일부’의 국민이 아닌 ‘모든’ 국민을 말하고 있다. “무슨 당연한 말씀을!”이라고 할지 모르나, 현실은 ‘일부’가 ‘모든’을 대신하고 있는 게 아닐까. 즉 국민 누구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게 아니라, 존엄과 가치를 가질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이 조문에서 말하는 국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다. 국적이 다른 외국인과 이주민, 또는 국민답지 못한 국민, 이를테면 범죄자나 병역기피(거부)자 같은 이들은 당연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심지어 우리 헌법이 정교분리원칙을 명백히 천명하고 있음에도, 특정 종교의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정부를 압박하고 이에 굴복한 정부는 성소수자와 같은 일부 국민을 역시 ‘모든’에서 제외되고 있다. 모든 ‘사람’과, 모든 ‘국민’ 사이의 엄청난 간극을 접어두더라도, 실로 ‘모든’ 국민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국가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다워야 비로소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국민이라고 다 국민이 아니라 국민다워야 국민”이라고 여긴다. 여기에는 국가가 하라는 대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충성을 다 할 것을 맹세”할 때 비로소 국민다운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국가주의가 있다. 모범적인 의무의 담지자로서의 국민은 있을지언정 권리의 주체자로서의 국민은 없다.

헌법이 단지 글로서만 갇혀있지 않고 국민들의 생활 가운데서 살아 숨 쉬게 하려면 국가의 자기성찰은 물론 주권자인 국민의 주체적 각성이 동시적으로 요구된다. 인권교육은 주권자의 주체적, 자력적 각성을 요청한다. 인권은 신이나 누군가가 베푸는 선물이 아니다. 인권은 국가의 통치관성에, 권력구조의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에 정면으로 맞서는 주권자의 의지와 결단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담론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인식이 필요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용이하게, 그리고 주체적으로 이 담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 인간 존엄성에 대한 내면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인권교육은 결국 실패한 것이다. 인간은 다양한 삶과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권교육은 끊임없는 시도와 발전의 긴 여정일 수밖에 없다. 그러고

인권교육의 목표는 결과로서 확인되는 게 아니라 참여의 과정으로서 실현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인권교육의 수요가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인권교육의 확산이라는 면에서 이러한 소식이 반가우면서도 우려되는 점이 꽤 있다. 인권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강사들의 인권담론에 대한 인식이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일방적 교육방법이나 비인권적 교육 환경 구성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한국사회에는 인권교육과 관련된 쓰임새 있는 자료들이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인권교육표준매뉴얼은커녕 제대로 된 인권교육 참고자료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과연 인권교육의 양적 팽창만큼 그 질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인권교육의 원칙은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

(사)인권정책연구소가 여러모로 부족한 역량에도 불구하고 유엔인권교육메뉴얼을 번역하기로 작정한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였다. 이 책자는 오스트리아개발청의 자금지원하에 유럽민주주의인권교육센터(ETC)가 2012년에 발간한 것이다. 연구소 안팎의 청년 연구자들이 뜻을 모아 의욕적으로 참여한지 만 일 년여 만에 번역을 마치게 되었다. 가급적 원문에 충실하고 개념에 대한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을 했으나 서툰 점이 있을 수 있다. 비록 서툴지언정 이 작업에 참여한 이들의 열정만큼은 높이 살 일이며,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국내적 지적 자원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면 이 번역서를 통해 인권교육에 관한 국제적 표준을 소개하는 의미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인권의 경전은 텍스트(text)에 있는 것이 아니라 컨텍스트(context)있다는 점을 거듭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인권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찾고자 애쓰는 여러분들에 의해 이 번역서의 한계가 극복되고 보완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5년 6월 23일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김형완

제 3 판 서 문

인권의 보호와 증진은 오스트리아 외교 정책의 핵심이다. 인권교육은 우리 업무에서필수적인 부분이다.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그들의 기본권과 자유에 대해서 알아야만 한다. 그리고 그들의 정부가 이러한 권리를 인식하고 이를 보장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어야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들 자신과 다른 이들의 모든 권리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지지하는 것은 오스트리아 정부의 주요 목표이며, 유네스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인권교육은 일련의 규칙 및 원칙에 대한 단순한 지식을 쌓는 것 이상으로, 태도와 행동에 있어서의 변화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인권이 그들의 삶과 관련을 맺고 있는지, 어떻게 그들의 일상적 삶 및 업무에서도 인권을 적용하고 옹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여줘야 한다.

인권교육매뉴얼 “인권의 이해”는 2003년 인간안보네트워크의 각료회의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오스트리아의 그라츠 시에 있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교육연구소 (ETC)의 후원 아래에서 저명한 오스트리아 전문가와 국제적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이 이 매뉴얼을 작성하였다. 이 매뉴얼은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의 인권교육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는 사용되는 맥락, 상황 및 지역에 의해 달리 활용될 수 있는 훈련 모듈을 제공한다. 오늘날, 이 매뉴얼은 15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여러 나라 및 지역에서 시행되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교육연구소의 워크숍에서 활용되고 있다.

오스트리아가 유엔인권이사회와 유네스코 이사회의 구성원인 동안 인권교육에 대한 영문판 매뉴얼 제3판을 소개할 수 있어 영광이다. 오스트리아 국제교류및개발협력국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이 개정판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출판되게 되었다. 2011년 초부터, 모든 눈이 아랍 세계에 집중되었다. 튀니지, 이집트, 시리아, 예멘 등에서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아랍의 봄 동안 일어난 인상적인 사건들을 통해 자유와 기본권 및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한 인식을 향한 모든 사람들의 열망을 잘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격변과 재편성의 시기에, 인권교육 및 훈련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에서의 효과적인 민주적인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다. 이는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증진시키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의 지배를 강화하고 민주적 통치를 위한 능력을 기르는 것은 민주화와 책임 및 정부의 안정성을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여겨진다.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제는 매우 많고 복잡한 양상을 띤다. 그러나 이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자유와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획득하기 위해, 발전을 촉진하고 억압에 맞서 싸우기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필요로 한다. 나는 모든 인권교육자와 훈련자에게 이러한 도전을 마주하도록 장려하고 싶다. 그리고 그들이 이 매뉴얼을 실용적인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전 세계에서의 인권과 인간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성취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

나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교육연구소에 그들의 헌신과 그들이 이 중요한 출판물에 쏟은 노력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Dr. Michael Spindelegger

Vice-Chancellor and Federal Minister for European and International Affairs of the Republic of Austria

Vienna, 2012년 1월

제 2 판 서문

2003년 5월, 인권교육 매뉴얼 “인권의 이해”의 영문 버전이 오스트리아의 인권도시 그라츠에서 열린 인간안보네트워크 각료회의에서 처음 공개되었다. 이 매뉴얼은 나의 전임자이자 2002/2003년에 네트워크의 의장이었던 Benita Ferrero-Waldner가 세운 계획의 결과다. 오스트리아 그라츠 시에 있는 ETC의 후원 아래에서 저명한 오스트리아 전문가와 국제적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이 이 매뉴얼을 작성하였다.

인간안보네트워크는 행동중심 방식으로 긴급한 인간안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 세계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2002년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각료회의를 포함한 몇몇 행사에서, 네트워크는 “인권은 인간개발과 인간안보가 추구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래서 인권교육은 우선순위 중 하나가 된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매뉴얼 “인권의 이해”는 전 세계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정한, 실용적인 “훈련 도구”다. 이 매뉴얼은 맥락과 훈련 상황에 따라 변형되고 적용될 수 있는 훈련 모듈들로 구성되어 있다.

2003년 5월 10일 그라츠에서의 인간안보네트워크의 5번째 각료회의에서 지지된 인권교육과 인간안보의 원칙에 대한 선언은 서로 다른 지역적 문화적 환경에 이 매뉴얼을 소개하기 위해 매뉴얼이 다른 언어로 번역하도록 할 것이라는 약속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출판 후 3년이 지난 오늘날, 이 매뉴얼은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러시아어, 독일어, 알바니아어, 크로아티아어, 세르비아어, 태국어로 번역되었다. 이는 인간안보네트워크 구성원들과 정부 간 기관이나 비정부기구의 파트너들의 도움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매뉴얼은 여러 나라 및 지역에서 시행된 ETC의 훈련자용 워크숍에서 소개되었으며, 전 세계 사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인권분야의 빠른 변화로 인해 매뉴얼의 갱신이 필요하게 되어, 오스트리아 개발협력국과교육과학문화부에서 재정지원을 받아 ETC와 오스트리아와 국제적 전문가의 전담팀에 의해 두 번째 개정판이 만들어졌다.

매뉴얼은 서로 다른 지역 및 문화, 사회의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매뉴얼의 사용자가 더 다양해질수록, 이 매뉴얼의 인권과 인간안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표가 충족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2006년, 인권이사

회의 설립과 함께 국제인권구조가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나는 인권교육매뉴얼의 제2판이 놓여 있는 인권이 마주한 도전에 대한 가이드가 되리라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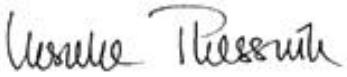

Dr. Ursula Plassnik

Federal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Austria

Vienna, 2006년 5월

제 1 판 서문

인간안보는 사람중심이다. 인간안보에서는 개개인과 그들이 속한 공동체가 주요 요소가 된다. 모두를 위한 인권에 기반을 둔 세계정치문화는 인간안보를 진전시키는 데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다.

인간안보를 위해서는 진정한 인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것이 내가 인간안보네트워크의 의장으로서 인권교육과 무력 분쟁에 영향을 받은 아이들을 함께 2002/2003 인간안보네트워크의 최우선 주제로 둔 이유다.

인권교육은 지식을 전수하고, 기술을 강화하고, 태도를 형성하는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존엄성과 인간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공통적 기반에 대해 인식해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나는 그라츠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교육연구소가 인권의 이해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도록 했다. 인간안보네트워크의 파트너기관을 포함해, 다섯 개 대륙에서 온 30명 이상의 국제적 전문가들이 도움을 주었다. 이는 인권의 보편성에 기반을 둔 문화인지적 관점을 확보하여 전 세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2003년 5월 그라츠에서 인간안보네트워크의 장관들은 회의에서 인권교육과 인간안보의 원칙에 대한 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매뉴얼은 이 선언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졌다. 이 매뉴얼은 오스트리아에서 인간안보네트워크가 오늘날과 미래의 인간안보에 있어서 지속적인 공헌을 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나는 이 매뉴얼이 네트워크의 모든 파트너의 인권교육에 대한 전 세계적인 노력을 돕고, 유엔인권최고대표부가 그의 의무를 다하는 것 또한 도울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이 매뉴얼은 유엔인권교육10년보다 더 나아간 행동을 자극하고 그러한 행동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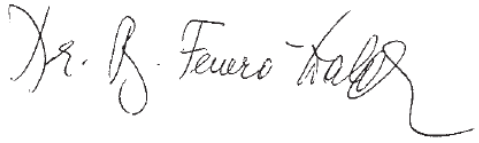

Dr. Benita Ferrero-Waldner

Austrian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Graz, 5th Ministerial Meeting of the Human Security Network, 2003년 5월 9일

감사의 글

오스트리아의 외무부에서 위임을 받아, 그라츠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 교육연구소의 전담팀이 Wolfgang Benedek과 Minna Nikolova의 지시에 따라 2002/2003에 “인권의 이해” 매뉴얼의 초판을 만들었다.

오스트리아의 외무부가 주최한 두 전문가 회의는 인권안보네트워크에 속한 국가 출신의 여러 인권교육전문가와 일반인권교육가들을 한 데로 모았다. 뿐만 아니라, 인권교육에 선구적이며 혁신적인, 간문화적이며 간세대적인 노력을 기울인 이들도 이 회의에 초대받았다. 초판은 2003년 5월 8일과 10일에 그라츠의 인간안보네트워크 각료회의에서 공개되었다.

매뉴얼은 큰 호응을 받아, 지금까지 15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이러한 번역은 인간안보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프랑스어 번역본 출판에는 말리 외무부와 유엔개발계획 말리지부와 국제인권교육민중연합 말리지부가, 스페인어 번역본 출판에는 칠레 외무부가, 태국어 번역본 출판에는 태국 외무부가 큰 도움을 주었다. 오스트리아 국제교류과는 민주제도인권사무소와 유럽안보협력기구가 번역한 러시아어 번역본이 출판되는 데에 도움을 주었고, 크로아티아어로의 번역은 자그레브 대학교의 인권 및 민주시민권 연구소가 맡아주었다. 베트남이 매뉴얼을 베트남어로 번역해주었다. 세르비아-몬테네그로의 소수자관리국이 오스트리아의 교육과학문화부의 협력을 받아 세르비아어 번역본의 출판을 지원하였고, 벨그라드 인권센터는 이 번역본을 정교화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코소보의 과학기술부와 사법부는 프리시티나 대학교 인권센터의 도움을 받아 알바니아어의 최신 번역본을 출판하였다. 마케도니아어판은 마케도니아 외무부와 테토보에 위치한 동남유럽대학 (SEEU)의 인권센터의 지원으로 나올 수 있었다. 중국사회과학연구원의 법학회가 스웨덴에 위치한 라울발렌베리 인권 및 인도주의법 연구소의 재정 지원을 받아 매뉴얼을 중국어로 번역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아랍어 번역본은 유네스코 파리지부가 제공해주었으며 이는 세 번째 개정판을 기반으로 업데이트되었다.

대부분의 언어 번역본은 그라츠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교육연구소(ETC)의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다.: http://www.manual.etc-graz.at.

그라츠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교육연구소는 세 번째 영문판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는 데에 협력하고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

초판과 제2판에 보여준 성원은 세 번째 개정판의 필요성을 보여주었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추가적인 도움을 주었다.

다음의 저자들의 훌륭한, 헌신적인 업적에 감사한다.

Introduction to the System of Human Rights: Wolfgang Benedek (ETC and University of Graz)

Prohibition of Torture: Renate Kicker (ETC and University of Graz) and Sarah Kumar (ETC-Graz)

Freedom from Poverty: Veronika Apostolovski (ETC Graz); First and second edition: Alpa Vora and Minar Pimple (YUVA Mumbai)

Non-Discrimination: Sarah Kumar and Klaus Starl (ETC Graz)

Right to Health: Gerd Oberleitner (University of Graz)

Human Rights of Women: Barbara Schmiedl (ETC Graz); First and second edition: Susana Chiarotti (PDHRE/CLADEM) and Anke Sembacher (ETC Graz)

Rule of Law and Fair Trial: Veronika Apostolovski and Sarah Kumar (ETC Graz); First and second edition: Leo Zwaak (SIM Utrecht)

Religious Freedoms: Yvonne Schmidt (University of Graz)

Right to Education: Wolfgang Benedek (ETC and University of Graz)

Human Rights of the Child: Sarah Kumar (ETC Graz); First and Second edition: Helmut Sax (BIM Vienna)

Human Rights in Armed Conflict: Gerd Oberleitner (University of Graz); First and second edition: Alexandra Boivin and Antoine A. Bouvier (ICRC Geneva)

Right to Work: Alexandra Stocker (ETC Graz)

Right to Privacy: Veronika Apostolovski and Sarah Kumar (ETC Graz)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the Media: Wolfgang Benedek (ETC and University of Graz)

Right to Democracy: Christian Pippan (University of Graz)

Minority Rights: Simone Philipp, Klaus Starl and Deva Zwitter (ETC Graz)

Right to Asylum: Veronika Apostolovski and Sarah Kumar (ETC Graz)

Additional Resources: Sarah Kumar (ETC Graz)

Human Rights Education Methodology: Barbara Schmiedl (ETC Graz)

Selected Activities: Barbara Schmiedl (ETC Graz)

Research assistants: Kiri Flutter and Eva Radlgruber (Volunteers at the ETC Graz) and Reinmar Nindler (University of Graz)

Proofreading: Matthias C. Kettemann (University of Graz) and Sarah Kumar (ETC Graz)
Design concept: Markus Garger, Robert Schrotthofer and Wolfgang Gosch, Kontrapart Graz and Gerhard Kress (cover)
Editors and project co-ordination for the first edition: Wolfgang Benedek and Minna Nikolova (ETC Graz)
Editor of the second edition: Wolfgang Benedek (ETC and University of Graz)
Editorial assistant for the second edition: Matthias C. Kettemann (University of Graz)
Editor of the third edition: Wolfgang Benedek (ETC and University of Graz)
Project co-ordinator and editorial assistant of the third edition: Sarah Kumar (ETC Graz)

우리는 특히 민주제도인권사무소네트워크의 본 매뉴얼의 초판에의 큰 기여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의 전문가, 조언자, 친구들과 기관들에 그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가치 있는 조언 및 제안에 대해 감사한다. 이들은 본 매뉴얼의 마무리에 있어 꼭 필요한 도움을 주었다.

Shulamith Koenig - People's Movement for Human Rights Education (PDHRE) - New York
Adama Samassekou and the team of PDHRE - Mali
Manuela Rusz and the team of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University of Graz
Anton Kok - Human Rights Center of the University of Pretoria
Yannis Ktistakis - Marangopoulos Foundation for Human Rights - Athens
Debra Long and Barbara Bernath - Associa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PT) - Geneva
Manfred Nowak - Ludwig Boltzmann Institute of Human Rights (BIM) - Vienna,
Monique Prindezis - CIFEDHOP - Geneva
the Anti-Defamation League - New York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 Geneva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스트리아 외무부(이제는 오스트리아 국제교류및개발협력국으로 명칭이 바뀜)의 인권부의 협력과 지원에 감사한다.

매뉴얼 사용법

오스트리아인이 의장을 맡고 있는 가운데, 모두를 위한 인권교육매뉴얼에 대한 생각이 그라츠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교육연구소에서 유래되었다. 이러한 매뉴얼은 인간안보네트워크의 작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교육연구소의 팀이 책의 개념적 틀을 잡았고, 외무부가 이 책을 정교하게 만들었다.

본 매뉴얼 “인권의 이해”는 인간안보네트워크 파트너 국가 및 기타 다양한 문화적 환경에서의 인권교육의 학습자와 교육자를 돕기 위한 도구이자, 인간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전략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렇기에 이 매뉴얼은 인권을 이해하고 인간의 나쁜 행동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미래의 교육자들을 훈련시키는 데에 있어서, 국제교류를 위한 논의의 장을 여는 데에 있어서 유용한 출발지점이 될 것이다.

본 매뉴얼은 실습을 통해 체화될 수 있는 선정 이론들을 제시하고, 기술 강화와 태도 형성을 위한 요소들을 제공한다. 언급된 다양한 주제들은 그 공통기반을 탐색하고 인권적 관점을 공유하도록 자극한다. 그리고 문화인지적 관점에서 논쟁적 이슈들을 바라보도록 한다.

본 매뉴얼은 세 가지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인권의 기본에 대한 일반적 소개를 다루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은 일상적 삶에서 인권을 적용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선정된 “핵심 주제”를 다루는 챕터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방법론적 힌트와 유용한 정보, 그리고 추가탐색을 위한 참고자료와 온라인 자료들을 다루고 있는 “추가자료원”이라 불리는 부분이다.

다음의 이모티콘들이 텍스트를 통한 탐색을 수월히 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본 매뉴얼은 서로 다른 사용자들에 의해 서로 다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매뉴얼은 유연하며 사용자 친화적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기에, 우리는 학습자와 교육자 모두가 주의 깊게 매뉴얼을 읽고 적극적으로 이해하려 노력하기를 장려한다.

만약 여러분이 인권의 주요 개념과 원칙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에 대해 알고 싶

다면, 매뉴얼의 첫 번째 부분부터 읽기를 추천한다. 여러분이 특정 인권 주제의 사례를 찾고 있다면, 두 번째 부분의 “알아두면 좋은 내용” 을 먼저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만약 특정 인권에 대해 더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원한다면, “알아야 하는 내용” 부분을 읽도록 하여라. 그리고 여러분이 청소년과 성인에게 모두 활용될 수 있는 혁신적인 교육적 방법을 통해 인권 문제를 탐색하고 교육하고 싶다면, 바로 추천 활동 부분으로 넘어가라. 그리고 인권교육방법론의 일반적인 소개를 읽도록 하여라.

본 매뉴얼은 개방적이다. 본 매뉴얼은 일부러 핵심적인 문제 몇몇만을 다루었다. 우리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역에서의 사례 및 이야기, 질문과 경험으로 본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주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피드백을 환영한다.

그래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교육연구소는 웹사이트에 피드백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 웹사이트에서 다른 언어로의 번역본을 이용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모든 장에 대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두었다. 웹사이트에서 이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모든 장에 대한 추가자료원과 유용한 교구 및 업데이트 사항은 www.manual.etc-graz.at 에서 이용할 수 있다. 피드백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및 서로 다른 인권지식수준을 지니고 있는 학습자, 교육자 및 훈련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확장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 매뉴얼을 잘 읽고, 당신의 경험 및 당신의 공동체의 관심사를 추가함으로써 이 매뉴얼에 기여하는 것을 꺼리지 말도록 하라.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인권의 실재와 지속적인 변화를 이해하도록 할 것이다.

< 약어 목록 >[3]

ACHPR 아프리카인권.민권위원회
ACP 아프리카카비르해태평양지역국가
ADL 반비방연대 (유대인차별반대단체)
AI 국제사면위원회
AIDS/HIV 후천성면역결핍증/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ALRC 아시아법률정보센터
ANC 아프리카민족회의
APT 고문방지협회
ASEF 아시아-유럽재단
AU 아프리카연합
ASEM 아시아유럽정상회의
BIM 볼츠만인권연구소, 오스트리아 비엔나
CAT 고문방지협약
CCW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CDDRL 민주발전법치센터
CEDAW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 협약
CERD 인종차별철폐위원회
CESCR 유엔사회권위원회
CHR 인권위원회
C.I.A. 미 중앙정보부
CIM 미주여성위원회
CJ 배심원
CLADEM 중남미여성인권보호위원회
CoE 유럽의회
CONGO UN NGO협의체
CPED 국제강제실종협약
CPT 유럽고문방지위원회
CRA 통신규제기구
CRC UN아동권리협약
CRIN 아동인권정보네트워크
CRPD 장애인권리협약
CSW 여성지원위원회
CSCE 유럽안보협력회의
CWC The Concerned for Working Children, 아동노동을 걱정하는 모임
DGLI 법무책임자
EAPN 유럽빈곤퇴치네트워크
ECHO EC 인도주의사무소
ECHR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ECOSOC 경제사회이사회
ECPAT 아동성매매근절을 위한 단체
ECPT 고문방지 유럽협약
ECRI 유럽인종차별위원회
ECRML 소수 종교 및 민족 보호 유럽협약
ECtHR 유럽인권재판소
EEAS 유럽대외관계청
EFA 모두를 위한교육 (유네스코의 전세계 활동 프로그램)
ENAR 인종차별반대 유럽네트워크
ENOC 유럽아동옴브즈만 네트워크
EPZ 수출가공공단
ESC 유럽사회헌장
ETC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교육연구소
EU 유럽연합
EUMC 유럽인종주의 및 외국인혐오 모니터링 센터

3) 일부 약어에 해당하는 국내 기존 번역 자료가 없는 경우, 전체 영문명과 해석을 병기함.

EURONET 유럽아동네트워크
FAO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FARE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축구인 네트워크
FCNM (유럽) 소수자보호 조약 초안
FDC 부채탕감연대
FGM 여성생식지절제
FIFA 국제축구연맹
FLO (세계) 공정무역상표기구
FWCW 제4차 세계여성대회
GA 유엔 총회
GATS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C 글로벌컴팩트
GDP 국내총생산
GPF 세계정책포럼
GRC 제네바난민협약
HDI 인간개발지수
HDR UNDP 인간개발보고서
HIPC 외채과다빈곤국
HR 인권
HRC 인권이사회
HRE 인권교육
HREL 인권교육학습
HSN 인간안보네트워크
ICC 국제형사재판소
ICCPR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RD 인종차별철폐협약
ICESCR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PD 국제인구개발회의
ICRC 국제 적십자 위원회
ICSW 국제사회복지위원회
ICTR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
ICTY 전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
ICVA 국제자원봉사기구협의회
IDB 미주개발은행
IDEA - 민주주의와선거지원을위한국제기구
IDPs 국내피난민
IEC 국제집행위원회
IFEX 국제표현자유교류
IHL 국제인도법
IIDH 미주인권기구
IJC 국제법학자회
ILO 국제노동기구
IMF 국제통화기금
IPA 국제출판협회
IPEC 국제아동노동근절프로그램
IPI 국제언론인협회
MDGs 새천년개발목표
MNCs 다국적기업
MSF 국경없는의사회
MPs 국회의원
NGO 비정부기구
NPA 국가행동계획
OAS 미주기구
OAU 아프리카통일기구
OCHA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ODIHR 민주제도인권사무소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OHCHR (유엔)인권대표사무소
OIC 이슬람협력기구
OMCT 세계고문방지기구
OP 선택의정서
OP-CAT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OSCE 유럽안보협력기구
PAHO 범미보건기구
para. 문단
PDHRE 국제인권교육민중연합
PRSPs 빈곤감축전략계획

Res. 결의
SAPs 세계은행의 구조조정프로그램
SARS 사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EE 남동유럽
SEEMO 동남유럽언론기구
SIM 네덜란드인권기관, 네덜란드 위크레흐트
SPT 고문방지소위원회
TASO AIDS 지원기구
TM 전통 의약
TNCs 다국적기업
TRIPs 트립스협정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UDHR 세계인권선언
UEFA 유럽축구연맹
UN 유엔
UNCAT 유엔고문방지위원회
UNCED 유엔환경개발회의
UNDP 유엔개발계획
UNESCO 유네스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P 유엔환경계획
UN GA 유엔 총회
UN-HABITAT 유엔헤비타트(유엔인간거주위원회)
UNICEF 유엔아동기금
UNHCR 유엔난민기구
UNMIK 유엔코소보평화유지군
UNMISET 유엔동티모르평화유지군
UNO 유엔 (국제연합) 기구
UN SC 유엔안전보장이사회
UNTAET 유엔 동티모르 과도행정기구
UPR 보편적 정례 검토
US 미국
VOICE 재난 협조 자원봉사 기구
WCAR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
WCRP 세계종교인평화회의
WFIRC 국제종교협회
WFP 유엔세계식량계획
WHO 세계보건기구
WMA 세계의사회
WSIS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WSSD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WTO 세계무역기구

< 전체 목차 >

서문 5
감사의 글 12
매뉴얼 사용법 15
약어 목록 17

I. 인권 시스템 소개 39

II. 주제별 인권 교안 85
A. 고문 방지 87
B.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115
C. 인종차별금지 143
D. 건강권 177
E. 여성 인권 205
F. 법의 지배와 공정한 재판 241
G. 종교의 자유 271
H. 교육권 303
I. 아동 인권 337
J. 무력 분쟁 상황에서의 인권 371
K. 일할 권리 401
L. 프라이버시권 439
M. 표현과 언론의 자유 471
N.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 501
O. 소수자 권리 531
P. 비호권 569

III. 추가 자료원 591

A. 인권교육방법론 592
B. 인권을 위한 세계적 노력들 연혁 606
C. 인권 관련 추천 문헌 612
D. 인권교육 관련 자료 623
E. 세계인권선언 647
F. 세계인권선언 요약 653
G. UN인권교육훈련선언 655
H. 용어해설 662

한국어판 번역 과정 정리 671

< 세부 목차 >

서문 5
감사의 글 12
매뉴얼 사용법 15
약어 목록 17
슐라미스 쾨니히*(Shulamith Koenig)* 서문 36

I. 인권 시스템 소개 39

A. 인권의 이해 40
B. 인권과 인간안보[4] 44
C. 인권의 역사와 철학 48
D. 인권의 개념과 본질 50
E. 세계 인권 표준 53
F. 세계 인권 기구들의 이행 체계 55
G. 인권과 시민사회 59
H. 지역별[5] 인권 증진 및 보호 시스템 60

I. 유럽
- 유럽 인권 기구
1. 유럽평의회의 인권 시스템
a. 개관: 유럽 인권 기구와 사무처
b. 유럽인권재판소
2.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인권 시스템
3. 유럽연합의 인권 정책
II. 미주 - 인권에 대한 미대륙 시스템
III. 아프리카 - 인권에 대한 아프리카 시스템
IV. 다른 지역

I. 국제사법기구와 면책의 문제 71

4) 국가안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인간의 안전이나 안전보장을 의미하여, 통상 "인간안보"로 번역되고 있음.
5) 국제적으로나 본 자료에서, 지역의 의미는 아시아, 유럽과 같은 범위를 말한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국가내 지역 혹은 지방이라는 개념과 구분된다.

J. 국제형사재판소 72
K. 도시별 인권 계획 73
L. 인권에 대한 국제적 도전과제와 기회 75
M. 참고자료 및 추가 정보원 78

II. 주제별 인권 교안 85

A. 고문 방지 87

사례 88
"Selmouni씨 심문" - "al-Qadasi 씨의 증언"
알아야 하는 내용 90
1. 고문 없는 세상
- 고문 방지와 인간안보
2. 정의와 설명
- 고문이란? - 고문의 방법 : 고문은 어떻게 자행되는가? - 고문의 동기 : 왜 고문이 자행되는가? - 고문 및 비인격적이거나 모욕적 처우와 관련된 피해자와 가해자
3. 문화적 관점 차이와 논쟁적 이슈
4. 이행과 모니터링
- UN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알면 좋은 내용 99
1. 모범 사례
- 국가적 차원에서의 활동 - 오스트리아 인권자문위원회 - 국제적 차원에서의 활동 - 고문특별보고관: 목표, 권한과 활동 - 고문방지와 비인격적이거나 모욕적 처우나 처벌 방지를 위한 유럽위원회 (CPT,[6]) - 비정부기구(NGO) 차원에서의 활동 - 국제사면위원회(AI) - 고문방지를 위한 12개 핵심 프로그램 - UN고문방지협회(APT)
- 윤리 강령
2. 동향
3. 연혁
추천 활동 108
활동 I: 테러리스트는 고문해도 되는가?
활동 II: 고문 반대 포스터

6) 이하 "유럽고문방지위원회"라 약칭함

참고자료와 추가정보원 112

B.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115

사례 116

"풍요의 땅에서 굶주림으로 죽어가다"

알아야 하는 내용 117

1. 소개

- 빈곤과 인간안보

2. 정의와 설명

- 빈곤에 대한 정의 - 빈곤의 여러 측면 - 빈곤에 취약한 집단 - 빈곤은 왜 지속되는가?

3. 문화적 관점 차이와 논쟁적 이슈

-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 - 사회적 소외

4. 이행과 모니터링

- 빈곤모니터링조약기구 - 특별보고관과 독립전문가 - 개발과 빈곤 근절

알면 좋은 내용 128

1. 모범 사례

- 빈곤한 이들도 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 - 굶주림으로부터의 자유 - 경제적 정의 - 코토노 협정 - 유럽 반빈곤 네트워크 - 사회복지에 대한 국제회의 - UN 세계식량계획

2. 동향

- 새천년개발목표를 향한 노력 - 여러 나라들이 그러한 궤도에 있는가? - 유럽 2020 이니셔티브

3. 연혁

추천 활동 134

활동 I: 세계가 하나의 마을이라면

활동 II: 캠페인 활동

참고자료와 추가정보원 139

C. 인종차별금지 143

사례 144

"유엔인종차별금지위원회의 권고"

알아야 하는 내용 146

1. 차별금지

- 평등을 위한 지속적이며 현재진행형인 투쟁 - 차별과 인간안보
2. 정의와 설명
- 인종차별 - 인종주의 - 반유대주의 - 외국인 혐오 - 관련된 현상: 불관용과 편견
3. 문화적 관점 차이와 논쟁적 이슈
4. 이행과 모니터링
-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알면 좋은 내용 162
1. 모범 사례
2. 동향
- 빈곤과 인종주의/외국인혐오 사이의 관계 - 인터넷에서의 인종주의 - 이슬람혐오: 9.11 테러의 후유증
3. 연혁
추천 활동 167
활동 I: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태어난다
활동 II: "문화적 색안경"
참고자료와 추가정보원 171

D. 건강권 177

사례 178
"마리엄 이야기"
알아야 하는 내용 180
1. 광의의 건강권
- 건강과 인간안보
2. 정의와 설명
- 건강과 인권 - 유용성, 접근성, 수용성 그리고 질 - 차별금지 - 과학발전의 성과를 향유할 권리 - 세계화와 건강권 - 건강과 환경
3. 문화적 관점 차이와 논쟁적 이슈
4. 이행과 모니터링
- 건강권의 존중, 보호 그리고 충족 - 건강권의 한계 - 모니터링 시스템
알면 좋은 내용 189
1. 모범 사례
- 에이즈 예방 - 시민 배심원과 공공 보건정책 - 말리콘다 선언 - 메모리 북 -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주의 - 지적장애인에 대한 몬트리올 선언 - 사스
2. 동향
- 인권과 건강 증진을 통합하기 위한 전략
3. 통계

4. 연혁

추천 활동 197

활동 I: "온전한 육체, 정신, 사회적 웰빙 상태"를 상상하기

활동 II: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참고자료와 추가정보원 201

E. 여성 인권 205

사례 206

"실제 삶의 사례: 셀비 T.의 이야기"

알아야 하는 내용 207

1. 여성 인권

- 젠더와 여성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 - 인간안보와 여성

2. 정의와 설명

- 역사 되돌아보기 - 여성과 빈곤 - 수치 및 통계 - 여성과 건강 - 여성과 폭력 - 여성과 무력 분쟁 - 여성과 천연자원 - 여자 아이

3. 문화적 관점 차이와 논쟁적 이슈

4. 이행과 모니터링

알면 좋은 내용 225

1. 모범 사례

- 젠더 관점에서 본 인권 - 여성 권리 증진훈련 -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매체

2. 동향

3. 연혁

추천 활동 231

활동 I: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해

활동 II: 평등국(Equilia)으로 가는 길

참고자료와 추가정보원 235

F. 법의 지배와 공정한 재판 241

사례 242

"터키: 정의를 왜곡시킨 활동가에 대한 재판"

알아야 하는 내용 243

1. 소개

- 법의 지배 - 법의 지배 원칙의 역사적 발전 - 법의 지배, 공정한 재판과 인간안보

2. 정의와 설명
- 법의 지배의 핵심적 요소로서의 공정한 재판 - 피고인의 권리에 관한 최저 기준 - 법 앞에서의 평등과 법원 앞에서의 평등 - 독립성과 공정성 - 공개심리 - 무죄로 추정될 권리 - 부당한 지체 없이 재판받을 권리 - 적절한 변호를 받을 권리와 본인의 출석 하에 재판받을 권리 - 신문을 요청할 권리와 증인을 신문하거나 신문받도록 할 권리 -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권리 - 효과적이며 공정한 사법적 구제에 대한 접근권 - 죄형법정주의 원칙 - 라드부르흐 공식[7] - 보석에 대한 권리 -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특별 규정

3. 문화적 관점 차이와 논쟁적 이슈

4. 이행과 모니터링
- 이행 모니터링

알면 좋은 내용 257

1. 모범 사례
- 민주제도와 인권 사무국(ODIHR)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존중 - 아태사법개혁포럼

2. 동향
- 국제재판소 - 조정과 중재 - 분쟁과 위기 후의 사회에서의 법치 (재)확립

3. 연혁

추천 활동 262

활동 I: 심리를 받을 것인지 아닐지?

활동 II: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변호할 수 있는가?

참고자료와 추가정보원 267

G. 종교의 자유 271

사례 272

"이집트: 구속된 활동가 석방을 위한 연대 방문"

알아야 하는 내용 273

1. 종교의 자유: 아직도 가야할 길은 멀다
- 종교의 자유와 인간안보

2. 정의와 설명
- 종교란 무엇인가? - 믿음이란 무엇인가? - 종교의 자유는 무엇인가? - 국제 기준 - 차별철폐의 원칙 - 교육 - 종교 활동의 자유 - 종교의 자유의 한계

3. 문화적 관점 차이와 논쟁적 이슈
- 국가와 신념 - 배교_신념을 선택하고 변경할 자유 - 개종의 권유_자신의 믿음을 전파할 수 있는 권리 - 종교적 혐오 조장과 표현의 자유 - 양심적 병역거부

7) 극도로 부정의한 실정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기준

4. 이행과 모니터링
- 미래를 위한 예방 수단과 전략 -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알면 좋은 내용 284
1. 모범 사례
- 종교의 다원성을 위한 종교 간 대화 - 교육을 통한 "평화를 위한 종교"
2. 동향
- 이단, 소수종파 그리고 새로운 종교 운동 - 여성과 신앙 - 종교적 극단주의와 영향
- 종교에 대한 비방
3. 연혁
추천 활동 290
활동 I: 상처주는 말들
활동 II: 내 이웃의 신앙과 나의 신앙
참고자료와 추가정보원 294

H. 교육권 303

사례 304
"마야 이야기"
알아야 하는 내용 305
1. 소개
- 왜 교육권이 필요한가? - 교육과 인간안보 - 역사적 발전
2. 정의와 설명
- 교육권의 내용과 국가의 의무 - 가용성 - 접근성 - 수용성 - 적용성
3. 문화적 관점 차이와 논쟁적 이슈
- 취약 집단과 교육권에의 접근 - 학교에서의 인권
4. 이행과 모니터링
- 이행의 문제점
알면 좋은 내용 321
1. 모범 사례
2. 동향
- 다카르 행동계획 - 모두를 위한 교육 - 교육의 상업화 - 모두를 위한 교육을 향한 진전: 엇갈린 결과들
3. 연혁
추천 활동 326
활동 I: 이용 가능한가? 접근 가능한가? 수용 가능한가? 적응 가능한가?
활동 II: 모두를 위한 교육?
참고자료와 추가정보원 330

I. 아동 인권 337

사례 338

“아동에 대한 체벌” “무력 분쟁 상황에 놓인 아동” “아동 노동”

알아야 하는 내용 341

1.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투쟁

- 아동 권리와 인간/아동의 안보

2. 정의와 설명

- 아동인권의 본질과 내용 -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개념 - 요약 : 왜 아동권리에 기초한 접근방식을 취하는가?

3. 문화적 관점 차이와 논쟁적 이슈

4. 이행과 모니터링

- 아동권리위원회 - 아동의 청원권에 관한 선택의정서

알면 좋은 내용 352

1. 모범사례

- 인간잇기 - 자국 내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비정부기구들의 “이면보고서” - 아동권리협약을 위한 비정부기구그룹 - 학교에서의 폭력 중단

2. 동향

- 아동권리에 대한 통계적 정보 : 사실과 수치들

3. 연혁

추천 활동 361

활동 I: 아동의 필요와 권리

활동 II: 아동노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행동 원탁회의

참고자료와 추가정보원 364

J. 무력 분쟁 상황에서의 인권 371

사례 372

“옛날 폭군은...: 베트남 공무원의 기억”

알아야 하는 내용 373

1. 전쟁터에서조차 넘어선 안 될 선이 있다

- 국제인도주의법과 인간안보 - 국제인도주의법의 기원 - 국제법으로서의 인도주의법 - 국제인도주의법과 인권 - 언제 국제인도주의법이 적용되는가?

2. 정의와 설명

- 무력 분쟁에서의 국제인도주의법의 기본원칙은 무엇인가? - 국제인도주의법은 무엇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 국제인도주의법을 준수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3. 문화적 관점 차이와 논쟁적 이슈
- 문화적 인식의 중요성 - 국제인도주의법의 적용과 관련된 상반된 시각들
4. 이행과 모니터링
- 예방적 수단 - 준수 감시 수단 - 억제 수단
알면 좋은 내용 382
국제적십자와 국제적신월사 운동
1. 모범 사례
- 민간인 보호 - 포로 보호 - 가족 관계 회복 - 한 마디로 풀어보는 엠블럼 - 인도주의적 행동의 활동 원칙
2. 동향
- 국가기반(State-Based) 무력 분쟁 유형의 동향: 1946-2008 - 비정부 무력 분쟁 지역 동향: 2002-2008 - 테러리즘 - 대인지뢰 및 집속탄 금지
3. 연혁
추천 활동 392
활동 I: 국제 인도주의법을 왜 준수해야하는가?
활동 II: 인도주의적 활동에서의 윤리
참고자료와 추가정보원 398

K. 일할 권리 401

사례 402
"자유무역지대에서의 끔찍한 노동 조건"
알아야 하는 내용 403
1. 21세기 노동의 현황
- 노동과 인간안보 - "역사 되돌아보기"
2. 정의와 설명
- 국제노동기구 - 세계인권선언(UDHR) -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ICCPR)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ICESCR)
3. 문화적 관점 차이와 논쟁적 이슈
- 우화: 어부 이야기
4. 이행과 모니터링
알면 좋은 내용 418
1. 모범 사례
- 아동노동 철폐를 위한 국제 프로그램 (IPEC) - 노동과 인권에 관한 기업 행동 강령 - 다중 이해관계자 운동 (Multi-stakeholder initiatives) - 항목표시제도 (Labelling of Items) - 유엔 글로벌 콤팩트 (UN Global Compact)
2. 동향

- 수출가공지역 (EPZs) - 노동조합의 쇠퇴 - 국제유동성의 증가: 노동자들의 이주 - 청년 실업 - HIV/AIDS와 노동계
3. 연혁
추천 활동 427
활동 I: 아이인지 일인지!
활동 II: 공정하게 차려입었는가?
참고자료와 추가정보원 432

L. 프라이버시권 439

사례 440
"부적절한 보안처리에 따른 개인 정보의 유출"
알아야 하는 내용 441
1. 소개
- 프라이버시권의 역사적 발전 - 프라이버시와 인간안보
2. 정의와 설명
- 프라이버시권의 내용 - 특별히 취약한 집단들
3. 문화적 관점 차이와 논쟁적 이슈
- 프라이버시권을 침식해오는 대테러 정책 - 검문하고, 수색할 수 있는 확장된 권력 - 생체인식장치의 사용과 중앙집중화된 신원확인시스템의 위험성 - 감시대상 리스트의 유통 - 중앙집중화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의 자료수집 - 인터넷에서의 프라이버시 - 소셜 네트워크 - 아동 포르노
4. 이행과 모니터링
- UN - 대테러 작전 속에서의 인권, 기본적 자유권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UN 특별보고관 - 지역별 협약들과 감시기구들
알면 좋은 내용 456
1. 모범 사례
- privacy.org - 전자 프라이버시 정보 센터(EPIC) -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I)
2. 동향
- 감시 리스트, "비행금지 승객" 명단 - 구글스트리트뷰 - 소셜 네트워크 - 국립 DNA 데이터베이스 - 영국 -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에서의 자유에 관한 공동선언 -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인권보호
3. 연혁
추천 활동 462
활동 I: 개인정보, 공공정보
활동 II: 마리안느 K의 이야기
참고자료와 추가정보원 466

M. 표현과 언론의 자유 471

사례 472

"침묵만이 살길이다. 여성이여" "이집트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축소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항의" "크로아티아 언론인 Drago Hedl씨에 대한 새로운 살해 협박에 대해 SEEMO의 항의"

알아야 하는 내용 473

1. 과거와 현재의 연관성

- 인간안보, 표현 및 언론의 자유 - 오래된 그리고 새로운 도전과제

2. 콘텐츠와 위협

- 권리 침해, 위협과 위험 - 적법한 권리 규제

3. 이행과 모니터링

- 전문가 조직과 NGO의 역할

4. 문화적 관점

5. 연혁

알면 좋은 내용 485

1.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자유언론의 역할

2. 언론과 소수자

3. 언론의 자유와 경제발전

4. 선전전과 혐오 옹호

5. 모범 사례

6. 언론의 자유와 인권 교육

7. 동향

- 인터넷과 표현/정보의 자유

추천 활동 491

활동 I: 당신은 어떤 모자를 쓰고 있는가?

활동 II: 인터넷의 영향

참고자료와 추가정보원 494

N.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 501

사례 502

민주적 변혁 : 투쟁의 종결후 혁명의 유산을 구축하다.

알아야 하는 내용 504

1. 확산되고 있는 민주주의?

- 민주주의와 인간안보
2. 정의와 설명
-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 - 민주주의 이론 - 민주주의의 형태 - 현실에서의 민주주의 형태
3. 문화적 관점 차이와 논쟁적 이슈
- "아시아적 가치" 논쟁 - 이슬람세계에서의 민주주의의 도전과제
4. 이행과 모니터링
알면 좋은 내용 517
1. 모범 사례
- 민주주의로 가는 길 위에서
2. 동향
- 민주주의의 확산 - 여성의 정치적 참여 - Democr@cy Online - 세계화와 민주주의 - 국제기구, 다국적기업과 비정부기구에서의 민주주의의 결핍
추천 활동 522
활동 I: 예, 아니요, 혹은 그 중간 어디쯤?
활동 II: 우리 지역사회의 미나렛?
참고자료와 추가정보원 526

O. 소수자 권리 531

사례 532
"D.H.등과 체코 정부와의 소송"
알아야 하는 내용 533
1. 소수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투쟁: 역사적 발전
2. 정의와 설명
- "소수자"와 "소수자 권리"의 개념 - 선주민과 선주민 권리 - 개념에 관한 도전: 개인권과 집단권 - 소수자 권리와 인간안보 - 자치와 자결권 - 정부의 의무 : 비차별, 통합, 그리고 적극적 우대조치의 원칙 - 소수자 보호를 위한 국제 인권 문서들 - 소수자 보호를 위한 지역별 인권문서들
3. 문화적 관점 차이와 논쟁적 이슈
- "기존의" 그리고 "새로운" 소수자들, 시민권의 기준
4. 이행과 모니터링
- UN - 유럽안전보장협력기구 (OSCE) - 유럽평의회 (CoE) - 아프리카연합 (AU) - 미주기구 (OAS) - 국제적인 압력 : 정부 간 기구와 비정부기구, 그리고 언론의 역할
알면 좋은 내용 553
1. 모범 사례
- 국제 소수자 옹호 그룹 (MRG) - 유럽 로마족 권리 센터 (ERRC) - 저사용 언어

유럽 사무국 (EBLUL) - 남아프리카의회 내 소수자 대표
2. 동향
- "기존의" 그리고 "새로운" 소수자 개념, "새로운" 소수자에 대한 소수자 보호 시스템의 적용 - 다양성과 화합
3. 연혁
추천 활동 558
활동 I: 편견과 차별에 맞서기
활동 II: 소수자를 다루는 다섯 가지 방법
참고자료와 추가정보원 563

P. 비호권 569

사례 570
"난민의 눈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내용 572
1. 소개
- 역사적 발전 - 비호와 인권 - 비호와 인간안보
2. 정의와 설명
- 국제법의 정의에 따른 난민 - 비호신청자 - 사실상 난민 - 대안적 국내피신 - 무국적자 - 이주민 - 추방과 가족 결합 - 자발적 귀환과 강제 추방 - 강제송환금지원칙과 보충적 보호조치 - 난민지위박탈 - 유엔난민기구 (UNHCR)
3. 문화적 관점 차이와 논쟁적 이슈
- 빈곤으로 인한 난민 - 난민절차 - 유럽 공통의 비호 체계
4. 이행과 모니터링
- 지역적 문서 - 유럽인권재판소의 역할
알면 좋은 내용 581
1. 모범 사례
- 가족 재결합 계획 - RefWorld - 난민해방
2. 동향
- 국내피난민(IDPs) - 해상을 통한 불법 이주 - Dadaab, 세계에서 가장 큰 난민 캠프 - 이주민, 난민과 비호신청인을 향한 인종주의와 인종혐오 - 공평한 책임분담
3. 연혁
추천 활동 585
활동 I: 비호신청하기
활동 II: 짐 싸서 도망치기
참고자료와 추가정보원 588

III. 추가 자료원 591

A. 인권교육방법론 592
B. 인권을 위한 지속적인 세계적 노력 - 연혁 606
C. 인권 관련 추천 문헌 612
D. 인권교육 관련 자료 623
E. 세계인권선언 648
F. 세계인권선언 요약 653
G. UN인권교육훈련선언 655
H. 용어해설 662

한국어판 번역 과정 정리 671

인권을 배우고 이를 삶에 통합하기 – 우리 모두가 가야할 길

2010년대에는 세계 인구의 절반에 당하는 약 사십억의 인구가 25세 이하이며, 전세계의 사람들과 수많은 공동체는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에 대한 열망, 희망과 기대가 반영된 삶을 다시 상상하고, 다시 구성해보고 다시 만들어 보도록 북돋아 진다. 이러한 과정은 국내적/국제적 정당성을 얻고 있으며 그 전망이 매우 밝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사회적 책임감을 지녀야 한다. 다시 말해, 인권에 대해 전체론적으로 접근하고, 삶의 방향으로서의 인권에게 주어진 실질적 임무를 명심해야 하는 것이다. 모든 민주주의 사회는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지닌다.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있는 매우 유용하며 통합적인 이 매뉴얼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은 남녀모두가 경제적/사회적 정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무이하고 강력한 틀을 발견할 수 있다.

본 매뉴얼에서 다루고 있는 인권의 불가분성, 상호관련성, 상호연결성은 인권에 대해 새로이 이해하고, “인권의 봄”이라 불리는 의미 있고 지속적인 변화를 성취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 변화란 자선으로부터 존중으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많은 이들이 본 매뉴얼에서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어주었다. 그들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인권에 암시되어 있는 도덕적/정치적 측면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인권이 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받는 원칙임을, 하지만 우리의 일상적 삶과 인권의 관련성을 아는 사람들이 매우 적음을 상기시킨다. 본 매뉴얼은 여러 생각과 경험을 통합시키고 있다는 점이, 여러분 각각이 책임을 지니고 삶에서의 인권에 대한 선도자 및 감시자가 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가정에서, 이웃 사회에서, 경제적, 종교적, 문화적 공동체 조직에서 이러한 활동을 해야 한다.

본 매뉴얼은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하고 지속시키는 규범 및 기준을 통해 인권을 탐색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은 존엄하게 사는 법, 다른 이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변화에 대한 창의적이며 긍정적인 대리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인권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라고 볼테어에게 묻는다면,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권을 알 수 있도록 하십시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침묵시위로 미국에서의 시민권 운동을 촉발한 Rosa Parks는 그녀의 행동이 사람들의 손에 스스로의 삶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쥐어주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녀의 행동이 인권을 삶의 방향에 통합시켰다고 생각한다.

인권 학습 및 통합이란, 알고 계획하며 소유하고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모든 이에게는 인권이 있으며, 이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는 것을 알릴 고귀한 임무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 인권이 훌륭한 조직 도구라는 것을, 경제적/인간적/사회적 발전에 대한 유일무이한 전략이라는 것을 알아야하는 것이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는 세상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수준에 인권에 대한 의미있는 배움을 통합시켜야한다. 이러한 배움은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사실 우리 모두 인권에 대해 천부적으로 알고 있다. 우리 각각은 언제 불의가 드러나는지 알고 있으며, 정의가 인권의 궁극적인 표현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우리 모두가 굴욕을 회피하려 한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굴욕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다른 이에게 굴욕감을 준다. 만약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존중한다면, 인권을 삶에 내면화하고 사회화한다면, 이 악순환이 깨질 수 있다. 인권은 상호 존중을 필요로 하며, 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통해 모든 갈등이 해결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인권의 포괄적인 틀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 데에 궁극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해야 한다. 이는 현재의 사회 분열과 세계에 만연한 빈곤과 불관용에 맞서는 행동을 위한 강력한 도구이자 필수적인 지지체계다. 간단한 일이다. 인권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는 세계의 변화에 참여할 수 있다. 가부장제가 만연한, 정의가 곧 불의인, 사람들이 생존과 평등을 맞바꾸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에 말이다.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은 UN에 의해 만들어진 인권에 관한 기적적인 이야기다. 이는 인권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해 온 국가들이 인류에게 준 선물이다. 슬프게도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인권이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한 채로, 정부에게 이에 관한 의무를 주장하지도 못한 채로 살아가다 삶을 마감한다 (www.pdhre.org/justice.html). 당연하게도, 인권에 대한 무지는 인권 침해이자 인권 실현에 있어서의 장애물이다.

이 책이 없애려 하는 것은 이러한 “인권 침해”와 인권에 대한 무지다. 사람들

이 인권의 발달을 알고 내면화하고 사회화할 수 있기 위해, 그리고 모두를 위한 인권이 실현되기 위해 이는 꼭 필요한 일이다.

여러분이 이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인권을 삶이 자유롭게 유영할 수 있는 강의 둑이라고 생각해보아라. 홍수가 오면, 인권을 배우고 내면화한 사람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둑을 만들고 이를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자유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국제인권교육민중연합의 창립회장인 Shulamith Koenig은 2003년 UN인권상을 받았으며 2011년 그녀의 "인류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Pio Munzo Center로부터 메달을 수여받았다.)

I. 인권 시스템 소개

INTRODUCTION TO THE SYSTEM OF HUMAN RIGHTS

인간의 존엄성

인권

인권교육

인간안보

>> 이 활동은 여전히 2차 세계대전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선언이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모든 인간 고유의 존엄과 평등에 대한 최초의 세계적 문서임을 상기시켜 준다. <<

Sérgio Vieira De Mello, UN인권최고대표. 2003.

A. 인권의 이해

UNDERSTANDING HUMAN RIGHTS 😐!?

인권개념의 핵심은 모든 사람의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을 관심의 중심에 두는 것이다. 이것은 삶의 존엄성에 기여하는 공통보편의 가치시스템에 기초를 둔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용인된 규범과 기준에 의해 보호되는 인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다. 20세기를 지나는 동안, 인권은 도덕적, 정치적 그리고 법률적 체계로 진화해왔다. 그리고 공포로부터 해방, 결핍으로부터 해방된 세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진화되었다. 21세기에 들어서는 인권을 알리고 이해시키는 것 그리고 이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모든 인간은 존엄성과 권리 안에서 자유롭고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서로를 형제애의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 1948.

1948년에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DHR) 제1조는 인권시스템의 중요 축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자유 평등 연대**이다.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그리고 의사표현의 자유는 인권으로 보호된다. 동시에 인권은 평등을 보장한다. 이것은 남녀의 완전한 평등을 포함하여 인권의 향유에 있어 모든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평등의 원칙을 말한다. 연대는 사회적 안전, 정당한 보수, 적절한 삶의 수준, 건강 그리고 교육받을 권리와 같은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말한다. 이것은 인권프레임의 필수부분이다. 이것들은 정치, 시민,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라는 다섯 가지 주제로 세분된다. 법적으로는 인권장전으로 정의되는 세계인권선언과 더불어 두 개의 협약으로 정의된다.

"모두를 위한 모든 인간의 권리"

는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의 슬로건이었다. 인권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인권의 완전한 현실화를 향한 사회 변화를 추구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분쟁은 법률에 근거한 평화적 수단에 의해 그리고 인권의 프레임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권은 간섭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인권은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인권은 도덕적 요구 및 공공질서, 민주사회의 일반적 복지에 의해서도 제한된다.(세계인권선언 제29조) 다른 사람의 인권은 용인될 뿐만 아니라 존중받아야만 한다. 인권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인권선언 제30조) 그래서 모든 분쟁은 심지어 공공의 긴급상황(public emergency)이라고 할지라도 인권을 존중하면서 해결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에 한해 일부 제한사항이 시행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여자, 남자, 청소년, 아동 등 모든 사람은 그들의 관심 및 소망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인권교육과 학습을 통해 달성될 수 있으며 교육은 공식적, 비공식적, 비정규적인 교육을 말한다. 인권의 원칙과 절차의 이해는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며, 인권적인 갈등 해결과 평화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이는 사람 중심의 인간적,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이다.

"근대 인류 역사에서 어떠한 구절도 "인권"이라는 말보다 더
인류의 사명과 인류 운명의 짐을 짊어지는 권위를 갖지는 못했다...
고전과 현대를 막론한 인간의 의식 속에서 가장 큰 선물은 인권의 개념이다.
진실로, 역사상 우리에게 가능한 그 어떤 도덕적인 언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권의 언어이다... "

Upendra Baxi, 1994. 비인간적인 문제점들과 인권.

인권교육과 학습은 모든 행위자나 이해당사자들, 시민사회, 정부 그리고 초국적 회사에 의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인권학습을 통해 인권의 존중, 보호, 충족, 강제 그리고 실천에 바탕을 둔 진정한 인권의 문화가 발전될 수 있다.

인권교육에 대한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제26조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교육은 인간개성의 완전한 발전 그리고 인권과 근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힘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 *교육권*

유엔은 1994년 12월 23일 총회결의 49 /184를 통해 유엔 인권교육 10년(1995-2004) 행동계획 기본체계의 이행을 위한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을 선포하였다. 이 결의문에는 인권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담겨 있다.

"인권 교육, 학습 및 대화는 반드시 인권의 틀 안에서
정치적, 시민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문제에 대한
성 관점을 포함한 비판적인 사고와 체계적인 분석을 환기시켜주어야 한다."

Shulamith Koenig, PDHRE. .

2007년 12. 8. 유엔총회는 2009년을 세계인권학습의 해로 선언했다. (UN GA RES. 62/171) 개회식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이 되는 2008. 12.10. 개최되었다. 그 다음 유엔결의안 66/173이 2011. 12.에 채택되었다.

이 계획의 배경이 된 주요 동력은 "인간의 인권교육 10년"의 설립자인 SHULAMITH KOEING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인권을 알게 하고 주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지구의 모든 사람이 인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장기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인권교육의 목적은 "HUMAN RIGHTS LITERACY FOR ALL"이다. 즉 넬슨만델라의 말을 빌리면 인권에 기초를 둔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 *인권교육방법에 대한 일반론 참조*

☺ **유엔총회 결의안 49/184 (1994. 12. 23)**은 유엔인권교육 10년을 선포하면서 " [...] 인권교육은 정보의 제공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개발의 수준 또는 사회적 계층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모든 사회에서 이것이 보장되는 수단과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장기적인 평생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했다.

☺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 " [...] '인권교육'은 지식과 기술의 전수, 태도의 형성을 통하여 보편적 인권문화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다음을 지향하는 훈련, 정보의 보급 및 전달 노력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a)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강화
(b) 인격의 완전한 개발과 인간 존엄성의 인식
(c) 모든 국가(nations), 원주민(indigenous peoples) 그리고 인종적·민족적(national)·종족적(ethnic)·종교적·언어적 집단 사이의 이해, 관용, 성적 평등 및 우호관계의 증진 [...] "

2004.12.10. 유엔총회는 “인권교육을 위한 세계프로그램”을 선포하였다(유엔결의59/113A 이것은 매 3년마다 채택되는 행동계획에 의해 실행되어야 한다. 인권교육을 위한 세계프로그램 1차 행동계획(2005-2007, 2009년까지 연장)은 초, 중등학교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차 행동계획은 고등교육 그리고 교사와 공무원, 법집행관 및 군인들을 위한 인권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1. 12. 2. 유엔총회는 유엔인권교육 및 훈련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제네바에 있는 인권위원회에 의해 최초로 채택되었고 실무진에 의해 준비되어져 온 것이다. 이것은 인권교육의 모든 측면에 대한 새로운 토대를 만들고 **인권교육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인권에 관한 교육(Education About Human Rights), 인권에 관한 지식 제공, 인권 기준 및 원칙의 이해, 인권보호의 토대가되는 가치관과 인권보호체계 등에 관한 사항

(b) 인권을 통한 교육 (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 교육자와 학습자 양자 모두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학습 및 교수법

(c) 인권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Human Rights),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고 실천해야 하며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게 하는 역량강화

이 선언은 다섯 가지의 주요한 목적 즉 “ 인식의 고양, 인권의 보편적 문화의 발달, 인권의 효율적인 실현의 추구,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의 보장, 그리고 인권침해의 예방에 대한 기여”를 천명하고 있다. 당사국과 정부는 인권교육과 훈련을 촉진하고 보장할 1차 책임을 진다. 국가 및 정부는 이것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행동계획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학교교육 과정에 인권교육훈련을 통합하여 인권교육훈련이 이행될 수 있는 행동계획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야 한다. 인권교육에 관한 세계프로그램에 따르면 시민사회도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하지만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야 한다.

“인권교육은 지식, 능력과 함께 공정, 관용, 존엄과 타인의 권리와 존엄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등 인권의 가치를 개발하는 모든 학습을 말한다.”

Nancy Flowers. 미네소타 대학 인권센터.

인권교육을 위한 세계프로그램의 1차, 2차 행동계획은 다음의 4단계 실행 전략을 규정하고 있다 :

1단계 : 인권교육의 현 상황에 대한 분석

2단계 : 우선권의 부여 (SETTING PRIO -RIES) 및 국가적 수행전략을 개발

3단계 : 수행과 모니터링

4단계 : 평가

B. 인권과 인간안보

HUMAN RIGHTS AND HUMAN SECURITY 😐!?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 특히 2차세계대전의 홀로코스트 경험 후에 작성되었다. 이 선언은 인간 개개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위 선언의 서문은 "*두려움과 결핍에서의 해방*"을 언급하고 있다. 동일한 접근은 인간안보의 개념에도 포함되어 있다.

2000.7. 그라쯔(Graz)에서 열린 *"인간안보와 인권교육에 대한 국제워크숍"*에서 인간안보는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것이 선언되었다. 분쟁을 예방하고 불안정과 취약성(insecurity and vulnerability)의 근본원인에 접근하는 것이 이를 위한 방법의 예이다. 인간의 안보전략은 인권에 기반을 둔 전 지구적 정치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인권교육은 인간안보를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통적인 지구적 가치 체계에 기반을 두고 문제 해결책을 찾도록 하기 때문이다. 인권교육은 또한 사람들이 권력 지향적 접근이 아닌 규범과 권리 지향적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도 한다. 인간안보는 개인의 안전, 가난, 차별, 사회적 정의 및 민주주의의 문제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욕구로부터 출발하며 전 사회에 걸쳐 분산된 방식으로 촉진된다. 착취 또는 부패로부터 해방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그들의 권리의 침해를 용납하지 않을 때 시작된다. 시민사회기구(*국제 투명성기구*와 같은)는 인권의 지식의 기초위에서 이 해방의 과정을 지지한다.

"인류의 안보를 위협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직간접적으로 인권의 관점을 드러낸다."

2차 인간안보네트워크 각료회의, 루체른. 2000년 5월

인권과 인간의 안보 사이에는 몇 가지 관련성이 있다. 개인안전의 형태로서 안전(예컨대 자의적인 구금으로부터의 보호), 사회적 안전(식량 안전과 같은 기본 욕구의 규정) 그리고 국제적 안전(안전한 국제질서 속에서 살 권리)은 현재의 인권과 일치될 수 있다. "안보에 대한 정책들은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개발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들과 점점 더 밀접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인권, 인도주의 법 그리고 난민법은 인간안보가 기반을 두고 있는 규범적 구조를 제공한다."(인간안보 : 변화하는 세계에서 인간을 위한 안보, 1999. 캐나다 외교통상부)

캐나다 정부는 인간의 안보 개념의 일부로서 **"보호 책무"**를 발전시켰다.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Independet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ity"에서 작성한 보고서

를 제출하였다. 이 독트린은 2005년 유엔 총회 정상회의 최종 문서로 채택되었다. (자료원 :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GA-Res2005.60/1 (2005))

인권침해는 인간의 안보에 대한 위협을 나타낸다. 그리고 **분쟁 예방**을 위한 초기 경고 메커니즘의 지표로서 사용된다. 그러나 인권은 또한 분쟁조정, 분쟁의 전환, 분쟁 후 평화재건에서도 그 역할이 있다. 인권교육은 지식의 전수, 기술의 강화와 태도의 형성을 통해 분쟁예방을 위한 진정한 문화의 기초를 마련한다.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 세계평화는 불가능하다."

UNDP. 1994. 인간개발보고서 1994

게다가 분쟁예방의 핵심적 도구가 되는 인권은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핵심개념도 된다. 인권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능동적 참여를 통해 사회의 문제와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거버넌스 확립**은 두 가지 보완적 형태의 역량 구성인 *"국가 수립"*과 *"사회적 개발"*로 이루어진다. 국가수립(state building)은 민주주의적 안보를 말하며, 분쟁 후 재건과 재활의 노력 속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개발(societal development)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는 폭넓은 인권교육을 말한다." (*Walther Lichem, PDHRE).

2003.5.10. 그라쯔에서 열린 제5회 인간안보네크워크 장관회의에서 **"인권교육과 인간안보에 대한 그라쯔 선언"**이 서명되었다. 이것은 인권교육의 모든 관련당사자들의 책임을 확인함으로써 그들의 인권을 알 수 있는 권리에서 시작하는 인권교육을 통해 인간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인권의 이해"라는 매뉴얼이 채택되어졌는데 이것은 번역되고 배포되어져야 하며 널리 사용되어져야 한다.

그라쯔 선언은 또한 인권과 인간의 안보는 인권의 증진과 불가결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인권의 이행은 인간안보의 목적이며 핵심적 부분이라고 선언한다(제1조).

"(인류의 안보는), 핵심적으로, 개인의 안전을 국제적인 우선순위에서 중심에 놓는 전 지구적 사회의 건설에 대한 노력이며.., 국제적인 인권 표준과 법의 지배가 발전되고 개인에 대한 보호망으로 직조되는 것이다."

Lloyd Axworthy, 캐나다 전 외교부장관.

"우리는 그 핵심에 인류의 안보의 원칙을 내포한 새로운 국제관계 문화가 필요하다."

Srgjan Kerim. 유엔 총회 의장, 2009년

인간안보위원회(commisson on human security)는 사다코 오가타(유엔고등난민위원회 위원 역임)와 아마티아 센(노벨 경재학상 수상자)를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2001년 설립되었다. 2001년 12월 코스타리카 산 호세에서 인간안보위원회는 미주인권기구와 평화대학과 공동으로 인권과 인간안보간의 관계에 관한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이 워크샵에서는 "인간안보의 핵심적 구성요소로서 인권선언(Declaration On Human Rights As An Essential Component Of Human Security)"을 구체화하였다.(www.humansecuritychs.org/doc/sanjosedec.html) "현재의 인간안보"이라는 보고서에서는 몇 가지 인권에 대한 관심을 언급했다.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일했던 버트란드(Bertrand G. Ramcharan)에 따르면 국제적 인권규범은 인간안보의 의미를 구체화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국가의 안보가 존재하게 하는 집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안보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의 이익에 대한 경의와 국가 권력에 대한 좁고 근시안적인 시야에 대한 고수는 피해자의 인간안보의 이익을 능가한다.

Louise Arbour,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2005.
현대 세계의 보호의 책임.

세계인권선언 제3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9조는 인간의 자유와 안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다. 이것은 특히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언급하고 있다. 게다가 세계인권선언 제22조와 경제적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는 사회적 안전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경제적 사회적 권리와 더불어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와 상응한다. 세계화와 인간의 안전에 대한 권리의 관계는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코피아난의 밀레니엄 보고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구별하고 있다. 이는 전후 세계질서에 대한 비전으로서 2차세계대전 중인 1940년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에 의해 주창된 4 가지 자유에서도 드러나는 차이다. 2005년 사무총장의 보고서 "더 큰 자유"에서는 개발, 자유 그리고 평화의 삼각관계를 어떻게 완벽하게 이루어 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담 결과문에서는 인간안보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사무총장의 보고서가 2008년 제출되었다.

가난과의 싸움, 그리고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적 권리에 대한 투쟁은 "정치적 자유 그리고 기본적 자유"에 대한 투쟁만큼이나 안전과 관련되어 있다. 이들은 상호의존적이고 상호 연관되며, 불가분적이다.
☞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건강권, 일할 권리*

"그런 이유로, 우리는 안보 없이 개발을 향유할 수 없고, 개발 없이 안보를 향유할 수 없으며, 인권에 대한 존중이 없이는 두 가지 모두 향유할 수 없다..."

Kofi Annan, 유엔 사무총장. 2005.

더 큰 자유 안에서: 모두를 위한 개발, 안전, 인권을 위하여

유엔개발기구의 2000년 보고서에 따르면 인권과 인간개발은 공통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유엔개발기구에서 사용되는 인간개발지표에는 교육에의 접근, 안전한 음식, 의료서비스, 성 평등, 정치적 참여와 같은 지표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안보라는 개념은 인권과 인간 개발과 중첩되고, 서로를 보강해주며, 서로에게 의존하는 개념이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국제정책들이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공포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안보는 그러한 기반에서 만들어질 수 없다. 진정한 안보는 반드시 입증된, 인권의 원칙에 입각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Sérgio Vieira de Mello,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2003.

UNESCO 역시 인간의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안보에 대한 지역적 접근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다. 2005년부터 인간의 안전에 대한 폭력적 위험에 중점을 둔 이래 앤드류 맥(Andrew Mack)의 지휘 하에 **인간안보 보고서(human security report)**가 출간되었다. 이것은 민주정부의 전 세계적인 증가가 무력충돌을 감소시킨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갈등과 민주주의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자료원: human security report 2009/2010)

2001.9.11 테러이후 십년동안 국가주권이 점점 중시되었다. 그리고 미국에 의해 주창된 테러와의 전쟁의 결과로서 안전에 대한 가치가 역시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인권의 퇴보를 가져왔다. 유럽에서는 안전과 인권(그리고 자유)과의 균형이 중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C. 인권의 역사와 철학

HISTORY AND PHILOSOPHY OF HUMAN RIGHTS 😐!?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생각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고, 모든 문화와 종교 안에서 다양하게 존재했다. 예컨대 이슬람에서의 외국인보호나 아프리카의 '우분투(ubuntu)'라는 철학에서도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대우하는 만큼 스스로 대우받는다는 황금률은 모든 주요 종교에 존재하는 법칙이다. 가난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사회정의의 기본적인 개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인권에 대한 발상은 이성과 계몽철학에 기반한 근대, 즉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민주주의에 관한 철학적 사유의 결과이다. 비록 근대 인권개념이 주로 유럽에서 발원하였으나, 인권에 필수적인 사회정의와 자유를 명시하는 것은 모든 문화의 공통적 특징 중 하나였다. 유엔은 엘리노어 루즈벨트, 르네 카상, 요셉 말릭의 주도로 80여명의 전문가에 의해 선진국과 후진국을 망라해서 생각과 언어를 다듬어 세계인권선언을 개발했다. 인권은 보편적이면서, 세계 공통의 개념이 되어 동구와 남아프리카 등지에 사회권, 자결권, 발전권, 인종차별과 분리정책으로부터의 자유 등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역사적으로, **시민**은 사회권과 기본적 자유를 위한 그들의 투쟁의 결과로서 헌법적 보호를 받는 첫 번째 수혜자가 되었다. **외국인**은 쌍무협정에 기반해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권리담지자가 될 수 있었다. 그들은 그들 자국의 보호를 필요로 했다. 반면 인권의 개념은 어떤 나라든 국내의 모든 인간을 보호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비국민보호법의 개발을 위해 **인도주의법**은 매우 중요했다. 그것은 무장 충돌에서 시민뿐만 아니라 적군치료를 위한 기본규칙을 제도화하는 것이 목표였다. ☞ *무장충돌에서의 인권*

일찍이 실제 국제인권의 전임자들은 1648년 베스트팔렌 협정에 포함된 **종교의 자유** 협정에서와, **노예제도를 금지**한 1815년 노예무역에 관한 비엔나회의선언, 1833년 미국노예반대사회창립, 1926년 노예제도반대에 관한 국제협약 등에서 찾을 수 있다. ☞ *종교의 자유, 차별 금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과했다.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한다."

미국 독립 선언서, 1776년

"첫째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로 전 세계 공통입니다.
둘째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방법으로 신을 예배할 자유이며 전 세계 공통입니다.
셋째는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로, 이것을 세상의 언어로 옮긴다면 모든 나라가
그 국민을 위하여 건강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줄 수 있는
경제적인 약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도 전 세계 공통입니다.
넷째는 공포로부터의 자유로 ... "

Franklin D. Roosevelt, 32대 미국 대통령, 1941년.

소수자권리의 보호 역시 긴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1919년 베르사유 평화협정과 같은 해 창설된 국제연맹에서 큰 쟁점이었다. 이 쟁점은 소련과 유고슬라비아의 해체와 함께 다시 전면화되었다.
☞ *계속 진행 중인 세계 인권 투쟁, 소수자 권리의 추가*

미국의 독립선언과 1776년 권리에 관한 버지니아 법안의 선포에 영향을 받아 1789년 프랑스혁명에서는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가 선언되었다. 이 선언은 자유, 평등, 연대의 가치를 담고 있으며 이는 2000년 유럽연합의 기본권헌장으로 채택되었다. 이를 1791년 '올림페 고지(Olimpe de Gouge)'는 시민과 여성에 관한 권리선언이라고 함으로써 처음으로 여성 평등권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 *여성의 인권*

인간 존엄성에 대한 아프리카적인 개념:

"나는 하나의 인간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눈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 "

아프리카 속담, 말리

모든 인간을 위한 **보편적 인권의** 개념은 2차 세계대전종전 직후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동의가 있은 후에야 받아들여졌다. 48개 국가가 이 선언에 동의하고 8개의 사회주의 국가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기권하였다. 이 선언은 유엔헌장의 관련규정을 해석하는데 유엔체제의 필수구성요소가 되었다. 그 이후 유엔가입국은 193개국에 이르렀는데, 지금까지 이 선언을 거부하는 나라는 없었으며 오늘날 국제관습법의 큰 기둥이 되었다.

국제인권법은 유엔의 틀 안에서 합의한 보편적 윤리요소로 구성된 공유가치에 기초하였다. 장 쟈크 루소, 볼테르,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은 철학자들은 인권의 실재를 주장하였다. 일반 '계약이론'은 지배 권력에 대한 충성과 교환된 어떤 권리들을 승인했다. 반면 임마누엘 칸트는 세계주의적 접근으로 세계시민이라는 특정한 주장을 하였다. Klaus Kung의 지침에 따라 '세계 윤리'라는 국제 프로젝트

는 모든 주요 종교가 크게 기본적인 인권에 해당하는 공통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 *종교의 자유*

책임윤리(Hans Jonas)와 인권을 지탱하는 보편윤리(George Ulrich)는 국제화의 도전과 만나기 위해 제안되었다.

특정권리의 우선순위와 보편성 대 문화상대주의에 관한 논쟁은 테헤란과 비엔나 인권회의에서 각각 해결되었다. 1968년 테헤란 회의에서는 모든 인권은 상호불가분적이며 상호의존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1993년 비엔나회의에서는 *"국가와 지역의 특수성과 서로 다른 역사, 문화, 종교적 배경의 중요성을 명심해야 하고, 그들의 정치, 경제와 문화체제와 무관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은 국가의 의무"* 라는 합의에 도달하였다. (자료원: 1993년 비엔나 선언과 행동 프로그램, 5 조항)

D. 인권의 개념과 본질

CONCEPT AND NATURE OF HUMAN RIGHTS 😐!?

오늘날 인권의 개념은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되는데,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의 선언과 1998년 세계인권선언 50주년 UN결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940년대 후반 인권 개념 구성에 참여했었으나, 인권의 보편성에 회의적이었던 몇몇 국가들이 있었으며, 중국, 레바논, 칠레 등 지리적으로 퍼져있었다. 어쨌든, 많은 나라들이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이 선언에 기초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ICCPR) 뿐만 아니라 사회권 규약(ICESCR)에도 서명했다. 차별철폐규약 (CEDAW)은 비록 많은 나라가 대기 중이지만 2012년 1월 기준으로 187개국이 서명했으며, 아동권리선언은 193개국이 서명했다.

인권 개념의 시작점은 UN 헌장, 1966년의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 협약에서 소중히 다루는 '*인간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본질적 존엄성*'이라는 개념이다. 이는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해방되고 동등하고 양도되지 않는 권리를 영위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인간이라는 이상을 깨닫게 해준다. 따라서 인권은 보편적이고 양도되지 않으며, 이는 어디에서나 적용되고 동의가 있더라고 박탈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 전 UN 사무총장은 "인권은 태생적 권리이다"라고 선언했다.

또한 인권 불가분적이고 상호 의존적이다. 인권을 여러 **차원이나 분류**로 구분지어 볼 수 있는데: 표현의 자유와 같은 **시민적·정치적 권리**, 사회적 안전과 같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약칭 사회권)이

"인권은 자유, 평화, 발전과 정의의 기초이다. 이는 세계에 대한 UN의 업무 중 핵심이다."

반기문, UN사무총장. 2010.

있으며, 사회권은 상황상 경제적 의무사항이 된다는 사실에 따라, "점진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cf. 사회권규약(ICESCR) 제2조 제1항).

과거에는, 사회주의 국가와 같이 일부 국가나 일부 국가 그룹단위에서는 시민정치적 권리의 반대로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선호했다. 반면 미국과 EC 국가들은 시민정치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선호가 있었다. 더욱이 1993년의 비엔나 세계회의와 1968년 테헤란에서 열린 세계회의에서 이러한 비생산적인 논쟁이 정리되었는데, 이러한 인권의 분류나 차원이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인식 덕분이었다. 테헤란에서는 인권이 불가분하고 상호의존적임을 선언하였으며, 이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가 시민적·정치적 권리 없이는 충분히 영위하기 어렵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는, 인권에 대한 추가적인 항목이 인식되기에 이르렀는데, 평화와 안전에 대한 권리, 발전에 대한 권리, 건강과 환경에 대한 권리 등이 그 예다. 이러한 권리들은 다른 모든 권리를 충분히 누리기위해서 필요한 조건이라는 프레임을 제공해 준다. 더욱이 인권의 한 항목이 다른 권리를 위한 선결조건이 된다는 조건부 개념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러한 세 번째 항목은 **연대권**이라고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국제적 협력과 공동체 구성이라는 목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인권은 특정 이해 집단으로부터 선전되고 있는 "동물권"과 "지구권"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인권은 **모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특정 국가의 시민인지 아닌지에 따라 **시민권**이 배타적 기본권으로 주어진다. 이러한 배타적 권리에는 특정국가에 대한 투표권이나 피선거권이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이 있다.

또한 인권은 **소수자 권리**와 구분될 필요가 있는데, 이 권리는 특정 민족, 종교, 언어를 가진 그룹의 구성원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그들 자신이나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이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현하거나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말한다. (시민정치권 권리 규약 (ICCPR) 27조). 보다 구체적인 규약은 1993년 UN 소수자 권리 선언과 유럽인권기구에 포함되어 있다. ☞ *소수자 권리*

선주민의 인권에 대해서, 1982년 이후 선주민에 대한 UN 워킹그룹에서 그들의 인권을 향상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토지에 대한 그들의 관계를 다루었다. 2007년에, 선주민 인권에 관한 UN 선언이 UN총회에서 채택 되었다(A/RES/61/295). 이 문건이 제출되었을 때, 143개국이 투표에 통해 승인하였으며, 단 4개의 나라만이 부표를 던졌

다. 여기에는 미국, 태나다, 뉴질랜드와 호주인데, 어쨌든 4개 나라 모두 지금은 선언을 승인하였다.

국제노동기구(ILO)은 이미 1989년에 "독립국가들에서의 선주민과 부족민"에 관해 협정 169를 통해 이러한 권리를 밝혔다. 2001년에는 선주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UN 특별조사관이 추천되었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의 추천에 따라, 2000년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상설 선주민 관련 포럼"*이 생겼으며, 2002년에 첫 모임을 가졌다. 또한 이 포럼에 인간과 민중의 권리를 위한 아프리카 위원회가 선주민을 위한 실무진을 만들었다.

UNESCO의 프레임에서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회의와 2003년의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을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보호를 통한 인간과 소수자의 권리를 보완하고 있다.

또한 인권은 국가나 지역, 혹은 국제적 차원에서의 **사회 변화를 위한 도구로서 민중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인권이라는 개념은 민주주의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 *민주주의 권리*

EU와 EC에서의 신규 회원의 가입조건에서도 같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건은 시민 자신들이 인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이해하는가와 인권이 이런 변화의 효과가 있는 효과적인 도구로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음에 달려있다.

여성운동가들은 젠더감수성이 부족하고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권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비판하곤 한다. 1979년의 세계여성회의와 그 산물로서의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은 그중에서도 **여성인권**에 젠더감수성 접근이라는 기여를 하였다. 여성인권은 또한 1993년 UN 여성폭력철폐선언에 반영되었으며 1995년 베렘도파라(Belém do Pará)에서 열린 중앙아케리카 회의와 2003년 인간과 민중의 권리에 대한 아프리카 헌장에서의 여성의 권리에 대한 추가 의정서에서 나타나고 있다. 인권기구들이 여성을 법적으로 동등하고 온전한 인간으로서 인식함으로써 새롭게 제기되는 사회 정치적 개념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여성의 인권*

"폭력은 오직 우리가 선입견과 맞설 때에야 끝날 것이다.
자극과 차별은 오직 우리가 터놓고 이야기하길 동의할 때에야 끝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모두가 다음의 우리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한다;
자신의 가정, 직장, 학교, 공동체에서 터놓고 이야기하기."

반기문, UN사무총장. 2010.

또한 어떤 국가들은 자신의 **역사, 종교,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국가와 같은 식으로 특정 인권을 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비엔나 세계회의에서의 선언과 행동 프로그램은 역사, 종교나 문화적 요소에 기반하여, 인권의 실현에서 다른 접근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동시에 모든 나라들이 모든 인권의 실현에 책무가 있다는 것을 다시 재확인했다(참고 C.). 따라서 문화 종교적 차이가 있지만, 이를 국제 인권 책무에 대한 면책으로 사용될 수는 없다. 그러나 문화적 배경은 고려되어야만 한다. UN에서 이루어진 **문명의 대화**는, 인권 책무를 벗어날 면책을 주지 않으면서 다양한 문명의 긍정적 가치를 인식하려는 바로 그 목적을 제시한다. 가장 어려운 이슈중 하나는 특정 문화권에 있는 여성의 지위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문화는 주요한 인권침해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E. 세계 인권 표준

HUMAN RIGHTS STANDARDS AT THE UNIVERSAL LEVEL

😐!?

세계 인권 표준의 구성에 대한 근래의 역사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권침해라고 간주되는 2차 세계대전의 여파가 남아있던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과 함께 시작하였다. 홀로코스트를 통해 유대인에 대해 자행되었던 것과 같은 인종청소범죄에 대한 방지와 처벌은 세계인권선언 하루 전 채택된 *"인종청소범죄에 대한 방지와 처벌에 관한 조약"*의 주제였다.

세계인권선언에 담겨 있는 약속들을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변환하기 위해서, 유엔 인권위원회는 두 가지 **규약**을 만들었는데, 그 하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것(ICCPR)이고 하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ICESCR)에 대한 것이다. 냉전으로 인해 이 규약들은 1966년에 이르러서야 채택되었고 1976년이 되어서야 시행되었다. 2012년 1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은 각각 167개 회원국과 160개 회원국이 가입한 규약이 되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 처음에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유엔 안의 다수의 개발도상국과 사회주의 국가들의 선호의 의미(조짐)로서 채택되었다.

세계인권선언과 두 가지 규약은 공통적으로 국제 권리장전으로 불리는데, 그것은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조약들에 의해 보강된다.

1960년대 위의 두 가지 규약이 인종차별에 대항하고 아파르트헤이트 범죄를 억제하면서 그 결과로,

인종차별과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한 투쟁이 전면으로 부상하였다. 더 나아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의 제거, 고문 및 다른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모멸적인 대우와 징벌에 대한 대항, 아동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 강제 실종된 사람들의 보호에 대한 규약들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규약들은 더 나아가 약속의 이행을 명확화하거나 특정한 목표 그룹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주기도 한다. 1979년의 여성 규약, 인권 조약들의 일반적인 문제를 뜻하는 *"problem of reservations"* 의 경우에는, 많은 국가들이 여성 인권의 일부를 이러한 방식으로 제한했었기 때문에 특별한 중요성들을 얻게 되었다.

차별금지원칙에 따르면, 국가들은 그들의 영토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들에게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다른 의견, 출신국가 및 사회, 빈곤, 출산 및 다른 기준들에 관한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조) ☞ *차별철폐*

또한 그러나 **예외**의 가능성과 **환수조항**의 사용이 있을 수 있다.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공적인 위기상황**에서는, 비상사태가 공식적으로 선포되고 조치들이 상황에 의해 엄격하게 요구되는 제한 속에서만 취해지는 한에서 국가가 그 의무를 무시할 수 있다. 이 조치들은 반드시 무차별적인 기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조제1항) 유엔 총회를 통해 다른 회원국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생명권이나 고문과 노예제도의 금지, 범죄에 관한 소급적용 금지 및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의 권리와 같은 몇몇 조항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도 용인되지 않는다.(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조제2항) 이러한 권리들은 그러므로 **훼손 불가능한** 권리라고 한다. 비상 규정은 테러리즘과의 전쟁으로 인해 더 큰 타당성을 얻게 되었다. 유사한 조항들이 유럽인권협약(제15조)에 있다. 유엔 사회적, 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일반논평(29번, 2001년) *"비상사태"*(제4조)에서 국가책임을 명문화하였고, 미주인권위원회와 유럽 의회 장관회의에서는 *"테러와 인권"*의 보고서와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권리들에는, 만약 그것이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공보건 및 도덕 또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에 필요하다면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의미인 *"환수조항"*을 포함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이동의 자유, 자국을 포함한 국가 이전의 자유, 종교나 신앙 고백을 포함한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과 정보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더 특별히 존재한다. 이러한 제한들은 법률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법은 일반적으로 의회를 반드시 통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각의 법률 문서들을 해석하는 법정과 같은 기관들은 이러한 조항들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의무가 있다. 점진적으로, 인권에 관한 유럽 재판소나 미주위원회에 제기된 몇몇 사건과 비상지휘권이나 환수조항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

주요 유엔 인권규약들에 대한 개관

- 제노사이드 협약 (1948년, 2012년 1월 현재 142개국)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1966년, 160개국)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1966년, 165개국)
- 제노사이드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1948년, 48개국)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모멸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협약(1984년, 146개국)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대한 국제 협약(1965년, 173개국)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대한 협약(1979, 186개국)
- 이주민의 보호를 위한 협약(1990년, 45개국)
- 아동권리협약(1989년, 193개국)
- 장애인권리협약(2006, 106개국)
- 강제실종 방지 협약(2006년, 30개국)

F. 세계 인권기구들의 이행 체계

IMPLEMENTATION OF UNIVERSAL HUMAN RIGHTS INSTRUMENTS 😐!?

국가들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많은 사례에서, 이행은 국가와 그 당국들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권리들을 존중해야 한다. 다시 말해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나 표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되지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이행에서는 국가가 이행을 위한 전향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교육이나 의료와 같은 어떤 서비스들을 승인하고 제공하는 것이나 그 최소한의 표준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에게 주어진 역량은 account에 좌우된다. 예를 들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13조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공인한다. 그러나 이는 단지 초등교육이 무상으로 가능해야 한다는 것으로 구현된다. 중등 및 고등교육은 일반적으로 가능하고 모두에게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무상교육은 오직 꾸준히 제시되는 것이 기대될 뿐이다.

역량에 따른 점진적 완성이라는 개념은 몇몇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적용된다.

보호의 의무는 국가에게 그 영토에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 폭력과 그 밖의 인권침해들을 방지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따르면, 인권은 또한 수평적인 관점을 가지며, 세계화 시대에 초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문제가 부상하면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또한 개발은 국가인권기구 같은 구조적인 수단이나 **평화유지활동**에서의 인권 관점을 포함하는 등의 방법에 의한 **인권침해의 방지**를 점차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방지의 목표는 또한 인간안보의 우선순위가 인권에 근접하는 것이기도 하다(B. 참조).

인권은 우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위 "좋은 통치방식"안에서의 결핍과 같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결핍에는 부패와 무능한 행정부나 사법부 같은 것들이 있다. 국가가 그 의무들을 이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의 수행에 대한 **국제적인 감시**가 인권에 대한 대부분의 국제규약에서 기구화 되어왔다. 이 감시는 다른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많은 국제규약에는 **보고체계**가 존재한다. 그에 맞춰, 국가들은 정기적으로 인권 보호에 대한 그들의 성과를 보고해야 한다. 보통, 전문가 위원회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권고를 작성한다. 위원회는 또한 조약의 적절한 해석을 위한 일반논평을 내놓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사례와 같은 몇몇 사례에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 위원회가 인권침해 혐의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개인 청원**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선택의정서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이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114개국의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다른 여러 협약들에도 2008년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6개국)나 2006년도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65개국)과 같이 청원이나 종종 조사 체계를 제시하는 비슷한 의정서가 존재한다. 어떤 조약들은 **국가 내 청원**을 위한 조항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유럽이나 미주 인권 관련 협약의 경우에는 국가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인권 법정이라는 **사법절차**가 존재한다. 그 법규(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대한 아프리카 헌장 의정서)가 2004년 1월 성공적으로 발효된 이래, 인간과 인민의 권리의 아프리카 법정 또한 설립되었다. 2008년 7월 1일 그 법정은 아프리카 사법재판소와 합병되었고 지금은 아프리카 사법 인권재판소라고 알려져 있다.

인권 조약 같은 인권 기구들에 포함되어 있는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헌장에 기반한 절차"***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는데 이는 전 세계의 인권침해를 다루고 있는 유엔 헌장에 기반해 개발되었다. 그 중의 하나가 기밀 1503절차로 1970년의 ECOSOC 결의안 1503과 2000년의 2000/3 결의안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제네바의 유엔인권최고대표부로 보내진 청원들을 수락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유엔 위원회의 전문가 그룹에 의해 검토된다. 2006년 이래, 주로 인권의 전체적인 침해에 대한 이 절차는 인권이사회의 책임 아래 있다. 1503 절차 하의 청원들은 현재 인권

이사회에 이르기 전, 두 개의 위원회(소통, 상황)를 거친다.

1947년부터 2006년의 인권위원회와 그 소위원회의 업무기간 동안, **특별절차**들 다시 말해 특별보고관과 인권위원회 대표부의 활동이나 인권문제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에 의한 활동들의 중요성은 갈수록 더 중요해졌다. 수단, 아이티, 미얀마, 콩고 공화국에 대한 특별보고관이나 여성에 대한 고문과 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같은 국가별 보고관과 주제별 보고관이 있다. 그들의 임기는 보통 3년이며 주 업무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대체로, 특별 절차에는 40여 가지가 있는데, 이 절차들은 해당 국가나 활동의 주제와 관련된 분야에 따라서 정보를 수집하고 연간 보고서를 제출한다. 그것들은 유엔의 증가된 활동주의를 반영하고 또한 실행 절차가 예측된 적이 없거나 지속가능성의 효율과 감시가 부족한 사례에서의 일종의 후속조치를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이러한 예들은 1998년 인권 옹호자 선언에서 또는 교육, 식량, 적절한 주거, 의료의 권리와 같은 몇몇 경제적 사회적 권리와 구조적인 조정 정책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독립적인 전문가들" (예를 들어 자기 계발할 권리에 대한), "실무그룹들"(예를 들어 강제적이고 비자발적인 실종에 대한)이 있다.

유엔의 일부로서 2006년에 **인권이사회**가 인권위원회의 모든 권한과 기능과 책임을 맡았고 그 때부터 인권이사회는 유엔 총회에 직접 보고하고 있다. 인권이사회는 더 높은 차원에서 유엔 인권 체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회의의 횟수가 매년 3회로 늘었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세계인권선언과 다른 인권조약들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임무가 인권이사회에 주어졌다.(보편적 정례 검토) 2011년까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보편적 정례검토를 받았다. 이를 통해 많은 권고가 주어졌으며, 이는 큰 혁신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특별한 회기를 통해 인권이사회는 심각한 인권문제에 대해 빠르게 응답할 수 있다. 인권의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는 인권에 관한 자문위원회로 변경되었는데, 이 자문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인권이사회에 의해 채택될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특별절차들은 계속적으로 시험을 거쳤다. 인권이사회와 함께 한 첫 번째 실험은 복합적이었다. 회기의 강도는 증가했지만 개발도상국가들 특히 이슬람 세계의 국가들에게 주도권을 준 이사회에서의 투표 양식은 재우선권의 부여를 이끌었다. 이 국가들은 이사회의 관심을 예를 들면 수단의 제노사이드 같은 일 보다는 점령당한 팔레스타인 영토로 집중시키길 원했다. 또한 쿠바와 벨라루스의 국가별 특별보고관의 임기는 연장되지 않았다. 새로운 방법에 대한 검토가 2010년 11월 이루어졌다.

덧붙여, 유엔 인권최고대표부는 문제적인 인권상황을 가진 나라들에서 **최고대표부의 계획**을 설정하는 것에 점점 더 힘쓰고 있다. 그런 계획들은 아프가니스탄,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캄보디아, 콜롬비아, 과테말라, 아이티, 코소보, 몬테네그로, 시에라리온 등과 같은 나라들에서 세워져왔다. 그들은 예를 들어, 입법개혁과정을 위한 조언을 준비하거나 국제사회의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정보

를 모으고 인권의 기준을 세웠다. 입법개혁과정을 위한 조언을 제공하거나 국제사회의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이 그 예다.

이 같은 특별한 협회들의 활동은 보호적이면서도 증진적인 목적을 가진다. 그들은 더 나은 인권의식을 개발하고 해결방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의 그들의 참여는 인권의 영역에서 공고히 받아들여진다. 정말로, **인권의 증진**은 국제기구나 단체들이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훨씬 더 커다란 일을 의미한다. 인권의 증진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을 의미하고, 그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알려주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그들에게 그들의 인권을 가장 잘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다른 참여자들이 포함된다. 그들은 대학과, 일반교육부문, 비정부기구들(NGO)을 포함한다.

유엔은 GA-Res. 48/134 (1993)에서 **국가별**로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인권의 차원에서 옴부즈퍼슨이나 국가위원회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권고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1993년에는 소위 파리협정서가 유엔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이 협정은 권한과 책임의 기준을 정하고 다원주의와 독립성, 실행방법 등을 보장했다. 국가위원회는 특히 인권의 보호에 효과적인 지역적 제도가 없는 아시아와 아랍의 국가들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들은 보수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지역의 인권위원회와 지역적으로 협업하기도 한다.

G. 인권과 시민사회

HUMAN RIGHTS AND CIVIL SOCIETY 😐!?

주로 **NGO**로 대표되는 시민사회가 인권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일은 중요하게 생각되어 왔다. NGO들은 자유로운 조직에 기반해 있고, ICCPR 22조에 의해 보호받는다. 미국에서는 "세계의 양심"의 일종으로 기능하며 발달해 왔다. 그들은 종종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19조), 혹은 고문이나 잔인하고 차별적인 대우의 방지와 같은, 어떤 구체적인 보호이익을 추구한다. **(고문방지를 위한 협약, APT). 국제 앰네스티**와 같은 NGO들은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긴급항의행동"과 같은 특별한 절차를 사용하기도 한다. 주로 독립 언론의 도움에 의해 달성된 "수치심의 동원"이라는 전략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국제위기그룹(ICG), 휴먼라이츠왓치, 국제헬싱키연합(IHF)**과 같은 NGO들은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에 기반한 높은 수준의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에 영향을 끼친다. 또 다른 효과적인 NGO전략은 국제모니터링 단체에 공식보고서와 병행한 정교한 이면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Avaaz"*(Voice)나 *"Change"*와 같은 어떤 NGO들은 인권과 환경, 혹은

발전을 위한 캠페인에 특화되어 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 그들은 매우 효과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다.

"인권의 수호자는 우리들 각자가 얻을 수 있는 타이틀이다. 그것은 전문적인 자격이 필요한 역할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 이웃인 인간에 대한 존중이며, 우리 모두가 인권의 넓은 범주 안에 들어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이며, 이상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기 위한 헌신이다."

Navi Pillay, 유엔 최고인권집행위원

1998년 발표된 **인권수호자 선언**이라는 정기총회 결의안에 의하면, 인권을 위해 일하는 개인과 NGO들은 행동에 필요한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고, 어떤 종류의 박해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 몇몇 주에서는 국제 앰네스티나 헬싱키위원회와 같은 조직들이 불평세력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그들의 활동에 대한 박해가 있었다. 심지어 인권활동가들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들은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이 일어난다. 이 선언은 단지 경찰과 같은 정부의 대표자들에 대항해 활동가들을 보호할 의무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고 법을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죽음의 함대와 같은 폭력적인 그룹에게서도 지켜야 할 의무를 포함한다. 유엔사무총장은 각각의 유엔선언의 구현과 유럽의회의 최고인권위원을 지지하기 위해 인권수호자들의 특별한 대표를 임명해왔고, 또한 유럽연합은 그들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왔다.

NGO들은 또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훈련프로그램을 조직하며, 훈련자료들을 생산함으로써, 인권교육과 학습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종종 유엔이나 유네스코 유럽의회 또는 국제정부기구와의 협업을 하기도 한다.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유엔인권교육계획을 진행한 *인권교육을 위한 대중의 계획*(PDHRE)이 지역인권학회를 창립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으로 향했다. 차별행위와 인종주의에 대항한 훈련의 분야에서는 *반차별발언리그*(ADL)는 전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NGO 인권교육협회*는 인터넷을 통한 훈련코스를 마련하고, 전자정보자료를 제공한다. (www.hre a.org). 인권과 집회를 위한 오스트리아 NGO *유럽 훈련 연구센터*(ETC)는 인권교육의 매뉴얼을 기초로 "트레인 더 트레이너스 과정"을 동남부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에 조직했다.

NGO 네트워크들은 여성평등을 위한 투쟁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얻었다. 유니펨, 클레템, 혹은 와이드와 같은 단체 모두는 완전한 평등과 반차별로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권

교육과 학습 분야에 그들만의 아젠다를 가지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인권과 개인의 권리를 위한 아프리카 위원회의 회의 전에 NGO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며 훈련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참여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을 빼앗긴 목소리들을 증폭시키는 것을 돕는다. 공정무역과 관련한, 또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에 관련된, 환경규제위반과 같은 구체적인 이슈들에서, 국제시민사회는 인간사회에 대한 위협에 세계의 관심을 끌어낸다.

NGO들은 그들의 국가 안에서 권리에 기초한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정치적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영역을 구체화하고 지원할 수 있다. 또한 학술적인 협의를 보증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필요에 대응할 수 있다.
(자료원 : 인간안보 위원회. 2003. *Human Security Now.*)

H. 지역별 인권 증진 및 보호 시스템

REGIONAL SYSTEMS OF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

국제인권보장기구 외에도 몇몇 지역별 인권보장기구가 있는데, 이들 기구들은 인권의 보장과 그 이행에 있어 한층 높은 수준을 보이기도 한다.

이들 기구는 인권보장 요구들을 더 효과적으로(적절하게) 다루어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법원의 경우 침해의 구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들이 내려질 수 있고, 인권위원회의 권고들 역시 일반적으로 당사국들에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진다. 이것은 인권규정의 의미를 해석하고 정확히 하기 위한 '리딩 케이스(역자 주 : 주도적인 역할)'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법들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변화시키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지역별 시스템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문화적 종교적 문제에 대해 더 세심한 경향이 있다.

Ⅰ. 유럽

유럽의 인권시스템은 유럽평의회(2012: 구성원 47), 유럽 안보협력기구(2012: 구성원 56), 유럽 연합(2012: 구성원 27, 2013년 계획된 크로아티아의 가입이후에는 28)이라는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 인권시스템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발생한 대대적인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발전되어 온, 가장 정교한 지역시스템이다. 법률을 규율하는 원칙인 인권과 다원적 민주주의는 유럽 법질서에 있어 주춧돌이다. 두 개의 주요 기구인 유럽평의회와 유럽연합은 모든 회원국들을 구속한다.

유럽의 인권제도들

-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호를 위한 협약(1950)과 14개의 추가 의정서
- 유럽 사회권 헌장(1961) : 1991년과 1996년에 수정, 1988년과 1995년에 추가의정서
- 고문과 그 밖의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 방지에 관한 협약(1987)
- 헬싱키 최종의정서(1975)와 새로운 유럽을 위한 파리 헌장에 대한 CSCE/ OSCE 후속조치(1990)
- 지역과 소수언어를 위한 유럽 헌장
- 소수민족 보호를 위한 기본 협약(1994)
- 기본적 권리에 대한 유럽 유니온 헌장(2000)

1. 유럽평의회의 인권 시스템

a. 개관 – 유럽 인권기구와 사무처

유럽인권시스템은 1950년의 **유럽인권협약**과 이에 대한 14개의 추가의정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유럽의 인권시스템이 미국과 구별되는 지점인 사형제 폐지에 대한 6번과 13번 의정서, 그리고 유럽인권위원회와 유럽인권재판소를 유럽인권재판소라는 하나의 상설기구로 통합시켜 그 절차를 향상시킨 14번 의정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유럽인권협약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교육권까지 포함하고 있다.

1961년 **유럽 사회권 헌장**은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추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유럽인권협약만큼의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따라서 그 출발에서부터 이행체제가 약하고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을 겪었다. 그럼에도 1980년대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자 1988년과 1995년 두 차례에 걸쳐 수정된 유럽 사회권 헌장에 대한 주목도 커지게 되었고, 이제 이

에 따른 근거한 집단소송의 가능성도 있다.

유럽 고문방지위원회를 창설시킨 1987년 **'고문 및 비인도적 굴욕적 처우 및 처벌 금지에 대한 유럽 협약'**이 만들어지면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또는 특별히 모든 회원국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교정시설 및 정신병원 등 구금시설을 방문하도록 한다. 따라서 자연히 이 시스템은 유럽인권협약이나 유럽인권재판소와 달리 사후구제가 아닌 사전예방적 효과를 가진다. 유엔 총회는 200 2년 12월 유엔고문방지소위원회에서 추가의정서를 채택하였는데, 이로 인해 위와 같은 유럽고문방지위원회의 시스템이 전세계적 체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정서는 모든 회원국에 있어서의 "국가예방시스템"의 확립과 고문방지소위의 예방적 차원의 방문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고문 방지*

소수민족보호를 위한 협약(1995)은 유럽에서 증대되고 있는 소수자권리문제에 대한 대책을 위하여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유럽평의회 정상회의 이후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소련과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의 해체, 그리고 더 나아가 1990년대 유럽에서의 민족자결주의의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이 협약에 따르면 국가는 이러한 소수민족 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그들이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이행시스템은 보고제도와 국가방문과 그에 대한 보고서 검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전문가 자문위원회에 한정되어 있다.

인종주의 및 불관용 철폐 유럽위원회(EC RI)는 인종주의, 제노포비아, 반유대주의와 불관용을 퇴치하기 위하여 열린 2003년 비엔나 정상회담에서 설립되었다. 위 목적을 위하여 위원회는 유럽평의회 회원국가들과 함께 이 지역의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준비한다. 또한 일반적인 정책 권고를 할 뿐만 아니라, 인종주의와 불관용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중시한다.

1999년 유럽평의회는 이민자들의 상황 등과 같은 유럽 인권에서의 공백부분에 주목하고 국가방문 등을 수행하는 "**인권대표**"를 조직하였다. 유럽평의회가 전반적인 시스템을 관장하는 주요 운영조직인 반면, 의원총회는 인권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다룬다.

유럽인권기구 및 조직

유럽평의회(CoE) :

- 유럽인권재판소(단독 법원 1998)
- 유럽 사회권위원회(1999년 변경)
- 유럽 고문방지위원회(CPT, 1989)
- 소수민족보호 기본협약 자문위원회(1998)
- 인종차별 및 불관용 철폐위원회(ECRI, 1993)

• 유럽 인권대표(1999)
• 유럽평의회 각료회의
• 유럽평의회 의원총회

유럽 안전협력기구(OSCE) :
• 민주제도와 인권을 위한 사무소(ODIHR, 1990)
• 소수민족 고등판무관(1992)
• 미디어 표현의 자유 대표(1997)

유럽연합(EU) :
• EU 사법재판소
• 정의와 기본적 권리에 대한 유럽대표
• 기본적 권리 EU 사무소(2007) –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에 대한 유럽의 모니터닝 센터(EUMC, 1998)에 근거해 설립

b. 유럽인권재판소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ECtHR)는 주요 유럽인권보호 기구로서 그 판결은 현재 유럽평의회 모든 회원국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각 사안에는 그 나라의 법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국적재판관"[8]이 참여한다.

8) 국적재판관[national judge , juge national , nationaler Richter]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중 소송 당사국의 국적을 갖는 재판관을 말한다. 국적재판관은 해당사건에 대해서 출석할 권리를 갖는다(국제사법재판소 규정 31조 1항). 즉, 국내재판과 달리 이러한 재판관은 해당사건에 대해 회피는커녕 오히려 출석할 권리가 인정되어 있다. 재판관의 수는 15명이기 때문에 분쟁 당사국이 국적재판관을 갖는 경우는 오히려 적다. 국적재판관을 갖지 않는 당사국은 그 사건에 한하여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규정 31조 2항, 3항). 이것이 특임재판관, 즉 특별선임재판관으로 보통, 특별재판관([영어] judge ad-hoc, [프랑스어] juge ad-hoc)이라고 한다. 특임재판관도 상근의 재판관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평등한 조건으로 재판에 관여하고 당사국에서의 지시를 받지 않고 완전히 독립적인 입장에 서게 된다. 당사국의 국적을 갖는 자가 지명되는 경우가 많지만 외국인이 지명되는 경우도 있다. 기능적으로는 임시의 국적재판관이라고 할 수도 있다.
국내재판의 상식에서 말하면 특이한 이 제도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인정되어 있는 것은 우선은 역사적 경위에 의한다. 국제사회에서 보다 역사가 오래된 것은 중재재판이지만 거기에서의 재판관은 당사국이 선임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한 환경에 전혀 당사국과는 관계없는 재판관만으로 구성된 순수한 사법재판의 상식을 갑자기 전면적으로 도입하면 저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의 이 제도는 그러한 오랜시대의 잔재라든가 재판관석에 당사국의 변호사를 보내주는 것과 같다는 등의 비판이 일었다. 확실히 국적재판관과 특임재판관이 자국 또는 지명국에 불리한 판단에 맡기는 예는 상당히 적다. 국적재판관은 앵글로-이라니언 석유회사사건(1952년)에서 영국패소의 판결을 지지한 영국의 맥네어(Lord McNair), 망키에·에크르오사건(1952년)에서 프랑스 패소의 전원일치판결에 참가한 프랑스의 바드방의 예. 특임재판관은 대륙붕(리

해당 제소가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네 가지의 주요 전제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a. 유럽인권협약과 그 의정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인권에 대한 침해일 것

b. 제소자가 그 침해를 받은 당사자일 것

c. 유효한 국내적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을 것

d. 제소가 위의 국내절차를 모두 거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제소가 받아들여진 후에는 7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이 사안을 결정한다. 그 사안이 항소를 통하여 17인의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서 다루어야 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중요성이 있다거나 새로운 판례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 한 그 재판부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된다. 판결은 구속력이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판결의 이행을 집행하는 것은 각료회의의 임무이다.

유럽인권재판의 가장 큰 문제는 엄청난 양의 제소인데, 1998년 1,000건이었던 것이 2011년에는 56,000건까지 증가하여 현재 담당사건 양의 과다로 인한 과부하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럽인권협약 14번 의정서가 채택되긴 했지만, 또 다른 추가조치가 필요하다.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에의 예정된 가입으로 유럽에서의 인권보호체제가 한층 더 공고해지겠으나, 이러한 담당건수의 과다의 문제는 한층 더 심각해 질 것이다.

2.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인권 시스템

1994년 기존의 유럽안보협력회의를 대체해 만들어진 OSCE는 매우 특별한 기구이다. OSCE는 어떠한 법적 헌장이나 국제적 법인격을 가지지 않으며, 그 선언이나 권고 또한 오로지 정치적 성격을 가질 뿐이며 당사국에게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럼에도 자주 매우 구체적인 의무 목록들이 다양한 후속회의나 전문가 미팅에서 채택되어 회원국의 대표단 평의회에서 이를 모니터링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기적인 후속 회의는 매우 훌륭한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냉전기간

비아 대 몰타(Malta))(1985년)에서 일반적으로는 몰타에 불리한 판결에 동조한 몰타 지명의 발티코스, 대륙붕(튀니지 대 리비아) 재심청구사건(1985년)에서 튀니지의 청국기각의 판결에 억지로 동조한 튀니지 지명의 바스티드의 예가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당사국의 법제 등의 지식과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재판관을 추대할 필요가 있다는 다문화 혼교(混交)적 국제재판에 대한 특유의 요청과 이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합의제소를 원칙으로 하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의뢰를 주저하는 국가가 증가할 것이라는 정책적 고려도 당연히 무시할 수 없다.[네이버 지식백과] 국적재판관 [national judge, juge national, nationaler Richter] (21세기 정치학대사전, 2010.1.5, 한국사전연구사)

동안 동서간의 협력을 구축하고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56개국의 보다 넓은 유럽의 협력 기반을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인간 관점”이라는 타이틀 아래 OSCE는 특히 인권과 소수자 권리 분야에서 수많은 활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것은 보스니아 체르체고비나 또는 코소보의 사례에서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임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OSCE는 인권전담부를 두고 있으며, 각국의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할 뿐만 아니라 특정 사안의 인권을 지원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국으로부터 인권담당관을 채용하였다. OSCE는 보스니아 체르체고비나 또는 코소보의 옴부즈만과 같이 그 임무가 남아있는 국가의 국가인권기구를 지원한다.

헤이그와 비엔나에 각각의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소수민족 보호 고등 판무관**과 **미디어의 자유 대표**라는 특별한 시스템이 발전되어 왔다(☞ 소수민족 보호, 표현의 자유, 미디어의 자유). 고등판무관은 사전적으로 가능한 가장 빠른 단계에서 민족적 긴장감을 조정함으로써 갈등을 예방하는 기구이다. OSCE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의 다원적 민주주의가 발전하도록 민주적 선거제도를 모니터링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바르샤바에 위치한 **민주제도와 인권을 위한 사무소(ODIHR)**를 통하여 민주화 과정과 인권의 증진을 지원한다. OSCE는 유럽에서의 분쟁 해결뿐만 아니라 분쟁 후 복구 작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인권교육의 증진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자체 프로젝트와 “상호 존중 및 이해”라는 일반적인 개념 하에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적 국제적 조직 등 다른 조직과의 연계를 통하여 진행한다.

3. 유럽연합의 인권정책

1957년 창설된 유럽 경제 공동체는 인권과 같은 정치적 이슈를 자체적으로는 다루지 않았다. 1980년대 이후 유럽연합의 정치적 통합으로 인권과 민주주의가 유럽의 일반적 법질서의 핵심개념이 될 수 있었다. 여기에는 “회원국들의 공통적인 헌법적 전통”과 유럽인권협약과 같이 회원국들이 가입한 국제협약으로부터 인권재판권을 끌어내 발전시켜 온 **유럽사법재판소**의 역할이 컸다. 소유권, 단결권, 종교의 자유, 평등원칙과 같은 몇 인권은 관습법의 일반적 원칙으로서 구성되었고, 이는 유럽연합의 법에 있어 특히 중요하다.

1980년대 이후 유럽연합 역시 제3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권정책을 발전시켜왔고, 이는 남동부 유럽에서의 새로운 국가들의 승인에 대한 **코펜하겐 기준**에 반영되었다. 1995년 유럽연합 조약 6조와 7조는 명백히 1950년의 유럽인권협약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발효되는 리스본조약(개정된 EU WHDIR)에 의하면 유럽연합은 유럽협약의 회원이 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있다.

2000년 **유럽연합 기본권리 헌장**을 초안하기 위한 협의회가 출범하였고, 이 헌장은 2000년 니스 정상회의에서 채택되었다. 현재 이 헌장은 유럽에서 가장 최신의 인권문서로 세계인권선언과 같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별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헌장은 리스본 조약이 발효하는 2009년부터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유럽연합은 1995년 이래 코토누 협약[9], 유로메드 협정 또는 남동부 유럽 국가과의 "안정과 지원 협정"과 같은 쌍방 협정에 **인권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다.

유럽연합은 대내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공동외교안보정책의 일부인 대외 관계에서도 그들의 인권정책을 발전시켜 왔다. 유럽 대외관계청에서 발간하는 **인권에 대한 연례보고서**에는 이러한 인권의 중요성이 반영되었다. 대외관계청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한편으로는 사안에 따라 이면적인 "인권 외교"를 펼치기도 한다. 그리고 유럽평의회와 함께 중국, 이란과 같은 국가들과의 "인권적 소통"을 위해 노력한다. 유럽의회는 유럽연합에 있어 인권을 우선적인 아젠다로 이끄는 역할을 해왔으며, 1990년대 초반부터 전세계와 유럽연합에 있어서의 인권에 대한 연례보고를 이슈화했다.

초기에는 인권 및 민주주의 분야 시민단체의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유럽평의회의 EuropeAid에 의하여 운영된 **'유럽 민주주의 인권 계획'**이라는 정치적 전략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고문 및 사형제 폐지를 위한 투쟁과 국제형사재판소 캠페인은 특히 강조된다.

유럽연합의 기본적 권리 사무소(FRA)는 2007년 비엔나에 만들어졌다. 이 사무소는 이전에 유럽연합 내의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8년 비엔나에 만들어졌었던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 모니터링 센터(EUMC)의 작업에 기반해 설립되었다. 그 이후 EUMC는 시민단체의 지원을 받아 유럽에서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에 맞선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다. EUMC를 계승한 FRA 역시 유럽연합 기본권리 헌장의 모든 권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데, 이는 전반적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선택된 문제적 지역에 집중해 행해진다. 이를 위해 다년간의 계획에 근거해 주제별 보고서와 연구가 FRANET이라 불리는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가별 문제에 대한 research network(연구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 치밀하게 만들어진다. 과학위원회와 시민사회 영역으로부터의 조언도 제공된다.

유럽연합의 운영에 대한 조약 제19조는 유럽연합의 인종, 민족, 종교나 신념, 나이, 장애나 성적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 문제**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시킨다. 2000년 채택한 2000/43/EC 지침은 인종, 민족적 차이에 의한 특히 고용, 교육, 사회적 보호, 주거를 포함한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와 상품 등의 공급과 이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의 평등처우 원칙의 이행에 대한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의 사적, 공적 영역 모두에 관한 지침으로 이후의 다른 지침들에 의하여 완성되어 왔다.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은 **양성평등**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유럽연합의 운영에 대한 조약

9) EU와 78개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 및 원조에 관한 협약

157조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양성에 대한 동등한 임금”의 원칙을 준수하고 채용에 있어서의 평등한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규정이나 개정된 2002/73/EC 평등처우 지침과 같은 지침으로 발전되어 왔다.

☞ *무차별, 여성의 인권*

II. 미주

미대륙의 인권시스템은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미주 선언’**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는 1948년 미주기구[10] 헌장과 함께 채택되었다. **미주인권위원회**는 1959년 미주기구에 의하여 창설되었고, 7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주요 조직이다.

1969년 채택된 **미주인권협정**은 1978년 발효되었고, 이후 두 개의 추가의정서에 의해 완성되었는데 하나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것이며 또 하나는 사형제의 폐지에 관한 것이다. 이 위원회는 그 본부가 워싱톤에 있기는 하지만 미국은 이 협정의 회원국이 아니다. 이 협정은 **미주인권재판소**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1979년 미주인권기구가 있는 코스타리카에 그 본부를 가지고 설립되었다.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몇 법적 제도가 있기는 하나, 1995년 발효된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처벌, 예방에 미주 협정’(Belém do Pará 협정)**은 특별한 접근으로 취급된다. 이는 이미 OAS 35개의 회원국 중 32개국에 의하여 비준되었다. 이 협정에 따르면 당사국들은 1928년 설립된 **미주 여성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1994년부터 **여성의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이 생겼다. ☞ *여성의 인권*

개인들이나 단체, 시민단체는 미주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인권위원회도 채택할 인권 기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수 있다. 미주인권재판소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넘겨받은 사안만을 다룰 수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해 미주인권재판소에서는 많은 사안을 다루지 않았었지만 현재는 협정의 해석 등과 관련한 **자문의견**을 제출하는 등의 역할까지 하게 되었다. 인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인권재판소도 7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비상설기구이다.

위원회는 **현지조사** 역시 수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심 사안에 대해 **특별보고서**를 통해 이슈화를 할 수도 있다.

---

10) 미주기구. 서반구에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미주제국 간의 상호 이해촉진을 목적으로 한 지역협정. 1948년 조인된 미주기구현장에 기초해 1951년 12월에 발족했다. 회원국은 북아메리카와 라틴아메리카의 31개국.1962년에 쿠바가 활동정지처분을 받았으나 1975년 해제되었다. 본부는 워싱턴에 있고 최고기관은 매년 개최되는 총회, 그밖에 외상회의, 상설이사회, 미주경제사회이사회 등의 전문회의가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매일경제, 매경닷컴)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인권위원회와 인권재판소에 사안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몇 인권단체가 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 이주노동자의 권리, 여성의 권리, 아동의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과 같은 몇몇의 특별절차 또한 있다.

미주인권시스템

-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미주 선언(1948)
- 미주인권위원회(1959)
- 미주인권협정(1969, 1978년 발효, 24개국)
-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추가의정서(1988, 16개국)
- 사형제 폐지에 대한 추가의정서(1990, 12개국)
- 미주인권재판소(1979, 1984년 발효)
- 미주여성위원회(1928)
-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처벌, 예방에 미주 협정(1994, 32개국)
- 장애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미주 협정(1999, 19개국)

III. 아프리카

1981년, 아프리카 연합조직(OAU)이 19 86년 발효되는 **아프리카인권헌장**을 채택함에 따라 아프리카 인권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아프리카 인권위원회**는 반줄 감비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2001년 OAU를 계승하고 있는 아프리카 연합 (AU)의 54 개 회원국은 아프리카 헌장을 비준했다. 이 헌장은 하나의 문서에서 인권의 모든 범주를 포괄하는 세계 인권 선언의 접근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그 전문에서는 아프리카 인권개념(African concept of Human and Peoples' Rights)을 고양시키기 위한 "아프리카 문명의 가치 "를 언급하고 있다. 이 헌장은 개인의 권리 외에 인민(people s)의 권리에 대하여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개인의 책무, 예를 들어 가족과 사회에 대한 책무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 별로 적절하지 않다.

아프리카 인권시스템

- 아프리카인권헌장 (1981, 발효 1986, 53개국)
- 아프리카인권위원회 (1987)
- 아프리카인권재판소 설립 의정서 (1997, 발효 2003, 24개국)
- 여성의 권리를 위한 의정서 (2003, 발효 2005, 28개국)
- 아동의 복지와 권리를 위한 헌장 (1990, 발효 1999, 45개국)
- 아프리카인권재판소(2008)

아프리카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증진에 있어 큰 임무를 가지며, 또한 국가(지금까지 없으나)와 개인 또는 단체는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다. 심리기준은 폭넓으며, 인권침해 피해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인들이나 NGO와의 소통이 허용된다. 그러나 위원회는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결정을 공표할 수 없다. 2003년에 채택되고 발효된 아프리카인권재판소 설립에 대한 의정서 때문이다. 2004년의 국가 및 정부 수반 회의의 결정에 따라 법원은 2008년 아프리카 연합의 사법재판소에 합병되어 **아프리카인권재판소**가 된다. 법원은 Arusha, Tanzania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6년에 첫 회의가 열렸다. 2009년, 법원은 첫 판결을 내렸다. 미주시스템의 경우처럼 원칙적으로 위원회를 통하여 진정이 접수될 수 있다. 예외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해당국이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공표한 경우에 한해 개인이 직접 법원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별 인권 상황에 대한 일상적인 모니터링은 위원회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검토에 기초해 이루어지고 있어 부정기적이고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엔의 관행에 따라, 위원회는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거나 약식 및 임의 처형에 대한 부분, 교도소, 그리고 구금환경, 표현의 자유, 인권옹호자, 난민, 망명자, 이주자 및 국내 실향민, 여성의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을 임명했다. 2003년 모잠비크 마푸토에서의 정상 회담에서 아프리카 연합 (AU)은 아프리카에서 여성의 권리에 관한 헌장 추가의정서를 채택했다. 마푸토 의정서는 2005년에 발효, 2010년 7월 현재 28 개국이 비준했다.

위원회는 **진상 조사 임무 및 홍보 임무**를 수행한다. 특정사건에 대하여, 예를 들면 1995 년에 나이지리아에서 벌어진 오고니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운동(The Mov ement of Survival of the Ogoni Peop le)의 아홉 멤버에 대한 불공정 재판과 그에 따른 처형과 같은 사건에서와 같이 **특별 세션**을 구성한다. 위원회의 중요 동력은 아프리카와 제3국의 NGO로부터 나오며, 이들은 위원회의 모든 공개회의에 참여하도록 허용된다. 그들은 종종 인권침해사례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위원회 및 그 특별보고관의 활동을 지원한다. 정부가 헌장이 **국가사법시스템** 안에서 직접적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 사례에서 나이지리아 NGO가 "헌법적 권리 보호" "Constitutional Rights Project"로 인해 그 인권침해사건을 나이지리아법원으로 가지고 갈 수

있던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유엔의 1989년 아동권리보호협약의 채택에 따라 1990년 **아프리카에서의 아동 권리와 복지에 대한 헌장**이 채택되었다. 이 헌장은 1999년 발효되었으며, 2011년까지 AU의 45개국이 이 헌장을 비준하였다. 아프리카 아동의 권리와 복지 전문위원회는 적어도 1년에 한번 개최된다.

IV. 다른 지역

이슬람 국가들의 경우, 이슬람 인권에 대한 카이로선언"Cairo Declara- tion on Human Rights in Islam"이 언급되어야 하는데, 이는 이슬람협의회(OIC)의 외교정상들에 의하여 기초되었으며 공식적으로 채택된 적은 없다. 이 선언의 모든 권리들은 이슬람 율법에 종속되어 있어, 국제법에서는 어떻게 될지 의문이다.

나아가 **아랍인권헌장**은 아랍 인권전문가들에 의하여 추진되어 1994년 아랍연맹에 의하여 채택되긴 했으나 비준국이 적어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2004년 새로운 헌장이 채택되어 2008년 7개국의 비준으로 발효되었다. 이 헌장은 **아랍인권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였는데, 이 위원회는 국가보고서만을 작성하고 어떠한 개별 진정을 접수받아 처리하지는 않는다.

2002년 지역협력을 위한 남아시아협회(SAARC)에 의하여 론칭된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지역적 준비협정과 같은 몇차례의 시도가 있었지만, 아시아 지역에서 지역적 인권제도를 채택한다거나 아시아인권위원회를 세우는 것은 아직까지 어려워 보이는데, 이는 주로 종교적 이유 때문이다.

그럼에도 ASEAN와 같은 통합지역 단위에서의 노력들이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에 의해 2007년 동남아시아연합의 새로운 헌장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 헌장 제14조에서는 **아시아 국가간 인권위원회**와 같은 아시아 인권기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주로 홍보 및 자문권한을 가지며 회원국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세아 인권선언의 개발이 그 주임무 중 하나이다.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홍콩에 있는 **아세아 법률지원센터**의 통솔하에 200개가 넘는 아시아 시민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여 "*Peoples' charter*"로서의 *아시아인권헌장*을 만들기도 했다. 또한 중국을 포함한 19개의 **아시아 국가들과 유럽연합 간의 매년의 정기 회의**가 열리고 있으며, 중국과 유럽연합 간에도 이러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역간 협의로서는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ACP) 의 79개국과 27개의 유럽연합국가 간에 체결된 2000년 **코토누 협정**이 있는데, 이 협정 제9조 제2항에서는 *"인권에 대한 존중, 민주주의원칙과 법치주의…가 이 협정의 핵심요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협정은 유예된다.

I. 국제사법기구와 면책의 문제

UNIVERSAL JURISDICTION AND THE PROBLEM OF IMPUNITY 😐!?

면책을 반대하고 책임을 지지하는 투쟁은 전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한 가지 중요한 고려사항은 보통 인권과 인도주의 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형태를 띠는 범죄들의 예방이다. 주요한 인권의 침해자들에 대한 **면책**의 인정은 비민주적인 통치자, 종종 군 장성들을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에게 권력을 이양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세계적인 관례로 되어왔다. 이는 전쟁이나 정권교체 이후에 경미한 범죄에 대해 주어지는 사면들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면책은 책임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는 국내외에서 점점 더 인식이 넓혀지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면 특별 기관과 일반적인 형사 재판소나 법정에서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

인권 침해의 방지를 위해 1984년의 유엔 고문방지 협약과 같은 특정 국제 조약들은 해당 범죄자들의 **세계보편적인 기소**의 의무를 가능하게 했다. 칠레의 독재자였던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장군 사건에서 스페인 재판부는 1998년에 피노체트의 본국송환을 영국에 요청했다. 그리고 상원의회에서 놀랄 만한 결정으로서 최종적으로 승인했다. 그러나 그의 건강상태 악화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세계보편적 사법권의 원칙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서 그리고 각 국의 법원에서 적용된다. 이는 고문을 자행한 사람은 재판정에 소환되어야하기 때문에 재판이 열리는 곳이 어디든 반드시 송치되어야 한다. 시에라리온의 국가수장이었던 찰스 테일러는 처음에는 나이지리아로 피신하는 것이 허용되었지만 2006년 3월 재판을 받기 위해 송환되었다. 그는 시에라리온의 특별 법원에 의해 헤이그 국제 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2011년 "아랍의 봄"의 경우에는 시위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이집트의 전직대통령인 무바라크가 재판에 회부되었다.

가해자의 처벌을 선도할 필요가 없는 **책임성 확립**의 양상은 **"진실과 화해 위원회"**이다. 이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다른 몇몇 국가들에서 비보복적 사법체계의 형태로서 설립되었다. 여기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최소한 진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회에는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게 해준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 인권이사회는 "진실의 권리"를 개념화하였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미주인권위원회가 법적 보호와 공정한 재판의 권리를 침해하는 면책을 허용하는 사면에 관한 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역 NGO의 주도로 면책에 반대하는 국제적인 캠페인이 있었다. 그 결과 1998년 "사면에 관한 법"은 폐지되었다.

J. 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JURISCTIONS 😐!?

1998년 로마에서 채택되고, 2002년에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는 헤이그에 상설 재판소로 설립되었다. 형사 재판은 제노사이드 범죄, 강간, 성노예, 임신강요를 비롯 다른 모든 형태의 심각한 성범죄를 포함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넓은 범위의 체계적인 공격에 일환으로 저질러지는" 반인도주의 범죄, 강제실종 또는 그와 유사하게 인간에게 막대한 고통을 유발하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각한 외상을 입히는 것과 같은 비인간적인 행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2010년 나이로비 회의에서 최종 합의에 도달한 정의의 틀을 바탕으로 한다.

구 유고연방 국제형사재판소는 1993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유엔 안보이사회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는 특별 재판소로서 구 유고연방의 영토에서 발생한 인권과 인도주의법에 대한 대규모의 침해들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에 따라, 이 재판소의 역할은 살인, 고문, 강간을 비롯한 무력충돌 중에 벌어지는 다른 비인간적인 범죄들과 제노사이드 같은 반인도주의 범죄와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를 위한 1949년의 제네바 협약의 중대한 침해를 포함한다. 1994년 르완다 제노사이드의 결과로서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가 탄자니아의 아루샤에 임시로 설치되었다.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국제연합과 캄보디아 정부가 2003년 **캄보디아 전쟁범죄 재판**을 위해 맺은 합의의 이행이 연기되었다. 2008년에 이르러서야, 재판소는 처음으로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기능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었다. 구 유고연방 국제형사재판소나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와 같이, 국제형사재판소는 **국가단위 사법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단지 한 국가가 이러한 범죄의 가해자를 기소하려는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국제형사재판소가 그 사건을 맡을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유엔 안정보장이사회는 사건들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2011년 Gaddafi 사건의 경우가 그러하다. 모든 재판소가 피고의 공식적인 역할에 관계없이 개인의 책임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200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시에라리온 특별 법정** - 일정 정도 국제적인 성격을 띠는 - 은 살인, 강간, 성노예, 학살, 테러행위, 노예화, 약탈과 방화 등을 수사한다. 이 법정은 시에라리온의 국민들을 고통에 처하게 한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개인들을 기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법정은 진실과 화해 위원회와 협력하여 그 업무를 종료했다.

K. 도시별 인권계획

HUMAN RIGHTS INITIATIVES OF THE CITIES 😐!?

지자체단위에서의 인권강화프로그램은 사회경제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는 인권 프레임이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다. 사회발전의 전략으로서 인권교육을 활용하고자하는 **국제인권교육민중연합** (PDHRE)의 계획에 따르면, 로자리오(아르헨티나), 봉고(가나), 코로고쵸(케냐), 가티(말리), 디나프르(방글라데시), 부치(필리핀), 에드몬톤(캐나다), 그라츠(오스트리아), 광주(한국)과 같은 몇 개의 도시들이 자발적으로 ***"인권 도시"***나 ***"인권공동체"***를 선언하고 있다. 2011년 세계 인권도시포럼에서 "광주인권도시선언"이 채택되었다.

다른 행동 계획으로는 바로셀로나시가 프랑스의 생드니(도서벼룩시장으로 유명)의 협력으로 진행되며, 1998년 시작된 **"도시에서의 인권지키기를 위한 유럽헌장"**이다. 2011년까지 주로 지중해 인근 유럽에 있는 350여개의 도시가 체결했다. 이 헌장은 이주민 권리와 같은 국제 인권에 기반을 둔 정치적 책무를 포함한다. 그리고 이 헌장은 인권보호를 위해 옴부즈맨, 인권위원회, 인권 대차대조표와 같이 인권 보호를 위한 절차와 인권지역기구를 만드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정기모임인 2002년 베니스회의나 2006년 리옹회의에서, 서명한 도시나 공동체들간에 모범사례의 경험을 서로 공유했다. 7차 회의가 (보스니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역자주) 투즐라에서 개최되었다.

유네스코에서 주도한 **인종주의를 반대하는 국제도시연합**은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에 대한 문제들을 제시하였다. 이는 도시에서 거주자들의 문화적 다양성 증가가 도시에 유익하다는 것을 지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연합조직은 주로 지역 단위(역자주: 본 자료에서의 지역은 유럽, 아시아 처럼 국가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에서 활동하는데, 예를 들면 2004년에 설립된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유럽 연합"이나 아시아연합과 같은 단위로 활동한다. 또한 몇몇 도시는 인권침해방지와 구제를 위한 인권위원회와 오브즈퍼슨, 또는 다른 기구를 채택하고 있다.

여러 공동체를 아우르는 인권증진 전략으로서, 지역적 단위에서 시작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의 인

권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PDHRE에서 제안되었고 실제 성공적으로 적용된 **방식**은 도시에서의 인권 현실화와 침해에 대한 항목을 구분, 목록화 하는 작업이 시작점이다. 그리고 이를 행동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은 도시의 자원 사용에 있어서, 여러 법규와 정책을 실험하게 된다. 인권의 실현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고 그들 도시에서의 인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일들을 구성한다. 권위를 바탕으로 모든 결정, 정책이나 전략이 인권에 기반하도록 한다는 공약을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인권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추진되며, 모든 인권, 시민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관점, 그리고 젠더적 관점이 따로따로가 아닌 하나의 통합적 관점으로 다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들 자신의 인권을 자각하기위해서는, 학습과 훈련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기에는 교사, 행정가, 정책담당, 건강사회복지사, 지역공동체 리더와 NGO 활동가등을 대상으로 한 "강사 양성"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은 사회 모둔 부문을 다루고, 장기적 관점으로 진행해야 한다(참고 : www.pdhre.org).

PDHRE에 의해 시작된 국제인권도시 캠페인은 지역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UNDP의 지원 하에 이루어졌다. 인권도시에 대한 경험들은 2008년 중국에서 열린 UN-HABITAT 회의에서 소개되었는데, PDHRE의 출판물과 각기 다른 지역의 4개의 인권도시를 보여주는 오스트리아 영상물이 있었다(참고 : www.menschenrechtsstadt.at).

다음에 소개되는 인권도시 사례의 과정은 그라츠 시에 있는 유럽 인권민주주의 교육연구센터(ETC)에서 진행했는데, 이 센터는 다양한 인권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

인권도시 사례 : 아르헨티나 로자리오 시

1997 : 로자리오 시청에서 시장과 Shulamit Koenig (PDHRE 설립자)씨가 함께 한 자리에서 35개 기관이 활동에 동참하기로 서명했다.

Since : NGO단체와 정부 기관의 집행위원회 건물; 젠더, 법률, 발전 위원회(INSGENAR)가 코디네이터; 경찰, 치안 부대,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 학습 및 훈현 프로그램; 로자리오 시 여성의 상황, 경쟁적 환경, 출판물 등에 관계된 세니마, 영상물 제작 등을 통한 인식향상; 원주민(Quom) 통합

2005 : 브라질의 포트 알레그레 시의 인권도시 발전에 대한 지원

인권도시 사례 : 오스트리아, 그라츠시

2001 : 그라츠 대학에서 Shulamith Koenig의 최초 인권도시 제안 연설, 그라츠 시 의회에서

의 만장일치 결정

2002 : P100여명의 개인과 단체의 협조를 통해, 그라츠 시청에서 활동 프로그램의 목록과 대략적 형태를 발표함.

2006 :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유럽연합에 참여

2007 : 그라츠 시 인권자문위원회 설립

2007/2008 : H시의회 선거과정에 대한 인권자문위원회의 인권 모니터링

2007 : 그라츠 시 인권상 수여

2008 : 그라츠 시 인권 연간 상황 보고서 발표

2012 : 차별방지사무소 설치

L. 인권에 대한 국제적 도전 과제와 기회

GLOBAL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HUMAN RIGHTS 😐!?

수십 년 동안 인권에 대한 표준설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제 약속된 책무의 구현이 인권에 대한 주요한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인권 구현 강화을 위한 몇 가지 새로운 방안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이나 국가적 차원,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도 작동한다. 이러한 방안 중 UN이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는 모든 정책이나 활동에서의 '인권 주류화' 방안이며, 국제적 (평화) 미션을 위한 UN고등인권판무관의 강력한 현장성이다. 이를 통해 인권에 관한 사항에 다루는 기구를 구성하였으며,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중대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제인권재판소에 대한 장기적 제안도 여기에 속하는데, 향후 성공할 것으로 본다.

또한 인권 존중은 지역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 수준에서도 지역기구의 **인권역량**구축을 통해 강화된다. 이러한 지역기구는 인권도시와 국가차원에서의 인권 증진과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기구이며, 시민사회의 대표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비정부기구이다. 몇 가지 분야에서의 **표준 설치**의 필요성은 장애인 권리과 선택적 프로토콜에 대한 2006년 UN 회의에서의 적용에 해당한다. 추가적으로 문화적 다양성, 바이오테크나 유전공학, 인간장기 거래 등과 같은 관련한 인권 주제에서도 지속적인 진전이 있다. (비정규) 이주민의 인권은 보다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파괴에

기인한 인권문제등도 새로운 도전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에 관련된 인권과제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6개 주요 UN 인권조약과 ILO의 8개 핵심 노동 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 권리"에 집중함으로써 현존하는 인권이 보다 주목받을 수 있다. 일부 남부지역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도전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편성이라는 바로 그 개념에 대한 의문제기 이다. 또한 인권과 인도주의 법사이의 상호 연결성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는 새로운 도전이 있다. *"인도주의에서의 근본적 표준"*과 같은 내용이 이러한 부분이다. **인권과 난민법**사이의 관계에서도 같은 접근이 필요한데, 난민 문제의 방지 차원과 난민 복귀 차원이라는 두 측면에서 필요하다. 두 경우다 문제발생국의 인권상황이 결정적이다. **분쟁 후 재건**과 재구축이라는 주제뿐만 아니라 보다 넓게는 **인권과 분쟁예방**이라는 주제가 떠오르며, 이러한 과정이 인권과 법치에 기초하여 구축될 필요가 있다.
☞ *군사 분쟁지역에서의 인권, 망명권, 법치와 공정한 재판, 민주주의의 권리*

국제화 결과로서, 인권 침해와 인권 존중에 대한 의무가 국제적 관심사항이 되었으며, 개인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과 같은 비국가조직, 세계은행, IMF나 세계무역기구와 같은 국제기구도 이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총체적이고 시스템적인 인권 침해이후의 치유라는 주제가 주요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2003년에 인권보호증진을 우한 부위원회에서 "인권에 관련한 다국적 기업과 다른 기업 활동의 책임에 대한 규범"을 준비했었다. 그러나 아직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하진 않고 있다. 2005년 UN총회에서 존 루기(John Ruggie)씨를 **다국적기업등과의 인권**이라는 주제의 특별보고관으로 임명하여, 기업 활동과 인권의 관계를 다루도록 했으며, 2011년 최종보고서로서 "보호, 존중 그리고 치유라는 틀"이라는 보고서와 "기업 활동과 인권에 관한 지도 원칙" 세트를 구성 제출하였다. 2011년 이후로 5명의 전문가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러한 결과에 대한 적용방안을 구성하고 있다.

코피아난 UN 사무총장의 제안에 따라, 2000년에 **글로벌컴팩(Global Compact)**이 게시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세계화 방식과는 달리 새롭고 혁신적인 접근방식을 제시한다. 참여 기업들은 인권, 노동조건, 환경 및 반부패와 전세계적 문제에 관한 결과 지향적 대화의 참여 (즉, 분쟁지역에서의 기업활동의 역할) 등의 분야 등에 대한 10개 기본 원칙을 수용했다. ☞ *일할 권리*

주요 도전 과제는 인권 표준들을 유지해나가는 것인데, 반면 **테러리즘** 위협을 대처해 가야 했다. 어느 누구도 법의 보호에서 벗어나거나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을 유린할 수 없어야만 하며, 반면 동시에 범죄나 테러에 의한 피해로 부터의 보호를 개성해나가야만 했다. 유럽의회는 "인권과 테러방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면서 이러한 도전을 대처하기 위해 "테러범죄로부터의 보호"를 채택했다. UN사무총장과 UN고등인권판무관이 함께 인권보호가 테러리즘에 대항하는 하나의 영역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EU사법재판소의 카디 판례(2008, 2010)에서는, UN 안보위의 반테러리즘 수단으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존중해야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증거를 보고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를 포함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첫 재판에서는 새로운 과정을 도입해야했는데, 즉, 안보위의 옴부즈퍼슨이며, 2010년 판결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얻지 못했다. 한편 몇몇 EU 가입국들은 안보위와 충돌이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나타내었다. ☞ *법과 공정 재판이라는 규칙*

"나는 인권과 테러리즘사이에 주고받을 것이 없다고 믿는다. 인권을 지지하는 것은 테러리즘과 싸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인권의 도덕적 비젼 -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보다 깊은 존중 -이 테러리즘을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인권보호에 대해서 타협하는 것은 테러로서는 얻을 수 없었던 테러리스트에게 승리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국제인도주의법에 따른 엄정한 관찰뿐만 아니라, 인권의 증진과 보호가 반테러리즘 전략의 중심에 있어야만 한다." (코피아난 UN 사무총장. 2003. 참고 www.un.org/News/Press/docs/2003/sgsm8885.doc.htm)

인터넷과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의 관련성 증가는 인권보호에 관하여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는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인터넷에서의 개인 정보 보호 등이 해당된다. 인권의 충분한 향유에 대한 인터넷의 중요성이 제시되면서 인터넷에 대해서는 "접근권이라는 인권"이 제안되었다. 반면 이에 몇 가지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대체로 인간 존엄성을 그 근원으로 하는 보편적인 **인권 문화**를 구축하는 것은 여전히 긴 여정이며, 이러한 인권문화구축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에서 저명인 패널들에 의해 요청되었다. 이는 미래세대를 위한 "인권 의제"를 만들게 되었다. 그런 반면 되돌아보면 인권에 대한 중요한 진전이 또한 있었다. 이러한 진전은 회복과 보다 더 발전시킬 힘을 만들어내고 있다.

"자매, 형제들에게 강조하고자 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정의롭지 못한 것을 비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대가 숫적으로 열세하더라도 평화를 추구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심지어 그대 목소리가 너무 작을지라도 평화를 요구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Ellen Johnson-Sirleaf, 노벨평화상. 2011.

M. 참고자료

Alfredson, Gundumur et al. 1999.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Oslo: Scandinavian University Press.

Alston, Philip (ed.). 1999. *The EU and Human Righ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Amnesty International. 2011. *Annual Report* (yearly).

Asia-Europe Foundation (ASEF). 2000. *The Third Informal ASEM Seminar on Human Rights*. Singapore: ASEF.

Bayefsky, Anne F. 2002. *How to Complain to the UN Human Rights Treaty System*. New York: Transnational Publishers.

Baxi, Upendra. 2002. *The Future of Human Righ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Beitz, Charles R. 2009. *The Idea of Human Righ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Benedek, Wolfgang, Matthias C. Kettemann and Markus Möstl (eds.). 2010. *Mainstreaming Human Security in Peace Operations and Crises Management. Policies, Problems, Potential.* London/New York: Routledge.

Benedek, Wolfgang, Clare Greogry, Julia Kozma, Manfred Nowak, Christian Strohal and Engelbert Theuermann (eds.). 2009. *Global Standards - Local Action: 15 Years Vienna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Vienna/Graz: Neuer Wissenschaftlicher Verlag.

Benedek, Wolfgang, Koen de Feyter and Fabrizio Marella (eds.). 2007. *Economic Globalization and Human Righ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enedek, Wolfgang and Alice Yotopoulos-Marangopoulos (eds.). 2003. *Anti-Terrorist Measures and Human Rights*. Leide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Benedek, Wolfgang, Esther M. Kisaakye and Gerd Oberleitner (eds.). 2002. *The Human Rights of Women: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African Experiences*. London: Zed Books.

Benedek, Wolfgang (ed.). 1999. *Human Rights in Bosnia and Herzegovina, Theory and Practice*. The Hagu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Binder, Johannes. 2001. *The Human Dimension of the OSCE: From Recommendation to Implementation*. Vienna: Verlag Österreich.

Boersema, David. 2011. *Philosophy of Human Rights: Theory and Practice.* Westview Press.

Brander,Patricia, Rui Gomes, Ellie Keen, Marie-Laure Lemineur et al. 2003. *COMPASS - A Manual on Human Rights Education with Young People*.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Buergenthal, Thomas, Diana Shelton and David Stewart. 2009.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a Nutshell*. 4th edition. St. Paul: West Group.

Buergenthal, Thomas and Diana Shelton. 1995. *Protecting Human Rights in the Americas - Cases and Materials*. 4th rev. edition. Kehl: Engel.

Cassese, Antonio. 2002. *The Rome Statute for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 Commenta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ommission on Human Security. 2003. *Human Security Now, Protecting and Empowering Peopl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Council of Europe. 2005.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Terrorist Acts*. Available online at: www.coe.int/t/E/Human_Rights/5694-8.pdf

Council of Europe. 2002. *Guidelines on Human Rights and the Fight against Terrorism*. Available online at: www.coe.int/T/E/Human_rights/h-inf(2002)8eng.pdf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1999 et seq. *Annual Report on Human Rights*. Brussels: European Communities.

De Feyter, Koen, Stephan Parmentier, Christiane Timmerman and George Ulrich (eds.). 2011. *The Local Relevance of Human Righ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e Feyter, Koen. 2005. *Human Rights: Social Justice in the Age of the Market.* London: Zed Books.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Canada. 1999. *Human Security: Safety for People in a Changing World*. Available online at: www.cpdsindia.org/globalhumansecurity/changingworld.htm.

De Schutter, Olivier. 2010.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onnelly, Jack. 2003.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 2nd edit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Doswald-Beck, Louise. 2011. *Human Rights in Times of Conflict and Terror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Drinan, Robert F. 2001. *The Mobilization of Shame. A World View of Human Right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Evans, Malcolm and Rachel Murray (eds.). 2008. *The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The System in Practice, 1986-2006.* 2nd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agan, Andrew. 2009. *Human Rights. Confronting Myths and Misunderstandings.* Cheltenham/Northampton: Edward Elgar.

Forsythe, David P. 2006. *Human Righ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2nd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reeman, Michael. 2011. *Human Rights: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2nd edition. Cambridge: Polity Press.

Ghai, Yash. 1998. *Human Rights and Asian Values'.* Public Law Review. (Volume 9/3), pp. 168-182.

Gomien, Donna. 2005. *Short Guide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3nd edition.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Gondek, Michal. 2009. *The Reach of Human Rights in a Globalising World: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Human Rights Treaties.* Antwerp: Intersentia.

Hanski, Raija and Markku Suksi (eds.). 1999. *An 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Human Rights*. A Textbook. 2nd edition. Turko/Abo: Institute for Human Rights. Abo Akademi University.

Hestermeyer, Holger. 2007. *Human Rights and the WTO. The Case of Patents and Access to Medicin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Hodson, Loveday. 2011. *NGOs and the Struggle for Human Rights in Europe.* Oxford and Portland, Oregon: Hart Publishing.

Human Security Research Group (ed.). 2011. *Human Security Report 2009/2010, The Causes of Peace and the Shrinking Cost of War*.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Isa, Felipe Gómez and Koen de Feyter (eds.). 2011. *International Protection of Human Rights: Achievements and Challenges.* 2nd edition. Bilbao: University of Deusto.

Jaichand, Viodh and Markuu Suksi (eds.). 2009. *60 Years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 Europe.* Antwerp: Intersentia.

Janz, Nikole und Thomas Risse. 2007. *Menschenrechte - Globale Dimensionen eines universellen Anspruchs.* Baden-Baden: Nomos.

Joppke, Christian. 2010.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mbridge: Polity Press.

Kaelin, Walter, Lars Mueller und Judith Wyttenbach. 2007. *Das Bild der Menschenrechte.* Baden: Lars Mueller Publishers.

Kälin, Walter and Jörg Künzli. 2010. *The Law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ote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ozma, Julia, Manfred Nowak and Martin Scheinin. 2010. *A World Court of Human Rights - Consolidated Statute and Commentary.* Vienna: Neuer Wissenschaftlicher Verlag.

Mack, Andrew (ed.). 2005. *Human Security Report.* Human Security Centr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Maddex, Robert. L. 2000. *International Encyclopaedia of Human Rights.* Washington: Congressional Quarterly Press.

Marchetti, Raffaele and Nathalie Tocci (eds.). 2011. *Civil Society, Conflicts and the Politicization of Human Rights.* Tokyo: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Mares, Radu (ed.). 2012.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Leide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Marks, Stephen P., Kathleen Modrowski und Walther Lichem (eds.). 2008. *Human Rights Cities. Civic Engagement for Societal Development.* New York: PDHRE.

McRae, Rob and Don Hubert (eds.). 2001. *Human Security and the New Diplomacy, Protecting People, Promoting Peace.* Montreal: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Menke, Christoph und Arnd Pollmann. 2007. *Philosophie der Menschenrechte zur Einfuehrung.* Hamburg: Junius.

Naddeo, Cecilia Cristina. 2010. *The Inter-American System of Human Rights: A Research Guide:* Available online at: www.nyulawglobalorg/globalex/inter_American_human_rights.htm.

Newman, Edward and Oliver P. Richmond (eds.). 2001. *The United Nations and Human Security.* New York: Palgrave.

Nowak, Manfred. 2003. *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Leide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Oberleitner, Gerd. 2007. *Global Human Rights Institutions, Between Remedy and Ritual.* Cambridge: Polity Press.

ORF. 2008. *Menschenrechtsstaedte dieser Welt.* Human Rights Cities of this World. Graz/Wien: ORF.

OSCE and ODIHR(eds.). 2007. *Countering Terrorism. Protecting Human Rights - A Manual. Warsaw:* OSCE/ODIHR.

Panel on Human Dignity. 2011. *An Agenda for Human Rights.* Available online at: www.udhr60.ch/docs/Panel-humanDignity_rapport2011.pdf.

Pogge, Thomas. 2008. *World Poverty and Human Rights.* 2nd edition. Cambridge: Polity Press.

Ramcharan, Bertrand G. 2002. *Human Rights and Human Security*. The Hagu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Reilly, Niamh. 2009. *Womens' Human Rights.* Cambridge: Polity Press.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2001.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Ottawa: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re. Available online at: www.idrc.ca.

Robertson, Geoffrey. 2006. *Crimes against Humanity. The Struggle for Global Justice*. 3rd edition. London: Penguin.

Salomon, Margot E. 2007. *Global Responsibility for Human Rights: World Poverty an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icilianos, Linos-Alexander and Christiane Bourloyannis-Vrailas (eds.). 2001. *The Preven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e Hagu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Shapcott, Richard. 2010. *International Ethics: A Critical Introduction.* Cambridge: Polity Press.

Smith, Rhona. 2012. *Textbook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5th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teiner, Henry J., Philip Alston und Ryan Goodman. 2008.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Context. Law, Politics, Morals, Text and Materials.* 3rd ed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Symonides, Janusz and Vladimir Volodin (eds.). 2001. *A Guide to Human Rights, Institutions, Standards, Procedures*. Paris: UNESCO.

Todorovic, Mirjana (ed.). 2003. *Culture of Human Rights.* Belgrade: Human Rights Centre.

Ulrich, George. 2006. *Towards a theory of global ethics in support of human rights*, in: Wolfgang Benedek, Koen de Feyter, Fabrizio Marella (eds.). 2006. Economic Globalization and Human Righ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United Nations. 2011.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Available online at: www2.ohchr.org/english/issues/education/training/UNDHREducationTraining.htm.

United Nations. 2007.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vailable online at: www.un.org/esa/socdev/unpfii/en/declaration.html.

United Nations. 2005. *World Summit Outcome Document. UN Doc. A/RES/60/1 of 16 September 2005.*

United Nations. 1993.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Minority Rights*. Available online at: www1.umn.edu/humanrts/instree/d5drm.htm.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005. *In lager freedom: towards development, security and human rights for al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vailable online at: www.un.org/largerfreedom/contents.htm.

Welch, Jr., Claude E. 2000. *NGOs and Human Rights: Promise and Performanc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Welch Jr., Claude E. 2012. *Protecting Human Rights Globally: Strategy and Roles of International NGOs*, forthcoming.

추가정보원

European Training and Research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ETC): www.etc-graz.at

Human Security Report Project:

www.hsrgroup.org

Human Security Unit: www.ochaonline.un.org/humansecurity/tabid/2212/default.aspx

UNESCO: www.unesco.org

United Nations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2005-ongoing):

www2.ohchr.org/english/issues/education/training/programme.htm

Ⅱ. 주제별 인권 교안

보편성

평등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

>> 국제 사회는 약속의 시대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만든 약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의지와 자원을 동원하는 구현의 시대로 들어갈 때입니다. <<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 2001.

고문의 금지

PROHIBITION OF TORTURE

인간 존엄성과 완전함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

고문

>> 어느 누구도 고문을 당하거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처우 또는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

세계인권선언 제5조. 1948년

사례

"나는 1991년 11월 25일 오전 9시 경 거리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 그 후 나는 보비니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경찰서 1층에 수용되었는데, 거기에서 약 8명의 사람들이 나를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어야 했고, 한 경찰관이 내 머리채를 잡아 뒤로 당겼습니다. 다른 경찰관은 야구방망이 같은 도구로 내 머리를 반복해서 때렸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내 등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취조는 약 한 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

1991년 11월 26일 나는 다시 한꺼번에 세 명 또는 네 명의 경찰관으로부터 심문을 받았습니다. 그 때 그들은 내 머리를 잡아당겼고, 나를 주먹으로 때리고 막대기로 내리쳤습니다. ...

그들은 모두 새벽 1시까지 나를 폭행하는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 가혹행위의 시간은 저녁 7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들은 나를 경찰서의 긴 복도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곳에 경찰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나머지 경찰관들이 양쪽에 자리를 잡는 동안 내 머리를 쥐어 잡고 복도를 따라 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러고도 내가 입을 열지 않자 나를 한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불로 위협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다시 진술을 거부하자, 그들은 두 개의 블로램프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 블로램프는 2개의 작고 푸른 가스통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앉히고 블로램프를 내 맨발 앞 1미터 정도에 두었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그들은 나를 구타하고 있었습니다. 뒤이어 그들은 내게 주사기를 꽂겠다고 위협하면서 이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것을 본 나는 소매를 걷어 재치면서 "해 봐, 너희들은 감히 할 수 없을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내 예상대로 그들은 위협을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약 15분 동안 나를 평안히 있게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중 한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해보시지!(섹스를 즐겨봐!)" 그들은 나를 붙잡고 옷을 벗겼다. 그들 중 한 명이 작은 검은색 경찰봉을 내 항문에 삽입했습니다."

셀모니씨는 이 장면을 말할 때 울기 시작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한 것이 충격적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이것은 전부 사실입니다. 나는 진짜로 이러한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Selmouni 대 프랑스 사건(Selmouni v. France)의 사실과 증거를 조사한 뒤, 유럽인권재판소는 1999년 7월 28일 만장일치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유럽인권협약)' 제3조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출처 : 1999년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유럽인권협약), Selmouni v. France 사건, 1999년 7월 28일 판결)

"미국인들은 우리가 '검은 밤'이라 부르는 첫째 날 밤에 우리를 심문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옷을 가위로 자르고 벌거벗긴 채로 두었으며, 우리에게 아프간 옷을 주기 전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우리의 손을 등 뒤로 해서 수갑을 채웠고 우리의 눈을 가린 채 심문을 시작했습니다. 심문자는 이집트인이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가족, 친척, 친구들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알카에다 소속이라고 주장하며, 나를 죽인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대략 폭 2미터, 길이 3미터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우리 열 명 모두가 그 감옥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감옥에서 3달을 보냈습니다. 잠을 잘 공간조차 없어서 우리는 번갈아 가며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 감옥의 창문은 너무 작았습니다. 바깥은 영하의 날씨에다 눈도 내렸는데, 눈이 와서 바깥 날씨가 얼어붙을 정도가 되어도 감옥 안은 사람들로 초만원이었기 때문에 엄청 더웠습니다. 그들은 가끔 바깥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도록 감옥 문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

"감옥에서의 3달의 기간 동안 우리는 바깥에 나가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은 하루에 두 번만 갈 수 있도록 허락되었습니다. 화장실은 감옥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Walid al-Qadasi씨는 수감자들이 어떻게 하루에 한 번 배식을 받는지, 시끄러운 음악이 어떻게 고문수단으로 사용되는지를 계속하여 기록으로 남겼다. 그는 동료 수감자 중 한 명이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미쳐갔다고 주장하였다. Walid al-Qadasi씨는 결국 Bagram으로 이송되었고 그 곳에서 더 오래 심문을 당하였다.

카불에 있는 감옥의 전 정치범들의 증언은 2004년 4월 예멘에서 국제엠네스티에 제출되었다.

(출처: 영국 국제엠네스티. Testimonies. 참조 : www.amnesty.org.uk/content.asp?CategoryID=2039)

토론할 거리

1. Mr. Selmouni와 Mr.al-Qadasi에게 일어난 일들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당신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2. 비슷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한 지역적 또는 국제적 기구를 알고 있는 것이 있는가?

3. Mr. Selmouni와 Mr.al-Qadasi와 같은 희생자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

4. 만약 Mr. Selmouni씨가 A) 마약판매 용의자 B) 살인용의자 C) 테러리스트 용의자였다면 당신은 다른 입장을 취할 것인가? 그 이유는?

알아야 하는 내용 ☹!?

1. 고문 없는 세상

21세기 초에도,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 없는 세상은 여전히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권기구와 언론은 고문과 가혹행위에 대한 사례를 점차 더 보고하며, 보편적으로 승인된 기준과 국가의 이행 상황 모두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가혹행위의 심각한 형태는 종종 인권침해가 일상화된 사회와 국가에 한정된 것으로 여겨지곤 한다. 고문이 가난한 후진국에서만 존재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미국 국제엠네스티는 고문과 가혹행위가 150개 이상의 국가에서 기록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여기에는 고도로 산업화되고 발달된 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사실, 고문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의 개별 사건들은 그 정도와 고문방법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세계 각 나라에서 발견되고 있다.

"고문을 하는 사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악마이다"

Henry Miller.

고문금지는 절대적인 것이며, 이는 수많은 국제 및 지역 인권 협약에서 재확인되고 있다. 그것은 불가침(non-derogable)의 인권이다. 즉, 고문금지 원칙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유효하며,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 어떠한 근거나 상황에서도 고문을 허용하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개악)은 허용될 수 없다.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은 국제관습법에 의해서도 금지된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에도 불구하고 고문과 가혹행위는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자주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과 다른 민족적이나 사회적, 문화적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말이다. 고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나 희생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까지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는 전쟁과 노예제도의 산물일 뿐, 평화의 시대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에 관한 최근의 면밀한 조사는 심각한 형태의 가혹행위가 과거의 것이기만 한 것이 아님을 말해 주고 있다. 인류가 진보함에 따라 잔혹한 고대와 중세의 고문방법은 더 정교한 기술-잔혹함과 효과 면에서는 동일한-로 대체되었다. 고문 및 다른 심각한 형태의 가혹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에 끔찍한 해를 끼치고, 기본적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며, 인류안전에 위협이 된다. 이는 인간의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따라서 혼신을 기울여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시대적 발전-특히 국제법 분야에서의-과 정보보급의 다양화로 인해, 고문 및 다른 심각한 형태의 가혹행위 문제에 대한 국제적 자각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구(NGO)는 수많은 형태의 가혹행위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내재된 원인을 알아보고 이에 대해 고심하기 시작했다. 고문금지와 예방을 위한 명백한 국가기준이 세워졌고 이 기준이 널리 승인되었다. 게다가 이러한 예방 기준들과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 및 처벌 금지에 대한 가치규범을 보호하고자 하는 다양한 조사, 감시, 감독 기관이 국내 및 국제적 수준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고문금지와 인간 안보

고문과 가혹행위는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인간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다. 인간 생명을 보호하고, 모든 인간의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존엄성을 보전하는 것은 인간 안보 접근법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다. 결국, 고문과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 및 처벌의 절대적 금지는 인간 안보를 위한 여러 노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고문과 가혹행위 금지 및 예방에 대한 법적 구조 개선과 함께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 의식을 제고시키는 것이 향상된 인간안보와 복지(안녕)를 위한 초석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게다가 모든 인권기준의 더 나은 구현은 인간 안보를 고양시키기 위한 전반적인 전략에 있어 중요한 요소다. 인간 안보 네트워크에 의해 상당한 진전을 보여 온 기관인 국제형사재판소의 규정은 고문을 분명하게 인류에 대한 범죄와 전쟁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인간의 생명 보호와 인간 안보에 있어 특별히 이를 더 강조하고 있다.

☞ 도입부

2. 정의와 설명

고문이란?

심지어 고문과 가혹행위에 대한 비난과 금지가 일반적으로 국제관습법 상 강행규범으로 승인되어왔다 하더라도, 다양한 고문과 가혹행위를 어떻게 포괄적으로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 기나긴 논쟁이 있어왔다. 게다가 어떠한 법적 정의도 고문 금지의 최소 기준의 정립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절대적인 고문금지에 대한 국제적으로 승인된 규정들-다양한 국제법 조문으로 이루어진-은 고문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담보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 이 규정들에는 여전히 어느 정도의 해석의 여지가 존재한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 때문에 국가들은 원칙적으로는 국제기준을 승인하나 실제로는 예외적인 의무 위반을 허용한다.

"고문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극악한 침해입니다. 그것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비인간화합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인간이 가한 고통과 테러는 영구적인 흉터를 남깁니다. 구타로 등뼈가 휘고, 군용 소총 머리에 의해 두개골이 패이기도 하죠.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공포감에 피해자는 계속 악몽을 되풀이 합니다. 고문으로부터의 자유는 모든 상황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입니다."

코피 아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001.

1984년 12월 10일, 유엔총회결의 39/46으로 채택되고 1987년 6월 26일 공식 발효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유엔고문방지협약, UNCAP)**은 고문의 법적 정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서명한 국가들에 의해 승인되었다. 협약의 목적을 위해 "고문"의 정의를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 [...] 당사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정보 또는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 또는 당사자 또는 제3자가 행한 행위 또는 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하기 위해, 또는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협박·공갈하기 위해, 또는 여하간 종류의 차별을 하기 위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에 의해 또는 이러한 자들의 사주에 의해, 또는 이러한 자들의 동의 또는 묵인하에, 개인에게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심한 고통 또는 고난이 가해지는 것을 말한다. 합법적인 제재조치에 고유한 또는 부수해 발생하는 고통이나 고난은 고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유엔고문방지협약에서의 고문을 이루는 특징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 **차별 등을 이유로,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개인에 대한 의도적인 괴롭힘**
- **국가공무원이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의한 것**

이러한 법적 정의가 고문 및 부당한 처우의 정신적, 신체적인 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 것임에도, 서로 다른 수준의 고문들을 모두 포괄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 정의는 또한 법적 제재, 즉 국내법에 의한 처벌을 제외시킨다. 이는 그러한 제재가 협약의 전반적인 정신과 목적에 저촉될 수도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야기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의는 고문금지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증대시킨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은 **어떤 조건에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유엔인권이사회**의 말에서 이를 잘 알 수 있다. 전(前) 고문 특별보고관 Mr. Theo van Boven은 더 나아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금지에 대한 법적, 도덕적 근거는 절대적이고 중요한 것이며 어떤 조건하에서도 다른 이익, 정책, 관행(관례, 실무)에 의해 예외가 허용되거나 이들보다 하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했다.

세계고문희생자의 날(6월 26일) 행사에서 국제 고문피해자 재활협의회는 "고문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 중 하나다."라고 주장했다. 고문의 목적은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지는 않으면서도 많은 고통을 받게 하려는 것에 있다.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의도적으로 가하는 것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대우 두 가지 모두의 특징이다. 법적 용어에 따르면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와 고문의 미묘한 차이는 자행된 행위의 **본질**, 그 뒤에 의도된 목적, **사용된 잔혹한 수단** 뿐 아니라 그 **심각성**의 정도에 있다.

고문의 방법-고문은 어떻게 자행되는가?

고문의 수단과 방법은 특히 사기업의 고문과 관련된 장비의 제조와 무역에의 관여로 인해 시간에 걸쳐 계속해서 진화해오고 있다. 전 고문특별보고관에 의해 작성된 고문에 대한 최근 연구는, 특별히 고문 또는 다른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를 위해 고안된 장비의 생산과 무역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이에 근거해 시장에 대한 훨씬 더 많은 국가 정책과 통제의 증강을 요구한다.

중세시대에 사용되었던 고문장비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과 달리, 오늘날 실제로 사용되는 다양한 도구들은 잠재적 고문 도구로 쉽게 인지할 수 없다. 널리 실행되는 몇 가지 고문 기술들은 희생자의 정신적 완전성은 물론이고 내장기관 모두에 해로운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신체에 눈에 보이는 물리적 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방전무기나 전극에 의해 사람의 몸(의 민감한 부분)에 가해지는 전기충격은 눈에 보이는 자국을 남기지는 않지만, 심신을 쇠약하게 만드는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고문 방법은 주요하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신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다.

신체적 고문은 희생자에게 극한의 고통과 과도한 고난을 야기한다. 또한 가장 잔혹한 형태의 고문들은 신체절단, 신체훼손, 그리고 영구적 상처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장 자주 사용되는 고문 방법은 채찍, 금속 물체, 돌, 철재 밧줄과 곤봉으로 때리는 것이거나 또는 희생자를 벽에 대고 발로 차고 구타하는 것이다. "falaka" 나 "phalange" 라고 불리는 고문(희생자의 발바닥이나 손바닥을 사납게 때리는 고문)은 전기충격고문, 질식고문, 묶어서 담뱃불로 지지는 고문, 물고문 또는 극도로 낮거나 높은 온도에 희생자를 노출시키는 고문과 함께 널리 사용되는 고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정신적 고문 중에는 박탈과 소진 기술이라 불리는 고문 방법이 있다. 이는 음식, 물, 수면, 위생 시설 등을 박탈하는 고문과 독방감금 및 다른 억류자들이나 외부세계와의 차단과 같은 의사소통 수단을 박탈하는 고문이다. 강요와 협박과 관련된 고문도 정신적 고문에 속한다. 강제로 다른 사람을 고문하는 것을 지켜보게 하거나 처형을 행하겠다는 위협, 지속적인 굴욕 및 공포를 야기하는 고문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성폭력은 희생자의 신체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 모두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종종 사용된다.

이러한 고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인간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자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고문 없는 세상은 의도적인 고통의 가함이 없는 세상이자 누군가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잔혹한 방법이 사용되지 않는 세상을 의미한다.

고문의 동기-왜 고문이 자행되는가?

고문의 동기가 매우 다양하기는 하지만, 그 핵심에는 다른 이에 대한 힘을 과시하거나 나약함이나 불안정함을 감추려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세계 역사의 다른 시대를 통틀어, 고문은 노골적으로나 암암리에 정부당국이나 정부체제에 위협이 되는 반대자들이나 진보적인 지식인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고 이들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행해져 왔다. 그 결과, 고문은 주로 **정치적 억압**과 **탄압**의 수단으로, **처벌**의 수단으로,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전통적으로 고문과 또 다른 형태의 가혹행위는 주로 **정보를 얻기** 위해서나 **자백**을 얻기 위하여 사용되어 왔다. 심지어 협박과 신체적 강요 하에서 이루어진 자백이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말이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진술과 자백은 결코 증거로 간주될 수 없으며, (형사)절차에 있어 고문사용 금지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와 국제법 체계에서 법률로 정해져 있다.

고문과 가혹행위는 또한 사람을 위협하고, 겁주고, 인간성을 박탈하기 위해, 또는 개개인의 정신능력을 파괴시키려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굴욕과 열등감의 부정적 감정을 확대시키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그러한 위협은 고문 희생자의 정신과 신체 능력 두 가지 모두에게 중대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주었다. 신체적 회복에 종종 수년이 걸리기도 하고,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하기도 하다. 게다가 심리학적 상처는 희생자들의 여생 동안 흉터로 남아, 그들이 온전하게 살 수 없게 만든다.

고문 및 비인격적이거나 모욕적 처우와 관련된 피해자와 가해자

고문과 가혹행위의 희생자가 되는 전제조건은 없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고문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법의 지배라는 전통이 없는 곳이거나 또는 국내법이나 국내법에서 수반되는 의무들이 거의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그러하다. 가혹행위는 대부분 종종 감옥, 경찰서나 기타 구금시설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개인의 집이나 장애인이나 정신병자들을 위한 전문화된 의료시설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 유치 중인 수감자들과 복역 중인 범인들은 그들의 생존유지에 가장 필요한 기본적 욕구를 당국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취약하다. 이러한 구금 장소들은 당연히 닫혀 있다. 결과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은 자신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일반대중들과의 공감 및 동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난민이나 망명신청자는 물론 사회적, 종교적, 민족적 소수자들과 같이 취약한 그룹들은 종종 다시 비인간적인 대우를 당하기 쉽고 그 위험을 감수한다. 예를 들어 노인이나 지적장애인과 같이 특별한 의료시설이나 병원에 사는 사람들은 종종 사회로부터 무시를 받거나 간과되고, 또한 고문과 가혹행위 및 유사한 관행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부족한 직원과 재정 때문이다. 이러한 고문 및 가혹행위로 인해 사람들은 기초생활수준과 적절한 의료조치를 보장 받지 못하며 품위 있게 나이 들지 못한다.

그들은 항상 차라리 죽여 달라고 했다. 고문은 살인보다 나쁘다"

Jose Barrera, Honduran torturer.

그러나 고문과 가혹행위의 후유증은 단지 희생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은 대개 자발적인 참여자들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경찰이나 군 장교들이 공적인 명령에 의해, 또는 고문과 가혹행위의 관행이 일상다반사인 특별한 부서의 일원으로서 이를 수행한 경우가 수없이 많다. 특별한 서비스가 요구되는 기관에서 일하는 의료진이나 보안직원 또한 부주의, 통제나 감시 부족, 자원이나 훈련 부족으로 가혹행위의 범죄자가 된다.

3. 문화적 관점 차이와 논쟁적 이슈

상이한 문화적 관행과 관점은 의심할 여지없이 국제법 규범과 기준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며, 종종 그 해석의 내용을 결정짓는다. 예를 들어 태형(예를 들어 시정조치로 회초리나 채찍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은 널리 행해지는 형태의 가혹행위이다. 그러나 이슬람법 전통 하에서는 태형과 신체절단

둘 다 사회적으로 승인되고 합법화된 처벌 방법이며, 일반적으로 무슬림의 신체적 정신적 삶의 다른 면들뿐만 아니라 결혼과 상속을 규율하는 종교법정에 의해 부과된다. 예를 들어 2010년 나이지리아의 몇몇 법정에서 이슬람 형법을 따라, 소액 절도나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같은 경범죄를 범한 이들에게 태형을 선고했다. 마찬가지로 2010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도 이슬람법에 기초한 종교법정에서 태형을 선고한 최근 사례들이 있었다.

테러리즘의 행위가 다른 범죄들과 다른 것인지 그리고 이를 막고 감시하는 특별한 기준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오랫동안 있어 왔다. 2001년 9월 11일에 행해진 행위와 같은 테러 행위는 많은 국가에서 "반테러법" 제출의 정당화 근거로 제시되어 왔다. 이러한 법들은 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기소절차를 도입했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로, 미국 병사와 공무원의 고문과 가혹행위에 대한 수많은 사건이 보고되었다. 쿠바에 있는 관타나모만 임시 수용소에 수감된 테러 용의자들은 "강도 높은 심문"을 당했다. 예를 들어 18시간 이상 바닥에 쇠고랑에 채여진 채로 있어서 스스로에게 소변과 대변을 보게 된 수용자들도 있었고, 청력을 상실할 정도의 소음이나 극한의 온도에 그대로 노출된 수용자들도 있었다. 많은 경우 수용자들은 의식을 잃거나 미친 듯이 머리카락을 뽑아내는 증상을 보였다. 현재도 관타나모만에 억류된 수감자들은 여전히 약 170명이나 된다. 2004년에 이라크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에서 근무한 미군 병사들이 신체적 정신적 고문을 포함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보고서들이 공개되었다. 후에 미군들이 수감자들을 고문하고 굴욕감을 주는 사진과 영상들이 공개됨으로 인해 이 보고서의 내용들이 입증되었다. 미군이 개입한 고문과 가혹행위에 대한 더 심각한 예는 CIA에 의해 행해진 "범죄인 인도" 프로그램이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승인 하에 대규모의 외국인 수용자들과 테러 용의자들이 "블랙 사이트"로 알려진 비밀 수감시설에서의 심문과 구금을 위해 세계 각국으로부터 이송되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 테러 용의자들(혹은 다른 범죄자들)을 고문하는 것을 승인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은 다시 활기를 띄었다. 2004년에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경찰청장이었던 Wolfgang Daschner이 11살 소년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무력사용으로 그 소년을 납치한 납치범을 위협한 Wolfgang Daschner 사건에서, **절대적인 고문방지의 원칙과 어떤 조건 하에서도 이에 대한 예외나 수정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유지하였다. 누구나 법에 따라 그 범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 받아야 한다는 권리가 이러한 이슈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고문방지가 거의 보편적으로 승인되었다고 하여도, 그 해석과 적용은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가 문화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고문방지를 강화하는 것인지 혹은 국제성문법과 국제관습법 모두의 목적과 정신에 모순되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절대적인 고문방지에 관해서, 국제 변호사들은

만장일치로 기준의 이중성은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국제법 기준이 선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그 기준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한다.

오로지 이러한 방법으로만 세계 평화, 인권과 인간 안보, 그리고 국가 간 이해의 수호자로서의 국제법의 정신과 기능이 지켜질 것이다.

4. 이행과 모니터링

1948년 이후로, 고문과 잔혹, 비인격적이거나 모욕적 처우나 처벌 방지에 대한 국제법 조항들은 상당히 발전되고 개선되어 왔다. 점점 더 많은 수의 국가들이 국제법적 협약을 서명하고 비준해 오고 있으며, 이를 자국 내에서 국내법과 관행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고문의 방지와 금지를 위한 강력한 지역 체계(예를 들어 유럽에서)가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조사기관이나 독립된 점검 시스템(방문조사) 또한 마련되었다.

국제적 수준에서는, 수많은 NGO단체들과 함께 **유엔고문방지위원회**와 **유엔고문특별보고관**이 고문이나 고문유사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는 국가적 책무의 이행을 감시하고 있다.

유엔고문협약 제17조에 의하여 유엔이 설립한 모니터링 기구인 **유엔고문방지위원회(CAT)**는 1988년 1월 1일 출범하였다. 유엔고문방지위원회는 4년마다 협약의 준수에 관하여 정부당국에 의해 만들어진 보고서를 요구하고 검토하고 있다. 위원회는 조사를 하거나 그 보고서에 관하여 해당국에 설명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그 보고서에 보고된 법적 그리고 사실적 상황에 관하여 추가적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국가는 위원회가 개인통보 또는 국가통보 신청을 받아 이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조치로 진정인과 관련 국가에게 최종견해와 권고를 보낼 권한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위원회 활동의 모든 기록은 매년 출간된다.

유엔고문방지위원회의 선택의정서

2002년 뉴욕에서 열린 제57회 유엔총회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대하여 2006년부터 발효되는 선택의정서를 채택했다. 2012년 1월 현재 61개 국가에 의하여 비준된 이 의정서는 고문과 다른 형태의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이 의정서는 국내적, 국제적 국제 감시기구의 구금 장소 조사 방문을 정례화된 시스템으로 정립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들을 방지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선택의정서는 방문조사권한을 가지며 새로운 국제전문기구인 고문방지분과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활동을 고문방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선택의정서는 또한 정부당국이 의무적으로 국내 조사기관을 설립하도록 했다(**"국내 방지 체계"**). 분과위원회나 국내 방지 체계는 자유를 박탈하는 모든 구금 장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구

금 장소의 환경뿐만 아니라 자유를 박탈하는 대우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다.

현존하는 국제기구들은 폭력의 발생 이후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방적 중점활동은 유엔 인권시스템에서의 혁신적 발전이다. 구금 장소를 방문하는 것은 고문을 방지하고 구금 환경을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유럽에 처음으로 인신이 구속된 상태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비사법적 예방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는, 유럽고문방지위원회(CPT,고문 및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방지를 위한 유럽협약평의회(ECPT)에 의해 설립되었음)의 성공에 영감을 받아, UN 협약 선택 의정서는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국내전문기관에 의한 효과적인 예방적 방문을 위한 기준과 안전보장조치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 의정서는 고문과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에 대한 국제적이고 국내적인 예방 장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실질적 단계로 여겨진다.

그러나 고문에 대한 국제법적인 안전장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국내단계에서도 항상 충분히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입법조항들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이를 감시하고 보고하는 국내기관이 창설되는 것이 중요하다. 고문의 완벽한 박멸은,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실행 가능하고 공정한 국가 이행 및 모니터링 시스템 내에 고문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이 자리 잡아야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고문과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의 희생자에 대한 사회 복귀 지원뿐만 아니라, 법적 지원과 보상을 제공해 주는 것은 정의롭고 공명정대한 국가 질서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효과적인 고문방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중요하다.

1. **효과적인 법률 체계** 구축하고 **완전한 이행**을 보장할 것, 고문 예방에 적합한 **안전장치**를 구비할 것- 예를 들어, 구금단계에서의 기초적인 안전장치(변호사, 의사, 판사에의 접근 등)와 피구금자의 외부교통권 보장
2. **통제 장치** 특히 구금 장소에 대한 **국가적 방문 장치**를 설립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 의한 **독립된 감시와 보고** 제공
3. 경찰관, 교도관, 변호사, 판사, 의사 등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 이외에도 각각의 개인은 소송, 홍보, 국제적 문서의 비준과 그들의 자국 내 이행을 위한 로비를 통해서 그리고 편지나 청원서를 쓰는 것 등을 통해 고문 방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NGO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원하는 것으로, 심지어는 단지 가족과 친구를 교육시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모두 우리 지역사회나 지방에서의 고문방지를 둘러싼 이슈들에 관해 **자각심을 일깨우는 것**에 공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들의 사건을 보고하거나 가해자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고문의 희생자들을 돕고 지원할 수 있다. 이 때, 그들의 문제가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알아두면 좋은 내용

1. 모범 사례

전 세계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고문과 관련된 관행들을 반대하게 하는 수많은 방안이 있다. 그러한 방안들은 고문 희생자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에게 육체적 정서적 사회복귀를 제공하며, 고문과 가혹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지닌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운용된다.

풀뿌리 행동 중심인 프로그램들도 많지만, 방지와 예방의 수단으로 지역 역량과 사회 지식을 세우는 작업을 하는 상의하달식의 프로그램들도 있다. 게다가 기관 역량 구축과 국제조약의 국가 인준, 필연적인 입법 제정과 시행, 훈련과 교육 프로그램은 고문과 가혹행위 방지에 관한 좋은 관행을 만들어 나간다. 각각 다른 단계는 국가와 국제 비준 및 실행 기준을 설정할 더 크고 더 일반화된 규모를 운영하면서 모범 사례를 촉진하는 독특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일주일의 어느 날 신문을 펼치세요.
그러면 당신은 세계의 어느 곳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의견이나 종교가 정부에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투옥당하고 고문받거나 사형되는 기사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신문을 읽는 사람은 무력함에 역겨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겨운 감정들이 공동의 행동, 무언가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공동의 행동을 이룰 수 있습니다."

Peter Benenson, 국제 엠네스티의 설립자

고문과 가혹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모범 사례:

- 풀뿌리 행동 중심- 지역 수준에서의 홍보, 로비, 인식제고, 교육적 활동
- 기관 설립과 역량 구축, 이미 존재하는 조직과 기관들에 영향을 주는 것, 이들을 재조직하거나 첫 단계에서 이슈들을 다룰 역량을 지닌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것

국가적 차원에서의 활동

오스트리아 인권자문위원회

유럽고문방지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1999년 설립된 오스트리아 인권자문위원회는 내무부 장관에게

제언을 하고, 오스트리아 경찰의 행위에 관한 구조적인 인권 문제를 다루는 보고서와 권고를 내고 있다. 오스트리아 인권자문위원회는 여섯 개의 인권위원회를 감독한다. 오스트리아 인권자문위원회는 감시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언제든지 사전통보 없이 오스트리아 경찰 구금 장소를 방문할 수 있다. 이는 경찰운영의 구금시설을 크게 개선하도록 이끌었다.

유엔 고문 방지 협약 선택 의정서의 비준과 함께, 자문위원회는 오스트리아 고충처리위원회에 통합되었다. 오스트리아 고충 처리위원회는 의정서에 따라 국가 적 예방 메커니즘으로서 고안되었으며, 국가의 공공 행정을 감독하는 독립적인 감시기구다.

(출처: Menschenrechtsbeirat - Human Rights Advisory Board, www.menschenrech\-tsbeirat.at)

국제적 차원에서의 활동

고문특별보고관 : 목표, 권한과 활동

전(前) 유엔인권이사회는 1985/33 결의에서, 고문에 관련된 질문들을 조사하기 위해, 그리고 해당 문제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특별보고관은 매년 인권이사회(위원회의 후신)에 그의 활동에 관한 포괄적 보고서를 제출한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고문의 발생 및 그 범위를 검토하고, 고문 근절 및 방지에 있어 정부를 돕기 위해 이에 관한 권고를 한다. 특별보고관은 해당 국가가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나라에서 그 권한을 발휘할 수 있다.

보고관의 권한은 세 가지 주요 활동으로 구성된다. (고문 혐의가 있는) 정부에 긴급히 호소하고 혐의에 관한 편지를 전송하는 것, 고문이 일회적이고 산발적인 사건 이상으로 많이 일어난다는 정보가 제공된 국가에 대한 진상 조사 임무(국가 방문)에 착수하는 것, 그리고 특별보고관의 활동, 권한 그리고 조사방법에 관해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 정례(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그 세 가지 주요 활동이다.

국제 조약에 따라 설립된 조약 감시기구와 달리, 특별 보고관은 고문의 위험(“긴급 호소”)에 연루된 개개 사건들과 고문이 행해졌다는 의심(“혐의”)에 대한 조치를 행함에 있어서, 가능한 국내구제절차의 이행 완료를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2010년 11월 이래 유엔 고문 특별 보고관은 아르헨티나 출신 후안 멘데스씨다.

긴급 호소를 문의할 곳 :

고문특별 보고관
스위스, 제네바 10 CH-1211, 제네바 유엔 사무소, 인권 고등 판무관 C / O 사무실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c/o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CH-1211 Geneva 10Switzerland
이메일 : urgent-action@ohchr.org

(출처: 고문과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http://www.ohchr.org/EN/Issues/Torture/SRTorture/Page/SRTortureIndex.aspx)

고문방지와 비인격적이거나 모욕적 처우나 처벌 방지를 위한 유럽위원회 (CPT,[11])

CPT는 1987년에 채택된 고문 및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방지에 대한 유럽 협약에 따라 만들어졌다. CPT는 협약이 발효된 때인 1989년에 활동을 시작했다.

회원

47개 유럽 국가(터키, 러시아 연방과 남부 코카서스의 국가를 포함한 모든 유럽 이사회 회원국)가 유럽고문방지위원회(CPT)의 회원이다. 2002년 3월 이후로는, 유럽 평의회 비회원 또한 각료위원회의 초청에 의해 가입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의사, 변호사, 경찰 문제 및 감옥에 대한 전문가와 인권 전문가 등 다양한 직업적 배경을 갖춘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의 수는 곧 협약 당사국 수와 동일하다.

위임 사항

위원회는 고문과 관련된 이슈 뿐 아니라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이르는 모든 상황을 다룬다. 위원회는 현지 조사를 수행하고,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처우에 대해 조사한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CPT)는 경찰서, 교도소, 정신 병원과 다른 모든 구금 시설, 예를 들어 국제공항 환승 지역에 있는 불법 이민자와 망명신청자의 숙박시설 같은 시설들을 조사한다.

작업 방법

위원회는 모든 당사국에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상황에 따라 특별 방문을 하기도 한다. 그 조사결과는 권고안이 담겨있는 관련 국가의 기밀 보고서에 기록된다. 위원회의 신뢰도를 위해서는, 방문 도중 및 보고서 초안을 잡고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기밀유지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기밀유지의 원칙은 정부와의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허용함과 동시에, 유럽고문방지위원회(CPT)의 국제적 위상을 성공적으로 강화하기도 하였다. 추후 동의하에, 보고서가 출간될 수 있다. 이 보고서에는 관련 정부의 입장이 담길 수도 있다. 러시아 연방을 제외하고, 출

간에 대한 동의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가능한 제재

만약 국가가 협조하지 않거나 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유럽고문방지위원회(CPT)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CPT)는 지금까지 6차례 이 권한을 행사하였다(1992년과 1996년의 터키, 2001, 2003년과 2007년의 러시아의 체첸 공화국, 2011년의 그리스).

유럽고문방지위원회(CPT) 방문 및 보고서

2012년 1월 1일 현재, 위원회는 314회의 국가 방문(190회의 정기적인 방문과 124회의 특별 방문)을 실시하고 263차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출처 : 고문 및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방지에 대한 유럽위원회(CPT), http://www.cpt.coe.int)

비정부기구(NGO) 차원에서의 활동

1997년 유엔은 6월 26일을 고문 피해자 지원의 날로 선포하였다. 그 이후로 줄곧 CINAT(Coalition of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gainst Torture)와 같은 고문 방지와 금지를 위한 전 세계적 국제 네트워크는 고문의 완전한 근절을 위한 국제 프로그램, 세간의 이목을 끄는 행사와 대규모 캠페인을 발전시켜왔다. 수많은 개인과 유명 인사들이 그러한 행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AI)

전 세계에 걸친 국제 엠네스티(AI)의 활동은 민간과 기관 둘 다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과 역량 강화 노력의 예이다. 1961년 5월 28일, 영국 변호사인 피터 베넨슨은 국제 엠네스티의 창설에 영감을 받아 "The Observer"이라는 영국신문에 "잊혀진 죄수들"이라는 기사를 발표했다.

현재, 국제 엠네스티는 런던의 국제 사무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지사를 두고 있다. 또한 국제 엠네스티는 150개가 넘는 나라와 지역에서 300백만 이상의 회원과 가입자, 정기 후원자를 두고 있다. 국제 엠네스티는 본질적으로 민주적인 운동이며, 4년 임기의 9명의 국제집행위원회 위원이 자치적으

11) 이하 "유럽고문방지위원회"라 약칭함

로 운영한다. 조직의 각 부문을 대표하는 대의원총회(International Council)에 의해 국제집행위원회 위원의 절반은 매 2년 마다 재선에 입후보하게 된다. 인권문제에 대하여 홍보하고 보고하는 것과 특정 인권 문제에 대하여 정부에 로비를 하는 것이 국제 엠네스티 활동의 전부입니다. 2000년 10월, 국제 엠네스티는 **고문방지를 위한 12개 핵심 프로그램**을 채택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고문을 방지하고 고문 발생을 근절시키는 메커니즘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국제 조약을 위한, 그리고 이러한 조약을 국가 내에서 제도화하기 위한 플랫폼이 되었다.

고문방지를 위한 12개 핵심 프로그램

국제 엠네스티는 고문 방지를 위한 12개 핵심프로그램을 구현할 것을 모든 정부에 요구한다.

1. 고문에 대한 공식 비난

모든 국가의 최고 당국은 전적으로 고문을 반대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만 한다. 그들은 고문이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법률 강제 집행자들에게 명확히 해야 한다.

2. 단절된 구금 제한

고문은 종종 희생자가 그들을 돕거나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던 외부 사람들과 연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다. 정부는 단절된 구금이 고문의 기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전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모든 죄수들이 구금 즉시 사법 기관에 회부되고, 친척, 변호사와 의사가 그들에게 신속하고 정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3. 비밀 구금 금지

일부 국가의 고문 피해자는 종종 "사라진" 후, 비밀 장소에서 고문을 받는다. 정부는 죄수가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장소에 수감되어 있는지 확인해야하고, 그들의 행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친척과 변호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4. 심문과 구금 중 안전장치

정부는 구금과 심문 절차에 대해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모든 죄수는 그들의 처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그들의 권리에 대해 즉시 고지 받아야 한다. 구금 시설에 대한 정기적이고 독립적인 방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구금에 대한 책임기관이 심문을 담당하는 기관과 분리되어야 한다.

5. 고문 보고서에 있어서의 독립 조사

정부는 고문에 대한 모든 불만 사항과 보고서가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조사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조사의 방법과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 진정인과 증인들은 위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6. 고문으로 얻어진 진술의 사용 금지

정부는 고문으로 얻어진 자백 또는 증거가 법적 절차에서 절대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7. 법률상 고문 금지

정부는 고문 행위가 형법에 따라 처벌 가능한 범죄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한다. 국제법에 따라, 고문 금지는 전쟁이나 기타 공공 비상 상태를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8. 고문혐의자들의 기소

고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법률의 제재를 받아야한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범죄가 어디에서 자행되었든, 가해자나 피해자의 국적이 무엇이든 이 원칙은 적용되어야 한다. 고문자들에게는 "안전한 피난처"가 없어야 한다.

9. 교육 과정

죄수의 구금, 심문 또는 처우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들의 교육기간동안 고문이 범죄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들은 고문에 대한 어떠한 명령도 거역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훈련받아야 한다.

10. 보상 및 재활

고문 희생자와 그 가족들은 재정적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 희생자들은 적절한 의료치료와 재활을 제공받아야 한다.

11. 국제 응답

정부는 고문 혐의로 기소된 정부에 탄원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채널을 사용해야 한다. 정부간 기구가 설립되어야 하며, 긴급하게 고문 보고서를 조사하고 고문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에 이 기구가 활용되어야 한다. 정부는 군사, 보안 또는 경찰 수송 또는 훈련이 고문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

12. 국제문서 비준

모든 정부는 개인의 제소권을 제공하는 국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선택 의정서는 물론, 고문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포함하는 국제문서를 비준해야한다.

2005년 4월 "'테러와의 전쟁'에서 고문방지" 캠페인 안에서 12개 핵심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였다. 관타나모만 구금 장소에서 열린 "테러용의자"의 증언들에 의해 "테러와의 전쟁"이 고문과 다른 형태의 가혹행위의 사용과 수용을 증가시켰다는 것이 밝혀진 후였다.

국제 엠네스티는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문서화하였다. 이러한 인권침해는 가해자들에 의해서 국가

안보와 반테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정당화 되었다. 이 문서는 2006년 국제 엠네스티의 "Counter Terror with Justice Campaign"을 이끌어냈다. 마지막으로 국제 엠네스티는 또 다른 전 세계적인 캠페인 "인권과 안보"를 시작하였는데, 이는 반테러와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정부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의 종언을 요구하는 운동이었다. (출처 : 국제 엠네스티, http://www.amnesty.org/)

고문방지협회(APT)

고문방지협회(APT)는 세계적으로,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국가당국, 국가 기관, 시민 사회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일하는 국제 NGO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유엔 고문 방지 협약 선택 의정서의 채택 및 구현을 위한 국제 캠페인의 최전선에 있고, 불법적인 고문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구금 장소 방문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면서, 국가적인 예방 체계에 대한 확립과 작용에 조언을 하고 있다. (출처 : 고문방지협회, www.apt.ch)

윤리 강령

1975년 도쿄에서, 세계의사회(WMA)는 **구금 및 징역의 관련된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의사 가이드라인 선언**을 채택했다. WMA는 명확하게 "의사는 고문이나 다른 형태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행위에 참여하거나 지지를 보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절차상의 희생자의 혐의가 무엇이든 간에, 희생자의 믿음과 동기가 어떻든 간에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내전이나 분쟁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그러하다." 상당수 다른 국가 의료 협회에서도 고문과 가혹행위에의 의사 참여를 반대하는 자신들의 윤리 강령을 자세히 밝혔다. (출처 : 세계의사회: www.wma.net))

2. 트렌드

- 쇠고랑, 족쇄, 나사, 채찍 및 전기 충격 기술과 같은 고문관련 도구 무역은 지난 몇 년 동안 극적으로 증가했다. 국제 엠네스티의 2001년 "고문 무역 중지"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 충격 장비를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나라의 수가 1980년도 30국가에서 2000년도 130국가 이상으로 증가했다. 고문방지 전직 특별 조사관 Theo ban Boven의 계획에 따라, 2005년 유럽 연합(EU)은 고문 기구 무역을 금지시키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0년 3월 국제 엠네스티와 오메가 연구 재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유럽 국가들이 고문 또는 가혹행위를 위해 만든 장비를 계속해서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체코 공화국은 경찰과 보안군이 고문 및 다른 형태의

가혹행위에 고문 장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6 개국에 족쇄, 전기 충격 무기와 화학 스프레이에 관한 수출 라이센스를 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독일은 쇠줄과 화학스프레이를 위한 라이센스를 발행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고문기구 공급자들은 수감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5만 볼트 전기 "수갑"과 "소매"의 판매를 홍보했다.

- 현재, 감옥 인구는 거의 모든 세계에서 증가하고 있다. 유사하게도 여성과 청소년 수감자의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218개의 독립 국가와 종속 영토에 수감된 죄수의 세부사항을 제공하는 교도소 연구 국제 센터에 의한 최근 세계 감옥 인구 목록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형사 기관에 9,800,000명 이상이 수감된다. 이러한 높은 수감자의 수로 인해 심화 교육, 인권 인식 증진, 더 많은 재원이 필요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교도소 직원과 관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다.
-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말은 정부에 의해 인권 보장을 제한하고 고문 및 다른 형태의 가혹행위의 절대적 금지를 무시하기 위한 명목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다수의 국가는 정보장교와 유엔 안전 보장군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심문 기술과, 국제법은 물론 대부분의 국내법에 따라 고문 또는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인 대우가 금지된다.

3. 연혁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금지 - 구성요소

1948 세계 인권 선언(UDHR) 5조

1949 제네바 4개 협약

1950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대한 유럽 협약 3조

1957 국제연합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규칙

1966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조항 7

1966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선택의정서

1969 미주인권협약 5조

1979 법 집행 공무원 행위에 대한 유엔 코드

1981 인간과 인민의 권리의 아프리카 (반줄) 헌장 5조

1982 포로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한 수용자의 보호를

건강 인사, 특히 의사의 역할과 관련 의료 윤리의 원칙

1984 대한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나 처벌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 (CAT)

1985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나 처벌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

1985 고문 방지 및 처벌에 대한 미주 협약

1987 고문 및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나 처벌의 방지를 위한 유럽 협약 (ECPT) 유럽 고문 방지위원회 설립(CPT)

1990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한 유엔 규칙

1992 고문 방지 및 처벌에 대한 미주 협약

1994 사람의 강제 실종에 대한 미주 협약

1998 국제 형사 재판소의 규정

2002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를 위한 유엔 협약 선택의정서 (OP-CAT) 고문 방지 소위원회 설립 (SPT)

2006 강제 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 (CPED)

추천 활동

활동 I : 테러리스트는 고문해도 되는가?

Part I : 소개

특히 2001년 9월 11일 사건 이후에, (의심받는) 테러리스트 및 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고문은 열띤 토론거리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의견과 관심을 표현해 왔다.

여기 제시된 토론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찬반의 논점을 알 수 있다. 인권의 원칙 틀에서 의견들을 분석하고, 다양한 다른 관련 주제들을 토론해 보자.

활동유형 : 토론

토론할 쟁점 :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범죄가해자들이나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고문이 허용될 수 있는가?

PART II : 토론에 대한한 일반적인 정보

목표와 주제 :

- 의견을 형성하기, 의견을 나누기, 변호하기;
- 민주사회에서 고문 관련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이에 관한 인식을 상승하기;
- 인권, 법에 의한 지배와 규범들이 복잡한 문제들을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는 인식 틀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대상그룹 : 청장년, 장년

그룹크기 : 10-12명

소요시간 : 90-120분

준비사항 :

- 최근 지역적, 국제적 신문의 기사와 사진을 스크랩한다. 그리고 고문방지에 관한 국제적, 지역적 인권 기준을 수집해서 복사한다.

- 참가자들에게 주제와 관련된 문제들을 가져오도록 요청한다.
- 혹은 Wolfgang Daschner 사건에 대한 판결을 검토할 수 있다.

교구 : 색카드, 준비된 재료 복사본, 보드나 종이, 마커

관련 기술 :

- 비판과 논쟁기술을 키움
- 의사소통 기술
- 의견갈등 조정 기술

토론 수칙 : 토론 전 참가자들에게 자신만의 수칙을 만들 것을 요청한다. 모든 구성원들이 제안된 수칙에 동의하고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토론수칙을 보이도록 게시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수칙에 대해 상의한다.

조력자들은 다음 수칙들이 참가자들이 고안한 수칙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한 번에 한 사람만 말해야 한다.
2. 구성원들은 만족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을 때 공손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를 고안해야 한다.

Part Ⅲ : 토론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

주제에 대한 소개 : 주제를 소개하기 위해 간단하게 신문 스크랩, 공무원에 의한 모순된 진술, 테러와 고문방지에 관련된 법률규정이나 인권관련문서를 간단히 설명한다.

구성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보편인권원칙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고려사항들을 고려하며, 이러한 법률규정이나 인권관련문서에 대해 찬반 토론을 한다.

토론 과정 : 토론을 진행할 때, 상대를 존중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민감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참가자들이 자신의 논의나 태도가 부적합하다거나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참가자들이 스스로가 가져온 토론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정리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소그룹에게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45분). 참가자들이 자신의 논점을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토론을 시작한다. 참가자들은 방의 왼편(찬성)이나 오른편(반대)에 선다.

모두가 제시된 논의의 입장에 동의하는지 물어본다. 그리고 그룹이 문제에 대한 접근법, 이해와 그들의 입장에 대한 근거를 대며 그 차이를 논의하도록 한다(45분에서 60분 사이).

피드백 : 토론이 끝난 후 모든 참가자들에게 빨강, 초록 카드를 배부하라. 그리고 토론내용이나 토론구성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적도록 하라. 마지막으로 카드를 크게 읽고 이 내용에 대해 반성할 시간을 주어라. 참가자들이 벽이나 보드에 카드를 핀으로 고정하도록 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다.

방법론적 힌트 :

- 토론이 과열되거나 통제되지 않을 때 5분 타임 아웃제(진정시킴)를 필요하다면 사용하라.
- 분위기가 혼란스럽거나, 참가자들이 분노할 때에는 침묵 속에서 이를 성찰할 수 있도록 하라.
- 논쟁을 요약하고 중재하며 그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라. 대놓고 한 쪽 편을 들지 않도록 하라.

응용을 위한 팁 : 만약 당신이 토론의 내용을 구조화하기를 바란다면 당신은 "고문의 사다리"라고 불리는 유인물을 줄 수 있다.

- 누군가 폭탄을 설치하였으며 이를 인정하였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고문해야만 한다.
- 누군가 폭탄을 설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찾기 위해 고문해야만 한다.
- 누군가 폭탄을 설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과 밀접하다. 우리는 폭파범의 계획을 알기 위해 그 친구/친척들을 고문해야 한다.
- 누군가가 폭파범과 동일한 정치관을 공유하는 다른 누군가를 고발한다. 우리는 폭파범을 지지하는 다른 사람들을 알아내기 위해 그 정치적 협력자를 고문해야 한다.
- 누군가 용의자가 어디에 있는지 경찰에 말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다른 사람이 같은 일을 감히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 사람을 고문해야 한다.

만일 여러분이 이 유인물을 사용한다면, 이는 우리가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도록 한다. 고문은 어느 상황에서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출처 : Flowers, Nancy; et al. 2000. *The Hu|-man Rights Education Handbook. Effective Practices for Learning, Action and Change.*)

PART Ⅳ:: **후속활동**

관련 권리 및 더욱 탐색할 영역들 : 생명권, 사형, 인간 안보

활동 Ⅱ : 고문 반대 포스터

Part I: 소개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형태가 항상 명백하게 분명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이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해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이 활동을 통해서 참가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바꿀 수 있도록 장려된다.

활동유형 : 창의적

Part Ⅱ: 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목표와 주제 : 복잡한 문제에 대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을 발전시키기, 주제의 복잡성을 보이기.

대상그룹 : 청소년, 성인

그룹크기 : 10-20명으로 구성된 그룹 4, 5개

소요시간 : 120분.

준비사항 : 주제에 대한 자료와 사진 수집한다.

고문방지에 대한 국제적, 지역적 인권관련 기준을 복사본을 준비한다.

교구 : 플립차트나 종이, 고문희생자의 충격적인 사진이나 이야기

관련기술 : 창의적인 생각, 창의적인 생각의 실현

Part Ⅲ: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주제에 대한 소개 : 활동 전 브레인스토밍 활동으로, 참가자들이 고문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하도록 한다. 가장 흥미로운 의견들을 플립차트나 보드에 기록한다.

활동과정 : 그룹을 4-5명으로 구성된 소그룹으로 나누고 수집한 재료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는다.

사진을 보거나 자료를 읽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준다.

각 그룹에게 큰 종이차트를 나누어 주고 주어진 사진과 자료를 선택하거나 스스로 그러한 자료를 만들어서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고문을 방지하는 포스터를 만들도록 한다.

마지막 45분 동안, 전체 그룹이 포스터에 대해 발표한다. 참가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감정까지 말하도록 한다.

피드백 : 참가자들이 번갈아가며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그들의 경험을 묘사하도록 권유한다. 두 번째 단계로, 참가자들에게 제일 좋았던 점이나 충격적이었던 교육이 있었는지 물어볼 수 있다.

방법론적 힌트 : 당신과 함께 작업하는 그룹에 따라, 고문 사진이나 자료의 충격적인 세부사항을 보이는 데에 있어 주의하도록 한다.

Part IV: 후속활동

국제 엠네스티나 기타 경력 있는 지역 운동가가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여, 이를 토대로 새로운 그룹을 조직하고 새로운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라.

관련 권리 및 더욱 탐색할 영역들 : 생명권, 사형, 인간 안보

참고자료

Amnesty International. 2011.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2011. The State of the World's Human Rights.* London: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2011. *Security with Human Rights*. London: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and Omega Research Foundation. 2010. *From Words to Deeds. Mak|-ing the EU Ban on the Trade in 'Tools of Torture' a Reality.* London: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2003. *Combating Torture: A Manual for Action.* London: Am\-nesty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PT). 2011. *Annual Report 2010* Geneva: APT.

Associa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PT). 2008. *Visiting Places of Detention. What Role for Physicians and other Health Professionals?* Geneva: APT.

Associa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PT). 2004. *Monitoring places of detention: a practical guide.* Geneva: APT.

Associa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PT). 2002. *Torture under International Law – Compilation of Standards.* Geneva: APT.

Burgers, J. Herman and Hans Danelius. 1988.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orture - A Handbook on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Dor\-drecht: Martinus Nijhoff Publishers.

Coyle, Andrew. 2002. *A Human Rights Ap|-proach to Prison Management - A Handbook for Prison Staff.* London: International Center for Prison Studies.

Danner, Mark. 2004. *Torture and Truth: America, Abu Ghraib, and the War on Terror.* New York: New York Review of Books.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1999. *Case of Selmouni v. France.* Judgment of 28 July 1999. Strasbourg.

Evans, Malcolm D. and Rod Morgan. 2001. *Combating Torture in Europe: The Work and Standards of the European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CPT).*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Evans, Malcolm D. and Rod Morgan. 1999. *Protecting Prisoners - The Standards of the European Committee for the Protection of Torture in Contex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Evans, Malcolm D. and Rod Morgan. 1998. *Preventing Torture - A Study of th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nd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Flowers, Nancy; et al. 2000. *The Human Rights Education Handbook. Effective Practices for Learning, Action and Change.* Minnesota: Human Rights Resource Center of the University of Minnesota.

Giffard, Camille. 2000. *The Torture Reporting Handbook.* Essex: Human Rights Center of the University of Essex. 9 3 PROHIBITION OF TORTURE **Human Rights Watch. 2010.** *"No Questions Asked". Intelligence Cooperation with Countries that Torture*. New York: Human Rights Watch.

Human Rights Watch. 2005. *Torture: A Human Rights Perspective.* New York: The New Press.

Kellaway, Jean. 2004. *The History of Torture & Execution: From Early Civilization through Medieval Times to the Present.* London: Mercury Books.

Murray, Rachel et.al. 2011.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Niyizurugero, Jean Baptiste (ed.). 2003. *Preventing Torture in Africa.* Geneva: Associa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ODIHR). 2009. *The Fight against Torture: The OSCE Experience.* Warsaw: OSCE/ODIH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2002. *Fact Sheet No. 4 "Combating Torture" of the Human Rights Fact Sheet series.* Geneva: OHCHR.

Popovic, Sabina. 1999. *Torture, Consequences and Rehabilitation. A Manual.* Sarajevo: CTV.

Rodley, S. Nigel. 2000. *The Treatment of Prisoners under International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The Guardian. 3 January 2007. *FBI files detailed Guantánamo Torture Tactics.* Available at: www.guardian.co.uk/world/2007/jan/03/guantanamo.us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2011. *2010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Washington: U.S. Department of State.

추가정보원

Amnesty International: www.amnesty.org

Amnesty International UK, Testimonies: www.amnesty.org.uk/contentasp?CategoryID=2039

Amnesty International USA: www.amnestyusa.org/stoptorture

Associa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www.apt.ch

Boltzmann Institute for Human Rights, Atlas of Torture: www.atlas-of-torture.org

Canadian Centre for Victims of Torture: www.ccvt.org

European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nd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www.cpt.coe.inten

International Rehabilitation Council for Torture Victims: www.irct.org

King's College London, International Centre for Prison Studies, World Prison Population List: www.kcl.ac.uk/depsta/law/research/icps/downloads/wppl-8th_41.pdf

No Torture: http://notorture.ahrchk.net

Stop Torture Campaign: web.amnesty.org/pages/stoptorture-index-eng

United Nations Committee against Torture: www2.ohchr.org/english/bodies/cat/index.htm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www.ohchr.org/EN/Issues/Torture/SRTorture/Pages/SRTortureIndex.aspx

United Nations Subcommittee on Preven\-tion of Torture: www2.ohchr.org/english/bodies/cat/opcat/index.htm

World Organisation against Torture:

www.omct.org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POVERTY

불평등의 감소

지속가능한 생계

자원에의 접근

참여

품위있는 생계수준

>> 모든 사람에게는 [...] 사회 보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 자신의 존엄성과 자신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권리들을 실현할 자격이 있다. <<

>> 모든 사람에게는 일할 권리가 있다[...]. <<

>> 모든 사람에게는 의식주와 의료와 필요한 사회 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복지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

>> 모든 사람에게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세계인권선언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1948.

사례

"풍요의 땅에서 굶주림으로 죽어가다"

작물이 흉작을 맞고 일거리도 없었을 때, Mundiar의 마을 사람들은 정글에서 음식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대신에 그들은 풀을 발견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름동안 마을의 60가구가 보통 소의 사료로 사용되는 사마를 먹으면서 그럭 저럭 지냈다. 그러나 인간은 풀을 먹도록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다. 곧 마을사람들의 볼은 점차 홀쭉해져갔고, 그들은 허약해졌다. 마을사람들은 변비와 무기력을 호소했고 결국 죽어가기 시작했다.

마을 주민인 Murari는 그의 전 가족이 천천히 쓰러져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그의 아버지인 Ganpat,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그의 아내인 Bordi가 죽었으며 나흘 뒤에는 딸을 잃었다.

한때 빽빽한 푸른 숲으로 뒤덮였었으나 지금은 가뭄으로 황폐해진 북부 인도의 외딴지역 전역이 이와 같은 상황이다. 지난 두 달 이상, Sahariya 부족 공동체의 40명 이상이 굶어죽었다. 약 6천만 톤의 잉여곡물이 현재 정부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어떤 기준에 의하든 간에 이는 매우 거대한 양의 음식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Mundiar나 남동 Rajasthan에 있는 다른 좀 더 먼 내륙 마을 어디에도 이 음식들이 도달하지 못했다.

공식적으로 인도의 누구도 굶주리지 않는다. 공공 배급 시스템 하에서 빈곤선 아래로 떨어진 마을 사람들은 배급 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들은 그 카드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아 정부상점에서 곡물을 살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Bhoyal에서 그 시스템은 붕괴되었다. 마을사람들에 따르면, 지역 촌장[마을 수장]이 모든 배급카드를 그들의 측근과 자신들의 카스트 구성원들에게 나눠준 것이다. 그는 또한 정부연금을 받도록 되어있는 과부의 이름을 지워버렸다. 정부상점 주인들은 값싼 곡물을 불가촉천민인 Sahariya들에게 팔기를 거절했다. 대신에 그들은 곡물을 암시장에 처리해버렸다. Sahariya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을 때, 상점 주인들은 자신들의 사기를 숨길 목적으로 그들의 배급카드를 채워 넣었다.

10억 이상의 사람들이 사는 인도는 세계에서 영양실조의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들 중의 하나이다. 인도 어린이의 약 절반이 영양결핍이다. 또한 거의 50%에 이르는 인도여성이 빈혈로 고생한다. 인도에 쌓여있는 광대한 양의 곡물은 버려지거나 쥐에게 먹힌다.

가장 고생하는 사람들은 바로 인도의 위계적인 카스트제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들이다. Baran 구역 인구의 30%에 달하는 그 부족 공동체 또한 역사적 부정의의 희생자들이다. 1947년의 독립 이전에 Sahariya들은 약간의 농작물을 키우고 사냥을 해서 생계를 이어갔다. 독립이후 관리들은 그들

을 정글로 몰아냈고 그들의 땅을 몰수했다. Sahariya들 농업노동자로서의 직업을 찾도록 강요받았다. 이번 여름 농작물이 흉작을 맞자 그들은 일거리가 없게 되었고 먹을 것이 없게 되었다.

"정치인들은 우리들에게 관심이 없다"고 Nabbo라는 50세의 한 여성이 야생 풀 씨앗인 사마로 만든 빵으로 저녁식사를 준비하면서 말했다.

(출처: Luke Harding. 2002. Dying of hunger in a land of surplus. Cast and corruption connive to keep food from India' poor)

토론할 거리

1. Baran에서 빈곤한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결핍과 취약함은 무엇인가? 이 문제들을 "인권침해로" 다루어보아라.

2. 이 경험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환기시키는가?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3. Baran에서의 빈곤의 상황을 당신의 국가/경험에서의 빈민의 상황을 비교하고 대조하라. 당신의 경험에서 빈곤의 이미지는 무엇인가?

4. 당신은 증가하는 빈곤과 인간 안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사례에서 묘사된 방법으로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이 인간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영향인가?

알아야 하는 내용 😐!?

1. 소개

비록 빈곤이 역사적 현상으로 보여져왔을지라도, 오늘날 빈곤이 드러나는 형태는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이는 인간들 간의 관계, 그리고 사회와 생산 요소 및 생산 과정 간의 관계의 본질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빈곤의 다양한 차원에 대한 정부와 World Bank, IMF, 또는 UN과 같은 국제기구의 관점들 또한 그 영향요인 중 하나다.

빈곤의 개념은 시간에 따라 발달해왔다. 예전에는 빈곤을 오로지 수입과 관계된 문제로서만 보아왔다. 하지만 현재 빈곤은 정책, 지리학, 역사, 사회의 특수성들과 밀접한, 그리고 이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차원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빈곤은 만연한 현상이다. 개발도상국의 빈곤의 특징으로는 기아, 토지와 생계자원의 부족, 효과적이지 못한 재분배 정책들, 실업, 문맹, 전염병, 의료서비스와 깨끗한 물의 부재 등이 있다. 선진국에서의 빈곤은 사회적 배제, 실업의 증가와 낮은 임금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의 빈곤과 선진국에서의 빈곤 모두 공평성, 평등, 인간안보와 평화의 부재 로 인해 존재한다.

빈곤은 세상이 제공하는 기회들에 접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 상황을 바꿀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다. 정치적 자유와 개인적 안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 결여된 것이다. 그들은 의사결정 과정이나 공동체의 삶에 참여할 수도 없다. 지속가능한 성장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도 빈곤한 이들이 기회를 부여받을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된다. 빈곤하다는 것은 곧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권력과 자원을 부정**받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빈곤한 자들은 계속 빈곤하게 남아있게 된다.

빈곤과 인간안보

빈곤으로 인해 인간안보가 직접적인 침해를 받을 수 있다. 심각한 식량의 불안정 및 사회적 불안정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이는 많은 사람들의 존재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폭력, 학대, 그리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발언권의 부재에 관한 문제를 더한다.

Amartya Sen은 국제적 공평함과 인간 안보를 위해 노력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공평함의 증진과 기본적 인간안보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변화와 관련된 행동에 대한 구체적 프로젝트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공공의 토론을 활성화하고, 이를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내는 것이 긴급한 과제이다. 갈등과 가치에 대한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이를 건강, 교육, 빈곤 근절 및 젠더불평등과 불안의 감소에 관한 탐구와 통합해야만 한다."

(출처: Human Security Commission. 2001. Report on the Second Meeting of the Commission on Human Security, 16-17 December 2001.)

빈곤은 결핍의 상태인 동시에 취약한 상태기도 하다. 국가 간에 그리고 국가 내에서 불평등과 차별이 늘어남으로 인해, 빈민은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침해당한다.

2. 정의와 설명

빈곤의 정의

빈곤에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다.

- **소득의 관점에서**, 한 사람의 소득수준은 정해진 빈곤선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만 그가 빈곤하다고 말할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은 빈곤 발생률을 줄이는 과정을 감독하기 위해 소득 빈곤선을 채택했다. 저소득 한계선은 특정한 양의 음식을 살 수 있을 만큼의 수입을 뜻한다.
- **UNDP 인간개발보고서(HDR)** 1997에 따르면, "빈곤은 인간발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기회와 선택-길고 건강하며 창의적인 삶을 살아갈 기회, 품위있는 생활수준, 자유, 존엄성, 자기 존중, 다른 이에 대한 존중 등을 향유할 기회-을 부여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다차원 빈곤 지표** (UNDP, 인간개발보고서, 2010)는 다양한 차원의 빈곤 (허약한 건강상태와 영양, 낮은 수준의 교육과 기술, 부적당한 생계수준, 나쁜 주거환경, 사회적 배제, 참여 기회의 결여)을 판별해내기 위한 지표를 사용한다. 다차원적인 빈곤지표는 좀 더 폭넓은 접근으로 경제에 기반한 방법을 보완하고 1997년에 공표되었던 인간 빈곤 지표를 대체했다.
- **인권의 관점**에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빈곤을 "적절한 수준의 삶과 다른 기본적인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향유하는데 필요한 자원, 역량, 선택, 안전과 권한의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박탈 등으로 특징지어진 인간상태"라고 보았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2002년, 가이드라인 초안: 빈곤 퇴치 전략에 대한 인권적 접근(Draft Guidlines: A Human Rights Approach to Poverty Reduction Strategies)에서는 빈곤을 "박탈의 극단적 형태"로 본다. 그 보고서는 오직 그러한 형태만 기본적인 빈곤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각 사회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회에서 기본적이라고 간주되는 공통의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적절하게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고, 예방가능한 질환 및 조기 사망을 피할 수 있어야 하고, 적절한 피난처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고, 기본교육을 수료할 수 있어야 하고, 개인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하고, 사법체계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수치심 없이 공공 앞에 나설 수 있어야 하고, 생계를 유지할만큼 돈을 벌 수 있어야 하고, 공동체생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빈곤을 지수화하고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논쟁은 꾸준히 있어왔다. 그러나 인간생활이란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빈곤은 정의하기가 어려운 문제로 남게 될 것이다. 취약성과 박탈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주관적인 것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세밀한 프레임으로 좁혀질 수 없다.

빈곤의 범주

빈곤현상은 특정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설명되고 이해된다. 한걸음 나아가서 우리는 빈곤의 정의에 포함된 단어들(예를 들어 사법체계, 취약성, 존엄, 안전, 기회 등)을 현실생활의 이슈들과 연관시키기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이는 빈곤의 다른 차원을 설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생계(Livelihoods) : 토지, 숲, 물에 접근할 수 없음 – 예를 들어 농촌지역에서 주정부삼림법들은 원주민들이 정당하게 소유한 사료와 음식을 모으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도시지역에서, 도시민들은 농촌 이주자들의 노동력은 원하지만, 농촌이주자들을 취약함과 불안정 속으로 몰아넣으면서 이들의 피난처나 건강, 교육의 필요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또한 인종주의와 인종에 기반한 차별로 인해 몇몇 공동체와 집단들은 생계수단이자 존엄하게 살 권리에 필수적인 천연자원에 접근하지 못하기도 한다. ☞ 일할 권리 / 차별금지

기본적 필요(Basic needs): 음식, 교육, 건강한 삶과 주거를 부정당함 – 예를 들어 물, 전기, 학교, 의료서비스의 상업화로 인해 필수적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여 빈곤층이 이러한 서비스를 누릴 수 없게 한다. 이 때문에 빈곤층은 그들의 빈약한 부동산을 팔고 인간의 기본적 필요 이하의 삶을 살도록 강요받는다. 이는 빈곤층에게 존엄하게 살 권리를 강탈하는 것이다. ☞ 건강권 / 교육권

사법체계(justice): 사법체계 그 자체 혹은 시기적절한 사법체계에 대해 접근할 수 없음 – 예를 들어 많은 나라에서 빈곤층은 그 높은 비용 때문에 사법체계에 접근할 수 없다. 빈민가, 소수 인종이나 소수 종교 출신인 젊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범죄의 손쉬운 용의자로 엮이기 쉽다. 가정폭력으로 경찰의 개입이 필요한 여성들이 있는데도, 이러한 문제는 곧잘 사적인 문제로 여겨지며 무시된다. 때때로 국가나 강력한 로비집단의 압력으로, 법정은 쫓겨난 사람들의 복직이나 노동자의 연금에 관계되는 사법적 문제를 지연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빈곤층의 생계가 어려워지기도 한다.

☞ 법의 지배와 공정한 재판 / 차별금지 / 여성인권

조직화(organization): 권한을 갖고 조직화하거나 부정의에 저항할 권리를 부정당함 – 예를 들어 빈곤은 노동자들이 더 나은 노동조건을 위해 조직을 만들 자유를 방해한다. ☞ 일할 권리

참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정당함 – 예를 들어 정경유착이 증가함으로 인해, 시민은 필수 서비스의 공급과 같은 공공의 사안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난민들에게는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부정당한다. 그들은 글을 읽을 수 없으며, 살던 곳에서 이동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 사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Roma족은 본질적으로 이주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선거명부에 등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때문에 투표할 수 없게 된다. ☞ 망명권 / 소수자 권리

인간의 존엄: 존중받고 존엄하게 살 권리를 부정당함 – 예를 들어 농촌지역에서, 무토지 소유자이거나 미미한 토지만을 소유한 토지소유자가 대부분인 계급, 인종이나 다른 소수자 집단은 적은 임금을 위해 자신들의 존엄을 타협하게 된다. 어린이들은 학교에 가는 대신에 쓰레기 분리, 가죽 무두질이나 농업과 같은 착취적 노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 아동인권 / 일할 권리

빈곤에 취약한 집단

비록 빈곤이 광범위한 현상이고 전세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여성, 아동,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된다.:

빈곤의 **여성화**는 개발도상국에서 중요한 문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남성 이주의 증가와 실업, 저임금노동체계를 가진 가내수공업적 수출지향 경제의 급증 등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는 노동자로 등록되지도 않고 급여도 지급받지 못한다. 여성들은 "유순한 노동력"으로서 여겨지기 때문에 노동자로서 경제의 많은 영역에서 남성보다 선호된다. 많은 지역사회에서, 여성은 토지, 물, 재산 및 기타 자원에 대해 소유권과 통제권을 지니지 못하며 자신들의 인권을 자각하는데 있어 사회적, 문화적 장벽에 직면한다. ☞ 여성인권

빈곤은 **어린이**가 인간으로서 그들의 잠재력을 실현할 기회를 부정하고 어린이들이 폭력, 인신매매 및 대부분 영양결핍으로 인한 유아사망에 취약하도록 만든다. 즉 높은 성인 대 어린이 비율은 소득빈곤의 부가적인 원인이다. 급속한 도시화의 진전과 함께 거리에서 사는 어린의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UNICEF에 따르면, 2010년 초등학령기의 6천 8백만 어린이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여러 형태의 착취를 받고 있다. 더구나 대략 1억 5천만 명의 어린이들(5세에서 14세의)은 아동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심지어 교육과 보건서비스의 상업화 증가로 어린이들이 많은 나라에서 기본적이고 헌법적인 권리를 빼앗긴다. ☞ 아동인권

장애인은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빈곤한 사람들에 속해있다. 빈곤은 이미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2차적 장애를 초래하기도 한다. 빈곤한 장애인들은 형편없는 생활조건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음식이나 물의 부족을 겪고 있고, 보건의료에 접근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UNDP는 전 세계에 장애를 가진 6억 5천만명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며 그 중의 80%는 종종 극도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겪으며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양상에 따르면, 단지 매우 적은 성인 장애인만이 임금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왜 빈곤이 지속되는가

고도로 발달된 서구 국가들의 정부는 세계 경제의 통치를 통제한다. 이들은 세계의 부의 분배로부터 최빈국이나 최빈민들을 배제하고 산업화된 세계에 부를 집중하는 무역과 금융구조를 용인하고 유지하는 것에 만족한다. 이것은 남북 간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흥미롭게도 선진국 내에서도, 개발도상국 내에서도 깊은 빈부격차가 존재한다.

World Bank의 **구조개혁프로그램(SAPs)**과 IMF의 안정화 패키지는 국가경제를 세계경제 시스템에 편입시킴으로써 고용, 수입, 부 및 경제적 발전을 위한 기회를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SAPs는 분배 시스템에서의 불평등을 다루지 않고 국가재정의 규율을 통해 빈곤을 근절하고자 함으로써 오히려 빈곤을 심화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개별국가들이 돈을 빚 갚는데 사용하고 보건, 교육, 피난처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등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서술될 수 있는 경제 경향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고 존엄하게 생계비를 버는 사람들의 권리에 해로운 수출을 위한 생산을 강조한다. 건강, 교육, 피난처와 같은 복지에 대한 책임에 대한 국가의 역행과 안전망의 부재는 빈곤층에 특히 영향을 비친다. 인플레이션, 고용 축소, 실질임금 저하는 빈곤층에게 또한 영향을 미치는 자산의 자유화와 사유화를 초래했다.

UNDP 2010년 인간개발보고서는 20세기 후반부의 서유럽, 북미와 오세아니아의 이미 부유한 국가들에서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아프리카에서의 지속적인 더딘 성장을 지적한다. 이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이다. 심지어 금융위기의 시기에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는 넓어졌다. 오늘 날 최부유국인 리히텐슈타인은 이제 1970년 가장 부유한 국가였던 미국보다 3배나 더 부유하다. 최빈국인 짐바브웨는 1970년 가장 가난한 국가(역시 짐바브웨)보다 25% 더 가난해졌다.

오늘날 세계인의 1/4은 사회 주변부에 갇혀 심각한 빈곤 속에 살고 있다. UNDP 2010년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대략 10억 4천 4백만의 사람들이 하루 1.25달러 이하로 생존하고 있다. 따라서 과정상의 진전을 검토해보았을 때, 우리는 데이터에서 주목할 만 한 경고 신호를 발견할 수 있다. 현재의 정책이 유지되는 경우, 유아 사망율 감소에 대한 목표는 실패하게 될 것이며 4천 7백만의 어린이들이 2015년까지 학교 밖에 남겨지게 되면서 초등교육 보장에 대한 목표 또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것이다. 안전한 식수에의 최대한의 접근과 기본 예방접종의 공급에의 관심에 대해서는 진전이 이루어진 반면, 읽고 쓰는 능력의 성취와 같은 목표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책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지 못하다. 2005년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8억 인구가 문맹의 상태이다. 주목해야 할 다른 이슈는 아동 사망률과의 싸움에 대한 약속이다. 이는 2005년 인간개발보고서에서 특히 강조된 과제다. 2002년 매 3초마다 한 명의 5세 이하의 어린이가 죽어간다는 통계가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의 아동사망률보고서(2010)는 2009년에 거의 810만

명의 5세 이하 어린이가 죽었다는(또는 22,000명 이상 어린이가 매일 죽어갔다는) 통계치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HIV/AIDS에 대항한 싸움에서 더 많은 것을 이루어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주제를 등한시하고 오히려 이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정책에 의해 가장 최악의 영향을 받은 몇몇 국가들은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를 성취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3. 문화적 관점 차이와 논쟁적 이슈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은 한 사람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또는 특정한 사회의 소비수준/삶의 공정한 기준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에 비해서 가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절대적 빈곤은** 최저 수준으로 여겨지는 것에 비해서 가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기준에 의해 절대적으로 가난하다고 범주화된 한 개인은 아프리카인들의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가난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

사회적 배제

사회적 배제는 종종 "상대적 빈곤"의 동의어로 사용된다. 그러나 그 개념은 같지 않다. 사회적 배제는 빈곤을 낳고 동시에 사회적 배제는 가난의 결과물일 수 있다.

토론할 거리

•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빈곤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가?

최빈개도국과 개발도상국에서의 높은 인구 성장률로 인해 해당 국가들에서 빈곤이 확산된다고 생각되곤 한다. 이는 이들 지역에서 빈곤의 근본원인이 되는 중심적 이슈에 대해 책임이 있는 정부들의 주장으로, 해당 이슈에 대한 관심을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다. 선진국은 상업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천연자원을 수탈하고 착취하고, 이는 자원에 대한 공동체 권리의 박탈을 초래한다. 또한 이로 인해 교육, 보건 및 물과 같은 기본적인 설비와 여성과 아동의 사망률과 유병률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설비에 할당할 자금이 부족해지게 된다. 그리고 자원 통제에 관한 분쟁과 전쟁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불안정성도 증가한다. 많은 빈민이 국가발전을 방해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국가발전을 방해하는 것은 정부들의 재분배정책이다. 정부는 공정하게 발전으로 인한 이익을 할당할 책임이 있다.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들이 천연자원 소비 및 환경 파괴에 대한 책임이 있단 것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 부자가 빈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소비를 하기 때문이다.

-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빈곤을 퇴치할 수 있는가?

빈곤은 빈민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삶의 방식을 선택하도록 내몬다. 예를 들어 연료의 부족 및 위생설비와 오물처리 시스템의 부재는 빈민이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선진국이 그들이 국제적으로 한 약속을 지켜야만, 즉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 효율기준을 도입하고, 국경을 가로지르는 자본의 움직임에 대해 거래세를 지불해야만, 빈곤의 상당한 감소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 빈곤 근절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다. 개발도상국가에서 모두를 위한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달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은 대략 매년 400억 미국 달러로 추산된다. 그것은 대략 2012년 미국 방위비의 5.6%에 해당한다. 이 자원의 대부분은 또한 국가정부와 다자간 은행(세계은행, 아시아 개발은행, 다른 은행들)에 의한 기존의 지출을 재구조화함으로써 마련될 수 있다.

만약 OECD 국가의 정부와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과 같은 국제기구가 기존의 부채를 탕감할 것을 결정한다면 빈곤 근절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일은 훨씬 쉬워질 수 있다. 이러한 부채는 지역사회 요구에 근거한 빈곤근절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정부의 구체적인 약속에 반하는 것이다.

만약 각 국가들이 부와 자원의 재분배 영역에서 급진적인 개혁에 착수할 것을 결정한다면, 그리고 만약 정부가 방위비 지출보다는 개발 지출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추산되는 비용은 훨씬 더 감소할 수 있다.

4. 이행과 모니터링

2000년 UN 새천년위원회 세션동안, 각국 정상들과 정부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인간존엄, 평등과 공평함의 원칙을 지켜야할 그들의 집단 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들은 2015년까지 성취되어야 할 **개발과 빈곤 근절을 위한 8개 목표**를 정했다. 이 목표들은 다음과 같다.

UN 새천년개발목표

목표 1. 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
목표 2. 보편적인 초등교육 달성
목표 3.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
목표 4. 아동사망률 감소
목표 5. 모성 보건 증진

목표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질병 퇴치
목표 7.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목표 8.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세계화와 그 영향은 새로운 형태의 빈곤을 만들어낸다. 더구나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빈곤은 사회의 사회•정치적, 경제적 발전의 수준에 따라, 해당 국가의 신념, 믿음과 종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 세계화의 효과는 인도에서의 효과와 매우 다르다. 아프리카의 사회 정치적, 경제적 조건은 인도와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와 지리적 지역 간의 이러한 분명한 차이점은 빈곤화와 사회적 주변화가 주는 위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대하여 영향을 미쳐왔다.

그러므로 이렇듯 **빈곤의 다양한 형태**를 **모니터링 하는 틀(framework)**을 전 세계적, 지역적 차원에서 더욱 발전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착취하는 세력에 대한 저항과 투쟁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키워야한다.

UN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은 권리와 의무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윤리적 틀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기에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인간 존엄성, 평화와 인간 안보를 보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인권에 대한 총체적 접근은 빈곤의 다차원성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접근은 자선 이상의 것이다. 이 접근은 **인권교육을 통해서** 빈민의 **역량이 강화**될 때에만 빈곤으로부터의 자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법적인 권리를 국가와 비 국가 행위자가 이를 수행할 법적 의무를 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시민의 인권을 실현하는 데에 있어 주요한 책임을 지는 것은 개별 국가들이기는 하지만, 다른 국가들과 비 국가 행위자들에게 또한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고 이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 이는 다자간 무역에 있어 공평하고 공정한 비보호주의 시스템을 확립하고 재정적 지원의 흐름을 적절히 하기 위해, 가난한 자들 또한 세계화된 세계에서의 발전 과정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가치**는, 리오 선언, 21 아젠다, 코펜하겐선언, 베이징 행동강령, 해비타트 아젠다와 같은 정치적 성명에서 잘 드러난다. 이 성명들은 빈곤을 근절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을 만들기 위한 국제적 개발 구조로 삼기 위해 여러 국가들이 고안한 것이다.

빈곤을 모니터링 하는 조약기구들

모니터링 기구들은 정기적으로 국가보고서를 검토하고, 진정을 받고, 국가와 경제기구들, UN 기구와 그 밖의 기구들이 빈곤 완화를 포함해 그들의 인권 기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권고나 평가를

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다양한 국가 당사자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에서 국내법에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의 지위의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법률이 국제인권 책무에 기초해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조약기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장애 요소로 꼽고 있다. 보고서들은 채무 부담, 분야별 데이터의 부재, 광범위한 국가 당국의 부패, 사법부를 위태롭게 하는 군부체제, 그리고 차별을 강요하는 견고한 보수적 종교 영향이 빈곤 퇴치 전략을 실행하는 데에 있어 방해가 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1990년 이후로 ICCPR과 ICESCR을 비준한 국가의 수가 비약적으로 늘었지만, 책무, 정책목적, 실질적인 이행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다. 정부의 정치적 의지의 결여, WTO와 같은 국제기구에 대해 비준한 상충하는 협약들(예를 들어 탐욕스런 기업을 만족시키기 위해 의약품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개인들의 건강하고 존엄한 삶에 대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 TRIPS), 그리고 다양한 책무를 실현하는데 있어 부적절한 자원 분배가 주요한 위협들이다.

특별 보고관과 독립 전문가

UN 인권위원회(2006년 인권이사회로 대체됐다)는 두 명의 독립 전문가를 고용했다. 한 명은 발전권의 이행에 대해 특별 실무그룹(special working group)에 보고하는 권한을 부여받았고(결의안 1998/72), 다른 한 명은 극도의 빈곤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고 권고안을 만드는 책임(결의안 1998/25)이 있다. **인권과 극빈에 대한 특별보고관**은 극심한 빈곤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인권을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해진 국가적, 국제적인 조치들을 평가한다. 그리고 극심한 빈곤에 살고 있는 남성과 여성에 의해 이뤄진 진전과 이들이 부딪히는 장애물을 조사하고, 빈곤의 감소와 근절을 위한 기술지원과 다른 기타 분야의 영역에 대해 제안과 권고안을 작성한다.

2001년 인권위원회에 보고된 인권과 극빈에 관한 보고서에서, 독립 전문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발견을 제시했다. 그러한 요건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권교육은 가난한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의 생활 여건을 바꾸도록 돕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인권교육 과정을 통해 가난한 사람이 직면하는 모든 상황과 현실에 관한 비판적 분석을 증진하고 강화할 수 있다. 이는 그들의 가난을 유지시키는 힘에 대항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역량을 제공한다. 또한 이는 빈곤의 완전한 근절과 모든 인권의 점진적인 실현을 요구하고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을 구축할 수 있게 하며 자조적인 네트워크를 창조할 수 있게 한다. 독립 전문가는 2004년 보고서에서 “2003년 한 해에만 쓰인 전 세계 군 예산이면 아프리카의 0~18세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학교를 세우는 비용과 15년 동안의 교사 임금을 커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보고서에서 독립 전문가인 Magdalena Sepulveda Carmona는 2006년 인권보호와 증진 소위원회가 작성한

초안 상의 극심한 빈곤과 인권에 대한 처리 원칙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개발과 빈곤 근절의 목표: 2015년까지 수입이 하루 1달러 이하인 세계 인구의 비율과 기아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기

진보를 위한 전략:

소득 빈곤

- 빈곤 퇴치에 주력한 국가주도 경제적 사회적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원 보장
- 기본적 사회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 빈곤 평가, 모니터링과 계획 수립에 대한 역량 구축 지원

기아

- 1996년 이래로 세계 식량 정상 회의가 취한 조치를 조사하고, 기아에 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내적, 국제적 차원의 새로운 계획 제안하기
-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계 무역시스템을 통해 식량, 농업무역정책을 비롯한 전반적인 무역 정책이 식량안보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할 것
- 소농에게 우선권 부여를 지속하고 저비용 단순 기술과 환경 의식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출처: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001. *Road map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

2008-2009년에 중대한 차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제가 침체되고 있고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 퇴치에 있어서의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모두 2015년까지 빈곤 퇴치를 이뤄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비록 진전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그 진전이 모든 국가에 고르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새천년개발목표의 목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어내지 못했으며, 거의 잊혀지고 있다. 여러 도전 과제들은 몇 몇 지역에서 그 진전의 속도를 늦추고 있으며 심지어 지금까지 성공을 이룬 지역에서의 성공도 무효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문제는 가장 심각하게 다가온다. 자연 재해에 의한 죽음이나 장애의 위험 및 경제적 손실은 전 세계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그러한 문제는 좀 더 빈곤한 국가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무력 분쟁은 여전히 인간 안보와 어렵게 성취한 새천년 개

발 목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대규모 난민이 그들의 삶을 개선할 기회를 제한당한 채로 캠프에 남아 있다. 2009년에 4천 2백만 명이 분쟁과 박해로 쫓겨났는데, 그들 중 4/5가 개발도상국가 출신이다.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는 새천년개발목표의 핵심이며 빈곤, 기아,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전제이다. 그러나 교육에서부터 정치적 의사결정에 대한 접근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진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출처: United Nations. 2010.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0.*)

알아두면 좋은 내용

여러 사람들의 운동과 NGO 및 지원 기구의 활동을 기반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한 합의란 빈곤한 사람들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개발을 위해서 토지개혁, 자원 및 생계 수단에 대한 빈민들의 소유권 및 통제권, 문해 능력, 교육, 보건, 피난처와 영양공급에 대한 기본적인 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무토지 소유자에게 땅 대신에 교배종 암소를 제공하고, 작물이 관개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회기반 시설을 마련하지 않고 농사용 땅 구입 전용으로 대출을 하도록 하고, 학교에 완전한 출석을 하게 하기보다 아동 노동에 유연한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효과가 없는 조치들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단지 빈곤을 영속화할 뿐이다. 정치적 의지와 재분배가 중요한 문제다.

지역적 수준, 분권화된 수준에서의 빈곤 근절 전략이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 오로지 빈곤한 사람들이 개발과정에서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참여할 때에야 공평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

빈곤 퇴치 분야에서의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경험으로부터 배운 구체적이고 공통적인 교훈:

- 빈곤은 경제적 이슈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이슈이다.
- 빈민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역량강화는 빈곤을 근절하는 방안이다.
- 소외된 사람들은 정보권과 인권교육을 통해 그들의 인권을 자각하고, 이에 관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
- 결사체를 조직해 빈민들의 집단적 힘을 강화함으로써 빈민들은 그들의 인권에 대해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역량강화를 통해서 빈민들은 또한 자원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들의 존엄과 자존감을 강화할 수 있다.

- 생계가능한 임금과 생계 자원에의 접근의 보장은 빈곤 퇴치의 핵심이다.
- 빈곤 퇴치는 불평등 퇴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인종주의와 민족, 사회적 지위에 근거한 차별 철폐, 그리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교육, 보건, 주거, 물, 위생과 식량의 알맞은 공급에 대해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을 퇴치할 수 있다.
- 세계화의 시대에서 국가 및 국가기관은 빈곤 퇴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국제적 및 국내적 개발 기구들과 재정 기구들이 지게 될 책임이 커지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즉각적으로 빈곤을 근절할 수 있는 국가들은 많지 않다. 그 노력은 국제적 지원과 협력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 부채 탕감은 빈곤 퇴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만약 부채 탕감이 교육, 보건 및 다른 영역들에 대한 투자에 연관되어 있다면, 빈곤 퇴치에 공헌하게 될 것이다.
- 전쟁과 분쟁은 빈곤을 증가시킨다. 진정한 평화와 안정의 상태에 대한 보장 없이 이뤄지는 빈곤을 근절 노력은 반드시 실패한다.

1. 모범 사례

가난한 이들도 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은 1976년 Jobra라는 작은 마을의 신용 사회에서 출발했다. 2009년까지 이 은행은 790만명에게 대출을 하였으며, 이 중 97%는 여성이었다. 이 은행은 2,562개의 지부를 지니고 있으며, 83,000개 마을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라민은행은 빈민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각 지역에서 자본을 축적하고 자산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목적은 금융기관이 방글라데시 교외의 가난한 남성과 여성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하여 대출업자들에 의한 착취를 근절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미활용된 혹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인적 자원들은 자영업을 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빈민들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직하여 상호지원을 통해 자립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것이다.

가장 큰 신용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는 이들에게 집중함으로써, 은행은 가난한 이들도 신용거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은행은 가난한 여성이 마주하는 성별과 빈곤의 이중부담을

다루고 있다. 그라민은행은 교외 지역에서의 생산 수단의 소유와 생산 상황의 양식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변화는 중요하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빈민들이 빈곤선 위로 올라왔을 뿐 만 아니라, 그 빈민들이 약간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마을 내에서 그들의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라민은행의 절차는 다른 이웃 국가에서도 시도되었다. 은행의 90%는 빈민들이 소유하고 있으며, 10%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기아로부터의 자유

Food First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기아를 야기하는 부정이를 척결하고자 한다. 모든 사람은 먹을 것을 구할 기본적 권리가 있으며, 그들 스스로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에 대해 실질적으로 민주적인 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단체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적 변화에 대한 가능성과 그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스스로의 힘을 깨닫게 하기 위해 조사, 분석, 교육, 옹호 활동을 한다. 이러한 활동은 근거 없는 믿음을 깨뜨리고 근본적인 이유를 노출시키며, 변화를 막는 장애물을 확인하고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할 방법을 논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 단체는 성공적이며 유망한 대안을 평가하고 공론화한다.

경제적 정의

부채해방연합(Freedom from Debt Coalition)은 필리핀에 기반을 두고 있다. FDC는 (양성 평등을 포함한) 평등, 경제적 권리와 정의, 평등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두고 인간개발을 위해 일한다. 그리고 정부가 적절한 역할을 하도록 압박을 가하며, 국가들 간의 이로운 경제적 관계를 위해 싸운다. FDC는 최빈국들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캠페인을 지원한다. 이 연합은 식량안보, 공공지출, 경제적 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여러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연합은 대중교육, 공적 정보, 대중동원, 정책 조사 및 분석, 동맹 결성, 지방 네트워킹에 있어 주요한 업무를 옹호하고 이를 통합한다.

코토누 협약(Cotonou Agreement)

코토누 협약은 개발도상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이루어진 가장 포괄적인 제휴협약이다. 2000년 이래로, 유럽연합의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지역(ACP)의 79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틀이 되어왔다. 협약의 54조는 식량안전보장만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인간안보와 인간지에 있어서 식량안전보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협약은 또한 인간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현재 유럽

연합의 개발원조정책에 있어서의 우선순위의 발전을 잘 보여준다. 코토누 협약은 2005년에 처음으로 개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2007-2013년 개발원조정책의 재정적 틀이 마련되었다. 협약의 두 번째 개정을 위한 협상은 2010년 결론을 맺었다. 2010년 6월 23일, 부르키나파소의 와가두구에서 공식적인 서명식이 열렸다.

유럽 반빈곤 네트워크(The European Anti-Poverty Network)

유럽 반빈곤 네트워크(EAPN)는 유럽연합의 회원국 내 빈곤 및 사회적 배제와의 싸움에 참여한 비정부기구 및 기타 기관들의 독립적인 네트워크로, 1990년 창설되었다. 현재에는, EAPN은 자원 봉사 기관과 23개 유럽 기관으로 이루어진 26개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다. EAPN 가입 기관은 빈곤 및 사회적 소외에 맞서 싸우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이에는 교육과 훈련, 복지서비스, 빈곤과 사회적 소외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참여와 자력화를 목표로 하는 기타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다. EAPN 가입 기관은 유럽연합의 중요한 안건인 빈곤과의 싸움을 선포하고자 하며, 유럽연합 수준에서 빈곤 및 사회적 소외 근절을 목표로 협력을 하려 한다. 게다가, EAPN은 유럽평의회에서의 협의지위를 지니고 있으며, 유럽사회NGO플랫폼(Platform of European Social NGOs)의 창립 회원이다.

국제사회복지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n Social Welfare)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는 사회복지, 사회개발 및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는 다양한 국가적, 국제적 회원 기구들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비정부기구이다. ICSW의 기본적인 목표는 전 세계적으로 (특히 빈곤한 이들의) 빈곤, 고난,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형태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ICSW는 음식, 주거지, 교육, 건강 및 안보에 대한 기본권 인정과 보호를 추구한다. ICSW는 또한 기회의 평등과 자기표현의 자유 및 복지서비스에의 접근을 추구하며, 정부,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 및 기타 기관의 제안을 이행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 협의회는 회원기관들 및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수준의 다양한 기관들의 네트워크와 협력한다. ICSW의 세계 회의는 매 2년마다 개최되며, 다양한 사회개발 및 사회적 복지 문제를 다룬다(최근 개최지는 2008년 프랑스와 2010년 홍콩이다). A Global Civil Society Forum는 UN 사회개발위원회 회의 직전에 뉴욕에서 매년 소집된다. 전 세계의 선구적인 정부 및 시민사회의 전문가들이 이에 참여한다.

UN 세계식량계획

세계식량계획은 세계의 기아와 맞서 싸우는 조직이다. 예를 들어, 2010년에 이 조직은 75개 국가의 1억 9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원조를 하였다. 이는 긴급 구조의 형태 및 기타 프로그램의 형태로 행해진다. 예를 들어 긴급 구조 이후 공동체가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도 있다. 아직 장기계획은 시작하지 않았다. 목표는 2010년 기준으로 9억 2천 5백만명에 달하는 기아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2. 트렌드

새천년개발목표를 향한 노력 - 여러 나라들이 그러한 궤도에 있는가?

많은 국가들이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지만, 일반적으로 최빈국들은 목표를 성취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2005년 UN 개발 보고서에서는 여덟 개의 새천년목표 중 네 개 목표–아동 사망률, 학교 등록률, 교육에서의 양성 평등, 물 및 위생에의 접근–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총 9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50개 나라들에서는 최소한 하나의 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해서 진전이 일어났다기보다는 오히려 퇴행하였다. 이 중 24개 국가가 사하라 사막 이남에 위치해 있다. 더 심각한 것은, 65개의 다른 국가도 2040년 이후까지 새천년개발목표 중 한 가지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12억의 인구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이 이 인구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2005. *Human Development Report 2005.)*

세계의 인간개발지수(HDI)는 1990년 이래로 18% 증가했다. 이는 기대 수명, 학교 등록, 문해 능력 및 수입에 종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진전으로부터 이득을 보고 있다. 1970–2010년 사이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92%를 차지하는 135개 국가 중 오직 3개 국가만이 1970년보다 더 낮은 인간개발지수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가난한 국가들은 부유한 국가들을 따라잡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수렴 현상을 토대로 볼 때, 우리는 제법 낙관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다만, 수입에 관련된 동향에만 초점을 맞추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가난한 국가들과 부유한 국가들 간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국가가 빠른 진전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가장 느린 진전을 보이는 나라들은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는데, 이 국가들은 HIV 전염병 때문에 고역을 겪고 있다. 그리고 구소련에 속해 있던 국가들에서는 성인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

(출처: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2010. *Human Development Report 2010.)*

유럽 2020 이니셔티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유럽 연합은 2020년까지 달성할 다섯 개 목표를 설정하였다. 고용, 혁신, 교육, 사회적 배제 및 기후와 에너지에 대한 목표들이었다. 특히, 이 목표들은 조기에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의 비율을 현재의 15%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고등 교육을 이수한 30-34세 인구의 비율을 31%에서 최소 40%로 증가시키며, 국가빈곤선 아래에서 살아가는 유럽인의 비율을 25%까지 감소시킴으로써, 2천만명의 사람들을 빈곤에서 탈출시키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회원국들은 각 영역들에서 자국 고유의 목표를 채택할 것이다. EU와 국가적 수준에서의 구체적인 행동은 이 전략을 뒷받침한다.

3. 연혁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 주요 규정과 활동

1948 세계인권선언,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1961 유럽사회헌장 (2012년 4월 기준 13개국 비준)
1965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2012년 4월 기준 174개국 비준)
1966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2012년 4월 기준 160개국 비준)
1979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2012년 4월 기준 186개국 비준)
1981 아프리카인권헌장 제14조-제17조, 제20조-제22조 (2012년 4월 기준 53개국 비준)
1988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미주인권협약 산살바도르 추가의정서 (2012년 4월 기준 15개국 비준)
1989 아동권리협약 제27조 (2012년 4월 기준 193개국 비준)
1992 세계 빈곤퇴치의 날이 UN에 의해 10월 17일로 공인되다. 첫 번째 기념행사는 파리에서 1987년에 열렸다.
1996 유럽사회헌장 개정(점차 1961년의 초기조약을 대체하기 시작하다. 2012년 4월 기준 30개국 비준)
1998 인권 및 극빈에 대한 독립전문가 임명
2000 유엔 총회 새천년개발목표 채택
2005 세계정상회의 "결과문"이 새천년개발목표와 빈곤근절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다(UN Doc. A/RES/60/1, paras. 17, 19, 4)
2010 새천년개발목표 2010 검토 정상회의 : 2015년까지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 채택

추천 활동

활동 I: “세계가 하나의 마을이라면”

Part I: 소개

이 활동은 국제 인권의 맥락에서 빈민들이 맞닥뜨리는 불평등과 박탈을 다루고 있다.

Part II: 일반적인 정보

활동유형: 훈련

목적과 목표: 참가자들로 하여금 부와 자원의 분배의 불평등 문제를 생각하도록 한다. 이 활동은 젊은이들이 빈곤과 인권의 향유와 관련하여 스스로의 위치를 되새겨보게끔 만든다. 이는 그들에게 빈곤 계층이 경험하는 불평등과 부정의를 시급히 변화시킬 필요성과 모두를 위한 발전을 위해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성을 깨닫는 기회가 된다.

대상그룹: 아동과 청년

그룹크기: 20-25명

소요시간: 90분

준비사항: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에 맞춰 유인물 사본을 충분히 준비해라.

교구: 유인물 사본(첨부함), 컬러펜/마카

관련기술: 분석 기술, 토론 및 성찰 기술

Part III: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지시사항:

유인물을 참여자들에게 나눠준다. 그리고 그들의 유인물에 지시사항대로 행하게 한다.

I. 참여자들에게 전체 세계 인구(7억)이 10명의 인구로 이루어진 상징적인 마을로 축소되었다고 상상해보도록 **요구한다.**

1. 첫 번째 줄의 사람들에게 숫자를 부여한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첫 번째 사람)부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열 번째 사람)까지 번호를 매긴다.

2. 세계인구의 50% (5명의 마을 사람들)은 영양실조이며, 굶주린 상태이다. 두 번째 줄의 마지막 5개의 밥그릇을 지운다.

3. 그들 중 여덟 명은 (세계인구의 80%) 수준 이하의 거주 지역에 살고 있다. 슬럼 거주자, 노숙자, 그리고 이주민과 난민 등이 이에 포함된다. 마지막 8개의 집을 지운다.

4. 전 세계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이들은 글을 읽을 수 없다. 네 번째 줄의 마지막 7개의 책에 지문을 찍어라.

5. 한 사람이 이 마을의 전체 부의 60%를 소유하고 있다. 즉, 나머지 9명은 남은 40%를 분배받아야 한다. 다섯 번째 줄의 돈 뭉치를 앞에서부터 여섯 개 지우고, 첫 번째 줄의 첫 번째 사람에게 큰 6을 표시해준다.

6. 전 세계 인구의 1%만이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다(이 활동에서는 첫 번째 컴퓨터의 1/10인 셈이다). 여섯 번째 줄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첫 번째 사람의 코에 색칠하라.

7. 전 세계 인구의 1%만이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일곱 번째 줄의 첫 번째 졸업생의 술에 동그라미를 쳐라. 이는 이 졸업생 그림의 1/10을 의미한다.

8. 이 유인물을 다시 보고,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수정하고 싶은지 확인하라. 새로운 평가에 동그라미를 두 개 쳐라.

II. 이제 참여자들이 다음의 문장을 듣도록 한다:

- 만약 당신의 집에 다음 식사를 위한 음식이 있고, 옷이 있고, 지붕이 있고, 잘 곳이 있다면, 당신은 저들 중 가장 부유한 세 사람에 속한다.

- 그리고 만약 당신(만약 당신이 미성년자라면 당신의 부모님)이 은행에 돈이 있고, 지갑에도 돈이 있고, 집에도 호주머니나 가방 속을 돌아다니는 동전이 있다면, 당신은 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

III. 교육, 건강, 물, 위생 및 군사 지출 등에 대한 **가장 최근의 통계를 제시하라.** UNDP의 인간개발

보고서와 세계은행의 세계개발보고서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때 이러한 보고서가 다루는 국가는 참여자들의 프로필에 따라 다르다.

IV. 피드백:

그룹이 다양한 통계를 보고 자신들이 느낀 것을 논의하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은 다음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 데이터가 강조하는 모순
- 그들의 현실과 통계가 일치하는지 여부
- 이러한 데이터와 현실과의 연결점 혹은 빈곤과 관련된 다양한 인권 침해
- 개발을 위해 설정한 목표와 우선순위, 그리고 그 설정 이유

실용적 힌트:

참여자들이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는 동안, 그들이 그들의 관점을 다른 이들과 나누도록 장려한다. 촉진자의 역할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토론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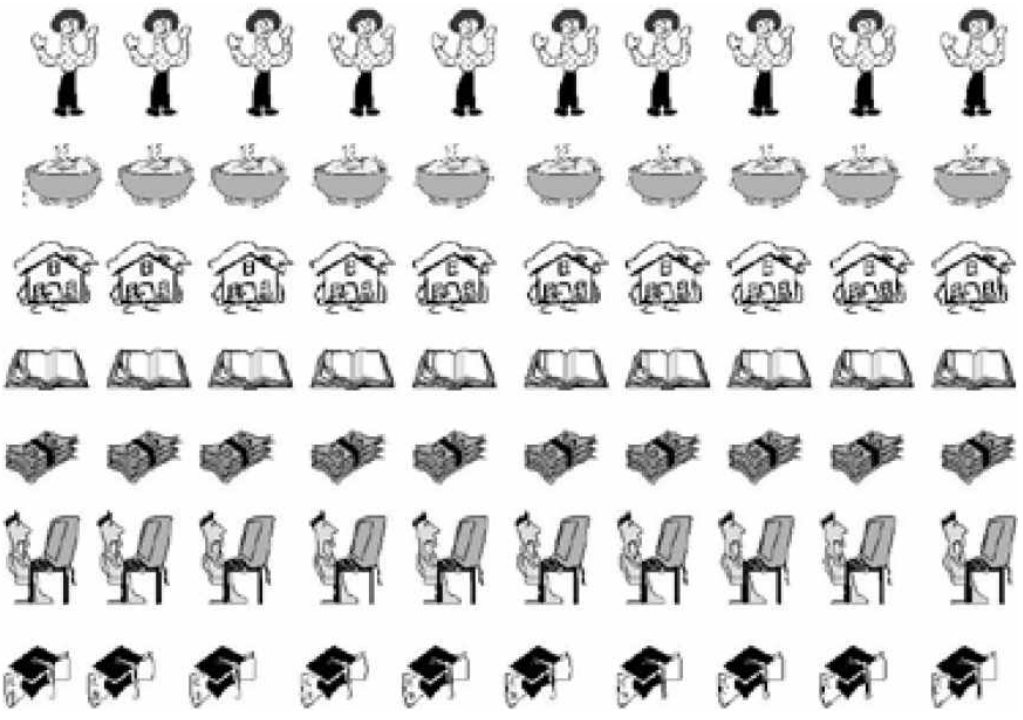

(출처: Abhivyakti – Media for Development. Available at: www.abhivyakti.org.in 에서 발췌)

Part IV: 후속활동

참여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동료를 자극하기 위한 위 활동에 기반을 둔 인권 교육 활동을 하기 위한 계획을 짜도록 한다.

활동 II: 캠페인 행동

Part I: 소개

사람들은 빈곤의 일반적인 본질이 매우 힘들다고 느끼며, 자신은 빈곤 근절에 책임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다. 이 활동은 빈곤과 관련된 지역 문제에 대해 캠페인을 펼치기 위한 것이다.

Part II: 일반적인 정보

활동유형: 창의적인 활동

목적과 목표: 참여자들의 직접적인 환경에서 빈곤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빈곤의 원인과 직접적인 영향을 전체적으로 탐구하고, 둘 사이의 관련성을 생각해보기, 참여자들이 특정 빈곤에 관련된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기

대상그룹: 성인, 청소년

그룹크기: 20명 이하. 각 그룹은 4-5명으로 구성될 것.

소요시간: 150분

준비사항: 플립차트, 마카, 페인트, 크레용, 펜, 사인펜, 대자보용지,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진, 이 장의 모범 사례 섹션에 제시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여러 인권 침해를 강조하는 사례들. 예를 들어, 정부가 다국적기업에 기본적 서비스를 사유화할 권리나 땅, 숲, 호수를 상업적 농업이나 어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넘기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Voices of the Poor” (www.worldbank.org)이나 다른 정보원에서 빈민들이 그들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도록 한다.

관련기술: 분석 기술, 표현 기술, 공감 능력 - 빈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능력

Part III: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지시사항:

-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한 빈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일부의 이야기를 읽는 것으로 시작한다.
- 참여자들이 절대적 혹은 상대적 빈곤이나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주변의 개인/집단/공동체에 대해 언급하도록 한다. 합의를 통해 그룹이 그들이 이 활동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례를 확실히 하도록 한다. 각 그룹이 4-5명의 구성원을 지니도록 참여자들을 나눈다.
- 특이한 빈곤을 보고한 자원자가 빈민의 역할을 맡고, 다른 구성원들은 해당 자원자와 이야기하도록 한다. 이는 개인의/지역사회의 삶에 있어서 다양한 차원(사회적/정치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 그룹 구성원은 빈곤의 문제와 빈곤의 차원, 직접적인 원인과 구조적인 원인을 나열한다. 그리고 누가 혹은 무엇이 이 상황에 영향을 주는지 탐구한다. 그룹은 인권조약의 적절한 조항에 이를 연결시킨다.
- 이제 그룹의 모든 이들이 그룹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다루는 인권 캠페인을 개발하도록 한다. 그리고 즉시 실행할 수 있는 활동과 장기적인 활동을 제안한다. 그룹은 그룹의 나머지 구성원들이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팜플렛/포스터/기타 형태의 캠페인 자료를 준비한다.

피드백:

다른 참여자들은 왜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정보를 탐색하고 이를 분 명히 하도록 하는 기회를 갖는다. 이 활동은 삶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 오해, 편견을 다룰 수 있도록 그 맥락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촉진자는 기회를 활용하여 빈곤/세계화에 대해 알려진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빈곤의 미시적-거시적 연결점과 관련된 이해를 요약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에서 어떻게 더 나아갈 지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도록 장려할 수도 있다.

Part IV: 후속활동

특정 빈곤 문제에 대한 캠페인을 다룬 영화를 보거나 소외된 지역사회와 일하는 NGO에의 현장 방문을 계획한다. 구성원들이 그들의 삶과 관련이 있는 NGO/지역 캠페인과 연합하도록 장려하라.

참고자료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ed.). 2003. *Critical Analysis of Urban Policies and Their Impact on Urban Poverty Eradication: A Review of Tools, Techniques and Practices.* New York: United Nations.

Focus on the Global South (ed.). 2001. *Profiting from Poverty. The ADB, Private Sector and Development in Asia*. Bangkok: Chulalongkorn University. Available at: http://focusweb.org/pdf/Profiting%20%20from%20Poverty.pdf

Goldin, Ian and Reinert Kenneth. 2006. *Globalization for Development: Trade, Finance, Aid, Migration, and Policy.* Washington, D.C.: World Bank Publications.

Haq, Mahbub-ul. 1995. *Reflections on Human Develop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Harris, John. 1994. *Poverty and Anti-Poverty Policy: A Perspective for SCF in the South Asian Region. Saro Briefing Paper No. 2.* London: Save the Children.

Hertel, Thomas and Alan L. Winters. 2005. *Poverty and the WTO: Impacts of the Doha Development Agenda.* Washington, D.C.: World Bank Publications.

Human Security Commission (ed.). 2001. *Report on the Second Meeting of the Commission on Human Security, 16-17 December 2001.* Available at: www.humansecurity-chs.org/activities/meetings/second/index.html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ternship Programme and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eds.). 2000. *Circle of Right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ctivism: A Training Resource*. Washingt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ternship Programme/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Khan, Azizur Rahman and Carl Riskin. 2001. *Inequality and Poverty in China in the Age of Globaliz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Luke Harding. 2002. *Dying of hunger in a land of surplus. Caste and corruption connive to keep food from India's poor*. In: The Guardian, 15 November 2002. Available at: www.guardian.co.uk/world/2002/nov/15/india.famine

Nayyar, Rohini. 1992. *Rural Poverty in India - An Analysis of Inter-State Differences*. Bombay: Oxford University Press.

People'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PDHRE) (ed.). 2002. *Passport to Dignity*. New York: PDHRE.

People's Movement for Human Rights Education (PDHRE) (ed.). 2002. *A Call for Justice:*

Resource Packet. New York: PDHRE.

Pernia, Ernesto M. 1999. *Urban Poverty in Asia. A Survey of Critical Issu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erry, Guillermo E., J. Humberto Lopez, William F. Maloney, Omar Arias and Luis Serven. 2006.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Virtuous and Vicious Circles*. Washington, D.C.: World Bank Publications.

Pogge, Thomas W. 2002. *World Poverty and Human Rights.* Oxford: Polity Press.

Sachs, Jeffrey D. 2005. *The End of Poverty. How We Can Make it Happen in Our Lifetime.* London: Penguin Books.

Sainath, Palagummi. 1996. *Everybody Loves A Good Drought.* London: Penguin Books.

Sen, Amartya. 2000. *Development as Freedom.* New York: Anchor Books.

Subramanian, S. 1998. *Measurement of Inequality and Poverty*. Bombay: Oxford University Press.

United Nations (ed.). 2010.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0.* New York: United Nations. Available at: www.un.org/en/mdg/summit2010/pdf/MDG%20Report%202010%20En%20r15%20-low%20res%2020100615%20-.pdf

United Nations (ed). 2002. *Capacity-building for Poverty Eradication: Analysis of, and Lessons from, Evaluations of UN System Support to Countries' Efforts.* New York: United Nations Publishing.

United Nations. 2001. *Road map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56/326 of 6 September 2001.* Available at: www.un.org/documents/ga/docs/56/a56326.pdf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2001. *Human Rights and Extreme Poverty, E/CN.4/2001/54 of 16 February 2001.*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ed.). 2010. *Human Development Report 2010.* New York: UNDP. Available at: http://hdr.undp.org/reports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ed.). 2005. *Human Development Report 2005*. New York: UNDP. Available at: http://hdr.undp.org/reports/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ed.). 1998. *Training Manual on Human Rights and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New York: UNDP. Available at: http://hdr.undp.org/reports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2010. *Report of the Independent Expert on the question of*

Human Rights and Extreme Poverty on the draft guiding principles on extreme poverty and human rights, A/HRC/15/41 of 6 August 2010. Available at: www2.ohchr.org/english/bodies/hrcouncil/docs/15session/A.HRC.15.41.pdf

United Nations World Food Programme (WFP). 2011. *Fighting Hunger Worldwide - the World Food Programme's Year in Review, 2010.* New York: United Nations. Available at: http://documents.wfp.org/stellent/groups/public/documents/communications/wfp236112.pdf

Watkins, Kevin. 1995. *The Oxfam Poverty Report*. London: Oxfam UK & Ireland.

Yanus, Muhammad et al. 1999. *Banker to the Poor: Micro-Lending and the Battle against World Poverty*. New York: Public Affairs.

추가정보원

50 Years Is Enough: www.50years.org

Agenda 21: www.un.org/esa/dsd/agenda21/

Beijing Platform for Action: www.unesco.org/education/information/nfsunesco/pdf/BEIJIN_E.PDF

Combat Poverty Agency: www.cpa.ie

Copenhagen Declaration: http://ec.europa.eu/education/pdf/doc125_en.pdf

Development Gateway: www.developmentgateway.org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http://dri.fas.nyu.edu/page/home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www.un.org/womenwatch/daw

ELDIS Gateway to Development Information: www.ids.ac.uk/eldis/poverty

Eliminating World Poverty: www.dfid.gov.uk/pubs/files/whitepaper2000.pdf

European Anti-Poverty Network: www.eapn.eu

European Commission, Cotonou Agreement: http://ec.europa.eu/europeaid/where/acp/overview/cotonou-agreement/index_en.htm#revision2

European Commission, Europe 2020: http://ec.europa.eu/europe2020/index_en.htm

European Year for Combating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www.2010againstpoverty.eu/?langid=en

Focus on the Global South: www.focusweb.org

Food First – Institute for Food and Development Policy: www.foodfirst.org

Freedom from Debt Coalition: www.fdc.ph

Grameen Bank: www.grameen-info.org/bank

Habitat Agenda: ww2.unhabitat.org/declarations/habitat_agenda.asp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ttp://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chapter=4&lang=en&mtdsg_no=IV-3&src=TREATY

International Council on Social Welfare: www.icsw.org/intro/recacte.htm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www.ilo.org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ww.imf.org/external/index.htm

Jubileesouth: www.jubileesouth.org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HCHR): www.unchchr.ch

OneWorld International Foundation: www.oneworld.net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www.oecd.org

"Our World is Not For Sale" Network: www.ourworldisnotforsale.org

PovertyNet: www.povnet.org

Rio Declaration: www.unep.org/Documents.Multilingual/Default.asp?DocumentID=78&ArticleID=1163&l=en

The Poverty Alliance: ww.povertyalliance.org

United Nations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www2.ohchr.org/english/bodies/cescr/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www.undp.org

United Nation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www.un.org/millenniumgoals

United Nations "Stand Up and Take Action against Poverty" Campaign:

http://standagainstpoverty.org/suap/

World Bank - Poverty Net: www.worldbank.org/poverty

인종차별금지

ANTI-RACISM AND NON-DISCRIMINATION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종차별과 제노포비아

불관용과 편견

>> 모든 사람에게는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입장이나 여타의 견해, 국적이나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이나 여타의 신분과 같은 모든 유형의 차별로부터 벗어나서,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

세계인권선언 제2조, 1948

사례

1960년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주(州) 투움바에 있는 경기장 관람석은 저명한 운동선수이자 시민이었던 E.S. Brown를 기리기 위하여 "E.S. 'Nigger' Brown Stand"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인종차별적이고 공격적인 "nigger"라는 단어가(이하 "그 공격적인 단어") 스탠드에 커다랗게 적혀 있다. 1972년에 사망한 Brown은 백인 앵글로색슨 출신이었고, 그 공격적인 단어를 별명으로 사용해 이는 그라운드 내 공개적인 방송이나 경기 중계 등에도 사용되었다.

1999년에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출신인 H씨는 경기장 이사회에 그 무례하고 공격적인 단어를 지우도록 요청했다. 그 공격적인 단어를 스탠드 위에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각을 고려하여, 이사회는 청원인에게 어떠한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시장과 경기장의 대표는, 지역 원주민 커뮤니티의 저명한 멤버가 주최하고 타 지역 원주민 커뮤니티에서도 참석하는 공적인 회의에서, "E.S. Nigger Brown이라는 이름은 위대한 운동선수를 기리기 위해서 스탠드에 남아있을 것이고, 인종적으로 폄하하거나 공격적인 단어들은 화해의 관점에서 더 이상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청원인은 연방 법원에 이사회가 그 공격적인 단어를 스탠드에 남겨둠으로써 1975년 만들어진 연방 인종차별금지법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공격적인 단어를 관람석에서 지우고 이사회가 사과하기를 바랐다. 연방법원은 청원인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그 결정이 어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개인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일반을 공격하고, 모욕하고, 경멸하고 위협할 가능성이 상당한" 조치라는 것을 청원인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했다. 결국, 위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법원은 연방인종차별금지조항은 "개인의 민감성(personal sensitivities)"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연방인종차별금지조항은 그보다는 "청원인이 속한 인종, 국적, 민족의 구성원을 다른 인종, 국적, 민족 구성원에 비해 차별적으로 대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만을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2002년, 오스트레일리아 고등 법원은 청원인의 신청을 기각했다.

유엔인종차별금지위원회(CERD)에서, 청원인은 그 단어가 영어 단어들 중 가장 인종차별적이거나, 아니면 가장 인종 차별적인 단어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와 가족들은 그라운드의 이 단어가 주는 상처로 인해,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이 풋볼 경기장의 경기들을 관람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1960년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현재 그 모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특히 원주민들에게 극도의 모욕이며, 이는 국제인종차별철폐협약(ICERD)의 인종차별의 제 1조의 정의에 범위에 들어가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협약의 모든 당사국은 인종차별을 영구화시키는 법을 개선하고, 인종차별을 유발하는 편견과 싸울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와 같은 공격적인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마치 그 단어를 사용해도 된다는 승인과 같아 인종차별을 영속화하고 인종차별을

유발하는 편견을 강화할 것이다. 이에 청원자는 이러한 공격적인 표현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법을 개정할 뿐 아니라 그 단어를 스탠드에서 제거하고, 사과하도록 요청했다.

유엔인종차별금지위원회(CERD)는 "그 모욕적인 단어의 사용과 그 지속이 비록 어떤 시기에는 그렇게 여겨지지는 않았지만 현재에 와서는 불쾌하고 모욕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특별한 운동선수에 대한 기억은 인종차별적일 수 있는 공적 표시를 전시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그 모욕적인 단어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조치를 위원회에 통보해 줄 것을 권고한다." 하였다. (출처: 유엔인종차별금지위원회. 2003년 4월 14일 No. 26/2002, CERD/C/62/D/26/2002)

토론할 거리

1. 이 이야기의 메세지는?

2. 어떤 인권이 침해되었는가?

3. H씨는 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였나?

4. 왜 법원은 그의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나?

5. 왜 지역 주민들은 그를 지지하지 않았나?

6. 왜 위원회는 청원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나?

7. 특정한 그룹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있나? 있다면 어떠한 편견인가?

8. 당신의 국가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을 들어본 일이 있나?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나?

9. 인종차별주의자들은 그의 행동이나 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어떠한 논리 구조를 사용하는가? 인종차별적 태도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논거가 적합할까?

10. 인종차별금지는 표현의 자유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알아야 하는 내용

1. 차별금지–평등을 위한 지속적이며 현재진행형인 투쟁

당신의 주변에 단 한 번도 차별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을 알고 있는가? 아마 그런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은 인권의 기본이며 이는 **각 개인의 고유하고 평등한 인간의 존엄성**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에는 평등과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 조항들이 있다. 모든 인간과 모든 국가에 대한 보편적 기준인 세계인권선언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입장이나 여타의 견해, 국적이나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이나 여타의 신분과 같은 모든 유형의 차별”을 금지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에 관한 평등과 차별 금지의 기본 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에 대한 자연권은 오늘날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인정되지 않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차별은 인류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문제되었다. 원주민과 소수자들은 에콰도르의 숲에서, 일본의 섬에서 그리고 사우스다코다에서, 유태인으로서, 원주민으로서, 그리고 집시로서 어디에서나 차별을 경험했다. 이주민, 피난민, 정치적 망명자 및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도 차별을 겪었다. 아이들은 학대와 괴롭힘을 당했으며, 여성들은 열등한 존재로 여겨졌고, HIV 바이러스 감염자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또는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은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다른 집단과 구분하는 우리의 언어에도 차별이 있다. 차별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모든 사람이 다양한 정도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주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차별을 야기하는 근원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우월감이며 차별은 이러한 우월감의 표출이다.

이 장은 가장 심각하고 파괴적인 차별의 형태에 속하는 인종 차별주의, 인종주의 그리고 외국인 혐오 및 편견과 관련된 태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은 "우수한 인종", "열등한 인종"이 존재한다는 잘못된 가정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종 "이라는 범주에 따라 계속하여 거듭 분류되어 왔다. “인종 우월성” 개념의 과학적 정당화하기 위해 찰스 다윈의 진화론과 적자생존 이론을 그릇되게 사용하여 온 것이 그 예가 된다. 차별과 인종주의는 인도의 카스트제도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 중국의 문화적 우월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세 인종주의는 전 세계적인 유태인 박해로 나타났다. 16, 17세기 스페인의 식민지 통치는 “신대륙”(남아메리카 식민국가들)에 인종주의적 계급 사회를 도입했고, 이 체제에서는 순혈주의가

최고의 원칙이었다. 이 체제의 희생자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과 아프리카에서 온 노예들이었다. 다른 식민주의 열강들도 이 구조를 받아들여 이를 그들의 식민지 사회의 기본원칙으로 만들었다. "신대륙"에서 "negro"라는 이 경멸적 단어는 백인의 "고귀한 인종"에 대조되는 "열등한 인종"인 노예 집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인종주의 이데올로기는 새로운 영역까지 확대되었다. 미국 시민전쟁 이후, 미국 남부 도시들에서는 KKK단(Ku-Klux-Klan)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테러가 자행되었다. 미국헌법 제14조는 모든 시민에 대한 법 안에서의 평등한 보호를 보장하고 있지만, 제도화된 분리정책("평등하되 분리된"의 원칙)이 196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20세기에는 인종주의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나타났다. 유럽에서 나치 정권의 인종혐오주의자들은 유럽의 유대인들에 대한 제노사이드를 감행하였다. 남아프리카 아파르트헤이트는 인종차별을 제도화하였고,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에서는 인종 학살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험들로 오늘날 많은 국가의 법률조항과 국제 협약들에는 차별 금지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인종", 피부색, 민족, 종교, 성별 및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권침해 중 하나이다.

☞ 여성인권 / 종교의 자유 / 소수자 권리

차별과 인간안보

인간안보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회, 선택을 훈련하고 확장할 수 있으며,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모든 종류의 차별은 사람들로 하여금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받지 못하도록 하며, 경제적, 사회적 불안을 낳을 뿐만 아니라 차별받는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기 존중, 자기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종주의, 인종차별 그리고 모든 다른 약자, 소수자나 이주민에 속하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심각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인권선언에서도 언급되었듯 모든 사람들에게 내재하는 존엄과 동등한 권리를 인지하는 것은 세계 자유, 정의 그리고 평화의 기본이 된다. 그러므로 "인종", 젠더, 장애, 민족, 종교, 성 정체성, 언어 또는 다른 어떠한 사회적 조건에 따른 차별을 극복하는 것이 인간안보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2. 정의와 설명

인종주의, 인종차별은 모든 인권의 향유에 대한 위협 및 장애물이 되며, **모든 인간은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자명한 진실**을 부정한다.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 편견 그리고 불관용과 같은 몇 가지 전문 용어들이 있다. 차별은 이러한 모든 요소를 포함한다. 논의에 앞서 차별의 두 가지 면을 비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태도와 행동: 신념 및 개인적인 견해의 측면과 이러한 태도와 신념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징후나 행동의 측면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 전자는 개개인의 마음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포함한다. 그러나 인종주의적이거나 외국인혐오적인 태도와 신념은 대부분 모욕, 언어적 폭력, 굴욕 또는 심지어 물리적인 공격이나 폭력 및 권리와 자유의 행사를 저해하는 차별적인 처우 등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종류의 행동은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법적으로 제재되는 차별로 규정될 수 있다.

차별의 가해자—국가 또는 개인: 두 번째 중요한 영역은 공격자 또는 행위자 영역이다. 전통적으로 국제적 인권 보호 체계와 법적인 차별금지 메커니즘은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데에 있었다. 따라서 주요 (긍정적, 부정적)행위자들은 항상 국가였고, 반면 개인에 의한 차별은 규제되지 않는 편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인종주의와 차별에 반대하는 국제적인 저항이라는 새로운 국면의 영향을 받아 최근에야 변화하였다. 차별에 대해 총체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차별 사건의 많은 경우가 사적· 비국가적 행위자에 의한 것임을 고려하게 된 것이다.

많은 집주인들이 이주민, 망명자 또는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대여해주지 않으려는 것이 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반차별주의적 규제가 사적 영역에도 적용되는 것은 여전히 많은 분란을 낳는다. 이로 인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이용과 노동 시장과 관련하여 민간 부문에서의 차별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에 의무를 부과하는 유럽 반인종주의 및 차별 금지 지침(the Anti-Racism and Anti-Discrimination Directives of the European Community)이라는 초석이 마련되었다.

인종차별

일반적으로 차별은, 동등한 권리 및 보호의 거부 또는 거절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구별, 배제, 제한 또는 선호 등으로, 이는 평등의 원칙을 부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공격하는 것이다. 차별적인 대우

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우리는 인종적 차별 또는 민족, 피부색, 젠더, 장애, 종교,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이라고 이야기한다.

모든 구별이 자동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구별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기반하는 한 이는 정당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경찰이나 군인 또는 공적 부문에서의 고용은 국민에게 제한되어 있지만, 이것이 차별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어떻게 "합리적인 기준"을 정의하는가이다. 이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며, 이러한 기준이 다른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 이러한 애매모호함은 왜 평등 처우의 원칙이 인권원칙에 있어서 가장 논쟁적인 것 중 하나인지를 설명해주는데, 이는 법 앞에의 평등이 항상 **사실적 평등**이나 **결과에서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원주민어를 사용하는 교육이 이러한 차이의 예이다. 왜냐하면 모든 학생들을 법적인 의미에서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학교가 특정한 모국어 수업을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여, 강의에 사용되는 언어를 잘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모국어 강의의 제공은 차별이 아니며, 소수자 그룹에 속하는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의 문화적 교육을 완전히 증진시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1965년 **국제인종차별철폐협약**(ICERD,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은 **인종차별**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정의**를 내렸고, 이는 차별과 관련한 다른 정의 및 계측의 기반으로 활용되었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의 1조는 "이 협약에서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 이행과 모니터링

차별의 세 가지 요소 :
일반적으로 서로 결합해 차별을 구성하는, 모든 유형의 차별에 공통된 세 가지 요소를 정의 내릴 수 있다.
1. 민족, 피부색, 혈통, 국적, 젠더, 나이, 장애 등의 **범주에 기반하여**
2. **그들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방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결과를 낳는**
3. 구별, 배제, 제한 또는 우선 등의 **행위**

"당신들은 오랜 기간 동안 사슬에 매여 있었던 사람을 풀어주고 그를 경주의 시작점에 데리고 가서, "당신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다" 고 말해서도, 당신이 완전하게 공정하다고 믿어서도 안 된다.
기회의 문을 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모든 시민들은 이러한 문들을 통과해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단지 권리나 이론으로서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결과로서의 평등을 추구한다."

Lyndon B. Johnson, 1965

또한 직접적 차별과 간접적 차별이 구분되어야 한다. 직접적 차별은 어떤 사람이 상대적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 비우호적으로 대접받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적 차별은 일견 중립적인 규정이나 정책이 사실상으로는 다른 사람이나 그룹에 비해 어떤 사람이나 그룹에게 불리한 것을 의미한다.

차별의 기타 중요 특성: 대부분의 경우 지배적인 그룹이 힘이 약하거나 수가 적은 그룹에 대해 차별을 한다. **지배**는 수적인 의미에서(다수 vs. 소수) 또는 권력("상위 계급" vs. "하위계급")적인 의미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처럼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고 차별할 수도 있다.

차별로 인해 한 그룹이 다른 그룹을 열등하게 여기거나 기본적 인권을 부인한다. 이는 차별이 인간 존엄성과 동등한 권리에 대한 거부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흥미로운 부분은 긍정적 차별 또는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라는 것인데, 이는 본래 미국에서 온 용어이다. 이 용어는 실질적인 평등에 도달하고 차별의 제도적인 형식을 극복하려는 목적을 가진 정부의 일시적인 특별방안을 의미한다. **제도화된 차별**은 만들어진 법이나 정책, 관습을 뜻하는데 이는 사회, 기관이나 단체 내에서의 시스템적인 불평등과 차별을 낳는다. 적극적 우대조치의 수단은 항상 매우 논쟁적이었는데 왜냐하면 이는 일시적으로 그들의 기본적인 자유, 특히 교육, 고용 및 비즈니스의 부문에서 과거의 불평등을 상쇄하고 여성이나 소수민족 등 특정 집단에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른 집단보다 특정집단에 대한 선호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완전한 평등을 보장하려는 관점에서, 특정한 방법(적극적 우대조치)들은 평등에 도달할 때까지라는 제한된 기간 동안만 유지되고 수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대우는 차별로 여겨져서는 안 되며 오히려 차별에 맞서는 방법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토론할 거리

- 차별 금지가 항상 동등한 대우를 의미하는가?
- 과거의 불평등한 대접을 상쇄하기 위해 동등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다르게 대하는 동등한 기회의 개념은 어떠한가?
- 어떠한 행위(막거나 우호적이거나)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인종주의

인종주의는 다른 민족들이나 나누어진 커뮤니티를 고립시키고 상처입힘으로서 피해를 준다. 적극적 인종주의와 인종에 기반한 부정의나 특권의 수동적 수용 모두 피해자와 가해자 양 측의 정신건강과 심리적인 기능에 지장을 준다. 인종주의와 이와 관련한 불관용성의 **원인과 결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은 복잡하며, 법적인 취약성과 차별, 경제적 교육적 난점, 사회적 정치적 소외, 심리적인 피해를 포함한다. 인종주의와 차별은 건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희생자들은 과도한 스트레스 증상을 보이고 있고, 심신 및 자가 면역적 질환도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흥미로운 점은, 인종주의의 정확한 의미와 영역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인종주의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종주의 이론은 소위 다른 (과학적으로 그른) "인간 종"의 존재와 민족적 그룹이 내재적으로 우월하고 열등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어떤 그룹이 다른 그룹을 지배하고 제거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잘못된 가정을 포함한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인종주의는 인종적인 이데올로기, 편향된 태도, 차별적인 행위, 인종적인 불평등을 가져오는 구조적인 협약과 제도적인 관행 그룹 간 차별적인 관계가 도덕적, 과학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개념을 포함한다; 이는 반사회적인 믿음과 행위뿐만 아니라 입법이나 규제의 차별적인 제공과 차별적인 관행에서도 반영된다; 이는 피해자들의 발전을 막고, 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왜곡하며, 국가들 내부적으로 나누고, 국가 간 협동을 지연하며 국민 간 정치적 긴장을 증대시킨다; 이것은 국제 규범의 기본원칙에 반하며, 결과적으로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인종주의는 사용되는 힘과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여러 다른 수준**으로 존재한다.

- 개인적 수준(개인의 태도, 가치, 믿음)
- 대인적 수준(타인을 대하는 태도)
- 문화적 수준(사회적 행위의 가치와 규범)
- 제도적 수준(법, 관습, 전통과 관행)

과거 시스템적으로 흑인과 백인을 분리시켜 놓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은 제도화된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에 대한 끔찍한 사례다.

오늘날 "인종"은 **사회적 인식의 산물**로 여겨진다. 사실, "인종"이라는 단어는 서로 다른 "인종"이 존재한다는 잘못된 믿음을 전제로 하고 이를 옹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인종주의적이다.

오늘날의 인종주의자들은 생물학적인 특성보다 문화적 차이를 더 강조하고 있다. 인종주의자들은 "문화적 인종주의"라는 진보된 개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이는 오늘날의 인종주의자 대부분의 실제적인 태도를 더 잘 보여주는 개념이다.

사고방식으로서의 인종주의 또한 해로울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표현이나 다른 **표명** 없이 인종주의자들의 마음에만 존재하는 인종주의적 견해와 인종주의적 방식의 생각만으로는 법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없다. 오직 이러한 편견과 생각이 차별적 정책, 사회적 관습, 헤이트 스피치, 집단 간 분리라는 행동으로 이어질 때에만 우리는 차별적 혹은 인종주의적 행동과 차별을 처벌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

인종차별적 폭력(Racist violence)은 피부색, 혈통, 국적/민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발생하는 폭력과 괴롭힘 등의 행위로, 이는 인종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한 집단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생각은 증오에 기반한 폭력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정치적 환경의 필수적 요소다.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에 대항한 지난 십년 간, 인종주의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는 더 광범위하게 발전하였다. 전 세계의 모든 사회가 인종주의로 인해 악영향을 받는다는 깨달음도 이에 포함된다. 국제 사회는 인종 차별주의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인종주의나 인종차별로 인한 갈등을 막기 위해 필요한 개혁을 실시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근거하여 차별적 정책과 관행을 없애려는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이러한 이론과 관행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거나 지지를 얻고 있다. 이는 "인종청소"와 같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전-유고슬라비아, 다르푸르, 르완다에서의 충돌에서 볼 수 있었듯이 말이다.

반유대주의(Anti-Semitism)

반유대주의는 역사적으로 널리 존재했고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타 종교, 민족인 유대인에 대한 혐오 및 적대감의 폭력적 발로는 숨겨지고 은밀한 방식의 표현으로 오늘날도 존재하고 있다. 20세기 초반 파시즘의 득세와 맞물려 반유대주의는 파시즘 이데올로기의 일부가 되었다. 나치 정권에

의해 자행된 홀로코스트로 인해 6백만의 유대인들은 오로지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체계적으로 살해당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 공동체와 유산들에 대한 공격은 드문 일이 아니며 상당수의 네오나치 집단들은 공개적으로 그들의 반유대주의를 표현한다. 인종주의의 특수한 형태인 반유대주의는 네오나치 이데올로기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 사이에 널리 퍼진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나치 프로파간다를 예찬하고 전파하는 웹사이트와 문헌의 증가는 반유대주의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몇 년 전부터 반유태주의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수많은 차별, 헤이트 스피치, 혐오 범죄 사건의 발생으로 이를 알 수 있다.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증 그리고 관련한 불관용은, [...] 모든 인권의 완전한 향유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침해하며,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동등하게 태어났다는 자명한 진실을 부정한다[...]"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세계회의 선언. 2001

외국인혐오(Xenophobia)

제노포비아는 외국인이나 외국에 대한 병적인 두려움으로 설명되며, 타인을 그들의 공동체, 사회 그리고 국가에서의 외부자,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절, 배제, 비난하는 태도, 편견, 행위를 특징으로 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제노포비아는 비이성적인 이미지와 생각들에 기반한 감정이며, "선 혹은 악"으로 단순화 된 시나리오로 이어진다.

제노포비아는 또한 **태도(attitude)**와(나) **신념(belief)**이다. 그러므로 차별적인 행위와 같은 제노포비아의 표현들만이 국내법 및 국제법으로 제재된다.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의 차이는 법적 중요성에 있는 것이 아니며 인종주의적, **제노포비아적 행동과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주는 영향력**은 항상 같다. 이들은 사람들이 계획과 꿈을 따를 잠재력과 기회를 박탈하며, 사람들의 자아존중감과 자신감에 상처를 낸다. 그리고 많은 경우, 생명을 앗아가기도 한다.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은 특히 아이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인종주의를 목격하거나 인종주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공포와 좌절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이다. 인종주의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아이들의 믿음을 깨는 공포로 나타난다. 인종주의자들의 주장, 언어, 스테레오타입은 아이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아이들이 자신을 생각하는 방식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인종주의가 아이들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뉴욕에서 열린 UN 공개토론회에서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온 한 여성은 청중들에게 그녀가 삶에서 처음 인종차별을 경험했던 것은 출생 당시였는데, 병원에서 간호사가 그녀의 어머니가 다른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무거운 짐 나르는 것을 도와주길 거절했다고 소개했다. 이 여성은 성장하면서 그녀의 배경(민족, 언어, 지역)이 그녀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빠르게 알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그녀로 하여금 이미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를 쓸모없고, 불안하고, 무능하게 느끼도록 만들었다.

관련된 현상: 불관용과 편견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는 정책강령에서 **불관용**을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성적 지향, 정치적, 종교적 믿음 등을 이유로,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멸시하는 태도, 감정이나 믿음"이라고 정의하였다.

편견의 고전적 정의는 하버드 대학교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Gordon Allport에 의해 내려졌다: "[...] 편견은 잘못된, 융통성 없는 일반화에 기반한 반감이다; 편견은 느껴지거나 표현된다; 편견은 어떠한 집단이나 그 집단에 속한 개인에게로 향한다."

이 두 가지 태도는 모든 차별적 행동을 유발한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불관용과 편견은 인종주의나 제노포비아와 같이 다른 사람에 대한 더 "구체적인" 태도와 행동을 낳는 초석이기도 하다.

민족주의적 편견(ethnic prejudice)의 개념은 최근에 생긴 것으로, 이는 특정 집단의 문화적 우월성에 대한 잘못된 가정에 근거한 반감을 묘사한다. 유럽에서의 반터키, 반폴란드, 반러시아적 편견들이 그 예이다. 문화적 편견은 전형적으로 특정한 집단의 문화적/종교적 (실제적 또는 상상의)특성을 공격하는데, 이는 최근의 인종주의를 "문화적 인종주의"로 이해하는 것과 유사하다.

편견과 불관용은 보통 시간이 지나면서 획득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서 싸우거나 다루기 어렵다. 게다가, "관용"이라는 개념은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수용하지만 이들에 대한 진정한 환영이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동등한 권리들에 대한 존중이 없는 잘못된 우월의식을 내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쟁적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불관용과 불관용의 태도를 참거나 견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불관용은 시민적 용기에 의해 저지되어야 한다. 이는 모든 적합한 수단을 가지고 불관용적 행위를 막아냄을 의미한다.

토론할 거리

- 누가 관용의 한계를 정할 수 있는가?
- 관용과 불관용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나 규범이 만들어져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기준이나 규범을 만들어내는 것은 가능한가?
- 그러한 기준들을 인지함에 있어 지역적, 문화적 차이가 있는가?

국제인권법 하에서 발전된 한계와 기준은 사회와 사회 구성원들이 범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불관용에 대한 최소한의 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이행과 모니터링

일반적으로 인종주의자들은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종주의적 태도를 발전시켜 온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의 주요 원인은 '무시'이다. 2011년 3월 21일 국제차별철폐의 날에, UN 사무총장 반기문은 아래와 같이 이야기 했다: "[...] 인종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가 인종주의를 영속화하는 공공의 정책과 사적인 태도에 대해 논의하도록 합니다. 오늘, 나는 UN 회원국, 국제적 비정부적 기구들, 언론, 시민사회와 모든 개인들에게 [...] 언제 어디서나 인종주의에 저항하자고 요청합니다."

3. 문화적 관점차이와 논쟁적 이슈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난 지속적인 문제이다. 비록 인종주의, 인종 차별 또는 인종적으로 우월하다는 자만심이 백인의 비백인에 대한 차별을 연상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회는 하나도 없다.

아시아 지역에도 많은 예들이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의 한국인들은 단지 그들이 한국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공적 지위에 오를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최근까지, 인도네시아의 중국 소수민족은 공개적으로 전통 새해를 축하할 수 없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중국 내 민족과 종교적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을 우려를 여러 차례 표명하였다. 인도의 카스트제도는 "카스트의 하층 구성원들"을 심각하게 차별하였다. 심지어 "카스트의 상위 계급"에 의해 자행된 강간이나 대량학살의 사고들이 보고되기도 하였다. 인종주의는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존재한다. 권력을 가지지 못한 민

족 집단의 구성원들은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인종주의와 인종적 폭력에 의한 차별과 학대에 부딪혀야 했다.

집시에 대한 차별-유럽 대륙에 흩어져 살고 있는 약 8백만의 집시들-은 유럽의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를 유발하였다. 역사의 오랜 시간 동안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집시들은 보통 동화되기를 강요받았다. 몇몇 국가에서, 집시어의 사용은 금지되었고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떨어져야 했다. 오늘날, 집시 공동체는 여전히 고용, 주거, 교육, 법률이나 보건 서비스에의 접근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4. 이행과 모니터링

노예제, 식민주의 그리고 무엇보다 제 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얻은 교훈은 차별금지의 원칙을 모든 나라의 헌법과 국제 협약에 포함시키는 것이었다.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수단은 1965년 12월 21일에 세워진 **국제인종차별철폐협약(ICERD)**이다. 이 협약의 완성으로 UN 총회는 홀로코스트의 공포와 전후 세계에 여전히 존재하는 인종주의적 태도와 정책에 대한 반대하였다. 국제인종차별철폐협약은 존엄과 평등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고, 어떠한 종류의 인종 차별도 반대하며, 국가의 기관들이 모든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지체 없이 인종차별철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금까지(2012년 1월), 국제인종차별철폐협약은 174개국에서 비준되었고,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차별금지의 원칙과 관련한 협약의 조항들은 국가들, 사적 영역들 그리고 개인들과 관련해서도 적용된다. 차별금지의 근본 조항들은 국가와 권력기구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다. 그러므로 **국가는 차별금지의 원칙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충족할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 **존중의 의무(Obligation to respect)**: 이는 국가는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에 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국가는 그들의 관할권 내에 있는 법규로부터 주어진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에 한해, 합법적으로, 법을 통해서만 제한이나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차별과 관해 이것은 국가가 개인의 평등을 존중해야 하며 인종주의와 차별을 지지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 **보호의 의무(Obligation to protect)**: 이는 국가가 개인들을 그들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별과 관련해서는 사인에 의한 인종주의와 차별적 행위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는 그 사회에서 발생하는 개인에 의한 인종차별적 징후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 **충족의 의무(Obligation to fulfill)**: 국가는 법적, 행정적, 사법적, 사실적인 조치를 통해 그 권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시켜야 한다. 국제인종차별철폐협약의 제5조는 당사국들로 하여금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제거하며, 개개인의 법 앞에서의 평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 **사적 영역에서(NGO, 언론 등)의 의무(Obligations in the private sectors)**: 정부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 또한 차별과 인종주의에 맞설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다. 사적 영역의 주체들은 시민 사회의 가장 넓은 기층을 구성하고 있으며, 보통 "상향식 접근(bottom up)"으로 시민사회 내의 차별과 인종주의적 태도에 대해 더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다.

☞모범 사례

차별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인권침해의 사례 중 하나라는 사실은 이 분야에서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는지를 보여준다. 원칙적으로 국제인권의무의 이행은 국가적 책임이다. 따라서 인종차별에 대항해 싸우는 국제기구들은 당사국에 의하여 비준되고 당사국에서 이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국제 기준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모니터링 시스템과 강력한 이행강제 메커니즘이 존재해야 한다.

또한 국제인종차별철폐협약(ICERD)은 당사국의 의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를 설립하였다. 이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협약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검토하도록 하기 위해 독립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UN의 첫 번째 조약기구이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4가지 과정으로 구성된다.

- **보고 절차(Reporting procedure)**: 모든 협약 당사국은 위원회에 협약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 위원회는 각각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해당 의견이나 권고사항을("관찰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각각의 협약 당사국에게 권고한다.
- **사전경고 절차(Early-warning procedure)**: 위원회는 현재 상황이 분쟁으로 치닫는 것을 막고 심각한 협약의 침해를 제한하기 위해 즉각적인 관심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 대응한다.
- **국가 간 컴플레인(Inter-state complaints)**: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협약의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위원회에 청원한다.
- **개인 컴플레인, 청원권(Individual complaints, right to petition)**: 위원회는 특수한 상황에서 협약에서 보장하는 그들의 권리가 당사국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개인이나 집단의 주장을 고려해야 한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협약 규정의 내용을 설명하는 일반논평을 출간해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의

의무의 실체화와 그 이행을 위해, 인권보호 영역에서의 법집행관의 훈련 (1993), 선주민의 권리 (1997), 젠더 차원의 인종차별 (2000), 로마족과 비시민 차별(2004), 형사사법제도의 운영과 구조에서의 인종차별 예방(2005) 등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간한다.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의 표현이 지난 10여년 간 증가한 이래로, 국제 사회는 이러한 현상에 맞서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인권 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 **인종주의, 인종차별, 제노포비아 및 관련 불관용의 현대적 형태에 관한 특별 조사위원**의 권한은 2008년에 다시 확대되었다. 권한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별 조사위원은 긴급한 요청과 요구를 국가에 전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국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인권위원회나 UN 의회에 연간 또는 주제별 보고서를 제출한다.

더반 선언 및 행동계획(DDPA)은 2001년 유엔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에서 채택된 국제 사회의 확약이다. 이 약속은 모든 수준의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제노포비아 및 관련한 불관용을 막고, 이에 저항하고, 이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인종주의가 국제적인 문제라는 것과 이를 막는 데에는 전 세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더반 선언 및 행동계획은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 폭넓은 제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2009년 더반 검토 회의에서는 2001년 더반 선언 및 행동계획의 이행을 평가하고 발전된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인 방안과 모든 수준에서 모든 인종주의, 인종차별, 제노포비아, 관련한 불관용의 표명에 저항하고 이를 없애려는 계획을 확인하였다. 이는 DDPA의 이행을 촉진하고 이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모든 **지역 인권기구들은**(American Convention of Human Rights,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차별에 반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대부분은 부수적인데, 이는 재판이 필요할 때 각각의 협약의 다른 권리와 함께만 주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유럽인권협약의 12번째 규약은 2005년에 의무화 되었고, 협약에서 설정된 자유와 권리의 향유를 넘어서는 범위의 보호의 수준을 제공하면서 차별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를 담고 있다(1조). 1993년에 유럽의회는 **인종주의와 불관용에 대한 유럽위원회(ECRI)**를 설립했고, 이는 유럽의회 당사국에서의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제노포비아, 반유태주의와 불관용을 저지하려는 노력과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하도록 하는 독립적인 전문가들의 집단이다. 다른 중요한 모니터링 기구에는 차별금지와 반인종주의 옴부즈퍼슨이 있다. 이 **옴부즈퍼슨**들은 보통 국가단위에서 만들어지며 이들은 차별 사건을 기록하고, 차별금지에 대한 국가적·국제적 규범을 알리고 가능한 해결 방안을 추구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다.

2010년, 미국의 사법당국은 6,628건의 혐오범죄가 있었고, 7,699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하였다. 7,690명의 공격, 8,199명의 희생자, 6,001명의 공격이 연관된 6,624건의 개별 사건에 대한 분석은 아래와 같다:
47.3%는 인종적 편향이 원인이 되어 일어났다.
20.0%는 종교적 편향이 원인이 되었다.
19.3%는 성적지향이 원인이었다.
12.8%는 민족, 국적이 원인이었다.
0.6%는 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책 안의 법"과 "현실의 법" 사이의 간극: 비준된 협약, 선언 그리고 행동 계획은 인종주의와 차별에 맞서 싸우는 실제적인 전략으로 향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협약, 선언 및 행동 계획들이 현실에서 완전히 수용되고 실현되지 않는 한, 그 효과는 한계가 있다. 강한 정치적 의지가 이들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데, 불행히도 현실에서는 다른 정치적인 이익들로 인해 밀려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로비를 하여 프로젝트를 현실화시키는 **비정부적, 공동체 기반 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게다가, 그들은 지속적으로 정부가 국내, 국제적 인권 의무를 준수하도록 압박을 가한다.

집에서 반 블록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박대와 차별보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의에 화내는 것이 종종 더 쉽다.

Carl T. Rowan, 저널리스트

비국가적 행위자들 사이의 차별: 차별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관련한 또 다른 문제는 사적 개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차별의 방지와 관련되어 있다. 보통, 단지 공적인 장소에서 일어나는 (국가 당국에 의한) 차별 행위와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개인들 간의 차별 행위만이 법에서 규제된다. 따라서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차별은 같은 방법으로 규제되지 않는다.

최근 몇 년 간 유럽연합에서는 사적인 영역을 관리하는 고용과 직업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고용평등지시"와 고용 및 재화와 서비스에의 접근에 있어서 인종적 배경에 따른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종평등지시" 등의 **차별금지지시(Non-Discrimination Directives)**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지시

들은 오늘날 사회의 필요에 기반한 더 포괄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남녀 간 평등한 대우와 같은 고전적인 개념에서부터 그 범위를 확장해가고 있다. 모든 유럽연합회원국은 이러한 지시를 개별 국가의 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차별금지권의 위반은 법정에서 주장될 수 있고, 이는 반차별주의의 발전의 초석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에도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더 확장하려는 의견들이 논의되고 있다.

언급된 국제기구들은 차별금지의 원칙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전경고시스템, 예방적 방문, 긴급절차, 정보 및 인권교육과 트레이닝과 같은 **예방적인 수단과 전략**의 중요성은 과소평가되었다. 이러한 전략은 현상의 근원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과 인종주의에 대한 더 효과적인 대응인데, 국제기구들은 이를 도외시하고 있는 셈이다.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인종주의, 제노포비아와 기타 연관 태도는 미묘한 형태로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태도들은 확인하거나 발견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인종주의는 오로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만 자행되며 이는 다른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위험한 인식이 유발될 수 있다. 성공적으로 이러한 의견과 믿음에 맞서기 위해서, 인종 차별, 인종주의 그리고 연관된 불관용들은 사회의 모든 수준에서 **인권의 문화를 강화**시킴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 인종주의는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 현상인데, **인권교육과 학습**을 포함한 모든 수준의 다양한 방법들로 인종주의에 대항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사회에서 다양성이 존중되고 인식되도록 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사회에 인권을 전달하고 인권을 사회에 통합시키고자 한다. 많은 나라에는 교사들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인종 관련 사고들을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다. 유엔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에서, 많은 흥미로운 예시들과 아이디어들이 보고되었다. 여기에는 학교 교과서와 커리큘럼을 통해 인종적 편견에 저항하는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현재진행형인 노력과 차별금지의 명백한 원칙들을 그들의 교육 목표에 포함하는 계획이 진행 중인 유럽 학교 네트워크 이니셔티브 등의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 많은 나라에는 존재하는 학교 교환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언어를 배우도록 장려한다. 많은 정부와 NGO들은 인권교육 자료들에 문화적 **다양성**과 감성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데, 이는 각자의 문화와 국가에 대한 이해에 기여한다. 많은 나라에서 사법기구 종사자, 사법부의 구성원, 교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인종주의와 차별금지에 초점을 둔 **인권 교육**이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인종주의에 대항한 싸움과 인권의 보호에서 그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 역할에 대해 더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모든 수준과 모든 연령에서의 인권교육은 인종주의, 제노포비아, 불관용에 기반 한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요인이다. 따라서 인권 교육을 도입하고, 이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는 모든 수준

의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에서 인종주의에 대항하는 교육 커리큘럼과 자원의 실행과 지속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존중을 강화하고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언론의 중요 역할: 언론은 사람들의 인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언론은 인종적 스테레오타입에 대항하고 **평등, 존중, 인간 존엄성, 다양성의 가치를 증진**하는 데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불행히도 세계의 많은 신문, 라디오, TV는 경멸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사회적 약자 개인과 집단, 특히 이민자와 망명자에 대한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을 증진하고, 대중 사이의 제노포비아적이고 인종주의적인 정서와 행동의 확산에 기여한다. 몇몇 언론은 인종차별과 증오를 퍼뜨리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언론의 힘은 1994년 내전동안 투치족들을 학살하라고 후투족을 선동할 때 이용되었던 르완다의 "Radio Mille Collines"의 경우에서도 확인된다. 정보와 의견을 퍼뜨리는 데에 있어 인터넷의 중요한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제인종차별철폐협약은 협약 당사국들이 모든 인종주의적 선동과 조직을 비난하고 인종주의와 차별에 대한 모든 선동을 막는 방안을 도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 중에서도 국가들은 인종주의적 생각과 선동의 확산을 위법행위로 선언해야 한다. 또한, 인종주의와 불관용에 반대하는 유럽 위원회는 언론이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적, 제노포비아적 용어를 금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인종주의적 언론 전문가들에 의한 자가 규제 방안 및 **윤리 강령(codes of ethics)**의 도입 등을 통해 그들의 기사에서 인종주의적 스테레오타입을 지양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트렌드 / 표현의 자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차별 예방은 차별적 행위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를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태도, 믿음, 그리고 결과적인 조치와 행동을 다루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매우 어려운 일은 제도화된 인권교육, 상향식 접근이 가능한 정보, 모든 관련된 비국가행위자들과의 협력을 통한 정부 당국의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차별적이거나 인종주의적인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에는 가능할 경우 개입할 수 있는 도덕적 용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하다면 발견한 사고를 법원, 옴부즈퍼슨 또는 전문 기구등과 같은 관할 기관과 관할 당국에 알려야한다. 이는 국가적, 국제적 구제 방법에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는 인권 존중을 증진하고, 인종적 차별적 행위를 막고, 평등의 원칙이 실현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이자 가장 효과적인 단계는, 우리의 태도와 편견을 인식하고 이에 도전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차별적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인종주의는 피혐오자와 혐오자를 모두 파괴한다.
왜냐하면 인종주의자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인간성을 부인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인간성도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종족주의, 원리주의, 호모포비아와
모든 다른 사람에 대한 피상적인 반응처럼,
인종주의는 당신이 무엇인지에 집중하고 당신이 누구인가는 무시한다.
인종주의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옷의 상표만 보는 것이다.
인종주의는 '우리'를 사랑하고 '그들'을 증오한다,
'그들'의 진정한 정체성은 알지도 못한 채."

Timothy Findley, 작가

알면 좋은 내용

1. 모범 사례

사적 영역에서의 자발적 행동강령: 많은 다국적 기업은 그들 자신과 그들의 파트너들이 인종 차별과 같은 인권 침해를 막는 의무를 다하도록 자발적인 행동강령을 만들고 있다.

공적 조달 계약에서의 차별금지규정: 스웨덴 정부는 공공부문과 계약을 체결하는 사적 회사들로부터 그들이 반차별주의 법을 지키고 평등을 증진시키겠다는 확인을 요청하는 법을 도입했다. 이러한 비차별조항이 침해될 경우 계약은 종료된다. 다양한 도시들이 이러한 개념의 법을 시행하고 있다 (London, Galway 등).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국제도시연합(International Coalition of Cities against Racism): 이 기관은 UNESCO의 계획의 일종으로, 2004년 만들어졌다. 지역적 수준에서 인종주의, 차별, 제노포비아, 배제로부터 맞서는 정책을 증진하기 위한 경험들을 나누는데 관심이 있는 도시들의 네트워크를 위한 것이다. "행동을 위한 10가지 계획"에서 가입 도시들은 교육, 거주, 고용, 문화 활동과 같은 도시 당

국의 다양한 권한 분야에서의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활동들을 전개하고 증진시킨다.

또한 아프리카, 아랍지역, 아시아, 태평양, 유럽,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북아메리카 지역에서도 각각의 행동 프로그램과 함께 지역적 연대가 형성되는 중이다. 예를 들어, 인종주의와 차별에 반대하는 아프리카 도시 연합은 2006년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만들어졌다.

유럽 축구 리그에서 일어나는 인종주의와의 싸움: 유럽축구연합(UEFA)은 구단들이 축구팬, 선수들, 관계자들 사이에서의 반인종주의 캠페인을 진행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나열한 10가지 행동강령을 제시하였다. 이 계획에는 경기에서 인종주의적 구호를 외치는 것을 비판하거나 선수에게 인종주의적 모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행동 등의 조치들이 포함된다. UEFA는 또한 유럽 축구에서의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에 저항하는 지역적, 국가적 수준의 행동을 지지하고 이에 협력하는 "FARE-유럽 네트워크 내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축구(Football against Racism in Europe Network)"를 지지한다.

2. 트렌드

빈곤과 인종주의/외국인혐오의 관계

빈곤과 인종주의, 제노포비아 사이의 잠재적인 연관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가 빈곤의 원인이 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빈곤이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의 능동적, 수동적 형태로 이어질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일관된 답변은 존재하지 않는다. 연구와 관찰의 해석은 다양하다. 그러나 이 사이에는 연관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는, 빈곤이 민족과 관련된 문제이다. 미국 농무성에 따르면, 식량불안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히스패닉 가정이 백인 가정에 비해 3배나 높다고 한다. 명백하게도 소수자 집단은 빈곤에 직면하고 있고, 이는 종종 인종주의와 차별(직업, 교육, 거주에의 동등한 접근에 대한 장애) 때문이다. 따라서 불평등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사회에서 더 빈곤한 집단일수록 더 큰 인종주의적 경향이 나타난다는 주장은 상당한 논쟁거리이다. 비록 인종주의가 "고등 교육을 받은 상위 계층"에서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교육 부족과 결합된 빈곤은 인종주의적 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많은 경우, 이러한 종류의 인종주의는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위한 투쟁에서 나오는 배제적인 행동으로 보인다. 이는 불안정한 고용 및 거주 상황에 대해 이주민들을 비난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 빈곤 / 소수자 권리

인터넷에서의 인종주의

인터넷은 전 세계적으로 20억의 사용자들이 모이는 공간이다.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의사소통 기술은 사회의 모든 행위자들에게 중요한 매체로, 인종주의자, 폭력적이고 테러리즘적인 기구와 집단적 선동 인종주의, 반유태주의, 제노포비아와 증오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인종주의적 컨텐츠와 아이디어들을 확산시킨다. 인터넷에서의 인종주의는 점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1995년에는 단 하나의 인종주의 웹사이트만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인종주의적 혐오와 폭력, 반유태주의, 제노사이드를 촉진시키는 10,000개가 넘는 웹사이트들이 있다. 알려지지 않은 웹사이트들에 대한 추정치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과격주의자들과의 싸움에는 막대한 기술적, 법적 어려움이 따른다. 국제기구 수준에서, 국제인종차별철폐협약(ICERD)의 당국은 특정 집단에 반하는 행동의 선동이나 폭력의 행위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의 선동, **인종주의적 우월감과 증오에 기반 한 모든 아이디어의 확산을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라고** 선포했다. 지역적 수준에서는 2006년 발효된 사이버범죄에 관한 유럽협약회의의 보충협약이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인종차별적, 제노포비아적 행동의 범죄화를 다루고 있다. 이 협약은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에 대항하는 싸움에서 형법과 그 구조를 맞추고, 이 분야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국가 수준에서도 인터넷 시스템을 통한 인종주의 및 제노포비아적 요소들의 확산,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로 인한 위협과 모욕, 반인간적 범죄나 제노사이드의 정당화 및 승인·축소화·거부 등을 범죄화하는 일을 포함해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러한 표준의 수용과 이행은 희망적으로 이 분야에서의 진보를 이끌 것이다. ☞ 표현의 자유

이슬람혐오: 9.11 테러의 후유증

2001년 9월 11일 공격의 바로 다음주에 미국 영토 내에서 아랍계 미국인에 대한 보고된 공격이 540건, 시크교도들에 대한 공격이 200건 있었다. 2000년 내내 아랍계 미국인 대한 공격이 600건이었던데 비교해 보면 놀라운 수치다. (출처: Amnesty International, 2001, 위기대응가이드)

유럽에서 소수집단에 대한 인종적 공격과 남용, 특히 영국계 무슬림들에 대한 공격은 2005년 런던에서의 폭탄테러 이후 엄청나게 증가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아래의 기사는 분명히 개인화된 예시이며 논의의 시작점으로 여겨질 수 있다.

"Seema는 18살이고, 고등학교 1학년이다.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나서 그녀는 이 나라 퀸즈의 우드사이드에서 그녀의 인생의 거의 절반을 보냈다. 그녀는 작고, 진중하였다. 그녀는 이주자 가족의 3명의 자녀들 중 첫째로서 고민이 많았다고 고백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가족에게 어

떤 영향을 줄 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Seema의 영어는 비록 벵골어의 흔적이 약간 남아있었긴 해도 퀸즈 사투리였다. 그녀는 미국 시민이다. 그러나 사실, 그녀는 그녀 자신을 완전한 미국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녀를 미국인으로 만들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얼떨떨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벵골이 먼저"라고 그녀는 말했다. 미국인의 요건에 대한 질문은 그녀와 같은 소녀들을 맴돌았다. 9.11사건과 그 이후의 사건들로 인해 이 질문은 뚜렷이 부각되었다. 테러가 일어난 지 몇 주 후 그녀들이 아는 무슬림 소녀들은 머리 두건을 벗어버렸다(Seema는 무슬림이지만 두건을 쓰지 않는다). 남자들은 수염을 밀었다. 다른 사람들은 터번을 썼다는 이유로 비난받았다; 그들은 심지어 무슬림도 아니었다.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그녀의 아버지는 직업을 잃을까 두려워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카미즈와 살와르를 입고 지하철역에서부터 집에 걸어오는 것을 두려워했다. 학교는 상황이 더 나빴다. 우선, 선생님들은 아프가니스탄에의 폭탄투척을 응원했다. Seema는 아프간 시민들의 운명에 대한 것을 물으려 손을 들었던 것을 회상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비웃음을 당했다. 다른 선생님은 얼마나 캘리포니아의 탈레반 동조자인 John Walker Lindh가 얼마나 이슬람에 홀렸는지 이야기했다. Seema는 움찔했다. "이슬람은 마녀나 무슨 이상한 주술같은게 아니다", 그녀는 말했다. ☞ 소수자 권리 / 종교의 자유

토론할 거리

- 이 이야기에서 침해받고 있는 권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희생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회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 당신은 2001년 9.11테러 이후 어떤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는가?
- 9.11 사건이 시민권의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인권의 범위와 한계는 누가 결정하는가? 누가 소수자의 권리의 범위와 제한사항을 결정하는가?

3. 연혁

1926 노예무역과 노예제 금지에 관한 국제연맹의 협약
1945 국제연합 1조(3)
1948 세계인권선언 1, 2조
1948 제노사이드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협약
1950 유럽인권위원회(ECHR)
1951 피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960 UN 식민지 독립 선언
1960 UNESCO 교육상 차별금지협약
1965 국제인종차별철폐협약
1966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67 난민지위프로토콜
1969 미주인권협약
1973 아파르트헤이트의 금지와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
1978 인종과 인종적 편견에 대한 UNESCO 선언
1978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첫 번째 국제회의
1979 여성차별철폐협약
1981 종교와 신념에 관한 차별 철폐협약
1981 아프리카인권헌장(반줄헌장)
1983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두 번째 국제회의
1989 국제노동기구(ILO) 원주민과 부족에 관한 협약
1989 아동권리협약 2조
1990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ICPMW)
1992 국가, 민족, 종교, 언어적 소수에 속한 사람들의 권리를 위한 UN선언
1993 유럽인종차별위원회(ECRI)
1993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제노포비아와 불관용들의 현상에 관한 특별 보고서
1998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ICC)
1998 유럽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 감시센터(EUMC)
1999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유럽 공동체의 권한을 만드는) 암스테르담 협약
2000 EU인권헌장 21조
2000 (차별의 일반적 금지를 수립하는) 유럽인권재판소(ECHR) 프로토콜
2001 인종주의, 인종차별, 제노포비아, 불관용에 관한 세 번째 국제 회의: 선언 및 행동 프로그램
2001 원주민의 권리에 대한 UN 특별 보고서
2004/2005 유럽공동체의 25개 국가 내 사적 영역을 위한 반차별법
2004 인종주의에 대항하는 국제도시연합
2006 장애인권리협약(CRPD)
2007 원주민의 권리에 대한 UN선언
2007 EU 기본권기구(FRA)
2009 더반 재검토회의(제네바)

어디서 발생하든 불의는 세상 모든 곳의 정의를 위협한다."

마틴 루터 킹 Jr.

추천 활동

활동 I: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태어난다.

Part I: 소개

차별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사람들이 차별의 기원과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그러나 차별의 피해자의 기분을 느끼는 것 것만큼 인상적이거나 유익하지는 않다. 따라서, 이 활동은 참여자들이 차별을 알아보고 그들 스스로 차별을 경험하게 해본다.

Part II: 일반적인 정보

활동유형: 자아성찰

목적과 목표: 참가자들이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차별에 대해 발견할 기회를 준다.

대상그룹: 청소년, 성인

그룹크기: 15-20명

소요시간: 45분

관련기술: 솔직함

Part III: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지시사항: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참가자들은 출발점에 모여 선다. 기준 선 앞뒤로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트레이너는 잠재적인 차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

을 크게 읽는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모든 참가자들은 트레이너의 지시대로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간다. 모든 차별요인들을 읽고 나서 그룹은 분리된다. 트레이너는 참가자들에게 그룹이 다시 모이기 전에 다양한 위치들을 살펴보도록 멈추게 한다.

피드백:

원으로 모여서 참가자들에게 그들이 활동 동안에 무엇을 느꼈는지 요약하도록 한다.

방법론적 힌트:

사적인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문의 수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위치 때문에 참여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믿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트레이너가 그룹 구성원 간 신뢰와 신용의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질문 목록:

(+는 한발자국 앞으로 나오는 것 −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는 것을 의미한다.)

인종:

+(당신의 나라에서) 누구의 모국어가 다수의 언어입니까?

−어떤 가족이 나라를 떠나 도망쳐야 합니까?

−해당 국가에서 소수를 형성하고 있는 민족 집단의 구성원?

교육/직업:

+가족에게 주어진 재정적 안정성을 의존합니까?

+증명서가 있는 중등 교육과 같은 최종 학위를 받았습니까?

+더 상급학교에 다니거나 대학 학위를 받았습니까?

−학교에서 1년 유급했습니까?

+책이 많은 집에 삽니까?

+최소 2가지 언어를 배웠습니까?

−사회복지, 장학금, 실업수당에 의존해야 합니까?

−노동계급의 자식입니까?

성별: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아이가 있습니까?

종교:

+국가의 다수 종교에 속합니까?

−다수종교에 속하지 않습니까?

−무교입니까?

장애, 질병, 폭력:

−가족 내 알콜이나 약물과 관련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치병이나 영구장애가 있습니까?

−고아거나, 한부모가족 출신이거나, 입양되었습니까?

−가정 내에서 폭력을 경험했습니까?

−고아원에서 자라거나 양부모의 집에서 양육되었습니까?

−범죄전과가 있습니까?

나이:

+45세보다 어립니까?

−45세 이상입니까?

−집안에서 친척들을 돌봅니까?

성적지향:

−동성, 양성, 트렌스젠더입니까?

+이성애자입니까?

활동II: "문화적 색안경"

PartI: 소개

다른 문화의 행동 패턴이나 관습들은 보통 그들 자신의 경험에 기반하여 평가된다. 이러한 종류의

가정은 종종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유발하거나 편견을 강화하기도 한다. 아래의 활동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드러냄으로써 사전에 가지고 있던 의견과 고정관념화 된 생각들을 다시 생각해보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Part II: **일반적인 정보**

활동유형: 역할놀이

목적과 목표: 스스로의 편견을 인식하고 본래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다시 고민하게 함

대상그룹: 청소년, 성인

그룹크기: 25인까지

소요시간: 90분

교구: 땅콩 한 그릇

준비사항: 알바트로스의 섬 문화에 대한 묘사를 담은 종이

관련기술: 다른 문화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는 것

Part III: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지시사항:

참가자들은 알바트로스의 섬을 방문하고 있다. 그들이 섬 사람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문화에 따라 스스로 섬사람들의 행동 패턴과 관습에서만 결론을 내린다.

두 명의 자원자에게 섬사람의 역할을 하도록 요청한다(남녀 각각 1인). 이 둘은 다른 그룹으로부터 분리되어 알바트로스 섬의 문화와 익숙해지는 짧은 준비 시간을 지닌다. 그 이후, 자원자들은 다시 그룹으로 돌아가 3가지 짧은 장면을 연출한다.

환영: 두 명의 섬주민들은 천천히 의자를 원으로 놓는다. 그리고 그룹의 나머지 사람들의 두 다리가 바닥에 있는지 확인한다. 여자는 항상 남자 뒤에 서 있다. 남자 섬주민은 남자 방문객만 접촉하고, 여자 섬주민은 남녀 모두와 접촉할 수 있다.

식사: 섬주민들은 식사를 하기 위해 앉는다. 남자는 의자에 여자는 그의 옆 바닥에 무릎을 꿇는다. 여자는 남자에게 땅콩 한 그릇을 주고 그가 다 먹고 나서야 식사한다.

에너지 흡수: 남자는 여자가 몸을 구부려 이마로 바닥을 세 번 치는 동안 그의 머리를 여자의 목에 둔다.

그리고 자원자들은 자리로 돌아간다.

피드백:

참가자들에게 세 가지 장면을 보고 알바트로스 섬의 문화와 성별 간 관계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묻는다. 알바트로스의 문화에 대한 텍스트를 읽은 후, 다시 섬사람들의 어떤 행동 패턴을 다른 관찰자들이 잘못 추측했고 왜 그런지 다시 토론하게 한다.

유인물 : 알바트로스 섬의 문화

알바트로스 섬에 사는 사람들은 평화롭고 친근하다. 그들은 특히 대지의 여신을 숭배한다. 그들은 항상 양 발을 땅에 두고 땅 위에 앉음으로서 항상 대지의 여신과 접촉하려 한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땅콩은 알바트로스 섬에서 신성한 음식이다.

여성들은 이 섬에서 높은 대접을 받는데, 이는 그들이 대지의 여신과 같이 출산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남성들은 의자에 앉는 반면 여성들은 땅 위에 직접 앉을 수 있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남성은 항상 그들의 앞에서 걸어야 한다. 같은 이유로 남자들은 여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맛봐야 한다. 남자는 여자가 의식을 행하는 동안 그녀의 목을 만짐으로서만 대지의 여신과 접촉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흡수한 에너지의 일부는 남자에게로 전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그녀의 허락 없이 여자와 접촉하면 안 된다.

Part IV: 후속활동

역할놀이에 대한 토론과 피드백 이후, 참가자에게 그들이 삶에서 경험하거나 목격했던 유사한 상황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고, 그들이 잘못 판단하도록 이끈 "문화적 안경"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관련 권리 및 더욱 탐색할 영역들:

종교의 자유, 소수자 권리

(출처: Ulrich, Susanne. 2001. Achtung (+) Toleranz. Wege demonkratishcher Konfliktregelung. Praxishandbuch furdie politische Bildung에서 발췌)

참고자료

Allport, Gordon. [1954] 1988.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Perseus Publishing.

Akdeniz, Yaman. 2009. *Racism on the Internet.*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Amnesty International USA. 2001. *September 11th Crisis Response Guide,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New York: Amnesty International.

Council of Europe (ed.). 2004. *Domino – A Manual to Use Peer Group Education as a Means to Fight Racism, Xenophobia, Anti-Semitism and Intolerance.*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Council of Europe (ed.). 2003. *COMPASS. A Manual on Human Rights Education with Young People.*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Council of Europe. 2003. *Addi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concerning the criminalisation of acts of a racist and xenophobic nature committed through computer systems, 28 January 2003.*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4. *Directive 2004/113/EC of 13 December 2004 implementing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access to and supply of goods and services.*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 373, 21 December 2004.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0. *Directive 2000/78/EC of 27 November 2000 establishing a general framework for equal treatment in employment and occupation.*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 303, 2 December 2000.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0. *Directive 2000/43/EC of 29 June 2000 implementing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between persons irrespective of racial or ethnic origin.*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180, 19 July 2000.

European Commission against Racism and Intolerance (ECRI) (ed.). 2005. *The Use of Racist, Antisemitic and Xenophobic Elements in Political Discourse. High-Level Panel Meeting on the Occasion of the 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European Monitoring Centre on Racism and Xenophobia (EUMC) (ed.). 2006. *The Impact of 7 July 2005 London Bomb Attacks on Muslim Communities in the EU.* Luxembourg: European Communities.

European Monitoring Centre on Racism and Xenophobia (EUMC) (ed.). 2005. *Policing Racist Crime and Violence. A Comparative Analysis.* Luxembourg: European Communities.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FRA) (ed.). 2011. *Fundamental Rights: Challenges and Achievements in 2010.* Vienna: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Available at: www.fra.europa.eu/fraWebsite/attachments/annual-report-2011_EN.pdf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FRA) (ed.). 2009. *European Union Minorities and Discrimination Survey (EU-MIDIS). Main Results Report.* Luxembourg: European Union. Available at: http://fra.europa.eu/fraWebsite/attachments/eumidis_mainreport_conference-edition_en_.pdf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U.S. De\-partment of Justice. 2011. *Uniform Crime Reports, Hate Crime Statistics 2010.* Washington D.C. Available at: www.fbi.gov/about-us/cjis/ucr/hate-crime/2010/narratives/hate-crime-2010-incidents-and-offenses

Fredman, Sandra. 2002. *Discrimination Law.*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Fredman, Sandra. 2001. *Discrimination and Human Rights. The Case of Rac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Fredrickson, George M. 2002. *Racism. A Short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Kelly, Mark. 2004. *ECRI - 10 Years of Combating Racism. A Review of the Work of the European Commission against Racism and Intolerance*.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Maddex, Robert L. 2000.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Human Rights. Freedoms, Abuses, and Remedies.* Washington: CQ Press.

Reardon, Betty A. 1995. *Educating for Human Dignity. Learning abou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Ulrich, Susanne. 2001. *Achtung (+) Toleranz. Wege demokratischer Konfliktregelung. Praxishandbuch für die politische Bildung.* München: Verlag Bertelsmann Stiftung.

United Nations. 2009. *Durban Review Conference 2009 Outcome Document.* Available at: www.un.org/durbanreview2009/pdf/Durban_Review_outcome_document_En.pdf

United Nations. 2001. *Report of the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A/CONF.189/12.* Available at: www.un.org/WCAR/aconf189_12.pdf

United Nations. 2001.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Available at: www.un.org/en/ga/durbanmeeting2011/pdf/DDPA_full_text.pdf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2010. *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Seventy-eighth session (14 February-11 March 2011), Seventy-ninth session (8 August-2 September 2011). A/66/18.* Available at: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G11/463/25/PDF/G1146325.pdf?OpenElement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2003. *Communication No. 26/2002, CERD/C/62/D/26/2002 of 14 April 2003.* Available at:

www.unhchr.ch/tbs/doc.nsf/0/53243a41b17d73a8c1256d2b002ef02d?Opendocument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ed.). 2001. *UNESCO against Racism.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Paris: UNESCO. Available at: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2/001238/123862e.pdf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eds.). 2001. *United to Combat Racism. Selected Articles and Standard-setting Instruments.* Paris: UNESCO Publishing.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1965.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Resolution 2106 (XX) of 21 December 1965.* Available at www2.ohchr.org /english/law/cerd.htm

추가정보원

British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www.equalityhumanrights.com/

Council of Europe: www.coe.int

Durban Review Conference 2009: www.un.org/durbanreview2009/ddpa.shtml

European Commission against Racism and Intolerance (ECRI): www.coe.int/t/dghl/monitoring/ecri /default_en.asp

European Commission against Racism and Intolerance (ECRI), General Policy Recommendations: www.coe.int/t/dghl/monitoring/ecri/activities/GeneralThemes_en.asp

European Network against Racism (ENAR): www.enar-eu.org

European Training and Research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ETCGraz): www.etc-graz.at

European Roma Rights Centre: www.errc.org

European Union Minorities and Discrimination Survey (EU-MIDIS): http://fra.europa.eu/fraWebsite /eu-midis/index_en.htm

Focus on the Global South: www.focusweb.org

Football Against Racism in Europe: www.farenet.org

International Coalition of Cities against Racism: www.unesco.org/new/en/social-and-human-sciences/themes/human-rights/fight-against-discrimination/coalition-of-cities/

International Movement Agains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nd Racism: www.imadr.org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www.ohchr.org

South African Human Rights Commission: www.sahrc.org.za

The Asia Foundation: www.asiafoundation.org

Third World Network: www.twnside.org.sg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www2.ohchr.org/english/bodies/cerd/index.htm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General Comments: www2.ohchr.org/english/bodies/cerd/comments.htm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www2.ohchr.org/english/bodies/hrcouncil/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Contemporary Forms of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www2.ohchr.org/english/issues/racism/rapporteur/index.htm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2001: www.un.org/WCAR/

건강권

RIGHT TO HEALTH

사회적 적용

과학발전

가용성과 서비스 질

>>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중략]. <<

세계인권선언 제25조. 1948.

사례

Maryam은 36세로 여섯 아이의 어머니이다. 그녀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에서 자랐으며, 2학년을 마친 후 학교를 그만두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가난했고 학교는 4킬로미터를 걸어가야 했다. 아버지는 여자아이를 가르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의 낭비라고 믿었는데, 여자애는 결국 시집가 버릴 것이므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가 12세가 되던 해에 지역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았으며, 16세가 되던 해에 50대 초반의 남자와 결혼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신랑으로부터 혼수로 상당한 금액의 돈을 받았다. 그녀는 결혼한 바로 다음해에 아들을 출산했지만, 사산이었다. 지역의료원은 10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어서 출산 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Maryam의 남편은 임신중에도 자주 Maryam을 구타했는데 Maryam은 그로 인해 아이가 사산된 것이라고 믿고 있다. 반면 그녀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사산에 대해 Maryam을 비난했다.

Maryam은 남편과 전혀 섹스를 하고 싶지 않았으며, 남편이 두렵고 임신도 두려웠다. 남편은 자신에게는 그녀와 섹스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정기적으로 강압적으로 이를 했다. Maryam은 다시 임신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 그녀는 동네 마을 약초상을 방문하여 임신을 막는 약초를 처방받았으며, 임신을 막는 부적도 지녔다. 아주 간혹 보건소에 가기도 했지만, 그것도 아이들이 아플 경우였으며, 이 때에도 간호사에게 피임법에 대해 물어보지는 못했다. 간호사는 Maryam의 지역어를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수도에서 그리고 지식계층에서 쓰는 언어로 이야기하는 듯 했다. 간호사는 Maryam에게 고압적이었다.

그녀의 삶은 폭력, 빈곤과 결핍의 대하소설이다. Maryam이 수차례의 임신, 그리고 육아의 과정에서 자신의 몸과 정신을 지켜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또한 남편의 수입이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Maryam 자신이 조그만 농장을 가꾸었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와 심지어 방문 선교사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 그들 모두 그녀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했고, 그와 가족을 위해 사는 것이 그녀의 의무라고 말했다.

어느 날 그녀의 남편이 Maryam이 외간 남자와 '사귀고 있다'고 있다고 고소했다. 그녀가 장날에 지역 주민과 만나서 웃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보았다고 항의했다는 것이다. 그녀가 항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계속해 반복적으로 그녀를 때리고, 바닥에 짓이기고, 창녀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망신당하게 했으니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 질렀다. Maryam은 심하게 부상을 입었었는데, Maryam는 늑골이 부러진 것 같다고 생각했다. 몇 주 동안 그녀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치료를 받기 위해 보건소에 갈 수 있는 돈도 하지만 갈 방법도 없었다. 마을의 어느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았는데, 그녀의 남편이 멀리 나가있다고 알고 있는 이들도 그랬다.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인 셈이다. 물건을 거래하거나 밭을 가꾸기 위해 나갈 수 없게 되자, Maryam과 아이들은 거의 굶주렸다.

Maryam은 앞으로도 폭력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녀와 아이들의 삶에 대한 공포를 느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꿈을 꾸고서, 그녀는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걸을 수 있게 되자마자, 가장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마을을 떠났다. 지금은 다른 마을에서 살고 있으며, 이는 혹시 남편에게 발각되어 자시 집으로 잡혀갈까 두려워하며 자신의 나라에서 난민으로 살고 있는 셈이다. (출처: WHO 보고서 'Transforming Health Systems: Gender and Rights in Reproductive Health'(2001)에서 발췌)

토론할 거리

1946년에 제정된 세계보건기구(WHO)의 규정: "[중략] 건강은 단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완전한 안녕 상태"에서 정의한 건강에 대한 정의를 다루는 관점으로 다음 아래 정리된 토론할 거리들을 생각해보라.

1. Maryam의 문제가 시작된 때는 언제인가?
2.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아버지, 남편, 간호사, 선교사)이 그녀를 어떻게 다루었는가? 왜?
3. 가난이 Maryam의 삶과 그녀의 아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Maryam과 그녀의 남편은 동등하게 가난하다고 생각하는가?
4. Maryam이 속한 공동체에서 각 그룹(남성, 여성, 아동)이 권력과 위치에 있어서의 사회적 서열관계는 어떠한가? 그리고 이를 설명해 보라.
5. Maryam의 삶과 아이들의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녀에게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
6. 지역에 의료 센터가 있기는 했지만, 이것이 Maryam에게 과연 얼마나 유용했는가? 이를 설명해 보라.
7. 아래의 박스를 보라 : 건강과 인권이 관련된 예들을 보여준다. Maryam의 사례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슈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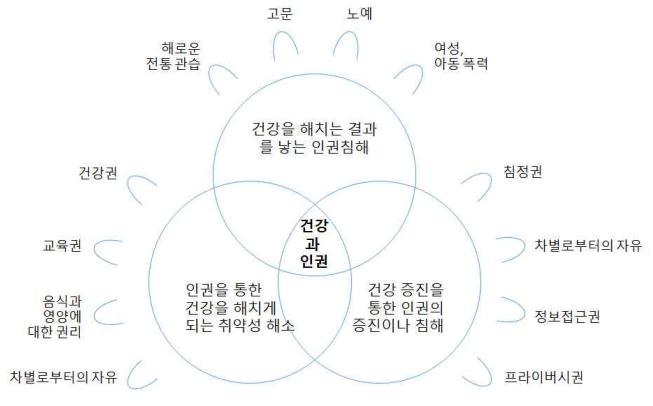

건강과 **인권**간의 연결 사례

=>참정권을 참정권으로 / 인권을 통해 건강 약화에 대한 취약성 해소 / 건강 약화를 낳는 인권 침해

알아야 하는 내용

1. 광의의 건강권

건강과 복지가 본질적으로 삶의 모든 단계와 측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인권은 광대하고 복잡한 세트로 나타난다. 건강에 관련된 특별한 권리는 국제인권문서들에서 찾을 수 있다. 근본적으로, 모든 인권은 상호의존적이고 상호연결 되어 있어서, 인권 무시나 침해뿐만 아니라 인권 실현에도 하나의 독자적인 인권이 아닌 수많은 인권들이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상호연결성은 인간의 복지(즉 건강)가 모든 인간적 필요의 충족을 요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명해진다. 이러한 필요에는 공기, 물, 음식과 성과 같은 생리학적 요구와 사회 정신적인 요구인 애정, 친구, 가족,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등이 있다.

인권은 각 개인과 단체가 존엄을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국가가 책무를 지게 한다. 2차 세계대전 후, UN헌장은 회원국에게 인권 존중과 책무를 분명히 하고 있다. 건강권에 대해서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UDHR) 제25조에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중략]." 고 명시하고 있다.

건강에 대한 광범위하고 비전 제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전문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중략]건강은 단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완전한 안녕 상태이다." 이러한 건강에 대한 통합적 시각은 건강에 관련된 많은 정책이 통상적인 건강 부문 밖에서 만들어지며 건강에 대한 사회적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WHO는 다음의 세 가지 주요 영역에서의 인권 원칙의 운용에 더 큰 중점을 두고 있다. : 건강 증진에서의 인권 기반 접근방식의 적용과 구현을 힘쓰는 정부 지원, WHO의 활동에 인권기반 접근 방식을 결합시키는 WHO의 역량 강화, 그리고 국제적 법과 개발 과정에서의 건강권 증진. WHO는 WHO 내에서의 건강과 인권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였다. 이는 인권을 WHO의 활동에서 인권의 주류화와 인권이 국가 공공 의료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서 부각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건강과 인간안보

무력 분쟁 및 이로 인한 비상사태가 증가함에 따라, 전쟁 및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를 받고자 하는 난민이 증가함에 따라 생명권이 건강권의 핵심에 위치하게 되었다. 국제적십자위원회, 인권을 위한 의사회, 국경없는 의사회와 같은 조직들은 비상사태나 기타 불안한 상황에서의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인권의 틀을 적용하여 의료 전문가들을 파견하고 있다.

폭력은 주요한 공공 보건 문제와 건강권의 실현에 있어 심각한 장애이다.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폭력에 의한 상처로 죽는다. 또 다른 많은 이들이 살아남지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된다. 폭력은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폭력은 복합적인 사회적, 환경적 요소의 결과다. 내전이나 국제전에서 나타나는 집단적 폭력의 경험에 대해서는 내전의 경우 폭력의 사용 빈도가 더 높다고 보고된다.

2. 정의와 설명

건강과 인권

건강과 인권간의 중요한 연결 관계가 있다. 상호 교차되는 영역으로 몇 개 지정해보면, 폭력, 고문, 노예, 차별, 물, 음식, 주거, 전통 관습 등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적정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로서 건강권을 인권의 한 부분으로 선언하였는데, 이는 1966년에 만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 (ICESCR) 제12조**에서 보다 자세히 규정되고 있다. 이 조약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CCPR)과 동시에 채택되었다. 두 개의 부류로 협약을 분리한 것은 냉전체제의 긴장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서구권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인권에 있어서의 핵심으로 본 반면, 동구권은 ICESCR을 우선시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ICCPR은 167개국이 조인했으며, ICESCR은 160개국이 조인했다.

ICESCR 제12조의 문구는 건강권에 대한 기초석인데,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이들에게는 도달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식한다.

2. 당사국들은 이 규약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다음의 필요조건을 따르는 단계들을 취해야 한다.

   a. 사산율과 유아 사망율의 감소와 아동의 건강한 발육을 위한 제공

   b. 모든 부문의 환경과 산업 위생 개선

   c. 예방, 치료 및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과 기타 질환의 감소

   d. 질병 발생 시에 모든 종류의 의료 서비스가 보장되는 환경 구성.

보다 더 나아간 건강권을 정의하는 지역적 인권 조약이 몇 가지 있다. 여기에는 1961년에 제정되어 1996년에 수정된 유럽사회헌장 제11조, 1988년 제정된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서의 인권에 대한 미주 협약의 추가의정서 제10조, 1981년 제정된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제16조가 있다.

"결국에는 건강이 그저 소망하는 축복의 대상이 아닌 투쟁의 대상인 인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코피 아난

각국 정부들은 ICESCR의 제12조에 대한 책무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규약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기구는 **일반 논평 14호**를 통해 각국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였다. 이 논평은 2000년 5월에 채택된 해석문이다. 이 일반 논평은 다른 인권의 실현이 건강권의 실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주목한다. 여기서의 다른 인권이란 생명권, 음식 및 주거에 대한 권리, 노동권, 교육권, 참여권, 과학적 성과와 그 응용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권리, 모든 종류의 정보의 수집 및 제공과 전달의 자유, 차별 철폐, 고문 방지, 집회. 결사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이다.

유용성, 접근성, 수용성 그리고 서비스 질

일반 논평은 건강권을 평가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준을 세웠다.

유용성 : 공중 보건과 의료 시설, 상품 및 서비스 뿐 아니라 의료 프로그램이 제대로 기능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서비스 및 프로그램들은 이용하기에 양적으로 충분하여야 한다.

접근성 : 건강을 위한 시설, 상품과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 차별이 없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물리적 접근성, 경제적 접근성 및 적절한 정보제공이 보장되어야 한다.

수용성 : 모든 의료 시설, 상품과 서비스는 의료적 윤리와 문화적 적절성, 젠더 감수성, 생애주기별 요구사항 등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이는 비밀을 존중하고 당사자의 건강 및 관련된 이들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서비스 질 : 보건 시설, 상품과 서비스에는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적절하고 좋은 품질이 요구된다.

인간은 인간을 치유할 수 있다.

Wolof 전통 속담

차별금지

건강권의 향유에 있어서 성, 나이, 사회적 출신, 종교, 육체적/지적 장애, 건강상태, 성정체성, 국적, 시민/정치적 지위에 따른 차별은 허용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중요한 것이 세계인권선언, 1965년 제정된 국제인종차별철폐협약(ICERD), 1979년 제정된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이 있으며, 이 협약들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제10조, 제12조, 제14조에서 가족 계획, 생식 건강 관리와 임신과 가족의 건강 관리에 적절한 서비스를 포함한 **의료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접근권**을 확인하고 있다.

☞ 차별금지 / 여성인권

2005 베이징+10 회의에 의해 다시 확인된 **베이징 선언과 행동 강령(1995)**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건강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과 여성의 온전한 사회적 참여의 필요에 주목하였다: "여성의 건강은 자신의 정서적, 사회적, 육체적 안녕을 포함하며, 이는 생물학적 요소뿐만 아니라 여성 자신의 삶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최상의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가정에 대한 책임 공유를 포함한 평등, 발전과 평화가 필수조건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UN시스템 전체와 NGO들의 노력을 통해 주류화되고 있다. 여성, 아동, 장애인과 토착 부족민들은 차별로 인한 건강 관련 문제를 겪고 있는 소외된 약자집단이다. 여성의 경우에 발생하는 건강권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들을 통해, 건강권의 온전한 실현을 도와야 하는 정부의 책무에 점차 무게가 더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 여성인권 / 아동인권 / 차별금지 / 소수자권리

과학 발전의 성과를 향유할 권리

광범위한 AIDS 전염은 개발도상국민들이 사용가능한 의약품과 과학적 지식 개발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항 리트로바이러스(역주: 유전자 전달물질로 DNA 대신 RNA를 사용하는 바이러스로 AIDS, 인플루엔자의 원인 바이러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변이가 매우 쉽게 일어나는 특징이 있다)요법에 대한 한정된 접근성은 최고수준의 도달가능한 건강 수준 실현에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과학적 지식을 자유롭게 탐구, 추구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오랫 동안, 각

정부들은 ICESCR의 제15조에서 말하고 있는 "과학적 성과와 그 응용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권리와 과학과 과학 연구를 보전하고, 개발하고 확산해야 할 책무를 인식해 왔다. 동시에, 제15조는 과학, 문학, 예술 작품에 따른 저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이기도 하다.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제약 회사의 특허권 보호를 규정하는 지적재산권에 의해 좌절되고 있다. 남아프리카, 인도, 브라질, 태국과 같은 일부 국가들은 정책을 통해 2001년 도하각료회의에서 결정된 특허 보호의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은 다음의 특허 보호 규칙에 동의했다: *"[중략] WTO 회원국이 공중 보건을 보호할 권리를 지지하는 방식에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만 한다. 특히, 모든 이들에게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 그러하다."* 더욱이, 다음의 각 상태에 대한 권리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 *"[중략] [특허 준수 의무에서 벗어나는]국가적 재난이나 긴급 상황에 처했는지를 결정하기; HIV/AIDS, 결핵, 말라리아 등의 전염병에 관련하여 공중 보건의 위기라고 이해되는 상황은 국가적 재난이나 긴급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출처: WTO. 2001.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

세계화와 건강권

1970년 이후로 세계 경제는 세계화에 따라 급속하게 변했는데, 이는 직간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들, 시민 사회, 그리고 기업의 파트너십으로 인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고용 기회가 증가하였고, 과학 지식의 공유가 이루어졌으며, 전 세계적으로 높은 건강 기준이 충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 하였다. 반면 무역 자유화, 낮은 노동 조건의 국가에 대한 투자와 신제품에 대한 세계적 마케팅 등 부정적 영향도 많이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실패나 규제의 미비에 기인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 간이나 국가 내 불평등을 양산하여, 결국 건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경을 넘나드는 상품, 돈, 서비스, 사람, 문화와 지식의 흐름 증가에 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능력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갈 수 없었다. 동시에 다국적기업들은 책무성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세계보건기구의 건강과 경제 TF에 따르면, 대중 건강에 대한 적절한 보호 없이 담배와 같은 해로운 물질에 대한 무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건강권에 대한 관심과 관련되어, 인권법에 근거한 무역법과 그 법의 실행이라는 도전은 크게 자극받고 있다. 예를 들어, 의약품 특허에 관련되어 개선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2001년의 도하 선언(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은,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들이 긴급 상황에서 의약품 제조에 대한 라이센스를 정부가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제5조), 제조 능력이 없는 나라가 의약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며(제6조), 선진국은 의약품에 관련된 기술과 지식 이전이 가능하도록 개발도상국을 도와야 한다

(제7조)고 규정하고 있다.

2003년 8월의 세계무역기구 총회의 결정은 2005년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의 내용으로 대체되었으며, 여기서 거의 혹은 전혀 생산능력이 없는 최빈국의 경우, 특별히 특허 의약품의 생산 라이센스를 허용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공공 보건에 대한 필요가 특허권보다 우위에 서게 된다. 반면 이러한 성과가 양자간이나 지역별 무역협정의 소위 TRIPS-plus라는 규칙에 의해 다시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권과 생명권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건강과 환경

1990년 10월에 있었던 UN총회 결의안 45/9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는 *"건강과 복지를 위해 적절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권리는 90개국의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으며, 1992년 리우환경개발회의 이후로 대부분의 나라의 헌법에 포함되어 있다. 아젠다21로 일컬어지는 1992년 리우에서의 지구정상회담과 계획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상호의존적인 축인 사회, 경제 및 환경에 대한 관심을 하나의 정책 프레임으로 만들도록 했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과 공기, 그리고 영양 식품의 적절한 공급은 모두 건강한 환경과 건강권의 실현에 관련되어 있다.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정상회의는 아젠다 21의 실천을 검토했다. 이행에 대한 요하네스버그 계획에서, 전세계적 건강 정보 시스템과 건강정보이해능력(health literacy)을 증진시키는 데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표출되었다. 이는 HIV/AIDS의 확산을 줄이고, 공기와 물에 포함된 독성물질을 감소시키며, 빈곤 퇴치와 건강 문제를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모든 질병의 1/4 정도-설사에서부터 감염 그리고 암 등-가 환경오염으로부터 야기된다. 질병의 1/3 이상이 환경적 요인에 기인하며, 어린이들은 분담의 불균형이 일어난다. 환경적 위험요소가 세계보건기구에 정기적으로 보고되는 80% 이상의 질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발도상국은 전염성 질환과 부상 등에 대해 특히 이러한 요소의 영향을 받는 반면에, 선진국에서는 심혈관 질환과 암이 더욱 만연히 나타난다. 건강에 대한 환경적 위험요소를 줄이고 이러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공중예방전략은 모든 지역 사회에서의 공중 보건에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세계 여러 지역 아동의 정신 지체 장애 원인인 유연 휘발유의 단계적 해소는 그러한 성공의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2015년까지 인류의 50% 이상이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대해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새천년 개발목표 7과 같은 중요한 계획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출처: WHO. 2006. *Preventing Disease Through Healthy Environments: Towards an estimate of the environmental burden of disease.*)

건강과 환경간의 연결점을 드러내는 몇 가지 인권 문건이 있는데, 아프리카인권헌장(제24조),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영역에 대한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제11조) 등이 그 예다. 인권조직에 관한 판례법에서 이러한 연결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예를 들면, 여러 NGO 단체는 1996년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대한 아프리카위원회(ACHPR)에 제출된 전언에서, 나이리지아 군사정부가 국영 석유 회사와 쉘을 통해 석유생산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여기서의 석유 생산이 오고미(Ogoni) 사람들에게 환경오염에 의한 환경 파괴와 건강 문제를 야기 했다고 주장했다. 2001년 10월에, 아프리카 위원회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아프리카인권헌장의 7가지 조항을 위반했음을 발견했으며, 여기에는 건강권에 대한 위반도 포함되어 있다. 2007년 미주인권재판소의 결정문(Saramaka족 대 Suriname (역주: 남미 북동부 공화국) 사례)에 따르면, 법원은 벌목과 금광채취로 인한 환경 파괴로 인해 침해된 건강권을 포함한 인권에 대한 책임이 Suriname 정부에 있다고 판결했다.

☞ 소수자 권리

3. 문화적 관점 차이와 논쟁적 이슈

1993년 비엔나 선언은 차이점은 인식을 해야 하지만, 인권의 보편성을 부정할 근거는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건강권에 대한 일반논평 14호는 건강시설, 상품과 서비스들이 문화적으로 적절해야만 한다는 요구함으로서 이러한 인식을 구성하고 있다. 건강권에 대한 하나의 문화적 측면은 건강 관련 생의학 시스템에 대한 것으로, 따라서 건강권을 실현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나타난다. 그러나 세계의 많은 곳에서 전통 의술(TM: Traditional medicine)이 건강관리 관행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인구의 80%에 이르는 숫자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전통 의술을 사용하고 있다. 아시아(특히 중국), 라틴아메리카, 호주와 아메리카 원주민 등에서는, 전통 의술이 40% 이상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WHO는 "[중략] 약초, 동물이나 광물질 성분 의약품의 활용과 비 약물 요법[중략], 지압 및 요추요법, 영적 치료."과 같은 치료를 전통의술이라고 본다. 전통 의술 실행은 문화에 대한 권리, 지적재산권보호법, 토지권과 지속가능한 개발권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전통 의술의 광범위한 활용 및 이점과 경제적이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치료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WHO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전통 의술의 합리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전통의술전략(Traditional Medicine Strategy, 2002-2005)을 만들었다.

다른 경우로, 그룹 내에 존재하는 젠더, 나이, 종교, 인종 등에 관련하고 근본적으로 문화에 결합된 불평등한 권력관계로 인해 건강권이 무시되거나 침해되는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하지만 차별금지라는 기본 원칙이 적용된다. 여성 생식기 절제(FGM: Female genital mutilation)는 아프리카, 지중해 연안국과 중동 일부 등 많은 국가에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종종 종교의 관행에 잘못 기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는 2000여 년 동안 일어나고 있다. 이 행위는 소녀와 여성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

1996년 2월부터의 WHO, UNICEF와 UN 인구기금의 공동성명에 따르면, 이는 "다문화주의의 왜곡된 시각의 이름에 숨어 국제사회가 수동적으로 있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이들의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관점에서 나타나는 인간 행동과 문화적 가치는 얼마나 무의미하고 파괴적이든지 간에 이를 행하는 사람을 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러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렇지만 문화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한 흐름으로 적응과 재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에 위의 세 조직은 이 문서를 업데이트 했는데, 새로운 실행에 관한 새로운 사례를 제공하고 인권과 법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 같은 해에 WHO 세계보건총회는 FMG(여성 할례) 제거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건강, 교육, 재정, 정의와 여성 문제 부문에서의 협력 활동의 중요성에 집중하고 있다.

☞ 여성인권

4. 이행과 모니터링

건강권의 존중, 보호 그리고 충족

사회구성원들이 도달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보장하려는 국가의 책무는 그 보장의 범위를 필요로 한다. **건강권을 존중**해야하는 책무는 권리를 방해하거나 침해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소수 인종이나 재소자와 같은 특정그룹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길 거부하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임의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으로 남성의사가 여성을 진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여성 의사를 제공하는 않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은 인권을 향유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국가가 비국가 행위자를 막아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의 예로 기업이 상수도원에 독성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국가는 사람들에게 이를 해결할 방안을 제공해야만 한다. 또한 이는 국가가 독성 폐기물 관리를 규제하고 모니터링 하는 법과 같은, 필요하고 적절한 법안을 채택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건강권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의료서비스 접근권 제공에 있어 국가가 능동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해당 인구수에 서비스하기에 충분한 수의 의료 시설이 있어야하고 이러한 시설에서 서비스할 평균적인 인구수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국가는 이러한 시설의 위치, 제공 서비스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 건강 돌봄 서비스가 사적 영역으로만 이관되어 제공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장할 수 없다.

건강권의 한계

어떤 인권분야는 결코 제한되면 안 되는 필수적인 것이다. 여기에는 고문, 노예상태에서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가 포함된다. 공공의 이익이 개인 권리에 우선하는 경우에 다른 인권들이 제한될 수 있다. ICESCR의 정관 4조에서는 법률에 근거하거나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이러한 권리의 본질을 대체하거나 오로지 보편적 복지를 증진하는 목적에 한해서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공중 보건의 측면에서의 건강권 보호는 국가가 다른 인권에 대한 제안을 하는 이유로 사용하곤 했다. 전염성 질환의 확산을 막는 노력으로 다른 자유를 제한을 하려는 노력이 종종 있다. 이동권 제한은 검역과 격리는 에볼라, 에이즈, 장티푸스, 결핵과 같은 심각한 질환의 확산을 막는 수단으로 채택된다. 이러한 수단은 종종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 공중 보건이라는 명목으로 저질러지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제한 조치를 마지막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1984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제한과 폐기 조치에 대한 **시라큐스 원칙**은 이러한 관점에서의 지침을 제공하고 제한을 부과할 경우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빡빡하게 규정한 틀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제한은 다음 아래와 같이 제안되어야만 한다.

- 법률에 규정되고 법률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르며;
- 보편적 이익에 대한 합법적인 목적이라는 관심에 기반하여;
- 이러한 목적을 얻기 위해 민주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 중에서 최소한의 충돌과 제한을 하는 수단;
- 선별되거나 임의로 의견을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즉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방식은 배제돼야 한다.

모니터링 시스템

정부가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충족시킬 책무를 수행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 및 국제적 차원 모두의 차원에서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가 일단 건강권 보장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고 나면 정부 위원회, 옴부즈맨과 NGO들이 공식적인 검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인권 조약의 각 당사자들은 조약 모니터링 조직인 **경제사회문화권 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에 각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리뷰 보고 기간에, NGO들 또한 "새도우 보고서"라고 종종 언급되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러한 새도우 보고서는 시민사회의 시각을 제공하며 때로는 정부 보고서와 일치하지 않기도 한다. 제출된 모든 정보들은 조약 기구가 종합관찰보고서(Concluding Comments and Observations)를 준비할 때 고려된다. 규정 준수를 강제할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는 공공기록물로서 남게 되며, 해당 국가는 아마도 어떤 것보다도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권 침해국이라는 비난을 받기를 원

하지 않을 것이다. 2008년에 적용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가 발효되고 나면, 개인 민원 메카니즘은 건강권을 포함하게 되며 경제사회문화권에 의해 결정되는 개별적 케이스를 허용하게 된다. 신체와 정신적 건강에서의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할 모든 이의 권리에 대한 **UN 특별 보고관**은 2002년에 UN 인권위원회에 의해 구성되어 UN인권이사회로 이관되었으며, 정보들을 다루어 정부와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화를 진행한다. UN 특별 보고관은 정기적으로 건강권에 대한 실태보고서를 내는데, 여기에는 법률, 정책, 선례와 애로점등이 포함된다. 또한 그는 필요한 권고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한다. 최종적으로는 보고관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여 건강권 위반의 혐의점에 대해 조사한다.

알면 좋은 내용

1. 모범 사례

에이즈 예방

캄보디아, 우간다, 세네갈, 타이, 잠비아 도시지역과 고수익 국가들의 성공 사례는 포괄적인 예방 접근법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해당 증거를 정리하면:

- 행동 변화는 다음의 것들을 필요로 하는데, 해당 지역에 적절하고 목표에 맞춘 정보, 협상과 의사결정 기술에 대한 훈련, 사회적, 법률적 지원, 예방수단(콘돔과 청결한 주사바늘)의 접근성과 변화의 동기 등이 해당된다.
- 어떤 한 예방 접근방식이 대중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한다. 국가단위에서의 예방프로그램은 목표한 인구집단에 맞추어서 개발된 여러 가지 구성요소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 일반적 인구집단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은 특별히 젊은이에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 성공을 위해서는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다. 다양한 인구집단에 맞추어진 다양한 프로그램은 다양한 파트너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HIV/AIDS 감염자 그룹도 포함된다.
- 정치적인 리더십은 효과적인 대응에 필수적이다.

여성할례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의 여성 인권 인식 태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Efua Dorkenoo. Cutting the Rose

시민 배심원과 공공보건 정책

시민배심원제(CJ)는 공공 건강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새로운 모델이다. 영국, 독일,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미국의 모델은 다양한 인구 집단을 대표하는 12-16명의 일반 시민 그룹으로 구성되며, 그들에게 주어진 정보들을 세밀히 조사하고 전문가 증인에게 질의하고, 토론하고, 그들이 찾아낸 결론을 심사숙고하여 발표한다. 해당 당국은 주어진 시간에 답변을 해야 한다. 영국에서는, 광범위한 시범 연구를 통해 여론조사, 심화그룹 인터뷰나 공청회보다는 시민배심원제가 복잡한 문제를 다루고 건실한 해결점에 찾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일반 시민들은 의사결정과정에 기꺼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자 하며 그들 자신과 가족을 위한 공중 보건에 대해 강력하고 일관된 관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명료하다.

말리콘다 선언

1980년대에, 세네갈의 한 풀뿌리조직이 문제해결방식에 관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이 과정은 마을 전체가 인권에 대해 배우고 그들 일상의 삶에 이러한 배움을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에게 보건, 위생, 환경 문제와 재정 및 물품 관리 기술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했다. 토스탄(TOSTAN)[12]은 말리콘다라는 3천 명 정도 주민의 마을에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 마을은 가장 완전하며 잔인한 여성 할례 중 하나인 인피블레이션(infibulation)이 여전히 성행하는 밤바라 마을중 하나이다. 인피블레이션에 의한 감염, 출산시의 위험성과 성생활에서의 고통을 집중적으로 다룬 거리공연과 대대적인 공개 토론을 통하여, 마을 전체가 이제는 여성할례를 하지 않기로 한 선서를 했다. 이는 "말리콘다 선언"으로 알려졌으며, 두 마을 장로는 이러한 할례가 중지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다른 마을로 퍼뜨리기 시작했다. 1998년 2월경에는 13개 마을이 선언을 하였다. 1998년 6월에는 15개 마을이 추가로 참여하였다. 이 운동은 국제적 관심을 받게 되었다. 1999년 2월 13일, 세네갈 국회는 여성 할례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적 조치만으로 이러한 관행을 없애기에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마을이나 대중에 의해 작동하는 사회적 통제에 이러한 힘이 있으며, 이러한 힘은 "말리콘다 선언"을 이루어내는 방식을 통해 작동한다.

12) 세네갈의 지역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으로 3년 기한 프로그램이다. 공식 사이트는 www.tostan.org

토스탄 프로그램은 건강권과 다른 인권과의 연결점을 강조하고 있다.

메모리 북

많은 나라에서, 메모리북은 HIV/AIDS에 대해 가족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중요한 방법이 되고 있는데, 특히 HIV양성 엄마가 엄마의 감염 상태에 대해 자기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도움이 된다. 말기 환자 부모와 그들의 아이들이 함께 메모리북을 구성해나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진, 일화, 다른 가족의 기념품 등이 포함되는 앨범(모음집)의 형태를 띄곤 한다.

우간다에서는, 메모리북을 1990년초에 AIDS지원단체협회(TASO)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1998년 이후, 국립 AIDS 여성협회는 이러한 접근방식을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시키도록 접근했으며, 이는 PLAN Uganda로부터 지원받았다. 이 협회는 HIV에 감염된 어머니가 자신의 악화된 건강에 대한 자식들과의 소통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메모리북이 엄마가 자식들의 삶에서의 HIV/AIDS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고 그 영향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책은 아이들에게 그들의 뿌리에 대한 기억으로 역할하여 소속감을 잃지 않게 한다. 또한 이 책을 읽은 아이들은 부모들이 겪게 되는 시련을 이해하고 그와 같은 운명을 겪지 않기 원하게 된다. 따라서 이 책은 HIV/AIDS 예방 역할도 하게 되는 셈이다.

우리의 친구 식물이 동물이 인류에 맞서기로 했다는 결정을 들었을 때,
그들은 여기에 대항하기로 계획했다. 각각의 나무, 관목, 약초, 수풀, 그리고 이끼들은
동물과 곤충에 의해 이름 지어진 질병을 위한 치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러므로 체로키 인디언들이 그들의 음식 때문에 주술사를 방문하였을 때,
그리고 만일 이 치료 주술사가 확신이 없다면, 그는 식물의 영혼과 교감한다.
식물들은 인류의 질병을 위해 항상 적절한 치료를 제시한다.
그것이 아주 오래 전, 체로키 부족의 의학의 시작이었다.

Cherokee. The Origin of Medicine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주의

세상 어느 곳이나, 마약 사용자와 죄수들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구성원이다. HIV/AIDS, 기타 심각한 상태에서도, 이들의 건강권은 거의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범죄자 혹은 약물중독자로서의 그들의 지위는 정보, 교육, 기본적 건강과 사회 서비스 접근권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는, 영국과 네덜란드는 피해감소(Harm Reduction)라고 알려진 모델을 개념화하였다. 그

후, 이 모델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지역사정에 맞추어 모사되고 적용되었다. 이 전략은 개인이나 마을 공동체 양측의 입장에서, 마약 사용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념한다. 이는 약물의 안전한 사용에서부터 관리 하에서의 약물 사용과 중단까지의 스펙트럼을 포함한다. 피해감소 패러다임이 이미 불법으로 지정된 약물 일부에 대한 비범죄화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이는 적어도 비 약물중독자들의 약물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요구한다. 네덜란드의 경우처럼 감금된 약물사용자들도 사회로 풀려난 약물사용자들도 인권 규범에 따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을 사용하지 않은 공동체보다 피해감소 정책을 적용한 공동체에서 정맥주사형 마약 사용자의 HIV/AIDS나 다른 혈액감염질환의 발생이 줄어드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안전한 주사 시설, 청결한 바늘 교환 및 교육과 재활과 같은 방식을 도입한 국가들은 또한 마약 통제 조약의 서명국이고 피해감소가 다른 국제 조약들과 충돌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몬트리올 선언[13)]

지적장애가 있는 이들의 필요에 대해 몇 년에 걸쳐 토론한 후, 2004년 10월 6일에 열린 지적장애에 대한 몬트리올 PAHO[14)]/WHO 회의에서는 국가와 국제기구들이 장애인의 권리를 정의하는 방식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약속했다. 그들이 장애를 가진 개인이 아니라 모든 인간 중 우선적인 존재라는 사실이 모든 정책의 중심에 있어야만 한다. 이 선언은 지적장애를 가진 이들이 시민으로서의 온전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분명한 업무에 대해 전적으로 자각하라고 국제사회에 요청한다. 선언은 평등, 차별금지, 자기결정권의 기본적인 수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다. 순수한 생의학적 모델에서 돌아서서, 이 선언은 "[…] 건강, 복지와 장애에 있어서의 인권적 접근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 선언은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지만, 지적 장애를 가진 이들의 권리를 다루는데 있어서의 안내와 표준을 제공하는 유일한 문서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고 있다.

SARS (사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스는 2002년 11월에 전염이 시작되어 2003년 7월 제어가 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기간 동안 8,400명이 넘는 이들이 감염되었고 이 중 900여명이 죽었다. 가장 심각하게 감염된 나라—중국, 홍콩, 베트남, 대만과 캐나다—들의 대응 전략에서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러한 전략들은 또한 건강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모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염 기간에 제기된 이슈들은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 국제적 안전에 관련된 국가들의 책무, 개인에 대한 건강권과 검역에 대한 정당성 등이었다. WHO는 45일 동안 65명이 감염

13) (역주) 국내 번역 자료을 찾기 어려우며, 원본 자료는 http://www.jaid.org.jm/membersdocs/declaration_eng.pdf 에 있다.
14) 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

됐고 5명이 사망한 베트남의 성공사례를 인용했다. 건강권의 전체적인 본질은 베트남의 성공적인 상황처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확인된 지역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 포괄적이고 잘 작동하는 국가 공공 보건 네트워크,
- 감염자에 대한 엄격한 처리, 감시 및 격리,
- WHO와 다른 파트너와의 효과적인 협력,
- 발발에 대한 초기의 공공 안내,
- 대중 매체와 전자통신을 통해 대중에게 제공된 일상적 정보의 투명성,
- 모든 지역과 국가 정부와 기관 간의 탁월한 협력.

2. 트렌드

인권과 건강 증진을 통합하기 위한 전략

건강에 대한 인권적 접근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무엇이 수행되고 있고 무엇이 수행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국가들과 국제적 공동체적 책임을 구성하는 틀을 제공할 수 있다. 인권이 정책 제안, 사회적,신체적 건강 상태에 대한 분석과 보건전달체계에 통합되었다는 점은 건강권의 실현을 향한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준다. 다음의 목록들은 현재의 트렌드를 보여준다.

정부와 관련 파트너들의 업무 및 학술 문헌 모두에서 건강권과 인권을 연결시킨 경험이 있는 영역 :

- 출산과 성적 권리
- HIV/AIDS
- 고문 (방지와 조처)
- 여성 폭력
- 전염성 질환

건강권과 인권을 연결할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반영되기 시작한 영역 :

- 원주민의 권리
- 유전자 변형에서 나타나는 생명윤리 및 인권의 의미

- 모자 건강
- 장애인 권리
- 특정 무역 협정과 건강권에 대한 영향
- 재해 후 재건
- 빈곤 퇴치

건강과 인권의 통합에 대해 연구 및 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영역. 다음 영역에서의 차이가 특히 눈에 띈다 :

- 근로자 건강
- 만성 질환
- 영양
- 환경 (대기, 수질, 어업 등)

정보와 통계는

책임에 대한 문화를 만들고 인권을 깨닫게 하는 데에 있어 강력한 도구다.

인간개발보고서. 2000.

---

3. 통계

교육, 건강, 국방 부문에서의 공공 지출 (GDP대비 %):			
국가	**교육 (2007)**	**건강 (2007)**	**국방 (2010)**
호주	4.7	6.0	–
오스트리아	5.4	7.7	0.9
브르키나 파소	4.6	3.4	1.5
중국	–	1.9	2.0
쿠바	11.9	9.9	–
조지아	2.7	1.5	3.9
독일	4.4 (2006)	8.0	1.4
인도	3.2 (2006)	1.1	2.4
말리	3.8	2.9	1.9
스웨덴	6.7	7.4	1.2
영국	5.6	6.9	2.7
미국	5.5	7.1	4.8

짐바브웨	–	4.1	1.3
(출처: UNDP. 2010. *인간개발보고서 2010.; 세계은행, 세계발전지수*,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건강 지출 (2009)			
국가	**총액 (공공+민간, GDP 대비)**	**공공 지출 (총액 대비)**	**1인당 지출비용 (US$)**
호주	8.5	65.4	3,867
오스트리아	11.0	74.5	5,037
브르키나 파소	6.4	61.7	38
중국	4.6	50.1	177
쿠바	11.8	93.1	707
조지아	10.1	28.7	256
독일	11.3	75.7	4,629
인도	4.2	32.8	45
말리	5.6	47.9	38
스웨덴	9.9	78.6	4,252
영국	9.3	83.6	3,285
미국	16.2	48.6	7,410
짐바브웨	-	-	-
(출처: 세계은행, 세계발전지수,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기대 수명 (2010)	
국가	**기대 수명 (전체 인구)**
호주	81.9
오스트리아	80.4
브르키나 파소	53.7
중국	73.5
쿠바	79.0
조지아	72.0
독일	80.2
인도	64.4
말리	49.2
스웨덴	81.3
영국	79.8
미국	79.6
짐바브웨	47.0
(출처: UNDP. 2010. *인간개발보고서 2010.)*	

출산 사망 (100.000 출산 당, 2010)	
국가	**출산 사망 비율**
호주	4
오스트리아	4

브르키나 파소	700
중국	45
쿠바	45
조지아	66
독일	4
인도	450
말리	970
스웨덴	3
영국	11
미국	20
짐바브웨	880
(출처: UNDP. 2010. *인간개발보고서 2010.)*	

4. 연혁

1946 세계보건기구 (WHO) 설립

1961 유럽사회헌장 (수정 1996)

1975 평화와 인류 이익을 위한 과학기술발전 사용에 대한 선언[15] ()

1975 UN 장애인 권리 선언

1966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78 일차보건의료에 대한 알마아타선언

1981 아프리카인권헌장[16]

1988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

1991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

1991 노인을 위한 UN 원칙

1992 UN 환경 개발 회의 (UNCED)

1993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을 위한 선언

1994 국제 인구 발전 회의 (ICPD)

1995 제4차 세계여성회의 (FWCW)

1997 인간게놈과 인권에 관한 국제 선언 (UNESCO)

1998 국내 난민을 위한 지침

2000 건강권에 대한 UN 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의 일반 논평 14번

2001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

2002 2002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모든 이들이 도달 가능한 최상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수준을 향유할 권리에 대한 UN특별 보고관

2002 인간게놈 정보에 대한 국제 선언 (UNESCO)

2006 UN 장애인권리협약

2008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추천 활동

활동 I: "온전한 육체, 정신, 사회적 건강 상태"를 상상하기

Part I: 소개

많은 이들에게는 건강의 개념이 개인의 상태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적 요구를 포함하도록 충분히 발전되어 있지 않다. 이 활동은 참가자들이 최적의 건강상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인식하고 모임의 다른 구성원들과 생각을 나눔으로써 복합적 개념을 만들어내도록 한다.

Part II: 일반적인 정보

활동유형: 브레인스토밍 과 그룹 발표

목적과 목표: "질병 없음"을 넘어서는 폭넓은 범위에서의 건강을 인식하기.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건강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자각하도록 하고; 건강과 다른 기본적 욕구와의 연결점을 만들고;

15) Declaration on the Use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rogress in the Interests of Peace and for the Benefit of Mankind. 선언문은 http://www.aaas.org/sites/default/files/SRHRL/PDF/IHRDArticle15/Dec_on_Scientific_and_Technological_Progress_Eng.pdf

16)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의 국내식 표현으로, 원문에서는 개인과 인민의 권리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본적 욕구와 인권과의 연결점을 만들도록 한다.

대상그룹: 청소년, 성인

그룹크기: 10-30

소요시간: 120 분

교구: 전지, 마커펜, 접착테이프; 세계인권선언 (UDHR) 복사물

관련기술: 언어 소통, 참여적 분석

Part III: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지시사항:

촉진자는 "건강"에 대한 WHO 정의를 읽는다. WHO의 정관 서문에서, 건강을 "[…] 단순히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음 촉진자는 다음을 질문한다: 당신이 속한 사회에서 광범위한 건강 상태가 실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와 조건은 무엇입니까? 촉진자는 이 서문과 질문을 모두 이해하도록 한다. 모임이 좀 지체되면, 촉진자는 모임이 앉아있는 순서대로 빠른 대답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나온 모든 이야기를 전지에 기록한다. 충분한 전지를 사용하여 모두가 잘 볼 수 있도록 한다. 어떠한 생각도 제외되지 않는다. 모임이 이야기를 다 마치면, 누군가가 그들이 기록한 내용을 읽는다. 이 전지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벽에 붙여둔다. 이 시점에서, 촉진자는 나열된 모든 요소에 대해 각자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달라고 요청한다. 참여자들은 나열된 주제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이러한 활동은 약한 시간 걸린다.)

브레인스토밍 규칙:

촉진자를 포함한 모든 참가자들은 동그랗게 자리를 잡아 의자나 바닥에 앉는다. 이러한 연습은 모두에게 평등의 감각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활동은 모임내의 사고 과정과 아이디어에 참여자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과정으로서 빠른 사고 활동을 가진다. 촉진자는 다음처럼 함으로서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1. 모든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끌어내도록 한다; 그런데, 그들이 언급하고 있는 생각을 기록하기 위해서 녹음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2. 재작성 단계 동안, 각 모임의 내용을 인권 언어를 사용하여 발표자들이 발표하고 참여자들은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1단계:

촉진자는 세계인권선언 (UDHR)이나 주제에 맞춘 자료를 배포한다. 자료에 정리된 건강에 대한 필요 모두가 인권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예를 들면, 넓은 의미에서 세계인권선언 제3조의 생명권 조항은 건강권을 뒷받침한다.

2단계:

촉진자는 4~6명의 모임으로 참여자들을 나누도록 한다. 모임에서 목록을 구성하여 해당하는 인권을 찾는다. 각 모임은 모임별 내용을 전체에 발표할 발표자를 선출한다. 소모임 활동 동안, 촉진자는 각 모임에 가서 관찰하고 도움이 필요한지를 물어본다. (30분 진행)

3단계:

촉진자를 전체를 재소집한다. 모임 발표자들은 자신들이 찾은 것을 발표한다. 누군가는 새 전지에 건강권 지원이나 보장을 위해 필요한 인권의 새 목록을 기록하는데,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벽에 붙인다. 참여자들은 이 세션 동안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목록은 이후 참고를 위해 벽에 붙여둔다. (30분 진행)

4 단계:

이 세션을 평가하기 위해, 촉진자는 참여자들에게 그들이 이 세션을 통해 배운 것과 이 활동이 개선되기 위한 제안을 요청한다.

방법론적 힌트:

- 이 활동은 자력화(empowerment) 활동 중 하나이다. 촉진자는 참여자들이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사용하고, 자신만의 모색을 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북돋을 필요가 있다. 모든 질문에 답하는 "전문가"역할을 하지 않아야 한다.
- 브레인스토밍과 이에 대한 반영이라는 두 과정에서, 모든 참여자가 발언해야 한다. 한명이나 몇 명이 토론에서 주도권을 가지게 되면, 촉진자는 참여자 모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한 번 이상의 발언권을 주도록 진행한다.
- 세계인권선언(UDHR)이 모든 사람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아이디어의 구성물이라는 점을 참여자들에게 말함으로써, 인권이 "상식"의 수준에 기초함을 강조하라.

활동 II: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Part I: 소개

의약품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은 전 세계 고통 받거나 아픈 사람 모두에게 확보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대형 제약회사들이 제공하는 생명 연장이나 통증 완화 치료제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이런 이유와 NGO의 압력 때문에, 몇몇 국가는 다른 나라로부터 보다 싼 제네릭 의약품[17]을 수입하기 시작했다. 제약산업체측은 이를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Part II: **일반적인 정보**

활동유형: 시뮬레이션

목적과 목표: 인권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반대되는 요구사항의 균형 잡기

대상그룹: 청소년, 성인

그룹크기: 15명이상, 최대 40명까지

소요시간: 120-180 분

교구: 플립챠트, 마커 펜, 테이프

관련기술: 언어 소통, 공감 능력

Part III: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지시사항:

촉진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한 배경 정보를 제공한다: 아프리카 국가의 정부는 시민사회의 로비와 압력을 받고 있고 있으며, 굴복하여 다른 나라에서 수입된 값싼 제네릭 의약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일부 제약업체는 이를 특허권 침해로 보고 정부와 NGO를 대상으로 소송을 시작했다.

참여자들을 재판에서의 역할에 따라 4 그룹으로 나눈다. 촉진자는 각 그룹에게 재판에서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논쟁점을 찾고 역할을 정해 재판을 준비하도록 약 20분을 준다. 각 그룹은 나중에 논쟁점을 발표할 발표자를 정한다.

다음의 역할이 모의 법정에서 주어진다:

- **판사:** 세 소송 당사자의 논쟁점을 고려하고 판결을 내린다.
- **제약 업체 대표:** 판매량에 관심이 있으며, 환자를 배려하여 특허권을 절제하려하지 않고 있다.

17) Generic Medicine : '복제약'이라고 불렀는데, 해당 약품의 특허가 만료됐거나 개량된 물질특허나 제형변화 등을 통해 만든 의약품.

- **정부 대표**: 정부는 단지 NGO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제약회사의 분배를 고려하는 입장에서 외국에서 값싼 제네릭 의약품을 배포하고 팔고 있다.
- **NGO 대표:** 제네릭 의약품을 무료나 매우 낮은 가격으로 배포하도록 정부를 촉구하는 데에 성공했다.

그룹이 각자의 논쟁점을 준비하는 동안, 촉진자는 재판을 위한 방을 준비해야 한다. 그룹들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후에, 판사는 재판을 열어 각 그룹이 자신의 입장과 논쟁점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판사는 모든 논쟁점을 종합하고, 숙고하고, 모든 소송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판결을 말한다.

응용을 위한 팁:

그룹에서 합의 구하기: 모든 그룹이 논쟁점을 본 세션에 제출한 후, 참여자들은 실무 그룹을 구성한다. 각 실무 그룹에는 각 소송 당사자 와 판사 그룹에서 최소한 한명 이상씩이 참여해야 한다. 촉진자는 실무 그룹에 당사자 그룹 중 누구의 위치도 무시하지 않으면서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한다. 30분후에, 각 실무 그룹은 자신의 논의과정과 가능한 해결점을 본 세션에서 발표한다. 가장 중요한 질문과 해결점을 플립차트에 적는다. 모든 그룹이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토론을 발표할 때는 활동을 요약해야 한다.

관련 권리 및 더욱 탐색할 영역:

세계화, 차별, 빈곤

(출처: 유럽의회 2002 *COMPASS. A Manual for Human Rights Education with Young People*에서 인용)

참고자료

3D. TRIPS and Health. In: Practical Guide to the WTO. Available at: www.3dthree.org/pdf_3D/Guide-075Ch4.pdf

Abbot, Frederick M. 2005. The WTO Medicines Decision: World Pharmaceutical Trade and the Protection of Public Health. In: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ume 99). pp. 317-358.

Chan, Kevin. 2004. SARS and the Implication for Human Rights. In: Case Studies. Cambridge: The Carr Center for Human Rights Policy.

Council of Europe. 2002. COMPASS. A Manual for Human Rights Education with Young People.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Available at: http://eycb.coe.int/compass

Farmer, Paul and **Amartya K. Sen. 2004.** Pathologies of Power: Health, Human Rights, and the New War on the Poor.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Beijing. 1995.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Available at: www.un.org/womenwatch/daw/beijing/platform/

Hestermayer, Holger. 2008. Human Rights and the WTO: The Case of Patents and Access to Medicin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Jones, Peris S. 2009. AIDS Treatment and Human Rights in Context. Basingstoke: Palgrave.

MacDonald, Theodore H., Halfdan Mahler and Hane Serag. 2008. Health, Human Rights, and the United Nations: Inconsistent Aims and Inherent Contradictions? London: Radcliffe.

MacDonald, Theodore H., Noel A. Kinsella and John A. Gibson. 2007. The Global Human Right to Health: Dream or Possibility? London: Radcliffe.

MacDonald, Theodore H. 2006. Health, Trade And Human Rights. London: Radcliffe.

Mann, Jonathan, Sofia Gruskin, Michael A. Grodin and George J. Annas (eds.). 1999. Health and Human Rights. New York: Routledge.

Marks, Stephen P., Sofia Gruskin and Michael A. Grodin. 2005. Perspectives on Health and Human Rights. New York: Routledge.

Marks, Stephen (ed.). 2002. Health and Human Rights: The Educational Challenge. Boston: Françis-Xavier Bagnoud Center for Health and Human Rights/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Nygren-Krug, Helena. 2005. Integrating Human Rights in Health. Human Rights in the Context of Public Health. In: Bulletin of Medicus Mundi Switzerland (Nr.9 6). Available at: www.medicusmundi.ch/mms/services/bulletin/bulletin200502/kap02/02nygren.html

Huenchuan, Sandra. 2010. Ageing, Human Rights and Public Policies. New York: United Nations.

Stott, Robin. 2000. The Ecology of Health. Devon. U.K: Green Books Ltd.

The People's Movement for Human Rights Education (PDHRE). 2002. Passport to Dignity:

Working With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for the Human Rights of Women. New York: PDHRE.

UNAIDS. 2010. Report on the Global HIV/AIDS Epidemic. Available at: www.unaids.org /globalreport/global_report.htm

UNDP. 2010. Human Development Report 2010. The Real Wealth of Nations: Pathways to Human Development. New York: UNDP. Available at: http://hdr.undp.org/en/reports/global/hdr2010/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Rio de Janeiro. 1992.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and Agenda 21. Available at: www.un.org /esa/dsd/agenda21/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2001. Durban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Available at: www.ohchr.org/Documents /Publications/Durban_text_en.pdf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1993.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Available at: www.unhchr.ch/huridocda/huridoca.nsf/%28symbol%29/a.conf.157.23.en

World Food Summit. 2002. Declaration of the World Food Summit: Five Years Later, International Alliance against Hunger. Available at: www.fao.org/worldfoodsummit/english/index.html

World Food Summit. 1996. Rome Declaration on World Food Security and World Food Summit Plan of Action. Available at: www.fao.org/wfs/homepage.htm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11. An Update on WHO's Work on Female Genital Mutilation, 2011. Available at: www.who.int/reproductivehealth/publications/fgm/rhr_11_18 /en/index.html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02. 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 Available at: www.who.int/violence_injury_prevention/violence/world_report/outline/en/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2003. Implementation of paragraph 6 of the Doha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WT/L/540. Available at: www.wto.org/english/tratop_e /trips_e/implem_para6_e.htm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2001. Ministerial Declaration on the TRIPS. Available at: www.wto.org/english

추가 정보원

- 3D (Trade, Human Rights, Equitable Economy): www.3dthree.org
- Ethical Globalization Initiative: www.realizingrights.org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www.fao.org
- Françis-Xavier Bagnoud Center for Health and Human Rights: www.hsph.harvard.edu/fxbcenter
- Health Statistics and Health Information System: www.who.int/healthinfo/en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Health and Human Rights Organisations: www.ifhhro.org/
- International Harm Reduction Association: www.ihra.net
- Méecins sans Frontièes (MSF): www.msf.org
- Mental Disability Rights International: www.disabilityrightsintl.org
- Michael Kirby Centre for Public Health and Human Rights: www.med.monash.edu.au/michael-kirby
- Montreal Declaration on Intellectual Disabilities: www.declarationmontreal.com
- People's Health Movement: www.phmovement.org
- Physicians for Human Rights: www.physiciansforhumanrights.org
- UNAIDS: www.unaids.org
-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www2.ohchr.org/english/issues/health/right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Health and Human Rights: www.who.int/hhr/en/
- World Medical Association: www.wma.net/en/10home/index.html

여성인권

HUMAN RIGHTS OF WOMEN

젠더적 시각을 가지고 인권보기

여성의 자력화

>> 여성의 진보와 남녀평등의 성취는 인권의 문제이자 사회적 정의를 위한 조건이다. 이를 여성만의 별개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 <<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 1995.

사례

“실제 삶의 사례: Selvi T.의 이야기”

Selvi는 22살이고, 다섯 아이를 가진 임산부이다. 남편은 그녀가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를 때리고 배 부분을 차고, 옥상에서 나를 집어 던졌어요." Selvi는 말했다. "아이는 살아남았지만 제 생각에는 아이가 심리적 문제를 갖게 된 거 같아요. 그 이후로, 폭력 빈도와 심각성이 증가했고, 지금은 심지어 그 폭력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Selvi의 남편은 그녀의 삶을 전부 통제하고 있으며, 극단적인 의처증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그는 나를 매번 강간하고, 내가 ‘다른 남자’와 섹스하지 않았는지 체액을 매번 체크하고는 해요”라고 이야기 한다.

2008년에서야 마침내 Selvi는 두개골과 팔 골절로 경찰에 남편을 신고했다. 경찰은 남편을 경찰서에 데리고 와서 이 부부에게 음식을 조금 준 후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우리가 남편에게 잘 말했으니 아무 문제없을 겁니다. 같이 돌아가세요.”라고 말했다. Selvi가 두 번째로 경찰서에 갔을 때 경찰들은 남편이 던지고 때려서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그녀를 병원에 데리고 가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편과 화해하라고 그녀에게 말했다.

2009년에 Selvi의 남편은 그녀를 방에 가두고 매일 때렸다. 그녀가 도망쳐서 세 번째로 경찰서에 갔을 때 그들은 남편을 소환했고, 그는 사과했다. 경찰은 다시 그녀를 집에 보냈다. 2010년에 네 번째로 Selvi가 경찰서에 갔을 때는 남편이 늦은 밤에 친구들을 데려와서 그녀를 그들에게 “제공”했을 때였다. 그녀는 지붕에서 뛰어내려 도망쳐서 경찰서로 달려갔다. 남편은 경찰서에서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들은 그의 말을 믿었고, “그냥 남편이랑 집으로 돌아가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Selvi는 비밀리에 가정법원에 갔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나 무서워서 정식으로 고소를 할 수 없다고 검사에게 말했다. 그러나 사건이 심각했기 때문에 검사는 독자적으로 Selvi를 위한 보호 명령을 받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법원은 Selvi의 남편에게 그녀에게 접근하지 말 것과 생계비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명령은 강제되지 않았다. 그는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서 떨어지지도 폭행을 멈추지도 않았다. 경찰은 법원 명령이 발표된 이후에도 그녀 상태를 점검하지 않았다.

Selvi는 쉼터로 옮겼다. 그러나 쉼터조차도 그녀를 남편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했으며, 하루 만에 경찰관이 쉼터의 위치를 남편에서 알려주었다. 쉼터에서 일하는 여성이 Selvi에게 “그냥 네 남편이랑 이야기해. 그는 여기 와서 울고 있어. ”라고 말했다. 그녀가 남편과 이야기를 하자, 남편은 Selvi의 팔을 포크로 찔렀다. Selvi는 그로 인해 남은 흉터를 인터뷰에서 보여주었다. 그리고 남편은 Selvi를

집으로 데리고 갔다.

학대는 2010년 국제인권감시기구가 Selvi와 이야기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와 살았고, 거의 일을 하지 않았으며 도박을 일삼았고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Selvi와 아이들을 폭행했다. 그녀는 너무 두려워서 아이들을 정부기숙사에 보낼 수 없었으며 겁에 질려서 도망 칠 수도 없었다. 그녀는 산전관리를 위한 도움이 절박했다. 남편이 행하는 학대 중에는 복부를 발로 차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편이 그녀의 시민증이 포함된 국가 보험카드 등을 태워버리는 바람에 그마저도 받을 수 없었다.

시의 여성단체는 Selvi의 상황을 인식하고, 도움을 제공했지만 그녀는 아이와 자신을 위해 탈출할 방법을 찾을 수 없다.

(출처: Human Rights Watch. 2011. He loves you, he beats you.)

토론할 거리

1. 여성인권과 관련하여, 이 사례에서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2. 피해자가 그 성별 때문에 법원의 접근과 적절한 재판 절차에 대해 제한을 받는다면, 정의는 어떻게 수행될 것인가?
3. 법과 정의는 모든 인간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만큼 충분한가?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대우를 보장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4. 어떻게 유사한 사례를 방지 할 수 있는가? 지방, 지역 또는 국제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특정해봅시다.

알아야 하는 내용

1. 여성인권

여성들은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 그리고 인간 존재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싸워야 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여성의 상황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선되었지만 여성인권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이행에 장애가 되는 사회적 요인은 전 세계에 걸쳐 여전히 존재한다. 20세기에는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동시에 많은 좌절도

있었다. 여성과 인권에 대한 평화와 진보의 시기에조차 그들의 인권은 특별한 주목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그러한 정책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매 시기마다 그들의 권리와 다른 여성의 권리를 위해 몸으로, 언어로 투쟁한 영웅들이 존재했다. 예를 들어 엘레노어 루즈벨트는 1948년에 초안이 만들어진 세계인권선언(UDHR) 1조에 "모든 인간은 형제다"대신에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라고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미의 변화는 모든 인간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인권을 가진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국제적인 인권보호담론 및 체제에 평등을 하나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소개했다.

법률에서 공식적으로 표현된 **평등의 원칙**은 남녀 간 차이가 없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흔히 여성에 대한 숨은 차별을 내포하고 있다. 사회가 전통적으로 여성과 남성에게 부여한 다른 역할과 위치 때문에, 법률상 평등은 종종 사실상 차별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인권활동가들이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사이의 차이를 알리도록 만든다.

많은 맥락에서 형식적인 평등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 개념은 다수, 차이, 불리함, 그리고 차별을 고려한 실질적인 정의로 변화했다. Dairian Shanti는 "평등과 차별의 구조"라는 논문에서 "중립성은 이익이나, 동등한 처우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배제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민감성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동등한 결과'나 '동등한 이익'에 대한 강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남성과 여성간의 진정한 평등은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평등이 제대로 구현되었을 때에 비로소 성취된다.

"다수의 힘을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활동의 힘-남성과의 연대와 함께-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다음 새천년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Azza Karam. 1998/2005.

젠더와 여성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

젠더(gender)는 여성과 그들의 인권을 설명하는 개념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모든 성(sexs): 남성, 여성, 트렌스젠더 등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것이다. Susan Moller Okin은 1970년대에 "[…]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 깊이 입지를 굳힌 성별 간 차이의 제도화"라고 정의하며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나아가 전 세계에 걸친 역동적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의해 이 개념은 더욱 진화했다.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 규정 제 7 조에서는 젠더를 "사회적 맥락 안에서의 두 개의 성(sex), 즉 남성과 여성[..]"으로 정의했다. 정부 대표들이 젠더의 개념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한 결과였다. 그들 중 일부는 그것을 성적 지향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그러나 여성을 세계, 각국, 각 민족의 절반을 구성하는 사람들로 보는 대신에 특별한 집단으로 정의하는 것은 매우 흔히 발견되는 일이다. 여성을 토착민이나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사회적 약자**와 같은 장이나 문단에서 다루는 문서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묶어주는 연결고리는 그들이 모두 차별을 겪어왔으며, 지금도 겪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들이 기본권을 제대로 누려오지 못했으며, 여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 차별금지

그러나 젠더는 인간이 사회에서 어떻게 서로 다른 책임, 역할 그리고 지위를 맡게 되는지 이해하는 데에 있어 유용한 분석 카테고리이다. 인권이론과 실천에서 성별 분석 도입은 사회에서의 성별 간 차이와 여성인권이 침해되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특별히 민감해지도록 한다.

젠더 감수성을 가진 사고는 성별, 인종, 그리고 종교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을 위한 같은 권리를 달성하기 위해 추구되어야 한다. ☞ 무력 분쟁 상황에서의 인권

인간안보와 여성

인간안보와 여성의 지위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분쟁이 성별 간 불평등과 차이를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이나 노인, 그리고 어린 난민이나 망명자 대부분은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가정 폭력 및 기타 형태의 폭력은 여성의 안전을 위협한다.

인간안보는 또한 평화로운 시기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 사회적 서비스, 고용에 대한 동등한 접근의 보장과도 관련이 있다. 여성들은 이러한 서비스에 온전히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권리를 온전히 향유할 수 없다. 그러므로 특히 여성과 어린이에게는 인간안보에 대한 인권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이는 인권을 완전히 존중하지 않는다면 인간안보는 달성할 수 없다는 의미기도 하다. 그래서 차별철폐, 특히 아동과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는 인간안보 아젠다에 있어 우선순위에 배치되어야 한다.

특히 무력 분쟁 중 여성에 대한 보호는 인간안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2. 정의와 설명

역사 되돌아보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 **프랑스 혁명**은 남성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동등한 인간으로 인식되고자 했던 여성들의 노력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여성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위한 운동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해방과 평등을 위한 운동을 위한 길을 닦았다.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

선언'을 썼던 Olympe de Gouges는 그 운동의 가장 유명한 지지자 중 하나다. 그녀와 많은 여성동료들은 단두대에서 여성의 권리를 위한 운동의 대가를 치렀다.

영국 역시 돌아보면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위한 투쟁에 대한 길고 강한 전통이 있다. 영국은 심지어 "페미니즘의 모국"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1830년대 초반부터 영국 여성들은 투표권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싸워왔으며, 1918년에 결국 성공했다. 이 때 그들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고, 여성들은 30세부터 투표를 시작할 수 있었다. 페미니스트운동 초기에 우선순위를 둔 다른 분야에는 교육에 대한 접근권, 기혼여성의 재산권,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

국제여성위원회는 1888년 초에 설립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 위원회는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여성 인권 보장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국제 회의 및 지역, 소구역, 국가 단위의 세미나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집중적인 프로젝트성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총회에서 결의안을 작성하고 채택한다. 또한 다른 비정부기구와 모든 수준에서의 협력하며, 다섯 개의 상임위원회에서는 3년간의 행동계획을 결의하였다.

여성의 인권을 다루는 최초의 정부 간 기구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1928 년에 만들어진 **미국 간 여성위원회**(CIM)였다. 이 기구는 1933 년 미주기구 (OAS)에 의해 채택 된 **여성들의 국적에 대한 미주규약**에 대한 책임을 졌다. 이 조약은 이 지역이 어떻게 인권에 관한 법을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다.

1945년, 유엔 초기부터, 여성은 조직 내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며 여성의 존재를 인권 문서 및 메커니즘의 내용과 이행에서 드러내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여성 지위위원회(CSW)는 전 세계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1946년에 만들어졌다. 첫 번째 의장은 벨기에의 Bodil Boegstrup였다. 여성 지위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에 여성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일을 추진했다. 그리고 여성의 권리 분야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는 긴급한 문제에 대해 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ECOSOC)에 권고했다.

"여성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며 모든 면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 제1조. 1789.

여성은 처음부터 국제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의 진보에 동등하게 기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문제에 대한 관심은 언제나 최소한이었다. 오랜 기간 인권 문서에서 성별이 비가시화 되었기 때문

에, 사람들은 점점 더 이 사실에 눈감게 되었다. 인류의 절반 이상의 기본적인 권리가 잊혀졌다. 이 때문에 국내법이나 국제법은 성별 중립적일 수 없게 되었다. 전 세계의 사회는 아직 성별 중립적이 아니며, 여성에 대한 차별은 지속되고 있다.

1970년대에 들어서서야 일상생활 전반에서의 불평등, 여성의 빈곤, 여아에 대한 차별 등의 문제가 유엔으로 하여금 1976년부터 1985년까지 **'유엔 여성평등 10년: 평등, 발전, 그리고 평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1979년 유엔 여성평등 10년은 여성 차별철폐협약(CEDAW)의 채택하게 되었다. 이 문서는 여성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인권 문서이자 여성을 완전한 인간으로서 명시적으로 표기한 가장 첫 번째 인권 문서다. 여성 차별철폐협약에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국제 인권 규약 상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된 인권을 통합한 셈이다.

협약은 여성의 공적, 사적 영역의 생활 모두와 관련된 문제를 규정한다. 여러 조항들은 가족과 사회 내에서 여성의 역할과 가족 내에서 책임을 공유해야 할 필요성, 그리고 여성의 종속적 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와 문화 시스템의 변화의 긴급성을 다루고 있다. 그러한 기초적인 수준의 변화를 통해서만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전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 2012년 5월에 187개 국가가 협약을 비준했다. 많은 이슬람 국가들은 여성 차별철폐협약의 책무 이행 조항 중 일부를 유예하고 있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위원회는 이러한 국가들의 유보를 철회하는데 특히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유보된 조항 안에는 여성의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협약 제 1조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서 남녀 평등의 기초 위에서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 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별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성 차별 철폐 협약이 부여하는 국가의무:

- 자국의 헌법 또는 기타 적절한 입법으로 남녀평등의 원칙을 구현
- 평등원칙의 실질적인 실현에 대한 보장
-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적절한 제재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입법 및 기타 조치 채택
- 남성과 동등한 기반에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 확립
- 여성에 대한 차별 행위 또는 관행에 대한 억제와 공공 기관 및 기타 기관이 의무를 준수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확인
- 사람, 조직 또는 기업에 의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모든 국가적 형벌 폐지
- 여성의 완전한 발전과 진보 확보,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남성과 동등한 기반에서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의 향유와 행사를 보장
- 남녀의 행동의 사회적, 문화적 행태 수정
- 성별에 따라 열등성과 우월성을 가르는 사고방식 또는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편견과 관습 및 기타 모든 관행의 제거
- 사회적 기능으로서의 모성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양육 및 아동발달에서 남성과 여성의 공동 책임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 가족교육 확보. 이 때 아동의 이익이 모든 경우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것.
- 모든 형태의 여성인신매매와 성착취를 억제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모든 선거 및 공공 국민 투표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보장
-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동등하게 국적을 취득, 변경 또는 보유할 수 있도록 허가
- 교육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 확보

1999 년 10월 6일, 총회는 만장일치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 의정서**를 채택하고 새로운 의정서의 당사국이 될 협약의 모든 당사국을 호출했다. 선택 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국가는 여성 차별 철폐위원회– 협약 당사자의 준수 상태를 감독하는 기관–의 능력을 인식하고, 사법체계 내에서 개인과 집단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들을 고려하고 접수한다.

의정서는 두 가지 절차를 포함한다.

- 개별 여성 또는 집단적으로 여성들은 **커뮤니케이션 절차**를 거쳐 위원회에 협약으로 보호하는 권리의 침해상황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다. 의정서는 위원회의 여러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만(예를 들어 자국의 구제 절차가 반드시 끝나야 한다든지)위원회가 그 사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의사규칙을 확립했다.
- 의정서는 위원회가 심각하거나 체계적인 여성권리 침해 상황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 절차를** 구성했다. 두 경우 모두 국가는 조약과 의정서의 당사국이어야 한다. 의정서는 '옵트아웃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당사국들이 조사 절차를 받아들이지 않는 비준이나 가입을 선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의정서 제 17 조에는 명시적으로 조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택의정서는 2000 년 12 월 11 일에 발효되었으며, 104 개 국가에서 이 선택의정서를 채택하고 있다.

1993년 6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인권회의**에는 수 천명의 인권관련 활동가 및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회의 결과 채택된 **비엔나 선언과 행동 계획**은 일반적으로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의 증진과 보호,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의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은 보편적 인권의 양도 할 수 없고 필요불가결하며, 불가분의 요소라고 선언했다. 또한, 이는 국가, 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의 정치, 시민, 경제, 사회 및 문화생활에의 여성의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와 성별을 근거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 근절이 국제 사회의 우선순위 목표임을 선언했다.

그 권한의 일환으로 여성 지위위원회(CSW)는 인권으로서의 여성권리 주류화를 목표로 멕시코(1975), 코펜하겐 (1980), 나이로비(1985)과 베이징(1995)에서 4개의 주요 **세계 회의**를 조직했다. 행동 계획은 주요 회의가 끝난 후 실행되었으며, 이 계획에는 국가가 여성과 남성 사이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조치와 일련의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1995년 베이징 세계 회의에서 선언된 책무에 관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이후 매 5년 마다 평가하기로 했다. **베이징 행동 선언 및 행동 강령**(2010년 3월) 이행에 관한 15년간의 리뷰에서, 여성 지위위원회는 경험과 모범 사례 공유 및 새천년발전목표에 대한 고려를 강조하였다.

베이징 행동강령이 여성 인권에 대한 가장 완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특히 중요하다. 베이징 행동강령에는 전 세계의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전략 및 조치의 검토와 전 세계 여성의 상황에 대한 진단이 담겨 있기도 하다. 다음 **12가지 핵심 관심분야**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빈곤, 교육, 보건, 폭력, 무력 분쟁, 경제, 의사 결정, 제도적 장치, 인권, 미디어, 환경, 여아, 제도적·재정적 조정 등이다. 이 영역들 중 일부는 아래에 특별히 기술한다.

여성과 빈곤

빈곤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각기 다른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 노동 시장 대부분에서 나타나는 젠더에 근거한 성별분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여성은 가정에서 일한다. 그들은 환자와 노인, 아이를 돌보는 자신의 의무를 수행한다. 그들은 급여를 받지 않고 집안일을 하고, 대부분의 경우 자신명의의 보험도 없다. 여성들의 기여가 사회적, 경제적 필요하고 높게 평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성별에 기반한 노동분업은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빈곤의 구조적 특징** 중 하나다.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기능은 또 다른 구조적 특징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부모로서의 사회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으로 받아들여진다.

☞ 노동권,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수치 및 통계

- 여성의 노동 참여와 함께 경제 성장률 증가
- 평균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소득은 17 % 낮음
- 여성이 세계 노동의 66 %를 수행하고 음식의 50 %를 생산하고 있지만 그들은 소득의 10 %만을 받고 있으며, 재산의 1 % 소유하고 있다.
- 일부 지역에서, 여성은 심지어 농업노동의 70 %를 제공하고 90 % 이상의 음식을 생산한다.

여성들은 동일 노동에 대한 불평등한 임금이나 교육, 공적·사회적 서비스, 상속권 및 토지 소유권에 대한 차단된 혹은 제한된 접근으로 인해 빈곤해진다. 빈곤은 정치적 차원에서, 우리 사회구성원의 **불평등**을 보여준다. 그리고 빈곤은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인권에 접근하는 데에 있어 심각한 장애물이 된다. 또한 빈곤은 공공기관 및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가능성과 정보 접근성을 감소시킨다. 이주(migration)에 있어서, 빈곤은 여성 인신매매의 증가로 이어지는데, 특히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에서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여성과 건강

건강은 정서적, 사회적, 육체적 복지와 관련이 있다. 여성의 건강은 생물학적인 측면뿐 아니라 삶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성이 아이를 출산한다는 사실은 생식 건강 및 성 건강과 관계가 있다. 성관계 및 생식의 문제에 있어 남성과 여성 간 평등한 관계를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동의, 그리고 공동의 책임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저렴한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피임방법**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출산 과정을 거쳐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적절한 **건강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함의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성별에 근거를 둔 차별은 여성의 건강에 많은 위해를 가한다. 물리적 폭력, 성폭력, 강간, 성병(STDs), HIV/AIDS , 말라리아, 후드가 설치되지 않은 불 위에서 조리함으로써 생기는 만성 폐색성 폐질환 등이 그 예다. WHO의 'global overview'에서 볼 수 있듯이, 남반구 국가들에서 임신과 출산 중 사망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UN과 별도로 이 문제는 국가 또는 지역 내 기구에도 중요한 의제다. 예를 들어, 성적 권리 및 생식권에 관한 미주 협약의 채택을 위한 캠페인이 시작되었으며, 라틴 아메리카 기구들 간의 지역적 동맹이 이 캠페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였다.

"내가 나이지리아를 방문했을 때 나는 개인사를 설명했다.
모두가 내 생일을 6월 13일이라고 알고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다.
확인해볼 필요가 있긴 하지만, 아직 나는 내가 정확히 언제 [태어났는지] 모른다.
내가 태어났을 때 한국에서는 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아서 부모님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아이들의 생사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육 개월에서 일 년 정도는 기다려야 했다. […] 그래서 내 생일은 훨씬 더 나중에 등록되었다.
아버지는 기다렸다. […] 그래서 내 생일은 믿을 수 없다."

반기문 2011.

"일부 여성들은 사회복지사가 주변에 있을 때에는 자신의 딸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여성들은 사회복지사가 떠날 때까지 안심시킨 후, 사회복지사가 일단 떠나면, 돌아와서 나에게 그들의 딸에게 할례를 해줄 수 있는지 묻는다.
내가 딸에게 할례를 행하는 동안 그녀의 이모나 주변사람들이 딸을 붙든다."

마을 산파, Om Mohammed, 이집트, 2012

관습과 전통 역시 여아와 십대 소녀에게 있어 위험의 원인이 된다. 기본적인 여성인권 침해인 지속적인 **여성할례** 전통은 여성과 소녀들에 대해 행해지는 여러 방식의 뿌리 깊은 전통적 절단수술을 의미한다. 여성할례(FGM)는 흔히 성인식의 한 부분으로, 이는 순결과 생식기의 "순수함"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정당화된다. 오늘날 1 억 3 천만명 이상의 소녀와 여성이 할례를 받았다고 추정되는데, 이는 주로 아프리카와 일부 중동 국가에서 행해진다. 또한 연 이백만 명 정도의 소녀들이 성기절단의 위험에 처해있다. 여성할례의 사례는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보고되었다, 그리고 중미 및 남미 지역의 일부 토착민들 사이에서도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할례 금지법에도 불구하고, 유럽, 북미, 호주 이민자 공동체에서도 역시 여성할례가 이뤄지고 있다.

의료적 처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할례 피해 여성들과 여아들은 커다란 고통과 건강상 위협을 받고 있으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기도 하다. 여러 국제적인 단체 (예: 국제 사면위원회와 같은)와 지역 시민 단체(FGM에 반대하는 이집트 카이로 연합과 같은)와는 별개로 UN 역시 이 문제를 자주 다루고 있다. 2005 년에는 유니세프가 여성할례에 대한 통계조사를 발표하였다. 2008년에는 여성 성기 절단을 철폐하기 위한 기관 간 선언을 작성했다. 2010년에는 의료인들이 행

하는 여성할례를 중지시키기 위한 세계적 전략을 발전시켰다. 유니세프의 조사 결과는 여전히 유효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할례의 빈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더 많은 여성들이 여성할례에 대한 반대를 지속적으로 표명함에 따라 여성할례에 대한 태도가 천천히 변화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아랍의 봄 이후 여성할례에 대해 박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슬람주의자들이 의회 및 정부에 참여했다. 여성할례 반대자들은 아래의 권고를 지키고 있다. 사회적 행동으로서의 **여성할례 철폐 전략**은 총체적이며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교육 및 인식 제고를 동반해야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국가별로 특화되어야 하며, 지역적·인종적·사회경제적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 또한 사회 경제적 변수에 기반한 세부적인 데이터 구분은 국가 수준에서의 옹호활동을 크게 강화시킬 수 있다.

이집트의 경우는 행동과정에서의 이러한 전략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집트에서는 1959년 초부터 여성 성기 절단은 금지되었으며, 벌금 혹은 징역형으로 처벌되었다(여러 가지 법령들과 고등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이 금지가 유지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법적 결정은 2008년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5년 유니세프 연구에 의하면 이집트는 여전히 세계에서 여성할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90%) 국가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과 도시 여성들 대다수가 여성할례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과 별개로, 무슬림 형제단과 Salafi 파벌 간의 정치적 논쟁의 증가, 사문화된 처벌 등도 이집트에서의 여성할례 축소를 방해하는 큰 장애물들이다. “우리가 지역 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말한다면, 우리는 여성할례를 지지하는 경찰관에게 보고하는 셈이다.”라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반-여성할례 활동가는 설명한다.

HIV / AIDS는 여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전염병이다.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감염자는 1997 년에 정점을 찍었고 새로운 감염자 수는 그 이후로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HIV에 감염된 여성의 비율은 지난 수십 년 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성은 HIV 감염자 중 절반의 비율을 차지한다. 유럽에서의 여성 감염률이 약 27 %, 북미 지역에서의 여성 감염률이 21 %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반면, 카리브해,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의 여성 감염률은 약 50 %,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의 여성 감염률은 59 %.에 이른다.

그러나, UNAIDS의 2011년 세계 에이즈의 날 보고서에서는 에이즈와의 싸움에서 고무적인 경향을 보여 주었다. HIV에 감염된 여성의 비율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새로운 감염자의 발생률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이즈에 의해 가장 영향을 받는 지역) 33 개국 중 22개국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이 결과는 성적 행동의 변화, 최초 성적 접촉 연령의 상승과 임신여성에 대한 항 레트로 바이러스 치료 증가에 기인한다. 이 보고서는 아래에서 제시하는 네 가지 영역에서 행동이 강화될 경우, 2015년까지 아동에 대한 새로운 감염 근절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조심스럽게 제공한다. 성관계 및 약물을 통한 전염을 막고 산전 관리에서의 예방 노력을 통합함으로써 가임기 여성의 HIV 감염 방지, 정기적인 HIV 검사 보장, 가족 계획 서비스에 여성의 접근 확보, HIV에 감염된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항 레트로 바이러스 약에 대한 접근 및 임산부를

위한 상담 등이 그 영역이다. 이러한 점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례는 좋은 실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정부는 아동의 HIV 감염 방지를 위해 해당 여성의 약 95 %에게 항 레트로 바이러스 약물 치료를 제공했다. 이 치료의 제공률은 3년 만에 목표 예정치의 거의 2배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는 정치적 의지, 강력한 시민 사회 참여, 간호사에 의한 분산된 서비스 전달체계 및 여성 역량 강화에 기반하고 있다.

또한 2011 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983에서는 여성과 소녀들이 특히 HIV에 의해 취약하며, 여성에 대한 HIV와 AIDS의 과도한 부담이 양성 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에 있어 장애가 된다고 주장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유지의 의무의 일환으로 회원국 및 기타 관련 이해 관계자가 국민 건강 시스템과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하도록 촉구한다. 이는 분쟁상황 하에 있거나 분쟁 후 상황에서 HIV 감염 여성에게 지속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 건강권

"국가는 출입국 관리와 권리자들을 보호하는 의무 사이에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때 권리자란 난민과 인신 매매 추정 피해자.[…] 등을 의미한다. 인권 침해 피해자 보호 의무는 '제대로 된'이주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Maria Grazia Giammarinaro. 2012.

여성과 폭력

많은 사회에서 여성과 소녀 모두 사적, 공적 영역 전반에서 그들의 문화나 계급, 소득과 상관없이 신체적·성적·심리적 폭력의 대상이 된다. 여성은 종종 강간, 성적 학대, 성희롱 또는 성적 협박의 피해자가 된다. 성 노예, 결혼 지참금 범죄, 명예 살인, 강제 임신, 강제 매춘, 강제 불임 시술과 강제 낙태, 태아 성감별, 여성 영아 살해와 여성 할례는 여성을 향해 이루어지고 있는 폭력행위들이다.

수치 및 통계

- 전 세계적으로 최소 여성 세 명 중 한 명은 일생 중 어떠한 형태로든 학대를 경험한다. 여성과 소녀에 대한 성폭력은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나는 문제다. 나아가 여성과 소녀들은 흔히 그 가해자를 알고 있다.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은 가장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인권침해다. 이러한 폭력은 개인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분열시키며, 발전을 저해한다.

- 여성폭력으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 미국에서는 배우자나 연인에 의한 폭력으로 인해 매해 58억 달러가 넘는 비용이 발생한다. 직접적인 의료 및 건강 관리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 41 억 달러, 생산성 손실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거의 18억 달러로 추산된다. 여성폭력은 국가의 경제발전을 저해한다. 개인과 가족, 그리고 지역공동체를 빈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 유엔 인구 기금은 연간 약 5000명 이상의 여성이 "명예 살인" 피해자가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부 사회에서는 여성의 순결이 가족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강간 피해 여성, 혼전 관계자로 의심되는 여성, 그리고 간통 혐의 여성은 친척에 의해 살해된다.
- 이러한 폭력행위들은 여성이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하는 것을 막고 이를 훼손시킨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여성 폭력 철폐 선언**이 1993년에 만장일치로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선언 제2항에 따르면 여성폭력은 포괄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다음의 목록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 가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 구타를 포함, 가정 내 여아에 대한 성적 학대, 결혼 지참금 관련 폭력, 배우자 강간, 여성 성기 절단 및 기타 여성에게 유해한 전통적인 행위들, 비배우자 폭력 및 폭력을 동반한 착취,
- 일반적인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 강간, 성적 학대, 교육 기관이나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과 협박, 여성 인신 매매 그리고 성매매 강요;
- 물리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자행하거나 발생할 때마다, 국가가 묵인.

또한, **여성 폭력에 관한 특별 보고관 제도**가 1994년에 만들어졌다.

유엔의 지속적인 노력과 더불어 일부 지역기구 또한 여성폭력 예방과 나아가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주인권기구는 1994년 파라 할 벨렘의 **여성에 대한 폭력의 예방, 처벌 및 근절에 관한 미주 협약**에서 채택한 방법으로 여성에 대한 보호를 제공한다. 2012년 5월 기준으로, 미국의 35개 주 중 32개 주가 협약에 비준했다. 이는 여성 인권에 관한 역사적 사건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미주여성위원회에 의해 5년 계획으로 개발된 이 협약은 중요한 정치적·법적 틀을 구성하고 있으며, 폭력 문제 해결에 관한 일관된 전략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 협약은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공전략에 관한 국가 의무를 규정하였다.

아프리카 인권 위원회의 체계 내에서 **아프리카 여성 인권 헌장 의정서**(마푸토 의정서)는 2003년에 **아프리카 연합의 회원국**(AU)에 의해 정교화되고 채택되었고, 이후 2005년에 발효되었다. 2012년 5월 기준으로 아프리카 연합의 53개 회원국 중 30개국이 의정서를 비준했다.

유럽 평의회 (CoE)의 주요 협약 내에는 여성의 권리 분야에 대한 두 가지 규약이 있다. **유럽인권조**

약(ECHR)과 **유럽사회헌장**, 그리고 관련 의정서들이다. 유럽인권조약에서 여성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제14조에서는 성별(또는 다른 이유로)을 근거로 한 어떠한 차이도 금지한다고 명시하였다. 규약의 추가 의정서 제 7조는 결혼관계에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로서 배우자간 책임과 평등을 추가했다. 그리고 의정서 제 12조는 성별을 비롯한 어떠한 이유로도 공공기관에서 차별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유럽 사회 헌장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성보호, 일하는 여성 보호, 여성과 아동에 관한 사회적·경제적 보호와 같이 여성을 위한 특별한 권리를 정의하고 있다. 취업과정에서 혹은 직장 내에서 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는 1988년 추가 의정서에 정의되어 있다.

여성과 무력 분쟁

여성은 무력 분쟁과 전쟁 과정에서 첫 번째 폭력 피해자가 된다. Ruth Seifert는 에세이 "두 번째 전면 : 성폭력의 논리"에서 적을 파괴하기 위해 여성을 대상으로 군사 전략을 펼치는 사례들을 서술했다. 위에서 본대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범죄다. 그러나 연인 및 배우자에 의한 폭력과는 달리, 전쟁 중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남성 지배의 형태이다. 그리고 여성의 몸 위에서 이루어지는 남성들 간의 일종의 소통인 셈이다. 여성이나 소녀들을 전쟁 중 작전의 대상으로 삼아 모욕하고 지배함으로써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심고 확산시킨다. 그리고 민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강제적으로 이동하게 한다. Jean-Paul Akayesu에 관한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 결정에서 보듯이, 집단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려고 할 때 강간 및 기타 성폭력은 대량학살의 일종이 될 수 있다. "인종 청소"는 **전쟁 전략**이며, 1990년대 초반에 보스니아 전쟁에서 알 수 있듯이, 강간은 하나의 전쟁 중 부작용이 아니라 전쟁 중 활용되는 작전 중 하나다. 르완다와 구 유고 슬라비아의 법원을 시작으로, 이러한 범죄는 목표가 뚜렷하며, 더 이상 처벌의 그림자 속에 갇혀있지 않다.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는 역사상 처음으로 전쟁 중 강간, 강제 임신 그리고 강제 성매매등의 범죄를 인류에 대한 범죄로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이는 피해자에게는 정의를 실현하고, 가해자에게는 정당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개별화된 책임 시스템을 제공해준다.

"현대 분쟁에서 이제 여성은 군인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있다."

평화유지군 소장, Patrick Cammaert. 2008.

수치 및 통계

- 구 유고 슬라비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18개 유죄 판결은 성폭력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리

고 유엔 관계자들은 강간 피해자를 약 6만명으로 추정한다. 다른 법원의 유죄 판결의 수는 여전히 낮다. 시에라리온 특별 재판소에서는 6건,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8건이다.

여성은 무력 분쟁에 관련된 의사 결정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일반적으로 분쟁상황에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가능한 한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분쟁 후 재건에 관한 국제여성연구센터 정보 공시에 따르면, "여성들은 전쟁 과정에서 불평등한 그들의 부담을 종종 참아내야" 한다. 많은 여성들은 그들 자신은 전쟁이나 무력 충돌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특히 성폭력에 노출된 트라우마를 겪으면서도 가족을 지원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을 떠맡은 과부가 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특히 평화유지 임무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특별한 요구들을 가능한 한 지원해야 한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1325(2000)는 **분쟁 후 재건** 패러다임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갈등 당사자가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고 평화 협상 및 분쟁 후 재건에 여성 참여를 지원하도록 한 이사회의 첫 번째 법적 문서다. 이후에 결의안 1888, 1889 및 1894 (2009)이 채택되었다. 결의안은 무력 충돌 시 뿐만 아니라 제도적 갈등 관리, 평화 유지 및 분쟁 후 재건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채택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직원들에게 여성의 권리에 대해 훈련시키고 평화와 안보 유지 프로세스, 특히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을 동등하게 참여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몇몇 국가는 결의안 이행에 관한 국가 행동 계획을 설립했으며, 시민 사회 역시 같은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실천과정에 있어서 UN은 그 목표에 발을 맞추고 있지 않다. 여성 중 누구도 아직 UN이 후원하는 평화 회담에 중재자나 수석으로 임명 받지 못했다. 하지만 AU 또는 다른 기관의 후원을 받은 일부 회담에서는 여성들이 중재자로서 합류했다. 최근 긍정적인 경우는 2008 년 '케냐의 위기' 과정에서 Graça Machel이 중재자 세 명 중 한 명으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평화 협상에 대한 여성의 참여는 일시적이며 체계적이지 않다. 11개 평화 프로세스에서 평균적으로 8 % 미만이다. 평화 협정 서명자 중 여성은 3% 미만이다. 이러한 부족함을 다루기 위해, 유엔 총회는 2011년에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 132 개 중에서 66개를 추가적으로 지지했다.

"서구기업들의 바이오파이러시(외국 토착품종인 식물・유전인자・기타 생물학적 제품에 관한 특허 취득) 현상은 제 3세계 여성들의 수세기 동안의 집단지식과 혁신을 훔치는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확산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바이오 파이러시" 는 이제 농업 기업 및 제 3세계 여성 사이의 새로운 "협력"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 도둑질은 협력의 기초가 될 수 없다."

Vandana Shiva. 1998.

여성과 천연자원

Vandana Shiva가 "농업의 단일 재배, 독점, 신화와 남성화"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도 여성은 천연 자원과 환경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성 농부는 수 천 년 동안 씨앗을 지키고 키워왔다. 이는 인도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공통의 특성이다. 천연 자원을 관리하고 사용하면서 여성들은 가족과 지역 사회 공동체를 유지시켜 왔다. 따라서, "토지 과점 “–2007–2008 년 세계 식량 가격 위기 이후 국내 및 다국적 기업, 정부 및 개인의 대규모 토지 취득–과 같은 최근 경향은 남반구의 많은 지역에서 여성과 아동을 첫 번째 희생자로 만든다.

천연 자원 파괴는 전체 국민의 건강과 복지,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여성에게 그러하다. 나아가, 대부분 의사결정자인 남성들은 그들의 지식, 기술, 경험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리우 + 20 UN 회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양성평등이 기본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성 평등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략과 프로그램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소위 녹색경제에서의 여성의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UN 여성 이사 Michelle Bachelet 는 지속 가능 개발에 관한 의제에서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통해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 오고, 지속가능발전에서 여성의 중심적 역할을 반영하는 강력한 정책과 이행을 촉구했다.

여아

많은 국가들에서 소녀들은 삶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청소년을 거쳐 성인이 되기까지 많은 차별을 경험한다. 태아 성감별, 여성 영아 살해, 여성 성기 절단, 남아 선호, 조기 결혼, 성착취, 그리고 식량 분배와 같은 건강 관련 행태들과 같이 위해한 태도와 관행들로 인해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소녀들은 소년에 비해 성인으로 자라기 전에 목숨을 잃는 비율이 높다. 아들을 선호하는 사회에서, 태아 성감별과 여성 영아 살해는 광범위한 관행이며, 이 때문에 남성이 인구통계학적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호법 부족 또는 법률 집행 실패로 인해 소녀들은 모든 종류의 폭력, 특히 성폭력에 더 취약하다. 많은 지역에서, 소녀들은 교육과 전문 교육에 대한 접근과정에서 차별에 직면 한다.

조혼풍습 역시 소녀들에게 건강문제를 일으킨다. 18세 이전 결혼은 많은 젊은 여성들에게 현실이다. 유니세프의 추정에 따르면, 20~24세 여성 6천 4백만 명 이상이 18세 이전에 결혼이나 동거를 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매우 흔한 조혼은 필연적으로 조기 출산에 이르게 된다. 유니세프의 NGO 위원회는 여아의 건강 문제에 대한 문서에서 “10~14세 소녀들이 20–24 세 여성보다 다섯 배 높은 모성사망률" 을 보이는 원인이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 교육권 / 건강권

3. 문화적 관점 차이와 논쟁적 이슈

보편성 개념은 인권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특히 여성의 권리에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문화 다양성은 여성 인권의 완전한 이행에 있어 변명거리나 걸림돌로 사용된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채택된 문서는 여성인권에 있어 기본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이는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고 분리 할 수 없으며 상호 의존적이다. 또한 상호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국가적·지역적 특수성과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의 중요성은 중요하다. 하지만, 정치, 경제, 문화 체계와 상관없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편성 개념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성의 일상적인 삶 전체가 논쟁이 발생하는 영역이다. 일부 종교와 전통 속에서 여성은 남성들과 같은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평등한 교육기회와 고용평등에 대한 거부, 그리고 정치적 의사 결정에서의 명백한 배제 등의 관행이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일부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정책과 인식들이 심지어 여성 개인의 안전과 일상에서의 권리를 위협하기도 한다.

2002 년, 한 젊은 나이지리아 여성은 샤리아 법정에서 **투석**에 의한 사형을 선고 받았다. 국제 앰네스티 호주지부에 따르면, Amina Lawal의 범죄 혐의는 혼외 출산이었다. 이 판결은 국제적 항의를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인권의 보편성과 일부 문화적·종교적 행위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의 사건으로는 **사형**을 선고받은 이란 여성 Sakineh Ashtiani 사건이 있다. 그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형 집행이 미뤄지다가 2010, 2011, 2012년 국제 항의물결로 인해 10년형으로 최종 감형되었다. 또한 2012년 혼외 출산으로 100대의 **태형**이 선고된 말리 커플의 경우는 여성의 권리와 종교, 전통이 화해하는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고문방지, 종교의 자유

인도에서는 여전히 여성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종교 관행을 찾아 볼 수 있다. 죽은 남편의 장례식 장작더미에 과부를 인신공양의 제물로 바치는 사티(Sati)라는 힌두교 전통은 1829년 초, 영국 정부에 의해 금지되었다. 하지만 2006, 2008 년 등 최근 문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관행이다. 사티는, 전통적으로 남편에 대한 여성의 헌신 행위로 여전히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 관행은 인도에서 여전히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대에 와서는 비교적 줄어들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남편이 살아있는 경우에도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배우자의 친척들이 과거에 합의되었던 지참금을 신부 가족들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신부를 고문하고 괴롭힌 후에 "신부를 살해하는" 즉, **“지참금 사망”** 사건들이 자주 일어

난다. 지참금 사망 사건에는 살해되는 여성뿐만 아니라, 제물로 바쳐지는 경우, 독살, 교살 등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NGO 및 정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들은 수십 년 동안 인도와 주변 국가에서 결혼 지참금 관련 살해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지만, 인도 범죄 통계에 따르면 1990 년부터 매년 수천 건이 보고되고 있으며,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오늘날 **여성의 정치참여**는 자신의 관심사를 관철시키는 수준에서 보다 나아가 점차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50년 간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이를 행사해 왔으며, 공적 업무를 수행해왔다. 전 유엔여성발전기금(UNIFEM)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정치적 변환을 추구하고 있고, 여성 단체는 여성의 정치적 책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여성의 투표권에 대한 노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오늘날 정부에서의 여성참여가 이전에 비해 증가했다. 국가 차원에서 여성의원의 비율은 1998년부터 2008년간 10년 사이에 8%가 증가했다. 현재 전 세계의 여성의원 비율의 평균은 18.4%이며, 1975년 이후 20여 년간 단 1%만 증가했던 것과 비교할만한 결과다. 여전히 세계적으로, 민주적 거버넌스에서의 성평등은 극히 제한적이다. 여성의 비율은 전 세계 입법부에서 1/4이 넘지 않는다.

2009년 중반, 국가 및 정부 수장 중 단 17명만이 여성이었다. 지난 수십 년간에 비해 여성 대표의 증가 추세가 가속화되더라도 남성과 동등한 영역, 즉 "40~60%"의 비율에 대해서는 아직 너무 먼 길이다. UN 여성기구의 추정에 따르면, 어떠한 종류의 할당제도 없이 '비교다수득표주의' 선거제도를 취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20세기 말까지 공직에서의 여성의 참여율 40%이라는 최솟값에 도달할 수 없다.

지난 몇 년간 거의 즉각적인 방해들과 함께 정치, 사회운동 및 혁명에 대한 여성의 강력한 참여도 나타났다. 2009년과 2010년 이란의 **녹색 혁명**과 2011년 **아랍의 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여성이 전면에 나서는 모습이 TV 방송을 통해 전면에 나타났다. 이 여성들은 민주화와 참여를 위해 선전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이슬람 사회에서의 평등과 참여가 어떠한 모습일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혁명은 계속되는 억압으로 끝났으며, 내전과 선거에서 이슬람근본주의자들이 승리했기 때문에, 여성의 정치 참여는 다시 연기 될 것으로 보인다.

☞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

공산주의의 몰락 이후, 후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여성이 같은 자격을 가지고 동일노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남성 동료에 비해 임금을 1/3이나 적게 받는다. 유럽연합(EU)내에서 유럽 공동체 설립 조약 제 141조는 동일한 자격을 가진 **남성과 여성은 동일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여성은 언제나 차별에서 독립적일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도 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분야에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더 높다.

또한 많은 유럽 사회에서 이주여성 또는 무슬림 여성은 무슬림 사회에서 무슬림 남성이나 그 사회의 다수에 속한 여성에 비해 적절한 직업을 찾는 데에 있어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유럽연합 기본권 기구는 **다양한 차별**이 하나 이상의 보호받는 기반 위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국내 입법 및 평등기구의 관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오늘 날의 많은 여성 문제는 유럽의 반차별법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 노동권

4. 이행과 모니터링

여성인권을 총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제 인권기구들을 재해석하고, 성 평등을 보장하는 새로운 메커니즘 개발하는 등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 인권의 구현과 관련하여,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가 따라야 할 서로 다른 접근들이 있다.

- 일차적으로 비공식적 교육뿐만 아니라 공교육 시스템 내 **인권교육**을 통해 여성인권교육 도구와 메커니즘을 확산하기. 이러한 권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여성들은 그들의 인권을 행사할 방법을 알 수 없을 것이다.
- 또 다른 단계는 그들이 비준한 인권 문서에 포함된 국가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성들이 해당 국가의 실천을 감독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국가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민 단체는 대안을 준비하거나 특정위원회에 '섀도우 리포트'를 제출할 수 있다. 여성들은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대안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장려 받아야 한다. 이 보고서는 각 국가가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나 다른 조약기구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를 준수하는지에 대해 모니터링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섀도우 리포트'는 시민사회 구성원이 정부가 국제적으로 약속한 의무를 행하도록 촉구하게 한다. 나아가, 섀도우 리포트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의 보고과정에 대한 국내의 인식 제고에 기여한다.
-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 의정서**를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빠른 비준을 촉구하는 캠페인이 조직되어야 한다. 선택의정서 비준은 비준 국가가 각 국가의 관할권 내에서 **개인 또는 집단으로부터 항의를 접수하여 고려할 수 있는** 여성차별 철폐협약의 권한을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체적인 위반의 경우, 위원회는 의정서를 비준할 때 (비준 가능성을 각 국가가 배제하지 않는다면)조사를 개시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 여성인권기구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여성활동가로 하여금 인권 메커니즘을 활용하도록 하는 훈련**이다. 현재, 국제여성인권기구에 대해 알고 있는 여성은 매우 적으며, 더구나 올바른 탄원절차를 알고 있는 여성은 더욱 적다.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는 1994년에 설립된 새로운 메커니즘인 **여성폭력특별보고관** 제도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2009년 남아프리카 출신 라쉬다 만주는 터키 출신의 야킨 에터크로부터 지위를 승계했다. 임무의 일환으로, 그녀는 각 국가를 방문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의 수준을 검토한다. 또한 여성의 인권 분야에서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여성인권분야에서 지난 30여 년간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회에서의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사고와 근본주의의 발흥은 여성인권의 거대한 후퇴를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모든 여성을 위한 모든 여성인권의 완벽한 이행에 대한 긴급한 요구가 필요하다할 것이다.

알면 좋은 내용

1. 모범 사례

젠더 관점에서 본 인권

성인지적 감수성에 기반한 국제인권기구에 대한 **해석**이 시작되었다. 가장 좋은 사례 중 하나는 2000년 5월 국제인권위원회에서 채택한 **일반 논평** 28이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 제3조를 해석함으로써, 위원회는 성인지적 감수성 렌즈를 통해 위원회는 규약의 모든 조약을 검토했다. 1992년 CLADEM(여성의 권리 수호를 위한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위원회)는 전 세계의 조직이 참여한 캠페인을 이미 시작한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이는 세계 인권 선언(UDHR)의 초안에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하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 이제 이 선언은 교육적 의도를 지닌 “shadow” 선언으로 사용된다. 목표는 여성으로 하여금 인권에 대해 배우도록 하고, 여성이 그들의 언어로 표현된 인권의 틀에 그들의 경험·필요·욕구들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여성 권리 증진훈련

국제인권교육민중연합(PDHRE)는 선구적으로 "Passport to Dignity(존엄을 향한 여권)”와 비디오 시리즈 "Women hold up the Sky(여성이 하늘을 떠받친다)"를 통해 여성의 권리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Passport to dignity”는 많은 국가들 내에서 베이징 선언과 행동강령의 12가지 주요 영역에 걸친 법적인 의무들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와 함께 전문가 보고 및 해당 여성들의 직접 진술을 다루고 있다. 다른 매뉴얼 “Between their Stories and our Realities

(그들의 이야기와 현실들 사이에)"는 여성차별철폐협약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발 협력을 위한 오스트리아 외무부와 개발협력을 위한 비엔나 연구소의 지원으로 1999년에 제작되었다. 그리고 이 매뉴얼의 내용은 앞에 언급된 "Women hold up the Sky" 비디오 시리즈의 주요 부분이기도 하다. 국제인권교육민중연합(PDHRE)은 미래 세대의 여성운동 활동가를 교육하기 위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 셈이다.

"이 시점에서 나는 Womens Caucus for Gender Justice의 여성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 이들은 국제형사재판소의 많은 대표들로부터의 갈엷한 반대를 극복하고 전쟁 중 여성들의 경험을 취합하고, 폭력적인 전략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노력으로 강간·성 노예·강제 임신 및 다른 형태의 성폭력이 국제형사재판소의 법령에 포함되었다.

Mary Robinson, 유엔인권최고대표. 2000.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매체

전 세계적인 정보 격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여성들, 특히 어리고 교육받은 여성들의 인터넷이나 전자미디어 접근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들은 디지털 콘텐츠를 단순히 소비하는 소비자로만 머무르지 않는다. 이들은 웹 2.0 기술과 응용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참여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극복하고 사회적 실천을 위해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한, 좋은 실천사례가 있다. **세계 청소년상(World youth Award)**은 UN 새천년 목표를 위한 행동을 위해 청년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도록 촉구한다. 모든 부문의 우승작 절반이 여성들이 실천하거나 시작한 프로젝트였으며, 교육·정보·참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1년, "Power 2 Women" 분야에서의 우승 작품 셋 중 둘은 명백히 여성폭력을 드러내고 있다. 이집트의 "Harrassmap(성희롱 지도)" 는 성희롱 사건 신고를 위한 SMS 시스템이다. 그리고 "Bell Bajao!(벨 바자오!)" 는 남성들에게 폭력의 맥락을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남성들이 가정폭력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멀티미디어 캠페인이다. 폭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일은 과거 인도에서는 금기시되었던 일이다. 세 번째 우승작 "Girls Only Radio Station(소녀들만의 라디오 방송국)"은 2008년 이집트에서 만들어졌다. 이는 자기방어와 성폭력 후 자활, 다양한 영역에서의 여성의 정치적 인식, 깊게 뿌리박힌 여성차별 문화에 대한 저항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전자 매거진이다.

2. 트렌드

지난 20년간 시민단체들은 다수의 인권 및 인도주의 법적 이슈에 활발히 참여해왔다. 여성들은 여성 문제들을 적절히 다루기 위해서는 조직화된 협력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1998년에 여러 여성들은 기안자가 여성 인권을 중요하게 병합하여 다루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로마에서 개최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초안을 위한 회의에 참가했다. 그들은 2002년 7월 1일 발효된 로마 규정 심의에서부터, 그들은 다음과 같은 성공을 거두었다. 국제 인도주의 법은 로마규정과 함께 새로운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다. 특히 이는 성폭력을 범죄로 포괄하게 된 것과 관련되어 있다. 구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 영토 안에서 벌어진 잔학 행위는 여성과 인권의 보호가 국제형사재판소 임무 중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로마규정은 역사상 처음으로 대부분 여성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폭력을 처벌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7조 1호는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강간, 성 노예, 강제 매춘, 강제 임신, 강제 불임, 또는 유사한 비중의 성적 폭력의 다른 형태는 [...]" 반인권적 범죄가 된다. 나아가 피해자와 증인들에게 주의를 기울일 것이 명시되어 있다. 규정 68조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피해자와 증인의 안전, 신체적, 정신적 안녕, 존엄성과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명령할 수 있다. "[...] 카메라를 통해 일부 절차를 수행하거나 전자장치 혹은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히,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 또는 증인이 성폭력 피해자이거나 아이일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보호 조치는 ICTY와 ICTR에서 열린 재판 경험에 따른 결과이다.

2012 년 5 월, 전 세계 121국은 로마 규정을 비준했다.

여성 운동은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 인권 증진에 성공했다. 예를 들어, **우간다**에서 여성의원들은 여성이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토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다. 오랫동안 이는 관행적으로 금지되어왔다. 결국, 그들은 성공했고, 많은 여성들이 스스로를 부양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성공은 우간다 여성들로 하여금 여성과 관련된 더욱 중요한 문제들, 친족법 상 가정 폭력과 일부다처제 같은 전통을 불법화하는 것과 같은 문제들을 다루도록 촉진했다.

2015 년까지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성별 불평등을 없애려는 국제 사회의 약속은 **새천년 개발목표(MDGs)** 중 일부였다. 새천년 개발목표는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들의 사회·경제적 조건들이 더 나아지도록 하고자 한다. 그들은 초기 국제 개발목표에서 유래한다. 새천년 개발목표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2000년 새천년 정상회의 이후였다. 여기서는 참석한 세계지도자 모두가 유엔새천년선언을 채택했다. 이로부터 8개의 목표가 만들어졌다. 모든 목표는 암묵적으로나 명시적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일상생활을 언급하고 있다. 그들 중 두 개, 목표 3과 목표 5가 오직 여성만이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

- **목표 3: 성평등 증진과 여성의 역량 강화**: 목표 달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공식 데이터 소스인 유네스코 통계 연구소(UIS)는 Global Education Digests(글로벌 교육 다이제스트)에서 가장 최근 수치와 통계를 발표한다. 2010년판 다이제스트는 성별에 초점을 맞추고 그 추이를 보여준다. 세 나라 중 한 나라만이 초/중등교육 모두에서 남녀 학생이 동등한 비율에 도달했다는 추이를 보여준다. 2015 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대부분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랍 국가,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 **목표 5: 모성건강 증진**: 2012년 UN 부처간 산모사망률추산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990년대 이후 모성사망률과 산모사망률 모두 1/3 하락하였다.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하더라도, 평균 연간 하락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새천년개발목표의 목표에 미달하고 있다. 사망률이 가장 높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의 연간 하락 비율은 1.7 %로 추정 되며, 다른 어떤 지역보다 낮다.

2008년에 시작된 **UNiTE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여성에 대한 폭력종식을 위한 연대)** 캠페인은 전 세계 각 부문에서 다년간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UNiTE는 정부, 시민사회, 여성단체, 청년, 민간부문, 언론과 전체 유엔 체계가 여성과 소녀에 대한 전 세계에 걸쳐진 폭력을 해결하는데 힘을 모으도록 요구하고 있다.

2015년까지 UNiTE는 모든 국가에서 아래의 다섯 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규율하고 처벌하는 국내법의 채택과 시행
- 다차원적인 국가적 행동 계획의 채택과 실천
-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확산에 대한 데이터 수집 강화
- 대중적 인식 및 사회적 동원력의 향상
- 분쟁상황에서 성폭력 문제 해결 노력

2010년 UN에서는 **UN Women (성평등과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유엔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여성 문제와 젠더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유엔 회원국들은 성평등과 여성 역량강화라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가속화함에 있어 역사적인 조치를 취했다. UN Women의 설립은 UN개혁 의제의 일부로, 이를 통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자원과 명령을 소집할 수 있게 되었다. 유엔은 성평등과 여성 역량강화에 주력하기 위해서 그 체계 내에서 이전에 만들어진 네 가지 기관의 중요한 작업들을 병합하여 이를 설립하였다. 그 네 가지 기관은 여성지위향상국(Division of the Advancement of Women: DAW), 국제여성연구훈련원 (Internation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INSTRAW), 유엔사무총장 여성특별 보좌관실(Office of the Special Adviser to the Secretary General on Gender Issues and

Advancement of Women:OSAGI) , 유엔여성개발기금(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 UNIFEM)이다.

UN Women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다.

- 여성지위위원회와 같은 정부 간 기구에 대해 정책, 글로벌 표준과 규범의 정립 등에 대해 지원;
- 이러한 기준을 실행하도록 회원국을 지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게 기술적·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준비, 시민사회와 효과적인 협력 관계 구성;
- UN은 UN이 전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대한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 과정에 대해 책임을 진다.

UN 안에서 뿐만 아니라 법률과 행정 안에서 젠더 이슈의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강제하는 가장 최근 문서 중 하나는 유엔총회결의안 66/132이다. 이 결의안은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합의된 베이징 선언 및 행동계획과 2011 년에 채택된 총회의 제 23번째 특별 세션의 결과로 도출되었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은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 내에서
여성을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식한 유일한 문서로, 대단히 혁명적입니다."

Shulamith Koenig. 2009

---

3. 연혁

1789 여성의 권리와 여성 시민 선언 (Olympe de Gouges)
1888 국제여성위원회(the International Council of Women) 설립
1921 여성과 어린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및 수정 의정서
1950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1951년 발효, 2012년 5월 비준: 82),
1953 부녀자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1954년 발효, 2012년 5월 비준: 122)
1957 기혼여성의 국적에 관한 협약(1958 발효, 2012년 5월 비준: 74)
1962 혼인의 동의, 혼인을 위한 최소연령 및 혼인신고에 관한 협약(1964년 발효, 2012년 5월 비준: 55)
1967 여성차별철폐협약

1975 제1차 세계여성회의(멕시코)

1976 UN 여성의 위한 10년 시작: 평등, 발전, 평화

1979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1981년 발효, 2012년 5월 비준: 187)

1980 제2차 세계여성회의(코펜하겐)

1985 제3차 세계여성회의(나이로비): Adoption of the Nairobi Forward-Looking Strategies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to the Year 2000

1994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제도 설립

1994 Belém do Pará 의 여성폭력 예방, 처벌, 근절을 위한 미주 협약(발효: 1995)

1995 4차 UN 세계여성대회(베이징) Fourth UN World Conference on Women (Beijing)

1998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약(발효: 2002, 2012년 5월 비준: 121개 국가)

1999 여성차별철폐 협약 선택의정서(발효: 2000, 비준 2012년 5월 비준: 104개 국가)

2000 여성평화와 안보에 대한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S/RES/1325

2000 특히 여성과 아동 초국가적 조직 범죄에 대항하는 UN 협약 보충을 위한 인신매매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의정서(발효: 2003, 2012년 5월 비준: 147개 국가)

2000 총회 내 23번째 특별 세션 "Women 2000: 성평등, 21세기를 향한 발전과 평화"

2003 아프리카에서 인민과 여성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프로토콜 (Maputo Protocol)

2005 베이징+10 베이징 행동 선언에 대한 리뷰와 평가 그리고 총회 23번째 특별 세션에서 결과문서 도출

2008 여성과 평화, 안보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820(2008)

2009 여성과 평화, 안보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888(2009)

2009 여성과 평화, 안보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889(2009)

2009 전쟁 중 시민보호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894(2009)

2010 여성과 평화, 안보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620(2010)

2010 베이징 +15: 베이징 행동 강령에 대한 리뷰 및 평가

2010 UN총회에 의한 UN Women(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설립

2011 UN 총회 결의안 66/132 4차 세계여성대회 그리고 베이징 행동 강령의 완전한 이행 총회 23번째 특별 세션 결과문서

추천 활동

활동 I: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해

Part I : 소개

이 활동은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서이며, 특히 법적 전문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비-법률가들을 위한 것이다.

Part II : 일반적인 정보

활동유형: 운동

목적과 목표: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키기, 법률용어에 대한 친밀도 높이기, 여성의 권리를 다른 관점으로 보기, 여성의 권리를 다루는 법적 도구들에 대해 토론하기

대상그룹: 청소년, 성인

그룹크기: 20-25 (소규모 모임 활동 및 전체 토론)

소요시간: 약 60 분

교구: 여성차별철폐협약 사본, 종이, 필기구

관련 기술: 법률용어 독해 및 이해, 언어 소통, 협력, 다른 관점 설명하기

Part III :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지시사항: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 소개 후에 그룹을 대략 4~5개로 나눈다. 각 그룹은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부분을 맡아서 법률용어가 아닌, 일상적인 용어로 번역한다. 각각의 집단에 같은 기사를 부과할 수도 있다. 어떤 특정한 단어에 대해 사람들이 얼마나 다르게 받아들이는지를 보는 것을 보면서 자세한 토론을 진행하면 훨씬 더 흥미로울 것이다.

작업시간 30분을 준 뒤, 전체 그룹을 다시 소집한다.

각각의 작업그룹은 전체 모임에서 그들의 "번역본"을 발표한다. 토론과 질문을 명료화하는 시간을 준다. 그 뒤 그룹들은 자신들의 국가나 지역에서의 상황을 들여다본다. 아래의 질문들 일부와 전체는 무엇을 바꾸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평가하는 과정에서 유용할 것이다:

- 당신의 국가에서는 여성의 권리를 인권과 분리하고 있는가? 분리는 어떤 양상인가? 법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관습적인가?
- 이러한 분리는 공공연한가? 실제로 말하지는 사람은 없지만 실생활에서 분명히 벌어지는 일인가?
- 모든 여성에게 영향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 성별에 따른 분리에 대한 특정한 예를 기술하라.
- 여성들은 이러한 분리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당연하게 향유하는 인권을 여성들은 특별한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 삶의 영역에서 여성은 남성의 중계를 통해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가? 여성의 자율성에 장애물은 무엇인가?
- 당신의 나라에서 헌법은 여성의 권리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현실과 헌법 사이에 괴리는?
- 여성의 권리와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사건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는가? 어떠한 이슈인가? 어떤 권리가 영향을 받는가?

실용적 힌트:

4~5명 정도의 소규모 그룹 활동은 좀 더 집중적인 토론을 가능하도록 한다. 조용하고 겁이 많은

참가자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렇지만 모든 참여자들의 지식수준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룹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그것이 논의되어야 한다.

응용을 위한 팁:

그 과정의 주제와 참여자들의 흥미에 맞춘 법적인 문서를 가지고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Part IV : 후속활동

적합한 후속활동으로 여성권리를 위한 캠페인을 조직할 수 있다.

관련 권리 및 더욱 탐색할 영역들: 일반적인 인권, 소수자 권리, 차별금지

활동 II : 평등국(Equilia)로 가는 길

Part I : 소개

평등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구불구불하다... 참가자들은 훌륭한 지도를 그려줌으로써 여행자들이 다양한 장애물들 사이에서 진정한 성평등이 존재하는 나라인 평등국(Equilia)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평등국은 단지 상상에만 존재하지만, 그들의 지도는 미래로 향하는 길을 보여준다.

Part II : 일반적인 정보

활동유형: 모둠 활동, 상상하기, 그리기

목적과 목표: 평등과 성별 균형의 목표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발전시키기, 미래를 그리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전시키기, 정의와 존중을 증진하기

대상그룹: 청소년, 성인

그룹크기: 10~30명, 소규모 모둠 활동 및 전체 토론

소요시간: 약 90 분

교구: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연필과 종이, 플립차트 종이, 다양한 색깔의 마커 펜, 산이나 계곡, 강, 숲, 마을, 다리 등과 같이 물리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하이킹 지도 또는 다른 종류의 지도.

준비사항: 지도와 사용되는 기호에 익숙해지기

관련 기술: 분석, 토론, 집단의사결정, 창의력 관련 기술/그림그리기.

Part III :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

지시사항 :

- 활동참가자들에게 진정한 성평등이 이루어진 나라 평등국(Equalia)을 여행하는 방법에 대한 판타지 맵을 그릴 것이라고 설명한다.
- 참가자들에게 현재 윤리적 이상으로 향하는 여행하는 사람의 비유를 사용한 다른 이야기 또는 동화를 기억하도록 요청한다. 흔한 비유를 사용하라. 예를 들어 악을 비유하기 위해 어두운 숲길을 사용할 수 있다. 또는 유혹을 상징하는 빨간 사과를 사용할 수 있다. 여행자는 빠르게 흐르는 강을 헤엄침으로써 도덕적 강점을 보여주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겸손을 보일 수도 있다.
- 지도가 어떤지 짧게 검토한다. 선이 그려진 방법, 산과 강에 대한 음영, 숲, 빌딩, 전원케이블 등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심볼을 지적한다.
- 사람들에게 3~5명 규모의 소그룹을 만들도록 요청한다. 종이와 펜을 주고 그들이 생각하는 평등국이 어떨지, 평등국으로 가는 길에 만나게 될 장애물은 무엇인지, 어떻게 그 장애물을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15분간 3개의 짧은 브레인 스토밍을 하도록 한다.
- 이제 플립차트와 마카를 건네준다. 각 그룹에게 자신들의 판타지 맵을 만들도록 한다. 그 지도는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길을 나타내야 한다. 이러한 경로상의 장애물이나 시설, 지형을 나타내는 자신만의 상징을 사용하라.
- 그룹에게 40분을 주어 자신의 지도를 그리도록 그룹에게 한다. 그들이 사용했던 상징을 위한 키를 만들도록 상기시켜라.
- 전체 그룹을 소집하여 그들의 지도를 발표하도록 요청하라.

피드백 :

어떻게 서로 다른 그룹들이 함께 작업하는 하였는지, 지도에 무엇을 그렸는지와 어떻게 그렸는지에 대해 토론을 시작한다. 그 뒤, 현실에서 평등국은 어떠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장애물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 한다.

- 사람들은 그 활동을 즐겼나? 무엇을 즐겼나?
- 브레인 스토밍 중 가장 쉬웠던 3가지 질문은? 가장 어려웠던 것은? 왜?
- 평등국의 주요한 특징은 무엇인가?

- 현재 사회가 이상적인 평등국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주요한 장애물은 무엇인가?
- 당신이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자신의 나라를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지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면 1~10점 척도 중에서 당신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1점은 매우 불평등, 10점은 거의 이상적인 평등한 국가이다.
- 성평등이 이루어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 인권과 자력화를 위한 교육의 역할은 무엇인가?
- 양성평등을 추진하기 위한 단기간의 도구로서 적극적 우대조치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 당신이 속한 사회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다른 집단은 어떤 그룹인가? 어떠한 양태로 드러나는가? 어떤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가?
- 어떻게 소외 계층이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가?

Part IV : 후속활동

자신의 학교, 클럽, 또는 직장 내 정책을 젠더와 관련된 기회균등(equal apportunity)이라는 측면에서 들여다보자. 그리고 당신이 속한 기관이 평등국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책을 실현할지, 어떠한 변화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지에 대해 이야기 해 본다.

관련 권리 및 더욱 탐색할 영역들:

일반적인 인권, 소수자들의 권리, 차별금지

(출처: Rui Gomes et al.(eds.) 2002 COMPASS. 청소년 인권교육 매뉴얼에서 인용)

참고자료

Abella, rosalie. 1987. The Evolutionary Nature of Equality. In: Mahoney, Kathleen and Sheilah Martin (eds). Equality and Judicial Neutrality. Toronto: Carswell., pp. 4 et seq.

Amnesty International Netherlands. 2002. Joint stat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new Sharia-based penal codes in northern Nigeria. Available at: www.amnesty.nl/nieuwsportaal/pers/joint-statement -implementation-new- sharia-based-penal-codes-in-northern-nigeria

Aronovitz, Alexis, Gerda theuermann and Elena tyurykanova. 2010. Analyzing the business

model of trafficking in human beings to better prevent the crime. Vienna: OSCE - Office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and Co- ordinator for Combating Trafficking in Human Beings.

Benedek, Wolfgang, Gerd Oberleitner and Esther Kisaakye (eds.). 2005. Human Rights of Women: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African Experiences. London: Zed Books.

Boletín red Feminista Latinoamericana y del caribe contra la violencia doméstica y sexual. Isis, 1993 - current.

Bravo, rosa. 1998. Pobreza por razones de género. Precisando conceptos. En Género y Pobreza, Nuevas dimensiones. Santiago de Chile: Editores Isis.

EcLAc Women and Development Unit. 2000. The challenge of gender equity and human rights on the threshold of the twenty- first century. Santiago: ECLAC.

Europa. Summaries of EU legislation. 2012. Fight against trafficking in human beings. Available at: http://europa.eu/legislation_ summaries/justice_freedom_security/fight_ against_trafficking_in_human _beings/index_ en.htm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2012. Fundamental rights: challenges and achievements in 2011. Available at: http://fra.europa.eu/fraWebsite/research/ publications/publications _per_year/2012/ pub-annual-report-2012_en.htm

Falcón O'Neill, Lidia. 1999. Historia de los Derechos de las Mujeres. La construcciòn del Sujeto Politico. Lima: Seminario Internacional de Derechos Humanos. Movimiento Manuela Ramos.

Forward. 2002. Female Genital Mutilation: Information Pack. Available at: www. forwarduk.org.uk /download/10

Gomes, rui et al (eds.). 2002. COMPASS. A manual on human rights education with young people.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Available at: http://eycb.coe.int/compass

Human rights Watch. 2011. He loves you, he beats you. Available at: www.hrw.org/en/ node /98417/section/2

Ictr. 1998. The Prosecutor of the Tribunal against Jean-Paul Akayesu (Sentencing Judgement). ICTR-96-4-T. Available at: www. unhcr.org/cgi-bin/texis/vtx/refworld/rwmain

?docid=402790524&page=search

International center for research on Women. 1998. After the Peace: Women in

Post-Conflict Reconstruction. Available at: https://repository.library.georgetown.edu/ bitstream/handle/10822/551499 /Peace_ women_post_conflict.pdf?sequence=1

Kamat, Jyostna. 2012. The tradition of Sati in India. Available at: www.kamat.com/ kalranga/hindu /sati.htm

Karam, Azza and Joni Lovenduski. 2005. Women in Parliament: Making a Difference. In: Ballington, Julie and Azza Karam (eds.). Women in Parliament: Beyond Numbers. Available at: www.idea.int/publications/wip2

Klip, André and Göran Sluiter. 2005. Annotated Leading Cases of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2001-2002. Antwerp: Intersentia.

Koenig, Shulamith. 1998. Embracing Women as Full Owners of Human Rights. Available at: www.pdhre.org/dialogue/embrace.html

Koenig, Shulamith and Betty A. reardon. 2001. Passport to Dignity. New York: PDHRE.

Lloyd-roberts, Sue. 2012. Female genital mutilation rife in Egypt despite ban. Available at: http://news.bbc.co.uk/2/hi/programmes/ newsnight/9696353.stm

Moller Okin, Susan. 1998. Justice, Gender and the family. New York: Basic Books.

Neuhold, Brita and Birgit Henökl. 2000. Women's Rights - Human Rights: From Dream to Reality. Vienna: Austria Service for Development Co-operation.

Niarchos, catherine M. 1995. Women, War, and Rape: Challenges Facing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n: Human Rights Quarterly 17 (1995). pp. 649-690.

Peacewomen (ed.). 2010. Women, Peace and Security Handbook. Compilation and Analysis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Language 2000 - 2010. Available at: www. peacewomen.org/security_council_monitor/ handbook

People's Movement for Human rights Learning. 2002. Women hold up the Sky. New York: PDHRE.

Power, carla. 2002. The Shackles of Freedom. The end of communism was supposed to make life better for women. Has it? In: Newsweek International. Available at: www.thedailybeast.com/newsweek/2002/03/17/the-shackles-of-freedom.html

Robinson, Mary. 2000. Women Uniting for Peace. Statement by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nd Secretary-General of the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Available at: www.unhchr.ch/huricane/huricane.nsf/0/DD6773BCD73D1F478025689C005B52B7? opendocument

Seifert, ruth. 1996. The Second Front: The Logic of Sexual Violence in Wars. In: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19 (1/2). pp. 35- 43.

Shanti, Dairian. 1998. Equality and the Structures of Discrimination. In: Yaeli, Danieli, Elsa Stamatopoulou and Clarence Dias (eds.). New York.

Shiva, Vandana. 1998. Monocultures, Monopolies, Myths and the Masculinisation of Agriculture. Available at: http://gos.sbc.edu/s/ shiva2.html

Tripp, Ailli. 2004. Women's Movements, Customary Law, and Land Rights in Africa: The Case of Uganda. African Studies Quarterly 7, No.4. Available at: www.africa.ufl.edu/asq/v7/v7i4a1.htm

UNAIDS. 2011. World AIDS Day Report 2011. Available at: www.unaids.org/en/media/unaids/contentassets/documents/unaidspublication/2011/JC2216_WorldAIDSday_report_2011_en.pdf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2010. Global Education Digest 2010. Comparing Education Statistics across the World. Available at: www.uis.unesco.org/Library/Documents/GED_2010_EN.pdf

UNICEF. 2005. Female genital mutilation/cutting. A statistical exploration. Available at: www. unicef.org/publications/files/FGM-C_final_10_ October.pdf

UNICEF/Innocenti research centre. 2008. Changing a harmful social convention: Female genital mutilation/cutting. Available at: www.unicef-irc.org/publications/pdf/fgm_eng.pdf

United Nations. 2011. 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New York: United Nations. Available at: http://daccess-ods.un.org/access.nsf/Get?Open&DS=A/66/38&Lang=E

United Nations. 2010. Global strategy to stop health-care providers from performing female genital mutilation. Available at: www.who.int/ reproductivehealth/publications/fgm/rhr_10_9/en/index.html

United Nations. 2008. Eliminating female genital mutilation. An interagency statement - OHCHR, UNAIDS, UNDP, UNECA, UNESCO, UNFPA, UNHCR, UNICEF, UNIFEM, WHO.

Available at: www.who.int/reproductivehealth/publications/fgm/9789241596442/en/index.html

United Nations. 2001. Multilateral Treaty Framework: An Invitation to Universal Participation, Focus 2001: Right of Women and Children. New York: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2000. Women, Peace and Security, Study submitted by the Secretary- General pursuant to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2000). New York: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1999.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vailable at: www2.ohchr.org/english/law/ cedaw-one.htm

United Nations. 1998.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vailable at: http://untreaty.un.org/cod/icc/statute/romefra.htm

United Nations. 1993.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Available at: www.unhchr.ch/huridocda/huridoca.nsf/(Symbol)/A.RES.48.104.En

United Nations. 1979.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Available at: www2. ohchr.org/english/bodies/cedaw/convention.htm

Vlachova, Marie and Lea Biason (eds.). 2005. Women in an Insecure World. Geneva: Geneva Centre for the Democratic Control of Armed Forces (DCAF).

WHO, UNIcEF, UNFPA and World Bank (eds.). 2012. Trends in maternal mortality: 1990 to 2010. WHO, UNICEF, UNFPA and The World Bank estimates. Available at: www. childinfo.org/maternal_ mortality.html

추가정보원

African Union: www.au.int

campaña por una convención Interamericana de los Derechos Sexuales y los Derechos reproductivos: www.convencion.org.uy

comité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de las Mujeres (cLADEM -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committee for the Defense of Women rights): www.cladem.org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www.eclac.org

Equality Now: www.equalitynow.org

International council of Women: www.icw-cif.info

Isis internacional. centro de Documentación de las Mujeres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www.isis.cl/

terre des Femmes: www.terredesfemmes.d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www.oas.org

People's Movement for Human rights Learning: www.pdhre.org

red de Salud de las Mujeres Latinoamericanas y del caribe (rSMLAc - Latin American Women's Health Network): www.reddesalud.org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www.un.org/womenwatch/daw/csw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ww.un.org /womenwach/daw/cedaw/committee.htm

UNODc, Human trafficking and migrant smuggling: www.unodc.org/unodc/en/ human-trafficking /index.html

UN Women: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www.unwomen.org

법의 지배와 공정한 재판
RULE OF LAW AND FAIR TRIAL

민주 사회에서의 법의 지배
공정한 재판-법의 지배의 핵심 요소
공정한 재판의 요소

>> "법의 지배는 단지 법 기준을 공식적으로 사용한다는 것 이상이다. 법의 지배란 곧 정의의 지배이며, 과도한 정부의 권력으로부터의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보호다." <<

국제법률가위원회, 1986년.

사례

2011년 2월, S씨는 1998년 7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부상당한 이스탄불의 스파이스 시장에서 발생한 폭발에 관여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사실 폭탄은 없었고 폭발은 가스 누출로 인한 것이라는 상당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그녀는 사상자를 발생시킨 폭탄을 운반하였다는 혐의로, 이 날 세 번째 재판을 받게 되었다.

1998년 27살이었던 S씨는 이스탄불에서 거리예술 프로젝트를 수행하다가 체포되었다. 19살의 청년이었던 Ö도 체포되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폭탄이 폭발의 원인이었다는 주장과, S가 죄를 지었다는 Ö의 심문에서의 주장에 따른 것이었다. Ö는 이후 법원에서 경찰의 고문 때문에 그런 진술을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S 또한 경찰에 구금된 동안 심각한 고문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애초에 경찰보고서는 폭격은 배제하고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발생가능성을 제기하였다. S와 Ö를 기소한 검사가 폭발을 폭격으로 규정하였으나, 이후에 각기 다른 대학의 전문가들의 세 개의 보고서는 이를 부인하였다. 부검보고서는 사망이 폭격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밝히지 않았다. Ö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로 풀려난 후, 이 결정은 파기법원에서도 유지되었고 원심 법원은 그의 진술이 S에 대한 증거로 쓰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S와 폭발의 연계를 입증하는 다른 어떠한 진술이나 과학적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

Ö의 이모는 그녀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서면진술서에서 S가 그녀의 집을 방문하였다고 확인하였다. 그러나 재판에서 Ö의 이모가 터키어는 못하고 쿠르드어만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내용을 알지 못하는 종이에 경찰이 서명하도록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진술서는 조작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재판에서 Ö와 그의 이모는 한번도 S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하였다.

"S의 재판은 형사사법체계를 악용하고 적법절차를 남용한 것이다." 재판에 참석한 국제인권감시기구의 터키연구원인 Emma Sinclair-Webb은 말했다. "12년간 이 사건의 재판을 수행한 것은 공정한 재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위반한 것이다. 이 증거 없는 기소는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

국제인권감시기구에 따르면, 터키에서는 지속적으로 정치적 동기의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다. 검사와 판사는 계속해서 언론인과 편집인, 인권옹호자, 시위에 참여하는 개인, 합법적인 친-쿠르드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재판을 하고 있다.

S는 터키에서 젠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의 권리와 쿠르드 등 소수자 권리 등 인권 이슈에 대해 광범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또 이러한 이슈에 관해 저술을 한 사회학자이다. 국제인권감시기구는 그녀에 대한 재판이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지는 부당한 재판의 가장 충격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하였다.

(출처: 국제인권감시기구. 2011. *Turkey: Activist's Trial a Travesty of Justice.*)

토론할 거리

1. S의 기소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는가?
3.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4. 이러한 사건에 있어 어떤 국제적 보호 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는가?

알아야 하는 내용 ☺!?

1. 소개

당신이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재판정에 앉아있다고 상상하라. 당신은 판사가 혐의-이전에는 전혀 불법적이지 않았고, 현행법에 명문 규정도 없는 그러한 범죄-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할 때는 더 혼란스러워진다. 누구도 당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당신은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도 변호사는 없다. 더 나쁜 것은, 증인에 대한 심리가 시작될 때 증인 중 적어도 한 사람은 당신이 모르는 언어로 말하고 이를 통역해 줄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재판에서, 당신은 판사로부터 이는 두 번째 심리이고 첫 번째 심리는 당신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을 듣는다. 재판이 계속될수록, 모든 사람이 당신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고 진짜 문제는 어떤 형벌이 내려지는가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명확해진다.

이 사례는 **공정한 재판**의 보장이 침해될 때 발생하는 문제를 보여준다.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는, **'**공정한 사법행정**'** 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법의 지배'** 를 준수하는 민주사회의 초석 중 하나이다.

법의 지배
법의 지배는 다양한 정책에 해당되는 요소이며, 정치적, 헌법적, 법적, 또 인권적 측면을 포함한다. 모든 민주사회는 법의 지배에 대한 존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효과적인 인권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

법의 지배가 민주사회의 초석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요소 전부에 대한 완전한 합의는 없다. 그러

나 시민들의 권리가 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이들이 공적 권위의 자의적 행위로부터 보호된다는 것은 널리 수용되는 사실이다. 이러한 법은 **공개적으로 알려져야 하고, 공평하게 적용되며 효과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행사는 자유와 정의, 법적 명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헌법에 따라 제정된 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는 법의 지배의 원칙과 인권의 보호 및 보장 간에 불가분의 연관성을 재확인하였다. 법의 지배가 없다는 것은 인권을 이행하는 데에 있어 주요한 방해요소 중 하나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법의 지배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공정히 운영하는 데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고, 민주적 절차의 근본적 기둥을 구성한다. 또한 법의 지배는 **책임성**을 확보하고, 권력자들을 통제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 *"유엔에게 법의 지배란 모든 사람, 기관, 국가를 포함한 공적/사적 독립체가 법에 대한 책임을 지니는 통치원칙이다. 이때의 법은 널리 공포되고, 평등하게 집행되며 독립적으로 판단되며, 국제적 인권규범과 기준에 부합하는 법을 뜻한다. 또한 법의 지배를 위해서는 법의 우위, 법 앞에서의 평등, 법에 대한 책임성, 법적용의 공정성, 권력분립, 결정과정에 참여, 법적 확실성, 자의성 배제와 절차 및 법적 투명성 등에 관한 원칙을 고수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 (출처: 유엔. 2004. *The rule of Law and Transnational Justice in Conflict and Post-conflict Societies.*)

법의 지배 원칙의 역사적 발전

법의 지배 원칙의 연원은 재량적 통치에 비해 법의 지배가 갖는 이점을 보여준 아리스토텔레스 등 그리스 철학자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 1066년 중세 영국에서 정복자 윌리엄이 설립한 중앙행정기구는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발전으로 볼 수 있다. 왕이 중앙 행정・입법・사법부에 포함되기는 했지만, 왕이 법의 우위에 서지는 않았다. 즉, 그를 왕으로 만든 것은 법이었다. 결과적으로, 보통법의 법원과 의회는 귀족과 함께 유럽 내 첫 번째 의회군주제를 수립하면서 국내 체제 내에서 그들의 영향을 강화했다. 법의 지배 원칙의 발전에서 초석을 이룬 것은 특정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귀족에게 부여한 마그나 카르타(1215년)와 구금된 인민에게 그들의 자유가 제한되는 이유를 고지받을, 부인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한 인신보호법(1679년)이었다.

유럽에서, 법의 지배 원칙은 17세기와 18세기의 시민 혁명에서 그 중요성을 획득하였다. 오늘날, 법의 지배는 전 세계적으로 국내적 또 지역적 기구에서 핵심적 원칙이 되었다.

> 법의 지배, 공정한 재판과 인간안보

인간안보는 법의 지배와 공정한 재판에 근거하고, 이러한 근본적 원칙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법의 지배와 공정한 재판은 개인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누구도 자의적으로 기소되거나 체포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독립적이며 공평한 판사가 주재하는, 공정한 재판 심리를 받을 것을 보장한다. 재판절차에서의 공정성은 정의를 이루는 요소이며, 시민들이 법에 근거한 공정한 재판권에 대해 확신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강력한 사법 시스템은 교정 기능 뿐 아니라 강력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범죄율과 부패를 낮추어 공포로부터의 자유에 기여한다. 분쟁 후 상황에서는 특히 법의 지배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재확립하여 법적 확실성, 공평한 사법행정과 선정을 통해 인간 안보를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국가와 그 기관에 대한 자신감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경제적 성장과 발전의 측면에서도, 우호적인 투자환경 또한 제대로 작동하는 행정적, 사법적 체계에 달려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 안전을 확보하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져오는 경제적 성장과 사회복지 또한 법의 지배와 공정한 재판에 달려 있다.

"[...] 인권과 법의 지배에 대한 지지는 사실 인간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작동한다. 법의 지배를 존중하는 사회는 행정부에게 예외적 상황에 대처할 때조차도 백지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한 사회는 행정부가 국가 이익이라는 복잡한 이슈에 균형 있고 합법적인 접근을 하도록 하는 데에 있어서의 사법부와 입법부의 역할을 받아들인다."

루이스 아버, 유엔인권최고대표. 2004.

---

2. 정의와 설명

법의 지배의 핵심적 요소로서의 공정한 재판

무엇보다도 법의 지배는 공개되고 차별적이지 않은 법이 존재하고, 이 법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목적을 위해, 국가는 법원, 검찰과 경찰 등 법적 체계를 보장하는 기구를 설립해야만 한다. 이러한 기구는 그 자체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유럽인권협약」, 「미주인권협약」, 「아프리카 인권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국제적, 지역적 인권 보호를 위한 조약에 규정된 인권 보장에 구속된다.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는 민사적, 형사적 사건들의 사법 행정에 관련된다. 우선, 적절한 사법행정은 두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직적(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

절차적(심리의 공정성) 측면이다. 공정한 재판의 원칙은 혐의를 둔 순간부터 판결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정당한 법적 절차를 보장하는 일련의 개인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피고인의 권리에 관한 최저 기준

1.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며, 공정한 재판의 최저한도의 보장을 완전히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형사상의 죄로 기소된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죄의 성질 및 이유에 대해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고 상세하게 통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형사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법정은 권한 있고 독립적이고 공평하여야 하며 법률에 의해 설치되어야 한다.
5. 모든 사람은 공정하고 공개된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일반 대중은 특정한 경우에만 배제된다.
6. 모든 사람은 지체 없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7. 모든 사람은 본인의 출석 하에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피의자는 직접 또는 자신이 선임한 자의 법적 조력을 통해 자신을 변호할 권리를 가진다. 만약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통지를 받아야 한다. 사법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분한 지불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법적 조력이 그에게 주어져야 한다.
8. 피의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그 증인이 신문받도록 할 권리와 자기를 위한 증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고 또한 신문받도록 할 권리가 있다. 피의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9. 피의자는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0. 어느 누구도 행위 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죄형법정주의). 또한 어느 누구도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도 중한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11. 모든 사람은 효과적이고 공정한 사법적 구제에 대해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그 판결 및 형벌에 대하여 상급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출처: 주요 유엔인권조약에서 발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국제적 규정(예를 들어 자유권규약위원회가 2007년 일반논평 제32

호에서 구체화하여 해석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은 통상법원이든 특별법원이든 모든 법원이나 재판소에 적용된다. 많은 국가에는, 민간인을 재판하는 **군사법원 또는 특별법원**이 있다. 이러한 법원을 설립하는 이유는 종종 보통의 사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예외적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유권규약이 이러한 류의 법원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규약의 규정은 그러한 법원이 민간인을 재판하는 것은 예외적이어야 하며, 자유권규약의 보장에 완전히 부합하는 상황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한다.

법 앞에서의 평등과 법원 앞에서의 평등

평등에 대한 보장은 법의 지배의 가장 일반적 원칙 중 하나이다. 이 원칙은 차별적 법률을 금지하고, 법원에 대한 **평등한 접근과 법원의 평등한 처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에서 실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기대등의 원칙**이다. 즉 양 당사자가 자기의 사건을 제시할 동등한 기회를 갖고, 어느 한 당사자도 반대편에 비해 상당한 정도의 이익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원의 평등한 처우에 있어 또 다른 요소는 모든 피의자는 어떠한 사유에 근거한 차별도 없이 다른 피의자와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평등한 처우란 동일한 처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객관적 사실이 유사하다면, 행정적·사법적 조직의 처우도 유사해야 하지만, 사실이 다르다면 평등의 원칙에 따라 다른 처우가 요구된다. ☞ 차별금지

독립성과 공정성

제대로 기능하는 법의 지배에서 근본적인 요소 중 하나는 법적 체계 내의 **독립적이며 공정한 법원**의 역할이다.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적 권력은 입법적, 행정적 권력과는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이는 기구로서의 사법부뿐만 아니라 개개의 판사 또한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그들의 직업적 책임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사의 독립은 독립적 사법부의 한 기둥이다. 판사가 정부나 다른 권력에 의해 언제라도 해임될 수 있다면, 그들의 제도적 독립성은 확보될 수 없다. 나아가, 법원이나 판사가 비사법적 주체의 통제나 영향 하에 있다면 공정한 재판은 이루어질 수 없다.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통제에는 판사 급여 지불에 대한 특별 조건, 법무부 장관의 법원에 지침을 내릴 수 있는 권리, 판사의 결정이 기대나 지침에 부합하지 않으면 다른 보직으로 변경하겠다는 위협 등이 있다.

또한 법원의 결정은 통상 국가수반에게 부여되어 있는 헌법상 인정된 사면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사법적 기구가 번복할 수 없어야 한다.

공정한 재판의 규범은 재판부를 구성함에 있어 어떠한 특정한 구조(직업적 판사만으로 구성되는 조합, 직업적 판사와 참심원(lay judge)으로 구성되는 조합, 여타 다른 조합 등)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판사의 임명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국제적 기준은 존재한다. 어떠

한 국제인권문서도 배심재판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떤 국가가 배심재판을 제도화했다면, 독립성과 공정성의 요건은 배심원들에게도 역시 적용된다.

"부시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관타나모에 설치한 군사위원회는 공정성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폐기되어야 한다. 군사위원회는 미국 당국이 피고인들에게 민간법원에서 누릴 수 있는 보호를 보장하지 않기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다. 군사위원회가 다수의 법률적, 절차적 개편을 거쳤다는 사실은 제네바협약 공통 3조에서 요구되는 "통상적으로 구성된 법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제 엠네스티는 오랫동안 미국이 기소하고자 하는 관타나모 수감자들이 미국 연방법원 등, 공정한 재판의 기준을 적용하는 독립적이며 공정한 법원에서 즉각 기소되어 재판받을 것을 요청해왔다."
(출처: 국제 엠네스티. 2011. Military Commissions.)

공개 심리

사법행정에 대한 신뢰를 발전시키고 당사자에 대해 공정한 심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정의는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야만 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중(the public)은 어떻게 정의가 이루어지고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 공개 심리는 사건의 본안에 대한 구두 심리를 요구하며, 이는 공중과 언론이 참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법원은 구두 심리의 시간과 장소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성의 원칙은 공중을 배제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온전히 존중되어야 한다. **제한**의 이유는 자유권규약 제14조 등 국제적 문서에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민주사회에서의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거나 또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사법상 이익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법원이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공중이 재판으로부터 배제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형사소송 및 기타 소송에서 선고되는 **판결**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당해 절차가 혼인관계의 분쟁이나 아동의 후견 문제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무죄로 추정될 권리

무죄로 추정될 권리란 형사 범죄의 피의자는 공정한 재판에서 법에 의해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고 그러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원칙은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최종 상소 후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적용된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있어 기소는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해

야 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면 피의자는 유죄로 판단되지 않아야 한다.
무죄로 추정될 권리는 판사와 배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편견을 갖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이는 또한 절차의 일부를 담당하는 모든 공직자들에게도 적용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전문가와 시민언론인들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묵비권과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역시 무죄로 추정될 권리의 원칙에 속한다. 묵비권은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의자가 진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구한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는 모든 형태의 압력 행사를 금지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부당한 지체 없이 재판받을 권리
부당한 지체 없이 재판받을 권리에 관련된 기간은 재판 시작까지 소요되는 시간 뿐 아니라 대법원이나 여타 최종 사법기관에 이르는 상급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포함한 절차에 소요되는 총 시간을 포함한다. 합당한 시간은 분쟁이 된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무엇이 부당한 지체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평가는 사건의 복잡성, 당사자들의 행태, 청구인에게 문제되는 사안과 관계기관의 사건 처리 등 사건의 상황에 달려 있다. 나아가, 형사법에서 부당한 지체 없이 재판받을 권리는 범죄피해자의 권리이기도 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그 기저의 원칙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라는 경구에 잘 드러나 있다.

적절한 변호를 받을 권리와 본인의 출석 하에 재판받을 권리
모든 형사 피의자는 “본인의 출석 하에 재판을 받고, 직접 또는 본인이 선임하는 자의 법적 조력을 통하여 변호하며, 만약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통지를 받고, 사법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충분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법적 조력이 그에게 주어지도록” 할 권리가 있다. (자유권규약 제14조 제3항)

변호의 권리와 본인의 출석 하에 재판받을 권리의 내용
- 본인이 직접 자신을 변호할 권리
- 자신의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통지받을 권리
- 본인의 출석하에 재판받을 권리
- 무료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

예상되는 형벌의 심각성에 따라, 당사국은 사건에 변호인을 배정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

다. 예를 들어,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사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 피의자 모두에게 반드시 변호인이 선임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속도위반 피의자에게는 국가의 비용으로 지명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다. 미주인권재판소에 따르면, 공정한 심리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변호인의 조력이 부여되어야 한다.
변호인을 배정할 때, 피의자는 경험 있고, 유능하며 효과적인 변호인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또한 자신의 변호인과 비밀이 보장되는 협의를 할 권리가 있다.
본인의 출석 하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고 변호를 받을 권리가 엄격히 준수된다면, 예외적인 경우에 궐석재판을 할 수 있다. 변호사는 재판절차로부터 결코 배제될 수 없다.

신문을 요청할 권리와 증인을 신문하거나 신문받도록 할 권리
무기대등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는 **절차적 평등성**을 가져야 한다. 이 규정은 피고인에게 증인출석과 기소에 이용된 모든 증인을 신문하거나 반대신문하는 동일한 법적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변호인측에게 증거를 제출한 증인을 신문하고 피고인에 반하는 증거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준다.
검찰측의 증인을 신문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러한 권리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있다. 증인이 합당하게 보복을 두려워하거나 피고인이 증인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행동에 따라 이 권리가 강제적으로 시행된다.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권리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말할 수 없는 사람은 서류의 번역을 포함하여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통역에 대한 권리는 법정의 언어에 충분히 능통하지 못한 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혐의를 받는 사람과 피의자 모두 경찰의 조사 당시, 수사판사의 조사 당시, 혹은 재판 중에도 통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모든 절차에 있어 통역인은 피의자와 판사에게 구두로 통역해야 한다.

효과적이며 공정한 사법적 구제에 대한 접근권
공정한 재판의 규범은 공정한 사법행정을 구성하는 다수의 요소를 열거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어느 정도는 사법적 기관의 일반적 특성을 묘사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궁극적으로 판단하는 개괄적 변수를 그리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평가를 내릴 지점에 다다르기 전에, 개인은 자신의 사건을 판단받을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법원에 대한 접근권의 침해와 관련된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중요한 요소는 국가가 어떤 특정한 영

역이나 특정한 개인들에 대해 **사법적 심사**를 제한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는 점이다.
민사 및 형사 절차에서 판결에 대한 상소가 가능해야 한다. 이는 1심 재판의 결정을 심사하고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급 법원이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화되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자의성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죄형법정주의 원칙

라틴어구인 **"법률 없는 곳에 형벌 없다"** 는 어느 누구도 이후 법률이 바뀔지라도,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유죄로 판단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 중한 형벌은 부과할 수 없다. 소위 법률의 **소급효금지**는 법률을 준수하며 살던 사람이 원래는 합법적이었던 행위로 인해 갑자기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라드부르흐 공식

소위 "장벽저격수 사건"(독일을 둘로 나누었던 장벽의 국경수비병)에서, 동독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에게 발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동독 국경수비병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에, 재판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이 행위는 당시 동독의 법률에 의해 금지된 행위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요구되는 행위였다. 독일연방대법원은 실정법과 실질적 정의 간에 충돌이 있을 때 법적 안정성을 폐기해야 한다는 소위 '라드부르흐 공식'을 적용함으로써 이 역사적 판결에 있어서 발포자의 처벌가능성을 인정하였으며, 독일연방헌법재판소도 이를 지지하였다.
'라드부르흐 공식'은 법의 지배 패러다임의 이동을 반영한다. 뉘렘버그 법률에서 가장 흉악한 인권침해를 정당화하기 위해 실정법이 활용되었다해도, 법의 지배 하에 있는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늦더라도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석에 대한 권리

대부분의 법체계는 보석에 대한 권리, 즉 법정 절차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금전적 담보를 제공하고 석방될 수 있는 권리를 두고 있다. 한 국가의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면, 보통 판사가 보석에 대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 재량적 권한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 권리가 자의적 방식으로 부인되거나 이행되어서는 안 된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특별 규정

자유권규약, 아동권리협약, 아동의 권리와 복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미주인권협약 등 몇몇 국제인권조약은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자유권규약 제14조는 청소

년의 경우 그 절차가 연령과 그들의 갱생을 촉진하고자 하는 요망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당사국들이 형사범죄로 기소될 수 있는 소년의 최소 연령, 소년범으로 간주될 최고 연령, 소년에 관한 특별 재판소나 절차의 존재, 소년에 대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과 소년에 관한 모든 특별 조치가 '그들의 갱생을 촉진하고자 하는 요망'을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등에 관련된 사안을 담은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자유권규약 제6조는 18세 미만의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선고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아동인권

1990년 이후 소년범의 사형집행

"18세 미만의 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형을 부과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나, 몇몇 국가는 여전히 아동 범죄자를 처형하고 있다. 이러한 사형집행은 세계 사형집행의 총수에 비해 적은 편이다. 그러나 이 사안의 중대성은 그 수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며, 아동사형집행국가는 국제법을 존중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1990년 이후 국제 엠네스티는 9개국(중국, 콩고민주공화국, 이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미국, 예멘)에서 87명의 아동범죄자 사형이 집행된 것을 기록하였다. 이 국가들 중 몇몇은 아동사형집행을 하지 않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였다. 아동범죄자 사형집행은 국제 엠네스티가 매년 기록한 세계의 사형집행 중 극히 일부이다. 미국과 이란은 다른 8개국을 합한 수보다 많은 아동에 대해 사형집행을 하였으며, 이란은 이제 1990년 이후 19명의 아동을 사형시킨 미국보다 많은 아동을 사형시켰다."

(출처: 국제 엠네스티. Executions of Juveniles since 1990.)

1990년 이후 아동범죄자의 사형집행 기록

연도	기록된 아동범죄자 사형집행	전 세계 사형집행 건수	아동사형집행 국가 (괄호 안은 사형집행 건수)
1990	2	2029	이란(1), 미국(1)
1991	0	2086	-
1992	6	1708	이란(3), 파키스탄(1), 사우디아라비아(1), 미국(1)
1993	5	1831	미국(4), 예멘(1)
1994	0	2331	-
1995	1	3276	이란(1)
1996	0	4272	-
1997	2	2607	나이제리아(1), 파키스탄(1)
1998	3	2258	미국(3)

1999	2	1813	이란(1), 미국(1)
2000	6	1457	콩고(민주공화국)(1), 이란(1), 미국(4)
2001	3	3048	이란(1), 파키스탄(1), 미국(1)
2002	3	1526	미국(3)
2003	2	1146	중국(1), 미국(1)
2004	4	3797	중국(1), 이란(3)
2005	10	2148	이란(8), 수단(2)
2006	5	1591	이란(4), 파키스탄(1)
2007	14	1252	이란(11), 사우디아라비아(2), 예멘(1)
2008	8	2390	이란(8)
2009	7	714 (중국 제외)	이란(5), 사우디아라비아(2)
2010	1	527 (중국 제외)	이란(1)
2011	3	자료없음	이란(3)

(출처: 국제 엠네스티. *Executions of Juveniles since 1990.*
www.amnesty.org/en/death-penalty/executions-of-child-offenders-since-1990.)

3. 문화적 관점 차이와 논쟁적 이슈

법의 지배라는 원칙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국가의 법의 지배에 대한 내용의 해석**을 비교하면 상당한 문화적 차이가 발견된다. 가장 명백한 차이는 미국과 아시아 간에 법의 지배에 대한 이해에서 나타난다. 미국법률가들은 그들의 법체계의 구체적 특성, 예를 들어 배심원에 의한 재판, 피고인의 방대한 권리, 매우 분명한 권력 분립 등을 법의 지배의 요소로 보는 경향이 있는 반면 아시아 법률가들은 법의 규칙적이며 효과적인 적용을 강조하며, 반드시 정부 권력이 법의 지배에 종속된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좁은 이해는 오히려 '법의 지배' 라기보다는 '법에 의한 지배' 라고 더 잘 표현될 수 있을 듯한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아시아적 모델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 자유권규약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성별에 근거한 구분은 금지된다. 그러나 어떠한 지역에서는, 이슬람법인 **샤리아법**이 남성과 같은 조건의 법원 접근권을 여성에게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가 제한된다.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법의 지배는 여전히 여성을 배제시킨다.
"지난 세기에 모든 지역의 국가들은 여성의 법적 권한의 범위를 확대시켰고, 여성의 법적 권리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의 법률이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있어 항상 평등과 정의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상당한 경우에, 부국이나 빈국 모두, 사법적 하부구조

인 경찰, 법원, 사법부는 여성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는 그 자체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는 사람들의 적대적 태도를 드러내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이 139개국의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지만, 부적합한 법과 법체계의 허점, 미집행과 심각한 이행격차로 인해 평등의 보장은 공허한 약속이 되었다. 따라서 이는 여성의 일상생활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 제대로 기능하는 법적·사법적 체계는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취득하는 데에 있어 결정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할 수 있다. 법과 사법체계는 책임성을 제공하고,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수용되는 사안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창출함으로써 사회를 형성한다. 법원은 개개의 여성이 권리를 주장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략적 소송을 통해 모든 여성을 위한 더 폭넓은 변화를 가져오는 책임성을 가져오는 결정적 장소이다."
(출처: UN Women. 2011. 2011-2012 Progress of the World's Women. In pursuit of Justice.)

☞ 여성인권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국가에서 직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일부는 만연한 부패가 특징인 정부 및 법적 체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국내사법체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제 기능을 수행하는 법의 지배 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필수적이지만, 이에는 시간이 소요되며 재정적 자원이 필요하다. 나아가, **민주적 가치**와 시민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전통이 없이 사법적 독립을 이루기는 어렵다. 그러나 경제적 세계화 속에서, 법치를 존중하는 체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안정, 책임성,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요구는 계속 증대하고 있다.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 침해가 항상 이행기 국가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 인권보장 규범에 반해, 171명의 외국인(12명은 2002년 1월부터)이 공식적 기소 없이 쿠바 **관타나모만**에 있는 미국 해군기지에 구금되어 있다. 2002년 이후, 779명의 피구금자 중 단 한 명만이 미국 민간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국제 엠네스티는 2011년 관타나모구금시설에 관한 보고서에서, "첫 날부터 미국은 관타나모 구금에 대해 국제인권법의 적용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가 2012년 1월 11일 이 악명 높은 수용소 생활의 3,653일째에 접촉했을 때에도, 미국은 여전히 이 구금을 인권체계 속에서 다루지 않았다. 오랫동안 얘기되었던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여부는 알 수 없다. 어쩌면 이 수용소 폐쇄는 위반행위를 이전시키고서야 가능할지 모른다. 미국 정부-3부 모두-가 이 구금을 미국의 국제인권기준에 분명히 해당되는 문제로 다루지 않는다면 말이다.
(출처: 국제 엠네스티. 2011. 미국. Guantanamo : A Decade of Damage to Human Rights)

☞ 고문금지

4. 이행과 모니터링

이행

인권의 보호는 국내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법의 지배 원칙의 이행은 한 국가가 법의 지배와 공정한 재판 절차를 보장하는 체계를 확립하려는 의지에 의해 좌우된다. 국가는 적절한 사법행정에 필요한 **제도적 하부구조**를 수립·유지하고, 공정하고 적정한 절차를 보장하는 법과 규제를 공포하고 이행해야 한다.

법의 지배라는 개념은 **민주주의** 사상과 **시민적·정치적 자유**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그 이행은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달려 있다. 이행기 국가에 대해 이루어진 다수의 사례연구에 따르면, 정치적 지도자가 기본 민주주의 원칙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없어, 부패와 범죄적 조직구조가 가능해지면 법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일반적으로 법의 지배에 대한 강화는 부패를 척결하고, 새로 선출된 국가원수가 권위적 행태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기능하는 체계를 통해 인권에 대한 존중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은 현실에서 어떻게 이행될 수 있을까?

"법의 지배 메커니즘이 완전한 권한과 효과를 갖고,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작동하여, 법의 규정과 정의의 필요에 근거하여 (권리에 대한) 주장에 귀 기울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야말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세르지오 비에이라 드 멜로, 유엔인권최고대표. 2003.

기본적으로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첫째, 현행**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법적 영역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둘째, 적절한 사법행정을 보장하는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법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판사에 대한 정기적 훈련을 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제도가 강화될 수 있다. 셋째, **법집행**과 법에 대한 존중이 증대되어야 한다. **인권**의 이행에 대한 존중을 확보하는 것은 전체 이행단계를 관통하는 근본적 원칙이다.

유럽평의회의 베니스위원회와 같은 특정한 **자문 기구**가 법의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판

사들의 직업협회는 정부의 성과를 지원하거나 감시한다.

모니터링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본적 인권규정은 헌법에 구현되어 있다. 헌법은 통상 인권침해에 대한 주장을 국내**법원**이 검토할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조약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한 국가가 어떤 조약의 당사국이 되면, 그 국가는 국내에서 조약의 규정을 보장하고 이행할 의무를 진다.

인권규정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의 인권조약은 감독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이 메커니즘은 당사국이 정기적으로 국제감독기구에 조약상 권리를 어떻게 이행하였는가에 대해 보고하는 **국가보고체계**로 구성된다. 자유권규약 상의 당사국의 의무 이행에 관해서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당사국 보고서에 관해 논하고 규약상 인권의무 이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과 권고를 한다. 또한 위원회는 자유권규약의 해석에 관하여 일반 논평을 발표한다. 예를 들어 '법원 앞의 평등과 법에 의해 설치된 독립적 법원에 의해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자유권규약 제14조)'에 관한 1984년 일반논평 제13호나 이를 대체한 2007년 일반논평 제32호 '제14조: 법원과 재판에 있어 평등과 공정한 재판에 관한 권리' 등이 있다.

어떤 인권조약의 경우에는 **진정절차**를 제공한다. 국내 구제조치를 완료한 후, 개인은 해당 조약에 의해 보호되는 인권의 침해를 주장하며 '통보(진정)'를 제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은 가능성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선택의정서」, 유럽인권협약(제34조), 미주인권협약(제44조), 아프리카 인권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헌장(제55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조약에 따라 개인은 각기 자유권규약위원회, 유럽인권재판소, 미주인권위원회나 아프리카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조약기구는 진정을 검토하고, 개별인권조약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 당사국에 관행이나 법률을 변경하거나 피해자에게 구제조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유럽인권재판소, 미주인권재판소, 아프리카인권재판소의 당사국은 그 판결을 반드시 이행할 의무를 진다.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ssion)는 주제별 절차의 일부로, **탈사법적·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1982년), **고문과 그 밖의 잔혹한,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처벌**(1985년), **법관과 법률가의 독립**(1994년),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과 결과**(1994년), **인권옹호자의 상황**(2000년), **대테러조치에서의 인권의 증진과 보호**(2005년)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설치하였다. 1991년에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설치되었다.

알아두면 좋은 내용

1. 모범 사례

민주제도인권사무소(ODIHR)-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민주제도인권사무소의 임무는 **"법의 지배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원칙을 증진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를 강화·보호하고 사회 전체에서 관용을 증진하기 위해,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확보" 하는 것이다. 법의 지배 영역에서, 민주제도인권사무소는 법의 지배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술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또한 공정한 재판, 형사사법과 법치 영역에서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법률가, 판사, 검사, 공무원, 시민사회에 지원과 훈련을 제공한다. 법적 개혁과 법률검토 프로젝트를 통해서, 민주제도인권사무소는 국가들이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서약과 여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법을 도입하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제도인권사무소는 주로 동유럽과 동남유럽 및 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존중

1996년 아프리카 인간과 인민의 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사법부의 독립 강화와 존중에 관한 결의'**에서, 위원회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와 개발에 대한 인민의 신뢰를 향유하는 독립적이고 강력한 사법부를 가져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동시에, 위원회는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사법부에 그 기능 수행을 위한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며, 판사들이 그들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업무 조건을 제공하고, 판사와 재판관들의 독립과 안전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삼갈 것을 요청하였다. 나아가, 위원회는 아프리카 판사들에게 국내 및 지역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효율적이며 독립적인 사법부를 이루기 위해 취한 노력을 평가할 것을 촉구하였다. 2011년, 아프리카인권위원회는 **'아프리카 공정한 재판과 법적 조력에 대한 권리에 관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여, 모든 법적 절차(즉, 공정한 공개 심리,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정 등), 사법적 훈련, 효과적인 구제에 관한 권리, 법률가와 법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 법률구조와 법적 조력, 민간인이 군사법정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체포와 구금에 적용되는 규정 등에 적용되는 일반적 원칙을 다루었다. 이 문서에 따르면, 규정된 원칙과 가이드라인은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야 하고, 시민사회단체, 판사, 변호사, 검사, 학자 및 그들의 직업협회가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증진하고 보호해야 한다.

"어디서 발생하든 불의는 세상 모든 곳의 정의를 위협한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아태사법개혁포럼

아태사법개혁포럼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사법개혁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고, 인권에 근거한 사법개혁을 지원하며, 성공적 사법개혁을 위한 실제적 방안을 고안하며 국가단위의 이행을 지지함으로써 사법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지원하는 목적의 네트워크이다. 이 네트워크는 아태사법개혁포럼에 동참하는 국가의 최고 법원 또는 사법 기구 49개로 구성되어 있다.

2. 트렌드

국제재판소

대규모 분쟁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은 **구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ICTY)**,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ICTR)**와 같은 특별재판소를 설치하여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 집단살해죄를 다루고, 그 책임자를 처벌해왔다. 특정 분쟁에서 특정시간 동안 행해진 범죄를 처벌하고자 수립된 특별재판소는 그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예를 들어, 구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는 최고 지도자들의 기소와 재판에 중점을 두고, 다른 사건들은 구 유고슬라비아의 국내 재판소에 이송한다. 그리고 국내 재판소가 전쟁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지원한다.

1998년 국제사회가 채택한 로마규정은 2002년 발효되었고,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설립되었다. 이 재판소는 국제사회 전체의 관심사인 가장 심각한 범죄, 즉,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를 행한 사람들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 상설 재판소이다. 재판소의 관할권은 국내 형사 관할권에 대해 보충적이다. 오늘까지 121개국이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되었다.

ICTY와 ICTR처럼, **혼합 법원이나 재판소**(혼합 기구, hybrid bodies)는 정해진 기간 동안 특별한 상황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다. 이러한 기구의 임무는 개인의 심각한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법의 지배를 재건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혼합 법원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측면을 결합한 법원이며, 법원 구성에 있어서도 두 측면이 혼합되어 있다. 이 모델은 시에라리온, 동티모르, 코소보, 캄보디아, 레바논을 위한 법원을 설립하는데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시에라리온특별법정**은 시에라리온에서 국제인도법과 시에라리온법의 심각한 위반에 대한 책임있는 자를 처벌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이 법정은 시에라리온정부와 유엔이 함께 설립하였다.

조정과 중재

국가들은 법원의 부담을 덜고 법원의 절차를 감소시키는 한편 상호간에 수용가능한 해결책을 찾아냄으로써 당사자들에게 '윈-윈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대안적 분쟁 해결 절차**(조정과 중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법원소송절차가 법적 주장에 대한 공소를 목적으로 하는 한편, 조정은 개인의 필요와 이익을 고려하여, 사업, 가족이나 이웃관계와 같은 사안에서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한다.

조정은 제 삼자의 지도와 촉진을 통해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중재**는 중재자의 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며, 이 결정은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다. 많은 국가는 재판 전 단계에서 의무 조정을 규정하고 있다. 법원 재판은 조정이 결론으로 이어지지 못할 때 필요하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과 호주에서 소위 "해결 주간"은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이 기간 동안 모든 법원관련 사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진다. 사실 상당한 수의 사건이 성공적으로 해결된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이 집중되는 재판 절차에 대한 대안적 방법이 당사자들에게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법원에 대한 접근권이 부인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분쟁이나 위기 후 사회에서의 법치 (재)확립

근래 유엔이나 다른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는 분쟁 후 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재)확립하는데 더욱 관심을 보여왔다. 법의 지배에 대해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분쟁 후 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수립하는데 대한 원칙들이 발전되었다.

- 관련 국가에 적절한 법의 지배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적 관행을 수립
- 법의 지배 개혁을 기획할 시의 공공협의, 시민참여, 논의
- 독립적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 평화유지 임무에 적절한 정의와 법의 지배 요소를 포함
- 유엔이 평화 작전의 법치 요소를 계획함에 있어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

분쟁 후 전략에서 현재와 과거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안보위원회는 5개의 인간안보요소로 구성된 종합적 인간안보접근방법을 제안하였다. 그 중 하나는 '공치(governance)와 권한 부여'로서, 인민을 보호하고 법의 지배를 옹호하는 제도의 설립을 최우선과제로 추구한다.

"정의는 국내 화해의 과정에서 불가분의 요소이다. 정의는 공포의 지배 하에서 살아오던 사람들이 평화롭고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정의는 폭력, 증오와 탈법적 보복의 사이클을 파괴한다. 따라서 평화와 정의는 함께 가는 것이다."

Antonio Cassess, 前 유고전범재판소장

"유엔에게 법의 지배란 모든 사람, 기관, 국가를 포함한 공적/사적 독립체가 법에 대한 책임을 지니는 통치원칙이다. 이 때의 법은 널리 공포되고, 평등하게 집행되며 독립적으로 판단되며, 국제적 인권규범과 기준에 부합하는 법을 뜻한다. 또한 법의 지배를 위해서는 법의 우위, 법 앞에서의 평등, 법에 대한 책임성, 법적용의 공정성, 권력분립, 결정과정에 참여, 법적 확실성, 자의성 배제와 절차 및 법적 투명성 등에 관한 원칙을 고수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출처: 유엔. 2004.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rule of Law and Transnational Justice in Conflict and Post-conflict Societies.)

3. 연혁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1948년 미주 인권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선언, 제1조, 제2조, 제17조, 제18조, 제26조
1949년 전쟁포로의 처우에 관한 제3 제네바 협약, 제3조 d항, 제17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1949년 전쟁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4 제네바 협약, 제3조(d), 제3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1950년 유럽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5조, 제6조, 제7조, 제13조
1965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5조 a항, 제6조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6조

1969년 인권에 관한 미주협약, 제8조, 제9조

1977년 제네바협약에 관한 제1추가 의정서, 제44조 제4항, 제75조

1977년 제네바협약에 관한 제2추가 의정서, 제6조

1979년 모든 형태의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제15조

1981년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반줄 헌장), 제7조, 제26조

1981년 유엔 탈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

1984년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 처우와 처벌에 관한 협약, 제15조

1984년 유럽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7의정서,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1985년 유엔 소년사법행정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베이징 규칙)

1985년 유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 처우와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

198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7조, 제40조

1990년 유엔 법률가의 역할에 관한 기본 원칙

1990년 유엔 검사의 역할에 관한 지침

1991년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1993년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1994년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 규정

1994년 유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

1994년 유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특별보고관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2000년 유엔 인권옹호자의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2004년 아랍인권헌장,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2005년 유엔 대테러조치에서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특별보고관

2006년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2007년 '제14조: 법원과 재판 앞의 평등과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 일반논평 제32호

추천 활동

활동 I: 심리를 받을 것인지 아닐지?

PART I: 소개

재판의 규칙과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사법체계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할 능력에 필수적이다.

PART II: 일반적인 정보

활동유형: 역할극

목표와 목적: 재판정의 상황을 경험하고,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의 개념을 파악하며, 분석적이며 민주적인 기술을 개발한다.

대상그룹: 청년과 성인

그룹크기: 15-20명

소요시간: 약 90분

준비사항: 강의실을 재판정처럼 정리한다. 앞면에 재판관을 위한 책상 하나를 두고, 서로 마주보는 책상 두 개를 우편에 두고, 하나는 피고인과 변호인을 위해, 또 다른 하나는 기소팀이 사용하도록 한다.

관련기술: 비판적 사고와 분석기술, 소통, 의사형성, 공감 능력

PART III: 활동에 관한 구체적 정보

지시사항:

두 가지 다른 시나리오를 가지고 법정의 상황을 재현할 것이라고 설명하라. 한 경우는 변호가 없는 경우이고 또 다른 경우는 변호 절차를 둔 경우이다. 역할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이 다음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라.

- 절도와 같은 혐의로 잘못 기소된 사람 1명
- 기소를 진행할 2-3명의 팀
- 혐의를 제기하고 이를 칠판이나 플립차트에 기재하는 3-4명
- 판사 1명

기소하는 사람과 혐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기소 문안을 준비할 10분의 시간이 있다.

역할극 수행:

첫 번째 시나리오에는 변호인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을 변호할 수 없다. 다른 참석자들은 법정의 방청객이 된다. 강의실 안의 다른 어느 누구도 의견을 말해서는 안 된다. 검사에게 사건을 판사에게 진술하도록 요청하고, 판사는 그에 따라서만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이후에,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유·무죄를 최종적으로 선고할 새로운 판사를 지명한다. 또한 2-3인의 변호팀을 지명한다. 피고인이 진술하고 변호팀이 진술하도록 한다. 청중 또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후에만 새로운 판사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피드백:

참석자들을 모두 모이게 한다.

역할극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먼저 질문한다.

- 당신이 판사의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며, 상황은 얼마나 현실적이었는가?

다음으로 모든 참석자들이 두 가지 역할극의 과정과 목적에 대해 생각하도록 한다.

- 두 가지 상황에서 무엇이 달랐는지, 왜 달랐는지?
- 참석자들은 첫 번째 상황에 대해 불편하게 느꼈는가?
- 첫 번째 상황과 같은 일이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을까?

실용적 힌트:

역할극을 시작하기 전에는 역할극의 전체적 목적에 대해 설명하지 않도록 하라. 역할극의 전체적 목적에 대한 무지가 참석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이러한 무지는 역할극 자체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역할극 수행에, 특히 첫 번째 역할극 수행에 유의하고, 피고인이 염려하거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면 중단하라. 이는 역할극이 실패했다는 것을 뜻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극이 얼마나 사실적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응용을 위한 팁:

두 번째 상황에서, 판사 대신에 3-4명의 공정한 배심원을 지명할 수 있다. 피드백 시간에 판사와 배심원의 차이를 토론하라.

PART IV: **후속활동**

세계인권선언 제10조를 소리 내 읽어라.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결정과 자신에게 불리한 모든 형사상의 책임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 독립적이고 공평한 사법 재판소에서 공정한 공개 심리를 완전히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이는 당신이 재판받게 되면, 재판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다른 용어로 설명하라. 공개된 심리란 피고인이 출석하고 증거가 당사자 뿐 아니라 그 가족과 사회에 제출되는 심리이다. 피고인을 재판하는 사람은 그 스스로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행한 역할극에 근거하여,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주장을 진술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논의하라. 이는 형사사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고소하는 민사 사건에도 적용된다.
- 무엇이 독립적이며 공정한 재판을 구성하는지 유엔이 사용한 정의를 토론하라.: '독립적' 이며 '공정하다' 는 것은 재판정이 모든 사건을 증거와 법의 지배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해야 하며, 정치적 이유로 사건의 한 당사자의 편을 들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권리 및 더욱 탐색할 영역:

무죄추정,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 유능한 변호를 받을 권리, 민주주의의 요소

(출처: Untied Nations Cyberschoolbus 각색. 2003. http://cyberschool-bus.un.org)

활동 II: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변호할 수 있는가?

PART I: 소개

이 활동은 실생활에 근거하여 편견과 공정한 재판에서 그에 상응하는 요소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ART II: 일반적인 정보

활동유형: 토론

목적과 목표: 편견과 중립적 관찰의 한계를 파악하기, 분석적·민주적 기술을 개발하기

대상그룹: 청년과 성인

그룹크기: 15-20명

소요시간: 약 60분

준비물: 유인물(아래 참조)

준비사항: 변호인 Gerry Spence의 성명 유인물을 준비한다(아래 참조)

관련기술: 비판적 사고와 분석적 기술, 의견 형성, 소통 기술,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견해를 표현하기

PART III: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지시사항:

참석자들에게 자기가 아는 범죄자를 상상하라고 하면서 (또는 범죄자 한명에 관한 비디오를 보여주

면서) 주제를 소개한다. 칠판이나 플립차트에 범죄자 명단을 적을 수도 있다.
다음으로 참석자들에게 자기가 악명 높은 범죄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라고 상상하도록 한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변호할 수 있는가" 스스로 반문하는 변호인 Gerry Spence의 성명 유인물을 나누어주라. 이제 이 변론에 근거하여 범죄자의 권리에 관해 토론을 시작하라.

- 모든 사람은 유죄로 판명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되어야만 하는가?
- 당신이 범죄의 혐의를 받는다면, 당신은 항상 자신을 변호할 권리를 가지는가?
- 모든 사람은 법적 지원을 요청하거나, 지불능력이 없을 때는 법적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가?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가?

토론을 요약하기 위해 플립차트에 주장을 적어둘 수도 있다.

유인물:

Gerry Spence, 변호인 :

"음. 당신은 피고인을 교수형에 처하기 전에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공정한 재판이 되어야 합니까? 공정한 재판이 되어야 한다면, 피고인은 변호인을 제공받아야 합니까? 만일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면, 그 변호인은 유능해야 합니까? 또,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죄라는 사실을 안다면, 변호인은 재판에서 지려고 노력해야 하나요? 아니라면, 변호인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로 주장을 펼치게 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나요? 만일 변호인이 자기 최선의 노력을 하고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사건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심원들이 유죄인 피고인을 석방하였다면, 당신은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당신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 변호인을 비난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검사를 비난하겠습니까?"

(출처: *Harper's Magazine*에서 각색. 1997.)

피드백:

피드백 시간에 참석자들에게 토론을 요약하도록 하라.

- 당신은 변호사가 범죄인을 왜 변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당신은 그런 변호사들이 변호하는 범죄자들과 똑같이 보인다고 생각하는가? 왜?

실용적 힌트:

당신은 악명 높은 범죄자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거나 그러한 범죄자에 대한 기사를 읽어줌으로써 활동을 소개할 수 있다. 또한 지역적 상황 혹은 현재 상황을 언급하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여론의 비난을 받아온 사람들에 관해 얘기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할 경우, 관련된 주제가 야기할 수

있는 감정에 유의하라. 참석자들의 의견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나 인권은 모두를 위한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제한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라.

응용을 위한 팁:

세계인권선언 제11조를 소리 내어 읽으라.

"(1) 형사범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피보증인이 보장된 공개 심리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행위를 했던 시점에 국내법이나 국제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작위 여부를 이유로 형사범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범죄 행위가 저질러진 시점에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조문을 플립차트에 쓰고, 그 의미와 목적을 설명하라. 당신은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당신이 형사상 범죄의 혐의를 받는다면, 언제나 자기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다. 누구도 당신이 하지 않은 어떤 것으로 당신을 비난하거나 처벌할 권리는 없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변호에 대한 권리는 이 조항에서 명시한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다. 이와 연계하여 "심리를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의 후속 활동을 할 수 있다.

PART IV: 후속활동

세계인권선언 제6조와 제8조를 읽으라.

제6조: 모든 사람에게는 법에 앞서 어느 곳에서나 자연인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이 조항은 당신이 어느 곳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라.

정의: 법 앞에 인간이란 법적 체계가 제공하는 보호를 보장받는 한편 부여된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누군가를 뜻한다.

제8조: 모든 사람에게는 헌법이나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심리권을 가진 자국의 사법 재판소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조항은 당신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할 때 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권리 및 더욱 탐색할 영역:

무죄추정의 원칙,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 유능한 변호에 대한 권리, 민주주의

(출처: Carleton College. *Correspndence Bias in Everyday Life*. 각색)

참고자료

Allain, Jean. 2000. A Century of International Adjudication - The Rule of Law and its Limi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Amnesty International. 2011. Military Commissions. Available at: www.amnestyusa .org/our-work/issues/security-and-human-rights/fair-trials

Amnesty International. 2011. USA. Guantánamo: A Decade of Damage to Human Rights and 10 Anti-Human Rights Messages Guantánamo Still Sends. London: Amnesty International Publications. Available at: www.amnesty.at/fileadmin/editor_upload/presseaussendungen/Guantanamo%2010%20Report.pdf

Anheier, Helmut K., Mary H. Kaldor and Marlies Glasius (eds.). 2003. Global Civil Society 200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Arbour, Louise. 2004. Security under the Rule of Law. Available at: www.hchr .org.co/publico/comunicados/2004/cp0431.pdf

Brown, Mark Malloch. 2004. Rule of Law and Transitional Justice and Post-Conflict Societies. Available at: www.undp.org/dpa/statements/administ/2004/october

Carleton College. Correspondence Bias in Everyday Life. Minnesota: Carleton College. Available at: www.acad.carleton.edu/curricular/PSYC /classes/ psych110 _Lutsky/RMII/CB4a.html

Cassese, Antonio. 2008. International Criminal Law.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Commission on Global Governance. 1995. Our Global Neighbourhood.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n Global Governa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ommission on Human Rights. 2002. Administration of Justice, Rule of Law and Democracy. Report of the Sessional Working Group o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E/CN.4/Sub.2/2002/7. Available at: www.hrni.org/files/reports /HRNi _EN_125.pdf

Commission on Human Security. 2003. Human Security Now. New York: Commission on Human Security. Available at: www.humansecurity-chs.org/finalreport

Cotran, Eugene and Mai Yamani. 2000. The Rule of Law in the Middle East and

the Islamic World, Human Rights and the Judicial Process. New York: Palgrave.

Council of Europe. 2004. Building Europe together on the Rule of Law.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Huber, Martina. 2002. Monitoring the Rule of Law, Consolidated Framework and Report. The Hague: Netherlands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Human Rights Watch. 2011. Turkey: Activist's Trial a Travesty of Justice. Available at: www.hrw.org/en/news/2011/02/08/turkey-activist-s-trial-travesty-justice

Maravall, Jose Maria and Adam Przeworski (eds.). 2003.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Cambridge Studies in the Theory of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urphy, John F. 2004. The United States and the Rule of Law in International Affai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O'Donnell, Guillermo. 2004. Why the Rule of Law Matters. 15 Journal of Democracy 2.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03. Human Rights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 Manual on Human Rights for Judges, Prosecutors and Lawyers. Available at: 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HRAdministrationJustice.pdf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1984. General Comment No. 13: Equality before the courts and the right to a fair and public hearing by an independent court established by law (Art. 14). Available at: www.unhchr.ch/tbs/doc.nsf/%28Symbol%29/bb722416a295f264c12563ed0049dfbd?Opendocument

Ramen, Frank. 2001. The Rights of the Accused (Individual Rights and Civic Responsibility). New York: The Rosen Publishing Group.

Robinson, Mary. 1998. Building Justice: A Conference on Establishing the Rule of Law in Post-Conflict Situations. Opening Speech. Vienna, 26-27 June 1998.

Tamanaha, Brian Z. 2004. On the Rule of Law. History, Politics,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United Nations. 2004. The Rule of Law and Transnational Justice in Conflict and Post-Conflict Societie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2004/616 of 23 August 2004. Available at: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

N04/395/29 /PDF/N0439529.pdf?OpenElement

United Nations. 2002. Strengthening of the Rule of Law.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to the General Assembly, A/57/150. Available at: www.unhchr.ch/Huridocda/Huridoca.nsf/0/63233977f02defb2c1256c40002ca6f5/$FILE/N0251433.pdf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2007. General Comment No. 23: Article 14: Right to equality before courts and tribu\-nals and to a fair trial, CCPR/C/GC/32. Available at: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G07/437/71/PDF/G0743771.pdf?OpenElement

UN Women. 2011. 2011-2012 Progress of the World's Women. In Pursuit of Justice. New York: UN Women. Available at: http://progress.unwomen.org/pdfs/EN-Report-Progress.pdf

Weissbrodt, David A. and Rüdiger Wolfrum. 1997. The Right to a Fair Trial. Berlin: Springer Verlag.

Weissbrodt, David A. 2001. The Right to a Fair Trial under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s 8, 10 and 11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Hague: Kluwer Academic Publishers.

추가 정보원

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www.achpr.org/

Amnesty International: www.amnesty.org

Amnesty International – Death Penalty: www.amnesty.org/deathpenalty

Amnesty International – Executions of Juveniles since 1990: www.amnesty.org/en /death-penalty/executions-of-child-offenders-since-1990

Amnesty International - International Justice: web.amnesty.org/pages/jus-index-eng

Asia Pacific Judicial Reform Forum (APJRF): www.apjrf.com/index.html

Center on Democracy, Development, and the Rule of Law (CDDRL): http://cddrl.stanford.edu

Council of Europe: www.coe.int/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Venice Commission): www.venice.coe.int

Human Rights Watch: http://hrw.org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www.icj.org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www.icc-cpi.int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ICTR): www.ictr.org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 www.icty.org

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ODIHR): www.osce.org/odihr

Project on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 www.pict-pcti.org

Special Court for Sierra Leone: www.sc-sl.org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www2.ohchr.org

United Nations Rule of Law: http://unrol.org/

종교의 자유

RELIGIOUS FREEDOM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종교나 믿음을 선택하고 바꿀 자유
이러한 권리들을 표현할 자유

>>모든 인간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교리, 전례, 예배, 의식에 있어서 혼자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현할 자유를 포함한다.<<

유엔 인권 선언. 18조. 1948년.

사례

2010년 1월 6일, 크리스마스 이후 이집트 나그함마디의 한 교회에서 6명의 콥트 교회 교인과 한 명의 무슬림 경비원이 총에 맞았다. 지나가던 차에서 총이 발사된 것이다.

보고에 따르면 이틀 후인 1월 8일에 세 명의 남자가 체포되었고, 이들은 1월 9일에 "계획된 살인, 시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몰아넣음, 공적, 사적 안녕의 손상"이라는 명목으로 구속되었다.

국제인권감시기구(HRW)가 바라보았을 때, 이 체포는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진 것 같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국제인권감시기구는 이러한 경우에서 관련 가족들을 소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지만 이는 범죄 수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건을 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보통 희생자들의 가족들에게 보상이 주어진다.

국제인권감시기구의 중동 책임자인 Sara Leah Whitson은 이집트 정부에게 "종교적 다양성과 모든 사람의 평등한 권리를 존중하는 중대한 캠페인"을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총격의 여파(총격 희생자들의 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러 간 활동가들의 체포와, 무슬림들과 기독교인들의 체포로 끝난 데모들)와 이 사건에 대한 당국의 처방은 이집트 내 콥트 교인들의 불안정한 상황을 강조해주는 것이었다. 콥트는 종교적 혐오의 희생양이며, 그들의 종교적 소속과 관행은 공격의 대상이었다. 국제인권감시기구의 2010년 보고서는 이집트의 "이집트계 기독교인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과 무슬림 이교 종파에 대한 공식적인 비관용"을 고발했다.

(출처: Human Rights Watch. 2010. *Egypt: Free Activists Detained on Solidarity Visit*; Human Rights Watch. 2011. *World Report 2011*)

토론할 질문들

1. 이집트의 콥트 교회 교인들의 처우에 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2. 당신의 국가나 지역에서 이와 비교해볼만한 사건을 들은 적이 있는지?
3. 국제 인권 표준에서 어떠한 부분이 위반되었는가?
4. 어떻게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는가?
5. 이런 사건들을 제보하기 위한 국제기구와 절차는 무엇이 존재하는지?

알아야 하는 내용 😐!?

1. 종교의 자유: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다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정신적으로 이끄는 무언가가 있다고 믿는다. 당신의 믿음을 부정하라고 강요받을 수도 있고, 당신의 믿음 때문에 당신은 가족을 떠나야 할 수도 있고, 박해받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심지어 살해당할 수도 있다.

기원전 3세기에 인도의 불교도들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이유로 박해받았다. 기원 후 9세기 가량(유럽의 '암흑기') 동안 무슬림 신자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이들은 "신의 이름으로" 박해받았다. 그 후, 오스만 제국의 확장 전쟁과 이슬람은 유럽을 공포에 밀어 넣었다.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무슬림 신자들도 유대인들을 유대인 거주지역(게토)에 격리시켰다.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절멸 또한 기독교화의 과정 중에 이뤄졌다.

과거에도 지금에도,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과 신념을 위협받고 있다. 무언가를 믿고 그 믿음을 드러내는 일은 **종교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이는 법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차원에서도 그러하다. 종교적 믿음은 그들의 개인적인 양심과 세상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람의 사적인 영역에서도 강하게 스며든다.

신앙은 한 사람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점 때문에 종교의 자유는 다른 인권 문제보다 말하고 다루기 예민한 주제이다.

또 다른 문제가 국제 인권법의 종교적 자유의 규정을 저해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종교와 믿음은 정치의 중요 요소이다. 종교적 믿음과 자유는 정치적 요구와 권력에 대한 청구를 위해 자주 오용되며, 이는 종교와 정치가 연결되었을 때에 잘못된 논쟁의 결과를 낳곤 한다.

"어떤 사람도 자연 상태에서는 어떤 특정한 교회나 교단에 얽매여있지 않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사회에 참여한다. 그는 그 사회에서 그가 직업을 얻고
신에게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믿는다. 구원에 대한 희망은 종교단체로 그가 들어가는
유일한 이유이며 그곳에 남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다. [...]
그렇다면 교회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사회이다."

존 로크, A Letter Concerning Toleration. 1869.

최근 종교적 비관용과 박해가 민족성, 인종주의나 집단 혐오 같은 많은 비극적 분쟁의 선두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압력이 있다. 종교적 이유로 인한 박해는 신자와 비신자, 전통 종교와 "새로운" 종교, 국교나 지배적인 종교를 지닌 국가와 그에 따르지 않는 개인이나 공동체 사이의 현재의 분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종교 간의 자유가 없다면 국가 간의 평화는 없다.
종교 간의 대화가 없다면 종교 간의 평화는 없다.
종교의 근원을 찾지 않는다면 종교 간의 대화는 없다."

Hans Küng. Weltethos의 대표. (국제 윤리 재단)

현재,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 세계에서 찾을 수 있다. 특정 믿음에 대한 구조적 억압이 현재 다음과 같은 국가들에서 이뤄지고 있다. 버마에서는 모든 소수종교들이 박해받고 있다. 로힝기야족 무슬림 뿐만 아니라 프로테스탄트와 불교 승려들까지 말이다. 북한 정부는 주체사상이 아닌 종교적 믿음과 의례가 김씨 일가에 대한 숭배에 대한 모욕이며 정부의 권위에 대한 위반이라 여긴다. 이집트에서는 콥트교도, 그리스 정교회 교인, 바하이교, 이슬람 아하마디아 운동 교도, 쿠란주의자, 시아파, 수피파 무슬림, 맹렬한 반유대주의자가 차별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에트레이아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복음주의 교인, 오순절운동을 따르는 사람들이 억압의 대상이다. 이란에서는 바하이교, 수피교, 무슬림 반체제인사와 기독교인이 차별과 박해를 받는다. 이라크와 나이지리아에서는 기독교를 반대하고, 파키스탄은 아하마디아 주의자를 반대한다. 중국에서는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 무슬림들, 프로테스탄트들, 파륜공 추종자들과 티벳 불교도들이 특정 위해를 받고 있다. 수단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시아파 무슬림들과 아스마일파가 차별받는다. 마지막으로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미등록 종교 집단들에 대한 심한 차별을 볼 수 있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에서부터 다양한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유대주의의 새로운 형태와 이슬람 극단주의(유대인과 유대교에 대한 혐오와 공포), 특히 2001년 워싱턴과 뉴욕에 있었던 공격 이후 증가하는 미국과 유럽의 이슬람혐오(이슬람교와 이슬람교도에 대한 혐오와 공포)까지 다양히 나타난다.

안타깝게도 종교의 자유로 긴급히 다뤄야할 경우들은 예를 들기에는 너무 많다. 이러한 사례들이 극단주의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특히 그렇다. 이 현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하도록 하겠다.

종교의 자유와 인간안보

공포로부터의 자유는 인간의 안전에 있어서 중심 가치이다. 이 중심 가치는 종교의 자유에 대

한 침해로 인해 엄청나게 위협받고 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신”이나 세계에 대한 개념을 마음대로 믿고 믿지 않을 수 없다면, 개인의 자유와 안전은 달성 불가능할 것이다. 생각, 믿음,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위협은 개인과 집단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며, 개인의 온전함을 잃게 한다.
종교에 대한 차별과 박해가 구조화되거나 일상화될 때, 공동체의 긴장이 고조되고 심지어 국제 범죄와 연결될 수도 있다. 불안의 동인은 개인, 집단, 심지어 국가가 될 수도 있다. 신념이나 종교에 근거한 개인적인 안보에 대한 항시적이고 강한 위협은 특별한 방어 수단을 요청한다. 인권교육과 학습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종교적 믿음을 존중하는 열쇠다. 존중과 관용, 인간 존엄을 배우는 과정은 강제적으로 달성될 수 없다. 이는 개인적, 전 세계적 안보를 창조하겠다는 장기간의 약속에 서로 그리고 모두가 동참해야 하는 것이다.

2. 정의와 설명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는 철학적, 사회학적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반 요소들이 정의들로 제안되고 있다.

종교는 어원학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라틴어의 religare와 관련되어 있다. 종교는 그 종교를 믿는 이들을 “절대성”에 결속시킨다. 이 절대성은 개인적·비개인적 용어로 개념화된다. 종교는 일반적으로 의식과 의례, 규칙, 통제를 포함하며, 이를 통해 개인이나 공동체가 “신”이나 “신들”에 그 자신의 존재를 연결시킨다. 밀턴 J. 예거에 따르면 종교란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들과 투쟁하는 사람들의 믿음과 실천의 구조”라고 기술한다. 비교해본다면, Black's law dictionary은 종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인간이 초자연적이거나 우수한 삶의 형태의 통치와 계명에 신성함을 부여하고 숭배, 예배, 복종, 항복하는 것이다. 이 중 광범위한 감각인 [종교]는 모든 형태의 더 높은 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포함하는데, 인간을 넘어선 힘의 구현, 안내하는 규칙과 제제의 부과, 미래의 보상과 처벌이 그것이다.”

이런 정의들과 유사한 정의들은 인격적이든 비인격적이든 최고의, 성스러우며 완전한, 초월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다. “최고/궁극”은 규범적 기능을 갖고 있으며, 신자들은 종교의 가르침과 안내의 규칙을 절대적인 길로서 따르고자 한다. 신자들은 또한 그들의 종교적 믿음을 다양한 형태의 예배와 제례로 표출한다. 항상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법적 실체인 교회나 다른 기관들은 집단을 형

성하거나 예배를 행하기 위해 설립된다.

무엇이 믿음인가?

믿음은 종교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믿음은 종교를 포함하지만 그 전통적인 의미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Black's law dictionary은 믿음을 "마음에서 주관적으로 존재하며, 논쟁과 설득 혹은 판단할 근거에 의해 유발되는 문제의 진실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반영의 행위로서 좁은 지적인 개념과 반대로, 믿음은 신뢰의 행위이거나 초월적인 무언가(인격적이든 아니든, 불교의 사성제가 그 예다)에 기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유엔 인권 위원회는 ICCPR 18조에 대한 일반논평 22번에서 종교나 믿음에 대한 보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8조는 일신론이든 일신론이 아니든, 무신론이든 그 믿음 뿐만 아니라 그 종교나 믿음을 부정당하지 않을 권리 또한 보호한다." 일반논평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종교나 믿음이라는 용어는 광범위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18조는 전통적 종교, 특정 기관의 종교와 믿음, 전통적 종교와 유사한 관행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위원회는 그 어떤 종교나 믿음에 대한 어떠한 이유의 차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견해를 띈다. 그 종교가 새롭게 건립된 것이든, 지배적인 종교적 공동체의 적대감의 대상이 되는 종교적 소수성을 표방하는 것이든 마찬가지이다."

(출처: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1993. *General Comment No. 22 (48) on Art. 18 of the International Conve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정치적이든, 문화적이든, 과학적이든, 경제적이든 그 어떠한 믿음들도 이 보호를 받아야 하며, 다르게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 ☞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무엇인가?

종교적 자유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로서 국제법에 의해 보호된다.

이 세 가지 기본 자유는 일신론, 비일신론, 무신론, 불가지론을 포함한 모든 믿음 및 세계에 대한 초월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시각, 행위에 대한 규범적인 관례 모두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종교와 믿음의 자유는 종교와 믿음'의' 자유와, 종교와 믿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모두 포함하며 이는 그 어떤 종교적 규범과 사고방식을 따르지 않을 권리로 이해될 수 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종교와 믿음의 자유와 같은 방식으로 보호된다. 이 자유는 모든 문제에 대한 사상의 자유 및 개인적 신념, 종교 또는 믿음에 대한 헌신을 포함한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공동체에서 타인들과 함께 표현될 수 있다.

양심의 자유는 전 세계의 수많은 "양심수" 묘사에서 알 수 있듯이 자주 위반된다. 이런 죄수들은 주로 종교적 소수자에 속한다.

생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나 믿음을 선택하고 바꿀 자유는 **무조건적으로 보호**된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생각을 밝히도록 강제되거나 종교 혹은 믿음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국제 표준

인권법은 종교와 믿음을 정의하기 위한 논쟁을 회피하며 사상, 양심, 종교와 믿음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의 목록**들을 담으려한다. 종교적 자유의 복잡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단계의 분류가 만들어질 수 있다.

1. 특정한 개인의 실천을 행할 수 있는 자유
2.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
3. 특정 기관들의 자유
4. 종교로부터의 자유

1. 특정한 개인의 실천을 행할 수 있는 자유

세계인권선언(UDHR) 18조는 **종교적 자유를 "모두의" 권리**로서 정의한다. 이는 어린이와 어른, 국민과 외부인을 동등하게 보호한다는 것이며, **심지어 긴급상황이나 전쟁 중의 시기일 지라도 제한될 수 없다.** ICCPR 18조에 명시되어 있는 개인의 종교적 자유에 대한 목록은 국제적으로 승인된 최소한의 표준을 언명한다.

- 종교나 믿음에 관해 예배를 하거나 이를 위해 모일 자유와 이런 목적으로 공간을 건립하고 유지할 자유
- 종교나 믿음의 문화나 의식과 연관된 적절한 규모의 필요 조항들과 재료(내용)들을 만들고 획득하고 사용할 자유
- 개인과 기관으로부터 자발적인 금전적 지원과 다른 기부를 간청하고 얻을 자유
- 어느 종교나 신념이든 필요와 규범에 따라 훈련, 임명, 선출, 지명을 통해 적절한 지도자를 승계할 자유
- 자신의 종교나 믿음의 계율에 인가되는 휴일과 성일을 기념하고 기릴 자유
- 기도하고 의복을 갖추고 식단 규율을 따를 권리를 포함한 노동 장소에서의 종교적 자유

• 예배와 종교적 행사를 위한 집회와 연대의 자유
• 개인의 믿음을 선언할 자유
• 개인의 종교를 바꾸거나 거부할 권리
•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종교적 교육에 대한 권리
(출처: United Nations. 1996. *Art. 18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2.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

종교적 자유는 개인에게만 위의 자유를 누리도록 부여하지 않았다. 종교나 믿음은 보통 동체와 공공장소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신자들의 공동체가 집회와 연대의 자유를 갖는다는 것 또한 함축하고 있다.

3. 특정 기관들의 자유

종교적 배경에 기초를 둔 특정 기관들 또한 종교의 자유의 모든 보호를 받는다. 이런 기구들은 예배를 드리는 건물이나, 종교적 요소들을 다루는 교육 기관이나, NGO들이다.

그들의 권리가 포함하는 것들
• 자선적이거나 인도주의적인 기관들을 설립하고 유지할 자유
• 글을 쓰고, 발행하고, 적절한 간행물을 통해 퍼뜨릴 자유
• 종교나 믿음을 적절한 장소에서 가르칠 자유
(출처: United Nations. 1981.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Intolerance and of Discrimination Based on Religion or Belief.*)

4. 종교로부터의 자유

소극적인 종교의 자유, 혹은 종교적 중립성은 비종교적 시민들이 공적 영역에서 종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연방헌법재판소의 "십자가예수상 판결" 이후 소극적인 종교의 자유나 종교적 중립성이 강조되었다. 이는 신앙학교가 아닌 공립학교에 십자가나 십자가예수상을 강제적으로 부착하는 것이 독일 연방법 4조 1호에 위배한다는 판결이다. 이 종교적 중립성은 새로운 법과 가이드라인이 독일 연방 8개 주에 실행되면서 새로운 절정에 다다른다. 이는

공적 영역에서 두건을 쓰는 것 같은 종교적 상징 착용에 대한 강한 제한을 포함한다. 인권기구인 국제인권감시기구는 독일의 종교적 중립성 표명에 대해 비판하였는데, 새로운 규제가 종교적 자유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2011년 이후 프랑스와 벨기에 또한 공공장소에서의 종교적 상징과 의상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었다.

차별철폐의 원칙

종교와 믿음에 기반한 일체의 구분, 배제, 제한이나 선호같은 종교적 배경에서의 차별과 비관용은 금지되어있다. 종교적 차별과 비관용의 금지는 공적 영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종교나 다른 본성에 근간을 둔 믿음들은 개인들의 사적 영역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비차별

교육

부모는 자녀를 그들의 신앙에 따라 교육할 권리를 갖는다. “아동 최우선” 조항은 종교적 관행이 아이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상하게 할 때에만 부모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런 관행에 따라 의학적 치료나 학교 교육을 거부할 수도 있다. 수혈 거부를 예로 들자면, 수혈이 교리 상 허락되지 않는다고 믿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아이들을 죽음으로 이끌 수도 있다.

공적 영역에서 국가는 아이들을 종교적 비관용과 차별에서 보호하는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상과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에 대한 가르침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제공해야한다.

☞ 교육에 대한 아동의 권리

토론해볼 질문들

- 당신의 국가에서 종교적 기관들은 어떻게 다뤄지는가?
- 당신의 국가에서 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믿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 종교와 믿음의 자유를 다루는가?
- 당신의 국가에서 종교적 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안전망이 있는가?

신앙의 표출(종교활동의 자유)

종교적 믿음을 나타낼 자유는 종교적 언어, 가르침, 실천, 예배, 의식의 보호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 말하고, 가르치고, 혼자든 여럿이 함께 든 실천하고, 식사규정과 의복 요건을 준수하고, 특정 언어를 사용하며, 우리의 신앙과 연관된 기념의식을 행할 권리가 있다.

종교나 믿음을 드러낸다는 것은 또한 신앙의 규율과 양립할 수 없는 행동들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행동들 중에는 선서, 병역, 종교적 행사 참여, 고해성사, 의학적 치료에 대한 거부 등이 있다.

종교의 자유의 한계

믿음 그 자체는 보호구역 없이 지켜지는 반면,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태롭게 할 때 제한에 이르게 될 수 있다.

유럽인권보호조약(ECHR) 9조를 예를 들어보자면 종교적 믿음을 나타낼 권리에 대한 제한은 **법에 기초하고 비례해야** 한다. 이는 공공 안보, 질서, 건강, 도덕, 근본적인 권리들, 타인의 자유를 지켜야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부과될 수 있다. 이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음과 같은 예시들에 허용된다. 인신공양, 자기공양, 여성 할례, 노예제, 강제매춘, 체제전복적 활동이나 인간의 건강과 육체적 온전함을 위협하는 다른 행동들이 그것이다.

3. 문화적 관점 차이와 논쟁적 이슈

국가와 신념

전 세계적으로 종교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주요 의견충돌은 **국가와 그 시민들의 종교 혹은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이다. 국가가 어떻게 신앙과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여러 규범적 패턴들이 있다. 이 패턴들 중에는 국교, 교회의 설립, 신앙과 그 기관들에 대한 국가적 중립성, 공식적인 종교가 없는 것, 교회와 국가의 분리, 그리고 법적으로 용인된 종교적 집단들에 대한 보호 등이 있다. 국제 표준은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요구하지 않으며 국가와 믿음 간의 관계에 대한 그 어떤 특정 모델도 규정하지 않는다. 비록 국가와 종교를 분리하는 것이 근대 사회(서구)의 주요 특징이지만, 공적 업무에서 종교를 추방하는 세속적 사회에 대한 전망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단 하나의 국제적 요구는 국가와 교회간의 어떠한 관계도 공인되지 않은 신앙과 종교에 대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종교가 국가 정체성의 구성요소인 곳에서는 국교와 다르거나 소수 신앙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보증하기란 어렵다.

서구의 관점에서 보자면, 종교와 국가 간의 중립적 관계가 개인의 종교적 자유에 대한 최대의 보호를 보증하는 것처럼 보인다. 국가와 신앙을 연결함으로써 체계가 공동체의 종교적 자유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다는 대조적 견해도 있다. 전통적 이슬람교의 샤리아 법이 그 예다. 논쟁적일 수 있으나, 국가가 특정 종교와 유착된 곳에서는 소수파 종교 구성원들이 동등한 보호를 받기란 어려워 보인다.

토론해볼 질문들

- 당신의 국가가 다른 믿음들에 대해 취하는 태도는 어떤가?
- 당신의 국가는 다른 신앙의 기관을 승인했는가?
- 당신의 한 가지 신앙이 특권을 취하는 동시에 모든 신앙이 평등한 구조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 당신은 종교적 정치 정당들을 합법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배교 – 신념을 선택하고 변경할 자유

한 종교를 떠나 다른 종교나 세속적 삶의 방식을 택하는 배교 행위는 분명한 국제 표준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화들 사이에서 논쟁적인 이슈이다.

한 종교를 떠나거나 다른 종교를 택하거나 세속적 삶의 형태를 취한 사람은 배교자가 된다. 역사적으로 이슬람, 기독교, 다른 종교들은 배교자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았다. 배교에 대한 벌은 주로 죽음이었다.

이슬람 국가 중 샤리아 법에 근간을 둔 국가들은 아직도 배교에 대해서 심각한 처벌을 가한다. 아프가니스탄, 이란, 인도네시아, 인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같은 국가에서는 이슬람 신앙에 대해 공공연한 거부를 표하면 투옥될 수도 있고 사형을 언도받을 수도 있다. 이는 사실상 이런 곳에서는 스스로의 종교나 믿음을 선택하고 바꿀 자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제 인권법에 대한 분명한 상충이다. 개인은 그 스스로의 믿음을 강제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 이슈에 대한 논쟁은 깊은 신념과 닿아있으며 종교적 자유에 대한 다른 이해를 포괄하기에 매우 감정적이고 민감하다. 이는 “서구”와 “비서구”간의 종교에 대한 개념과 다른 자유들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드러낸다.

토론해볼 질문들

- 당신은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바꿀 수 있다고 믿는지?
- 이것이 다른 인권과 충돌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어떤 인권인가?

개종의 권유– 자신의 믿음을 전파할 수 있는 권리

모든 사람은 그들의 믿음을 전파할 권리가 있으며 강제적이거나 무력이 사용되지 않는 한 사람들이

신앙을 바꾸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 행동을 개종 혹은 전도라고 한다.

중부 유럽, 동유럽과 아프리카에서 지역 교회들과 이방 종교들의 전도 촉진 프로그램 간에 분쟁이 일어났었다. 특정한 경우에, 정부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금지시켰다. 인권법은 정부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지킬 것과, 신자들이 비강압적인 형태의 개종권유의 자유("양심에의 호소에 불과한", 혹은 플래카드나 빌보드 전시 같은)를 누릴 수 있기를 요구한다.

누군가를 강제로 다른 신앙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분명히 인권에 대한 위반이다. 그러나 무엇이 강제라고 여겨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법에 확실시되지 않았다. 다음과 같은 "강제적 상황"은 개종권유에 있어서 제한을 부른다. : 특정인의 종교 전환 대가로 돈이나 선물 혹은 특권을 주는 것, 사람들이 법의 강제력에 맞닥뜨린 장소에서 개종 권유하는 것(학교 교실, 군사 시설, 감옥 등).

종교적 혐오 조장과 표현의 자유

2006년 초 영국의 인권 단체는 "인종 및 종교적 혐오 방지법(Racial and Religious Hatred Bill)"을 주장했다. 이것은 "종교적 혐오의 조장"의 새로운 공격을 소개하며,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종교적 믿음과 실천들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법은 그에 맞춰 개정되었다.

☞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양심적 병역거부

무엇을 강제적 징병제에 대한 양심적 거부라 볼 것인가에 대한 간문화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치명적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믿음과 심각한 갈등을 일으킬 때,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의 병역 면제로 인해 불이익을 얻지 않는 한, 그 사람은 병역에서 면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권리를 국가적 법률로 적용하는 추세는 대안적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예견된 국가들(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프랑스, 케나다, 미국)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벨로루시, 칠레,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아르메니아, 이스라엘 같은 다른 국가들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기를 잡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게 될 수 있다.

토론해볼 문제들

- 당신의 국가에 "양심수"가 있는가?
- 당신은 국제인권에 살인을 거부할 권리가 명쾌하게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4. 이행과 감독

종교적 자유의 이행에 있어서 주요 문제는 이를 효과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ICCPR 18조에 부재하다는 점이다. 1981년 UN의 *종교와 신념에 대한 비관용과 차별의 철폐에 관한 선언*은 비관용, 부정적 선입견, 종교의 낙인, 사람들의 종교와 믿음에 기초한 폭력에 맞서기 위해 헌정되었다. 이는 관례적인 국제법처럼 특정한 법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일반적으로 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협의회의 필요성에 대해 국제적으로 동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능한 내용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1986년 종교적 비관용에 대한 특별 조사위원이 설립되어 1981년 선언의 이행을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의 권한은 주로 사건과 그 사건에서의 정부의 행위가 이 선언의 조항과 일관성이 있는지 정의하고, 국가가 책임감 있게 받아들여야하는 개선 조치들을 권고하는 것이다. 종교적 동기의 박해와 차별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신앙공동체에게도 영향을 준다. 이는 종교적 비차별과 관용의 원칙에 대한 침해에서부터 살아갈 권리, 육체적 온전함, 개인의 인간안보에 대한 공격에 까지 이른다.

지역 인권 기구들 또한 종교의 자유를 다루고 있다. 아프리카 인권 위원회(ACHR)는 수단의 경우를 고려하여 샤리아법의 적용이 국제적 의무와 일치해야한다고 결정했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 인권 재판소(ECTHR)는 유럽 지역의 종교적 자유를 시행하는 가장 효과적인 기구 중 하나이다. 러시아의 사이언톨로지에 대한 판결(참고: ECtHR. 2007. Case Church of Scientology Moscow v. Russia, 5 April, 2007)이나 오스트리아에서 여호와의 증인을 종교적 공동체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판결(참고: ECtHR. 2008. Case Jehova's Witnesses et al v. Austria, 31 July, 2008) 등의 많은 결정들이 이를 증명한다. 최근의 판결인 이탈리아 공립학교의 십자가상 논쟁 또한 이러한 방향에서 이뤄지고 있다(참고: ECtHR. 2011. Case Lautsi et al v. Italy, 18 March, 2011).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많은 위원회와 단체들 또한 생각, 양심, 종교와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처리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예방 수단과 전략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의 작동을 지속하기에 앞서, 1981년 유엔의 종교와 신념에 대한 비관용과 차별의 철폐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Intolerance and of Discrimination Based on Religion or Belief)은 *다종교간의 공동문화(culture of multi-religious cohabitation)*를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촉진되어야 한다. 교육에서는 종교적 비관용과 차별에 맞서

는 내용이 특히 강조가 되어야 한다. 국가는 국제법에 따라 믿음과 관련된 폭력과 차별에 반대해야 하는 명확한 의무를 지닌다. 마찬가지로 NGO들과 종교적, 세속적 기구들도 명확한 역할이 있다. 국가나 다른 이들에 의해 일어나는 위반을 밝히고, 박해받는 이들을 보호하고, 정보 캠페인, 의식향상, 교육 프로그램과 가르침을 통해 관용을 증진하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함으로써 차별과 종교적 박해에 대한 예방을 시작할 수 있다. 종교적 관용은 우리는 타인의 믿음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든 그렇지 않든 *타인*의 신앙을 존중해야 함을 의미한다. 관용과 존중의 문화를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종교적 타자에 대한 차별, 폄하, 비방하기를 거부해야하고, 차이에 대한 기본적 권리가 종교적 문제에도 적용됨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이는 다른 이들을 신앙적 배경 때문에 취업과 사회복지사업의 접근에 있어서 차별하는 것을 거부해야한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더 나아가서,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신자들과 비신자들이 공통의 지평에서 만나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동시에 신앙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알면 좋은 내용

1. 모범사례

종교의 다원성을 위한 종교 간 대화

지난 20년 동안의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다원주의에 관한 질문**들은 교회들과 종교 공동체들의 흥미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다른 믿음들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창의적 관계를 건설해야한다는 위기감이 존재했던 것이다. 대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실제적인 실천이 있어왔다. 이를 통해 다양한 종교 공동체들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교육, 분쟁해결, 공동체적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협동했다. **국제적인 NGO들**은 많은 이들 사이에서 종교적인 대화와 평화를 촉진하고 있다.

- 세계교회협의회
- 세계종교인평화회의와 그 정규실무그룹 “종교와 인권”
- 세계종교의회

• 세계윤리재단

여러 **지역적, 종교적 발의**는 전세계간의 대화를 통해 분쟁해결과 분쟁방지를 증진하고 있다.

• 중앙아시아에서 *평화를 위한 성직자(Clergy for Peace)*는 공동행동을 위해 랍비들, 신부들, 목사들 그리고 이슬람 사제(이맘)들을 모아 평화와 정의를 증언했다.

• 인도의 남쪽에서 *은총의 협의회(Council of Grace)*는 힌두교도와 기독교도, 회교도, 불교도, 자이나교도, 조로아스터교도, 이슬람교도, 시크교도들을 공동체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 모았다. (공동체주의)

• 태평양 연안에서, *간신앙적 탐색(Interfaith Search)*은 다수의 종교들의 대표들을 피지에 모아 편견을 극복하고 상호적 존중과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했다.

• 유럽에서, "프로젝트 : 간신앙적 유럽(interfaith Europe)"은 그라츠에서 사라에보까지 전 유럽의 도심 정치인들과 서로 다른 종교들의 대표들을 초대한 첫 프로젝트이다.

• 오스트리아의 도시 그라츠에서 *종교간 문제들을 위한 협회*가 설립됐다. 이 협회는 믿음 간의 문제들을 논의하고, 그라츠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조언했다.

토론해볼 문제들

"대화 안에서는 신념과 개방성은 서로의 균형을 잡는다" (Worldwide Ministries – 종교 간 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 www.pcusa.org/pcusa/wmd/eir/dialog.htm)

•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에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교육을 통한 "평화를 위한 종교"

간종교적 교육은 다른 믿음들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존중을 북돋고, 학생들이 편견과 편협의 장벽들을 넘어설 준비를 하게한다.

• 이스라엘에서, 프로젝트 "공통 가치들/다른 근원들"은 유대교도들, 이슬람교도들 그리고 기독교도들을 한데 모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서로 공유된 가치들을 탐색하기 위해 종교적인 텍스트들을 함께 공부했다. 그 결과는 획일화된 학교 교과서로 나올 것이다.

• 태국과 일본에서, 최근 '청년리더십 윤리캠프'에 각국 종교적 공동체의 젊은 대표들이 함께 모여 리더십 비전, 도덕적 윤리적 가치, 공동체 서비스를 훈련하고 화해를 도모했다.

• 독일, 영국과 다른 나라들에서, 교육자들은 학교 교과서가 종교적 전통들을 다루는 방법이 독자들에게 이질적이지 않은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2. 동향

이단, 소수종파 그리고 새로운 종교 운동

> **자카르타 (2005년 6월 16일):** 부통령 Yusuf Kalla는 천 여명의 무슬림들의 이슬람 종파에 대한 공격을 비난했다. 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종파는 전 세계의 주류 무슬림 집단에 의해 이단이라 비난받았다. 군중은 몽둥이와 돌로 무장하고 자카르타의 남쪽 보골 마을에 위치한 아마디야 종파 교단의 본부를 공격했다. 그리고 사무실과 민간생활구역을 훼손했다. 경찰이 공격을 막고자했으나 수적으로 열세였다.
> (출처: 자카르타 포스트, 2005년 6월 16일. *VP condemns mob attack on Islamic sect.*)

종교의 자유는 전통적 세계 종교들만을 가리키는 것처럼 좁게 해석되지 않는다. 새로운 종교적 운동들이나 종교적 소수자들도 같은 보호를 받을 자격을 얻는다. 이 원칙은 새로운 종교적 운동들이 계속해서 차별과 탄압의 대상이 되는 현 상황을 비추어볼 때 특히 중요하다. 이런 새로운 운동들은 여러 다른 용어로 알려져 있고 더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단과 종파라는 용어는 주류 종교들과 신념과 관행이 다르다는 점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어왔다. 이 표현들은 매우 애매모호하지만, 일반적으로 종파는 하나의 주류 종교에 반대하며 갈라져 나온 것을 가리키며, 이단은 주로 특이한 의례를 동반한 정통적이지 않거나 거짓된 구조의 종교적 믿음을 가리킨다.

두 용어가 "주류와 비교해 다름"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무엇이 종파나 이단으로 여겨지는지에 대해서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다르다. 불교나 힌두교는 이 용어들을 중립적인 방식으로 사용하지만, 서구세계에서 "종파"나 "이단"은 주로 부정적인 함축과 함께 사용되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주류에서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 뿐 만 아니라 이들이 요구하는 완벽한 헌신이나 경제적 문제들의 남용도 주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종교적인 배경보다는 영리적으로 설립된 집단들은 종교적 자유의 권리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 유명하고 논란이 많은 예로는 몇몇 국가—특히 가장 유명한 예로는 독일—에

서 교회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이언톨로지'가 있다. 사이언톨로지 교회는 마치 기업처럼 보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했다.

토론해볼 질문들

- 소수 종교들이 당신의 나라에서 보호를 받는지? 받는다면 어떻게 보호 받는지?
- 이들이 주류 종교들과 같은 정도의 권리와 지원을 가지는지?

여성과 신앙

역사 전반에서 여성들은 모든 신앙에 의해 차별받아왔으며, 이들의 종교적 자유의 권리는 최근에야 다루어졌다. 종교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이들은 그들의 신앙을 드러낼 자유가 부족했다. 그들은 예배공간에 접근할 수 없었고, 설교할 수 없었고, 남성들처럼 그들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도 없었다. 또한, 그들은 종교적 법률과 관행들, 관습들의 희생자가 되어 처벌받거나 심지어 목숨조차 위협받았다.

• 이집트 시골 지역 소녀의 95퍼센트가 신체를 훼손당했다. **FGM(여성할례)**는 많은 나라에서 문화적 전통이고, 또한 국제 인권 보호 표준에 강하게 비판받는다. 심각한 건강 문제가 할례 뒤에 일어날 수 있고, 죽음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발전이 있었다. 2003년 여성할례의 제거를 위한 카이로 선언이 "여성 할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수단"에 대한 아랍 아프리카 전문가 회담을 통해 승인되었으며, 이는 여성할례 관습에 영향 받았던 아랍과 아프리카의 28개 국가의 대표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 **강제결혼**은 많은 경우 노예제를 만들며 나이지리아, 수단, 파키스탄 외 여러 국가에서 그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결혼에 있어서 여성의 동의 필요성은 존중받지 못한다. 때로 "아내들"은 9살 정도로 어리기도 하다. 강제결혼은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특정 집단에서도 이뤄지며, 이는 이들 국가에서 일반적인 금지사항임에도 문화와 전통 그리고 종교의 이름으로 방어, 용인되고 있다.

• **"인종청소"의 특정 형태로서의 강간**: 희생자들의 종교적 소속은 많은 경우 옛 유고슬라비아, 조지아, 수단, 르완다, 체첸에서 대규모 강간의 동기였다. 강간당한 여성들의 강제된 임신은 그들이 강간으로 수치를 당했고 불명예를 얻었다는 사실에 대한 공공연한 낙인이었고, 정신적인 피해를 연장시켰다. 그 아이들에게도 차별은 이어졌다. 희생당한 소녀들은 7세에서 14세 사이였다.

종교적 극단주의와 영향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와 백악관을 향한 공격과 2005년 7월 7일 런던지하철에 대한 공격

의 여파 이후, 테러리즘은 종교적 믿음을 그 어느 때보다 악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은 신앙과 테러리즘의 연쇄의 기저에 있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비행기 납치, 이슬람주의 국가들에서의 서구 대사관에 대한 폭탄 폭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의 다양한 "낮은 강도"의 분쟁들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종교가 동원된다.

그러나 이 결합은 매우 위험하다. 이는 세계를 "선"과 "악"으로 분리하며 사람들을 그들의 신앙으로 낙인찍는 행위이다. 모든 신자들이 테러리스트가 아닌 것처럼, 모든 테러리스트나 극단주의자들이 종교적인 것은 아니다.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이 신앙과 결합할 때, 범죄자들이 그들이 "신의 이름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주장할 때, 정치적 동기를 가진 행위와 요구가 종교와 그에 대한 자유로 위장, 오용된다. 신앙의 이름으로 이뤄지는 테러리즘은 서로 다른 종교적 믿음을 가진 다른 문화 간의 충돌을 보여주지 않는다. 극단주의는 단순히 특정 사회나 신앙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 위협이며, 무지와 비관용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극단주의와 효과적으로 싸울 유일한 방법은 더 큰 폭력을 낳는 폭력의 악랄한 연쇄를 끊을 방법을 찾는 것이다.

> "종교는 테러리즘을 정당화하는데 잘못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정부의 '반 테러리즘' 행동은 인권과 종교나 믿음의 자유를 악화시키는데 잘못 사용될 수 있다."
> (출처: OSCE. 2002. *Conference on religious freedom and fight against terrorism. Freedom of Religion and Belief*)

종교에 대한 비방

1999년부터 유엔은 종교에 대한 비방을 새로운 형태의 인종차별로 규정하기 위해 시도했다. 이러한 시도들은 이슬람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에 이슬람제국회의기구(OIC)는 이를 장려하였다. 2001년 유엔인권위원회는 종교에 대한 비방과 싸울 것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에는 이슬람만이 명기되었다. 더 나아가 이 결의안은 종교에 대한 비방이 인권에 대한 위반이며 전 세계에 사회적 불안정을 낳는 이유라고 서술했다. 이 결의안에 대해 인권이사회 중 유럽연합, 스위스와 다른 서구 국가들(예를 들자면 미국, 케나다)은 종교에 대한 비방의 개념이 인권법과 상반된다는 이유로 기권하였다.

이 결의안은 개인들을 위한 권리라기보다는 종교를 위한 권리로 만들어졌기에 모순되어 보인다. 인권은 일반적으로 개인들을 보호하지, 종교와 같은 개념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종교

의 명예훼손에 반대하는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강한 규제를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 2009년 180개 이상의 NGO 연합이 이 결의안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반대를 선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의안은 인권이사회에 의해 통과되었다.

2011년에야 이슬람제국회의기구는 인권이사회 전체 국가에 의해 받아들여진 수정된 결의안을 제안했는데, 종교와 믿음을 근거로 한 비관용과 폭력에 직면한 개인들을 보호할 의도를 담고 있다.

(출처: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2011. Combating intolerance, negative stereotyping and stigmatization of, and discrimination, incitement to violence, and violence against persons based on religion or belief.)

토론해볼 질문들

• 종교 공동체간의 분쟁의 주요 이유들은 무엇인가? 당신의 경험에서 예를 들 수 있는가?

• 평화와 분쟁해결을 찾는데 있어서 신앙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종교가 화해의 중개인으로 봉사하는 곳의 예시를 생각해보시오.

3. 연혁

종교적 자유의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정들에 대한 역사:

1776 버지니아 권리장전 (1789 권리장전 1차 개정)
1948 세계교회협의회의 종교적 자유에 대한 선언
1948 세계인권선언, 2조, 18조
1948 인종학살 범죄에 대한 예방과 처벌 조약, 2조
1950 유럽인권보호조약(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 ECHR), 9조
1965 바티칸 공의회의 종교적 자유 선언
1966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8, 20, 24, 26 27조
1969 미주인권협약. 12, 13, 16, 17, 23조
1981 아프리카인권헌장. 2, 8, 12조
1981 종교와 신념에 대한 비관용과 차별의 철폐에 관한 UN 선언
1989 아동권리협약 (CRC). 14조
1990 이슬람 인권에 대한 카이로 선언

1992 인종, 종교, 언어적 소수자들에 대한 UN 권리 선언. 2조
1993 세계윤리를 향한 선언 (시카고 세계 종교회의)
1994 아랍 인권헌장(Arab Charter for Human Rights,). 26, 27조
1998 아시아 인권헌장. 6조
2001 종교와 믿음의 자유와 관용과 비차별과 관련된 학교 교육에 대한 UN국제자문회의(마드리드)
2001 종교적 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회의(뉴델리)
2004 아랍 인권헌장(Arab Charter on Human Rights)
2007 무슬림에 반대하는 비관용과 차별에 대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선언

추천 활동

추천활동 1: 상처주는 말들

파트1 : 소개

이 활동은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 다른 이들의 종교적 믿음이나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충돌할 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파트2 : 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활동의 종류 : 토론

목표와 목적

• 다른 사람들의 종교적 감정을 밝혀내고 받아들이기

•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 배우기

대상 집단: 청소년과 성인

집단 규모: 8-25

시간: 최소 60분

도구: 플립차트와 마카

준비물: 플립차트와 마카 준비

연관된 기술: 타인의 말 듣기, 섬세할 것과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

파트3: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참여자들은 자유연상법을 통해 마음 상하게 하는 코멘트들과 타인의 양심이나 종교적 믿음과 연관된 선입견들(고통을 불러일으킬 거라 생각되는 것들로)에 대한 목록을 만든다. 참여자들은 이 중 가장 괴로운 것들을 정하고 기록한다.

참여자들을 4-6명의 집단으로 나눈다. 각 집단 당 한명씩 첫 번째 문장을 읽는다. 이 시점에서 그 집단은 이 코멘트들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받아들이는데 동의하는 것이다. 이들은 왜 그 사람이 마음이 상했는지, 또 사람들이 그 결과에 상관없이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허락되어야 할지,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토론할 것이다.

각 문장에 대해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피드백:

참여자들이 토론 과정에서 어떤 감정을 느낄 것인가? 코멘트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침묵을 지킬 것인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생각에 대해 말할 수 있을 때, 어떤 제한이 있어야 할 것인가?우리는 언제든 말하고 싶은 것들을 말할 수 있어야 할까?

방법론적 힌트:

당신은 이 활동 중에 그 문구들을 따져보거나 주관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접근하고 존경심을 표해야 한다.

변형을 위한 팁:

끝나는 활동으로: 모두에게 쓰는 한 장의 편지.

작은 종이에 참여자들의 이름을 쓰고, 모두에게 한 장씩 뽑게 하고, 그 사람에게 친절한 말이 담긴 편지를 쓰게 한다. – 논쟁점과 감정들을 상기시키는 많은 활동들에 적합한 끝맺기이다.

파트4: 후속 활동

만약 참여자들이 계속 함께 작업하기 원한다면, 그 그룹이 토론/소통에 관한 규칙을 찾고 만드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적절하다. 의심이 일거나 논쟁적인 상황인 경우에 모든 사람에게 이에 대해 언급

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벽에 고정할 수 있다.

관련된 권리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출처: United Nations. 2004. ABC Teaching Human Rights. Practical Activities for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추천활동 2 :

내 이웃의 신앙과 나의 신앙

파트1: 소개

이 활동의 주제는 종교적 배경에 대한 비차별과 비관용의 금지 원칙이다.

서로 다른 종교적 믿음을 가진 참여자들과 함께할 때 가장 효과가 있다.

파트2 : 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활동의 종류 : 다중작업 활동

목표와 목적 :

-관용의 개념에 대한 탐색과 이해

-종교적 자유의 양상에 대한 분석

-상상력과 창의적 생각 기술의 개발

-다른 관습과 문화를 배우기

대상 집단: 청소년과 성인

이 활동은 약간의 수정을 통해 모든 연령의 학생들에게 사용될 수 있다.

집단 규모: 5-30

시간: 120-240분

도구: 플립차트, 플립차트 종이와 마카, 다양한 종교적 운동을 나타내는 사진들, 펜, 종이, 찰흙, 목제, 와이어, 등등

준비물: 다양한 종교적 운동을 나타내는 사진들을 준비한다.

연관된 기술:

사회적 기술: 타인의 말 듣기, 분석하기, 소통하기

비판적 생각 기술: 의견 내기, 반영적 생각하기

창의적 기술: 은유를 이해하고 응답하기, 심볼 묘사 개발하기

파트3: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첫 번째 파트 : 테이블 위나 바닥에 서로 다른 종교적 운동, 의식, 상징 등이 담긴 사진들을 펼쳐놓는다. 참여자들은 속한 집단에 따라 사진들을 선택한다. 어떤 경우라도 사진들은 그 나라의 모든 종교들을 보여줘야 한다(한 눈에 보았을 때,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종교 개수보다 많이).

집단에 따라, 그 국가에서 그 종교적 운동이 (아직)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고려하여 사진들을 포함시킨다. 각 참여자들은 그 자신이 관용할 수 없는 어떤 점이 담긴 사진을 고른다. 집단을 원으로 모은다. 각 참여자들은 그들이 고른 사진을 보여주고 왜 관용할 수 없는지 설명한다.

짧은 피드백 시간을 가지고, 참여자들에게 전체 과정을 되돌아보라고 요청한다. 왜 어떤 사람은 사진에서 보여주는 무언가를 거북하게 느꼈는가? 같은 사진을 선택한 참여자들이 여럿 있었는가?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런가? 어떤 사진이 아무도 거북하게 하지 않았다면 왜 그런가? 서로 다른 종교 간의 분쟁지점은 어디인가?

요컨대, 어떤 종교들이 참여자들의 국가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설명하라.

두 번째 파트 : 짧은 자유연상 시간에, 참여자들이 그들이 고른 종교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표현한다. 집단의 리더가 종교적 공동체에 대한 정보를 나누어준다. 참여자들을 집단별로 모이게 한다. 각각은 종교를 하나씩 선택한다. 최종적으로는 부정적인 이미지의 집단조차 선택되도록 하라.

다문화적 모임을 구성한다. 참여자들의 집단 각각이 서로 다른 종교적 혹은 정신적 집단에 대해 묘사하게 하라. 참여자들이 그 종교의 관습과 신념을 그림, 판토마임, 노래, 만화, 역할극 등을 통해 보여주게 하라. 참여자들에게 준비시간 40분을 준다. 전체 세션으로 돌아와, 각 그룹이 그들의 창의적 의견을 표현하게 하라.

두 번째 파트를 짧은 피드백 세션으로 마무리한다. 발표를 통해 참여자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서로 다른 참여자들 간에 어떤 공통점은 없었는가? 그들이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야 오해 없이 표현할 수 있겠는가? 참여자들이 다른 믿음들과 종교들을 배운 이후에 관용이 더 쉬운가?

방법론적 힌트 : 이 활동은 집단이 다른 참여자의 종교적 믿음에 대해 존중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 방법을 "너를 알아가기" 활동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해야 할 다른 것으로는, 다른 문화에 대한 발표가 다른 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다른 이에 대한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참여자들에게 이 활동을 소개하면서 발표가 예배나 의례에 초점을 둬야하며 그들의 의례만이 "옳은" 것이거나 "선한" 것이라고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 만약 당신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참여자들이 차별을 느낀다면, 어느 때라도 발표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만약 모든 참여자들이 공격적인 발표를 멈출 한 가지 사인(예를 들어, 신호등 불같은 빨간 종이라든가)에 동의한다면 유용하다.(단순히 오해나 잘못된 정보 때문이어도 상관없다) 발표가 중단된 후에는 양측의 동기를 토론하는 것이 이어져야 한다.

변형을 위한 팁:

만약 이 활동이 학교에서 이뤄진다면, 활동의 두 번째 부분에서 예술 선생님과 협업할 수 있다. 발표는 공작용 점토나 다른 재료로도 이뤄질 수 있다.

파트4: 후속활동

경험과 창의성에 기반한 이 활동이 끝난 후, 당신은 지적인 조언을 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용/비관용에 대한 몇몇 요소들에 대해 조언할 수 있다.

관련된 권리들/ 더 나아갈 탐구의 영역:

인종, 피부색, 성별(젠더) 같은 다른 차별의 배경들. 표현의 자유.

(출처: Adapted from United Nations. *Global Teaching and Learning Project Cyberschoolbus.*)

참고자료

Abduljalil Sajid, Imam. 2005. *Islamophobia: A new word for an old fear.* Available at: www.osce.org/documents/cio/2005/06/15198_en.pdf.

Ahdar, Rex. 2005. *Religious Freedom in the Liberal Sta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Asma Jahangir. 2008. *Interim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UN Doc. A/63/161.

Asma Jahangir. 2007.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UN Doc. A/HRC/4/21.

Besier, Gerhard and Hubert Seiwert (Hg.). 2011. *Religiöse Intoleranz und Diskriminierung in ausgewählten Ländern Europas - Teil 1.* Berlin et al: LIT Verlag.

Bielefeldt, Heiner. 2011.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UN Doc. A/HRC/16/53.

Bielefeldt, Heiner et al. (Hg.). 2008. *Religionsfreiheit. Jahrbuch Menschenrechte 2009.* Wien: Böhlau Verlag.

BBC. 2005. *Forced marriage 'could be banned'.* Available at: http://news.bbc.co.uk/2/hi/uk_news/politics/4214308.stm.

Black, Henry Campbell. 1990. *Black's Law Dictionary. 6th Edition.* Eagan: West Group.

Center for Religious Freedom - Freedom House. 2005. *Saudi Publications on Hate Ideology Invade American Mosques.* Available at: http://freedomhouse.org/religion/pdfdocs/FINAL%20FINAL.pdf.

Cookson, Catharine (ed.). 2003. *Encyclopedia of religious freedom.* New York: Routledge.

Courage to Refuse. 2004. *Reservist gets 28 days for refusing Gaza duty - Lily Galili and Charlotte Halle.* Available at: www.seruv.org.il/english/article.asp?msgid=204.

Declaration on Religious Freedom by the Vatican Council. 1965. Available at: www.vatican.va/archive/hist_councils/ii_vatican_council/documents/vat-ii_decl_19651207_dignitatis-humanae_en.html.

Declaration on Religious Libert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1948. Available at: www.religlaw.org/interdocs/docs/wccdecreliglib1948.html.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2011. *Lautsi et al. v. Italy (30814/06). Judgement of 18 March 2011.*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2008. *Zeugen Jehovas et al. v. Austria (40825/98). Judgment of 31 July 2008.*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2007. *Church of Scientology Moscow v. Russia (18147/02). Judgement of 5 April 2007.*

Evans, Malcolm D. and Rachel Murray (eds.). 2002. *The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The System in Practice. 1986-200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abio, Udo di. 2008. *Gewissen, Glaube, Religion: Wandelt sich die Religionsfreiheit?* Berlin: Berlin University Press.

Gahrana, Kanan. 2001. *Right to Freedom of Religion: A Study in Indian Secularism.* Denver: International Academic Publishing.

Germany,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1995. *Crucifix judgement. BVerfGE 93, 1, May 16, 1995, 1 BvR 1087/91.*

Human Rights Watch. 2011. *Vietnam: A Case Study in Religious Repression.* Available at: www.hrw.org/en/reports/2011/03/30/montagnard-christians-vietnam-0.

Human Rights Watch. 2011. *World Report 2011.* Available at: www.hrw.org/en/world-report-2011.

Human Rights Watch. 2010. *Egypt: Free Activists Detained on Solidarity Visit. 16 January 2010.* Available at: www.hrw.org/news/2010/01/15/egypt-free-activists -detained-solidarity-visit.

Human Rights Watch. 2009. *Denied Dignity. Systematic Discrimination and Hostility toward Saudi Shia Citizens.* Available at: www.hrw.org/sites/default/files/reports/saudi0909webwcover.pdf.

Human Rights Watch. 2009. *Discrimination in the Name of Neutrality. Headscarf Bans for Teachers and Civil Servants in Germany.* Available at: www.hrw.org/en/reports/2009/02/25/discrimination-name-neutrality.

Human Rights Watch. 2005. *Devastating Blows. Religious Repression of Uighurs in Xinjiang.* Available at: http://hrw.org/reports/2005/china0405.

Informationsplattform humanrights.ch. 2011. *Diffamierung von Religionen als neues Menschenrechtskonzept?* Available at: www.humanrights.ch/home/de/Instrumente/Nachrichten/Diverse_Gremien/idcatart_8576-content.html.

Kamguian, Azam. 2004. *Girls' Nightmare in Muslim Families: Forced Marriages in Europe.* Available at: www. middleastwomen.org/html/nightmare.htm.

Krishnaswami, Arcot. 1960. *Study of Discrimination in the Matter of Religious Rights and Practices.* New York: United Nations Publisher.

Küng, Hans and Karl-Josef Kuschel (eds.). 1993. *A Global Ethic. The Declaration of the Parliament of World's Religions.* London: Continuum.

Marshall, Paul. 2000. *Religious Freedom in the World: A Global Report of Freedom and Persecution.* Nashville: Broadman & Holman.

Lerner, Natan. 2000. *Religion, Belief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New York: Orbis Books.

Mühlberg, Tobias. 2002. *Der Vorrang negativer Religionsfreiheit - oder: Freiheit als Freisein von Religion im öffentlichen Leben?* Dresden: Juristische Fakultät.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2005. *Contribution of H.E. Prof. Ekmeleddin Ihsanoglu, Secretary General of the 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to the Work of the 4th Session of the O.S.C.E. Conference on Anti-Semitism and on their forms of Intolerance.* Available at: www.osce.org/documents/cio/2005/06/15198_en.pdf.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2005. *OSCE Conference on Anti-Semitism and on Other Forms of Intolerance.* Available at: www.osce.org/item/9735.html.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2004. *OSCE Conference on Tolerance and the Fight against Racism, Xenophobia and Discrimination. PC.DEL/949/04.* Available at: www.osce.org/documentscio /2004/ 10/3728_en.pdf.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2004. *OSCE Meet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acist, Xenophobic and Anti-Semitic Propaganda on the Internet and Hate Crime. PC.DEL/918/04/Corr.1.* Available at: www.osce.org/documents/cio/2004/09/3642_en.pdf.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2002. *Conference on religious freedom and fight against terrorism. Freedom of Religion and* Belief.

Available at: www.osce.org/odihr/13434.html.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2002. *Freedom of Religion and Belief.* Available at: www.osce.org/odihr/13434.html.

Potz, Richard and Brigitte Schinkele. 2007. *Religionsrecht im Überblick.* 2. Aufl. Wien: Facultas.

Rehman, Javaid and Susan Breau. 2007. *Religion,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Law (Studies in Religion, Secular Beliefs and Human Rights).* Leiden: Brill.

Saeed, Abdullah and Hassan Saeed. 2004. *Freedom of Religion, Apostasy and Islam.* Aldershot: Ashgate Publishing.

Scalabrino, Michelangela. 2003. *International Code on Religious Freedom.* Leuven: Peeters.

Scolnicov, Anat. 2010. *The Right to Religious Freedom in International Law: Between Group Rights and Individual Rights.* London: Routledge.

Schmidt, Yvonne. 2009. *Diskriminierung aus religiösen Gründen im Lichte internationaler Rechtsdokumente sowie von Regierungs- und Nichtregierungsorganisationen.* In: Brünner, Christian (Hg.). Band 19 der Schriftenreihe Colloquium „Diskriminierung aus religiösen Gründen“. Available at: www.colloquium.at/pdf/Schmidt_Diskriminierung_aus_religioesen_Gruenden_%28Fassung_2009_08_17%29.pdf.

Schmidt, Yvonne. 2011. *Die OSZE und der Europarat im Dienste der Religionsfreiheit.* In: Zeitschrift für Glaubensformen und Weltanschauungen / Journal for the Study of Beliefs and Worldviews. Religiöse Intoleranz und Diskriminierung in ausgewählten Ländern Europas – Teil I. Reihe: Religion – Staat – Gesellschaft., 181-222.

The Jakarta Post. 2005. *VP condemns mob attack on Islamic sect.* 16 July, 2005. Available at: www.indonesia-ottawa.org/information/details.php?type=news&id=1220.

United Nations. 2005.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cluding the Question of Religious Intolerance. Report submitted by Asma Jahangir,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E/CN.4/2005/61.* Available at: www.ohchr.org/english/issues/religion/annu-al.htm.

United Nations. 2004. *ABC Teaching Human Rights. Practical Activities for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New York: United Nations Publications. Available at: www.ohchr.org/en/publicationsresources/pages/trainingedu\−cation.aspx.

United Nations. 2004. *Civil and Politcal Rights, Including Religious Intolerance. Report submitted by Mr. Adelfattah Amor,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E/CN.4/2004/63.* Available at: www.ohchr.org/english /issues/religion/annual.htm.

United Nations. 2003. *Civil and Politcal Rights, Including Religious Intolerance. Report submitted by Mr. Adelfattah Amor,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in accordance with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2002/40. E/CN.4/2003/66*. Available at: www.ohchr.org/english/issues /religion/annual.htm.

United Nations. 2001. *International Consultative Conference on School Education in Rela\−tion with Freedom of Religion and Belief, Tolerance and Non−Discrimination.* Available at: www.unhchr.ch/html/menu2/7/b/main.htm.

United Nations. 1996. *Art. 18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UN Doc. A/RES/2200 A (XXI) of 19 December, 1966.*

United Nations. 1981.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Intolerance and of Dis\−crimination Based on Religion or Belief. UN−Doc. A/RES/36/55 of 25 November, 1981.*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1993. *General Comment No. 22 (48) on Art. 18 of the International Conve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UN Doc. CCPR/C/21/Rev.1/Add. 4 of 27 September, 1993.*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2011. *Combating intolerance, negative stereotyping and stigmatization of, and discrimination, incitement to violence, and violence against persons based on religion or belief: Resolution adopted by the Human Rights Council on 12 April 2011, A/HRC/RES/16/18.* Available at: www.unhcr.org/refworld/docid/4db960f92.html.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2011. *Combating intolerance, negative*

stereotyping and stigmatization of, and discrimination, incitement to violence, and violence against persons based on religion or belief. UN-Doc. A/HRC/RES/16 /18 of 12 April, 2011.

United State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2011. *Annual Report.* Available at: www.uscirf.gov/images/book%20with%20cover%20for% 20web.pdf.

United State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2005. *The Religion-State Relationship and the Right to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A Comparative Textual Analysis of the Constitutions of Predominantly Muslim Countries*. Available at: www.uscirf.gov/countries/global/comparative _constitutions/03082005/Study0305.pdf.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2005. *Report on Global Anti-Semitism.* Available at: www.state.gov/g/drl/rls/40258.htm.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 *Eliminating female genital mutilation. An interagency statement - OHCHR, UNAIDS, UNDP, UNECA, UNESCO, UNFPA, UNHCR, UNICEF, UNIFEM, WHO*. Available at: whqlibdoc.who.int/publications /2008/9789241596442_eng.pdf.

Yinger, J. Milton. 1970.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New York: McMillan.

추가정보원

Anti-Defamation League: www.adl.org

Baptist Joint Committee: www.bjcpa.org

Cairo Declaration for the Elimination of FGM: www.childinfo.org/areas/fgmc/docs /Cairo%20declaration.pdf

Council for a Parliament of the World's Religions: www.parliamentofreligions.org/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www.echr.coe.int/echr

Global Ethic Foundation: www.weltethos.org

Human Rights Watch: www.hrw.org/doc/?t=religion

Human Rights without Frontiers Interna\−tional: www.hrwf.net

Institute for the Secularisation of Islamic Society: www.secularislam.org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Religious Freedom: www.iarf.net/

International Religious Liberty Association: www.irla.org/index.html

Jehovah's Witnesses, Medical Care and Blood: www.watchtower.org/x/medical_care_and_blood.htm

Journal of Religion and Society: http://purl.org/JRS

La laïcité − La Documentation française: www.ladocumentationfrancaise.fr/dossiers/laicite/index.shtml

Marburg Journal of Religion: www.uni−marburg.de/fb03/ivk/mjr/

Ontario Consultants on Religious Freedoms: www.religioustolerance.org

Religions for Peace: www.wcrp.org

Religion and Law Consortium: A Research Forum for Legal Developments on Internation\−al Law and Religion or Belief: www.religlaw.org/

Soka Gakkai International: www.sgi.org

United State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www.uscirf.gov

United Nations Global Teaching and Learning Project Cyberschoolbus: http://cyberschoolbus.un.org/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Durban 2001: www.un.org/WCAR/index.html

World Conference on Religion and Peace (WCRP): www.wcrp.org

World Congress for the Preservation of Religious Diversity: www.infinityfoundation .com/mandala/s_ot/s_ot_world_congress.htm

Worldwide Ministries - Guidelines for Interfaith Dialogue: www.pcusa.org/interfaith/study/dialogue.htm

교육권

RIGHT TO EDUCATION

교육의 이용가능성과 기회균등

교육권을 통한 자력화

>>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중략] <<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2항, 1948

사례

마야 이야기

“제 이름은 마야예요. 저는 14년 전 가난한 소작농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이미 많은 아이들이 있었기에 아무도 제가 태어난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언니들의 집안일을 도왔어요.

저는 바닥을 쓸고, 빨래도 하고, 물도 길고, 장작도 날랐지요. 제 친구들 중 몇몇은 밖에서 뛰어놀고 있었지만 저는 그 아이들 틈에 낄 수 없었어요.

학교에 갈 나이가 되자 저는 정말 기뻤어요. 저는 학교에서 새 친구들도 사귀었고, 읽고 쓰는 법을 배웠어요. 하지만 제가 4학년이 되었을 때, 부모님께서는 저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수업료를 낼 돈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 어머니와 다른 식구들을 돕기 위해서라도 집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남자로 태어날 거예요.”

(출처: United Nations. 2000. UN Millennium Report.)

토론할 거리

1. 이 사례에 나타난 주요 문제들은 무엇인가? 마야에게 공감하는가? 더불어 마야가 가난에서 벗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2. 문맹 중 대다수가 여성인 이유가 무엇일까?

3. 지식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무슨 종류의 지식이 중요한가? 인권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지식에는 무엇이 있는가?

4. 교육권은 현재 국제 사회가 보장해야 할 우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가?

5. 무지와 문맹을 제거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

6. 다른 인권을 누리는데 있어 교육이 중요한가?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7. 교육은 인간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러하다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인가?

알아야 하는 내용 ☺!?

1. 소개

왜 교육권이 필요한가?

거의 십억 명의 인구가 책을 읽을 줄 모르거나 서명도 할 줄 모르는 채로 21세기를 맞이하였다. 이는 전세계 인구의 6분의 1 정도로 인도 전체 인구수에 필적하는 수치이다. 인권으로서의 교육권은 "자력화를 위한 권리(empowerment right)"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보다 더 큰 지배력을 가질 수 있게 하고, 특히 국가행위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지배력을 부여한다. 다시 말해서, 자력화를 위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개인으로 하여금 다른 권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을 누리도록 한다.

다양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의 향유는, 예를 들면 정보의 자유, 표현의 자유, 투표권과 피선거권과 그 밖의 여러 권리들로 적어도 최소한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많은 수의 경제 · 사회 · 문화적인 권리들, 예를 들면 직업 선택의 자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 과학적 기술적 진보로부터의 이익을 향유하고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들도 최소한의 교육이 이루어진 후에야 의미있는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이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에 대해서도 유효하다. 인종적 · 언어적 소수민들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강화할 수 있는 필수적인 수단이다.

교육은 또한 (비록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민족, 종교 집단 간의 이해, 관용, 존중, 친선을 증진할 수 있으며, 세계적 차원의 인권 문화를 창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교육은 단지 읽고 쓰거나 계산하는 것을 배우는 것 이상이다. 'education'의 어원이 되는 라틴어 단어는 "이끌어내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한 개인의 교육권은 교육의 기회, 예를 들면 초등 교육, 중등 교육, 제3차 교육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한다. 교육권에 대한 보다 넓은 개념이 있지만, 이 장에서는 **초등 교육**과 **기초 교육**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일생 동안에 배움에 대한 토대마저 제공받지 못하는 이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교육과 인간안보

교육권에 대한 침해뿐 아니라 거부 역시 개인이 자신의 개성을 개발하고, 스스로와 가족들을 부양하고 보호하며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에 피해를 준다. 사회적으로, 교육의 거부는 민주주의와 사회적 진보를 해치고, 더 나아가 국제평화와 인간안보에까지 악영향을 준다. 인간안보의 결여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막는다. 이는 무력 분쟁 상황에 처한 아이들, 특히 소년병의 경우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하지만 인간안보에 위협이 되는 가난도 교육권의 거부를 일으킬 수 있다. 인권교육과 학습을 통한 자신의 인권에 대해 알 권리는 인간안보에 매우 중요한 공헌을 한다. 인권과 인권법에 대한 교육과 학습을 통하여 무력 분쟁 상황에서의 인권 침해가 방지될 수 있고 분쟁 이후의 사회 복원도 용이해질 수 있다.

☞ 아동인권 / 무력 분쟁 상황에서의 인권

UN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인권으로서의 교육권을 규정하면서, 최소한 초등기초교육은 무상 · 의무교육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국가마다 이러한 요구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유럽, 북미, 호주, 그리고 남아시아의 일부에서는 "초등" 교육이 중등교육으로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세계의 20여 국가에서는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연령 자체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역사적 발전

유럽에서의 계몽 시대 이전에, 교육은 주로 부모와 교회의 책임이었다. 근대국가가 출현하면서 교육은 공적 관심사 및 국가의 책임으로 여겨지기 시작하였다. 16~17세기 걸출한 철학자 존 로크와 장-자크 루소가 그들의 저술에서 개인의 교육권에 대한 근대적인 개념을 시사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전적인 시민권 문서인 영국의 권리장전(1689), 버지니아 권리장전(1776), 미국독립선언문(1776)이나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1789)에는 교육권과 관련된 어떠한 구체적 권리도 포함되지 않았다.

19세기에는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출현으로 교육이 인권의 영역에 공고히 자리매김하였다. 19세기의 자유주의 사상과 반교권주의적 사상 역시 교육권의 정의에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사상들은 교회와 국가의 개입에 반대하여 과학, 연구, 교수의 자유라는 신념을 옹호하고 발전시키면서 만들어졌다.

19세기 후반부에는 교육권에 대한 명시적인 인식이 생겨났다. 1871년 독일 제국 헌법에는 “독일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표제 하에 교육권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도 “교육과 학교” 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무상 의무 교육을 통하여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제1차 세계 대전 후 체결된 평화조약의 말미에는 소수자의 교육권 보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924년에 선포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은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유도하였다.

20세기 동안 교육권은 국가의 헌법과 국제 권리 장전에 명문화되거나 헌법외 조항 또는 국내법 조항들에 나타났다. 교육권은 50여 개 이상의 국가 헌법에서, 예를 들면 니카라과, 키프로스, 스페인, 베트남, 아일랜드, 이집트, 일본, 파라과외, 폴란드 등의 나라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오고 있다.

영국과 페루는 헌법이 아닌 법률에서 교육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모로코, 일본은 헌법과 법률 모두에서 교육권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 헌법에는 교육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미국 연방과 주 차원의 법률에서 특히 교육기회의 균등 등으로 교육권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출처: Douglas Hodgson, 1998. The Human Right to Education.)

2. 정의와 설명

교육권의 내용과 국가의 의무

교육권은 인권에 대한 국제법에 확실한 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몇 몇 세계적, 지역적 인권 문서에 규정되어 왔다. 그 예로 세계 인권 선언 제26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3조와 제14조,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제10조, 그리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8조와 제29조를 들 수 있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 협약 제1 의정서의 2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 제13조, 그리고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제17조 등이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인권 성문화 작업 중 하나인 EU 기본권 헌장의 제14조에 교육권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개인에게 부여되는 교육을 받을 기본권은 해당 정부의 특정한 정책 행위를 규정하며, 국가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교육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는 국가가 이미 인정된 권리와 자유를 위배하는 행동을 하거나 그와 같

은 권리와 자유의 행사를 방해하고 제약하는 것을 방지한다. 그 중에서도, 국가는 부모들이 사립 또는 공립 교육 기관을 선택할 자유를 존중하여야 하며 부모들의 신념에 따른 종교적, 도덕적 자녀 교육을 보장해야 한다. 모든 종교, 민족, 언어 집단, 그리고 성별 등을 불문하고 남녀 청소년들을 교육해야 할 필요는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당사국은 나아가서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민족간에 있어서나 모든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3조 제1호. 1966.

교육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는 국가로 하여금 입법이나 그 외의 수단들을 통하여 제3자에 의한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침해를 예방하고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국가는 반드시 공립학교나 사립학교가 학생들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하거나 체벌을 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명시된 이행 의무는 교육권의 점진적인 **실현** 의무를 의미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행위 의무와 결과 의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행위의무는 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나 수단을 의미한다. 가장 좋은 예인 동 규약의 제14조에서는, 아직 무상으로 초등의무교육을 확보할 수 없는 각 당사국은 계획상에 정해질 합리적인 연한 이내에 모든 사람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원칙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2년 이내에 입안, 채택할 것을 약속하도록 하고 있다.

달성되어야 할 기준들

- 무상의무 초등교육
- 모든 사람이 이용 가능한 중등교육(10-14세)
- 역량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된 고등교육
- 적절한 연구 · 장학 제도의 수립과 교직원 처우의 지속적인 개선

(출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3조 제2호)

이는 차별금지와 평등의 원칙, 학교 선택과 교육 내용 선택의 자유를 기초로 한 모든 사람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의 증진이 곧 교육권의 정신이자 가장 중요한 본질임을 의미한다.

UN 경제사회문화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13호에서 교육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로 **4가지 요소**를 들었다.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적응성이 그것이다.

가용성

무상의무 초등교육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는 교육권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다.

모든 아동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재정적 투입이 요구된다. 국가만이 교육 제공자는 아니지만 국제인권법은 모든 학령기 아동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에 교육 제공자로서의 최종 의무를 지우고 있다. 초등학교의 구조적 수용력이 초등학교 학령기인 아동들의 수를 밑돌 경우, 의무교육과 관련된 국가의 법적 의무는 실현되지 못하게 된다.

중등교육과 제3차 교육의 제공 역시 교육권의 중요한 요소이다.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의 이라는 조항은 국가가 교육 책무로부터 면책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접근성

최소한, 정부는 여자 청소년과 남자 청소년 및 성인 등 모두의 현존하는 교육 기관에의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이 교육권을 향유하는 것을 **차별금지와 평등의 원칙**을 기초로 하여 보장할 의무가 있다.

교육 기관에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할 적극적 의무는 물리적, 구조적 접근 모두를 포함한다. 교육기관에의 물리적 접근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특히 중요하다. 구조적 접근이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제10조에도 나와 있듯이 교과서와 교육 제도에서의 성 역할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제거하는 등 배제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차별금지 / 여성 인권

"여성을 교육시키는 것은 가족, 공동체, 국가를 교육시키는 것이다."

아프리카 격언

수용성

전 UN교육권특별보고관 카타리나 토마세브스키는 보고서에서 “국가는 모든 학교가 국가가 개발한 최소한의 기준을 따르도록 해야 하며, 교육이 부모와 아동 모두가 수용할 만한 것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수용성은 자신이 받을 교육의 형식을 선택할 권리, 사설 교육 기관을 설립, 유지, 관리, 통제할 권리를 포함한다. 교육은 문화적으로 적절하여야 하고 질적으로 우수하여야 한다. 학생과 부모는 학생의 종교적 또는 여타 신념들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맹목적인 주입과 의무적인 학습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을 바꾸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교육 체제의 권위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적인 개종으로 볼 수 있다.

☞ 종교의 자유

적응성

통상적으로, 아동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의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적응성은 교육 시스템이 국내, 국제 사회 개발과 진보뿐만 아니라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함으로써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인권으로서의 교육권이 존중, 보호, 실현되도록 보장해야 할 정부의 의무는 단지 국가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는 또한 교육권의 전면적인 시행을 고취하고 지원해야 할 시민 사회의 임무이기도 하다.

3. 문화적 관점 차이와 논쟁적 이슈

오늘날, 국제비교관점에서 보면 대체로 교육권의 시행에서의 상당한 차이를 알 수 있다. 실로 교육권의 실현 정도는 지역별로 다르다.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어린이 대부분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 분포해 있다. 오늘날 모잠비크에서 태어난 아동은 평균적으로 4년의 정규 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동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15년 동안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아시아의 평균 학교 교육 기간은 8년으로 고소득 국가들의 절반 수준이다. 게다가 초등학교 입학률의 격차는 좁혀질 것인 반면,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의 평균 교육 기간의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이는 교육 질의 차이를 고려하기 이전의 문제이다: 잠비아 아동의 4분의 1 이하만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한편, 고등교육으로의 접근 기회는 대개 고소득 국가 국민들의 특권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교육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전 대통령, **2003년** 노벨 평화상

오늘날의 이러한 교육 불평등은 미래의 전 지구적인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직결된다.

우간다의 사례: 1990년대 후반, 빈곤 감소에 대한 우선권이 교육으로 옮겨갔다. 무상 초등교육이 도입되었고 공공 지출이 증가하였다. 1997년과 2003년 사이 초등학교 등록 학생의 수는 530만 명에서 760만 명으로 늘어났다. 초등학교 등록률은 하위 소득 인구 20%와 상위 소득 인구 20%가 같으며, 초등학교 학생의 성별 격차도 줄어들고 있다.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 전원의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목표는 머지않은 듯 보이지만, 중퇴율로 인하여 2015년까지는 전원 등록의 목표를 성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의 2010년 보고서 '소외계층 보듬기'는 지난 10년 동안 교육에서의 두드러진 발전을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국가들은 2015년까지는 **보편적 초등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약 7200만 명의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들과 7100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고, 현재의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다면 5600만 명의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들은 2015년에도 여전히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성인 문맹률을 반으로 줄이기 위한 목표 달성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데 문맹인 이들은 7억 5900만여 명에 달하고 이들 중 3분의 2은 여성이다.

(출처: UNESCO. 2010.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2010.)

UN 문해 10개년 2003-2012 사업은 여전히 세계 성인 인구의 20퍼센트가 기초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은 인간의 능력 및 오늘날의 지식 사회에서의 경제, 사회, 정치적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지극히 결정적이다.

문맹은 대개 극빈의 결과물이다. 여성의 문맹률이 남성보다 높다. 2008년에 문맹인 성인은 7억 9600만 명이었고 이는 전 세계 성인 인구의 약 17%였다. 이 중에서 여성은 5억 9백만 명 이상을 차지했다.

(출처: UNESCO. 2011.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2011.)

여전히 세계의 가난한 지역에서의 문해 수준이 낮다는 점은 주요 관심사이다. UN 총회 결의 56/116에 따르면 문해는 평생 학습 및 모두에게 기초 교육을 제공하고 변화하는 요건에 적응하는 것을 돕는 것의 핵심이다. **평생 학습 또는 모두를 위한 평생 교육**은 미래의 세계 지식 사회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술 지향적인 직업 및 기술 교육 역시 충분한 관심을 받을 필요가 있다.

많은 수의 빈곤층 국가들은 기초 교육보다는 무기에 상당한 지출을 하고 있다 – 1999년부터 2008년까지 35개국이 무력 분쟁에 휘말렸다. 초등학교 학령기임에도 학교에 등록하지 않은 전 세계 아동들 중 42%인 2800만 명은 무력 분쟁을 겪고 있는 빈곤국 어린이들이다.

(출처: UNESCO. 2011.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2011.)

2004년에 열린 **교육권과 교육에서의 권리에 대한 세계 컨퍼런스**는 "암스테르담 선언"에서 차별금지 원칙에 기반하여 모든 학생들의 교육권과 교육적 요구를 옹호함과 동시에 교육에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암스테르담 선언은 정부와 국제기구에, 그 중에서도 이민자, 소수자 등의 취약 집단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장시킬 것과 교육의 질 및 교사의 지위를 신장하고 학교 폭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증가하고 있는 평생 학습 수요를 충족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모국어 교육에 대한 문제도 논란거리를 낳았다. 언어적 소수 집단에 속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의 모국어를 배울 권리에 대한 보편적인 국제 인권이 규정되지 않았다. ICESCR 제27조에서는 단지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않아야 한다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모국어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1995년에 채택된 **소수 민족 보호를 위한 기본 협약**에서 유럽 평의회는 모국어를 학습할 권리를 인정하고는 있지만 모국어로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1992년에 공표된 **유럽 연합의 유럽 지역어 및 소수 언어 헌장**은 이에 조인하고 비준한 국가들에 모국어로 교육권을 선택 사항으로 제시하고 이를 촉진시키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러한 조치의 목표는 국가가 소수 언어 집단의 이중언어사용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 헌장이 제시하는 방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고 심지어 학교에서 그들의 모국어를 배울 권리조차 가지지 못하는 유럽의 롬[18] 민족이나 호주의 원주민 집단 등 소수 언어 집단들이 존재한다.

외국어에 의한 초등 교육을 다룬 학술 분석에서는, 예를 들면 프랑스어에 기초한 서아프리카 학생 교육은 학생들의 낮은 학업 성취도를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The African Academy

18)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집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차별적 언어다. 본 매뉴얼에서는 롬이나 로마니 등으로 대체하여 사용한다.

of Languages in Bamako, Mali는 **모국어로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 소수자 권리

아동이 그들의 교육권을 완전히 행사토록 하기 위한 주목할 만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여전히 특정 집단의 소녀들, 성인 여성 그리고 소수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차별, 불평등, 방치, 착취 등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Excluded and Invisible'이라는 제목으로 2006년에 유니세프에서 발간한 세계아동현황보고서와 Human Rights Watch의 보고서 'Failing our children: Barriers to the Right to Education'은 배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수많은 예시에 대해 기술하였다. 따라서 사회는 아동과 그 외 다른 집단들이 그들의 교육권을 완전히 향유하는 것을 막는 사회적 문화적 관행의 문제를 다루려는 노력을 반드시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그들의 안전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UN 특별 보고관인 키쇼어 싱은 교육 기회의 균등을 촉구하는 2011년 보고서에서 국가적 차원의 규제 체계를 강화하고, 또한 소외와 배제로 피해를 받은 이들이 정확히 원하는 바를 다룰 수 있는 적절한 자원분배를 보장해야 함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를 다룰 것을 권고하였다.

(출처: Kishore Singh. 2011.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Education. The promotion of equality of opportunity in education.)

☞ 차별금지 / 여성 인권

취약 집단과 교육권에의 접근

유네스코와 몇 몇 기구들 덕분에, 평등에 기초한 교육에의 완전한 접근에 대해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몇몇 집단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 집단에는 성인 여성과 소녀들, 소수자에 속하는 사람들, 난민과 이주자들, 토착민들, 장애인, 제대 군인과 소외 계층 청소년 등의 사회적 또는 경제적 취약 집단들이 포함된다. 이들 집단은 국가의 신고 의무 등에서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적 관심사와 조치의 중심이 되어 왔다. 교육권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은 이주자, 난민, 망명 신청자들의 교육권에 관한 2010년 보고서에서 차별의 제거, 성공적인 통합, 그리고 모든 종류의 교육과 교육 수준에서의 사회 정의와 사회 통합을 권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출처: Vernor Munoz. 2010.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education. The right to education of migrants, refugees and asylum-seekers.)

장애인들의 교육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1994년의 살라망카 컨퍼런스에서 채택된 The Framework for Action은 **통합교육**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학교는 아동들의 신체적, 지적, 사회적, 감정적, 언어적 또는 그 외의 다른 조건들과 상관없이 아동들을 수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인권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2호와는 반대로 학교에서의 인권은 종종 실현되지 않고 있다. 아동들은 여전히 체벌이나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 아동들은 미국과 소말리아를 제외한 모든 UN가입국들이 비준한 아동권리협약상의 아동권리에 대해 교육받지도 듣지도 못하고 있다.

☞ 아동 인권

그리하여 학교에서의 인권교육과 학교 민주주의는 증진되어야 한다. 교사들 역시 유네스코 협약과 권고에서도 대두된 것과 같이 정부의 압력을 받고 있거나 적절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보호받아야 한다. 학교 폭력은 또다른 문제로, 이는 최근 몇 년 간 증가하여 왔으며 역시 주목할 만한 문제이다. 2011년 4월을 기준으로 유네스코 Associated Schools Project Network (ASPnet)에 속한 180여개 국의 9000개 교육 기관에서 좋은 관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ASPnet은 2013년에 60주년을 맞이한다.

4. 이행과 모니터링

1945년 출범 이래로 국제 연합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 문제를 해결하고,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서의 국제적 협력"(유엔 헌장 제1조 제3호)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왔다.

정보, 지식, 기술의 교환을 통한 국제 협력은 교육권의 효과적인 실현에 필수적인데, 특히 저개발국 아동에게 더욱 그러하다. 교육권은 또한 경제 발전의 전제 조건이다. 교육의 제공은 모든 국가가 장기적이고 높은 우선순위를 지닌 투자로 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발전 과정에서의 자산으로서 각 개인의 인적 자원을 개발하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 같은 국제 금융 기구는 인적 자본 개발에의 투자로서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기구들이 해당 정부로 하여금 공공지출을 줄이도록 요구하며, 여

기에는 교육과 관련된 지출도 포함된다. 또는 이 기구는 긴박한 경제 상황에 따른 구조조정정책의 일환으로 심지어 초등교육에도 무상이 아닌 비용 지출할 것을 요구한다.

1990년 태국의 좀티엔에서 개최된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에 대한 세계회의**는 **모든 사람에게 기초교육**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고 지원적인 재정, 경제, 무역, 노동, 고용, 보건 정책에 의하여 뒷받침된 정치적 노력과 의지에 달려 있다고 선포하였다. 9개 국가에 대해 **유니세프**가 실시한 연구에서는 보편적 초등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보다 나은 결과물을 낳기 위한 여섯 가지의 광범위한 테마들을 발견하였다. 이들 여섯 가지는 바로 정치적, 재정적 노력, 공공 부문의 중심적인 역할, 공공부문의 형평성, 가계 지출 교육비의 감소, 보다 광범위한 인적 자원 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의 통합 등이다.

다카르에서 2000년에 열린 **세계 교육 포럼**은 교육 현장에서 착수된 가장 큰 평가 활동이었다. 150개 시민 사회 단체(주로 비정부기구) 이외에도 총 164개국이 참가하였다. 포럼이 낳은 획기적인 결과물이 바로 **다카르 행동계획**이다. ☞ 알면 좋은 내용, 트렌드

다카르 세계 교육 포럼 이후 **9개의 EFA Flagship 프로그램**이 개시되었다: HIV 및 에이즈 교육을 위한 사업; 영유아 보육과 교육; 장애인의 교육권; 통합을 향하여; 농촌 지역민들을 위한 교육; 응급상황과 위기상황에서의 교육; 효과적인 보건 중점 학교; 교사와 교육의 질; UN 여자 어린이 교육 사업; UN 문해 10개년 사업

교육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강력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UN 전문 기구인 **유네스코**는 이러한 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1946년 설립 이래 교육은 유네스코의 주된 기능 중 하나이다. 유니세프나 국제노동기구 등의 다른 기구들과 협력하면서, 유네스코는 교육 개혁의 착수와 교육권의 완전한 실현을 주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유네스코의 이러한 활동은 유네스코가 연 수많은 포럼, 회의, 실무단, 국가 및 정부 간 국제 기구, 비정부기구들과의 협력 작업들뿐 아니라 유네스코가 집적해온 광범위한 규범들의 집합, 다양한 문서들과 보고서들로도 증명된다. 유네스코는 이와 같이 교육 현장에서 국제적 협조를 선도하는 기관이다.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는 유네스코의 활동이 193개 회원국에 잘 뿌리내렸다고 장담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의 유네스코의 활동은 3가지의 전략적 목표 아래 확립되어 있다:

- 교육 기본권의 확대
- 교육의 질의 향상
- 교육 정책의 대화, 실험, 혁신, 확산의 촉구 및 정보와 성공 사례의 공유

"교육은 나라의 가난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길이 아니다.

가난과 맞서 싸우기 위한 길이다."

Julius Nyerere

유네스코는 협약의 규정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의무에 더 나은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메커니즘들을 개발해왔다. 유네스코가 국가들로 하여금 제출토록 요구하는 **정기 보고서**들은 당사국으로 속해 있는 협약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알리는 효과가 있다.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1960)의 당사국들, 그리고 같은 해 제정된 교육상 차별금지에 관한 권고에 따라 모든 회원국은 5년에서 7년마다 그들 국가가 채택한 입법 규정과 행정 규정 및 협약의 적용을 위해 착수에 나선 조치들을 보고해야 한다. 협약 및 권고에 대한 위원회가 각기 다른 보고 의무 하에 회원국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한다. 또한 교육권을 감시하기 위한 유네스코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사회권위원회) 전문가 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이에 더하여 1978년에는 집행 이사국이 유네스코의 권한 내에서 회원국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혐의 주장에 대해 **비밀리에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 절차의 목적은 협력, 대화, 화해의 정신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신뢰할 수 있는 지표의 채택과 사용, 국가 간 비교를 하여 순위를 매기는 등의 방법 등은 교육권의 점진적인 실현 감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교육 부문에서 신뢰할 만한 시교차적 **지표**에는 문맹률, 등록 비율, 학업 완수율과 중퇴율, 학생과 교사의 비율, 그리고 전체 공공 지출 중 교육 부문 지출의 퍼센티지나 국방 부문 등 다른 부문에의 지출과의 비교 등을 들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2002년부터 유네스코가 매년 발간해 온 **EFA 세계 감시 보고서**는 보다 광범위한 관점을 가지고 '세계 아동 현황'에 관한 유니세프의 연례 보고서를 보완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였다.

2002년 12월,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2014년을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DESD)'**으로 선포하였다. 유엔의 선도 기관으로서, 유네스코는 기초 교육의 확대와 향상, 공공의 인식을 증진시키고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추구한다.

유엔 인권 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 위원회는 1998년에 **교육권 특별 보고관** 자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에게 교육권의 실현에 있어 직면하는 난점과 함께 초등교육에의 접근성 등을 포함한 전 세계교육권의 점진적인 실현의 실태를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였다. 유엔으로부터 임명된 최초의 교육권 특별 보고관은 Katarina Tomasevski로, 그는 교육에 대한 권리에 기초한 접근에 초점을 맞추었다. Tomasevski는 보고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제한적인 지원에 환멸을 느끼고 6년 후에 보고관 자리를 떠났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Venor Munoz Villalobos가 교육권 특별 보고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의 후임자는 Kishore Singh이다.

Villalobos가 2005년 보고서에서 지적한대로 교육권에 대한 국내 법원과 국제 법원에서의 **사법심사 가능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교육권의 사법심사가능성에서 중요한 이슈는 교육에서의 차별로 특히 균등한 교육 기회와 관련된 것이다.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의 협약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기구이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정기적으로 제출한 정부 보고서를 심사하고, 협약에 명시된 권리들의 가장 효과적인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화를 추진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 위원회는 유네스코와 긴밀히 협력한다. 교육권의 완전한 실현은 여러 수단의 동원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데, 즉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신뢰하에 **신고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한 NGO의 이면보고서(Shadow reports)[19], 전문가 협회의 로비 등이 있다.

이행의 문제점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는 보통 권리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상당한 자본을 지출하는 것이 요구된다. 확실히, 많은 국가들이 경험한 바에 따르면 교육은 주된 정부 지출 항목 중 하나이다.

19) 정부 보고서와 달리, NGO들이 해당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따로 제출하며, 이를 새도우 리포트 또는 이면 보고서라고 한다.

개발도상국 아동이 교육권을 실현하는 것을 방해하는 주된 장애물은 빈곤이다. 아동들이 다닐 학교가 없는 문제는 이점에서 문제가 적은 편이다. 실로, 개발도상국 아동의 90% 이상이 초등교육을 받기 시작한다. 진짜 문제는 학생들의 중퇴율이나 유급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빈곤은 가족으로 하여금 수업료를 지불하거나 책값과 학교 교재비를 대는 것은 물론, 학교 교육이 무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빈곤은 궁핍한 가계에 아동의 노동이 보탬이 되는 상황에서 아동을 학교에 보내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여아에 대한 교육보다 더 효과적인 개발 방법은 없다."

코피 아난, 전 UN 사무총장. **2004.**

자금 부족은 정부로 하여금 학교의 설립과 유지, 교사 양성 학교의 운영, 유능한 교사와 행정 직원의 채용, 교수 자료와 그 외의 용품들의 제공 및 학생들의 통학을 위한 대중교통 시스템의 제공 등을 하는 것을 막는다. 이 모든 것은 직접적으로 국가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에 달려 있다. 세이브 더 칠드런 기금에 의해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채무의 부담으로 인하여 수업료를 부과하거나 인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로 인해 가정이 부담해야 할 교육비가 상승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결과적으로, 수백만 명의 아동들이 학교를 다닌 적이 없거나 또는 기초 교육 과정을 마치지 못하게 되었다.

또 다른 요인은 **아동 노동**의 광범위한 활용이다. 불행하게도 많은 가정들은 겨우 먹고 살기 위하여 아동 노동으로부터 얻는 수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 노동 기구의 활동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예로 1999년의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과 아동 노동 철폐에 관한 국제 프로그램 등의 몇몇 프로그램들이 있다. 2010년 헤이그 세계아동 노동 컨퍼런스는 2016년까지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로드맵에 대해 동의하였다.

5-14세의 아동들의 노동 철폐에 가장 큰 진전이 있었는데 노동에 종사하는 아동들의 수가 10%까지 떨어졌다. 노동에 종사하는 여자 어린이의 비율도 15% 감소하였다. 그러나 남자 어린이들의 경우 8백만 명 또는 7% 증가하였다. 15-17세 사이에서는 20% 증가하였는데 이는 5200만 명에서 6200만 명으로 증가한 것이다.

(출처: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ILO). 2010. Accelerating Action against Child Labour.

Global Report under the follow-up to 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빈곤과 아동 노동은 특히 **여아 교육**에 중요한 장애가 된다. 많은 여성들은 생존하기 위하여 다소 어린 나이에서부터 중노동을 해야만 한다. 그들은 가족의 요구에 부응하고 힘든 가사를 떠맡도록 요구받을 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에 엄마로서의 역할과 구시대적 사고방식에 따른 사회적 기대로 인한 문제에도 직면한다. 여아 교육에 대한 이와 같은 전통적인 관점은 비록 근시안적이고 편향적이지만 여전히 지배적이며 결과적으로 부모가 여자 어린이를 학교에 보낼 동기를 결여시킨다. 토착민이나 유목민 공동체에 속하거나 소수 민족인 여성, 버림받은 여성, 장애를 가진 여자 어린이들과 같은 경우, 심각한 차별에 직면한다.

따라서 여자 어린이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하여 인간으로서 지닌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을 가능케 하기 위한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000년에 다카르에서 개최된 세계교육 포럼에서 '10개년 유엔 여자 어린이 교육 사업'이 개시되었는데 이는 여자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과 성 차별 철폐에 대한 인식 제고에 목표를 둔 것이다.

☞ 여성 인권 / 아동 인권 / 차별금지

HIV 및 AIDS는 2004년에 3백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고 교육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타격이 컸다. 케냐, 탄자니아, 잠비아의 경우 2005년에 최소 600명의 교사를 잃었다. AIDS로 인한 교사 결원은 아프리카 학교에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출처: UNESCO. 2005.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2006.)

HIV 및 AIDS에 관한 유엔 합동 계획(UNAIDS)는 국가가 HIV 예방, 치료, 관리, 지원에의 보편적인 접근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는 데 세계적인 진전을 촉진하고 HIV의 확산을 방지하고 반전시키는 데 목표를 둔 새로운 2011-2015년 전략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며 2015년까지의 AIDS 등 질병 퇴치를 목표로 출범한 밀레니엄 개발 목표에 기여할 것이다.

분쟁 지역 국가에 사는 2800만여 명의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들은 현재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학교는 보호구역이자 평화지대로서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분쟁 지역에서 학교는 **전쟁 타깃**이 된다- 이는 1949년 제네바 협약의 명백한 위반이다. 유엔은 아동의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감시하는 광범위한 시스템을 실행하여 왔다. 분쟁 상황에 처한 부모, 교사, 아동은 그들이 분쟁 지역에 있건 본국 내 또는 외에서 난민 신분에 있건 적어도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교육의 기회를 유지하려는 노력에 있어 그들이 보이고 있는 놀라운 야

망, 혁신과 용기이다. 부모들은 교육이 아이들에게 정상 상태의 느낌을 제공하고 그들이 전쟁 등으로 인해 근거지를 잃게 되더라도 지녀나갈 수 있는 유일한 자산임을 이해하고 있다.

유니세프 진상 조사 보고서는 교육이 분쟁의 모든 국면에서 평화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평화 구축을 위한 지배적인 접근법이 여전히 교육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출처: UNESCO. 2011.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2011.; UNICEF. 2011. The Role of Education in Peacebuilding.)

"새로운 국가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만약 평화와 정의를 원한다면, 직업과 번영을 원한다면,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공정하고 관용적이길 원한다면, 학교에서 이를 시작해야 한다."

JOSE Ramos-Horta, 노벨 문학상 수상자. 1996.

유엔 교육권 특별보고관 Kishore Singh은 그의 2011년 잠정 보고서에서 긴급 상황에서 교육을 위한 적절한 자금 지원을 보장하고 공격으로부터의 학교 보호를 증진하며 여자 어린이들과 소외 집단의 배제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권고하였다.

(출처: Kishore Singh. 2011. Interim-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Education. The right to education (Domestic financing of basic education).)

☞ 분쟁 상황에서의 인권

알고 있었나요:

10년 내 모든 개발도상국에서의 보편초등교육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70-80억 달러가 들 것이다. 이 비용은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의 7일분, 세계 외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환투기 비용 7일분, 북미 지역 부모들이 매년 자녀에게 사 준 장난감 비용의 절반 미만, 유럽인들이 매년 컴퓨터 게임이나 미네랄 워터에 지출하는 비용의 절반 미만에 해당한다.

(출처: Kevin Watkins. 1999. Education Now. Break the Cycle of Poverty.)

알면 좋은 내용

1. 모범 사례

• **이집트** 정부는 정규 교육 시스템에 여성 친화적 커뮤니티 스쿨 개념을 성공적으로 통합시키고 있으며, 학교 보건을 조성하고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포괄적인 개혁에 착수하였다.

• **말라위, 우간다, 탄자니아, 케냐**는 각각 1994년, 1997년, 2002년, 2003년에 학교 수업료를 무료로 함으로써 부모들의 교육비 지출을 줄였다. 몇몇 국가에서는 또한 교복을 폐지하였다.

• 카라치를 기반으로 한 비정부기구와 유니세프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파키스탄**의 부스티 프로그램은 아동들이 정규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이다. 대상 연령은 5세에서 10세이고, 학생들의 약 4분의 3은 여자 어린이들이다. 이 사업은 가정에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통상적인 성 편견을 반전시키는 데 부분적으로 성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0개 이상의 홈 스쿨을 설립하였으며 등록 학생들을 6000명이 넘고 수업료는 국영 초등학교의 평균 수업료보다 훨씬 싼 6달러이다.

• **모리타니**는 조혼을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하였고 기초교육을 의무화하였고 근로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모리타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동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모든 주요 도시에 소년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촉진하고 있다.

• **중국**의 마산 현에서는 여자 어린이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마을과 가정에 대출금이나 개발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소수 민족 지역의 여자 어린이들이 양질의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양성 평등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이 계획의 장기적인 목적은 여성들의 교육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여성들을 사회-경제적 발전의 주류에 편입시키기 위함이다.

• **인도**의 뭄바이에서는 교육자, 공동체 그룹, 기업 후원자와 정부 공무원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프라탐 뭄바이 교육 사업을 통해 1600개의 학교가 설립되었고 1200개의 초등학교를 현대화하였다.

• 정규 교육 시스템에서 여자 어린이들이 배제되어왔던 **아프가니스탄**에서 유니세프는 1999년부터 여자 어린이와 남자 어린이 모두를 위한 홈 스쿨을 지원하는 대담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중고 컴퓨터의 기부로 시작된 **태국**의 CHILD 프로젝트는 아동 학습과 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관찰하고 있다.

• **말리**는 2015년까지 보편 초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한 'Fast Track 사업'

을 채택하였다.

• 세계은행은 2005년에는 43.2%였던 초등학교 학업 완수율이 2010년에는 55.7%로 증가하였고 그 중 남자 어린이의 비율은 64.4%, 여자 어린이의 경우는 47.6%라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교육 부분에서 UN의 밀레니엄 개발 목표에 도달하기에는 특히 여자 어린이의 경우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World Bank. 2011. Mali–Education Sector Investment Program II: P093991 – Implementation Status Results Report: Sequence 10.)

•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로 인해 교육 부문 지출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2004년에 스페인은 **아르헨티나의 교육 스왑 협정** 제안에 동의하였다. 그에 따라 아르헨티나는 1억 달러를 스페인에 상환하는 대신 특별 교육 기금에 이체하였다. 이 새로운 기금은 아르헨티나의 가장 빈곤한 3개 지역의 21만 5000명의 학생들을 지원할 것이다. (출처: UNESCO. 2005.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2006; Kevin Watkins. 1999. Education Now. Break the Cycle of Poverty.)

교육권에 관한 프로젝트는 당시 유엔 교육권 특별보고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권에 관한 교육을 위한 포럼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1년 당시 특별보고관이었던 토마세브스키에 의해 설립되었다. 유일하게 공공 접근이 가능한, 오직 교육권 문제만을 다루는 인권 자료 사이트로, 이 프로젝트는 교육을 통한 모든 인권의 증진을 촉진하고 교육권의 세계적인 실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며 교육 계획을 위한 지식의 제공과 더불어 인권 침해 사례를 폭로하고 인권 침해에 반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www.right-to-education.org)

2. 동향

2000년 4월 28일 세네갈의 다카르에서 열린 세계 교육 포럼에서 채택된 **다카르 행동 계획 – 모두를 위한 교육**은 교육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전 국제 공동체의 헌신을 보여준다. 다카르 행동 계획은 2015년까지 모두를 위한 기초 교육을 달성하기 위한 6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1. 영유아, 특히 가장 취약하고 혜택 받지 못한 아동들을 위한 종합적인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확대와 향상
2. 모든 아동, 특히 여아, 어려운 환경의 아동, 소수 민족 아동들이 양질의 무상 의무

초등교육을 제공받고 이수할 수 있도록 보장

3. 적절한 학습과 생활 기술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모든 청소년과 성인의 학습 요구 충족
4. 2015년까지 성인, 특히 여성 문해율을 50% 향상시키고 모든 성인에게 기초교육과 평생교육의 균등한 기회 보장
5. 2005년까지 초중등 교육에서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양질의 기초교육에서 여아와 완전하고 평등한 기회와 성취도 보장에 초점을 맞추어 2015년까지 교육의 양성평등을 달성
6. 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고 수월성을 확보하여 문해, 수리력, 필수 생활 기술 등의 측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일정 정도의 학업 성과 달성

2005년까지 초중등 교육에서의 성비 불균형을 제거함으로써 모든 아동의 **무상 의무 초등교육**과 양성 평등 및 여성의 자력화를 달성하고 2015년까지 모든 수준의 교육을 남아와 여아에게 모두 제공한다는 목표의 달성은 2000년 9월에 8번의 **밀레니엄 개발 계획**들 중 2번째와 3번째에 인정되었다. 교육에서의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약속은 2005년 9월에 있었던 유엔 정상 회의에서 재확인되었다. 또한 아동 사망률 감소와 모성 보건의 향상 또는 HIV 및 AIDS 퇴치 등의 다른 밀레니엄 개발 계획들 역시 적절한 교육 정책 없이는 달성될 수 없을 것이다. 교육에 HIV와 AIDS가 주는 영향에 대한 사업과 같은 'EFA 간판 사업'은 EFA 목표를 지지하는 다자 파트너 협력 메커니즘인데 이 사업들은 예시들을 제공한다.

모두를 위한 교육을 향한 진전: 엇갈린 결과들

1999년 이래의 긍정적인 추세

- 1999년부터 2008년까지, 5200만 명의 아동들이 추가로 초등학교에 등록했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서남 아시아의 등록률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계는 학교 등록에 관하여 성비 균형을 향해 느린 속도로 이동하는 추세를 보인다.
- 저소득 국가들은 교육에 관한 국가의 재정적 노력을 상당히 확대해나가고 있다.

여전히 남아 있는 도전 과제들

- 만약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5년에는 초등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동의 수가 5600만 명에 이를 것이다.
- 2008년의 재정 위기에 뒤이어 빈곤국의 다수가 모두를 위한 교육의 실현 목표를 달성할 전망은 매우 낮아질 것이다.
-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정규 학교 수업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는 있지만, 아동이 학교를 중퇴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중요한 요인은 부모가 아동들의 학비를 부담할 수 없기 때문임이 여러 조사에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
- 학교 중퇴 인구 간 성별 격차가 좁혀져왔지만 여전히 여자 어린이의 비율은 2008년에 53%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성별 격차는 서남 아시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데, 서남 아시아의 여자 어린이들 중 59%가 학교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출처: UNESCO. 2011.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2011.)

과거에는 무상 초등 교육에 대해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세계은행**은 2002년에 무상 의무 초등 교육을 향한 보다 빠른 진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부자와 개발도상국 간의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서 **EFA Fast Track Initiative**를 시작하였다. 두 번째 밀레니엄 개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진지한 공약을 보여주는 저소득 국가들은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세계은행 총재의 주재 하에 기부 커뮤니티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0년 말까지 EFA FTI는 약 30000개의 교실 건설을 지원하였고 20억 권 이상의 교과서를 제공하였으며 개발도상국에 20억 달러 이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였다. 게다가 FTI는 교육 원조가 보다 잘 편성되고 효과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부자와 개발도상국 파트너가 협업하는 것을 돕고 있다. 이 사업은 1900만 명 이상의 아동들이 처음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2011년에는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교육의 상업화

세계화는 교육의 상업화를 증가시켰는데, 이는 교육이 인간의 권리로부터 나오는 공익이 되기보다는 돈을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서비스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업체로서 설립되는 사설 교육

기관은 공교육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항하고 전문가 협회가 표명한 우려에 응하여 유럽 연합은 도하 라운드에서 교육 서비스에 관하여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아 왔다.

3. 연혁

1946 유네스코 설립: 교육 기회 균등의 이념

1948 세계인권 선언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다. 교육은 모든 사람의 기본권으로 선언되다.

1959 아동권리선언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다. 교육은 모든 아동의 권리로 선포되다.

1960 유네스코 교육에서의 차별 방지에 관한 협약

1965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이 피부색 또는 인종에 관계없이 교육을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로 선포하다.

1966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3조

1973 국제노동기구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1979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이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와 교육의 평등권을 요구하다.

1985 제3차 여성회의에서 교육이 여성의 지위 향상의 기반으로 선포되다.

1989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990 모든 이를 위한 교육에 관한 세계선언이 태국의 좀티엔에서 발표되다. UNDP, UNESCO, UNICEF, 세계은행, 이후 UNFPA가 공동주최한 컨퍼런스는 기초 교육에 관한 확장된 시야에 대한 글로벌 합의를 보여주었다.

1993 인도의 뉴 델리에서 인구조밀 9개국 교육장관회의가 개최되다. 각 정부의 대표자들은 2000년까지 의무초등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에 관한 세계계획이 몬트리올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 채택되다.

1994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이들의 교육을 위한 국제회의: 접근과 기회 균등이 스페인의 살라망카에서 개최되다. 회의 참석자들은 모든 국가는 국내 교육 계획에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이들을 위한 교육을 포함시켜야 하며 통합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1997 아동 노동에 관한 국제 회의

1998 교육권 특별 보고관 임명

1999 교육권에 관한 일반 논평 13번

1999 국제노동기구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에 관한 협약

2000 세네갈의 다카르에서 개최된 세계교육 포럼에서 다카르 행동 계획이 채택되다.

2000 천년 총회: 2015년까지 모든 아동들의 초등 교육 보편화 목표 수립

2003 유엔 문해 10개년(2003-2012)

2004 교육권과 교육에 관한 권리에 대한 암스테르담 세계 회의

2005 유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 10개년 2005-2014

2005 인권 교육을 위한 세계 프로그램: 제1단계 (2005-2009) - 초중등 교육 시스템에서의 인권 교육; 제2단계 (2010-2015) 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과 교사, 교육자, 공무원, 법집행 공무원, 군인 트레이닝 프로그램

2006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은 모든 장애인이, 교육권을 포함한 모든 인권을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이를 증진, 보호, 보장하자고 약속하였다.

2009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에 관한 유네스코 세계 회의

추천 활동

활동 I : 이용 가능한가? 접근 가능한가? 수용 가능한가? 적응 가능한가?

PART I: 소개

이 활동은 교육권에 관한 내용에 등장한 이슈들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활동이다.

PART II: 일반적인 정보

활동유형: 역할극, 팬터마임

목적과 목표: 역할극 기법은 학습을 강화하기 위한 기법이다. 역할극의 목적은 참가자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경험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공감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상그룹: 청소년, 성인

그룹크기: 약 20명

소요시간: 90분

준비물: 플립 차트, 마커, 교육권에 대한 국가의 4가지 의무(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적응성) 내용에 해당하는 이 책의 복사본

관련기술: 연기력과 언어적 능력, 공감 능력, 창의력

PART III: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지시사항:

이 활동의 목적이 이 교육 책자에 담긴 내용을 극의 형태로 제시하는 것임을 설명하라. 먼저 국가의 4가지 의무의 정확한 의미를 소리내어 읽도록 하고, 모든 참가자들이 내용을 이해하였는지 확인한다. 그 후 4-6명의 소그룹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각 그룹에 커다란 종이와 마커를 배부한다. 각각의 그룹은 역할극을 위해 앞서 설명한 4가지 의무 중 하나를 택한다. 교수자는 각 그룹에 10분의 시간을 주어 교육 내용에 관한 생각을 브레인스토밍하고 역할극에서 가장 초점을 맞출 2-3개 정도의 핵심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도록 한다. 이제 그룹별로 30분의 시간을 더 주고 극을 디자인하고 연습할 시간을 준다. 교수자는 이 활동이 반드시 그룹의 모든 일원의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모든 조원이 역할극을 만드는 데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해야 한다.

30분의 시간이 지나면 교수자는 그룹을 불러 모아 원으로 빙 둘러 앉도록 해 서로의 역할극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역할극이 끝날 때마다 극을 마친 그룹이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해 다른 이들이 피드백을 하고 토론할 시간을 준다. 역할극을 한 참가자에게 먼저 질문하고 그 다음에 극을 관찰한 참가자가 자신의 주장을 펴도록 한다.

피드백 : 실행한 역할극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 활동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는가? 참가자들이 처음에 상상했던 것보다 더 또는 덜 어려웠나? 무엇이 가장 어려운 측면이었나, 또는 역할극을 통해 제시하기 가장 어려운 점들을 무엇이었나? 이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웠나? 각 그룹 간의 유사점 또는 차이점은 무엇이었나?

방법론적 힌트 : 역할극은 다양한 형태로 실행할 수 있는데, 그 모든 다양한 형태들에서 참가자들이 연기자뿐 아니라 관객들에게도 보통 강렬한 감정을 환기시키는 내용을 연기한다. 따라서, 조장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평가하도록 독려해야 하고 그 후 그 내용과 인권과의 연관성을 분석해야 한다.

응용을 위한 팁 :

• 격렬한 행동이 나타날 때 "잠깐"을 외치고 연기자들에게 그 순간 그들이 느낀 감정에 대해 설명하게 하거나 또는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른 이들로 하여금 분석하게 한다.

• 경고하지 않고 행동을 멈추게 한 다음 연기자들에게 역할을 바꾸도록 하고 그 시점부터 활동을 지속시킨다.

• 각각의 연기자 뒤에 누군가가 서 있게 한다. 중간에 활동을 정지시키고 연기자 뒤에 서 있던 '그림자'에게 자신 앞에 있는 연기자가 연기하는 극중 인물이 느끼고 생각하는 바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한다.

PART IV : **후속활동**

인권에 관련된 희곡이나 그 외의 문학 장르에 속하는 작품을 읽고 당신의 지역 공동체 멤버들과 위 작품을 토대로 한 연극 상연을 계획한다.

관련된 권리들: 모든 인권들, 사회 · 문화적 권리들

활동 II : 모두를 위한 교육?

PART I : **소개**

'모두를 위한 교육'은 세네갈의 다카르에서 개최된 세계 교육 포럼의 목적들 중 하나이다. 하지만 교육권의 실현은 많은 다른 요인들과 연관되어 있고 또 영향을 받는다.

PART II : **일반적인 정보**

활동유형: 성찰, 창의적 전달

목적과 목표: 교육이 인간의 권리임을 이해하고 '모두를 위한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의 난점을 이해하기

대상그룹: 청소년, 성인

그룹크기: 최대 25명

소요시간: 120-180분

준비물: UDHR과 관련된 글의 사본; 인권으로서의 교육권의 복잡성, 교육과 다른 주제들에 대한 간섭에 관한 기사, 보고서, 자료들; 가로 세로 8cm 정도의 카드보드 카드; 가위; 펜과 마커

준비사항: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라

관련기술: 창의적 기량, 토론을 좋아하고 복잡한 상호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PART III :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지시사항 :

참가자들은 함께 '기억 게임'을 만든다. 이 기억 게임에는 여러 쌍의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들의 반수에는 '여자 어린이', '돈', '기아' 등의 핵심 단어들만 적혀 있으며 나머지 반에는 카드에 적힌 핵심 단어들이 교육의 분야에 어떤 식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짧게 설명되어 있다. 참가자들에게 3-4명으로 구성되는 그룹을 만들도록 하고, 각 그룹에 카드를 배부한 다음 모든 자료들을 테이블에 늘어놓는다. 기억 카드의 기반이 될 텍스트를 선택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다.

몇 개의 개념들이 카드의 각 쌍을 구성한다: 여자 어린이/여성 – 교육 기회의 제한; 소수집단 – 교육 기회의 제한, 모국어 교육 부재; 군대 – 국가의 교육 예산과 국방 예산의 비교; 세계화 – 교육 시스템에 대한 결과; 인터넷 – 교육에 대한 결과; 돈 – 돈 없으면 학교도 못 간다?; 음식/기아 – 기본적 욕구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교육의 어려움; 인권 교육 –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누구의 책임인가?

모든 카드의 짝이 맞춰졌으면 교수자는 전체 그룹을 대상으로 (만약 그룹이 많으면 2개의 라운드로 나누어서) 기억 게임을 실시한다. 기억 규칙: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카드의 면이 위로 향하도록 카드들을 테이블 위에 놓는다. 게임을 시작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두 장의 카드를 뒤집는다. 만약 그 두 장의 카드가 짝을 이루면 카드를 뒤집은 사람은 그 카드들을 가질 수 있다; 만약 카드들이 짝을 이루지 않는다면 그 카드들을 다시 뒤집고 나서 다음 사람이 다음 카드 두 장을 뒤집는다.

피드백 :

참가자들로 하여금 활동을 하면서 그들이 경험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한다; 카드의 짝을 맞추는 것이 어려웠나? 그들이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한 통찰을 얻었거나 새로운 것을 배웠는가?

- 각각의 그룹으로 하여금 결과를 발표하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 참가자들이 이 활동을 어떻게 즐겼는지 그리고 무엇을 배웠는지 검토한다.

-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만든다: 각 그룹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왜 우리는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주장이 가장 설득적이었으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상황은 어떠한가?

방법론적 힌트 : 게임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참가자들이 최소한 20쌍의 카드를 만들도록 한다.

PART IV : **후속활동**

참가자들이 속한 나라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의 목표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들에 관하여 토론해보자. 만약 매우 활발하고 창의적인 그룹이라면 참가자들은 아마도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한 활동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다.

관련된 권리들 : 세계화, 정치적 참여

(출처: 유럽 평의회가 발간한 2002년 책자의 응용. Compass – A Manual on Human Rights Education with Young People.)

참고자료

Alfredsson, Gudmundur. 2001. The Right to Human Rights Education. In: Eide, A. C. Krause and A. Rosa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 Textbook. Leide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pp. 273–288.

Beiter, Klaus–Dieter. 2006.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Education by International Law. Leide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Beiter, Klaus–Dieter, 2006.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Education by International Law Including a Systematic Analysis of Article 13 of the ICESCR. Leiden: Martinus Nijhof Publishers.

Benedek, Wolfgang. 2007. The Normative Implication of Education for All (EFA): The Right to Education. In: Abdulqawi A. Yusuf (ed.). UNESCO: 60 Years of Standard– Setting and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Leide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pp. 295–311.

Bruns Barbara, Mingat Alain and Ramahatra Rakotomalala. 2003. Achieving Universal Primary Education by 2015: A Chance for Every Child. Washington. D.C.: World Bank.

Coomans, Fons. 1998. Identifying Violations of the Right to Education. In: Van Boven, Theo, Cees Flinterman and Ingrid Westendorp (eds.). The Maastricht Guidelines on Violation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trecht: The

Netherlands Institute for Human Rights.

Coomans, Fons. 1995. Clarifying the Core Elements of the Right to Education. In: Coomans, Fons and Fried Van Hoof. The Right to complain about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 Utrecht: The Netherlands Institute for Human Rights.

Council of Europe. 2002. COMPASS – A Manual on Human Rights Education with Young People.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Available at: http://eyeb.coe.int/compass/

Council of Europe et al. 2009.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School Systems of Europe, Central Asia and North America: A Compendium of Good Practice. Strasbourg/Warsaw: Council of Europe.

Daudet, Yves and Kishore Singh. 2001. The Right to Education: An Analysis of UNESCO's Standard-Setting Instruments. Paris: UNESCO.

De Groof, Jan and Gracienne Lauwers (eds.). 2004. Access to and Equality in Education. Paris: UNESCO, European Association for Education Law and Policy (ELA) and Wolf Legal Publishers.

Delbruck, Jost. 1992. The Right to Education as a Human Right. In: Germ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35, pp. 92-104.

Deutsches Institut fuer Menschenrechte und Europarat (Hg.). 2005. Kompass: Ein Handbuch zur Menschenrechtsbildung fuer die schulische und ausserschulische Bildungsarbeit. Bonn: 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European Centre for Global Interdependence and Solidarity (ed.). The Interdependent. Available at: www.coe.int/T/E/North-South_Centre

Fernandez, Alfred and Siegfried Jenkner. 1995. International Declarations and Conventions on the Right to Education and the Freedom of Education. Frankfurt am Main: Info3.Verlag.

Guenther, Cecile. 2007. Die Auslegung des Rechts auf Bildung in der europaeischen Grundrechtsordnung: Eine Analyse von Schutzbereich und Reichweite . dargestellt am Beispil des Art. 14 EU-Grundrechtecharta. Frankfurt am Main: Lang-Verlag.

Hodgson, Douglas. 1998. The Human Right to Education. Aldershot: Ashgate Publishing.

Human Rights Watch (HRW). 2005. Failing Our Children: Barriers to the Right

to Education. Available at: http://hrw.org/reports/2005/education0905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2010. Accelerating Action against Child Labour. Global Report under the follow-up to 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vailable at: 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dcomm/documents/publication/wcms_126752.pdf

Kirchschlaeger, P. G. and T. Kirchschlaeger. 2009. Answering the 'What', the 'When', the 'Why' and the 'How': Philosphy-Based and Law-Based Human Rights Education. In: Journal of Human Rights Education, 1, pp. 26-36.

Lohrenscheit, Claudia. 2007. Das Recht auf Menschenrechtsbildung. Frankfurt am Main: IKO-Verlag.

Munoz Villalobos, Vernor. 2010.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education. The right to education of migrants, refugees and asylum-seekers, A/HRC/14/25 of 16 April 2010.

Nambissan, Geetha.B., Naila Kabeer and Ramya Subrahmanian (eds). 2003. Child Labour and the Right to Education in South Asia: Needs Versus Rights? New Delhi: Sage Publications Ltd.

Nowak, Manfred. 2001. The Right to Education in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Eide, Asbjorn, Catarina Krause and Allan Rosas (ed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Hagu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pp. 245-272.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1999.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995-2004) No. 3. A compilation of provisions of international and regional instruments dealing with human rights education. Geneva: United Nation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06.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Paris: OECD Publishing.

Overwien, Bernd and Annedore Prengl (Hg.). 2007. Recht auf Bildung. Zum Besuch des Sonderberichterstatters der Vereinten Nationen in Deutschland. Opladen: Budrich.R

iedel, Eibe. 2005. Allgemeine Bemerkung Nr. 13 . Das Recht auf Bildung

(Artikel 13). In: Deutsches Institut fuer Menschenrechte (Hg.). Die ‚General Comments' zu den VN-Menschenrechtsvertraegen. Baden-Baden: Nomos, pp. 263-284.

Singh, Kishore. 2011.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Education. The promotion of equality of opportunity in education, A/HRC/17/19 of 18 April 2011.

Singh, Kishore. 2011. Interim-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Education. The right to education (Domestic financing of basic education), A/66/269 of 5 August 2011.

Steffek, Helle. 2006. Das Recht auf Bildung in der Europaeischen Gemeinschaft: Moeglichkeit und Notwendigkeit gemeinschaftsrechtlicher Vorgaben zur (Grund-)Bildung in Europa. Hamburg: Kovac.

Tajmel, Tanja and Klaus Starl. 2009. Science Education Unlimited . Approaches to Equal Opportunities in Learning Science. Munster: Waxmann.

The World Bank Group. 2006. Education For All . Fast-Track Initiative (EFA-FTI). Available at: www1.worldbank.org/education/efafti

Tomasevski, Katarina. 2006. Human Rights Obligations in Education: The 4-A Scheme. Nijmegen: Wolf Legal Publishers.

Tomasevski, Katarina. 2005. Has the Right to Education a Future within the United Nations? A Behind-the-Scenes Account by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Education 1998-2004. In: Human Rights Law Review, Vol. 5, 2, pp. 205-237.

Tomasevski, Katarina. 2004. Manual on Rights-Based Education: Global Human Rights Requirements Made Simple. Bangkok: UNESCO.

Tomasevski, Katarina. 2003. Education Denied, Costs and Remedies. London: Zed Books.

UNESCO. 2011. Education for All,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2011. The hidden crises: Armed conflict and education, Paris: UNESCO.

UNESCO. 2005. Education for All,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2006. Literacy for life. Paris: UNESCO.

UNESCO. 2005. World Report. Towards Knowledge Societies. Paris: UNESCO.

UNESCO 2003. Education for All,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2003/04.

Gender and Education for All: The Leap to Equality. Paris: UNESCO.

UNESCO. 2001. Education for All,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2002. Education for All . Is the World on Track? Paris: UNESCO.

UNESCO and UNICEF (eds.). 2007.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Education for All. Paris/New York: UNESCO/UNICEF.

United Nations. 2001. Beijing to Beijing+5. Review and Appraisal of the Implementation of Beijing Platform for Action-Report of the Secretary General. New York: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2001. We the Peoples: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in the 21st Century. Report by the UN Secretary-General. New York: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2011. The Role of Education in Peacebuilding. A synthesis report of findings from Lebanon, Nepal and Sierra Leone. New York: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2006. Gender Achievements and Prospects in Education: The GAP Report (Part I). Paris: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2005.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06. Excluded and Invisible. New York: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2004. Accelerating Progress in Girls' Education. Paris: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1999.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1999. Paris: UNICEF.

Verheyde, Mieke. 2006. A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ticle 28: The Right to Education. Martinus Nijhof Publishers.

Watkins, Kevin. 1999. Education Now. Break the Cycle of Poverty. Oxford: OXFAM International.

World Bank. 2011. Mali - Education Sector Investment Program II: P093991 - Implementation Status Results Report: Sequence 10. Washington D.C.: World Bank.

추가정보원

Education International: www.ei-ie.org

Electronic Resource Centre for Human Rights Education: http://erc.hrea.org

European Training and Research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ETCTC): www.etc-graz.at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www.globalpartnership.org

Human Rights Education Associates: www.hrea.org

Human Rights Internet: www.hri.ca

Human Rights Network: www.derechos.net

Human Rights Watch: www.hrw.org

ILO, The Hague Global Child Labour Conference - 10-11 May 2010: www.ilo.org/ipec/Campaignandadvocacy/GlobalChildLabourConference/lang--en/index.htm

Journal of Human Rights Education (JHRE): www.humanrightseducation.ch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www.ohchr.org

Right to Education: www.right-to-education.org

The People's Movement for Human Rights Education: www.pdhre.org

UNAIDS: www.unaids.org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www.unicef.org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www.unesco.org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www.undp.org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Education: www.ohchr.org/EN/Issues /Education/SREducation/Pages/SREducationIndex.aspx

아동 인권

HUMAN RIGHTS OF THE CHILD

아동의 자력화와 보호

참여와 제공

아동에 대한 비(非)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UN 아동권리협약 제3조. 1989년.

사례

아동에 대한 체벌

"어린이들이 매맞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관한 아동 자신들의 답변

- *"우리들이 말썽을 피우거나 다툴 때 엄마, 아빠로부터 맞곤 해요."* (6세 남자아이)
- *"다른 사람이랑 싸우게 되거나 돌 같은 걸 막 던질 때 [맞을 수 있어]요."* (7세 남자아이)
- *"아마 카펫에다가 물감을 칠하거나, 소파에 그림을 그리거나, 방을 정리하지 않을 때요. 아니면 물감 같은 걸 가지고 놀다가 어디에 묻히면요. 그리고 엄마가 아끼는 유리잔을 가지고 놀다가 깨뜨리면요."* (5세 여자아이)
- *"방 정리를 해야 할 시간이고 정리할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없는데도 책만 본다든지 하면서 시간을 낭비해버리면 맞을 수도 있어요."* (6세 여자아이)
-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할 때요."* (7살 여자아이)

(출처: Carolyne Willow, Tina Hyder. 1998. It Hurts You Inside – Children Talking about Smacking.)

"매 맞을 때는 어떤 기분이 드는가"에 관한 아동 자신들의 답변

- *"누군가 망치로 쾅 내려치는 기분이 들어요."* (5세 여자아이)
- *"하늘에 막 떠 있다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다치는 기분이에요."* (7세 남자아이)
- *"많이 아프고, 불행한 느낌이 들어요."* (6세 여자아이)
- *"다치고, 울음이 터지고, 눈에서는 막 눈물이 나요."* (5세 여자아이)
- *"엄마 아빠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7세 여자아이)
- *"뭐랄까, 막 도망가야 할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너무 냉정해서 마음이 아주 아프거든요."* (7세 여자아이)
- *"엄마나 아빠가 때릴 때는 기분이 좋지 않고 아주 슬퍼요. 이모들한테 얘기해도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죠."* (5세 여자아이)
- *"슬프지는 않지만. 엄마가 나를 때리면..... 나는 그저 눈물이 날 뿐이에요."* (4세 여자아이)

(출처: Children's Rights Alliance for England and Save the Children UK (eds.). 2004. It hurts

you inside. Young children talk about smacking.; Elinor Milner. 2009. "I don't get sad, only when my mum smacks me." Young Children Give Advice about Family Discipline.)

토론할 내용

1. 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녀에게 매를 드는가?

2. 아동을 때리는 것은 합법적인 훈육의 형태인가?

3.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4. 왜 현재 전 세계 29개국만이 형벌제도 및 학교·가정에서의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있을까?

5.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당신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는가?

무력 분쟁 상황에 놓인 아동

"엄마와 함께 밖에 나갔었는데 [신의 저항군 (the Lord's Resistance Army)에 의해] 저는 그만 유괴되고 말았어요. 납치된 다른 여자아이 중에 한 명은 탈출을 시도하기도 했었는데 다시 잡히고 말았죠. 그때 저항군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 아이는 탈출을 시도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새로 온 아이들이 그 아이를 죽이도록 시켰죠. 그 사람들은 만약 도망치면 우리 가족들도 죽여 버리겠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를 일주일 동안 걷도록 시켰어요. [...] 우리는 쉬지도 않고 아주 오래 걸어야했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아주 어린 아이들은 계속 그렇게 걸어갈 수가 없었죠. 그러면 또 죽임을 당했어요. [...] 굶어 죽는 아이들도 있었죠. 너무 많은 아이들이 죽거나 죽임을 당하는 걸 보며 저는 삶이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저도 곧 죽게 될 것 같았죠."

열 세 살 여자아이인 샤론(Sharon)은 신의 저항군(the Lord's Resistance Army)에 의해 납치되었다. 신의 저항군은 우간다 북부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우간다 정부에 대항하고 있는 반체제 집단인데, 특히 아이들을 납치해서 그들 군대의 군인으로 삼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출처: Human Rights Watch. 1997. The Scars of Death: Children Abducted by the Lord's Resistance Army in Uganda)

"그들[군대]은 우리를 막사로 데려갔어요. 그 다음에는 총과 군화로 우리를 폭행했고, 그래서 제 친구는 15일 후에 죽기도 했어요. 폭행은 반복되곤 했어요. 한번은 맞다가 의식을 잃은 적도 있는데, 그러자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하지만 막상 정신을 차리면 다시 막사로 데려와 때리는 일이 반

복됐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죠. 그들이 대체 왜 저를 때렸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2004년, 열 네 살의 나이로 마오이스트(the Maoists)에 입대했던 램(Ram, 남자)이 1년 후 로열네팔군부(the Royal Nepal Army)에 의해 포로로 억류되었던 때 겪었던 이야기다.

(출처: Human Rights Watch. 2007. Children in the Ranks: The Maoists Use of Child Soldiers in Nepal.)

토론할 내용

1. 성인들이 그들의 분쟁에 아이들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소년병을 둘러싼 이런 폭력의 고리를 끊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가?

3. 아이들에게 있어, 또는 사회에 있어 아동을 전쟁에 이용하는 행위는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가?

아동 노동

"아이들은 마치 성인들처럼 일한다. 우리는 대개 오전 7시에 일을 시작해서 저녁 7시나 8시경에 끝내곤 한다. 이는 하루에 11시간에서 12시간에 걸친 노동이다. 어떤 때는 새벽 4시에 일터에 나갈 때도 있다."

카자흐스탄 Malybai 지역의 담배농장에서 그의 아들(15세)·딸(13세)과 함께 일하고 있는 Sabir S.는 인터뷰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아이들은 오랜 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충분히 쉴 수 없었고,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을 수조차 없었다. 이 곳에는 위생시설 마저 부족했다. 아이들은 마스크나 보호복 없이 고온의 열기와 태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 또한 그들은 담뱃잎과의 접촉 때문에 생긴 피부병으로 고통 받으면서도 필요한 의료적 지원을 거의 받을 수 없었다.

(출처: Human Rights Watch. 2010. Hellish Work: Exploitation of Migrant Tobacco Workers in Kazakhstan.)

토론할 내용

1. 아동 노동의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2. 왜 정부들은 그들의 국제적 책무에 따라 법을 제정하거나 이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는가?

3. 왜 기업들은 아동을 고용하는가?

4. 아동 노동은 아동의 다른 인권을 위협하기도 하는가?

"청(소)년의 꿈과 창의성은 어느 국가에 있어서든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반기문. 2010년.

알아야 하는 내용 😐!?

1.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투쟁

아동의 인권에 대한 논의는 경우에 따라 낯설고 이율배반적이기도 하다. 우선, 아동과 청(소)년이 주거에 대한 권리 ·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할 권리 · 각자에 맞는 개성과 재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권리 · 보호받고 존중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것에는 모든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동의하고 또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일단 문제가 양육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부모의 책임을 실제화하는 단계로 넘어가면 이내 논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되어 버린다. 당장 UN아동권리협약만 봐도 마찬가지다. 지난 1989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이 국제조약은 국제사회가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있어 기초를 마련했다. 소말리아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UN 회원국 정부를 포함하여 총 193개국 정부가 채택한 UN아동권리협약은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에 의해 비준된 국제협약이라는 점에서 아동을 위한 가장 보편적인 인권 기준을 세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의 이행수준은 초기에 성공적으로 토대를 마련했던 이런 과정과는 극명하게 대조된다. 수많은 아동이 여전히 영양결핍 · 가난 · 소외 · 노동착취 · 인신매매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학대 · 방임 · 착취 · 폭력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다. 때문에 지난 2002년, 150개국 600명이 넘는 청(소)년(18세 이하)과 정부 및 비정부기구들의 대표 수 천명이 함께 뉴욕에 모였던 아동에 관한 UN특별총회(the UN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Children)에 대한 기대감이란 더욱 엄중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2년의 협의 기간을 통해 완성된 국제적 행동 계획 "아동에 적합한 세상"(the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A World Fit for Children")은 고작 엇갈린 성패를 가져왔을 뿐이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논의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문제 중 하나가 아동권리협약 결의안의 권위에 대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아동 권리에 기초한 결의안을 전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오늘날 개발도상국의 아동 약 1억 2,700만 명이 체중 미달상태에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 아동 중 무려 22%에 달하는 수치다. 개발도상국 아동 중 9%는 체중 미달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수세기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6,800만 명의 아이들은 여전히 기초교육에 관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아동 권리와 인간/아동의 안보 (Human/Child Security)

인간안보란 인간의 권리와 안전에 대한 광범위한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인간안보는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이며, 인간이 공평한 기회를 통해 그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달시키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안보는 빈곤과 폭력에서 기인하고 차별과 사회적 배제로 인해 악화된 불안정한 사회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간의 안보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에 대해 우선적으로, 또 긴급하게 대응하는 일은 아동 권리의 개념을 적절히 보완하는 일이다. 이는 아동 이익 최우선 고려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그러나 인간안보의 개념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먼저,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법체계가 이미 마련되어 국가의 책무에 해당하는 포괄적 권리들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인간안보는 아직 이런 규범적 기초를 마련하지 못했다. 다음으로, 인간/아동안보적 접근은 아동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나 능력을 도외시하면서 아동의 취약성과 의존성만을 강조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흐를 위험이 크다. 따라서 아동안보 개념은 어떻게 인권 담론의 핵심인 자력화(empowerment)/자기유능화(self-enabling)의 측면들과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당면해 있다고 하겠다.

바로 여기서부터 아동 인권적 접근과 아동안보적 접근(child rights and child security approaches)의 상호간 시너지효과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 분쟁 후 재건과 평화 정착 과정에 있어 아동의 참여에 관한 최근 담론의 맥락이 그 예다.

인간안보네트워크(the Human Security Network)는 특히 무력 분쟁 상황에서의 아동안보에 관련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다. 분쟁은 영양 · 깨끗한 물 · 위생 · 교육 · 건강에 대한 아동의 접근을 위협한다. 아동은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에 특히 취약하다. 무력 분쟁 상황에서 아동은 무장 단체 및 무장 세력에 의한 유괴 · 납치 · 비자발적 군대 차출과 성폭력(전쟁에 있어 강간을 일종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UN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 1882호(2009년)와 1998호(2011년)를 통해 관련 국제법의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이 위반사항에는 무장분쟁 당사자가 아동을 모병하여 이용하는 일, 아동을 재모병(re-recruitment)하는 일, 아동을 죽이거나 불구로 만드는 일, 강간과 여타의 성폭력, 납치, 학교나 병원에 대한 공격, 무력 분쟁 당사자의 인도적 지원 거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 1612호(2005년)를 통해 분쟁 중 발생하는 아동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관한 감시와 보고의 메커니즘을 강화한 바 있다. 이 결의안은 국제법을 위반한 당사국이 위반사항을 직접 조사해 보고하고, 해당 사항에 관해 대응을 하도록 요구한다.

2. 정의와 설명

아동 인권의 본질과 내용

지난 20년 동안 아동 권리의 개념은 폭넓은 인권 운동으로부터 진화해온 동시에 여타의 사회 · 교육 · 심리학적 영역의 발전으로부터 역시 영향을 받으며 발달해왔다. 이 영향에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국가 주도의 일반적 의무교육의 효과 · 산업화가 아동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공장이나 광산에서 이루어지는 아동착취 등) · 전쟁이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포함한다. 1970년대에는 새로운 교수 개념과 아동 양육의 모델부터 "아동해방운동" (children liberation movements)까지, 아동발달에 대한 새로운 접근들이 발달했다. 이러한 변화는 아동 관련 담론의 초점이 아동의 취약성과 아동을 보호할 필요성에서 아동의 독립성 · 권한 · 자기결정권 등으로 이동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새로운 담론은 부모나 성인의 통제가 필요한 대상으로만 아동을 보던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관점을 거부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런 모든 복합적 발전은 1978/79년에 아동의 인권에 관해 새로울 뿐 아니라 첫 번째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 문서-**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의 구성과 관련하여 UN 내부의 정치적 과정이 시작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협약의 채택일-1989년 11월 20일-은 현재 *국제 아동 인권의 날(International Child Rights Day)*로 기념되고 있다.

2002년에는 두 개의 아동인권협약 선택의정서가 발효되었다. 아동의 무장분쟁 관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는 당사국들이 자국의 군대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이 직접적으로 교전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확인하고, 18세 미만 아동의 징병 금지를 위해 모든 실현 가능한 노력을 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의정서는 18세라는 최소 연령을 자원입대에까지 적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원입대의 경우에는 반드시 충분한 안전보장조치를 포함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들은 그들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무장단체가 18세 미만 아동을 무장분쟁에 차출하고 이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2012년 4월 기준, 이 선택의정서에는 146개국이 서명했다.

"아동이나 그 밖의 어떤 집단에게 타 집단의 공공 자산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사회는 그것이 어떤 사회라 할지도 이에 대한 명백한 이유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를 증명해야 할 책임은 온전히 타인을 참여로부터 배제시키고자 하는 이들에게 있다. 다른 모든 이들이 지니고 있는 권리를 갖기 위해, 아동이 그들의 주장을 내세워야 하는 의무를 져서는 안 된다."

Bob Franklin. 1995.

아동매매·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는 각국 정부들에게 성적 착취와 학대 · 유괴와 매매 · 납치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가능한 노력을 다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아동권리협약을 보완하고 있다. 이 의정서는 당사국들에게 아동의 매매(또한 다른 형태의 강제 노동, 불법적 입양과 장기기증) · 아동 매춘 · 포르노그라피를 금지할 것과 이런 범죄들을 적절한 형벌을 통해 규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당사국들은 피해 아동들에게 반드시 법적 서비스 및 기타 보완적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2012년 4월 기준, 이 선택의정서에 서명한 국가는 154개국이다.

2011년 12월, UN총회는 아동이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권리를 침해 당했을 경우 아동권리위원회에 개별 청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청원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를 채택하고 서명 절차에 들어갔다. 2012년 4월까지 20개국이 의정서에 서명했으나 아직 발효되지는 않았다.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개념

자력화와 해방, 세대적 · 젠더적 측면들

모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을 고유한 인권을 가진 주체로 공인하고 있다. 이런 권리는 부모나 다른 어떤 성인의 권리로부터 파생된 것이 아니며, 그 권리에 의존적인 것도 아니다. 이 사실은 아동 해방과 자력화 개념의 근간이며, 한 사회의 시민이자 존중 받는 주체로서 아동이 자신을 향한 제한적이고 차별적인 인식과 기대에 도전하고 이에 대한 변화를 이끌도록 한다.

사실 아동은 성인 (아동의 육체적 · 감정적 · 사회적 발달 및 물질적 자원과 수입 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혹은 다른 양육자의 경제적 · 사회적 환경에 (ex. 실업, 부모와의 분리) 여전히 의존적

일 수밖에 없다. 이는 아동의 생활수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동 인권의 보호는 그들의 법적 · 사회적 지위를 더 광범위한 범위에서 변화시킨다. 이런 변화가 아동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아동 (그리고 사회의) 최선의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포괄적인 방법으로 이런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아동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어떤 "특권"을 가진 별도의 사회적 집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성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아동의 사회적 지위를 견인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전제조건인 것이다. 그제야 비로소 양육과 관련된 법적 사건에서 아동의 목소리가 수용될 수 있고, 아동이 자신이 겪은 성적 학대와 관련된 얘기를 꺼내는데 불안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또한 아동의 자력화가 갖고 있는 예방적 · 인식제고적 측면 역시 강조될 수 있다. 오직 이를 통해서만이 명확히 구분되는 사회적 집단으로서 아동의 이익이 진지하게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지구촌 북반구의 사회가 "고령화" 되는 반면, 남반구에서는 청(소)년들이 때로 전체 인구의 50%에 육박하는 현재의 인구통계적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수많은 아동과 또 수많은 개인들은 미래의 인격체– 즉, 언젠가 인격체로 성장할 누군가가 아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오늘 이미 인격체이다."

Janusz Korczak. How to Love a Child. 1919년

이런 세대적 특성에 더해, 아동의 자력화에 있어 젠더적 측면 역시 매우 중요하다. 성적 학대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의 인신매매 · "가족의 명예"를 지킨다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여아(女兒) 살인 · 교육과 고용에서 배제와 불이익, 미디어 및 연예산업에서의 목격되는 비하적 고정관념 등은 여아에 대한 이중적 차별–'여성'으로서와 '아동'으로서–을 명백히 드러낸다.

아동에 대한 총체적 관점

아동권리협약은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뿐 아니라 시민적 · 정치적 권리까지 하나의 문서에서 모두 아우르고 있는 첫 번째 보편적인 인권 조약이라는 점에서 특수하다. 바로 이 점에서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상황을 다루는 포괄적인("총체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아동의 정체성과 자기결정권 및 참여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발달에 있어 보호의 필요성에만 초점을 맞춰왔던 이전 아동 권리 선언들을 뛰어 넘는다.

아동–부모–국가의 관계

동시에, 보호권과 자주권이라는 이런 이중의 측면이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보적이라는 점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때때로 아동권리협약이 아동의 인권을 인정함으로써 가족 체제의 파괴와 반가족적 정서를 조장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과는 달리, 아동권리협약이 보호권을 뛰어넘는 자주권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아동권리협약은 명확히 아동에게 "적절한 관리와 지도"를 제공할 부모(양측 모두)의 "책임 · 권리 · 의무"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책임은 "아동의 발달적 특성과 일치"해야 한다. 즉, 이 책임이란 아동을 압도하는 어떤 절대적 권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동시에 상대적이기도 한 것이다. 이렇듯 부모는 아동의 기초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나 만약 그들이 그 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그럴 의지가 없을 경우에는 국가나 사회의 관여가 적법하다.

아동에 대한 비(非)차별

아동권리협약은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긴 목록의 용납할 수 없는 차별 범주를 언급하며 아동에 대한 차별의 분명한 금지를 포함하고 있다 (아동의 부모/보호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UN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UN아동권리위원회는 또한 HIV/AIDS 감염인 아동 · 거리의 아동 · 먼 시골 지역의 아동 · 피난 아동 등에 대한 차별에 관하여 이 항목들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다.

"나는 나의 네 자녀가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 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Jr. 1963년

"어느 국가라도 그들이 가진 미래를 전망하고자 한다면 그 국가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는가를 들여보면 된다."

존 F. 케네디. 1963년

아동 최상의 이익

아동권리협약의 3조 1항은 협약 전체의 전반적 원칙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이 원칙은 곧 "아동 최상의 이익"을 우선시할 것으로 요약된다. 이 조항은 아동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행동(교육, 양육권 소송 사례 등)에 한정되지 않고, 아동에 직 ·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동(고용정책, 예산할당 등)을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이는 모든 행위자(공적 · 사적)가 "아동 영향 평가"를 수행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 평가는 어떤 조치나 대안의 결과를 고려하고 그러한 조치의 이행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은 협약의 세부조항들을 적용하기 모호한 경우에 기능하는 포괄적 조항으로써, 협약의 권리들이 충돌하는 만약의 경우에 대한 지침으로 역할한다.

아동권리협약에서의 아동에 대한 정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다: 아동권리협약에서 특정하고 있는 아동이란 정확히 누구인가? 먼저 법적으로 접근해보자면,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18세 미만의 모든 인간으로 정의(각 국가에서 미성년자를 더 어린 나이로 규정하지 않는 한, 제1항)함으로써, 성인과 비성인을 구분하고 있다. 분명히,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것과 그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은 갓 태어난 아기들의 필요 및 문제들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18세 미만"이라는 기준은 광범위하고 균일하지 않은 사회적 구분이다. 따라서 아동권리협약의 적용에 있어 주어진 맥락 속에서 어떤 조치와 관련된 대상 집단을 명확히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와는 별개로, 아동권리협약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이 또한 일관성 및 지속적인 정당성의 측면에서 협약당사국들에게 나이 제한에 관한 자국의 조항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다.

협약 상의 권리들: 참여-보호-제공

협약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있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조는 바로 "3P" – 참여(participation), 보호 (protection), 제공 (provision)이다:

- 가장 먼저, **참여**란 아동권리협약의 12조 1항에서 밝히고 있듯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관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권을 명확히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심추(due weight)"를 아동의 입장에 두는 것이야말로 이 조항의 핵심 요소이다. 이는 아동이 일정 수준의 관여(성인의 적절한 지원을 동반한)를 통해 결정 과정과 그 결과에 역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아동의 목소리가 들려질 권리(Right of the Child to be Heard)"에 관한 아동권리협약위원회의 일반논

평 제 22호(The CRC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12, 2009년)는 참여의 진정한 의미와 더불어, 목소리가 들려질 권리란 그 자체만으로도 권리일 뿐 아니라 다른 권리의 이해 및 이행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조명하고 있다. 더불어 아동권리협약은 그 맥락 속에서 종교 · 양심 · 집회 · 시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존중과 같은 여타의 기본적 정치적 · 시민적 권리 역시 아동의 권리로 수용하고 있다.

- **보호**의 문제와 관련하여, 아동권리협약은 아동과 연관되는 모든 형태의 폭력, 방임이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것을 규정한다.
-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제공**의 권리들은 건강 · 교육 · 사회적 안전망 · 안정적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더욱이 아동권리협약은 또한 자신의 정체성과 가족 및 다른 사회적 관계(가족과의 재결합을 포함하는)를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공식화함으로써, 아동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기준들을 발전시켜왔다. 다시 말해, 아동권리협약은 대안적인 가족 환경 및 입양, 휴식·여가생활·놀이·문화적 활동에 대한 아동의 권리, 모든 형태의 폭력이나 착취에 대한 아동 피해자의 회복과 재활을 보장할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요약: 왜 아동 권리에 기초한 접근방식을 취하는가?

- 아동 권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인권– 즉,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다.
- 아동 권리는 아동에 대한 관심이 아동 개인 뿐 아니라 사회 속에서 특정 집단으로서의 아동을 견지하도록 그 초점을 견인해왔다.
- 아동 권리는 포괄적인 동시에 각 권리들이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 폭력의 금지 없이 표현의 자유란 존재할 수 없고, 안정적 생활 수준 없이는 교육의 권리 또한 불가능하다.
- 아동 권리는 법적 권리다. 아동 권리는 권리의 책임과 그 책임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밝히고 있다.
- 아동 권리는 아동을 자력화한다. 권리의 주체자이자 보유자로서의 아동 스스로의 인식을 기반으로 아동과 소통하는 새로운 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지속적인 평화를 창조하고 싶다면 그 시작은 반드시 아이들과 함께여야 한다."

마하트마 간디. 1931년

---

3. 문화적 관점 차이와 논쟁적 이슈

아동 권리의 보호는 사회에서의 아동의 지위, 아동기에 대한 통념, 아동에게 부여된 롤모델, 생활 여건 및 아동 관련 사회 기반 시설의 문제들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아동 권리의 보호는 그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가족의 개념 역시 잘 드러내준다.

아동의 체벌은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모호한 문제들에 관한 전형적인 사례다. 세계 어디서든 형사법은 성인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위를 명백히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원칙이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에 학교에서 체벌이 가해지는 동안 의사의 동석에 대한 요구, 매의 종류나 크기에 관한 규정, 체벌 횟수가 "타당한"지에 관한 담론들만을 겨우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오직 30개국만이 체벌을 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히 눈에 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00년과 2001년 두 차례의 주제토론을 통해 국가에 의해 혹은 가족이나 학교 내에서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초점을 맞춘 바 있다. 이는 이후 2006년 UN 총회에서 아동 폭력에 관한 사무총장 연구를 위한 독립 전문관(Independent Expert for the Secretary-General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이 보고한 **아동에 가해지는 폭력에 관한 UN 연구(United Nation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를 이끌어냈다. 이 연구는 집, 가정, 학교 및 여타 교육 시설과 사법기관 및 양육기관, 직장과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분석하고 있으며, 후속 조치를 위한 포괄적 틀을 제시하는 12건의 주요 권고사항 및 상당량의 세부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 과정은 또한 좀 더 상세한 **세계아동폭력보고서(World Report on Violence against Children)**와 아동 친화적 출판물(child-friendly publications)로 이어졌다. 2007년에는 연구의 권고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관해 조사한 독립 전문관(Independent Expert)의 중간 보고서(progress report)가 제출됐다. 또 다른 후속조치로서 총회 결의안 A/RES/62/141에 기초해 **아동폭력에 대한 유엔사무총장 특별 대표부(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Violence against Children)**도 설치됐다. 이 결의안은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국제아동구호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로 하여금 특별 대표부에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만큼이나 조심스럽게 아동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우리들의 책무보다 더 막중한 의무가 있을 수 있는가? 모든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아이들의 자유를 예외 없이 수호해야 하는 책무보다 더 위대한 리더십의 시험이 있을 수 있는가?"

코피 아난. 2002년

"아동은 반드시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들의 고민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고,
식량 위기나 일상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다른 도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심지어 수세기 동안의 참담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그 방법은 바로 우리 손에 있어왔다.
기회를 잡아 아동을 위한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반기문. 2009년.

또 다른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분야는 **여아**의 지위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가정 내 "남아선호", 교육, 고용, 종교법의 제한적 해석, 여성할례나 강제적 조혼과 같은 해악적 전통 관습, 생식에 관한 의료 서비스에의 접근 등). 또한 **아동 노동**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또한 논쟁적이다. 아동 노동의 문제는 각각의 국가들이 처한 다양한 경제적 · 사회적 요인 및 조건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4. 이행과 모니터링

일반적으로 인권 분야에서 원칙과 실천의 사이, 책무와 책무의 실질적 이행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해왔다. 그러나 아마도 누군가는 이러한 차이가 아동 권리의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많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아동 권리는 종종 "가족의 가치", 문화적 · 종교적 전통 등의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아동 기반의 인프라 및 아동 주도적 기획에 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한 가지 중대한 원인은 바로 아동권리협약 조약들의 관리 · 감독 체제가 취약하다는 데에 있다. 2011년 말까지 조항들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마련됐던 건 고작 **국가(주도의) 보고** 메커니즘뿐이었다. 이런 과정 아래에서, 당사국들은 협약(선택의정서를 포함하여)의 이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해 아동권리협약의 감독기구인 **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책임(매 5년마다)을 지게 된다. 이를 기초로 당사국 정부와 위원회 간 "건설적 대화(constructive dialogue)"가 시작되고, 이 대화는 위원회의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로 이어진다. 이 때 최종 견해란, 정부에 대한 권고안과 함께 주어지는, 각 정부의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위원회의 비판적 평가다.

비정부기구들은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판례법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고 아동 권리에 대한 좀 더 면밀한 법적 담론을 강력히 북돋울 수 있는 **개인 제소 메커니즘**(individual complaint mechanism)을 위해 그 동안 로비를 진행해 왔다.

"협약의 이행은 선택이나 복지, 자선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Child Rights Caucus. 2002년

2009년 인권이사회는 협약 내 보고 과정을 보완하는 청원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정교화 가능성을 분석하는 개방형 실무그룹(Open-ended Working Group)을 만들었다. 실무그룹의 임무는 2010년 연장되었는데 이는 선택의정서 초안을 위한 제안서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마침내 2011년 12월 UN총회는 **아동권리협약 청원절차에 관한 선택의정서(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를 채택하고 서명단계에 들어갔는데, 이 의정서로 인해 아동권리위원회에의 개인 제소 절차가 개방되었다.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아동의 직접 제소가 가능해진 것이다. 2012년 4월까지 20개국이 서명한 이 의정서의 발효는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위대한 도약이 될 전망이다.

최근의 상황을 다루면서, 아동권리위원회는 전통적 메커니즘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데에 있어서도 상당한 혁신을 이루고 있다. 먼저, 위원회는 협약당사국의 아동 권리 실태에 관해 논란이 되는 문제들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하여 비정부기구들로 하여금 이면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는 비정부기구 참여에 대해 상당히 열려있는 자세이다. 다음으로, 위원회는 "청소년 재판(Juvenile Justice)", "장애아동", "HIV/AIDS", "가정과 학교 내 아동폭력", "긴급 상황에서의 아동의 교육권(The Right of the Child to Education in Emergency Situations)" 등 특정 이슈에 관해 "일반 토론의 날(Days of General Discussion)"과 같은 연간 공공 포럼(annual public forums)을 개최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관련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직접적인 관심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또한 2001년 이래로 위원회는 "교육의 목적(2001)", "모국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처우(2005)", "장애아동의 권리(2006)", "원주민 아동과 협약 내 그들의 권리(2009)", "아동의 들려질 권리(2009)",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2011)" 등과 같이 아동권리협약의 해석에 있어 큰 권위를 갖고 있는 **"일반논평(General Comments)"**을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다방면적 기준과 방법 · 제도의 증가는 협약 이행 상황을 감독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했다. 협약 이행 상황을 감독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나 해당국 내에서나 관계자들 간 좀 더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미래를 생각할 때, 2002년 UN 특별 세션의 결의안인 **"아동에 적합한 세상(A World Fit for Children: WFFC)"**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이 결의안이 4가지 우선순위(건강한 삶의 증진,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제공, 학대와 착취 · 폭력으로부터 아동의 보호, HIV/AIDS 퇴치)를 기초로 한 목표와 대

상들을 의제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국의 정상들은 2010년 말까지 “아동에 적합한 세상(A World Fit for Children)”을 수립하고 관련 내용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유니세프는 지난 2007년 “아동을 위한 진보: 아동에 적합한 세상(A World Fit for Children)의 통계적 검토”를 통해 앞서 언급한 결의안 내용의 진행 상황에 관해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주로 다루었는데, 이 목표가 현재 국제 사회의 개발을 위한 노력의 구심점이기 때문이다. “아동에 적합한 세상” 목표의 상당부분은 2015 새천년개발목표를 위한 징검다리이며, 각국 정부들은 이후로도 새천년개발목표를 위한 책무에 주로 집중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 및 입법 기관의 모든 수준에 있어서 **아동 권리 관점**의 도입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규정들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기적 평가, 아동을 고려한 예산편성, 빈곤 극복을 위한 전략에 있어 아동의 참여, 아동을 위한 옴부즈맨 제도의 수립과 강화는 여전히 원칙이라기보다는 예외로 받아들여진다. 게다가, 아동 권리 옹호는 대개 여전히 성인들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주도하는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이 반드시 모색되어야 한다. 많은 국가들이 이미 관련 협의를 시작하였다. 협약의 기준들을 이미 자국의 기본법에 받아들임으로써 자국의 법과 절차에 있어 아동 권리를 강화하고 있는 국가들도 다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 권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노력들은 아동·청소년·성인 모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아동 권리 및 인권에 관한 교육과 더불어, 실효적이고 신빙성 있는 정보, 교육과 훈련 전략에 기초하고 있어야 한다. 2001년 “교육의 목적”에 관한 첫 번째 일반 논평에서 아동권리협약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아동들은 세계화, 새로운 기술과 현상에 의해 촉발된 본질적인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모든 아동이 그 자신의 삶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이런 도전에 대해 균형 있게, 인권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 29조 1항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이 필수적이다.” ☞ 교육권

알면 좋은 내용 😐!?

1. 모범 사례

다음의 프로젝트와 활동 예시들은 지금껏 성공적으로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강화해왔다.

“인간 잇기(Connecting People)”

“인간 잇기”는 오스트리아 내의 난민을 후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Asylkoordination Österreich”(호주 난민 및 이주인 기관들의 협의체)에 의해 조직되었으며, 유니세프 오스트리아 위원회가 지원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기꺼이 시간을 내 교육 및 언어 프로그램, 일자리, 정부기관과의 미팅, 스포츠 활동 등 난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려하는 보호자가 없는 오스트리아의 난민 아동들을 모으는 것이다. 이를 통한 아이와 후원자 간 확고한 신뢰관계의 구축은 난민들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후원자에게도 의미 깊은 경험을 선사한다. 모든 후원자들은 매우 신중하게 선발되고, 이렇게 선발된 이들은 법적 문제, 정서적 및 사회적 문제, 정부와의 업무 등에 관한 사전 교육과정을 거쳐야 한다. 2001년에 시작된 이래로 이 프로젝트는 공적 영역은 물론 정부 및 미디어와 참여 당사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다.

자국 내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비정부기구들의 “이면보고서(Shadow Reports)”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들은 협약의 이행에 관련하여 아동권리협약위원회에 정기적인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는다. 이러한 국가보고서를 좀 더 포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비정부기구나 비정부기구협의체가 당사국의 아동과 청소년이 처한 상황을 자체적으로 평가한 “이면 보고서”/“대안 보고서”의 제출을 환영하고 있다. 약 100여 개 국가에서 이런 국내 연합체들이 이미 구성되어 협약의 이행을 장려하고 감시하는 중이다. 게다가,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는 아동권리협약을 위한 국제적 비영리기구 단체들은 여타 비영리기구 및 그 연합체들의 감시와 보고 활동을 돕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을 위한 비정부기구그룹 (NGO Group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아동권리협약을 위한 비정부기구그룹은 협약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79개의 국제적 · 국내적 비정부기구네트워크다. 이 그룹의 주요한 활동으로는 협약의 중요성에 대해 대중의 인지를 높이는 옹호활동,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행동을 통한 협약의 이행 증진 및 촉구활동, 협약의 감시 및 이행과 관련된 모든 측면에서의 아동의 적극적 참여 증진활동, 아동권리위원회와 시민사회 간 연결고리 제공활동 등이 있다.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비정부기구그룹은 아동권리협약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비정부기구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행한 바 있다. 비정부기구그룹은 또한 아동 권리를 위해 힘쓰는 각국 비정부기구들간의 자국 내 연대 구성과 발전을 독려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폭력 중단

유네스코의 “학교에서의 폭력 중단: 교사를 위한 가이드 (Stopping Violence in Schools: A Guide for Teachers)”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폭력을 고찰하고, 이의 중단을 위해 교사들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실질적 제안들을 제공해준다. 이 가이드에는 폭력을 방지하는 데에 있어

교사들이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10개의 활동 영역들이 소개되어 있다. 관련된 국제적 규범 체계에서 발췌된 내용을 비롯해서 학교에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자료들의 목록 역시 수록되었다. 이 가이드는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과 UN 세계 아동을 위한 평화의 문화 및 비폭력의 10년(the UN International Decade for a Culture of Peace and Non-Violence for Children of the World: 2001-2010)에 기여했다.

(출처: UNESCO (ed.). 2009. Stopping Violence in Schools: A Guide for Teachers.)

2. 동향

아동 권리의 보호를 위한 뼈대로서 아동권리협약은 "고정된" 문서로 존재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이런 발전은 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권리협약 해석 혹은 2002년 발효된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나 아울러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와 같은 아동 권리의 새로운 기준들이 채택됨으로써 가능했다. 아동권리위원회에게 개인 청원을 받아들이고 고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선택의정서를 마련함으로써 청원 절차를 정비한 일은, 협약의 감시 메커니즘을 더욱 강화하고 아동 권리의 이행을 촉구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지난 2009년, 아동권리협약 채택 20주년에, 위원회는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 및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이틀간의 기념일을 통해 협약이 당면하고 있는 세 가지 주요 도전들: 1. 아동의 존엄성의 보장, 2. 아동의 발달을 위한 모든 가능성의 제공, 3. 협약에서 규정한 참여적 접근에 부합하도록 아동과 성인 간 대화의 증진을 강조했다. 기념일 동안의 회의에서는 이행 성과, 모범적 실행 사례와 미래를 위한 도전 및 제약의 사례들을 밝히고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최우선 권고들을 구상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2010년에는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10주년에는, 아동과 무력분쟁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대표부(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for Children and Armed Conflict), 아동 폭력에 관한 특별 대표부(Special Representative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유니세프와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함께 2012년까지 선택의정서의 전 세계적 비준을 목표로 하는 "Zero-Under-18"이라는 2년 간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자발적 고용의 나이를 최소 18세로 끌어 올리도록 모든 국가들을 독려하고, 관련된 국내법의 입법 및 이러한 법의 효과적 이행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아동 권리와 관련된 가장 최근의 경향과 논의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 **구조적 측면**: 아동/청소년 주도의 계획과 기관에 대한 지원,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옴부즈맨 기관의 설립, 아동 권리 모니터링
-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 투표권 및 정치적 참여 등
- **아동과 가정환경**: 부모와 분리되어 살고 있는 아동, "재혼에 의해 구성된 가정(patchwork families)"의 아동, 한부모 가정의 아동, 부모의 보호나 대안적 환경이 결핍된 아동
- **여아의 권리**: 사회적 역할 모델, 미디어의 고정관념, 종교적/문화적 배경, 생식과 관련된 건강
- **일반적 측면**: 성인 대비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나이에서 비롯된 차별"), 인구통계학적 변동, 부의 재분배, 자원에 대한 접근, 정치적 영향, 아동과 청소년 이익의 보호
- **정보에 대한 권리**: 인터넷 접근, 정보 보호, 미디어/TV/컴퓨터 게임 등의 폭력적 내용, 인터넷 상의 아동 포르노
- **아동에 대한 폭력과 성 착취: 체벌의 전 세계적 금지**,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제거, 정서적 지원과 부모 교육, 아동 간/또래 간 폭력
-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교육과 직업교육
- **아동과 경제**: 빈곤퇴치 프로그램에서 아동 권리 문제 고려, 사회 서비스의 규정, 아동 노동/최악의 형태의 노동 척결, 경제적 세계화에 따른 공공 서비스 사유화로 인한 영향 (의료, 교육 – GATS), 청소년 문화에 있어 연예 산업과 스포츠 산업, 광고와 매스미디어의 영향
- **HIV/AIDS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 차별, 부모의 상실 등
- **아동과 무력분쟁, 위급상황 속 아동 (자연재해)**: 비상시의 교육, 소년병 재활, 분쟁 후 재건 과정에서의 아동 참여, 비정부 주체 및 기업들의 책임,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 국제형사재판소의 역할, 평화유지군의 행동강령과 아동 권리 교육

아동 권리에 관한 통계적 정보 – 사실과 수치들:

- **출생등록**: 개발도상국 5세 미만 아동의 절반만이 출생등록이 이루어진다. 출생신고는 아동을 위한 보호환경을 구축하고 아동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매우 중대한 기초이며, 이는 또한 아동권리협약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 그 자체이다.
- **5세 미만 아동의 사망**: 개발도상국 유아들의 사망률은 산업화된 국가들 영아 사망률의 10배에 가깝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24,000명의 5세 미만 아동들이 예방 가능한 이유로 날마

다 사망하고 있다. 이는 매 3초에 한 명꼴이다. 아동 사망의 대부분은 여섯 가지 원인(설사, 말라리아, 신생아 감염, 폐렴, 조기분만, 분만 시의 산소결핍)으로부터 기인한다. 이 중에서 설사와 폐렴이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다.

- **산모의 출산 시 사망**: 매년 50만 명의 여성이 임신 중 합병증에 의해, 혹은 분만 중에 사망한다. 이는 대략 매 1분당 한 명 꼴이다. 산모 사망 사례 중 약 99%는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선진국 여성의 경우 4,000명 당 한 명 꼴로 임신이나 분만 때문에 사망하는 반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여성의 경우에는 16명 중 한 명 꼴이다. 어머니가 없는 영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영아에 비해 사망 확률이 3배에서 10배에 이른다. 출산 시 전문의의 동석이나 합병증을 유발 중인 여성에 대한 긴급 지원과 같은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많은 여성들을 살릴 수 있다.
- **청소년 임신**: 전 세계적으로 매년 1,400만 명의 아이들이 19세 미만의 산모로부터 태어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임신이나 출산 중 합병증이 15세에서 19세 사이 여성들의 주요 사인이다.

"인류는 아동에게 최선의 것을 줘야 할 빚이 있다"

UN 아동인권선언 (United Nations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1959년

- **HIV/AIDS**: 2009년을 기준으로 약 2,500만 명의 15세 미만 아동과 500만 명의 15-24세 아동들이 HIV에 감염되어 있다. UNAIDS는 전 세계적으로 1,200명의 아이들이 매일 HIV에 감염되고 있으며, 영아 감염의 대다수는 모자감염 때문이라고 추측되고 있다. HIV 양성 아동의 90%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이 지역에서 AIDS로 인해 부모 중 한 명이나 양 부모 모두를 잃은 아동의 수는 2007년 기준 1,410만 명에 이른다. 전 세계적으로는 그러한 아동의 수가 1,750만 명으로 추산된다.
- **음식**: 오늘날 개발도상국에는 1억 2,700만 명의 저체중 아동들이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 전체 아동의 22%에 이르는 수치이고, 개발도상국 아동의 9%는 표준 체중에 매우 심각히 미달되어 있다.
- **빈곤**: 2010년 기준, 109개국 5억 5,000만 명의 인구 중에서 1억 7,000만 명의 사람들이 다차원적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고 UNDP는 분석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빈곤은 UNDP 다차원 빈곤 지수(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MPI)를 통해 측정됐는데, 이 지수는 의

료 서비스나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성 등과 같은 항목을 수치로 측정함으로써 경제적 수입만으로 빈곤을 다루는 것보다 빈곤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차원적 빈곤에 놓여있는 1억 7,000만 명이라는 숫자는 하루 1.25$로 생계를 유지하는 1억 3,000만 명과 비교할 수 있다.

- **아동 노동**: 5세부터 14세까지의 아동 1억 5,000만 명이 노동에 참여하고 있다. 수많은 아이들이 위험한 조건(ex. 광산에서의 일, 화학약품과 농약 및 위험한 기계 등에 노출되는 일 등)에서 일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모든 아동 노동의 2/3 이상이 농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시골지역의 아동, 특히 여아는 5세에서 7세 사이에 농사일을 시작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거리의 아동**: 세계에는 약 1억 명에서 1억 5,000만 명 정도의 거리의 아동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 **교육**: 초등교육 대상 나이의 아동 중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아이들의 수치는 2002년 기준 1억 1,500만 명에서 2007년에는 1억 100만 명으로 감소했다. 2010년을 기준으로 6,800만 명의 초등교육 대상 나이 아동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으며, 이 중 53%는 여아이다.
- **사회적 서비스와 정치적 우선순위**: 평균적으로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기초 교육이나 기초의료 서비스보다는 국방예산에 더 많은 비용을 소비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국제개발원조 보다는 방위비에 10배나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
- **무장분쟁**: 지난 1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아동이 무장분쟁으로 인해 사망했고, 600만 명의 아동은 심각한 부상을 당했거나 영구적 장애를 입었다. 100만 명의 아동은 부모를 잃거나 가족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었다. 30만 명의 소년병이 분쟁에 직접 연루되어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 **아동 난민과 이탈 아동**: 전 세계적으로 무장분쟁으로 인한 유랑민은 2억 7,100만 명에 이른다. 이 중 적어도 1,350만 명은 아동이다.
- **장애아동**: 대략 6억 5,000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아동과 청소년들 중 10%(약 2억 명)가 신경적, 지적,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고, 이들 중 80%는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사람들의 20%와 거리 청소년의 30%가 장애를 지니고 있다. 개발도상국 장애 아동의 90%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
- **폭력**: 아동에 대한 폭력 중 대부분은 비밀리에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유니세프는 1억 5,000만 명에서 5억 명 사이의 아동들이 매년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아이들 중 2/3는 체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동에 대한 폭력은 대개 아동이 알고 믿는 가족이나 보호자, 교사 등의 사람들에 의해 행해진다. 특히 폭력에 취약한 아동 집단에는 장애아동, 소수자 집단의 아동, 거리의 아동, 법률 밖의 아동, 난민 아동, 이탈이나 이주 아동 등이 포함된다. 남아가 **신체적 폭력**에 훨씬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아는 **방임과 성적 학대 및 착취**에 훨씬 취약하다. 유니세프는 아프리카 28개국과 예멘에서 7,000만 명의 여아와 15-40세 여성이 **여성할례(female genital mutilation/cutting: FGFGM/C)**로 고통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 **아동 인신매매**: 범죄의 은밀한 특성 때문에 인신매매의 희생 아동 수에 대한 추측은 엇갈린다. 현재까지 밝혀진 가장 만연한 인신매매의 형태는 성 착취(79%)이며, 아동 노동(18%)이 그 다음이다. 인류에 있어 인신매매는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제범죄이며, 성적 및 경제적 착취를 목적으로 납치된 희생자들을 착취하는 범죄는 연간 32억 달러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 **자살**: 자살은 15-35세 사람들의 세 가지 주요 사망 요인 중 하나이다. 세계적으로 연간 7만 1,000 여명의 청소년들이 자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는 이의 40배에 육박한다.

(출처: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www.unicef.org; UNICEF Childinfo – Monitoring the Situation of Children and Women, http://www.childinfo.org;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www.undp.org;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for Children and Armed Conflict, www.un.org/children/conflict.)

3. 연혁

1924	어린이권리선언/국제연맹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Eglantyne Jebb/League of Nations)
1959	UN아동권리선언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UN아동권리협약 (채택 1989년 11월 20일; 발효 1990년 9월 2일; 2012년 1월 기준 193개국 비준)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90	UN인권위원회의 아동매매·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특별 보고관 임명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by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1990 아동을 위한 세계 정상 회담 (뉴욕, 9월 29-30일);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행동계획 세계선언 채택 (World Summit for Children in New York / the World Declaration and Plan of Action for the Survival,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Children)

1990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발효: 1999년 11월 29일)
(African Charter on the Rights and Welfare of the Child)

1993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비엔나 선언 및 행동 계획에 있어 아동 권리에 특별한 강조를 둠.

1996 UN 사무총장에 의해 지명된 독립적 전문가 Graça Machel에 의한 전향적 연구인 "아동에 있어 무력분쟁의 영향"의 UN 총회 제출. 아동과 무력 분쟁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대표부 설치의 기반이 됨.

1996 아동의 상업적 성 착취에 관한 세계 회의 (스톡홀름), (2001년 요코하마 후속조치)
World Congress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n Stockholm (2001: Yokohama follow-up)

1998 전쟁과 무력분쟁에서 아동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로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6개 국제 비정부기구들 설립

1999 인간안보네트워크(The Human Security Network)가 무장분쟁에 의해 영향을 받는 아동들의 상황에 대해 조하며, 이에 공감하는 국가들간 단체를 발전시킴.

1999 국제노동기구는 최악의 아동 노동에 관한 협정 182조를 채택함 (발효: 2000년 11월 19일; 2012년 1월까지 174개국 비준)

Convention No. 182 on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entry into force: 19 November 2000; ratifications by January 2012: 174)

2000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2개 선택의정서 채택: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발효: 2002년 2월 12일; 2012년 1월까지 143개국 비준), 아동 매매 · 아동 성 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발효: 2002년 1월 18일; 2012년 1월까지 152개국 비준)
Adoption of two Optional Protocols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P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entry into force: 12 February 2002; ratifications by January 2012:143) and OP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entry into force: 18 January 2002; ratifications by January 2012: 152)

2002 아동 포럼 (5월 5-7일)과 아동에 관한 UN 총회 특별세션 (뉴욕, 5월 8-10일); 아동 포럼 행동 계획, 선언 및 문서 채택

Children's Forum (5-7 May) and UN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Children in New York (8-10 May); adoption of the Children's Forum Document and Declaration and Plan of Action ("A World Fit for Children")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612호 채택, 이 결의안은 아동과 무력분쟁에 관한 감시와 보고 메커니즘 제공.

Adop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612, providing for a monitoring and reporting mechanism on children and armed conflict

UN 장애인권리협약 채택; 제7조: 장애아동 (발효 2008년 5월 3일; 2012년 1월까지 109개국 비준)

Adop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 7: Children with Disabilities (entry into force: 3 May 2008; ratifications by January 2012: 109)

2007 성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의 아동 보호에 관한 유럽의회협약 채택 (발효 2010년 7월 1일; 2012년 1월까지 17개국 비준)

Adoption of 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entry into force: 1 July 2010; ratifications by January 2012: 17)

2010 아동의 무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비준을 전 세계적으로 촉구하는 UN "Zero-Under-18" 캠페인의 시작 (Launch of the UN "Zero-Under-18" Campaign to achieve universal ratific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RC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2011 아동권리협약 청원절차에 관한 선택 의정서 채택 (Adop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

추천활동

활동 I: 아동의 필요와 권리

PART I: 소개

인권에 관해 소개할 때는 먼저 필요와 권리를 명확히 구분해서 전달해야 한다.

PART II: 일반적인 정보

활동유형: 아동의 필요와 권리에 관해 묘사하고 토론하기

목적과 목표: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인류 모두에게 적용되는 인권의 원칙들 깨닫기

대상그룹: 아동과 청(소)년

그룹규모: 10-20명

소요시간: 60-120분

준비사항: 공간/교실 준비, 아동권리협약 복사(요약본)

준비물: 종이나 카드, 테이프나 압정, 이를 붙일 수 있는 벽이나 보드판

관련기술: 분석력과 창의성에 연관된 기술들

PART III: 구체적인 정보

참가자들은 서로 짝을 짓거나 작은 모둠을 이뤄 활동하게 된다. 우선, 각 짝이나 모둠은 아동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들을 적은 10장의 카드를 만든다. 이때 참가자들이 물질적인 것(물, 음식, 옷 등)뿐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것(사랑, 평화 등) 및 관계적인 것(부모님, 친구들 등)도 떠올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다음으로 각각의 짝이나 모둠은 이 카드들을 벽이나 보드판에 붙이고, 왜 이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를 설명한다. 그 후 이것들을 묶어준다. 모든 모둠이 발표를 마친 후에는 벽이나 보드판 위에 "필요한 것들"이라고 표기한다.

이어서, 우리나라나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관련하여 아래의 질문들에 관해 토론해본다.

- 어떤 것이 꼭 필요하다고 선택했는가? 물질적인 것들, 감정적이거나 관계적인 것들을 생각했는가? 다른 사람이 해야 하는 일들이나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을 생각했는가?
-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우리가 스스로 충족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건 어떤 것들인가?
-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모두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들인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은 채 살고 있는 아이들을 알고 있는 사람은 혹시 없는가? 이렇게 필요한 것 중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에 접근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집단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상황을 변화시킬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제는 "이 '필요한 것들' 중 전 세계의 모든 아동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통해 전 세계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본다. 보편적인 필요라고 여겨지지 않는 카드들은 제거하고, 반면 카드 중 없는 것들은 추가한다.

이 때의 결과는 반드시 참가자들이 이해한 내용이 주가 되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들을 언급할 필요는 없다.

관련 권리의 분석:

참가자들과 함께 필요한 것들(needs)의 단계를 권리(rights)의 단계로 바꾸어나간다. 먼저 참가자들에게 UN 인권시스템을 간단히 설명하고, 아동권리협약 조항들을 나눠준다(요약본, 1장의 인쇄물에는 한 가지 조항씩). 참가자들이 아까 작성한 카드에 권리들을 추가함으로써 보드판을 완성하도록 한다. 물론, 어떤 필요(needs)카드에는 정확히 맞는 권리들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맞춰진 짝들과 맞춰지지 못한 짝들에 대해 참가자들과 함께 논의해본다. 그리고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곳들은 어디인지 물어본다. 우리나라나 지역사회에서 어떤 메커니즘/제도들/기관들을 통해이런 권리들이 지켜지는지 참가자들에게 알려준다.

응용을 위한 제안:

카드들을 선택해서 그림으로 그려보거나 색칠해보고, 잡지에서 사진을 선택해서 오려보도록 할 수 있다. 아니면 간단히 다시 써봐도 좋다.

PART IV: **후속활동**

좀 더 알아볼 것들: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행동들

(출처: Gerald Kador Folkvord. 2004. Ideen für den Unterricht. In: Teaching Human Rights 18/2004.)

활동 2: 아동 노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행동 원탁회의

PART I: 소개

전 세계 아주 많은 곳에서 자신이나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아동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사회적 · 경제적 종속성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아동노동을 금지하기 위한 행동들은 긍정적인 영향을 뿐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결과도 낳게 된다.

PART II: 일반적인 정보

활동유형: 아동 인권에 관한 역할극

목적과 목표: 아동노동에 연관된 다양한 동기와 관심 및 전략이나 가능한 대안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이의 예상되는 결과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이런 역할극 이전에 참가자들로 하여금 아동 노동 문제의 배경에 관해 좀 더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한 논의과정이 있어야 한다.

대상그룹: 청(소)년과 성인들

소요시간: 최대 2시간 (행동 계획의 범위에 달려있음)

준비사항: 공간/교실 준비, 참가자들의 역할과 이름을 적은 카드; 다양한 역할과 지위의 배경정보를 위해 아동노동에 관한 최근의 신문보도, 유니세프/국제노동기구/비영리기구 보고서 등을 활용

준비물: 나중에 문서화를 하기 위한 종이와 플립 차트(강연 등에서 뒤로 한 장씩 넘겨 가며 보여주는 큰 차트) 등

관련기술: 소통 능력과 분석력

PART III: 구체적인 정보

주제에 관한 소개:

먼저 임의의 국가 X에서의 아동 노동 문제에 대한 국제노동기구와 지역의 아동인권단체로부터의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고 발표한다. 이에 정부는 아동노동을 막는 방법들에 관해 논의하기 위한 원탁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참가자들은 이 원탁회의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변하게 된다 (모둠별로도 가능). 이 때 이해관계자란 주로 노동을 하고 있는 아동, 학교에 있는 아동, 부모, 교사, 고용주 기관, 노동조합, 정부 관료, 아동 권리 관련 비영리기구, 유니세프/국제노동기구 등이다

(이때 모든 참가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건 아님). 이 논의의 최종 목표는 추후 필요한 조치의 기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대안적으로: 행동계획의 정교화를 고려할 수 있음).

역할극 진행:

먼저 원탁회의 참가자들을 선택한다. 참가자들에게는 토론을 위한 전략과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 20분 정도 준다(대안적으로, 그들에게 읽을거리를 먼저 나눠줄 수도 있음). 유니세프/국제노동기구나 비정부기구 대표들은 이 토론의 의장 역할을 수행하고 참가자들을 소개한다. 아울러 그들 각각의 "기능들"도 설명한다.

토론은 먼저 아동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간단한 보고부터 시작한다. "의류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이나 아동의 처우에 관해 항의하는 관련 부모 등이 그 상황의 예시가 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이 토론에서 그들이 맡은 기본 역할을 대변해야만 한다. 이 토론의 끝에는, 정교화된 전략이나 별도의 학습 모임에서 발전시킨 실천 계획이 그 결과물로 나올 수 있다.

피드백, 방법론적 힌트:

참가자들에게 게임을 진행하는 동안 들었던 그들의 느낌과 생각, 반응에 관해 질문한다. 특히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아동"의 역할의 맡았던 사람들의 의견에 집중한다.

PART IV: **후속활동**

관련 권리 및 더욱 탐색할 영역들: 아동권리협약의 제 3조 (아동 최선의 이익), 제 6조 (생존과 발달), 제 32조 (경제적 착취), 제 24조 (건강), 제 26조와 27조 (사회적 안전망, 적정한 생계보장), 제 28조와 29조 (교육), 제31조 (여가생활과 놀이);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규약(ILO Convention on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우리 지역 공동체에서 방과 후에, 혹은 학교에 가는 대신에 일을 하고 있는 아동들을 살펴볼 수도 있다.

원탁회의를 위한 다른 주제 제안: 가정 내/교내 체벌 금지, 소년병의 범죄행위에 관한 책임 및 재활 방법, 아동 성 매매 및 인신매매.

참고자료

Alen, André, Johan Vande Lanotte, Eugeen Verhellen, Fiona Ang and Eva Berghmans. 2005. *A Commentary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Boston/Leide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Alston, Philip (ed.). 1994.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Reconciling Culture*

and Human Rights. Oxford: Clarendon Press.

Child Rights Information Network (CRIN) (ed.). 2009. *Guide to Non-Discrimination and the CRC.* London: Child Rights Information Network. Available at: www.crin.org/ docs/CRC_Guide.pdf

Children's Rights Alliance for England and Save the Children UK (eds.). 2004. *It Hurts You Inside. Young Children Talk about Smacking.* London: Children's Rights Alliance for England and Save the Children UK. Available at: www.childrenareunbeatable.org.uk/pdfs/ItHurtsYouInside.pdf

Coalition to Stop the Use of Child Soldiers (ed.). 2008. *Child Soldiers. Global Report 2008*. London: Coalition to Stop the Use of Child Soldiers. Available at: www. childsoldiersglobalreport.org/

Council of Europe (ed.). 2007. *Compasito - Manual on Human Rights Education for Children.* Budapest: Council of Europe.

Detrick, Sharon. 1999. *A Commentary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Hague: Kluwer Academic Publishers.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ed.). 2009. *Child Trafficking in the European Union - Challenges, Perspectives and Good Practices.* Luxembourg: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Folkvord, Gerald Kador. 2004. *Ideen für den Unterricht*. In: Teaching Human Rights 18/2004. Wien: Servicestelle Menschenrechtsbildung.

Franklin, Bob (ed.). 2001. *The New Handbook of Children's Rights: Comparative Policy and Practice.* 2nd Edition. London/New York: Routledge.

Freeman, Michael. 1997. *The Moral Status of Children: Essays on the Rights of the Child.* Dordrecht/Boston/Lond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Freeman, Michael (ed.). 1996. *Children's Rights: A Comparative Perspective*. Aldershot: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and Save the Children Sweden (eds.). 2010. *Ending Legalised Violence against Children. Global Report 2010.* Stockholm: 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and Save the Children Sweden. Available at:

www.endcorporalpunishment.org/ pages/pdfs/ reports/ GlobalReport2010.pdf

Hammarberg, Thomas and Akila Belembaogo. 2001. *Turning Principles into Practice*. Stockholm: Save the Children Sweden.

Hammarberg, Thomas. 1996. *Making Reality of the Rights of the Child*. Stockholm: Save the Children Sweden.

Hayward, Ruth Finney. 2000. *Breaking the Earthenware Jar: Lessons from South Asia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Kathmandu: UNICEF Regional Office for Southeast Asia.

Human Rights Watch (ed.). 2010. *"Hellish Work". Exploitation of Migrant Tobacco Workers in Kazakhstan.* New York/Washington/London/Brussels: Human Rights Watch. Available at: www.hrw.org/en/node/91458/section/7

Human Rights Watch (ed.). 2007. *Children in the Ranks: The Maoists' Use of Child Soldiers in Nepal.* New York/Washington/London/Brussels: Human Rights Watch. Available at: www.hrw.org/en/reports/2007/02/01/children-ranks

Human Rights Watch (ed.). 1997. *The Scars of Death: Children Abducted by the Lord's Resistance Army in Uganda.* New York/Washington/London/Brussels: Human Rights Watch. Available at: www.hrw.org/legacy/reports97/uganda/

Kuper, Jenny. 1997.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Child Civilians in Armed Conflict*. Oxford: Clarendon Press.

Machel, Graça. 2001. *The Impact of War on Children*. C. London: Hurst & Co.

Milne, Elinor. 2009. *"I don't get sad, only when my mum smacks me." Young Children Give Advice about Family Discipline*. London: Children are Unbeatable! Alliance. Available at: www.endcorporalpunishment.org/assets/childrendocs/UK%20I%20dont%20get%20sad%20-%20report%20A5.pdf

Office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for Children and Armed Conflict and UNICEF (eds.). 2009. *Machel Study 10-Year Strategic Review: Children and Conflict in a Changing World*. New York: UNICEF.

Sen, Amartya. 2002. *Basic Education and Human Security*. Available at: www.humansecurity-chs.org

Sloth-Nielsen, Julia. 2008. *Children's Rights in Africa: A Legal Perspective.* London: Ashgate Publishing.

UNESCO (ed.). 2009. *Stopping Violence in Schools: A Guide for Teachers.* Paris: UNESCO. Available at: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8/001841/184162e.pdf

UNICEF (ed.).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Report (annually).* Available at: www.unicef.org/sowc/

UNICEF (ed.). 2011. *Humanitarian Action for Children 2011.* New York: UNICEF.

UNICEF (ed.). 2010. *Child Disciplinary Practices at Home: Evidence from a Range of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New York: UNICEF.

UNICEF (ed.). 2010. *Humanitarian Action. Partnering for Children in Emergencies. Report 2010.* New York: UNICEF. Available at: www.unicef.org/har2010/files/UNICEF_Humanitarian_Action_Report_2010-Full_Report_WEB_EN.pdf

UNICEF (ed.). 2010. *Progress for Children: Achieving the MDGs with Equity (No. 9).* New York: UNICEF.

UNICEF and Victor Pineda Foundation (eds.). 2009. *It's about Ability: Learning Guide o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New York: UNICEF.

UNICEF (ed.). 2002. *Implementation Handbook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fully revised edition). Geneva/New York: UNICEF.

United Nations (ed.). 2006. *World Report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Geneva: United Nations. Available at: www.unviolencestudy.org/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ed.). 2011. *Human Development Report 2011.* New York: Palgrave Macmillan. Available at: www.beta.undp.org/undp/en/home/librarypage/hdr/human_developmentreport2011.html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for Children and Armed Conflict (ed.). 2010. *The Rights and Guarantees of*

Internally Dis\-placed Children in Armed Conflict. New York: United Nations. Available at: www.un.org/children/conflict/_documents/10-08849%20Rights%20Guarantees%20Internally%20Displaced%20Children%20Armed%20Conflict_WP_2.pdf

Van Bueren, Geraldine. 1995. *The International Law on the Rights of the Child.* Dordrecht/Boston/Lond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Verhellen, Eugeen (ed.). 1996. *Understanding Children's Rights.* Ghent: Children's Rights Centre.

Willow, Carolyne; Hyder, Tina. 1998. *It Hurts You Inside - Children Talking about Smacking.* London: National Children's Bureau and Save the Children.

추가정보원

Asylkoordination Austria – Connecting People Project: www.asyl.at

Child Rights Information Network (CRIN): www.crin.org

Children are Unbeatable! Alliance: www.childrenareunbeatable.org.uk/

Childwatch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 www.childwatch.uio.no

Coalition to Stop the Use of Child Soldiers: www.child-soldiers.org/home

Defence for Children: www.defenceforchildren.org/

End Child Prostitution, Child Pornography and Trafficking of Children for Sexual Pur\-poses (ECPAT): www.ecpat.net

European Network of Ombudspersons for Children (ENOC): http://crin.org/enoc/

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www.endcorporalpunishment.org

Global March against Child Labour: www.globalmarch.org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www.ilo.org

International Programme on the Elimination of Child Labour (IPEC):

www.ilo.org/public/english/standards/ipec

NGO Group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www.crin.org/NGOGroupforCRC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www.ohchr.org

Save the Children Alliance: www.savethechildren.net/alliance/index.html

SOS Children's Villages International: www.sos-childrensvillages.org

Terre des Hommes -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Children, their Rights and Equitable Development: www.terredeshommes.org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www.unicef.org/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www.unicef-irc.org

UNICEF Statistical Database: www.childinfo.org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www.ohchr.org/english/bodies/crc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www. unesco.org

UNESCO - Education for All (EFA): www.unesco.org/education/efa/ed_for_all/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www.unhcr.org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www2.ohchr.org/english/bodies/hrcouncil/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for Children and Armed Conflict: www.un.org/children/conflict/english/home6.html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www.unviolencestudy.org/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www2.ohchr.org/english/issues/children/rapporteur/index.htm

United Nations Special Session on Children: www.unicef.org/specialsession/index.html

United Nations "Zero-Under-18" Campaign: http://zerounder18.org/

Watchlist on Children and Armed Conflict: www.watchlist.org

World Bank - Children and Youth: www.worldbank.org/childrenandyouth

World Congress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www.csecworldcongress.org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www.who.int

무력 분쟁 상황에서의 인권

HUMAN RIGHTS IN ARMED CONFLICT

국제인도주의법 :

전쟁터에서조차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

>> [...] 다음의 행위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금지한다. [...]: 생명과 신체에 대한 폭행, 특히 모든 종류의 살인, 상해, 학대 및 고문; 인질로 잡는 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특히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대우; 정상적으로 구성된 법원이 행하는 사전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는 판결의 언도 및 형의 집행; 문명인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법적 보장을 부여,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는 수용하여 간호하여야 한다. [...] <<

1949년 **선포된 4개의 제네바 협약에 공통으로 채택된 3조 1, 2호.**

사례

"내가 베트남에 갔을 때 19살이었어요. 나는 4급 소총 특기병이었지요. 사람 죽이는 훈련을 받았지만 막상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는 현실은 훈련이나 방아쇠를 당기는 일과는 다른 것이었어요.

그런 일을 하러 간다고는 짐작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여자들과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알았죠. 하지만 그들을 죽이러 간다는 말이 내가 그들을 죽이게 될 것이라는 걸 의미한다는 걸 그 일이 정말로 일어날 때까지 몰랐던 것이지요. 누군가를 죽이러 간 것인지는 몰랐어요. 나는 누구도 죽이는 걸 바란 게 아니에요. 살인을 하려고 입대한 게 아니에요.

그 여자는 수목 한계선을 등지고 달려갔어요. 하지만 그녀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죠. 그게 무기인지 무엇인지 알지는 못했어요. 그게 여자라는 건 알고 있었고, 여자를 쏘고 싶지는 않았지만 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 여자가 무기를 들고 달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쐈어요. 그 여자를 뒤집어 보니, 그건 아기였어요. 나는 그 여자에게 네 발을 쐈고 총알이 그 여자 몸을 관통해서 아기도 맞힌 거지요. 그 여자를 뒤집었을 때, 아기 얼굴이 절반이 사라져 있었어요. 내가 받은 훈련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었고, 나는 살인을 이제 막 시작한 것 뿐이지요.

베트남전 참전 퇴역군인인 미국인 Vernado Simpson이 1968년에 발생한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출처: Donovan, David. 2001. *Once A Warrior King : Memories of an Officer in Viet Nam*에서 인용함)

토론할 거리

1. 이 군인은 왜 여성과 아이들을 쏘는 것이 비합법인줄 알면서 발사하기로 결정했을까?
2. 여성과 아이들을 무력 분쟁 과정의 보호대상으로 정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복종이 전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군인은 명령에 언제나 복종해야 하는가?
4. 누가 전시중의 합법과 비합법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가?
5. 무엇이 비합법인가를 배우는 것이 군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규칙을 정하는 것의 목적은 무엇인가?
6. 위 사례에서 묘사된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알아야 하는 내용 😐!?

1. 전쟁터에서조차 넘어선 안 될 선이 있다.

전쟁보다 인간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거의 없다. 무력 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하에서 정부가 사회적 욕구와 개인의 욕구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인권은 체계적, 조직적 폭력의 발발 상황 하에서는 보장될 수 없다. 그러한 폭력은 무력 분쟁의 주요한 특징이며, 인권의 개념을 지탱하는 근본원리에 도전하는 것이다.

무력 분쟁 상황 그 자체는 상호 보완적이나 각각 독자적인 몇 가지의 단순한 규칙이 요구된다. 즉, **전쟁에서도 선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칙들이 통상 **국제인도주의법** 혹은 **무력 분쟁법**으로 표현된다. 국제인도주의법은 아래의 것들을 위해 무력 분쟁 상황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폭력에 관한 몇 가지 원리와 규칙으로 요약될 수 있다.

- 적대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시민들") 보호
- ("전투원"이라 할지라도) 전쟁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것 이상의 폭력 사용 제한

국제인도주의법과 인간안보
무력 분쟁이라는 예외적이고 무정부적이고 폭력적인 현실 상황에서 법이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는 진술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하였다. 이러한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많았다. 개인이나 사회의 생존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법률적 고려가 인간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얼핏 볼 때 의아한 일로 보이기는 하지만, 공격자와 방어자 모두 국제인도주의법에 의해 제정된 행동규칙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많은 이유가 있다. 비록 폭력의 발발이 안보에 대한 개념 자체를 부정해버리기는 하지만, 국제인도주의법이 전쟁에도 제한이 있다는 개념을 지킴으로써 인간안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제인도주의법은 무력 분쟁의 현실을 인식하고, 개인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칙을 만들어 이에 대해 실용적으로 대응을 한다. 이 조항은 정부군 혹은 반군이 무력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립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을 우선적이며 중대한 목표로 두고 있다. 국제인도주의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화해의 가능성을 증진시킴으로써 궁극적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전쟁은 언제나 평화를 목적으로만 일어나야 한다."

Hugo de Groot(Grotius).

국제인도주의법의 기원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1차 제네바 협약이 채택된 1864년에 국제인도주의법이 탄생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그 협약에 담은 규칙들이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명백한 일이다. 실제로 1차 제네바 협약의 대부분은 현존하는 국제 관습법에서 유래한 것이다. 사실상 무력 분쟁 상황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특정 범주의 대상들을 정하는 규칙이 있었고, BC1000 경에 전쟁 중에 전투에서 사용되는 허용된 혹은 금지된 수단과 방법에 관한 관습이 있었다.

19세기 중반까지 국제인도주의법으로 구현된 협정과 관습은 지리적 제약이 있었고 보편적 합의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었다. 스위스의 사업가 앙리 뒤낭은 인도주의법과 관련한 첫 번째 보편 조약이 맺어지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1859년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군대가 북부이탈리아에서 대치하던 전투 중에 Solferino에서 발생한 살육을 목격하고, 뒤낭은 전쟁의 공포를 묘사하는 책을 써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고, 전쟁 희생자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알리려 했다.

1864년 "전쟁터에서의 부상자 처우 개선"에 관한 제네바 협약의 채택으로 인해 당사국들이 개개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군사력을 제한하는 것에 동의하는 국제 조약의 보편적 비준이 가능하게 되었다.

"1859년 6월 25일의 태양이 떠올랐을 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장면이 드러났다. 남자들과 말들의 시체가 전장을 뒤덮었다: 송장들이 길, 도랑, 골짜기, 덤불 그리고 들판에 흩어져있었다. [...] 하루 종일을 보낸 가엾은 부상자들은 유령처럼 창백해진 채 탈진해 있었다. 가장 심각한 부상을 입은 어떤 이는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것 같은 표정으로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 다른 이들은 발작적인 경련에 의한 긴장과 충격으로 흥분한 채 불안해하고 있었다. 극심한 부상으로 인한 감염 증상을 이미 보이는 다른 이들은 고통으로 거의 미칠 지경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제발 고통을 끝내 달라 부탁을 하기도 하면서, 죽음과 싸우느라 얼굴이 온통 일그러져 있었다."

앙리 뒤낭. A Memory of Solferino, **1862.**

국제법으로서의 국제인도주의법

국제인도주의법의 규칙과 원리들은 도덕적 철학적 지침일 뿐 아니라 사회적 관습으로서 전 세계적

으로 인정되는 법규이다. 이들 규칙의 법률적 본성은 당연하게도, 무력 분쟁시 서로 다른 당사자들에게 부과되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체제의 존재로 이어진다. 국제인도주의법을 존중하지 않는 측은 법률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국제인도주의법은 보다 포괄적인 구조의 별개의 부분으로 이해되고 분석되어야 한다: 국제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의 협조와 협력을 규정하는 규칙과 원리들로, 즉 국제 공법으로 말이다.

국제인도주의법과 인권

무력 분쟁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국제인도주의법은 갈등 상황에서 인권의 핵심을 보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법은 생명권, 노예금지, 고문과 비인간적 취급 금지, 어떠한 형태든 법의 소급 적용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 위기 시에 훼손될 수도 있는 다른 권리(언론, 이동, 집회의 자유와 같은)와 달리 국제인도주의법이 보장하는 핵심적 보호는 유예될 수 없다. 국제인도주의법은 무력 분쟁을 만드는 예외적인 상황에 정확히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의 "핵심" 내용은 인도주의법이 제공한 기본적이고 법률적 보장과 합치된다. 국제인도주의법은 "*lex specialis(특별법)*"으로서 무력 분쟁 상황을 규율한다. 인권은 평화로운 시기를 위한 것인 반면, 국제인권법은 무력 분쟁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국제인도주의법과 인권법은 무력 분쟁 상황에서 체포된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을 상호 보완적으로 보호한다.

무력 분쟁 상황에서 기본적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인도주의법상의 몇 가지 방법

- 전쟁 희생자에 대한 차별 없는 보호
- 인도주의법은 삶, 특히 시민과 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보호다. 인도주의법은 또한 사형제도를 제한하고 있다.
- 국제인도주의법은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수단을 보호하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범주화된 권리를 인권법의 하위에 둔다는 점에서 전통적 시민권보다 진보한 것이다.
- 국제인도주의법은 고문과 비인간적 대우를 금지한다.
- 국제인도주의법은 노예제를 금지한다. 전쟁포로가 포로를 사로잡은 사람의 재산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 재판권은 제네바 협약과 부가의정서에 포함되어 있다.
- 아동과 가족의 삶에 대한 보호는 국제인도주의법에 명백히 강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의 수용조건에 대한 규칙과 가족구성원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그것이다.
- 신앙에 대한 존중은 전쟁 범죄자 뿐 아니라 매장관습에 관한 규칙에도 고려되어 있다.

국제인도주의법 인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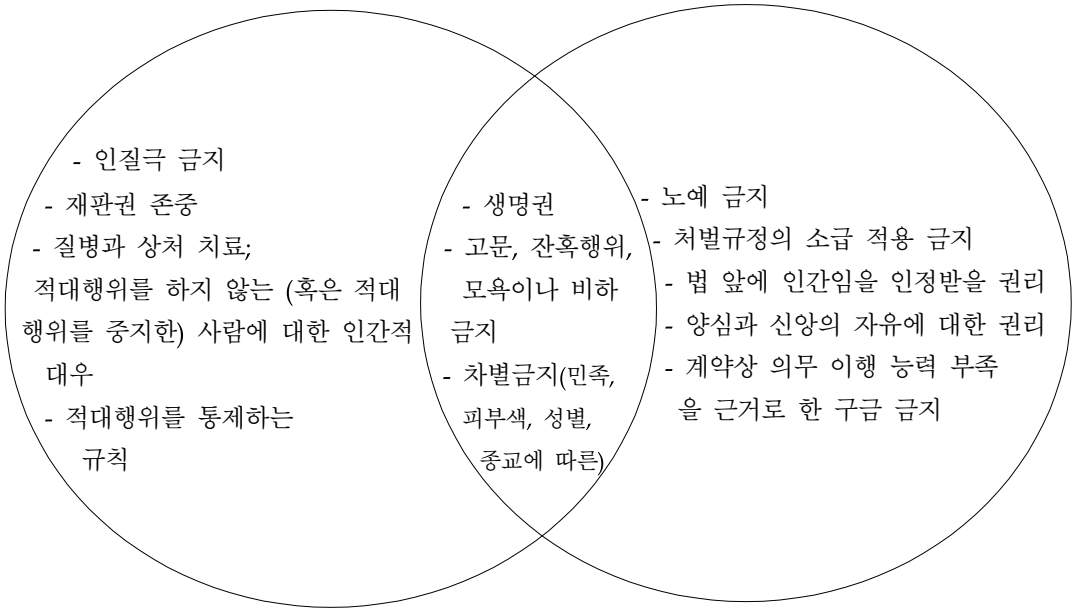

어떠한 상황에서도 . . .

언제 국제인도주의법이 적용되는가?

국제인도주의법은 국가 간 무력 분쟁과 비 국가 간 무력 분쟁 뿐 아니라 점령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다. “무력 분쟁”은 1949년 이후부터 전통적 “전쟁”의 개념을 대신하여 사용되고 있다.

국가 간 무력 분쟁은 둘 이상의 국가가 적대행위를 하는 경우, 국민들이 식민권력, 외국의 점령, 인종 범죄 등에 대항하여 일어난(봉기한?) 경우, 통상 말하는 민족해방 전쟁 등에 해당한다.(등을 지칭한다?) 적용 가능한 인권법 체제 그 이상으로 이러한 상황들은 4개의 제네바 협약과 제1 부속의정서를 포함한 국제인도주의법에 보다 포괄적으로 종속된다.

내부적 무력 분쟁(내전///)에는 보다 제한적인 규칙들이 적용될 수 있다. (그것들은) 4개의 협약과 제2 부속의정서에 공통된 3장이 포함된다. 3장은 인간성의 최저선을 표현하며, 무력 분쟁의 모든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부가적으로 원래는 국가 간 갈등에 적용하도록 설계된 몇 가지 규칙들과 관습적 규칙들은 비국가간 갈등에도 적용한다. 무력 분쟁이라고 할 만한 정도에 도달하지 않은 폭력의 상황에서는 국제인도주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에는 인권법의 조항과 국내법의 관련조항이 폭력 행위에 가담한 이들의 운명을 규율한다.

차이

"오늘날은 갈등의 희생자들이 익명으로 남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헤아릴 수 없다 [...].
끔찍한 진실은 오늘날의 시민들은 단지 '두 적대하는 군대 사이에 끼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사고의 부상자 혹은 요즘 유행하는 완곡어법상의
우연한 사상자나 '부수적 희생자'가 아니다.
아주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의도적인 목표물이 된다."

코피 아난, 전 유엔사무총장. **1999**

2. 정의와 설명

무력 분쟁에서의 국제인도주의법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

- 전투력을 잃은 사람과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과 도덕적·신체적 완전함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그들은 모든 상황에서 보호받아야하며 어떤 불리한 차이 없이 인간적으로 대우받아야한다.
- 항복한 사람과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부상 입히는 것은 금지된다.
- 부상자와 환자는 이들을 자신의 군사력 범위 안에 두고 있는 갈등 당사자에 의해 수용되어 돌봄을 받아야 한다. 의료진들, 건설자들, 수송자들, 기술자들 역시 보호한다. 적십자사, 적신월사, 적수정사의 상징은 그러한 보호의 표시이며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 적군 관할 지역에 포로가 된 전투원과 시민들은 생명, 존엄성, 개인적 권리와 신념을 존중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그들은 모든 종류의 폭력행위와 보복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누구나 기본적 재판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물리적 혹은 정신적 고문, 체벌 혹은 비하적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 갈등 당사자들과 무장세력 구성원들은 전투수행상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는데 제한이 있다. 전투 과정에 불필요한 손실과 과도한 고통을 야기하는 특성을 가진 무기 혹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 갈등 당사자는 시민 일반과 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언제나 시민 일반과 전투원을 구분해야 한다. 시민 일반도 시민 개인도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격은 오로지 군사적 목표물만을 향해져야 한다.

(부기: ICRC(국제적십자위원회)가 정리한 이러한 규칙들은 국제인도주의법의 핵심을 요약한 것이다. 이 규칙들은 법적 기구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강제로 조약을 대체하려 하는 것도 절대 아니다. 이 규칙들은 국제인도주의법 증진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국제인도주의법은 무엇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국제인도주의법은 민간인, 환자, 전쟁포로, 난파자, 의료진과 종료인 등 전투원이 아니거나 더 이상 전투원이 아닌 **개인들**을 보호한다. 이러한 개인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이들을 항상 부정적인 차별 없이 인간적으로 대우할 의무를 갈등 당사자들에게 강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호가 보장될 수 있다.

병원과 앰뷸러스 같은 특정한 **장소와 대상** 역시 보호받으며 공격받아서는 안 된다. 국제인도주의법은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과 장소들을 인식하기 위해 몇 가지 상징물과 표식–특히 적십자사, 적신월사, 적수정사의 상징–을 정의하고 있다. 유적지, 예술작품 혹은 (종교적)숭배 장소 역시 보호된다. 그러한 대상에 대하여 군사적 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또한 **환경** 또한 국제인도주의법의 관심 영역이어서 전투가 시도되거나 예상될 때, 자연환경에 광범위한, 장기간의 그리고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적대행위를 지휘할 때 **전투원**과 **민간인**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는데, **민간인의 사물과 군사적 목표물**도 구분되어야 한다. 이것은 민간인들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처럼 민간인들의 생존과 최저 생활에 필요한 재화(식량, 가축, 식수원, 기타)도 보호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인도주의법은 치명적 상처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확산탄(exploding bullets) 등처럼 군사적 기대효과보다 과도한 영향을 주는 무기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보호한다. **인간성, 군사적 필요, 균형성(proportionality)**의 원칙은 시민들이 우연한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전투원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표를 이루는 핵심이다. 군사적 필요는 상대를 제압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행위들로 정의되는데, 그 법은 이를 충분히 헤아리도록 작성되었다. 그 정도를 특정한 인도주의법은 인권 법률가에게는 충분히 "인도주의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법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득을 가지고 있다.

국제인도주의법을 준수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국제조약의 당사자는 국가이다. 따라서 1949년 제네바 협약과 1977년의 2개의 부속의정서의 당사자는 국가이다. 그리하여 무장 세력의 모든 당사자들은 – 정부의 무장 세력이든 반대진영의 무장 세력이든 – 국제인도주의법의 구속을 받는다.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정부는 1949년 제네바 협약의 당사국인데, 이는 이 협약의 보편성을 잘 보여준다. 현재, 170개 국가가 국제적인 무력 분쟁의 희생자 보호와 관련 있는 제1 부속의정서의 당사국인데, 비국제적 무력 분쟁의 희생자 보호와 관련 있는 제2 부속의정서의 당사국들은 165개 국가이다.

인간성

"무력 분쟁의 한 가운데에서의 인간성 보존을 통해, 국제인도주의법은
화해를 향한 길을 열고 교전당사국간의 평화재건 뿐 아니라 인민들 간의
조화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한다."

국제 의원연맹(Inter-Parliamentarty Union). 1993.

3. 문화적 관점 차이와 논쟁적 이슈

문화적 인식의 중요성

인간의 전쟁의 잔인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보편적이다. 전 역사를 통틀어 많은 문화권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력사용을 제한하는 노력을 해왔다. 비록 초기의 제네바 협약 혹은 헤이그 협약이 시작부터 보편적인 것은 아니었으나, 유럽 기독교 문화권에 속한 법률가와 외교관들이 초안을 작성하고 채택한 것이기에, 그 기저의 가치는 보편적인 것이었다. 국제인도주의법의 이러한 보편성은 결코 평가 절하되거나 잊혀 져서는 안 된다: 사실상 이 규칙의 준수와 이행은 적용될 조약과 지역적 전통이나 관습 사이의 분명한 유사성 확립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국제인도주의법 적용과 관련된 상반된 시각들

국제인도주의법의 원리가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폭력의 징후가 무력 분쟁이 되는 지점에 대한 대립적인 생각 때문에 이행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무력 분쟁이라 정의되는 것은 국제인도주의법이 적용되기 위한 기본적 요건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국가는 자국의 영토 안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하면, 이 사건들을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 심지어 다른 국

가가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경우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 무력 분쟁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폭력을 가한 이들이 인권법이 제공하는 기본적 보호를 넘어 국제인도주의법의 규칙 하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놀라울 것 없이 정부 권력자들은 이들 가해자들을 전투원이 아닌 죄인, 범죄자 혹은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려 하며, 때문에 국제인도주의법을 기피하려는 경향을 갖는다.

"우리는 인간이, 국적과 무관하게, 전쟁에 참여했을 때 얼마나 쉽게 공격적 심리에 빠질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다. 그러한 공격성은 인종차별주의적 행동에서 명백하게 설명되는 것처럼 종종 상대(타자)에 대한 증오에 기인한다.
전쟁범죄를 다룰 때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군인들이 경험하는 죽음에 대한 대단한 공포이다. 전쟁 중에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은 폭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역으로 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잔인한 행위 그 자체로 표현될 뿐이다."

Yuki Tanaka, 일본 학자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제인도주의법을 수용하게 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그 규칙의 적용이 적대행위에 참여한 집단에게는 어떠한 정당성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제인도주의법의 현실적이고 원칙적 접근은 갈등의 어느 편인가 구분 없이 희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인도주의법은 대립적인 개념–군사적 필요와 상대방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심–에 균형적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4. 이행과 모니터링

무력 분쟁 상황에서 법을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국제인도주의법 초안을 작성한 정부 대표들은 특별한 이행 체제를 고안해야 했고, 무력 분쟁 희생자들의 특정한 욕구를 다룬 일반적인 국제법 체제를 채택했다. 불운하게도, 일반적인 체제와 특정한 체제의 결합은 무력 분쟁 하의 개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도 담보할 수 없었다. 이러한 존중은 **훈련**과 **교육**이 무력 분쟁 상황에 처한 모든 이가 적조차도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 수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국제인도주의법의 이행을 위해 채택된 세 가지 유형의 전략이 있다.

- 예방적 수단
- 무력 분쟁 중에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수단
- 억제 수단

예방적 수단

제네바 협약의 정부 당사자는 – 이는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를 의미한다 - 국제인도주의법에 대한 지식을 가급적 널리 확산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정부의 무장 세력에게 국제인도주의법을 교육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시민사회와 젊은이들 역시 무력 분쟁과 관련한 인도주의적 관점에 대해 교육받아야 한다. 국제인도주의법은 전쟁 중에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더 나아가, 국제인도주의법은 또한 우리의 모든 경험의 그러한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제인도주의법 교육은 인권교육과 함께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시민교육에 특별히 기여할 수 있다. 교육과 훈련은 진정한 인도주의적 유연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평화로운 시기에 시작해야 한다.

준수 감시 수단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정부에 자신들이 인도주의적 조항이 알려지도록 하는 일에 착수하였음과 그 법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충분히 존중되도록 하기 위한 단계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가장 큰 역할을 한다.

억제 수단

국제인도주의법은 정부로 하여금 모든 위반을 억제하도록 의무를 지운다. 국제인도주의법은 전쟁범죄로 불리는 특정한 심각한 인권 위반을 범죄화한다. 실제로 정부가 전쟁범죄를 처벌하고,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알려진 사람들을 수사하고, 그들을 국내 법정에 세우거나 기소를 위해 다른 국가로 소환하도록 하는 국내 법안을 발효하도록 요구된다. 이러한 억압수단들은 인권범죄가 재발하는 것을 억제하고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개인을 전쟁범죄,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 그리고 인종학살로 재판을 받게 할 수 있다. 임시재판소가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 갈등을 위해 수립된 것과 달리 ICC는 상설적 사법권을 가진다.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다르푸르/수단, 리비아와 관련된 사례들은 최근까지 법정에 소송계류중이다.

알면 좋은 내용

국제적십자운동과 **국제적신월운동**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186개 국가의 적십자협회와 적신월협회의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의 협회들은 자국의 인도주의 현장에서 공공당국을 보조하고 재난구조, 건강 프로그램, 사회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합은 국가협회들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조직이다.

국제인도주의법의 수호자, 촉진자로서의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무력 분쟁의 중심에서 어느 정도의 인간성을 보존하기 위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1. 모범 사례

민간인 보호

인도주의법은 민간인 면책의 원칙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격받아서는 안 된다. 그들은 예외적으로 보호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갈등에서 시민들은 종종 끔찍한 폭력을 견디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적 공격대상이 되기도 한다. 대량학살, 인질, 성폭력, 희롱, 폭발, 강제이주와 약탈, 고의적인 식수, 식량, 의료에 대한 접근 거부 등은 시민들 사이에 공포와 고통을 퍼뜨리는 행위들이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시민들이 특히 위험한 장소에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국제인도주의법이 여성과 아동들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특별한 관심이 주어진다.

여성들은 그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방식으로 무력 분쟁을 경험한다. 전투원으로 활동하는 여성부터 민간인으로서 하나로 목표물이 되는 여성까지 그 범위는 다양하다. 전쟁에 대한 여성들의 경험은 다면적이다 – 가족 구성원들과의 분리, 가족 구성원들과 생계수단의 상실, 그리고 성폭력, 부상, 박탈 혹은 죽음의 위험 증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한다는 것은 다음과 관련이 있다.

- 무기소지자에게 여성의 권리에 대하여 교육하기
- 적대행위의 희생자들에게 의료설비와 건강검진센터를 제공하여 산부인과와 출산건강을 위한 지원을 준비하기
- 여성포로들은 여성 감독관하에 두어야 하고 여성포로의 잠자리와 위생시설은 남성들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수감기관 당국자에게 상기시키기

- 무력 분쟁으로 인해 분리되어 있던 가족구성원들 사이의 접촉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기
- 실종된 가족에 대한 지원을 준비하기

☞ 여성인권

아동들은 곧잘 자신의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저질러지는 잔혹행위를 직접적으로 목격하는 사람이 된다. 그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투옥되거나 혹은 다른 가족들과 분리되기도 한다. 도망에 성공한 아이들조차 그들에게 익숙한 환경에서 분리되어, 그들 자신과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 그들은 종종 도망자가 되도록 강요당하거나, 그들이 스스로 삶을 영위하도록 버려지거나, 정체성을 거부당한다. 게다가 가족들과 함께 살든 혹은 분쟁지역에 남겨지든 아동들은 잠재적으로 충원 군인의 후보자이다. 가족을 빼앗긴 이들 아동 신병은 전쟁이 없는 삶을 상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무장 집단에 합류하는 것이 한 개인의 생존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는 것은 다음과 관련이 있다.

- 무기 소지자 사이에서 아동의 권리 존중 증진
- 무력 분쟁에 아동의 신병모집과 참여 금지
- 분쟁에서의 아동 희생자들에게 적절한 의료적, 심리적, 사회적 지원 준비

"전쟁 시기에 이루어지는 가족의 붕괴는 특히 여성과 소녀들이 폭력에 취약해지도록 만든다. 전쟁에 의해 근거지를 잃은 5,300만명의 80%가 여성과 아동이다. 아버지, 남편, 남자형제, 아들이 전투를 하러 보내지면, 여성이나 아동 혹은 노년층은 스스로를 부양해야 한다. 난민 가족들은 강간이나 강간의 공포를 피난을 결정한 핵심적 요소로 언급한다."

유니세프.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1996.**

-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보호와 실종자 추적을 통한 가족연계 복구 작업
- 아동 구금 상태를 감시하고 아동의 석방을 위해 활동하기 – 가족 구성원이 아닌 한 성인과의 분리를 보장할 것.

☞ 아동인권

"소위 자발적 이유로 합류하였다는 아동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합류하였다는 아동들의 거의 대다수는 생필품 때문이거나
희생되지 않으려는 혹은 안전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는 점에서 자발적
합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을 보호해줄 부모가 없는 아동들과 굶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거나
혹은 건강상의 문제를 자신 사람들도 군사 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

Mike Wessells 박사. 2006.

포로 보호

무력 분쟁 중 포로가 포획되어 수감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은 그들을 구금하고 있는 권위와 감옥의 환경에 대해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 취약성은 특히 무력의 과도하고 불법적 사용이 만연하고 구조적 결함이 악화되는, 갈등과 내부적 폭력의 시기에 심각하다. 국제인도주의법은 특별히 포로 보호를 위한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포로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간수들이 규칙에 대한 훈련을 받고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도록 하기
- 당국자들이 포로들을 위한 적절한 재정과 수단을 준비하도록 하기
-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중립적 인도주의적 조직이 포로들을 방문하여 그들의 처우를 감시하도록 허락하기
- 붕괴된 가족관계를 복구하기
- 국제 엠네스티와 인권감시기구와 같은 인권 단체나 지역 인권 단체들이 포로의 학대에 대해 조사한 것을 공표하도록 하기.

가족관계 회복

거의 대부분의 긴급한 상황 – 무력 분쟁, 인구의 대량 이주, 그 외의 위기 상황 – 에서 아동들은 그들의 부모, 가족이나 다른 책임져줄 어른과 분리된다. 그들의 상황이 명확해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고아"라기 보다는 "보호자와 헤어진 혹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들"로 간주된다. 노령자나 장애를 가진 사람 같은 이들은 분쟁 기간 동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들은 친척들

로부터 버려지거나, 고립되거나 분리되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들의 특수한 취약성 때문에, 국제적십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그들을 보호하고 가족과 만나게 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을 가동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다음의 방법을 포함한다.

- 국제적십자사, 적신월사를 통한 적십자 메시지, 라디오 방송, 전화, 인터넷 등으로 가족들 소식 전달하기
- 본국송환, 가족 상봉 조직하기
- 억류된 가족이나 전선으로 갈라진 친척들을 위한 가족 방문 진행하기
- 분쟁으로 인해 신분증을 잃어버려 억류될 상황이거나 제3국으로 보내질(이주될) 사람들을 위한 ICRC 여행 서류 발급하기
- 가족들에게 실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한 마디로 풀어보는 엠블럼

제네바 협약은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2006년) 세 가지 상징물을 언급하고 있다. 국제인도주의법은 엠블럼의 사용법, 규격, 목적과 부착위치 그리고 그것이 보호하는 사람들과 자산, 사용할 수 있는 사람(사용 자격), 엠블럼을 부착했을 때 보장해야 하는 것과 오용했을 때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무력 분쟁 시기에, **엠블럼**은 다음의 **보호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무장세력의 의료지원
2. 국가의 적십자사와 적신월사는 자국의 정부로부터 무장세력의 의료서비스 지원에 대하여 정당하게 인정되고 권위를 부여받아야 한다.
3. 민간병원과 기타 의료 기구는 정부 의료 기구와 같이 간주되어야 한다.
4. 기타 자발적 구호 단체도 국가 기구와 같은 조건을 부여받아야 한다.

엠블럼 오용의 세 가지 유형:
1. 모조: 인도주의적 조직이 자신의 정체성을 위해 비슷한 적십자를 혼란스럽게 사용하는 것
2. 불법사용: 약사가 적십자기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것
3. 배신: 무장세력이 적십자를 이용해 무기를 운반하는 것

정부는 엠블럼의 오용을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가장 심각한 오용의 경우는 전쟁범죄로 간주된다.

인도주의적 행동의 활동원칙

어떤 조직이 인도주의 조직으로서의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 원리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중립성과 공평성이다. **중립성**은 편을 들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원리는 인도주의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분쟁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유지하게 해준다. **공평성**은 필요에 기반을 두고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인도주의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국적, 민족, 종교적 신념, 사회적 계급 혹은 정치적 견해 등을 기반으로 하는 어떠한 구별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로지 개인의 필요에 따라 도움을 받고, 가장 긴급한 경우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적십자와 적신월의 근본원리

- **인류애** - 생명, 건강 보호하기와 인간에 대한 존중 보장하기
- **공평성** - 국적, "인종", 종교적 신념, 계급 혹은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금지: 오로지 필요에 따라서 도움을 받기.
- **중립성** - 분쟁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기
- **독립성** - 외부의 어떠한 유형의 권력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율
- **자원봉사** - 비영리 조직
- **단결** - 모든 나라에 오직 하나의 적십자 혹은 적신월
- **보편성** - 전 세계적 조직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수행하는 활동의 민감한 정치적 성격 때문에, 위원회가 포로를 방문하거나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서 중립적인 중재자 역할을 할 때, **비밀유지의무**가 이 기구의 작업에서 중요하다. 분쟁 당사자들이 최소한 위원회를 용인해주기 위해서는 말이다. 중립성과 공평성을 따르는 이 원리는 인도주의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학대를 고발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윤리적 딜레마를 낳기도 한다. 학대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희생자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혹은 그들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다가갈 수 없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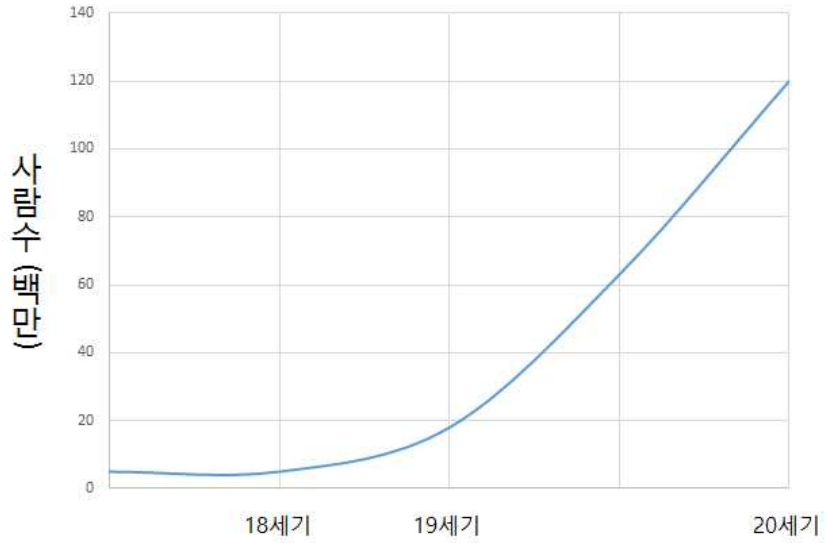

출처: Inter-Parliamentary Union and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1999. *Respect fo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국가기반(State-Based) 무력 분쟁 유형의 동향: 1946-2008

인간안보 보고프로젝트는 국가기반 무력 분쟁을 "당사자들 중 최소한 한 당사자가 정부이고, 연 25명 이상의 전투 중 사망자가 발생한 분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국가기반 무력 분쟁은 국가 사이의 분쟁, 국가 내 혹은 시민간의 분쟁, 국제화된 국가 간 분쟁과 국가 외 분쟁을 포함하게 된다. 지난 수십 년간 국가기반 분쟁이 가시화되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무력 분쟁이 국가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 1940년대 후반, 국가 내에서 발생한 갈등이 모든 분쟁 중 절반의 비율을 차지한 반면, 1990년대 초반에는 이러한 분쟁이 거의 90%에 다다른다. 국가 간의 분쟁에서 언제나 발생하던 가장 끔찍한 유형의 갈등은 드물어졌다. 2007년에는 1957년 이래로 최저의 분쟁 수치를 기록하였다. 실제 전쟁의 수도 줄었지만 그러한 갈등에서의 사망자의 수도 줄어들고 있다. 인간안보 보고프로젝트에 따르면 전쟁사망자가 1950년대에는 연간 2만명이었는데, 21세기에는 4,000명이다. 2차 대전 이후 전쟁 양상이 점점 덜 치명적이 되어갔기 때문이다. (출처: Human Security Report Project. 2011. *Human Security Report 2009/10: The Causes of Peace and the Shrinking Costs of War.*)

비정부 무력 분쟁 지역 동향: 2002-2008

2009/10년 인간안보 보고서에 따르면, 비국가간의 무력 분쟁은 "두개의 조직화된 집단 – 두 집단

모두 국가의 정부가 아닌 – 사이의 무기를 사용하여 한 해에 최소 25명의 전사자를 만드는 분쟁"으로 정의될 수 있다. 비정부간의 갈등에는 두 개의 구별되는 집단이 있다: 첫 번째 범주는 서로 다른 반란 집단 간의 분쟁이며, 두 번째 범주는 종족 간, 종교 간 분쟁 및 기타 집단 간 분쟁을 포함한다. 정부기반 무력 분쟁과 달리 비정부간의 무력 분쟁은 기간이 짧으나 잔혹성에서는 뒤지지 않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록 분쟁의 수치는 2002년에서 2007년 사이에 52% 정도 줄었으나, 분쟁의 전반적인 수치는 2008년에 최고점에 다다랐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갈등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인 반면, 유일하게 유럽이 비정부간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다.

(출처: Human Security Report Project. 2011. *Human Security Report 2009/10: The Causes of Peace and the Shrinking Costs of War.*)

테러리즘

국제인도주의법에 관해 테러리즘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제기되는 토론 이슈는 피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테러리즘이 야기하는 안보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할 때 제기되는 어려움의 예는 무력 분쟁과 "테러리즘과의 전쟁"과 관련하여 미국에 의한 억류자의 상황이다. 무력 분쟁의 원칙은 둘 이상의 국가 간에 무기가 동원된 갈등이거나 혹은 국가와 비국가인 무장집단 간에 일정 규모 이상의 무기가 동원되는 갈등은 무력 분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러한 원칙의 해석은 국가별로 다르며, 특히 테러리즘에 대한 도전에 직면하는 경우 그러하다. 미국은 "테러리즘과의 전쟁"이 무력 분쟁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며, 매우 단호하게 의견을 표명한다. 이 전쟁은 테러리즘이 진압된 뒤에야 끝날 것이다. 그리고 테러리즘은 전 세계적 문제이기 때문에 전투의 원칙은 전 세계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의견에는 테러리스트로 추정되는 특정인에 대한 제한적 살해에 대한 시각도 포함되어 있다.

관타나모 캠프에 억류중인 구금자들의 상황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전쟁에서 포로가 된 구금자와 그렇지 않은 구금자에 대한 구별이 만들어져야 한다. 따라서 포로가 된 시점에 무력 분쟁이 존재하였는가 아닌가도 판단되어야 한다. 미국은 2001년 9월 11일 이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반격을 정당방위로 규정하면서 테러행위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였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이 2001년 행위에 책임은 없지만 아프가니스탄이 테러리스트 훈련 캠프를 위한 안전한 안식처를 제공했다고 간주한다. 아프가니스탄 내의 분쟁은 미국 지방법원에서 공인된 것처럼 국제적인 무력 분쟁으로 자격을 얻었다. 아프가니스탄의 전장에서 포로가 된 포로들이 국제인도주의법이 규정한 "전쟁포로"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국제인도주의법은 무력 분쟁의 전장이 아닌 소위 "테러와의 전쟁"에서 포로가 된 사람들에 관해 적용되지 않는다. 1949년 제네바 협약은 "전쟁포로"로서의 억류자의 지위에 대한 판단에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제인도주의법은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분하며 오직 전투원만 "전쟁

포로"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 비전투원이 전투에 참여할시 전쟁범죄로 간주되어 기소될 수 있는 반면, 전투원은 무장 세력을 위해 싸울 수 있다. 제3 제네바 협약 제5호는 적의 편에 서서 공격적 행위를 저질렀는지 의심되는 사람의 경우 "그러한 사람은 관할법원에 의해 그들의 상황이 판단될 때까지 현존 협약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규칙을 관타나모의 상황에 적용하면 포로가 되는 순간의 상황이 명확하지 않은 구금자는 전쟁포로의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가정에 이르게 된다. (출처: ICRC. 2012. *Persons detained by the US in relation to armed conflict and the fight against terrorism – the role of the ICRC.; ICRC. 2011. The relevance of IHL in the context of terrorism.; ICRC. 2010. Challenges for IHL – terrorism: overview.*)

대인지뢰 및 집속탄 금지

1990년대 전반에 걸쳐 국제적십자사와 적신월사운동, 국제조직과 대부분의 NGO 연대는 대인지뢰 금지 달성과 지뢰희생자 및 지뢰에 영향을 받은 공동체를 구호하기 위해 활동했다. 이 활동은 1997년 오타와 조약의 채택으로 마무리 되었는데,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생산 및 이동 금지와 파괴에 관한 협약**은 1999년 3월 1일 발효되었다. 이는 국제인권법 산하에 널리 사용되던 무기를 금지하는 첫 번째 협약이며, 이전의 그 어떤 무기관련 다자간 협정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진 법이 되었다. 2012년 1월에는 156개 국가가 1997년의 지뢰금지협약을 비준하였다.

2008년에 집속탄을 금지하는 캠페인이 **집속탄 협약**의 채택으로 대인지뢰 금지 성공의 뒤를 이었다. 집속탄은 공중에 떨어지거나 혹은 지상의 화기에 던져질 때 각기 폭발력을 가지는 수백 개의 작은 조각(클러스터)을 내장하고 있는 무기이다. 그것들의 무차별적인 특성과 장기간의 폭발 잔여물의 위험성은 시민을 거대한 위험에 노출시키며 수세기에 걸쳐 공동체의 삶을 공격한다. 협약은 어떠한 경우라도 그러한 탄약의 사용, 개발, 생산, 구입, 축적 혹은 운반 등에 대한 금지할 의무와 집속탄의 파기, 공격 영역에서의 제거 및 그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의무를 국가에 강제 부과하고 있다. 2012년 1월, 59개 국가가 이 협약을 비준하였다.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지원(2010년의 세계적 현황)
포로 방문 500.928
이행된 방문 숫자 5.027
수용소 방문 1.783
2010년 신규등록 포로 14.738
수집된 적십자 메시지(가족 연계를 위한) 160.338
전달된 적십자 메시지(가족 연계를 위한) 145.114
가족 구성원 간에 진행된 전화통화 12.795

신규 등록된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 2.031
신규 등록된 제대 소년병 627
생필품 배달(인도주의적 지원) 4.735.328
식품 배달 4.937.114
식수와 주거 활동 9.928.247
(출처: ICRC. 2011. *Annual Report 2010. Main Figures and Indicators.*)

3. 연혁

인도주의법 발달에 일정 정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준 무력 분쟁이 있다.

1차 세계대전(1914-1918)에서 우리는 전례 없는 규모의 전쟁 방법을 목격하였다. 여기에는 유독가스, 첫 번째 공습, 수십만의 포로들이 포함된다. 특정 종류의 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1925년 협약과 전쟁포로에 관해 다루고 있는 1929년 협약은 이러한 전쟁 방법 발전에 대해 대응한 결과다.

1차 세계대전에서는 시민과 군인의 사망자가 1:10의 비율이었던 반면, 2차 세계대전(1939-1945)에서는 그 비율이 같았다. 1949년에 국제사회는 그러한 비극적 현상, 특히 시민에 대한 그러한 끔찍한 결과에 대응하여 조항을 수정하고 강제하며, 새로운 방법을 채택하는 등 협약을 개정하였다. 시민 보호를 위한 즉 제4차 제네바 협약이 그것이다.

1977년의 추가의정서는 반식민 전쟁 관련 보호 뿐 아니라 신군사기술에 대한 조응의 결과이다. 특히 제2 추가의정서는 무장한 반체제 세력 혹은 지휘 세력의 통솔 하에서 일부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조직화된 무장집단에 관한 것이다.

국제인도주의법의 조치 및 관련 조치들

1864 전장의 부상 군인의 상황 개선을 위한 제네바협약
1868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언(전시에 특정 조명탄 사용금지를 위한)
1899 지상전에서의 법률과 관습을 존중하고 1864년의 제네바협약을 해전에 적용하는 헤이그협약
1906 1864년의 제네바협약의 검토와 발전

1907 1899년의 헤이그협약의 검토와 새로운 협약의 채택

1925 질식가스, 독성가스 및 기타 다른 유형의 가스와 세균을 전시 전쟁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네바의정서

1929 2개의 제네바협약

- 1906년 제네바협약 개괄과 발전
- 전쟁포로(신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1949 제네바협약:

I. 전장에서 부상자와 환자의 여건의 개선

II. 해상에서의 무장세력 구성원의 부상자, 환자와 조난당한 자의 여건의 개선

III. 전쟁포로에 대한 대우

IV. 전시 시민의 보호(신규)

1954 무력 분쟁이 발생한 경우 문화재산의 보호에 관한 헤이그협약

1972 세균생물학(생물학)적 무기와 유독성 무기의 개발, 생산 및 이송 금지와 이들에 대한 폐기에 관한 협약

1977 국제적 무력 분쟁에서의 희생자(의정서 I)와 비국제적 무력 분쟁에서의 희생자(의정서II)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1949년 4개의 제네바협약에 관한 2개의 추가의정서

1980 치명적 상해를 입히거나 무차별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간주되는 특정한 전통적 무기의 사용 금지 혹은 제한하는 조치(CCW), 즉

- 감지 불가한 파편에 관한 의정서(I)
- 지뢰, 은폐폭탄 및 기타 장치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의정서(II)
- 소이탄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의정서(III)

1993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이송 및 사용의 금지 및 제한, 폐기에 관한 협약

1995 blinding laster 무기와 관련된 의정서 (1980년 협약에 대한 제IV의정서[신규])

1996 지뢰, 은폐폭탄 및 기타 장치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수정의정서(1980년 협약에 대한 [수정]의정서II)

1997 대인지뢰의 사용, 이송, 생산과 전달 및 폐기에 관한 협약

1998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법령

1999 문화자산에 관한 1954년 협약의 의정서

2000 무력 분쟁에 참여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선택의정서

2001 비국제적 갈등에 확대적용하기 위한 CCW 제1조 수정안

2002 로마법령을 강제하기 위한 첫 번째 국제형사재판소의 소집

2002 무력 분쟁에 참여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선택의정서를 강제하기

2003 전쟁 폭발잔여물에 관한 의정서(1980 협약의 제V의정서)
2008 집속탄 협약
(출처: ICRC, www.icrd.org/ihl)

추천 활동

활동 I: 왜 국제인도주의법을 준수해야 하는가?

PART I: 소개

많은 사람들에게는, 전쟁에도 규칙이 있다는 생각 자체가 터무니없어 보일 수 있다. 전쟁 그 자체가 법률과 인권의 기준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국제인도주의법의 규칙을 수용하고 집행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제시된 토론에서 참여자들은 무력 분쟁의 시기에 국가가 준수해야 하는 인도주의적 의무들의 주된 이유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몇 가지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PART II: 일반적인 정보

활동유형: 토론

목적 및 목표: 무력 분쟁에서 규칙이 필요한 이유 이해하기, 국제인도주의법의 생각으로 발생한 까다로운 질문을 인지하기, 국가가 국제인도주의법을 존중하는 이유들과 친숙해지기, 인권법과 국제인도주의법의 보완관계에 관한 설명 이해하기, 국제인도주의법의 기본 규칙 습득하기

대상그룹: 청소년, 성인

그룹크기: 12-20

소요시간: 90분

준비사항과 준비물:

- 국제인도주의법의 기본규칙을 포함하여 국제인도주의법과 인권법(앞에 제시한)의 보완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자료를 복사하여 배포하기.
- 토론과정에서 나오는 핵심적 아이디어를 판서할 칠판 준비하기.
- 참여자들이 토론질문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들 상호간 혹은 친구나 가족들과 스스로 토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활동 1주일 정도 이전에 토론 질문 배포하기.

관련기술: 논쟁을 이어가는 능력, 분석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능력, 대립된 의견을 다루는 능력.

PART III: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소개:

이 토론은 그 답이 쉽지 않은 몇 가지 까다로운 질문으로 이어지게 된다. 참여자들이 *정답*을 찾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기 보다는 창의적·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냉소적인 답도 무시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활동은 참여자들이 도덕적 법률적 근거를 뛰어넘어 국가가 국제인도주의법을 존중해야 하는 동기를 발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냉소적 언사도 이러한 동기를 이끌어내고 국제인도주의법의 원론적 본질을 보여주는데 활용될 수 있다.

토론과정:

참여자들을 4개의 소그룹으로 나누고 각각의 소그룹은 4개의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한다. 30분정도를 소그룹 토론에 배당하고 그 동안 강사는 각각을 돌며 토론을 지원하면서 제기되는 주제들을 적어둔다. 각각의 소그룹에서는 보고자를 정하여 두고 30분정도 나머지 다른 그룹에 상호 보고하게 한다. 남은 시간은 전 그룹이 플로어에 모여 보고자가 말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간다.

질문 1: 내가 만일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면, 내 행동을 제약하는 규칙을 왜 지켜야 하는가?

- 국가의 장기간의 이익에 대하여 생각하라.
- 만일 당신이 패한 편이라면 어떠하겠는가?
- 여론의 역할은 무엇인가?

질문 2: 이러한 규칙들이 언제나 깨져버리곤 하는데, 우리는 왜 이것들을 필요로 하는가?

- 규칙을 준수한다는 것은 새로운 소식이 될 것인가?
- 규칙이 항상 위반된다는 것은 어떻게 아는가?
- 규칙의 불완전한 준수조차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호를 제공해줄 수 있다.
- 만일 규칙을 어기는 것에 대한 처벌이 보다 지속적으로 적용된다면 어떠할까?

질문 3: 인권에 관한 모든 현존하는 조치가 이행된다면 국제인도주의법이 필요할 것인가? 왜 국가는 인권준수의무를 전시로 확장하는 것을 보다 까다롭게 규정하지 않는 것인가?

- 무력 분쟁 시기에 특정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합당한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보라.
- 국제인도주의법은 인권을 보장하는가?
- 군인에게 전쟁 중에 생명권을 존중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가?
- 인권보호조치는 전투의 수단과 방법에 관해 최소한의 언급을 하는가?

질문 4: 국제인도주의법이 전쟁의 현실을 수용한다면 어떻게 평화와 인권에 대한 전망을 개선할 수 있겠는가?

- 무력 분쟁이 끝났을 때, 분쟁 당사자들이 적대행위 기간 동안 발생한 일들을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대규모의 파괴를 예방하는 것이 평화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을까?
- 분쟁 이후에 정의를 보장할 수 있는 억압수단에 대하여 생각해보라.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평화에 기여하는가? 혹은 전혀 그렇지 않은가?

피드백:

이 세션 말미의 10분은 토론 과정에서 좋았던 점과 좋지 않았던 점에 대한 참여자들의 견해를 나누는 것에 사용한다. 만일 토론 과정에 또 다른 질문이 제기되었다면, 그것들을 칠판에 판서해 두고, 가능하다면, 다음 토론에 활용하라.

방법론적 힌트:

참여자들이 잘잘못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에 머무는 것을 넘어서도록 격려하고 국제인도주의법을 준수하는 것이 왜 국가의 이익인가에 대하여 탐색하도록 이끌어라.

응용을 위한 팁:

소그룹 토론이 끝난 뒤, 각 그룹이 생각해낸 답을 정부가 국제인도주의법을 비준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10분 간의 역할극을 하라. 한 사람은 국제인도주의법의 핵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에 대해 의심스러워하는 정부의 수장의 역할을 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PART IV: 후속활동

최근 신문에서 세계의 뉴스를 검토하고 다양한 분쟁에서 국제인도주의법 위반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라. 언론, 국가 혹은 UN이 이것들을 전쟁에서 어쩔 수 없는 일로 바라보고 있는가, 혹은 그러한 행위에 대한 비난을 발견할 수 있는가?

더욱 탐색할 영역:

인권과 국제인도주의법의 보완관계

(출처: ICRC. 2002. *Exploring Humanitarian Law, Education modules for young people.*)

활동 II: 인도주의 활동에서의 윤리

PART I: 소개

윤리적 딜레마는 어떤 가치 있는 목표의 추구가 다른 가치 있는 목표와 충돌하는 상황 혹은 어떤 가치 있는 목표의 추구가 이득만큼 해가 되는 상황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인도주의적 활동가들은 그들의 활동에서 윤리적 딜레마를 자주 경험한다. 이에 대한 결과로, 인도주의적 활동에 대한 많은 비판이 더욱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어떤 유형의 딜레마가 인도주의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활용되는지 이해하는 것과 지속가능한 대안이 존재하는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시된 활동에서, 참여자들은 윤리적 딜레마가 존재하는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비판을 물리칠 수 있는 논거를 발전시킬 수 있다.

PART II: 일반적인 정보

활동유형: 사례연구

목적: 인도주의 활동을 인도하는 중립성, 형평성과 같은 것들의 원리 이해하기; 인도주의적 활동가들이 그들의 활동을 수행하면서 직면하는 모순 이해하기; 승자 없는 상황까지 이해하기; 인도주의적 활동가들은 선택을 피할 수 없음을 이해하기: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 것만큼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 될 수 있다.

대상그룹: 청소년, 성인

그룹크기: 12-20

소요시간: 90분

준비사항 및 준비물: 아래에서 언급하는 4가지 사례 복사하여 배포하기; 플립차트나 칠판에 각각의 상황을 묘사한 질문을 적기

관련기술: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능력; 개인적 견해를 개발하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강조하는 능력

PART III: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소개:

자신의 직업적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사람들의 행위에 따르는 특정 관행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하라. 이 때 대답은 의료인이 따라야 할 규칙과 의무, 정보원과 그의 사생활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경우 정보를 제공한 이의 이름을 비공개로 하는 언론인의 윤리규범 등이 혹은 포함될 수 있다. "인도주의적 활동의 활동원리"(상기한 바)로 명명한 단락을 검토하고 참여자들이 중립성과 형평성의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인도주의적 활동가들이 도움을 줄 때 필요한 주요한 고려사항을 판서한다: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사례연구 과정:

사례를 배포하고 참여자들이 소리 내어 읽는다. 윤리적 딜레마는 참여자들이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인도주의적 노력이 선언된 딜레마 하에서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A. 긴급지원단이 전운이 감도는 지역의 절망적인 시민들을 구호하러 도착하였다. 지원단은 시민들의 생존을 위한 외부의 지원이기 때문에 전쟁을 벌이는 집단들은 그들 자신의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있다. 이러한 외부의 지원은 자국 군인들의 보급을 위한 지역의 자원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는 것을 미루는데 기여할 수 있다. **우리가 전쟁을 연장하는 것인가?**

B. 시민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인종청소" 희생자를 위해 마련된 보호구역으로 도망쳐 왔다. 인도주의적 활동가들이 이 구역으로부터 나라 밖의 난민센터로 이동하는 것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인도주의적 활동은 그래서 그들의 고향으로부터 희생자들을 이동시킴으로써 "인종청소"에 기여하였다. **우리는 인종분리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가?**

C. 두 나라가 전쟁 중이고 엄청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다른 나라에서는 희생자들의 곤경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두 나라가 싸움을 멈추게 하는데 끼어들거나 시민을 보호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외국은 없다. "외국의 정치적 압력이나 군사적 개입이 없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시도하는 것은 바다에 물 한 방울 첨가하는 것 이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는 인도주의적 활동이 고작 세계를 위한 양심적 행동이라는 것 이외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인도주의적 활동가들은 한탄한다. **인도주의적 활동은 정치가들의 비참여의 구실을 제공한 것인가?**

D. 반란군이 보호소로 사용하던 전투지역의 마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들은 그들

집에서 3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캠프를 만들어 정착하도록 강제되었다. 인도주의적 구호 단체들은 그 캠프에서 식량과 의료지원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어쨌든 시민들의 강제된 이주를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시민들의 강제된 이주를 인정하는 것인가?** 참여자들이 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강사는 이러한 사례에 적절한 대안이 있는지를 물어보아야 한다.

피드백:

이 세션 말미의 10분을 이 활동 중에 좋았던 점과 좋지 않았던 점에 대하여 그룹이 토의하도록 배치한다. 토론 작업 중에 특정 조직의 활동에 관한 질문이 제기된다면 이 질문들을 기록하고 과제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방법론적 힌트:

이 활동은 어떠한 명백한 답을 만들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참여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인도주의적 활동가들의 관점에 분석이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참여자들이 중립성과 형평성의 원리만큼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대한 고려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토론이 이러한 점에서 벗어나면, 강사는 무력 분쟁에는 인도주의적 활동을 보완하는 많은 다른 활동가들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도 좋다.

응용을 위한 팁:

토론이 끝난 후, 몇몇 참여자에게 다음 상황에 대하여 연기하도록 요청한다.

구호 활동가가 난민캠프 문 앞에 서있다. 그는 이 캠프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캠프 안에 있는 적들이 무서워 주저하는 가족을 만난다. 아버지는 아픈 아내와 아기를 위해 총을 가지고 있겠다고 고집한다. 이 가족 역시 헤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들이 시나리오를 연기하고 난 후, 참여자들이 구호활동가가 고려해야 했던 원칙과 이 상황에서 모순된 원칙은 없는지 토론한다.

PART IV: **후속활동**

더욱 탐색할 영역:

인권 활동가는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동안 딜레마에 부딪히는가?

(출처: ICRC. 2002. *Exploring Humanitarian Law, Education modules for young people.*)

참고자료

Bouvier, Antoine. 2000.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the Laws of Armed Conflict. Distance Learning Course Designed for the United Nations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 UNITAR POCI.

Breau, Susan. 2005. *Humanitarian Intervention: The United Nations and Collective Responsibility.* London: Cameron May.

Cahill, Kevin M. (ed.). 2004. *Human Security For All: A Tribute To Sergio Vieira de Mello.*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Commission on Human Security. 2003. *Human Security Now.* Available at: www.humansecurity-chs.org/finalreport /English/FinalReport.pdf

Dinstein, Yoram, 2010. *The Conduct of Hostilities under the Law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onovan, David. 2001. *Once a Warrior King: Memories of an Officer in Viet Nam.* In: ICRC. Exploring Humanitarian Law, Education modules for young people. Geneva: ICRC.

Doswald-Beck, Louise and Jean-Marie Henckaerts (eds.). 2005. *Customar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unant, Henry. 1986. *A Memory of Solferino.* Geneva: ICRC Publications.

Fleck, Dieter. 2008. *The Handbook of humanitarian law in armed conflic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Forest Martin, Francisco. 2006.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Treaties, Cases, and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Gutman, Roy, David Rieff and Anthony Dworkin. 2007. *Crimes of War. What the Public Should Know.* 2nd ed. New York: Norton.

Human Security Report Project. 2011. *Human Security Report 2009/2010: The Cause of Peace and the Shrinking Costs of W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Huyse, Luc, Priscilla B. Hayner and Brandon Hamber. 2003. *Reconciliation after*

Violent Conflict: A Handbook. Stockholm: International Idea.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2012. *Persons detained by the US in relation to armed conflict and the fight against terrorism - the role of the ICRC.* Available at: www.icrc.org/eng/resources/documents/misc/united-states-detention.htm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2011. *Annual Report 2010. Main Figures and Indicators.* Geneva: ICRC. Available at: www.icrc.org/eng/assets/files/annual-report/current/icrc-annual-report-2010-main-figures.pdf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2011. *The relevance of IHL in the context of terrorism.* Available at: www.icrc.org/eng/resources/ documents/misc/terrorism-ihl-210705.htm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2010. *Challenges for IHL - terrorism: overview.* Available at: www.icrc.org/eng/war-and-law/contemporary-challenges-for-ihl/terrorism/overview-terrorism.htm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2003.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vailable at: www.ehl.icrc.org/images/resources/pdf/ihl_and_ihrl.pdf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2002. *Exploring Humanitarian Law, Education modules for young people.* Geneva: 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2002.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swers to your Questions.* Geneva: ICRC. Available at: www.icrc.org/eng/resources/documents/publication/p0703.htm

Inter-Parliamentary Union (IPU) and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1999. *Respect fo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Geneva: IPU/ICRC. Available at: www.icrc.org/eng/assets/files/other/icrc_002_1090.pdf

Kalshoven, Frits and Lisbeth Zegveld. 2011. *Constraints on the Waging of War.* 4th ed. Geneva/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rovost, René. 2002.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Quenivet, Noelle and Arnold Roberts. 2008.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Law: Towards a New Merger in International Law. Leiden: Nijhoff.

Sassoli, Marco, Antoine Bouvier and Anne Quintin. 2011. *How does Law protect in War? Cases and Documents on the practice of IHL.* 2nd ed. Geneva: ICRC.

Schabas, William A. 2006. *The UN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The Former Yugoslavia, Rwanda and Sierra Leon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olis, Gary D. 2010. *The Law of Armed Conflict: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W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riram, Chandra Lekha, Olga Martin-Ortega and Johanna Herman. 2010. *War, Conflict and Human Rights. Theory and Practice.* London: Routledge.

추가정보원

Crimes of War: www.crimesofwar.org

Exploring Humanitarian Law Virtual Campus: www.ehl.icrc.org

Humanitarian Law and Policy Forum: http://ihlforum.ning.com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website on War and Law: www.icrc.org/eng/war-and-law/index.jsp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ww.icc-cpi.int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Research Initiative: http://ihl.ihlresearch.org

Human Security Report Project: www.hsrgroup.org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Coordination for Humanitarian Affairs (OCHA): http://ochaonline.un.org

일할 권리

RIGHT TO WORK

노동 분야에서의 인권

일할 권리와 노동 관련 인권

>> [...] 세계의 항구적 평화는 사회정의에 기초함으로써만 확립될 수 있으며 [...] <<

국제노동기구헌장. 1919.

사례

자유무역지대에서의 끔찍한 노동조건

중국 중부 지역에 있는 Zhongyuan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Xiao Shen이라는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매우 혹독했는데, 그곳에는 먹을 수 있는 식량이 거의 없었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없었다. 날마다 그녀는 아버지가 벼를 수확하는 것을 도우며 깊은 물에 무릎을 담그고 있어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저 으스스한 산 뒤 어딘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더 나은 터전이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해가 뜨기 전 어느 날 아침, 마침내 그녀는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고향을 떠났다. 걱정과 긴장 속에 셀 수 없이 많은 눈물을 흘린 끝없는 나날을 뒤로 하고 그들은 고향으로부터 2천 킬로미터 떨어진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 목적지는 홍콩의 국경선 옆에 있는 중국 남쪽 지방의 자유무역지대인 선전(Shenzhen)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일을 찾아 돈을 벌며 그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Xiao Shen은 Huang Guoguang과 Lao Zhaoquan이라는 두 명의 사업가를 알게 되었다. 그들은 장난감을 생산하는 자신들의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중이었다. 그녀는 그 공장에서 472명의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고향에서의 삶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해질 때부터 새벽까지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을 정도의 낮은 임금을 받으며 기계적으로 일을 해야 했다. 두 명의 사업가는 자신들의 재산을 노동자들이 훔쳐갈 것을 두려워했고, 이에 따라 공장을 하루 24시간 내내 묶여 있는 감옥처럼 만들었다. 창문에는 빗장이 걸렸고, 모든 비상구는 막혔다. 뇌물을 받은 선전 주의 감독관은 이러한 상태를 보고도 눈감아 주었다. 매일 샤오 선은 빗장 뒤에 살면서 공장을 떠날 수 없었고,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없었으며, 그녀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할 수 없었다. 1993년 11월 19일 오후, 갑자기 불이 나서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공장 전체에 퍼졌다. 건물 전체에 불에 잘 타는 화학물질들이 보관되어 있었고, 이는 악몽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큰 화재를 일으켰다. Xiao Shen과 동료들은 필사적으로 탈출하려 했다. 하지만 어떻게? 창문에는 빗장이 걸려 있었고 문은 닫혀 있었다. 2백여 명의 사람들이 불길에 휩싸였고,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대부분 채 16살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샤오 선은 2층에 빗장이 걸려있는 창문을 가까스로 부수고 열 수 있었고, 뛰어내릴지 혹은 산 채로 타 죽을지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녀는 뛰어내리기로 결심했고 두 발목이 모두 부러졌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날 오후, 87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47명이 넘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다쳤다. (출처 : Klaus

Werner, Hans Weiss. 2001. *Schwarzbuch Markenfirmen.*)

토론할 거리

1. Xiao Shen이 일하기를 강요받았던 상황 속에서 어떤 (노동 관련) 인권이 위반되었는가?
2. Xiao Shen 같은 노동자들의 전망을 향상시키거나 최소한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들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취해질 수 있을까?
3. 왜 국가들은 수출 자유 지역(EPZ)을 설정하여 사회 및 노동 기준을 없애거나 축소하려고 할까?
4. 자유무역지대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의 책임에는 무엇이 있을까?
5. 서술된 위와 같은 상황을 바꾸기 위해 소비자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는 무엇이 있을까?

알아야 하는 내용 😐!?

1. 21세기 노동의 현황

새로운 기술과 세계적인 데이터 통신망은 산업혁명보다 더욱 크게 노동의 세계를 변화시킬 가능성을 갖고 있다. 우리는 계속 진행 중인 산업화로 인해 20세기에 농업 분야가 더 감소하는 것을 봐왔고, 서비스 분야의 중요성이 증가되는 것을 봐왔다. 또한 세계 시장의 자유화와 함께 세계 경제에서의 "사이버 혁명"의 기회는 더욱 커져갔다.

이 **새로운 세계 경제**는 현재 시장의 요구에 자동으로 적응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잘 훈련되고 유연하며 동기가 충만한 숙련된 노동자들을 원한다. 노동자들은 늘어나는 스트레스에 잘 대처해야 하며, 가속화된 기술적, 구조적 변화로 인해 시시각각 변해가는 노동조건에도 역시 잘 대처해야 한다. 시간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 자영업을 하거나 매우 불안정한 노동조건에 직면한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화는 통합된 세계 경제에서 활약할 수 있는 교육, 기술, 이동성을 갖고 있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의 사회적 격차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불평등과 불안정은 사회 각계각층간의 갈등을 유발한다.

무역의 자유화로 인해 고조된 경쟁과 금융 제도는 회사가 생산 비용을 낮추도록 높은 압력을 가한다. 회사들은 노동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자동화를 통해 생산비용요소를 줄이거나 생산시설을 사회적 기준이 훨씬 낮은 저임금 국가로 이동시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국가 역시 해외 투자

를 유인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임금과 노동조건을 낮추기를 강요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수출지향형 성장 정책은 종종 경제를 성장시키는 유일한 방안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무역은 기회를 만들고 생계를 뒷받침할 힘을 갖고 있다.
그리고 무역은 그 모두를 파괴할 힘도 가지고 있다.
수출을 위한 생산은 수입, 고용, 그리고 가난한 국가가 개발을 위해 필요한 외화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역은 또한 환경을 파괴하기도 하며 생계를 무너뜨리기도 한다.
또 무역으로 인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착취가 발생할 수 있다.
무역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상품들이 생산되고, 누가 생산과 마케팅을 관리하는지,
어떻게 생산된 부가 분배되며, 국가들이 무역하는 조건이 어떤지에 의해 결정된다.
국제무역질서가 관리되는 방식은 이 모든 영역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무역은「...」본질적으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Kevin Watkins. 1995.

이로 인해 너무나도 자주 노동착취와 강제아동노동이 나타난다. 세계 여러 국가들은 자유무역지대(FTZ)나 수출가공지역(EPZ)을 설립하는데, 그곳에서는 세금과 관세로 인한 무역장벽이 줄어들거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준과 국제사회기준 역시 악화되거나 무용지물이 된다. 세계은행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135개국에 3,000여개의 자유무역지대와 수출가공지역이 존재하며, 이 지역에 있는 회사들은 대략 6천8백만 명의 사람들을 고용한다.

"세계화" 현상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세계화의 긍정적인 결과는 불공평하게 돌아간다. 새로운 "세계의 주역"으로 떠오른 초국적 기업으로 인해 규제 완화와 자유 무역의 부정적인 영향을 경감시키는 국가의 힘은 약해지고 있다. 세계 100대 경제 주체의 절반이 넘는 수가 초국적 기업이며, 이 새로운 주역들의 경제적인 힘은 현재 많은 국가들의 경제적인 힘을 넘어섰다.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이 국제 정책의 맨 앞에 설 수 있도록 압박이 가해져야 한다. 세계 경제를 마주봄과 동시에 사회 안정, 평화, 발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준과 국제적 차원에서의 인권에 대한 옹호가 필수적이다. 2002년 국제노동기구(ILO)는 독립체로서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세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2004년 2월 '공정한 세계화: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A Fair Globalization: Creating Opportunities for All)'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추가 정보 및 관련 활동: http://www.ilo.org/fairglobalization/lang—en/index.htm)

인권 기준으로써 노동할 권리는 단순히 생존을 옹호하는 것을 훨씬 넘어선다.
기본적 욕구에 대한 충족만으로는 인간안보를 향상시키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권은 생존과 건강 보장 뿐 아니라 개인의 사회 통합 및 참여와도 관련이 있다. 노동권은 또한 자기 결정, 자기 존중, 자아실현,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실업과 노동조합에 대한 부인은 개인적인 불안 및 위험하고 건강에 해롭거나 부당한 노동조건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과 동요 및 위험을 만들어내기 쉽다. 이러한 이유로 착취 없는 괜찮은 일자리의 기준을 높이는 것은 인간안보 강화의 전제조건이자 촉진제라고 할 수 있다.

"역사 되돌아보기"

노동 분야에서의 인권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회 정의와 공정한 노동조건은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들이다. 재정적인 어려움 및 고용에 있어서의 궁핍뿐만 아니라 노동과 관련된 정의롭지 못함은 역사 속 여러 지점에서 직접적으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거대한 규모의 무산 노동자 계급을 출현시키는 것으로 고려되었다. 양질의 일자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인식은 대부분 교환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 여겼던 권리들을 국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노동자들이 투쟁함으로써 얻어낸 결과였다. 국제적 수준에서 노동자의 권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의 기준 설정뿐만 아니라 1919년 이래로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관계 법령에도 구체화되어 왔다.

18세기 : 노동은 사회 모든 구성원의 기본적인 자격이라는 생각은 프랑스 혁명 때 처음 제기되었던 주장이었다. 유토피아 사회 철학자인 샤를 푸리에(Charles Fourier)는 "노동할 권리"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자 개인의 사회적, 심리적 건강을 포함하여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이었다. 그는 국가가 동등한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권리의 실현은 사회의 완전한 재편성을 필요로 한다고 결론 내렸다.

노동할 권리라는 개념은 사회주의 이론에서 다시 출현했다; 공산주의 정부 역시 후에 노동할 권리를 옹호했다. 그러므로 노동할 권리는 사회주의적 배경으로부터 발전했다고 말할 수 있다.

19세기 : 산업혁명은 생산수단의 부족으로 인해 임금노동에 의존하는 노동계급의 출현을 이끌었다. 노동자들은 착취당했고 공장, 섬유 공장, 광산에서 위험한 노동 환경을 견뎠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궁핍함과 착취로 인해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연대감이 형성되었고, 그들은 스스로를 조직화하기 시작했다. (칼 마르크스의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그들의 상황은 점차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최초의 노동조합의 압력으로 인해 노동 시간 및 조건의 개선과 관련된 법률들이 수많은 나라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지속된 노동 불안정은 경영주와 정부가 추가적인 조치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압박했다.

20세기 : 일부 경영주들은 노동 기준을 무시하는 나라들이 상대적인 이점을 취하기 못하게 하기 위해 공통의 국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905년과 1906년에 처음으로 두 개의 국제 노동협약이 채택되었지만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추가협약을 작성하고 채택하려던 계획은 중단되었다.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유 조약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노동 환경과 사회 정의, 보편적 평화가 상호 의존적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노동 분야에서의 국제 기준 설정의 기구로서 국제노동기구를 만들었다.

1919년과 1933년 사이에 국제노동기구는 노동과 관련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는 40개의 협약을 작성했다.

그러나 "검은 금요일"이라 알려져 있는 1929년의 주식 시장 붕괴는 심각한 후퇴를 낳았다. 거대한 규모의 실업과 함께 서구 경제의 금융 대학살이 동반되었고, 실업자들의 시위와 폭동이 뒤를 따랐다. 독일에서는 세계 경제 위기에 이어 히틀러의 등장에 기여하고 종국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초래한 심각한 정치적 위기가 이어졌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 유엔은 그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세상을 향한 목표와 계획에 경제적, 사회적 의제들을 포함시켰다.

노동과 인간의 존엄성 사이의 관계는 1994년 필라델피아에서 채택된 국제노동기구의 목표와 목적과 관련된 선언에서 강조되었다. ("필라델피아 선언"으로 알려져 있는; 1946년 국제노동기구 헌장에 포함되어 있다.) 이 선언에서 우리는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내용과 "모든 인간은 물질적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자유롭고 존엄하며 경제적으로 안전하고 동등한 기회가 갖추어진 상황 속에서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읽을 수 있다.

이것은 교황의 회칙인 "노동하는 인간(Laborem Exercens)"에 더 강조되어 있다. 회칙은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관점을 통해 노동자의 위상을 객체가 아닌 주체로 높였다.

유엔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도 전 세계 노동자들의 비운을 개선시키기 위해 많은 것들을 행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경제의 세계화에 비추어 새로운 도전과 위험들은 혁신적이고 복잡한 해결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2. 정의와 설명

노동 관련 인권 침해의 예들은 탄광에서의 아동 노동, 노조 활동가 감금에서부터 현대판 노예라고

불리는 부채속박노동 혹은 상업적인 아동 성 착취에까지 걸쳐 나타난다. 노동 관련 인권의 실질적인 이행은 건강을 해치거나 위험한 노동환경 혹은 비정상적으로 긴 노동시간을 뒤바꿈과 동시에 여성 혹은 이주민과 같이 특별히 취약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 관련 인권은 인간 존엄성 및 인간 안보와 괜찮은 노동 조건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항에서는 노동할 권리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2개의 주요한 국제적 장치를 분석할 예정이다. 하나는 국제노동기구(ILO) 시스템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UDHR, ICCPR, ICESCR))이다.

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기구는 1919년에 창설되었고,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주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사회개혁에 대한 증가하는 우려에 응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가난은 도처의 안전과 번영을 위협한다는 강한 믿음에 기초하여 국제노동기구는 인종, 성별 혹은 사회적 출신에 대한 차별 없이 전 세계 노동자들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1947년에 국제노동기구는 유엔의 전문기관이 되었고, 1969년에는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국제노동기구는 **노사정 구조**로 이루어진 유엔 내의 유일한 기구이며, 내부 기관들에 의해 도출된 결정은 **정부**뿐만 아니라 **고용주**와 **노동자**의 견해를 대표한다.

국제노동기구

- 기본적인 인권을 증진하고, 노동 및 생활 조건을 개선시키며,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
- 이러한 분야들의 국제적인 기준(협약과 권고)을 세우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이행을 감시한다.
- 각 나라가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 광범위한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국제노동기구는 노동 조건, 산업 안전 및 건강, 사회 보장, 고용정책 및 직업훈련, 여성, 이주민 및 토착민들을 위한 보호 제공과 같은 분야에서 규범을 정하며, 190개의 협약을 작성해 왔다.

그러나 소수의 협약만이 **기본적인 인권 협약**으로 고려되고 있다. 8개의 협약과 이 협약들의 비준 상태는 아래와 같다.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원칙	협약	비준한 숫자 (2012년 1월 기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	협약 87 (1948) 협약 98 (1949)	150 160
노동최저연령과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	협약 138 (1973) 협약 182 (1999)	161 174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	협약 29 (1930) 협약 105 (1957)	175 169
동일보수 및 고용 및 직업상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	협약 100 (1951) 협약 111 (1958)	168 169

(출처: 국제노동기구, www.ilo.org)

세계화로 인한 새로운 난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국제노동기구는 1998년 6월 18일, **'노동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 및 이행과 점검'**을 채택했다. 선언은 어떤 원칙과 노동자들의 권리가 기본적인지에 대해 저 위에 열거된 8개의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에 정확히 정의하고 있다. 선언은 노동 관련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대화를 이끌어내면서 동시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관한 올바르고도 실질적인 이행 및 준수를 향한 첫 번째 발걸음이다. 또한 "사회적 최저수준"이라 여겨지는 저 규칙들에 표시된 공통의 가치 집합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나타낸다.

"괜찮은 일자리는 정치 및 기업 대표자가 직면한 전 세계적 요구사항이다. 우리 미래의 많은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 난제를 풀어내느냐에 달려있다."

국제노동사무국. 1999.

선언은 모든 국제노동기구 회원들이 협약의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협약에 명시된 기본적인 권리들을 존중하고, 증진하고, 실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핵심 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

가들은 선언 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는 원칙들을 이행함으로써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매년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의 결과로써 선언은 기본적인 인권협약의 비준에 있어 상당한 증가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했다. 2012년 1월 3일자로 183개국의 국제노동기구 구성원들 중 135개국이 모든 8개의 협약을 비준했다; 오직 세 국가만이 (몰디브 공화국, 마샬 군도 공화국, 투발루) 어떠한 기본 협약도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국제노동기구는 또한 4년을 주기로 모든 구성원 국가들이 기본원칙을 이행함으로써 얻어낸 진전에 집중하여 매년 세계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러한 것들은 앞선 기간에 행해졌던 활동의 효과를 평가하는 기초로서 활용된다.

세계인권선언 (UDHR)

세계인권선언은 노동 관련 인권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이 모든 권리들은 당사국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유엔 규약에 의해 더 발전되었다. 아래는 문제의 권리들을 나열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으로부터 발췌한 것들이다.

>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노동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그 가족이 인간적으로서 존엄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필요하다면 다른 사회적 보호 수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것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을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실업 상태에 놓였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장애를 당한 경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 밖에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도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4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이하 자유권규약)

노예 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

"어느 누구도 노예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도 강요되거나 강제적인 노동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자유권규약 제8조

비록 일반적으로 노예제에 대해 비난하거나 노예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지만 노예와 강제 노동의 관행은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서 존재한다. 가끔 노예제도는 이데올로기적 사고나 전통 문화의 유산으로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노예제는 비민주적인 구조와 명백한 관련이 있다. 전 세계 도처의 수백만의 사람들이 노예로 살아가기를 강요받고 있다. 비록 이러한 착취가 노예제로 불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처한 상황은 노예 상태에 놓인 것과 같다. 노예란:

- 강제 노동 -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인 위협을 통해
- "고용주"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것, 보통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인 학대 혹은 협박을 통해
- 비인간화되는 것, 상품처럼 취급되거나 사고 팔리는 "재산"처럼 취급되는 것
- 신체적으로 속박되어 있거나 이동함에 있어 구속되어 있는 것.

(출처: Anti-Slavery International. *What is Modern Slavery?*)

오늘날 어떤 형태의 노예제가 존재할까?

- **속박 노동**은 전 세계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아픈 아이를 위한 약값만큼 적은 양의 돈을 빌리거나 사기를 당해 돈을 빌림으로써 속박노동자가 된다. 빚을 갚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장시간 동안 노동을 강요받는다. 그들은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기본적인 음식과 주거지를 제공받지만, 절대 빚을 못 갚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진다.
- **강제조혼**은 여성들과 소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결혼을 하며, 종종 신체적이고 성적인 학대와 폭력이 수반되는 노예 상태의 삶을 강요받는다.
- **강제 노동**은 개인, 정부 혹은 정당에 의해 불법적으로 고용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일하도록 강제된다. - 보통 폭력이나 다른 처벌의 위협 아래 놓여있다.
- **상속에 의한 노예제**는 "노예 계층"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나 사회가 노예 노동자로 사용되기에

적합하다고 간주하는 집단에서 나타난다.

- **인신매매**는 인간, 특히 여성과 아이들을 경제적 이익을 위해 폭력이나 사기를 통해 운송하고 (거나) 거래하는 것을 포함한다. 종종 이주 여성은 사기를 당해 가정부 일이나 성매매를 강요받는다.
-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은 착취하거나 위험한 조건에서 일하는 아동과 관련이 있다. 전 세계 수백만의 아이들은 전일제로 일을 함으로써 개인적,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교육과 취미 생활을 박탈당한다.

(출처: Anti-Slavery International. *What is Modern Slavery?*)

국제노동기구의 2005년 세계보고서인 "강제노동반대연합"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최소한 1230만 명의 사람들이 강제노동의 희생자라고 한다. 인신매매를 통해 강제노동을 당하고 있는 2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980만 명의 사람들이 민간 행위자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다. 나머지 250만 명의 사람들은 국가나 반역 군사 조직에 의해 강제노동을 당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가 2009년 발간한 "강제노동비용'이라는 보고서는 10년 동안 보고된 강제노동의 실제 사례로부터 추정한 것에 기초한 이러한 수치들을 갱신하지 않았다. 대신 체불 임금, 초과노동수당 미지급, 임금 공제 및 수수료 면에서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비용에 대해 조사하였고, 대략 2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국제노동기구는 현재 더 신뢰할만한 국가 추정 근거 자료를 모으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여러 차이와 문제에도 불구하고 2009년의 보고서는 몇 가지 긍정적인 동향을 나타낸다. 국가적 실천계획뿐만 아니라 특별히 노동 및 성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이 많은 나라들에 의해 채택되었다. 일부 나라들은 강제노동의 사례를 확인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만들고 이 부대를 훈련시키기까지 하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이하 사회권규약)

노동할 권리

"현 협약의 당사국들은 노동할 권리를 확인한다. 노동할 권리란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수락할 수 있는 일에 의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한다「...」. 취해야 할 조처는「...」 기술 및 직업 지도와 훈련 프로그램들이 이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권규약 제6조

노동: 권리 혹은 의무?

노동을 정신적 혹은 신체적인 긴장을 요구하는 책임으로서 보는 개념과 노동을 권리로서 보는 개념의 상관관계는 종종 그러한 권리의 실용성에 대해 혼란을 야기한다. 그러나 노동은 인간의 존엄성 및 사회참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반면에 실업은 큰 좌절과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 노동은 또한 자아실현의 수단이며, 개인의 발전에 긍정적인 도움을 준다.

노동할 권리는 부당하게 해고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로 일에 대한 접근성을 해결함으로써 어느 누구도 노동의 세계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것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노동할 권리는 모든 개인이 고용될 것이라는 보장을 하지는 않는다. 사실; 실업은 모든 나라에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주로 국가 고용 정책의 채택 및 실행을 통해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조처를 취해야 한다 (사회권규약 제2조).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에서 노동할 권리

"당사국들은「...」 모두의 권리를 확인한다「...」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에서 노동할 권리「...」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는「...」; 적절한 생활비「...」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조건;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증진되어야 한다「...」; 휴식, 여가, 그리고 노동 시간의 합리적 제한「...」."
사회권규약 제7조

이 조항은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뿐만 아니라 특히 존엄한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을 규정한다. 이 조항은 국제노동기구에 의해 채택된 수많은 협약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 조항으로부터 생겨난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에 의해 활용된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당사국들은「...」자신의 선택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에게 보장해야 하며「...」, 경제적 및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파업할 권리「...」."
사회권규약 제8조

무리를 이루어 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작업장이나 지역 공동체 혹은 국가를 가릴 것 없이 항상 사람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법이었다. 사회권규약 제8조는 결사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단체교섭권은 노동 분야에서 결사의 자유를 효과적이게 한다. 이러한 권리들은 노동에서의 다른 기본적 권리들과 자격들을 실현할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 권리들은 항상 아동 노동 반대를 향한 투쟁과 같은 양의 대중적 관심사나 합의를 갖는 것은 아니다.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및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 관련 인권을 논의할 때 차별금지원칙과 평등대우 조항은 빠질 수 없다. 국제노동기구는 "직장에서의 평등: 지속적인 과제"라는 제목의 2011년 국제 보고서에서 긍정적인 수많은 흐름에 대해서 논의했다. 직장에서의 차별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입법과 제도적 계획이 전 세계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세계 경제 위기와 함께 새로운 난제가 등장했다. 보고서는 경제 침체 기간 동안 반차별 정책과 노동자의 권리를 소외시키는 추세에 대해 경고했다. 예를 들어 작업장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과 제도들은 사업들이 빚으로 인해 과중한 부담을 안게 되면 그 실효성이 덜 할지도 모른다. 이 기간 동안 일상화된 차별은 악화된다. 게다가 보고서는 작업장에서의 차별이 더욱 다양화되고 있으며, 여러 영역에서의 차별이 일상다반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경제적 기회의 접근에 대하여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데에 있어 획기적인 사건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채택이다. 이 협약은 여성의 생식에 대한 권리를 다루는 국제법 문서이기도 하다. 결혼이나 출산을 이유로 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여성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당사국들은 임신이나 출산 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와 결혼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 더욱이, 당사국들은 유급출산휴가나 실직하지 않고도 비슷한 사회적 혜택을 받는 출산휴가를 도입할 것을 요구받는다.

작업장에서의 성 평등은 수십 년 동안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성 평등과 동등한 대우는 결코 성취되지 않았다. 여성은 여전히 직업에 대한 접근과 혜택, 노동조건과 고위의사결정지위에의 접근의 면에서 여전히 차별을 당하고 있다. 게다가, 여성의 임금은 대체로 남성임금의 70-90% 정도이며,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은 여전히 일상적으로 행해진다. (출처: ILO. 2011. *Equality at*

work: The continuing challenge. Global Report under the follow-up to 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ciples and Rights at Work.) ☞ 여성인권

국제노동기구의 직장에서의 평등에 관한 국제 보고서(2011)에 언급된 것처럼 **민족**(그리고 성)을 이유로 한 차별은 거의 모든 직장에서의 반(反)차별 법안에서 다루어진다. 그러나 직장에서 인종주의는 노동시장으로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 직장에서의 집단 괴롭힘, 차별적인 취업 광고, 외국 졸업장을 인정하지 않는 등으로 말이다. 가장 취약한 집단은 아프리카계와 아시아계, 토착민과 소수민족, 그리고 특히 이러한 그룹들에 속해 있는 모든 여성들이다. 이러한 여성들은 교차차별(intersectional discrimination)을 경험한다.

2009년, 벨기에에 위치한 동등한 기회와 인종주의 근절을 위한 센터(CEOOR)가 받은 고용에서의 차별과 관련된 모든 불만의 45%는 인종주의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비슷하게, 호주 인권위원회는 고용 분야에서 인종주의와 관련된 불만이 44%에 달한다고 보고했고, 뉴질랜드 인권위원회 역시 40%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실업률은 고용 분야에서의 인종주의와 인종 차별을 더 잘 나타내는 지표로써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의 흑인 실업률은 여전히 백인 실업률의 2배에 달하며, 경제 위기가 시작된 이래로 그 격차가 커지고 있다. 유럽에서의 자료도 비슷하다.

게다가 유럽집시권리센터(ERRC)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집시를 향한 인종 차별은 여전히 일상적이며 모든 유럽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점이다. 「...」 많은 집시들은 교육받지 못하고 실업인 상태에 놓여 있으며, 「...」.

☞ 차별금지, 소수자 권리

1980년대는 유엔 총회에 의해 유엔 "장애인 10년"으로 선포되었다. 장애인과 관련된 세계행동계획은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전 세계 **장애인**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2006년에는 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되었는데, 제27조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기반 위에서 장애인의 노동할 권리,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열려 있고, 배타적이지 않으며, 접근 가능한 노동환경 및 노동시장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수락한 일에 의해 삶을 영위할 기회의 권리"를 다루고 있다. 당사국들에 의한 협약의 이행은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의해 감시·관리된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낮은 취업률이 나타내는 것처럼 일과 관련하여 장애인을 향해 가해지는 차별은 여전히 6억 5천의 장애인(세계 인구의 약 10%) 중 많은 사람들에게 존재한다.

의무의 수준

국제법 문서의 궁극적인 실효성은 국제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정부가 취한 조치에 달려있다.

앞서 언급한 권리와 관련된 당사국들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 **존중할 의무:**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국가는 노예와 강제노동으로부터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또 다른 중요한 의무는 결사의 자유,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들은 다른 중요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이행하도록 국가에게 압력을 가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주 위반된다.

- **보호할 의무:**

  당사국들은 최저기준을 규정할 의무가 있다. 어느 노동자도 최저기준 이하의 노동조건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노동할 권리는 부당한 해고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는 일의 접근과 관련된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 **증진할 의무:**

  노동에 관해서 이 의무는 취업 지도와 훈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일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의무로 이해되어야 한다.

- **실현할 의무**

  비록 노동할 권리가 국가에게 모두의 직업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국가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구할 것을 요구한다. (예시. 완전 고용 정책)

3. 문화적 관점 차이와 논쟁적 이슈

국제법적 틀 내에서, 문화 및 민족적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이 노동 분야에 접근하고 경험하는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실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잘 알려진 가난한 어부의 우화는 노동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속에서 다른 가치를 지닌다는 점과 노동 형태의 그러한 가능성이 문화적 기대 및 친밀성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잘 설명하고 있는 좋은 예이다.

우화: 어부 이야기

어느 늦은 아침, 어부는 그물을 모래 위에 펼쳐 놓은 채로 아름다운 해변에 누워있었다. 어부는 이따금 반짝이는 푸른 파도를 바라보며, 햇살의 따뜻함을 만끽하고 있었다.

한 여행객이 해변을 따라 걸어 내려왔다. 그는 해변에 앉아있는 어부를 발견했고, 어부가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은 채 쉬고 있는 이유를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그런 식으로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없을 거예요." 여행객은 말했다. "당신은 해변에 누워있는 대신 열심히 일을 해야 해요!"

어부는 올려다보더니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다면 내가 얻는 게 뭐죠?"

"글쎄요, 당신은 더 큰 그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겠죠!" 여행객은 답했다.

여전히 웃으며 어부는 물었다. "그렇다면 내가 얻는 게 뭐죠?"

여행객은 답했다. "당신은 돈을 벌 것이고, 배를 살 수 있을 거예요. 그 배로 더 많은 양의 고기를 잡을 수 있을 테고요!"

"그렇다면 내가 얻는 게 뭐죠?" 어부는 다시 물었다.

여행객은 어부의 질문에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당신은 큰 배를 살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겠죠!" 그는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얻는 게 뭐죠?"

여행객은 화가 났다. "이해가 안 돼요? 당신은 수많은 어선을 장만할 수 있고, 전 세계를 항해할 수 있으며, 직원이 당신을 위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니까요!"

다시 한 번 어부가 물었다. "그렇다면 내가 얻는 게 뭐죠?"

여행객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로 어부를 향해 소리쳤다. "부자가 돼서 다시는 생계를 위해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겠어요? 당신은 저녁노을을 바라보며 하루 온 종일을 해변에 앉아 보낼 수 있다고요. 세상의 온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거죠!"

어부는 올려다보더니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4. 이행과 모니터링

국가에 의해 비준된 협약들은 구속력을 갖는다. 그러나 국제협약의 실효성은 감시기관의 조사결과에 순응하고 국내법을 통해 협약을 집행하려는 국가의 의지에 달려있다. 만일 국가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재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종종 협약의 이행은 "수치심의 동원"에만 의존한다. 이러한 약한 처분은 인권, 특히 노동권을 무역과 연결하도록 하는 요청으로 이어져 왔다. 이것은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국가에 대한 무역 제재의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다. 무역 제재는 국가로 하여금 특정 관행에 대해 법률(예를 들어 아동 노동의 금지)을 제정할 것을 강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문제는 더 복잡한 해결책을 요구한다.

국제기준의 집행을 위해 국제노동기구와 유엔은 다양한 **감독 및 청원 절차**를 개발해 왔다.

국제노동기구 협약의 당사국들은 **협약 및 권고의 적용에 관해 전문위원회**가 분석하고 논평한 정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위원회의 보고서들은 매년 국제 노동 회의에 지속적으로 제출된다. 매해마다 회의는 다른 회원국에 의한 검토 작업을 거치고, 많은 회원국의 협약 적용에 관한 결론을 발행한다. 비록 이러한 절차가 다소 강제력이 없는 국제적 장치로 보일지 모르지만, 1967년 이래로 130개 이상의 국가에서 2천개가 넘는 노동 및 사회 입법의 변화가 관찰되어 왔다.

이 감독 체계와 더불어 국제노동기구는 노동 기준의 이행을 위해 **두 개의 분리된 청원 절차**를 제공한다. 하나는 고용주 단체나 노동자 조직이 회원국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과 국제노동회의의 대리인(정부, 노동자 대리인 또는 고용주 대리인)으로 하여금 다른 회원국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 후에 조사위원회가 임명될 수 있다.

이러한 체계와 별도로,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위원회**는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한 혐의에 대해 조사한다. 불만은 정부가 관련된 협약들을 비준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정부를 상대로도 제기될 수 있다. 1950년에 설립된 이래로 위원회는 법률의 개정과 해고노동자의 복직에서 투옥된 조합원의 석방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공을 경험해왔다.

사회권규약(ICESCR)의 적절한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의 기구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다. 다른 인권조약 기구들과 달리 이 위원회는 해당하는 규약에 의해 설립된 것이 아니라, 1985년에 규약의 감시와 함께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의해 위탁되었다. 현재 해당 위원회는 18명의 독립적인 전문가의 지도 아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5년 11월, 위원회는 노동할 권리의 내용과 이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국가가 취해야 하는 조치들을 상술한 일반 논평을 발행하였다. 노동할 권리는 차별하지 않을 권리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논평들도 노동 관련 문제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모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일반 논평은 동등한 임금을 실현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협약의 당사국들은 5년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행된 각종 입법, 정책 및 다른 조치들을 요약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의 보고서 평가와 관련된 국가 대표들의 토론을 거친 후 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해 입장을 밝힌다. 대부분의 경우 위원회는 협약의 위반을 확인하고 문제가 되는 권리 침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에게 촉구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개인 혹은 집단이 위원회에 권리 침해에 대한 공식 제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는 200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으나 2012년 1월 기준 오직 5개국만이 선택의정서를 비준했으므로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태이다.

알면 좋은 내용

1. 모범 사례

아동노동 철폐를 위한 국제 프로그램 (IPEC)

1992년 국제노동위원회(ILO)는 아동노동 철폐를 위한 국제 프로그램 (IPEC)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켰다. 시민 단체(NGO)뿐만 아니라 각 국의 정부, 사회적 파트너와 협력하면서 IPEC는 문제의 복잡성과 사려 깊고도 지속적인 문제해결방법을 고려한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운영되었다. 예를 들어 아동 노동의 대안으로 IPEC는 아동들이 일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그들에게 교육적 대안을 제공하며 해당 아동의 가족들에게 수입과 안전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하는 프로그램을 착수했다. IPEC는 처음 IPEC에 가입했던 6개 국가에서 88개국으로 영향력을 확장시킬 수 있었는데, 그것의 가장 큰 요인은 2008년 6100만 달러를 넘어서는 기술 협력 사업에 대한 연간 지출이었다. 이는 IPEC를 세계에서 가장 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했다.

2006년 "아동 노동의 끝은 멀지 않았다 (The End of Child Labour: Within Reach)"라는 제목의 연구에서 나타났던 긍정적인 추세와는 정반대로 2010년 ILO의 보고서인 "아동 노동 방지 가속화를 위한 행동"은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 철폐 노력에 염려를 표한 바 있다. 이 ILO의 보고서는 2004년과 2008년 사이에 전 세계 아동 노동자의 수가 2억2천2백만에서 2억1천5백만으로 줄어들면서 지속해서 하향세를 보였으나, 이러한 하향세는 걱정스러운 정도로 그 속도가 느려졌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한 국제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2006년 보고서(아동노동에 대한 보고서: 2016년까지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 철폐를 목표로)에 제시됐던 목표 달성 속도를 저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따라서 2010년 6월에 열렸던 국제 노동 회의에서 ILO와 IPEC가 2006년 합의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략적 의제와 실천 계획을 제공하는 국제 행동 계획을 도입했다. 이 행동 계획에는 2010년 5월 헤이그에서 열렸던 국제 아동 노동 회의에서 80개국 450명 이상의 대표들에 의해 채택되었던 "2016년까지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 폐지 달성을 위한 로드맵" 역시 포함되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세계아동노동반대의 날은 위험한 아동 노동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집중시켰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촉구했다.

아프리카축구연맹 그리고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주최자와의 협력을 통해 IPEC는 말리에서의 2002 챔피언십 행사에서 아동 노동의 문제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큰 규모의 캠페인을 실시했다. 축구 경기에서 사용되는 빨간 퇴장 카드에서 착안한 "아동 노동 퇴장 (Red Card to Child Labour)"이라는 간단하고도 직접적인 메시지와 함께 캠페인은 비디오, 대중 음악, 라디오, 두 곳의 국제 항공사 및 축구 경기 등과 같은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이용하여 전개되었고, 아프리카 대륙뿐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 너머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캠페인 활동은 아프리카의 21개국에서 진행되었고 외국의 미디어들도 캠페인을 널리 보도했다. 케냐에서 1천 2백만, 잠비아에서 5백만에 다다르는 사람들이 캠페인을 접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집트와 가나 같은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에서의 관심은 매우 높아 이후 국내 혹은 지역의 축구 경기나 공적인 행사 등에서 계속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었다.

알고 있었나요?

- 전 세계적으로 5세에서 17세 사이의 3억6백만의 아동이 노동을 하고 있다.
- (노동최저연령 미만 혹은 건강, 안전, 도덕에 위협이 되는 노동을 하거나 강제 노동에 동원되는) 아동 노동의 숫자는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다. 노동을 하는 아동 중 약 70% (위 참조), 즉 2억1천5백만 명이 아동 노동자에 속한다.
- 모든 아동 노동자 중 절반 이상, 즉 1억1천5백만 명이 위험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한 노동을 하는 아동의 수도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15세 미만의 아동 노동자의 수 감소가 도드라져 보인다.
- 약 8백4십만 명의 아동이 강요 및 속박 노동 (5백7십만 명), 매춘과 음란물 (1백8십만 명), 무장 분쟁 (3십만 명) 그리고 범죄행위 (6십만 명) 등의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 5세에서 17세 사이의 아동 노동자 대부분은 60%가 농업, 26%가 서비스 그리고 7%가 산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 5명 중 1명의 아동만이 임금을 받으며 대다수의 아동들은 무급으로 가족을 도와 일을 하고 있다.
- 여아의 노동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남아의 노동은 약간 증가했다.
- 아동 노동이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1억1천3백 6십만 명)이고,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 (6천5백십만 명),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1천4백십만 명), 기타 지역 (2천2백4십만 명)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아동 노동은 개발도상국에서 역시 일상화되어있다.

(출처: ILO. 2010. 아동 노동 방지 가속화를 위한 행동) ☞ 아동인권

노동과 인권에 관한 기업 행동 강령

다국적 기업은 더 이상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의 경제력은 국가에 걸맞거나 혹은 그 이상의 수준이 되었고, 따라서 더 이상 국가는 유일한 인권의 잠재적 침해자가 아니게 되었다. 인권을 존중할 사기업의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소비자 뿐 아니라 NGO와 같은 국제단체들은 국제적 규모의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거나 특정한 상품을 보이콧함으로써 그동안 묵인되어왔던 기업들의 행태를 변화시킬 힘을 갖게 되었다. 점점 이러한 압력은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노동 기준을 포함한 기업 행위 규범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예로는 “갭(Gap)사의 공급업체 행위 규범 (Code of Vendor Conduct)" 혹은 ”리바이스(Levi Strauss & Co)사의 “글로벌 소싱 및 운영 가이드라인(Global Sourcing and Operating Guidelines)”이 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도입한 기업 규범은 사원들이나 기업의 하청업체 및 공급업체에 지시되는데, 이 규범은 산업 안전, 건강, 결사의 자유, 임금과 각종 혜택, 노동 시간, 아동노동, 비(非)차별 고용 등의 기준 역시 포함하고 있다. 더 많은 예는 http://www1.umn.edu/humanrts/links/sicc.html 에서 참조할 수 있다.

회사 자체의 행위 규범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 규범에서 드러나는 기준들은 국제인권협약들에서 권고하는 높은 수준보다는 최소한의 국내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규범을 감독하는 효과적인 감시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기업 행위 규범을 위한 외부 감시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기업에서 내놓은 기준은 단순히 겉치레인 경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는 국제 인권위원회가 “자발성을 넘어서: 인권과 기업의 늘어나는 국제법적 의무(Beyond Voluntarism: Human Rights and the Developing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of Companies)”에서 다룬 것처럼 "단어의 정의에 따라 자발적 계획은 수용하는 이들에게만 적용“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기업들의

자체적인 행위 규범은 증가된 사회적 책임이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지역	아동인구		고용된 아동		취업률(%)	
	2004	2008	2004	2008	2004	2008
아태지역	650,000	651,815	122,300	96,397	18.8	14.8
중남미	111,000	110,566	11,047	10,002	10.0	9.0
사하라남부아프리카	186,800	205,319	49,300	58,212	26.4	28.4
다른 지역	258,800	249,154	13,400	10,700	5.2	4.3
세계	**1,206,500**	**1,216,854**	**196,047**	**176,452**	**16.2**	**14.5**

아동들의 경제활동의 전세계적 지역별 추이, 2004, 2008 (5~14세)
(참고: ILO 2010, *Accelerating Action against Child Labour*.)

다중 이해관계자 운동 (Multi-stakeholder initiatives)

다중 이해관계자 운동은 국제개발의 사회적, 생태학적 문제점 극복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은 정부 대표, 노동조합, 기업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고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공동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다중 이해관계자 운동의 대표적인 예로는 깨끗한 옷 캠페인 (Clean Clothes Campaign; CCC)이 있다. 유럽 국가 15개의 단체들이 연합한 이 캠페인은 세계적 의류와 스포츠웨어 사업의 근무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CCC는 의류생산국가의 노조와 NGO를 포함하여 200개 이상의 협력 기관들과 함께 캠페인을 전개하며 현지 협력 기관들은 지역 내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만약 각각의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긍정적 개입이나 문제 해결이 실패할 경우, 보도자료 배포, 항의서 발송, 시위, 전 세계적 소비자와 활동가들을 움직이기 위한 공공 캠페인 등으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 쟁취를 위해 투쟁할 수 있는 전략 추진을 돕는다. 평가 및 감독, 인권 침해에 대항하는 공공 캠페인을 통해 CCC는 기업 행위 규범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한다. CCC는 노조원에 대한 차별, 위험한 노동 환경, 노동자에 대한 폭력, 임금 체불 등을 포함한 250건 이상의 노동자의 권리 침해 사건들을 다루었다.

잘 알려진 다중 이해관계자 운동의 다른 예로는 도덕적 무역 운동(Ethical Trading Initiative: ETI)을 들 수 있다. ETI는 CCC와 달리 노동조합과 노동권 단체뿐 아니라 몇몇 사기업 (2010년에 70개 기업을 돌파함)을 연대체로 두고 있다. 회원 기업들은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기초한 노동행위 모범 규범인 ETI 규범을 채택하고 ETI의 이행 원칙에 서명하는 것 이외에도 노동조합과 NGO들과 함께 각종 ETI 프로젝트들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연례 보고서가 ETI 이사회로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보고서의 20%는 무작위 현지검증방문을 기반으로 작성된다. 독립적인 기구가 각 기업을 감시하고 만일 기업의 행태가 기준 미달이라면 ETI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2004년에서 2006년에 행해진 종합적인 평가는 ETI 회원들의 활동이 보다 안전한 근무지를 만들고, 아동 노동을 근절하며, 노동자들이 적합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시장의 힘과 보편적인 원칙의 권위를 결합하도록 합시다."

코피 아난.

항목표시제도 (Labelling of Items)

좋은 사회적 실천에 따라 생산된 물품들을 표시하는 것은 인권 보호와 보다 나은 사회적 관행을 위해 최근에 도입된 제도이다. 표시제도는 소비자가 자신들의 구매력을 이용하여 좋은 관행을 지지함으로써 생산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오늘날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표시제도가 실행되고 있으며 표시제도가 적용되는 항목으로는 커피, 코코아, 초콜릿, 오렌지 주스, 차, 꿀, 설탕과 바나나 등이 있다. 러그 마크(RugMark)에서 굿 위브(Good Weave)라는 새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대표적인 세계적인 비영리 단체로 남아시아 카펫 산업에서의 아동 노동을 철폐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굿 위브는 카펫 판매와 기부모금을 통해 착취당했던 아동들의 교육과 지원을 돕고 있다. 1995년 러그마크 인터네셔널(RugMark International: RMI)의 창립 이래로 지금까지 카펫 산업에서의 아동 노동자의 수는 1백만 명에서 2십5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국제 공정무역 표시 단체 (Fairtrade Labelling Organization International: FLO)는 개발도상국의 소외되고 빈곤한 생산자들이 보다 나은 거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다. FLO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공정 무역 조건을 엄수한 상품들에게 공정무역 마크 (FAIRTRADE Mark) 라벨표시를 제공한다. 이 표시는 유럽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국가별로 따로 존재했던 표시제를 대체했다. 미국의 한 FLO회원만이 기존의 표시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공정무역 인증 표시(Fair Trade Certified label)가 공정 무역 기준을 준수했다는 의미로 통한다. 공정무역은 소비자들의 높은 지지에 힘입어 상당한 성장을 이룩했다. 공정무역 상품은 70개 국가에서 판매되며 몇몇 영역에서는 공정무역상품의 시장 비율이 전체의 20~50%를 차지하기도 한다.

유엔 글로벌 콤팩트 (UN Global Compact)

유엔 글로벌 콤팩트는 코피 아난 (Kofi Annan) 전 UN 사무총장이 1999년 1월 31일 세계경제포럼에서 했던 연설에서 착안되어 시행되었다. 1999년 1월에 열렸던 포럼에서 전 아난 사무총장은 기업들이 보편적으로 지지되는 가치들을 지키고 유엔 기구들뿐 아니라 노동 단체들 및 시민 사회와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새로운 추세는 가치에 기반한 경영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것에 대해 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제적 체계가 부족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콤팩트는 이러한 간극을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업들로부터 환영을 받기도 했다.

글로벌 콤팩트는 다음과 같은 **10개의 명시된 원칙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분야는 인권, 노동, 환경과 반부패**로 이루어져 있다. 노동 분야에 있어서는 국제노동기구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 기준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과 함께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의 실질적 인정
- 모든 형태의 강요된 노동 또는 강제 노동의 철폐
- 아동 노동의 실질적 폐지
- 고용과 업무에서의 차별 철폐

국제노동기구는 이러한 기준들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 있다.

http://www.unglobalcompact.org 웹사이트는 유엔 글로벌 콤팩트의 원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참여하는 기관 역시 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 콤팩트는 그 도입부터 많은 기업들과 UN 기관들, 기업 협회, 노동 기관, 시민 사회 단체 뿐 아니라 학계와 도시(市) 들이 참여해 오고 있다.

글로벌 콤팩트는 자발적인 원칙이기에 기업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했다는 긍정적인 평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이행이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콤팩트가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는 기준들이며 독립적인 감시와 강제 체계 역시 부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기준 자체에 대한 모호성 역시 글로벌 콤팩트의 효과적인 이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 역시 나오고 있다.

2. 동향

수출가공지역 (Export Processing Zones: EPZs)

해외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자유 무역 지대를 설립하여 단순 면세뿐 아니라 국제 노동, 환경 기준의 면제를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다국적 기업들이 저임금 노동으

로부터 이득을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 무역 지대 외부에서보다 임금 수준이 높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이 지역으로 편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과 건강 문제를 비롯한 노동 조건이 충분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 화재예방 수칙 무시, 응급처치 장치 설치 미비와 안전하지 않은 기계는 EPZ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 노동 환경은 다양한 대외적 관심으로 인해 확실히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여러 문제들이 존재한다. 세계은행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135개국에 3천개의 수출가공지역이 존재하며 6천8백만 노동자가 이러한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쇠퇴

몇몇 선진국에서 노동조합 가입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1.4%(2010년 기준)의 노동자만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게다가 다국적 기업들의 강력해진 정치권력으로 인해 선진국의 노동조합들은 가지고 있던 힘의 대부분을 잃어가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자유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데에 다양한 방해물이 존재하며 몇몇 국가에서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단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폭력, 고문, 무분별한 살인이나 체포가 나타나기도 한다.

국제 노동조합 연맹(ITUC)의 2011년 연간 조사(Annual Survey)에 따르면 2010년에만 90명의 노동자가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살해당했으며, 75명의 노조원이 생명의 위협을 당했고, 2천5백 명이 체포됐으며, 5천명이 해고되었다. 보고되지 않은 경우의 수까지 고려한다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국제유동성의 증가 :

노동자들의 이주

오늘날 빈곤과 폭력은 많은 사람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자신들의 집을 떠나게 하는 비극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 및 산업 발전의 격차는 이러한 이민을 더욱 더 증가시키고 있다. 2010년에는 총 2억1천4백만 명의 국제 이주민이 있었고, 이는 전 세계 인구의 3%를 차지하는 수치였다. 그리고 이들 중 절반 가까이가 여성이었다. 본국을 떠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자리를 위해 이민을 선택하며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총 국제 이민의 90%를 차지한다. 2010년 국제노동기구에 의해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 약 1억5백만 명의 이주민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주 노동자들의 경제활동이 세계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엄청나지만 많은 이주민들은 매우 끔찍한 조건에서 노동을 해야 한다. 이주 노동자들은 대부분 각종 차별과 착취에 노출되어 있고,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주 노동자들은 다른 취약한 집단 중에서도 경기 침체에 의해 가장 영향을 받는 집단이다. 그들은 종종 건설업이나 관광업 분야

에서 일을 하는데, 이러한 분야는 업종의 특성상 경제적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빨리 불안정해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된 국제노동기구 이주 노동자 협약(협약 제97조와 제143조)은 안타깝게도 널리 비준되지 못하였다. 이는 각 국가들이 자국의 이민정책에 대한 국제 조사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3년 7월 1일에 발효된 유엔의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은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위원회(CMW)가 이 협약의 이행을 감시하며 위 협약에서 보다 발전된 형태로 이주 노동에 대한 다자간 체계(Multilateral Framework on Labour Migration)가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행동 계획의 일부로서 2004년 국제노동회의에서 채택되기도 했다.

청년 실업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불문하고 모든 국가들이 마주하게 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늘어만 가는 청년 실업이다. 현재 괜찮은 일자리를 찾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젊은이들의 불안은 높은 상태다. 2010년 국제노동기구 보고서인 "국제 청년 취업 현황: 세계 경제 위기가 청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특별호"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경제 위기는 노동 시장에서 청년들이 갖는 취약함을 드러내왔기 때문이다. 2011년 발행된 위 보고서의 최신호는 현재와 같은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청년 실업 문제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며 다가올 미래에 대한 전망도 밝지 않다는 암울한 결론을 내기도 했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전 세계적으로 7천5백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실업자인 상태이며, 이는 2007년 4백6십만 보다 많은 수치이다.
-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청년 실업은 4백5십만 명 늘어났다. (경제 위기 이전인 1997년~2007년 사이에 평균 실업자 수는 매해 10만 명 미만이었다)
- 청년 실업률은 경제 위기로 인해 11.6%에서 12.7%로 대폭 증가했다.
- 그 예로 2011년 말 EU의 청년 실업률은 21%에 다다랐고, 스페인에서는 심지어 50%에 다다랐다.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12개월 이상 구직을 하는 실업자의 비중은 성인보다는 청년이 훨씬 높다. 그리스,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및 영국에서 청년은 성인에 비해 장기실업자로 될 가능성이 2~3배 사이 정도 된다.
- 2007년에서 2010년 사이에 청년들의 시간제 노동은 독일을 제외한 모든 선진국에서 증가했다.

전 인구 중 특정 계층에서의 장기 실업은 경제적, 사회적 간극을 심화시키는 등 사회적 통합 및 안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년 실업은 종종 폭력, 범죄, 자살, 약물 및 술의 남용과 같

은 심각한 사회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실업의 악순환을 끊지 못하게 한다.

"청년 실업은 전 세계 실업의 40%를 차지합니다. 오늘날 약 6천6백만 명의 청년들이 실업상태에 놓여있고, 이는 1965년의 실업률보다 천만 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불완전한 취업 역시 심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대다수의 새로운 직종들은 임금이 낮고 불안정합니다.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고용 보장이나 혜택 혹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생계를 위해 비공식 부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코피 아난. 2001.

효과적으로 청년 실업을 타개하려는 각종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문제의 사회적, 문화적 및 경제적 원인을 다뤄야 하며 청년 실업자들의 욕구와 능력의 차이에 집중해야 한다. 유엔, 국제노동기구와 세계은행은 청년 고용 네트워크를 만들어 국제적인 수준에서 청년 실업문제를 논의하고자 했다.

(출처: 국제노동기구(ILO). 청년 고용 네트워크(The Youth Employment Network),

http://www.ilo.org/public/english/employment/yen/)

HIV/AIDS와 노동계

HIV/AIDS 문제는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지만, 특별히 노동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다.

유엔 산하 에이즈 전담기구(UNAIDS)에 따르면 1990년대 말부터 새로운 HIV 감염의 수가 꾸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세계 에이즈 확산의 성장세가 안정되고 있다. 사망률 역시 상당히 줄었으며 오늘날 더 많은 사람들이 HIV를 보유하고도 살아가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의학적 치료의 접근 가능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2010년 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3천4백만 명의 사람들이 HIV를 보유한 채 살아가고 있었고, 이들 대다수인 90%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통계를 살펴보면 직장에서의 HIV/AIDS 문제는 단순히 질병으로 인한 직업 수행 능력, 출결 혹은 생산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 진다. 오히려 직장생활은 질병의 확산과 질병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노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HIV/AIDS는 많은 노동자와 그들에 의존하는 가족, 공동체, 기업의 생계를 위협한다. HIV 감염자에 대한 차별과 낙인은 기본적인 원칙과 노동 관련 권리를 위협하고, 결과적으로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노력을 좌절시키기도 한다.

2001년 국제노동기구는 HIV/AIDS와 노동 분야에 관한 행동규범을 채택했다. 이 규범은 직장에서 HIV/AIDS가 미치는 영향을 지역 및 국가 수준에서 완화하고 질병 확산의 예방을 돕는 체계를 제공한다. 국제노동기구 행동규범의 주요한 원칙은 고용에서의 차별 금지, 성 평등, 건강한 노동 환경, 고용을 이유로 한 HIV 검사 금지, 기밀성 그리고 고용관계의 유지이다.

2010년에 국제노동회의는 HIV와 AIDS 및 노동 분야에 관한 권고사항(No.200)이라는 제목의 HIV/AIDS 관련 첫 국제 노동 기준을 채택했다. 이 권고사항은 특히 채용과 고용조건에서의 차별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고 있으며, HIV 감염 혹은 해당자가 HIV에 감염되었다는 인식을 이유로 한 해고를 금지하는 내용 역시 포함하고 있다.

(출처: 국제노동기구(ILO). HIV/AIDS와 노동 분야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프로그램(ILO Programme on HIV/AIDS and the world of work), http://www.ilo.org/public/english/protection/trav/aids)

3. 연혁

1919 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한 베르사유 조약의 일부로 국제노동기구(ILO) 창설
1930 ILO 강제 노동 협약
1948 ILO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
1949 ILO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협약
1951 ILO 동일보수협약
1957 ILO 강제노동 폐지 협약
1958 ILO 차별 (고용과 직업) 협약
1966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제6,7,8조
1966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제 8조
1969 ILO 노벨 평화상 수상
1973 ILO 최저 연령 협약
1979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협약 (CEDAW)
1989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990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2003년 발효)
1992 아동노동 철폐를 위한 국제 프로그램 (IPEC) 신설
1998 직장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
1999 ILO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 협약
2001 ILO 이사회 강제 노동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 행동 프로그램(SAP-FL) 신설
2008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선택의정서 (발효 예정)
2010 헤이그국제아동노동회담에서 "2016년까지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 폐지 달성을 위한 로드맵" 채택

추천 활동

활동 I

아이인지 일인지 !

PART I : 소개

본 활동은 직장에서의 여성 생식권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역할극을 포함한다. 생식권은 아이를 가

질지 말지를 선택할 권리도 포함한다.

PART Ⅱ : **일반적인 정보**

활동 유형 : 역할극

목표와 목적 : 여성의 생식권에 대한 지식을 쌓고, 차별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알게 하며, 평등과 정의 및 책임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대상그룹 : 청, 장년

그룹크기 : ·15~25명

소요시간 : 90분

관련기술 : 비판적 사고, 의사 형성, 언어 및 공감 능력

PART Ⅲ :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지시사항 :

"M씨는 거의 1년간 실업 상태에 있는 중이며, 열심히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다. 10일 전, 그녀는 그녀가 원하던 직장에 면접을 보러 갔다. 면접은 잘 이루어졌고 M씨는 취업 제안을 받았다. 사측에서는 M씨에게 계약서 서명을 위해 인사담당자인 W씨와 만나 볼 것을 요청하였다. 그녀는 이미 면접에서 자신이 맡을 일과 업무와 관련된 논의를 끝낸 상태였지만 그저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했고, 인사담당자인 W씨는 2년 안에 아이를 갖기 않겠다는 선언에 서명하는 것이 일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역할극 수행 :

- 전체 인원을 작은 그룹으로 나눈다. (각 4~6명)
- 시나리오를 읽어주고, 각 소그룹이 이야기의 결말을 결정하고 역할극화 할 수 있도록 20분을 준다. 역할극은 M씨가 W씨를 만나는 순간부터 시작하며 5분을 넘기면 안 된다.
- 각 그룹이 역할극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역할극을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역할 전환 : 사전 안내 없이 극을 중단시키고 배우들에게 역할을 서로 바꿀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중단된 시점부터 이야기를 진행한다.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한다.
- 다시 보기 : 역할극이 끝나면 상황을 변경하고 (예. M씨는 불임이다, M씨는 이미 임신한 상태

이다 등) 이러한 변화를 적용하여 같은 장면을 다시 연기할 것을 요청한다.

- 최종 평가에서 참가자들에게 해줄만한 이야기를 메모해 놓는다.

피드백 :

- 각 소그룹에서 피드백을 진행한 다음 (예. 어떻게 역할극을 만들었는지; 어렵지는 않았는지?) 사건의 의미, 이러한 종류의 차별에 대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이 상황에 대해서 놀란 사람이 있었는가?
- 어떠한 결말을 내리기로 결정했는가? (현실적인 결말? 장점과 약점?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혹은 순응적 태도 중 어떤 것이 더 나은가?)
- 당신의 나라에서 여성은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 (특히 임신한 경우)
- 회사는 왜 저런 식의 반응을 하였는가? 공정한 처사인가?
- 침해된 인권이 있나? 만약 그렇다면, 어떤 인권인가?
- M씨가 남자였다면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 남성은 이러한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바라보는가? 여성이 바라보는 방식과 다른가?
- 여성의 생식권을 고취시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법론적 힌트 : 역할극을 시작하기 전에 각 그룹이 생식권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하나의 성별로 이루어진 그룹을 만들어볼 수도 있으며, 이러한 그룹이 결성될 경우 보다 도발적인 결말을 얻을 수도 있다.

응용을 위한 팁 :

- 두 명의 지원자로 역할극을 시작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관찰자로 참여하게 한다.
- 중간 중간 발표를 중단하고 의견을 묻는다.
- 관찰자들과 배우의 역할을 교대한다.
- 저 상황에 다른 인물들을 추가한다. (예. 남편, 노조 대표 등)

PART IV: **후속활동**

그룹에게 각자의 나라에서의 생식권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요청한다. (인터뷰, 관찰자들이 참여하는 인권 역할극을 공공장소에서 진행한다.)

관련 권리 및 더욱 탐색할 영역:

사회권, 성 평등, 차별 (출처: 유럽평의회, 2002. 컴퍼스: 젊은 사람들을 위한 인권교육 매뉴얼)

활동 II 공정하게 차려입었는가?

파트 I: 소개

한 사회 안에서 부와 권력의 분배는 보통 한 개인이 자신의 완전한 인권을 획득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에 영향을 미친다. 이 사례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공정함"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각자의 상황에 반영해 본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옷과 그 옷을 만드는 사람들 사이를 연결해 본다.

파트 II: 일반적인 정보

활동유형: 사례 연구

목표와 목적: 이 활동은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옷과 그 옷을 만드는 사람들 사이를 연결하도록 돕는다. 이와 더불어 세계화 경제 하에서 우리의 책임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대상그룹: 청, 장년

그룹크기: ·약 25명

소요시간: 90분

준비물: 플립차트 용지 혹은 칠판, 마커 펜 혹은 분필, 토론 질문들

핸드아웃: Math 티셔츠

관련기술: 분석, 반영, 언어 및 비판적 사고 능력

PART III: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핸드아웃 : Math 티셔츠

미국에서 한 벌에 $20 하는 티셔츠는 한 국제기업의 엘 살바도르에 있는 공장 중 한 곳에서 만들어진다. 이 공장은 마킬라도라(maquiladora)의 한 예이다. 마킬라도라는 외국인이 소유하는 공장으로 수출을 위해 상품을 생산하는 곳이다. 셔츠를 만들어내는 살바도르인 노동자는 한 시간에 $0.56을 받는다. 평균적으로 노동자는 한 시간에 약 4.7장의 셔츠를 만들어낸다.

1994년, 살바도르 정부는 겨우 연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현재 마킬라도라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4배가 필요한 것으로 계산하였다.

Math 티셔츠를 나누어 주고 참가자들에게 다음을 계산하라고 요청한다 (혼자 혹은 짝을 지어):

- 티셔츠 한 장당 노동자는 얼마를 받는가?
- 만일 노동자의 임금이 4배가 된다면 한 시간당 얼마나 버는가?
- 임금이 4배가 된다면 티셔츠 한 장당 얼마를 버는 것인가?
- 만일 회사가 늘어난 금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면, 티셔츠는 한 장당 얼마에 판매될 것인가?

이제 노동자의 임금이 10배가 되었다고 생각해보라:

- 노동자들은 한 시간당 얼마를 받는가?
- 티셔츠 한 장에 얼마를 버는가?
- 만일 회사가 늘어난 금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면, 당신은 티셔츠에 얼마를 지불할 것인가?

사례 연구에 대한 지시사항 : 참가자들이 각자의 옷에 있는 라벨을 확인하도록 요청한다. 그리고 (차트 용지와 칠판에) 목록을 만들고 라벨에 있는 모든 정보와 옷이 생산된 나라를 기록한다. 목록 작성이 마무리 되면 참가자들에게 결과를 분석하도록 요청한다. 대부분의 옷이 가난한 나라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이 나타날 것이다. 모든 참가자들과 함께 다음 질문에 대해 토론한다.

- 누가 당신의 옷, 선글라스, 신발, 버튼, 지퍼 등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가?
- 당신의 옷을 만든 사람이 남성, 여성, 아동 중 누구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가?
- 이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 그들이 어떠한 노동 조건에 놓였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사례 평가 : 우리의 옷을 만드는 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임금을 요구할 때 의류 판매업자들은 종종 소비자가 값 싼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임금을 낮게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룹 내의 사람들과 다음 질문에 대해 토론하라.

- 티셔츠를 구매하기 위해 기꺼이 더 지불할 의향이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는가?
-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인권이 침해되지는 않았는가? 구체적인 조항을 인용하라.
- 왜 판매자들은 서구 국가에 상품을 팔면서 엘 살바도르나 방글라데시,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 생산하는가?

- 노동자들이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피드백 : 마무리 질문을 하고 참가자들이 돌아가며 답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 오늘 나눴던 이야기 중 특별히 기억에 남을 내용은 무엇입니까?
- 당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단어나 문장을 생각해보십시오.

방법론적 힌트 : 사례 연구는 효율적인 토론을 이끌어 내는 데에 좋은 방법이다. 특히 이러한 사례의 경우 참가자들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뢰와 존중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모두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토론의 몇 가지 원칙을 그룹 전체가 함께 생각해보아야 한다. 모든 제안을 기록해두고 모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전시하도록 한다.

응용을 위한 팁 : 노동자의 성별, 나이, 임금 등이 기록된 라벨을 나눠주는 활동으로 어색함을 없앤다. (예. 5분에 사탕 10개, 10분에 사탕2개 등) 모든 그룹이 종이 한 장에 삼각형을 그리도록 하는 등의 (의미 없는) 활동을 하도록 한다. 활동이 끝나면 각 사람들에게 라벨에 기록된 나이, 성별대로 임금을 지급한다. "돈" (사탕)을 큰 소리로 세어 그들이 모두 했던 같은 일에 각자 얼마의 임금을 지급받는지 알 수 있도록 한다. 이후 느낀 점을 나눈다.

PART IV: **후속활동**

관련 권리 및 더욱 탐색할 영역 :

사회, 정치, 경제권

(출처: David A. Chiman의 *경제와 사회 정의. 인권의 시각.* 1999)

참고자료

Anti-Slavery International. *What is Modern Slavery?* Available at: www.antislavery.org/english/slavery_today/what_is_modern_slavery.aspx

Auer, Peter, Geneviève Besse and Dominique Méda (eds.). 2006. *Offshoring and the Internationalization of Employment. A Challenge for a Fair Globalization? Proceedings of the France/ILO symposium.* Geneva: 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bour Studies/International Labour Office.

Bartram, David. 2005. *International Labour Migration. Foreign Workers and Public Policy*. Houndmills: Palgrave Macmillan.

Bhargava, Pramila H. 2003. *The Elimination of Child Labour: Whose Responsibility? A Practical Workbook*. New Delhi: Sage Publications Ltd.

Cingo, Alessandro and Fruio Camillo Rosati. 2005. *The Economics of Child Labou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ouncil of Europe. 2002. *Compass: A Manual on Human Rights Education with Young People.*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Craven, Matthew. 2002.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 Perspective on its Development*. Oxford: Clarendon Press.

Deutsche Gesellschaft für die Vereinten Nationen. 2001. *Menschenrechte und menschliche Entwicklung. Anregungen zur Arbeit mit dem UNDP-Bericht über die menschliche Entwicklung 2000 in Schulen*. Bonn: DGVN.

Dore, Ronald. 2004. *New Forms and Meanings of Work in an Increasingly Globalized World.* Geneva: ILO Publications.

Drzewicki, Krzystof. 2001. *The Right to Work and Rights at Work.* In: Eide, Asbjorn, Catarina Krause and Allan Rosa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 Textbook. Dordrecht: Martinus Nijhoff Publishers.

FIAS - The Multi-Donor Investment Climate Advisory Service of the World Bank Group. 2008. *Special Economic Zones: Performance, lessons learned, and implications for zone development.* New York: The World Bank Group.

Goldewijk, Berma Klein, Adalid Contreras Baspineiro and Paulo César Carbonari. 2002. *Dignity and Human Rights. The Implementa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twerp: Intersentia.

Inter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 (ICHRP). 2002. *Beyond Voluntarism: Human Rights and the Developing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of Companies.* Versoix: Inter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 Policy.

International Labour Office. 2011. *Export Processing Zones: Comparative data from China, Honduras, Nicaragua and South Africa. Working Paper No. 21.* Geneva: ILO Publications.

International Labour Office. 2011. *Equality at work: The continuing challenge. Global Report under the follow-up to 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100th Session 2011.* Geneva: ILO Publications.

International Labour Office. 2011. *Global Employment Trends for Youth: 2011 update.* Geneva: ILO Publications.

International Labour Office. 2010. *Accelerating action against child labour. Global Report under the follow-up to 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2010.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99th Session.* Geneva: ILO Publications.

International Labour Office. 2010. *Global Employment Trends for Youth.* Geneva: ILO Publications.

International Labour Office. 2009. *The cost of coercion. Global Report under the follow-up to 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98th Session.* Geneva: ILO Publications.

International Labour Office. 2005. *An Alliance against Forced Labour. Global Report under the Follow-up to 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Geneva: ILO Publications.

International Labour Office. 2005. *The Rules of the Game - A brief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Geneva: ILO Publications. Available at: www.ilo.org/public/english/standards/norm/download/resources/rulesofthegame.pdf

International Labour Office. 2004. *A Fair Globalization: Creating Opportunities for All.* Available at: www.ilo.org/public/english/wcsdg/docs/report.pdf

International Labour Office. 2004. *Towards a fair deal for migrant workers in the global economy.* Geneva: ILO Publications. Available at: www.ilo.org/public/english/standards/relm/ilc/ilc92/reports.htm

International Labour Office. 2002. *HIV/AIDS and the World of Work: An ILO Code of Practice*. Geneva: ILO Publications.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2010. *International Labour Migration: A rights-based approach.* Geneva: ILO Publications.

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Employers (IOE). 2009. *Trends in the Workplace. Survey 2009.* Geneva: IOE Publications.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 2011. *Annual Survey of Violation of Trade Union Rights 2011.* Brussels: ITUC Publication.

Jenkins, Rhys, Gill Seyfang and Ruth Pearson (eds.). 2002. *Responsibility and Labour Rights. Codes of Conduct in the Global Economy*. London: Earthscan

Publication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UNAIDS). 2011. *World AIDS Day Report 2011. How to geht to Zero: Faster. Smarter. Better.* Geneva: UNAIDS Publication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UNAIDS). 2010. *Report on the Global AIDS Epidemic 2010.* Geneva: UNAIDS Publications.

Leary, Virginia and Daniel Warner. 2006. *Social Issues, Globalisation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Labour Rights and the EU, ILO, OECD and WTO (International Studies in Human Rights)*. The Hagu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Leary, Virginia A. 1998. *A Violations Approach to the Right to Work*. In: SIM Netherlands Institute of Human Rights. The Maastricht Guidelines on Violation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trecht: The Netherlands Institute for Human Rights.

Leary, Virginia A. 1998. *Globalisation and Human Rights.* In: Symonides, Janusz. (ed.). Human Rights: New Dimensions and Challenges. Aldershot: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Levin, Leah. 2005. *Human Rights. Questions and Answers*. Paris: UNESCO Publishing.

Richter, Judith. 2002. *Holding Corporations Accountable: Corporate Conduct, International Codes, and Citizen Action*. London: Zed Books.

Shiman, David A. 1999. *Economic and Social Justice. A Human Rights Perspective*. Minneapolis: The Human Rights Resource Center.

United Nations. 2005.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on Article 3 (The equal right of men and women to the enjoyment of al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va: United Nations. Available at: www2.ohchr.org/english/bodies/cescr/comments.htm

United Nations. 2005.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on Article 6 (right to work)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va: United Nations. Available at: www2.ohchr.org/english/bodies/cescr/comments.htm

United Nations. 2005. *The Inequality Predicament. Report on the World Social*

Situation 2005. New York: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2001. *We the peoples: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in the 21st Century, Briefing Papers for Students.* New York: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1996.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Fact Sheet No. 16.* Geneva: United Nations.

Werner, Klaus and Hans Weiss. 2001. *Schwarzbuch Markenfirmen.* Vienna: Deuticke.

추가정보원

Anti-Slavery International: www.antislavery.org

China Labor Watch: www.chinalaborwatch.org

Clean Clothes Campaign (CCC): www.cleanclothes.org/

CSRworldwide, Multistakeholder Initiatives: www.csr-weltweit.de/en/initiativen-prinzipien/multi-stakeholder-initiativen/index.nc.html

Ethical Trading Initiative (ETI): www.ethicaltrade.org/

European Roma Rights Centre: www.errc.org/

Fairtrade Labelling Organization International: www.fairtrade.net

Global Compact: www.unglobalcompact.org

Global March Against Child Labour: www.globalmarch.org

Good Weave International: www.goodweave.net/

Human Rights Watch: www.hrw.org/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 www.icftu.org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www.ilo.org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www.iom.int

International Programme on the Elimination of Child Labour (IPEC): www.ilo.org/ipec/programme/lang--en/index.htm

Labour Rights Now: www.laborrightsnow.org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www.oecd.org

The Concerned for Working Children (CWC): www.workingchild.org/htm/cwc.htm

The Fairtrade Foundation: www.fairtrade.org.uk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www.unicef.org/crc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Development Reports: http://hdr.undp.org/en/reports/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www.unglobalcompact.org

United Nations Organization (UNO): www.un.org/

University of Minnesota, Self-Imposed Company Codes: www1.umn.edu/humanrts/links/sicc.html

프라이버시권

RIGHT TO PRIVACY

민주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권
인터넷상에서의 프라이버시권
대테러작전과 프라이버시권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사례

2008년 8월, 아일랜드 정보보호위원회는 항공사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진정을 접수하였다. 진정인의 설명에 의하면, 2008년 6월 항공사는 한 통의 전화를 받은 후, 진정인과 그 남편의 여행일정을 남편의 고용주에게 이메일로 유출하였고, 그로 인해 남편이 회사에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주 측은 항공사가 의문의 메일로 유출한 것은 남편의 성(姓) 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진정인에게 작성해주었고 이 진술서의 사본은 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항공사는 의문의 이메일이 발송되기에 앞서 제 3자에게 보안질문을 제시하였다는 사실을 위원회 측에 밝혔다. 항공사가 이메일을 보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항공사에 정보제공을 요청한 통화내용이 녹음되어 있지도 않았고 자체 보안질문 시스템의 작동내용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 적절한 보안질문이 제시되었다는 어떤 증거도 없었다.

정보보호위원회는 진정인의 예약 과정이 남편의 이메일 주소가 아닌, 진정인의 이메일 주소와 진정인의 개인 컴퓨터로 이루어졌음도 참고하였다.

위원회는 항공사가 적절한 보안수단을 실제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부재한다는 사실과 제출된 기본 정보들을 바탕으로, 항공사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결론내렸다. 항공사는 진정인과 그 남편의 개인정보에 손을 대었고, 이메일을 통해 그 부부의 여행일정을 고용주에게 유출하였다는 것이 그 위법행위의 내용이다.

(출처 : Irish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2009. *Case Study 1: Disclosure of personal data due to inappropriate security measures.*)

토론할 거리

1. 이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권리들은 무엇인가?

2. 민감한 정보의 유출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시오.

3. 이러한 사례들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적 보호시스템은 무엇이 있는가?

알아야 하는 내용 😐!?

1. 소개

프라이버시권의 역사적 발전과정

프라이버시(영단어 privacy는 '나머지 사람들과 분리된다'는 의미인 라틴어 'priavates'에서 유래함)이라는 단어는 한 인간이 자신을 나머지 사람들과 분리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문화권에 따라 프라이버시의 범위가 다르긴 하지만, 그 개념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각 문화권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890년에 Warren과 Brandeis가 쓴 글이 프라이버시에 관한 가장 첫 번째 기록으로 남아있다. 프라이버시권에는 **자유에 관한 자유주의적 개념**의 핵심이 명확히 드러나 있는데, 이는 18세기 후기와 19세기 전반에 걸쳐 발전되어온 것이다. '분리된 영역'이라는 의미였던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가정과 주거의 보호, 통신의 비밀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여기에 뉴미디어가 자리 잡음에 따라 전기통신의 비밀에 대한 권리도 추가되었다.

그 이후로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은 기술적 발전들과 함께 어마어마하게 변화해왔고, 특히 인터넷의 대중화 이후로 그 변화는 더 커졌다. 그 중에서도 프라이버시의 의미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해는 지난 10년간 급격히 변했는데 그 중심에는 웹 2.0과 거대한 소셜 네트워크가 있다.

> 프라이버시와 인간안보
> 프라이버시를 크게 침해받는 인간은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다. 인간안보가 실현된 삶을 위해서는 프라이버시권의 기본적인 보장이 필수적이다.

2. 정의와 설명

프라이버시는 국제적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주요한 협약들이 보호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UDHR)**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이 그것이다.

> 세계인권선언 제12조
>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는 사생활에 관한 주요한 국제 조항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1.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않는다.
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인권위원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다. 거기에 더해 인권위는 협약에 관한 특정 이슈들에 관한 '일반논평'을 발표한다. 특히 1988년의 사생활, 가정, 주거, 통신 보호, 명예와 신용에 대한 권리(제17조)를 다룬 **일반논평 16번**과, 1990년의 가족의 보호, 결혼권과 배우자 평등권(제23조)에 관한 **일반논평 19번**은 사생활 보장 영역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일반논평 16번에서 언급되었듯이, 제 17조는 누구든지 사생활에 대한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한다.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권리들은 **국가에 의한 간섭**뿐만 아니라 **다른 자연인(natural persons)과 법인(legal persons)의 간섭**으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 인권위는 **'가족'**이라는 용어를 넓은 범주 안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정은 결혼한 부부와 자녀들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가족들 또한 포함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는 이 개념을 구체적으로 한정짓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프라이버시권의 내용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7조에 따르면 프라이버시권은 사생활, 정체성, 온전성, 은밀성, 자율성, 소통, 그리고 성적지향과 같은 하위그룹으로 나뉠 수 있다.

- **사생활(Privacy):**
좁은 의미에서의 프라이버시권은—세계인권선언 제 12조를 차용하자면—다른 이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개인존재의 특정한 영역을 보호한다. 여기서의 사생활은 다음에 열거되는 다른 카테고리들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 **정체성(Identity):**
정체성은 이름, 외모, 옷차림, 머리모양, 성별, 유전 정보 뿐 아니라 고백이나 신념과 같은

개인적인 '특징'들을 포함한다.

• **온전성(Integrity):**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는 개인의 온전성 또한 보호하고 있다. 예를 들면, 환자의 뜻에 반하거나 환자의 동의가 없는 의료행위는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해당된다.

• **신상(Intimacy):**

정보 보호와 가정 및 통신의 보호는 은밀성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보호하는 조처다. 개인은 자신의 신상관련 내용이 자신의 동의 없이 출판되지 못하도록 보호받는다.

• **자기결정(Autonomy):**

이것은 인간의 자기실현 영역을 다루고 있다. 자신의 몸에 관한 권리이면서, 동시에 '자살'과 같이 자신의 몸에 위해가 되는 행동을 할 권리까지 포함한다.

• **소통(Communication):**

이 영역은 다른 이들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것이다. 가족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는 별개로, 이 영역은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 **성적지향(Sexuality):**

성적 자율성은 프라이버시권에서 특수하고 특히 중요한 부분이다. 성적인 행동을 규제하는 어떠한 규범도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에 해당된다. 간섭이 허용되는 유일할 경우는 그것에 영향 받는 사람들(예를 들어 아이들)에 대한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뿐이다.

(출처: Manfred Nowak. 2005. *CCPR Commentary, Art. 17 CCPR.*)

특별히 취약한 집단들

• **장애인**

격리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경우처럼,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은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로 고통 받는 처지에 놓이기가 쉽다.

• **환자와 노약자**

병중에 있는 사람들이나 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은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취약지대에 놓여있다.

• **아동**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고려했을 때, 아이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소셜 네트워크나 인터넷에 공개했을 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받기가 쉽다.

☞ 아동인권

3. 문화적 관점 차이와 논쟁적 이슈

프라이버시권을 침식해오는 대테러 정책

근래 국가는 대테러 정책들을 다룰 때,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두 가지의 새로운 역학**에 강조점을 둔다. 첫째로 국가는 테러를 예방하고 수사하는 능력은 **감시권력의 강화**와 전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2001년 911 테러 이후 대부분의 대테러 관련 법안은 정부의 감시권한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 왔다. 두 번째로, 테러는 전 세계적 이슈이기 때문에 테러리스트 수색임무는 **국경**에 의해 제한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국가의 관점이다. 개인들에 관한 막대한 정보력이 있는 제 3자의 도움은 테러 용의자들을 찾아내고 감시하는 데에 있어 주요한 자원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관점들로 인해, 헌법 상 혹은 법적으로 명시된 보호 장치가 부재한 국가들이 급진적으로 변화하여, 감시와 관련된 법들을 확대시키고 이러한 법에 대한 규제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 부실한 법적·헌법적 보호 장치들을 갖춘 이런 나라들의 경우, 정부가 제 3국이나 민간 영역과 협력하거나 국내 감시 시스템을 해외 시스템으로 교체하면서 기존의 보호 장치들을 적용하지 않고 변화시킨다. 이러한 조치는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를 위태롭게 만든다.

국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법적 감시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은 개연성 있는 이유나 **합리적인 근거**와 **인권에 대한 충분한 존중**을 기반으로 한, **특정 사건에 대한 한정적인 개입**일 경우이다. 법적 원칙은 개인의 행동이 범죄행위에 관련되었다는 의심을 합리화할 수 있는 사실적 근거가 반드시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의 변화과정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정보기관과 사법기관에 의한 통신감청이 비정상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기술들(예를 들어, '도청'과 휴대폰의 위치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 추적 기술들, 인터넷 전화 이용자들의 사적인 대화내용을 정부에 보고하는 기술, 혹은 용의자의 컴퓨터에 원격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스파이웨어를 설치하는 기술)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음이 확연히 드러난다. 일부 국가에서는 통화내용의 보안을 강화하고 감청을 방지하는 암호화 기술들이 사용금지조치를 당하기도 하였다.

(출처: United Nations. 2009.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ile countering terrorism.*)

☞ 법의 지배와 공정한 재판

미국에서 2011년 한 해 동안 사용된 감시 유형들과 감청으로 인해 체포, 유죄 판결 받은 사람 수

보고 관할	감청설치 법원명령 건수	도청(이동통신과 유선전화 등 모든 종류의 전화 포함)	구두(마이크 포함)	전자장비 (무선호출기, 팩스, 컴퓨터 포함)	혼합형태	체포건수	유죄 판결 받은 수
합계	2189	2092	6	4	87	3547	465
연방정부	367	358	0	1	8	1006	47

(출처: US Courts Statistics 2011,

www.uscourts.gov/uscourts/Statistics/WiretapReports/2011/Table6.pdf.)

검문하고, 수색할 수 있는 확장된 권력

'대테러작전의 수단'이라는 명분아래, 정부는 **일반 대중**의 신원을 파악하고 스캔하며 꼬리표를 다는 일을 확대해왔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한 인간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공공장소에서 대규모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러한 감시 수단들은 정당성 및 사법적 감시가 부족한 체제들의 도구로 흔히 사용된다. 검문과 수색으로 인해, 금융거래·통신 및 여행 **기록**에 대한 **감시**의 증가로 인해, 잠재적 용의자를 찾기 위한 **프로파일링** 과정으로 인해, 수상한 활동들의 개연성을 계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개인들을 색출해내기 위한 다양한 목록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 인해, 기존의 인권 기준들은 훼손되어 왔다.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지난 수년간 더욱 더 발달된 기술들이 적용되었는데, **생체인식장치**들이나 의복을 투시하는 **바디스캐너**의 사용 등이 그것이다.

근래의 주된 흐름을 볼 때, 국가는 개인을 검문 수색할 수 있는 권력을 확대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우려스러울 정도의 발전을 이뤘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국가가 그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통제하고 방지할 수 있는 국내적 법적 장치들은 축소시켰다. 이 권력들은 여러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민족 프로파일링과 차별정책**에 대한 우려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새로이 확대된 이 권력들로 인한 시민들과 정부 간의 심각한 긴장관계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출처: United Nations. 2009.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ile countering terrorism.*)

☞ 인종차별금지 및 차별금지

생체인식장치의 사용과 중앙집중화된 신원확인시스템의 위험성

얼굴이나 지문인식, 홍채 인식과 같은 **생체인식장치**의 사용은 새로운 신원확인 정책의 핵심요소다. 생체정보의 수집이 늘어남에 따라, 오작동 비율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배척 현상 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을 범법자로 둔갑**시킬 있는 위험으로 이어진다. 게다가, 다른 신원확인장치와는 다르게 생체정보시스템은 철회가 불가능하다. 일단 정보가 저장되고 오용되게 되면, 한 인간에게 새로운 생체정보를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이슈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이 또 있는데, DNA 정보의 과학적 객관성과는 상반되게 DNA 정보 또한 변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의 실례는 생체정보수집시스템의 중앙집중화가 오심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4년 3월 11일 마드리드 폭탄테러가 발생한 후, 스페인 경찰은 불발탄에서 어렵사리 지문을 채취해냈다. 미국 FBI의 지문감식 전문가들은 한 변호사의 지문이 현장의 지문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발표 했다. 그 변호사는 전직 미군이었기 때문에 그의 지문 정보는 미국 지문정보 시스템에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 지문은 그의 것이 아니었음에도, 그는 2주 동안 독방에 수감되었다. 조사관들은 일치 여부를 충분히 재조사하는 데에 실패했고, 설상가상으로 그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유죄 판결 받은 테러리스트를 변호했었고 이집트 이민자와 결혼했으며 이슬람으로 개종했다는 것이 알려졌을 때 그의 상황은 더욱 불리해졌다."

(출처: UN 2009.United Nations. 2009.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ile countering terrorism.*)

감시대상 리스트의 유통

감시대상 모니터링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는 1999년 UN 안보리가 아프가니스탄의 상황과 관련하여 기존의 1189(1998), 1193(1998), 1214(1998) 안보리 결의안을 언급하며 1267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시작되었다. 안보리는 알카에다와 오사마 빈라덴, 탈레반과 관련되거나 그들을 숨겨주는 개인과 조직을 제재하기 위한 체제를 설립하였다. **"알카에다와 탈레반 제재 위원회"**(일명 대테러위원회 : 역자 주)로 잘 알려진 이 위원회가 바로 그 조치다. 이 체제는 그 이후 열두 차례 추가적인 안보리 결의안 채택(결의안 1333(2000), 1390(2002), 1455(2003), 1526(2004), 1617(2005), 1735(2006), 1822(2008), 1904(2009))을 통해 재확인과 수정과정을 거쳐서, 현재는 알카에다나 오사마 빈라덴, 탈레반과 관련된 개인, 조직에 제재조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2001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이후로는 이러한 제재조처가 전 세계 모든 곳의 개인과 조직에게 적용되고 있다.

(출처: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Counter Terrorism Committee, http://www.un.org/en/sc/ctc/rights.html.)

2006년 12월 19일, 안보리는 **1730(2006)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리스트 삭제과정**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리스트에 들어간 당사자들이 위원회에 자신의 케이스를 숙고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2006년 12월 22일 안보리가 **1735(2006) 결의안**을 채택하고 나서야 리스트 작성과정도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 결의안은 탈레반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이나 조직을 리스트에 넣기 위해서 국가가 작성해야 하는 일련의 서식들을 마련했다.

거기에 더해, 안보리는 1904(2009) 결의안을 통해 **고충처리국**을 설립하여 안보리의 리스트 삭제 요청처리 업무를 돕도록 했다.

(출처:Tessa Van Lieshout. 2006. *The Unit\-ed Nations and the fight against terrorism.;*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Committee pursuant to Resolutions 1267 (1999) and 1989 (2011) concerning Al-Qaida and associated in\-dividuals and entities.) ☞ 법의 지배와 공정한 재판

중앙집중화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의 자료수집

어떤 상황에서는 새로운 생체정보처리 기술들이 용의자의 신원확인에 적법한 도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체정보를 여권과 같은 하나의 신분증이 아닌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은 우려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방침은 정부에 비해 개인을 무력한 위치에 놓이게 함으로써 **정보 보안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때문에, 2009년 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위원회의 위원들 일부는 UN에 '인권으로서의 정보보호권과 프라이버시권을 명확히 세부적으로 정리한 **법적구속력이 있는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와 동시에 미국정부도 이에 부응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받았고 유럽평의회(CoE) 또한 현재 심리중인 유럽평의회 정보보호 조약 23조에 적합한 법적 장치 마련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이 작업은 신중을 기해야 하는 작업이다.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뿐 아니라 국가 간 정보흐름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사생활 보호의 보편적 기준을 국제적 수준에서 높여야 한다.

반면에, 국가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가장 자유로운 사회에서조차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상원 헌법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영국에서 감시는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분이다. 우리가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내고, 인터넷을 하고, 심지어 시내중심가를 걸어갈 때도, 우리의 움직임은 감시를 받고 기록된다. 범죄에 대응하

고, 테러 위협에 맞서고,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영국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고도 기술적으로 발전된 감시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구축해오고 있다. 동시에,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사한 변화들은 영국인의 삶을 크게 바꾸어놓고 있다. 전자감시 시스템의 발전과 개인정보의 수집과 가공은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일상적이며 거의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감시 관행들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그 잠재적인 결과들 또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출처:Peter Malanczuk. 2009. Data, Transboundary Flow, International Protection; 3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f Data Protection and Privacy Commissioners. 2009. *Standards on Privacy and Personal Data*)

인터넷에서의 프라이버시– 소셜 네트워크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국제적 통신망**(하나의 예로, 페이스북은 2012년 4월, 9억이 넘는 회원수를 기록했다) 확장으로 인해,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의 흐름을 국제적으로 적합하게 규제하고 개개의 국내법을 조화시키는 문제가 앞으로 수년간 입법에 있어서의 주요한 이슈로 남을 것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들과 관련된 여러 법적인 이슈들 중 하나는,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다.

이러한 사이트들은(예를 들어, 페이스북, 트위터, Friendster 등) 사용자들에게 자신과 타인들에 대한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다수의 사용자들은 자신이 친구들끼리만 공유하려고 올렸던 정보들이 **정부당국을 비롯해 생면부지의 사람들과 언론, 다수의 대중들**에게까지 흘러들어갈 수 있음을 곧 깨닫는다. 그 예로, **인사담당자들**은 지원자들을 뽑기 전에 배경조사를 위해 이러한 사이트들을 체크하기도 한다.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들을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한 인간에 관한 광범위한 개인식별정보들을 얻을 수도 있다. 일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들이 고집하고 있는 실명사용 의무화정책은 문제를 더 가중시킨다. 한 사용자와 '친구'를 맺은 수백 명 중 누구나 자신이 원할 때 그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그 정보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예를 들어 사진) 또한 이 이슈와 밀접히 관련된 문제다.

친구나 해당 사이트 회원 외에도 누구나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용자들은 자신이 올린 사진들과 남겨진 댓글들 그리고 프로필 정보에 누구든 접근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들은 고용주가 될 사람일 수도 있고, 사법당국이 될 수도 있다. 이 정보가 네트워크 바깥의 세상으로 나가 어떤 이미지로 묘사될지 알 수 없다. 그들은 자신의 지인들에게만 공개될 것이라 생각했던 자신의 개인적인 정보들이 얼마나 멀리까지 퍼지는지를 알고 놀라곤 한다. 온라인에서 한번 정보가 공개되면 그 후엔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주된 문제인 것이다.

개인계정의 경우, **프라이버시 관련 초기 설정**은 자신의 프로필을 보는 누구에게나 방대한 정보열람을 허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충분히 하기위해선 사이트 설계부터 프라이버시를 고려해야 한다(예를 들어, 초기기본설정이 적절한 프라이버시 보호수준으로 설정되거나 웹사이트와 프로그램 설계 시부터 프라이버시 보호가 고려되어야 한다).

프로필을 보는 누구나 블로그와 댓글과 같은 개인적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다.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의 관리자가 초기설정을 높게 설정해놓는다면, 사용자들은 자신의 개인 자료들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즉시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약관과 같은, 프라이버시 정책들은 명확하고 따르기 쉬워야 한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자신이 무엇에 동의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웹사이트들의 프라이버시 정책과 약관들은 불필요하게 복잡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것들을 읽고 확인하는 일이 필요이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2012년 4월, 유럽평의회의 장관위원회는 **검색엔진의 인권보호에 관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이 권고안은 회원국들이 검색엔진을 통해 정보가 수집되는 방법에 관해 투명성을 감독,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Council of Europe. 2012. Recommendation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with regard to search engines.; Peter Malanczuk. 2009. *Data, Transboundary Flow, International Protection.*)

아동 포르노

1990년 발효된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인권에 관하여 법적구속력을 가진 최초의 문서다. 제16조는 세계인권선언과 맥을 같이 하여, 아동에게 프라이버시권을 부여한다.

협약에 의해 정부는 아동들을 모든 종류의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그들이 납치되어 매매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협약에 더해서, **아동 매매와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정부가 아동매매(강제노동, 불법입양, 장기 기부 등의 모든 형태의 비성적(非性的)인 목적의 아동매매 또한 포함),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그라피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위반을 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1년 5월 기준으로 143개 국가들이 이 선택의정서에 서명하였다. ☞ 아동인권

4. 이행과 모니터링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본인권조항들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헌법은 또한 이러한 인권조항에 대한 위반이 발생했을 때, 국내**법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인권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조약**이 마련되어 있다. 국가가 한번 이 조약에 가입하게 되면, 그 국가는 조약을 지키고 실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국제법은 각 나라가 이 조항들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것은 그 국가의 사법체제에 달려있다.

유엔

인권조항들이 실행되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UN의「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같은 조약들은 감시 메커니즘에 대한 근거가 된다. 이 감시 메커니즘이란 **보고 시스템**을 의미한다. 국가들은 정기적으로 국제 감시기구에 협약조항들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보고해야 하는 것이다.

인권위원회는 **독립적 전문가**들의 단체로 당사국의「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행을 감시한다. 모든 당사국은 위원회에 권리들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기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들은 조약에 가입한 후 일 년 후에 초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그 후에는 위원회가 요구할 때마다 제출해야 한다(대개 4년마다). 위원회는 모든 보고서를 검토하고 각 보고서에 대한 우려사항들과 권고사항들을 담아 '**최종견해**'의 형식으로 국가로 송부한다.

보고체계에 더하여, 위원회는 협약 제41조에 의해 소위 **국가 간 분쟁**에 관여할 수 있다. 게다가, **협약에 대한 첫 번째 선택의정서**는 위원회가 **개인통보** 또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정부의 협약위반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는 특정한 주제의 이슈에 대해 인권조항의 내용에 따라 해석하여 일반 논평의 형식으로 출간한다. 예를 들어, **일반논평 16번: 사생활과 가족, 주거, 통신의 권리와 명예, 신용의 보호(17조)**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조약에 따른 개입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관련 제정법은 반드시 이러한 개입이 허용되는 특정한 상황들에 대해 세부적으로 명시해야만 한다. 이러한 공인된 개입의 사용여부를 정하는 것은 반드시 법에서 정한 당국만이 할 수 있고 개개의 사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17조의 준수를 위해서는 법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서신왕래의 완전성과 기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형태를 막론하고 감시와 감청은 금지되어야 한다. 가택 수색은 필요한 증거수색에만 한정되어야 하고 괴롭힘에 해당하는 정도까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컴퓨터나 자료 저장소, 기타 기기에서 개인적 정보를 수집하고 보유하는 것은, 그것이 공공 당국에 의해 이루어지든 개인이든 사설 단체에 의해서든 간에, 반드시 법에 정한대로 행해져야 한다. 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정보가 그 정보를 소유, 가공, 사용할 법적 권한 없는 개인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조약에 반하는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못하도록 정부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자신의 정보 파일을 통제하거나 통제가능성이 있는 공공 기관 혹은 사설 개인이나 단체가 무엇인지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이런 정보 파일에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수집 경로와 절차가 위법한 경우에는, 누구나 수정과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대테러 작전 속에서의 인권, 기본적 자유권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UN 특별보고관

911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달라진 인권상황의 흐름은 기록으로 잘 남아있다. 911 공격이 일어난 후, 전 세계적으로 무슬림과 아랍인들은 그들의 외모만을 이유로 인종차별주의자들의 수많은 공격을 받았다. 정부 또한 광범위한 입법 조치로 대응했다. 많은 주들이 새로운 범죄를 규정하고, 특정 조직들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며 시민적 자유를 억제하고, 인권위반에 대한 보호장치를 축소시키는 법을 만들었다. 이것은 테러와의 싸움을 구실로 인권침해를 합법화하는 위험한 경향을 초래했다. 테러위협에 과잉 대응한 정부당국으로 인해, 테러리스트로 몰린 이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자국 시민들의 인권까지 침해당할 위험에 처했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는 축소되었다.

안보리 결의안 1535(2004)으로 대테러사무국이 설립되었고 사무국은 인권에 관련하여 좀 더 주도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대테러사무국은 대테러 관련 문제들과 관련하여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을 비롯한 다른 인권기관들과 협력하도록 의무가 지워졌고, 인권 전문가가 사무국의 직원의 일원으로 임명됐다. 그리고 2005년 4월, 인권위원회는 결의안 2005/80에서 **대테러 속에서의 인권, 기본적 자유권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UN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보고관의 2009년 보고서는 대테러 조치들로 인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에 대해 매우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누군가가 일단 정보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조사받거나 검열 받게 되면, 그의 개인정보는 대테러 작전이라는 명분으로 정보기관들에 공유되고, 대개의 경우 프라이버시권은 자동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국제인권법 아래에서 정부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력을 지닌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다. 그러나 대테러리즘이 모든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간섭을 자동적으로 합법화할 수 있는 만능 카드는 아니다. 어떤 간섭이든 비판적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7조는 국제적 수준에서 프라이버시권에 관하여 법적구속력을 가진 가장 중요한 조약 규정이다. (출처: OHCHR. 2007. Human Rights, Terrorism and Counter-terrorism.; Tessa van Lieshout. 2006. The United Nations and the fight against terrorism.; United Nations. 2009.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ile countering terrorism.)

지역별 협약들과 감시기구들

유럽연합의 노력들

1995년에 이미 유럽연합이사회와 유럽연합의회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보호 그리고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지침(**정보보호지침**, 95/46/EC)'을 채택했고, 이 지침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법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보보호지침은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었다. 하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개인정보 데이터가 유럽연합 회원국들 사이를 장애물 없이 **자유롭게 오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보보호지침은 수동기입식 파일 뿐만 아니라 전자 파일에서의 개인정보의 처리에도 적용된다.

이 지침은 다음과 같은 권리들을 포함한다.

- 부정확한 정보를 수정할 권리
- 불법적인 처리를 막을 권리
- 직접마케팅 광고를 무료로 거부할 권리

건강이나 성생활, 혹은 종교적이거나 철학적 신념과 관련된 민감한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나 공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 지침은 유럽연합 밖의 국가들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을 만들도록 더 큰 압력을 가하고, 유럽 내에서 정보흐름이 계속되도록 보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7년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의회는 개인정보처리와 통신 분야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한 보충지침(**통신프라이버시지침**, 97/66/EC)을 채택하였는데, 이 지침은 전화, 디지털 텔레비전, 이동통신망 및 여타 통신 시스템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었다. 이 지침은 통신회사와 서비스제공자들이 사용자들의 인터넷 통신, 활동과 관련한 통신 프라이버시를 의무적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한다. 통신프라이버시지침은 청구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마케팅 활동에 한계를 지어, 통화가 일단 끝나면 통신 전달 중 수집된 정보는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002년 유럽의회와 유럽연합회의는 개인정보처리와 전자통신분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지침(**전자통신프라이버시지침**, 2002/58/EC)을 채택하였다. 회원국들은 이동전화, SMS, 유선전화, 팩스, 전자우편, 채팅방, 인터넷, 혹은 기타 전자통신장비를 통해 일어나는 모든 통신활동에 대한

트래픽 데이터와 위치 데이터 보유를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런 조치는 국가 보안이나 범죄 예방 그리고 법집행 등 다양한 이유로 실행될 수 있다. 전자통신프라이버시지침은 통화와 통신, 트래픽 데이터와 위치데이터 보호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포함함으로써, 사생활을 더욱 광범위하게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 이 지침에 의하면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모든 정보(트래픽)는 보호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동의 없이 보내지는 상업적 광고인 스팸메일은 금지된다. 그리고 이동전화 사용자들은 정보기관의 정확한 위치추적이나 감시로부터 보호받는다.

2006년 유럽연합은 '공개적으로 가능한 전자통신서비스 혹은 공공 통신망과 관련되어 생성되거나 처리된 정보의 보유에 관한 지침(2006/24/EC)'을 추가적으로 채택하여 전자통신프라이버시지침에 수정을 가하였다. 매우 논쟁적인 이 지침은 서비스공급자들이 6개월에서 2년 동안 정보를 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7년 유럽연합과 미국은 합의에 도달하여, 브뤼셀 기반의 은행집합체인 SWIFT에서 미 재무부로 개인금융정보가 전송가능하게 되었고, 이로써 SWIFT는 safe harbour 조항(미국과 유럽연합(EU) 간에 맺은 개인 신상 정보(PII)의 전송에 관한 협정)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추가적으로 유럽연합과 미국은 **탑승자명단 기록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에 동의하였다(항공회사로부터 미국토안전부로의 탑승자명단기록 전송과 처리에 관한 유럽연합과 미국 간의 합의). 2006년에 동일한 사안에 대한 비슷한 합의가 유럽재판소의 결정으로 폐지되었다(유럽의회 대(對) 유럽연합회의와 유럽공동위원회의 소송, 2006년 5월 30일).

2012년,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개의 초안이 만들어졌다. 첫째는, **개인정보 처리와 이동과 관련한 개인 보호 법률에 관한 초안**이고, 두 번째는 **범죄 예방과 조사, 적발, 기소, 형 집행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주무관청의 개인정보처리를 비롯, 이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과 관련한 개인보호에 관한 지침에 관한 초안**이다. 지침 16조는 정보처리가 규정을 따르지 않고 이루어졌을 경우,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담고 있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12.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Peter Malanczuk. 2009. *Data, Trans-boundary Flow, International Protection.*)

유럽인권협약(ECHR)

1950년 제정된 인권보호와 기본적 자유권에 관한 유럽인권협약 제8조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1) 모든 사람은 그의 사생활, 가정생활, 주거 및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법률에 합치되고, 국가안보, 공공의 안전 또는 국가의 경제적 복리, 질서유지와 범죄의 방지, 보건 및 도덕의 보호,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어떠한 공공당국의 개입도 있어서는 아니된다."

협약에 의해, 협약이행을 감시할 유럽인권위원회와 **유럽인권재판소**가 설립되었다. 두 조직은 프라이버시권의 강화에 적극적으로 임해왔다. 또한 이 두 조직은 제8조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광의의 관점을, 제한에 대해서는 협의의 관점을 유지해왔다. 갑 대 아이슬란드의 소송(5 Eur. Comm'n H.R. 86.879)을 보면 1976년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대다수의 앵글로 색슨인들과 프랑스 작가들에게 있어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라는 것은 프라이버시권과 생존권 그리고 더 나아가 언론의 관심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보다 더 넓은 관점을 갖고 있다. 프라이버시권을 존중받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 존재와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킬 권리, 특히 한 인간의 인격 발달과 실현을 위한 감성적인 영역의 권리까지를 어느 정도 포함한다."

(출처: Magdalena Sepulveda, Theo van Banning et al. 2009. *Human Rights References Handbook.*)

개인정보처리 자동화에 관한 유럽평의회조약과 추가의정서

1981년에 제정되어 1985년 발효된 개인정보처리 자동화에 관련한 개인보호에 관한 조약은 전 세계 어느 국가나 가입할 수 있다. 조약은 2012년 6월, 44개국에 의해 비준되었고, 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초의 국제법으로서, 국제적 의의를 가진다. 이 조약의 당사국들은 국내법 내에서 조약의 원칙들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이 조약의 원칙들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모든 개인들의 기본적 인권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유럽평의회는 협약의 **현대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의 동의나 고지 없이 개인정보가 끊임없이 기록되고 소통되고 분석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는 시대에는, 우리의 기본권을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 프라이버시와 자유 사이의 경계선이 흐려지는 때가 되면 조약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나 이는 쉽지 않은 과정일 것이다.

국가 간 개인정보의 교환이 증가함에 따라, 인권과 기본적 자유권, 그 중에서도 특히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추가의정서**– '개인정보처리 자동화에 있어 감독 당국

과 국제 간 데이터 유통과 관련한 개인보호'-가 2004년 발효되었고 2012년 6월 현재 3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추가의정서는 당사국들이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설립하도록 한다. 이는 개인정보 처리과정에 있어 개인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미주인권협약

미주인권협약 제11조의 프라이버시권 해석은 세계인권선언과 유사한 맥락에 있다. 1965년 미주기구는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미주 선언을 발표하고 프라이버시권을 포함한 다양한 인권 보호를 요구했다. **미주인권재판소**는 소송에서 사생활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했다.(예로써, Rivas Quintilla 대 El Salvador, Oscar Elias Biscet 대 쿠바)

(출처: Magdalena Sepulveda, Theo van Banning et al. 2009. *Human Rights References Handbook.*)

프라이버시 보호와 국제간 개인정보 유통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

OECD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국제간 개인정보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1980년 9월 23일에 채택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가 담긴 종합적인 안내서이다. 핵심적인 원칙들을 나열하고 있는 이 가이드라인은 정부와 산업계, 소비자 대표들에게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데에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비구속적 원칙들을 서술하고 있다. 그 원칙들이란 개인정보는 수집에서 저장과 삭제까지, 모든 단계에서 보호되어야 함을 말한다. 정보 보호에 대한 원칙과 표현은 여러 선언들과 법률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개인정보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처리되어야 함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취득될 것
- 본래 명시된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
- 목적에 충분하고 밀접히 관련 있으면서 과도하지 않아야 할 것
- 정확하고 최근의 것이어야 할 것
- 정보의 주체에 접근 가능할 것
- 안전히 보관되어야 하며, 목적을 다한 후에는 폐기될 것.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헌장은 **10조**에서 사생활의 보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그 부모나 법적 후견인이 아동들의 행동에 대해 합리적인 감독을 행사할 권리를 갖고 있는 상황하에서, 어떤 아동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항하여 아동은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알면 좋은 내용

1. 모범 사례

Privacy.Org

이 사이트에서는 사생활에 관한 매일의 뉴스와 정보, 계획들을 알 수 있다. 사생활과 관련된 활동들, 단체들과 출판물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 사이트는 전자 프라이버시 정보센터(EPIC)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I)의 합동 프로젝트로 탄생했다.

전자 프라이버시 정보센터(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re)

EPIC는 공공이익연구센터로 워싱턴 D.C.에 위치하고 있다. 1994년 설립된 이 단체는, 당시 대두되고 있던 시민권에 관한 이슈에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프라이버시와 수정헌법 제 1조,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

1990년에 설립된 인권단체로, 정부와 기업의 감시를 감시하는 단체이다. 이 단체는 영국 런던에 본부를, 워싱턴 D.C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PI는 전 세계에서 광범위한 이슈에 대한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다. 캠페인의 주제가 되는 이슈는 도청과 국가정보기관활동에서부터 신분증 카드, 비디오 감시, 데이터 매칭, 경찰 정보 시스템, 그리고 의료 프라이버시 등에 걸쳐있다.

(출처: Peter Malanczuk. 2009. Data, Trans\-boundary Flow, International Protection.)

2. 트렌드

감시 리스트, "비행금지 승객" 명단

가장 흔한 형태의 감시리스트는 비행금지 승객명단이다. 대개, 이러한 명단들은 항공사와 보안 당국에 유통되며, 명단에 속한 승객은 억류하거나 심문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러한 명단들이 어느 범위까지 사용되는지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들이 공적 감독을 받는 곳에서는 다수의 오류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가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명단들이 아무리 지속적으로 오류확인과정을 거친다하더라도 데이터의 완전성 문제는 남기 때문에 신원확인 과정은 반드시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명단들은 대개 비밀에 부쳐지는데, 테러 용의자에게 명단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이유라는 게 공식적인 설명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비밀주의로 인해 개개인은 자신이 어떤 명단에 올라있는지에 대해 알지도 못한 채 그리고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관리감독**도 없이, 끊임없이 철저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런 **비밀 감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 하에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에 해당된다. 만약 이러한 반 테러리스트 명단이 공개된다면, 17조는 또 다른 형태로 작동된다. 인권위원회는 *"UN 1267 위원회가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그 통합명단에 사람들을 등재시킨 것은 17조의 위반이다. 금지명단의 타이틀에 이름이 올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 개인의 명예와 평판에 대한 공격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을 내렸다.

공적 비밀 감시명단들은 정보 보호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위반하는 경우가 잦다. 처음 목적을 갖고 생성된 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재사용되고, 심지어 어떤 경우엔 타 기관들과 공유되면서도 그 당사자들의 동의나 사전고지를 거치지도 않는다. 잘못된 정보가 사람들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 사용되고, 그 결과로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증거도 제시받지 못한 채 비자가 거절되고 비행기 탑승이 거부되어 **여행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

(출처: United Nations. 2009.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ile countering terrorism.*)

Abousfian Abdelazik씨의 경우가 하나의 예다.
"Abousfian Abdelazik씨는 범죄로 기소된 적이 한 번도 없는 몬트리올 출신의 남자다. 2006년 유엔의 테러 감시명단에 이름이 올랐던 그는 현재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례를 알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2003년 그는 병환 중에 있는 어머니를 방문하기 위해 수단에

갔다가 혐의도 없이 체포되었다. 그는 결국 6년만인 작년 여름에야 수단에서 캐나다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 6년의 시간 속에는 두 번의 옥살이와 캐나다 대사관 로비에서 보낸 14개월의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제재조치로 인해 일을 구할 수도 없는 그는 고국으로 들어온 후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에게, "나는 아무것도 잘못할 게 없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내가 아무런 혐의도 없고 증거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오타와 시당국은 Abdelazik *씨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가 어찌하여 월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그것을 꺼내 쓸 수도 없다. 법정 다툼을 통해, 그는 자신의 계좌에서 일정 한도액 내의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는 명령을 받아냈다.*

CSIS와 RCMP는 모두 Abdelazik *씨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을 인정했다. 그리고 2005년 수단 법무부는 알카에다와 그의 연관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테러 감시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려는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연방 정부와 다른 관계당국은 계속해서 그에게 제재 조처를 가하고 있다. 그는 수단 감옥에 있으면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그가 수단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오타와 시당국은 그 명단을 거론하며 그에게 여행허가 서류발부를 거부했다. 그는 칼툼에 위치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수개월을 보냈다.*

Abdelazik *씨의 전국 순회강연에 동반한 메리 포스터는,* Abdelazik *씨가 겪고 있는 이 고초는 이슬람공포증과 인종차별주의, 그리고 '독단적인 정부 권력'에 저항하는 거대한 싸움의 일부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한 인간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다수의 개인들과 이러한 개인들로 이루어져있는 전체 국가들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Abdelazik *씨의 변호사들은 유엔의 1267 리스트라고 알려진 감시 명단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Abdelazik *씨는 그에 앞서 외무부 장관 로렌스 캐논과 연방정부에 270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정부가 수단 당국에 의한 구금과 고문을 방조, 격려하고 주선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귀환을 수 년 동안 적극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한다.*

*캐논 장관의 대변인인 Melissa Lantsman은 이 사건이 아직 소송 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Abdelazik *씨가 감시명단에서 이름을 내리려면 적합한 경로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는 2007년에 그의 이름을 유엔의 명단에서 빼기 위해 노력 했지만 거부당했다. 명단 제명 요청에 대해 안보리 회원국 중 누구라도 아무런 이유 없이 반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출처: CBC News. 2010. *Montreal man on watch list rallies supporters.*)

구글 스트리트뷰

구글이 2007년 스트리트뷰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우려가 많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구글 스트리트뷰 디지털 카메라에 의해 모아진 이미지 정보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구글이 스트리트뷰 차량에 숨겨진 **와이파이 수신기**로부터 방대한 양의 와이파이 데이터를 얻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독립적인 조사들이 시작됐고, 구글은 자신들이 개인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위치정보가 결합된 MAC 주소들과 네트워크 SSID들(사용자에게 할당된 네트워크 ID 식별명)을 수집했음을 인정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수많은 항의로 인해 구글은 와이파이 데이터전송의 불법 수집을 중단했다. 결국, 구글은 계속된 조사 끝에 자신들이 이메일 비밀번호와 이메일 내용 또한 엿보고 저장했음을 인정했다. *"...일부 경우에서는 이메일과 URL들뿐만 아니라 이메일 비밀번호까지 통째로 캡쳐되어 있었다."*

2011년 1월, 적어도 12개 국가에서 조사가 행해졌고, 9개 국가에서는 구글의 위법행위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되었다. **스위스 법원**은 구글 스트리트뷰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스위스 최고법원은 구글 스트리트뷰 지도 서비스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고, 구글이 인터넷에 이미지를 올리기 전에 얼굴과 차량번호 정보를 모두 흐리게 만들도록 강제했다. 스위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영상 기록의 획득으로 인한 대중의 이익과 피고측의 상업적 이익은 결코 개개인의 초상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없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과 같은 국가들 또한 구글 스트리트뷰 차량이 개인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와이파이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프라이버시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프랑스의 컴퓨터와 시민권 위원회는 구글이 스트리트뷰 차량을 통해 사람들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몰래 수집한 것에 대해 프라이버시법 위반을 인정하고 십만 유로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위원회는 벌금형 선고 배경에 대해 *'구글이 얻은 경제적 이익 뿐 아니라 밝혀진 위법행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벌금이 부과된 후, CNIL은 구글이 조사 기간 중에 보인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CNIL의 얀 파도바 사무총장은 *"구글이 우리에게 늘 협조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우리가 요구한 정보-구글 차량에 탑재된 모든 기기들에 대한 소스 코드같은-를 제출하는 일에 불성실했다"*며, *"그들이 언제나 매우 투명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영국과 캐나다, 독일, 스페인을 포함한 몇몇 다른 국가들 또한 유사한 조사를 진행하여 구글이 프라이버시법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했다.

(출처: BBC. 2011. France fines Google over Street View data blunder.)

소셜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들(페이스북, 마이 스페이스, 트위터, 구글 버즈 등)은 친구들과의 연락을 유지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이동통신능력을 구축하는 데에 용이하도록 만들어진 포럼이다. 이러한 사이트들이 정보교환에 유용한 도구인 반면에 동시에 이런 사이트들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많은 사용자들의 세세한 개인정보가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넓게까지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서비스 제공자들은 회원가입에 제한을 둠으로써 사용자정보 접근성에 제약을 두고 있다. 많은 웹 사이트들이 약관에 나이 제한을 둔다(예를 들면 Friendster는 16세 이상, 페이스북과 마이스페이스는 13살 이상만 가입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여전히 정보의 교환을 허용한 그룹 내에서 디지털 정보는 쉽게 복사 유통될 수 있다. 게다가 웹 사이트들은 **광고 목적으로 회원 정보를 제 3자와 주기적으로 공유**한다.

(출처: BBC. 2008. Facebook 'violates pri\-vacy laws'.; EPIC, Social Networking Privacy, http://epic.org/privacy/socialnet/default.html; Irish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2011. *Facebook Ireland Ltd - Report of Audit.*)

국립 DNA 데이터베이스 – 영국

지난 수년간 영국 상원 헌법특별위원회는 다양한 공적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의 도입 및 개발, 민간과 공적 영역 모두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의 증가, 국립 DNA 데이터베이스(NDNAD)의 규모의 팽창 발견했다. 지난 수십 년간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공유, 전자 통신의 감시와 전자신원확인, 그리고 공적영역에서의 CCTV 감시와 같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오늘날 이러한 기술들은 어디에나 있고, 우리 매일의 삶에 다양한 방면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게다가 감시는 개인과 정부와의 관계 뿐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 또한 강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종종 특정 그룹의 사람들을 차별하는 위협이 되기도 한다.

(출처: Peter Malanczuk. 2009. Data, Transboundary Flow, International Protection.)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에서의 자유에 관한 공동선언

2012년 6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국제기관 네 곳(유엔, OSCE, OAS, ACHPR)의 특별 조사관들은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에서의 자유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핵심원칙들을 역설했다. 예를 들어, 이 선언서는 타 소통수단들을 규제하는 데에 사용되는 접근법이 단순히 인터넷에 적용될 수 없고, 그보다는 인터넷에의 적용을 위한 접근법이 특별

히 고안될 필요가 있다고 선언했다.

(출처: OAS. 2012. Press release – Freedom of expression rapporteurs issue joint declara\–tion concerning the internet. Matthias C. Kettemann. 2012. *5 punchy principles for regulating the internet.*)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인권보호

2012년 7월, 마침내 유엔 인권위원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인권보호가 전혀 다름이 없음을 확인했다(UN Doc. A/HRC/20/L.13). 이 결의안은 인터넷의 보편성과 개방성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유엔인권선언과 ICCPR을 언급하고 있다.

3. 연혁

1966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7조
1980년 프라이버시 보호와 국제간 개인정보 유통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
1981년 개인정보처리 자동화에 관련한 개인보호에 관한 유럽평의회조약
1988년 사생활과 가족, 주거, 통신의 권리와 명예, 신용의 보호(17조)에 관한 UN 인권위원회의 일반논평 16번
1989년 UN 아동권리협약
1996년 EU 개인정보보호지침(95/46/EC)
2001년 EU 개인정보보호규정(45/2001/EC)
2002년 아동 매매와 아동 매춘, 아동 음란물과 관련한 협약 선택의정서
2002년 EU 통신프라이버시 지침(2002/58/EC)
2003–2005년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2004년 '개인정보처리 자동화에 있어 감독 당국과 국제간데이터 유통과 관련한 개인보호'에 관한 유럽평의회조약의 추가의정서

추천 활동

활동 I. 개인 정보, 공공 정보

PART I: **소개** 이 활동은 인터넷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PART II: **일반적인 정보**

활동 유형: 집단 활동

목적과 목표: 공공 정보와 개인 정보를 구분해내기,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개인 정보 사용과 공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기 등

대상그룹: 청소년과 20대 초반 성인

그룹크기: 6명 이상

소요시간: 30-60분

준비물: 수업자료 복사본 여러 부

관련기술: 사고력과 분석력

PART III: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소개:

1. 참가자들에게 개인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한다. 후에 참가자들을 2-3인의 그룹으로 나눈 후 수업자료를 작성하게 한다. 어떤 정보가 절대적으로 사적인 정보이고 어떤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지 적고 이에 대해 함께 토론한다. 이 때 논쟁거리들이 제기되어야 한다.

2. 각각의 그룹들이 자신들의 결론을 다른 이들에게 발표하고, 진행자는 하나의 공통 목록을 만든다.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그룹 안에서 다른 접근방법들에 대하여 토의하도록 한다. 마지막에는 공통 목록의 결과물에 대해 숙고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수업자료:

1. 다음의 리스트를 주의 깊게 읽는다.

나의 나이, 집 주소, 내가 집을 비우는 시간, 내 신발 사이즈, 내가 다니는 학교/일터, 나의 의료

기록(알러지, 질병 등), 나의 전화번호, 나의 취미 활동, 내 몸무게, 내가 사용하는 화장품, 내가 좋아하는 요리, 내가 즐겨보는 드라마,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름, 내 속옷 색깔, 내가 좋아하는 뮤지션, 나의 이성 친구/배우자/약혼자, 내가 믿는 종교, 욕조에 있는 내 사진, 나의 이메일 주소, 내 얼굴이 나오는 사진, 나의 월급/용돈, 반려동물의 이름, 나의 별명, 내 생일.

2. 1번의 정보들을 가지고 다음 표를 채우시오.

완전히 개인적인 정보	친구들과 공유 가능한 정보	애매한 정보	누구에게나 공개 가능한 정보

후속 활동:

개인 정보와 공공 정보의 구분에 대해 토의하고 이 둘에 대한 구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본다.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관련 권리들: 표현과 언론의 자유, 그 밖의 모든 인권들.

활동 II. 마리안느 K의 이야기

PART I: 소개

우리는 공공장소에서의 비디오 감시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 더 이상 감시 카메라를 의식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만약 모든 이들의 움직임이 경찰이나 보안 요원, 심지어 개인들에 의해 추적된다면 우리의 프라이버시권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PART II: 일반적인 정보

활동유형: 연습문제와 집단 토의

목적과 목표: 프라이버시권의 가능한 위협들에 대해서 참가자들의 민감성을 높이기, 공공장소에서의 비디오 감시에 대한 장단점 토론하기

대상그룹: 청소년과 성인

그룹크기: 10명 이상

소요시간: 30-60분

준비물: 마리안느 이야기 복사본, K 마을의 그림(복사본이나 그림), 감시 카메라 사진, 후속 연습 문제를 위한 두 가지 다른 색깔 카드

관련기술: 사고력과 분석력, 주장 펼치기

PART III: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소개:

K마을의 그림을 큰 종이에 그리거나 아래 그림을 복사하여 교실에 붙여놓아 참가자들이 다음 이야기를 크게 읽으며 볼 수 있도록 한다.

마리안느 K는 마을 중심 광장에 있는 카페에서 한 남자와 나온다. 그녀는 얼굴의 눈물을 닦는다. 그리고 자신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는 그 남자를 포옹한다. 남자는 떠나고 그가 가다가 뒤돌아보았을 때 그녀는 그에게 작별인사로 손을 흔들고 있다. 그 다음 그녀는 약국에 들어간다. 약국을 나와서 상자 몇 개를 조심스레 핸드백에 넣는다. 그런 다음 마리안느는 '변호사'라는 간판이 있는 건물로 들어간다. 얼마동안의 시간이 흐른 후 그녀가 건물을 나왔을 때, 그녀는 폴더 하나를 들고 마을 교회로 간다. 또다시 시간이 얼마간 지나고 목사의 사무실을 떠나 공동묘지 쪽으로 걸어간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카페 옆 슈퍼마켓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고 적포도주와 백포도주 두 병씩을 손에 들고 있다.

청중들에게 마리안느의 동선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몇 분 준다. 그들에게 그녀의 행동들에 대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 짐작해보도록 한다. 그런 다음 자신들의 생각을 전체 그룹 안에서 교환하게 하고 칠판에 추정되는 사항들을 적는다.

전체 이야기를 크게 읽으며 모임을 마무리 짓는다.

마리안느 K는 남편 마틴, 두 아이들 메리, 마커스와 함께 K 마을에 살고 있다. 그녀는 인생 대부분을 그 마을에서 살았고 그 마을에서 학교를 다녔으며, 몇몇 친척들도 역시 같은 마을에 살고 있다. 그녀의 남편 마틴은 L 도시에서 자랐다. 그는 국제적 회사의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서 매일 I 도시와 K 마을을 통근하고 있다. 최근 그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해외 출장으로 보내야만 했고, 거기에 더해 주말에는 회사 직원들과 수습직원들을 교육하기 위해 세미나에 참가해야 한다. 그 결

과 그는 아내와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데 마리안느는 이것에 대해 매우 불행하게 여기고 있다. 게다가 그녀는 자녀양육을 비롯해, 얼마 전 아버지와 사별한 어머니를 돌보느라 수년간의 시간을 보낸 후, 다시 일자리를 찾기 위해 꽤 오랜 시간 애써오고 있다. 마리안느는 사회 복지사인데 K 마을이나 이웃 마을들에서는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불합격 통지서 몇 장을 더 받은 후 마리안느는 그녀의 동창이자 친한 친구를 마을 카페에서 만난다. 그들은 그녀의 고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그녀는 감정에 북받친다. 친구가 떠나야 했을 때 그들은 카페를 함께 나섰고 마리안느는 얼굴의 눈물을 닦는다. 그들은 작별 포옹을 나누고 그 친구는 마리안느를 위로해주기 위해 결국 다 잘될 거라고 그녀에게 말한다. 그가 떠날 때 마리안느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가 뒤돌아보았을 때 그녀는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다.

그 다음 그녀는 어머니를 위한 약을 처방받기 위해 약국으로 간다. 약국을 나와서 핸드백에 약 상자들을 넣은 다음,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마틴 앞으로 나올 유산에 대해 상담한다. 그 곳에서 나온 그녀에겐 마틴의 법률 정보가 담긴 파일이 들려 있다. 마을 교회로 간 그녀는 자신의 딸 메리를 첫 성찬식 수업에 등록시킨다. 목사 사무실을 떠난 후, 그녀는 아버지의 무덤을 살피기 위해 공동묘지로 발길을 향한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카페 옆 슈퍼마켓에 가서 친구들과의 저녁식사를 위한 적포도주와 백포도주 몇 병을 산다.

이제 일어서서 마을 그림의 중심 광장 위치에 감시 카메라 사진들을 핀으로 고정한 후 마지막 문장을 읽는다.

마을 광장 가운데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마리안느가 마지막으로 신경 썼던 것이 참 오래전 일이다...

청중들에게 그들이 마리안느의 행동을 해석해서 유추해낸 가정들을 가리켜 보인다. K 마을의 주민들은 마리안느의 상황에 대해서 모두 너무 잘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모니터 앞에 있던 경찰관은 무슨 생각을 할까? 마리안느의 행동에 대한 해석과 추측들이 그녀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 가

능성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떤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을까?

후속 활동:

그룹 안에서 공공장소의 감시 카메라가 갖고 있는 장단점을 열거해보고 논의해보자. 참가자들을 3명에서 5명 규모의 그룹으로 나눈 다음 각 그룹에게 다른 색깔 카드를 한 세트씩 준다(예를 들어, 장점들에는 녹색, 단점들에는 빨간색 카드). 15분의 시간동안 감시 카메라의 찬반에 대해 논쟁하게 하고, 그룹 안에서 찬반에 대한 의견일치를 본다.

그런 다음 참가자들을 다시 전체 그룹으로 모은 후, 그들이 갖고 있는 카드를 분류하여 칠판이나 벽에 붙이고 논쟁점들에 대해 토론하게 한다. 필요하다면, 다음의 논점들을 덧붙여 참가자들의 결론들을 보완할 수 있다.

- 찬성: 상습 경범죄발생지역을 없애기 위해, 범죄를 좀 더 쉽게 해결하기 위해, 예비 범죄자를 경고하기 위해, 공공 안전의 위협요소를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경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람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사건의 재구성을 가능케 하기 위해, 범죄자 신원 파악을 위해, 등등
- 반대: 무죄추정원칙의 점진적인 손상, 사회의 체계적 둔감화, 관찰자 효과로 인한 다양성 상실이 만들어내는 몰개성의 사회, 감시 국가로의 몰락, 사람들의 불안감 강화, 고비용, 불충분한 모니터링과 감독, 등등

관련 권리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법치주의

(출처: Translated and adapted from: Stephanie Deutinger, Lina Dornhofer. 2012. *!?!... is watching you. Menschenrechte und Überwachung.*)

참고자료

3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f Data Protection and Privacy Commissioners. 2009. *Standards on Privacy and Personal Data.* Available at: www.privacyconference2009.org /dpas_space/Resolucion/index-iden-idphp.php

BBC. 2011. *France fines Google over Street View data blunder.* Available at:

www.bbc.co.uk/news/technology－12809076

BBC. 2008. *Facebook 'violates privacy laws'.* Available at: http://news.bbc.co.uk/2/hi/7428833.stm

CBCNews. 2010. *Montreal man on watch list rallies supporters.* Available at: www.cbc.ca/news/canada/montreal/story/2010/12/12/montreal－abdelrazik－march.html

Council of Europe. 2012. *Recommendation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with regard to search engines, Recommendation CM/Rec(2012)3.* Available at: https://wcd.coe.int/ViewDoc.jsp?Ref=CM/Rec(2012)3&Language=lanEnglish&Ver=original&BackColorInternet=C3C3C3&BackColorIntranet=EDB021&BackColorLogged=F5D383

Deutinger, Stephanie and Lina Dornhofer. 2012. *!?!... is watching you. Menschenrechte und Überwachung.* Available at: www.etc－graz.at/typo3/index.php?id=1064

European Commission. 2012.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COM(2012) 11 final.* Available at: http://ec.europa.eu/jus\－tice/data－protection/document/review2012/com_2012_11_en.pdf

Irish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2011. *Facebook Ireland Ltd - Report of Audit.* Available at: http://europe－v－facebook.org/Face\－book _Ireland_Audit_Report_Final.pdf

Irish Data Protection Comissioner. 2009. *Case Study 1: Disclosure of personal data due to inappropriate security measures.* Available at: www.dataprotection.ie/viewdoc.asp?DocID=1068#1

Kettemann, Matthias C. 2012. *5 punchy principles for regulating the internet.* Available at: http://internationallawandtheinternet.blogspot.co.at/2012/07/5－punchy－principles－for－regulating.html?spref=fb

Malanczuk, Peter. 2009. *Data, Transboundary Flow, International Protection.* In:

Max Planck Encyclopa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Available at: www.mpepil.com/subscriber_article?script=yes&id=/epil/entries/law-9780199231690-e771&recno=125&searchType=Advanced&subject=Human+rights

Nowak, Manfred. 2005. *CCPR Commentary, Art. 17 CCPR*. Kehl: N.P. Engel Verlag.

OAS. 2012. *Press release - Freedom of expression rapporteurs issue joint declaration concerning the internet.* Available at: www.oas.org/en/iachr/expression/showarticle.asp?artID=848&lID=1

Sepulveda, Magdalena, Theo van Banning, Gudrun D. Gudmundsdottir, Christine Chamoun and Willem J.M. van Genugten. 2009. *Human Rights References Handbook*. Ciudad Colon: University for Peac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1988. *General Comment No. 16: The right to respect privacy, family, home and correspondence, and protection of honour and reputation (Art. 17).* Available at: www.unhchr.ch/tbs/doc.nsf/0/23378a8724595410c12563ed004aeecd?Opendocument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2007. *Human Rights, Terrorism and Counter-terrorism.* Available at: 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Factsheet32EN.pdf

United Nations. 2009.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ile countering terrorism*, Martin Scheinin, No. A/HRC/13/37/2009

Van Lieshout, Tessa. 2006. *The United Nations and the fight against terrorism.* Nijmegen: Wolf Legal Publishers.

추가정보원

Council of Europe: www.coe.int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re (EPIC): http://epic.org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re (EPIC), Investigations of Google Street

View: http://epic.org/privacy/streetview/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re (EPIC), Social Networking Privacy: http://epic.org/privacy/socialnet/default.html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ttp://echr.coe.int/echr/

Max Planck Encyclopa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www.mpepil.com

OECD: www.oecd.org/

Privacy International (PI): www.privacyinternational.org

Privacy.Org: http://privacy.org/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www.ohchr.org/english/bodies/crc

UN Human Rights Committee: www2.ohchr.org/english/bodies/hrc/index.htm

UN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267 (1999) concerning Al-Qaida and the Taliban and Associated Individuals and Entities: www.un.org/sc/committees/1267

UN Security Council Counter Terrorism Committee: www.un.org/en/sc/ctc/rights.html

US Courts Statistics 2011: www.uscourts.gov/uscourts/Statistics /WiretapReports /2011/Table6.pdf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THE MEDIA

권리의 실질적 요소

합법적·비합법적 규제

혐오 및 폭력 옹호의 금지

민주주의와 사회에 대한 중요성

정보사회에서의 인권

>> 모든 사람에게는 의사와 표현의 자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를 포함함과 동시에,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와 이념을 추구하고 획득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세계인권선언. 제19조. 1948.

사례

스리랑카 : Manorani Saravanamuttu 박사는 1990년 2월 스리랑카에서 납치·살해된 언론인 Richard de Zoysa의 어머니다. 박사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 운동을 했다. 그녀는 당국이 살인사건을 조사하도록 하기 위해 정보를 제출했다. 그러나 그녀에게 편지 한 통만이 돌아왔을 뿐이었다. 편지 내용은 "귀하의 아들의 죽음에 애도를 표합니다. 귀하의 어머니로서의 행동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추가적 조치를 취할 경우, 이는 귀하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초래할 뿐입니다. … 침묵만이 귀하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출처: Jan Bauer. 1996. Only Silence Will Protect You, Wome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Language of Human Rights.>

이집트 : 국경없는 기자회는 선거 전초전 중 이집트에서 언론의 자유 실태 악화가 가속화되는 점을 비난했다. 군부최고위원회는 블로거이자 활동가인 Alaa Abdel Fattáh 씨에 대해 공판 전 구속기간의 15일 연장을 명령했다.

<출처: Reporters without Borders. 2011. International Community urged to React as Situation of Free Expression Worsens in Egypt.>

크로아티아 : 동남부 유럽언론기구의 정보에 따르면 2011년 12월 14일 크로아티아 주간지 'Federal Tribune'의 편집장 Drago Hedl 씨가 크로아티아 대통령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한 공로로 상을 받은 다음날 또 다른 살해협박을 받았다. 그는 이미 과거부터 이런 살해위협을 받아왔었다. 다른 무엇보다도 'Federal Tribune'에서 발행한 1991년 오시예크에서의 세르비아 민간인 고문과 학살에 관한 그의 글 때문이다.

<출처: SEEMO. 2011. SEEMO Condemns New Death Threats against Coratian Journalist Drago Hedl>.

토론할 거리

1. 앞선 이야기에서 누구에 의해 어떤 인권이 침해되었는가?
2.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3. 이런 자유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할 조치는 무엇인가?
4.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5. 책임 있는 언론인의 의무란 무엇인가?

"우리에겐 위난, 위기, 위험 상황에서
우리의 펜을 혀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자연권이 있다."

볼테르. 1764. Liberty of the Press.

알아야 하는 내용 ☺!?

1. 과거와 현재의 연관성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이념을 추구하고, 획득하고, 전달하는 자유(세계인권선언 제19조. 1948)를 포함하여 의사·표현의 자유는 모든 개별적 인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시민적·정치적 권리 중 하나다. 18, 19세기에 있었던 개인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 그 뿌리가 있다.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출판의 자유를 두고 "정부의 부패와 폭정에 대항할 안전장치 중 하나"라고 했다(존 스튜어트 밀. 1859. On Liberty.). 이 권리는 또한 시민권자 뿐 아니라 모든 이가 정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민주적 체제를 위한 헌법적 권리이기도 하다. 1941년 2월 루즈벨트 대통령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래 사회가 그 기반으로 삼아야 할 4가지 자유권을 발표했는데, 표현·언론의 자유는 그 중 하나였다. 국경을 초월한 정보 접근권과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은 **다원적·개방적** 사회의 중요한 요소다.

인간안보, 표현 및 언론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란 개인의 생각을 표현할 자유와 언론의 자유 또한 포괄한다. 인간안보라는 개념은 또한 권력층에 위협적인 정보 및 생각을 포함하여 어떠한 종류의 정보나 생각이라도 추구하고 획득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언론인에 대한 위협과 언론 통제는 인간안보에 대한 위협요소가 된다. 인간안보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자 새로운 기회가 "신기술"과 함께 등장하고 있다. 새로운 "연결"은 교육적 목적을 위해 이용될 수도 있으나 조직화된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다. 지뢰반대 혹은 환경문제에 관한 국제적 움직임이 더 쉬워졌으나 동시에 "사이버 범죄"라는 형태의 새로운 위험이 나타났다. 경제와 업무가 새로운 기술에 더욱 더 의존할수록 새로운 형태의 통합과 배제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비엔나에 기반을 둔 동남부 유럽언론기구(South-East Europe Media Organization, SEEMO)는 세르비아 텔레콤이 언론과 사람들이 개인 인터넷 사업자 대신 자사를 이용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인터넷 전용선에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

다.

어떤 분쟁이라도 “바로 거실로” 끌고 들어오는 “CNN 요인”은 언론매체의 역할에 변화를 주었다. 이라크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론의 중요성으로 인해 언론은 전쟁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정보전”과 “교양 오락프로그램”은 정보가 다른 목적–특히 정치적, 경제적 목적–에 종속되는 흐름을 잘 보여준다.

“자유로운 언론 없이 안보란 없다."

Dunja Mijatovic, OSCE 언론자유 대표. 2011.

오래된 그리고 새로운 도전과제

정보, 표현, 언론의 자유는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국민들이 외국 신문과 잡지 또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신문과 잡지에 대한 접근권이 없었던 **냉전시대**에 그 특별한 중요성이 증명되었다. 오늘날 특정 국가들은 본인들의 판단에 바람직하지 않은 웹사이트에 대한 자국민의 접속을 막기 위해 유성 TV나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몇몇 국가들은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과 같은 유명한 인터넷 서비스를 검열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인터넷 회사들은 낮은 수준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에서 영업하기 위해 자체검열을 시행한다.

언론매체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고 표현의 자유의 침해자가 될 수도 있다. 언론은 국제적 문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반면 언론은 특정 경제적 혹은 다른 이해관계를 위한 국가의 선전도구가 될 수도 있다. 유네스코 문화개발위원회에 따르면 현대 통신기술은 정보흐름에 대한 통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대 통신기술의 특성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도 했으나, 언론이 공격이나 정치적 통제의 대상이 될 경우에 **새로운 위협**이 되기도 한다. 한편, 상업화는 미디어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질이 저해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상업화로 인해, 미디어는 더 폭넓은 시청층을 확보하거나 독자나 시청자 사이에서 더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 성적인 내용과 범죄 이야기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다.

?! 국제적, 지역적 수준 모두에서 발생하고 있는 **언론집중화현상**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주요한 위협이 된다. 때문에 유럽연합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는 언론매체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언론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 다수 존재한다. 위성통신 또는 인터넷 접근성 확대와 같은 **기술발전**은 정보

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위협을 낳았다. 국가가 국가정책이나 종교적, 도덕적 기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영상이나 내용물 때문에 뉴미디어에 대한 접근을 규제하는 일은 빈번히 발생한다. 인종차별적, 외국인 혐오적 선전물 또는 아동음란물을 유포하는 사이트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우려가 항상 부당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합법적 규제 사이의 깨지기 쉬운 균형이 지켜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인터넷의 국경초월적 특성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주로 국제적 수준에서 찾을 수 있다. 2001년 **사이버범죄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을 통해, EU는 이미 아동음란물에 대해 비난하면서,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범죄형량을 증가시키고 국제적 수사공조를 강화시키려 시도한 바 있다. **컴퓨터 체계를 통해 행해진 인종차별적 및 외국인 혐오적 성질에 관한 법률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 on Acts of Racist and Xenophobic Nature Committed through Computer System)도 2003년 채택되었다. 비유럽국가들의 가입이 가능해지자, 캐나다,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등의 국가에서도 사이버범죄협약을 비준했다. 2012년 1월부로 32개국이 사이버범죄협약을 비준했고, 20개국이 추가의정서를 비준했다.

2003년 제네바와 2005년 튀니지에서의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f the Information Society, WSIS)에서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또 다른 문제가 다루어졌다. "디지털 시대"라고 불리는 통신 기술 시대에서의 통합과 배제가 바로 그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정보기반 시설에 대한 접근성 문제로부터 본질적인 영향을 받는다. (☞ 알아두면 좋은 내용) 어떻게 하면 "정보격차"라고 불리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디지털 격차 및 지식 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행동계획이 중요한 목표였다.

인터넷에 대한 접근권 제한은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귀결된다. 왜냐하면 오늘날 인터넷은 정보와 사유에 접근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데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는 기술지향적 접근법과 가치·인권지향적 접근법 간에 근본적 갈등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최종문서에는 인권과 관련된 언급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 국제기구, NGO, 학계 등의 다중의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인터넷거버넌스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FG)은 2006년부터 인권을 중요한 교차횡단적 이슈로 묘사했다. 소위 "역동적 연합체"–인터넷 권리와 표현의 자유 원칙에 관한 연합체와 같은–내에서, 인터넷을 위한 인권규범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 중요 결과물로는 "인권 및 인터넷 원칙 헌장(Charter on Human Rights and Principles for the Internet)"이나 "10가지 인터넷 권리와 원칙(10 Internet Rights and Principles)" 등이 있다(www.internetrightsandprinciples.org 참고). 중요 원칙 중 하나는 오프라인에서 적용되는 인권은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하여

2008년부터 인터넷거버넌스에 대한 유럽대화(European Dialogue on Internet Governance, EuroDIG)와 다른 지역적, 국가적 대화들이 생겼다. 이런 대화들은 인권과 인터넷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준다.

2. 콘텐츠와 위협

표현의 자유는 정보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의 몇 가지 요소들을 포함하는 기본적인 권리의 틀이다. 표현의 자유는 의사의 자유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적인 생각의 표현의 자유부터 언론의 제도적 자유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사상의 자유가 절대적인 시민권임에 비해 표현의 자유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로서 특정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이중적 특성을 가진 권리다. 정보를 전달할 자유(ex. 모든 종류의 의견과 사상을 표현할 자유)와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획득할 자유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자유는 구두, 서면, 활자, 예술, 미디어 등 어느 형태를 통해서든 이루어지고 있다. 국경의 개념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소통할 권리"의 필요불가결한 부분인 것이다. 그러나 사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작성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선언문 초안은 현재까지는 보편적인 기반이 되지 못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의 핵심적 요소

- 구두, 서면, 활자, 예술의 형태로,
- 모든 매체를 통해(언론의 자유),
- 국경과 무관하게(국제 통신의 자유),
- 간섭 없이 의견을 지닐 자유(사상의 자유)와
- 정보와 이념을 추구하고 획득하고 전달할 수 있는 자유(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출처: 세계인권선언 제19조, 자유권규약 제19조, 유럽인권협약 제 10조, 미주인권선언 제4조, 미주인권협약 제13조, 아프리카 인권헌장 제9조, 유럽기본권헌장 제11조)

표현의 자유의 특정 **요소**들은 **다른 인권과도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세계인권선언 제18조) ☞종교의 자유
-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즉, 저작권. (사회권규약 제15조 제2항)
- 교육권과 관련하여(사회권규약 제15조 제2항), 표현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와 그러한 자유를 지키기 위한 독립적인 고등교육기관의 자율성을 포함한다.

☞ 교육권

자유권규약 제20조에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중요한 자격요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항은 **전쟁 선전**과 차별, 적의 혹은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국가적, 인종적, 종교적 혐오**에 대한 옹호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국가는 이러한 금지 조항을 국내법으로 강제할 의무가 있다.

☞ 차별금지

?! 권리침해, 위협과 위험

여러 NGO의 연례보고서에서 확인되듯, 우리는 현실에서도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표현의 자유 규제로 인한 기본적 인권 침해를 목격할 수 있다. 국경없는기자회에서 보도하길 2011년에 언론인 66명이 살해되었고(이는 2010년에 비해 16% 증가한 수치이다) 1,644명이 구속되었으며 1,959명은 물리적 공격을 당했거나 협박 받았고 499건의 언론검열이 있었다. 블로거 및 누리꾼 199명은 구속되고 62명은 물리적 공격을 당했으며 5명은 살해됐고 58개국이 인터넷을 검열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국경 없는 기자회'는 특별한 법적 도구를 제안했다. 그 예로 "교전지역 및 위험지역 내 취재원의 안전에 관한 헌장(Charter for the Safety of journalists Working in War zones or Dangerous Areas)"이 있다. 2001년 후반 국경없는기자회는 교전지역에서 언론인을 보호하는 내용의 결의안 1738호를 통과시키게끔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UN 회원국에게 언론인을 보호하고 권리침해 사건을 수사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결의안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다만, 이사회가 2011년 리비아 사태와 관련한 결의안 전부에서 언론관계자를 보호하는 일이 중요함을 언급한 사실은 긍정적이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선언된 *"테러와의 전쟁"*은 각 정부가 정보의 자유에 관한 새로운 위협을 만들어내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 일례로 작가연합인 PEN은 미국 애국자법(US PATRIOT Act)을 이런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국제헬싱키연맹(International Helsinki Federation)의 출판물 "발칸지역에서의 증오발언(Hate Speech in Balkans)"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혐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일에 악용될 수 있다.

국가검열, 경제적 수단 및 기타 수단을 통한 검열 등 여러 형태의 **검열**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는 1989년에 냉전이 종식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행된 대로 당국의 승인을 거친 후에서라야만 기사를 발행할 수 있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경제적 이익으로 인해 특정 의견의 출판이 저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군수산업은 전쟁에 비판적 태도를 지닌 출판물을 금지할 것이다. 이러한 검열은 편집자나 언론인이 정치적 혹은 다른 이익을 고려하기 시작하면 자기검열이라는 형태로도 이뤄질 수 있다. 종국에는, 어떤 것이 기사감이고 "보도하기

적합한지"에 대한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사료되는 혹은 소수의견으로 여겨지는 정보나 상업적으로 큰 가치가 없는 기사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무엇을 출판할지, 그리고 어떻게 출판할지에 대한 결정은 논쟁적이다. 이 때, **실천규약**이 방향을 정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혹은 다양한 시각을 드러내기 위한 언론다원주의의 목적을 상기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적법한 권리 규제

책임 없는 자유란 없다. 무제한적 자유가 프라이버시권 같은 다른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프라이버시권). 그러나 정부의 규제는 여론과 사법기구(최후의 수단)가 면밀히 검토한 합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정당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세계인권선언 제29조에 따르면 권리와 자유의 행사는 법률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특히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자유권규약 제19조 제3항은 열거된 권리들이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수반함을 상기시킨다. 이런 사실에 비춰볼 때,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절대적 권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무와 책임이 규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직업윤리 혹은 국내법에서는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윤리나 법률도 인권의 본질은 침해할 수 없다. 대표적인 의무와 책임으로는 객관적 사실의 의무, 진실 되게 보도할 의무, 최소한의 다른 의견을 허용할 의무 등이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제한적 수의 **합법적 규제**가 존재하지만 사상의 자유에 관해서는 **합법적 규제란 없다. 자유권규약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3가지 종류의 규제가 가능하다. 단,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 타인의 권리 또는 평판의 존중
-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의 보호
-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규제는 합법적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 법률은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하며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법률해석 규칙에 따라서 권리제한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주요권리는 손상되어서는 안 되고, 규제의 정도는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언급된 공익을 지키기 위한 필요최소한이어야 한다.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제10조 제2항에서는 가능한 규제 항목 목록이 더 길기는 하지만 규제 사항들이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협약에서 명시하기를 표현의 자유 행사는 "…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법률에 의해 규정된 조건, 제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한 규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정당화 될 수 있다.

- 국가안보, 영토의 보전, 공공안전 상의 이익
- 혼란이나 범죄 예방, 공중보건과 도덕의 보호
- 타인의 명예나 권리 보호
- 극비리에 전달받은 정보의 폭로
- 사법부의 공정함과 권위를 유지하는 목적

다른 권리는 이런 긴 예외 항목들의 목록이 없다. 하지만 권리규제를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규제는 반드시,

-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 민주주의 사회에 필요해야 한다.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것"이라는 말은 규제가 정부의 행정적 처분이 아니라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특별히 중요한 요건은 바로 "민주주의 사회에 필요할 것"이라는 요건이다. 이는 표현·언론의 자유와 민주적 방식에 의해 운영되는 개방적이고 다원주의적인 사회를 연결해주는 요소다.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이 조건에 대해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해 왔는데, 이는 Lingens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1986년 재판소는 정치인이라면 일반인보다 더 높은 수위의 비판도 용인할 수 있어야 하고, 본인의 명예를 이유로 언론인에게 침묵을 요구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므로 공인을 비방한 언론인에 대한 수사를 허용하는 **명예훼손법** 역시 출판의 자유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1965년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제4조**에 따라, 협약당사국은 인종차별적 관념의 보급 혹은 인종주의자의 활동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일을 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선언하였다. 협약당사국은 또한 인종차별을 촉진하고 고무하는 조직과 선전활동을 금지하며 이를 불법으로 선언하였다. 2012년 1월부로 협약은 총 175개의 체약국을 가지고 있다. 인종차별적 생각의 확산과 인종차별적 활동의

2008년 유럽연합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형사처벌을 통한 인종차별주의 및 외국인 혐오주의의 특정 형태 및 표현 근절을 위한 결의**(Framework Decision on combating racism and xenophobia by means of criminal law)를 채택했다. 따라서 EU 내에서는 심각한 정도의 인종차별적, 외국인 혐오적 행동이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권고적인 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차별금지

3. 이행과 모니터링

표현의 자유와 이 자유를 구성하는 권리를 이행하기 위한 여러 도구와 절차가 마련되었다. 우선 국가는 의무적으로 국내법에 이러한 자유들을 포함시키고 제기된 침해사건에 대해 법률적 구제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사실은 이러한 권리는 대부분의 헌법 기본권 항목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은 보편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수준에서의 국제 의무에서 도출 될 수 있다.
다양한 **언론법, 통신법** 및 규제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국제법적 의무와 국내의 합법적 법률에 부합하는 한에서 권리와 그에 대한 제한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법률에 의해 언론과 전자매체를 규제 혹은 자율통제하기 위한 **국가감시기구**가 설치되기도 한다. 보도심의회나 미디어위원회 등이 그 예인데, 이러한 위원회는 종종 관련 전문가나 시민사회 대표로 구성된다. 국가는 언론영역을 규제하고 질적 기준을 보장하고 경쟁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 하에 **허가증**을 발급하기도 한다. 물론, 이 허가증은 비차별적 근거를 바탕으로 취득 가능해야 한다.
일부 통제, 감시 메커니즘의 목적은 국가의 이행 준수 감시의 과제로 직결된다. 예를 들면, 자유권규약에 협약당사국은 일정 주기(5년)마다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 당사국의 의무이행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의무는 2011년 일반논평 제34호로 대체된 1983년의 일반논평 제10호 제19조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또한 각 국이 1966년의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했다면 위원회는 개인청원 등을 접수할 수 있다. 2012년 1월부로 총 114개의 체약국이 있다.

미주, 아프리카 내 체제 같은 **지역 감시 메커니즘**은 결정과 권고를 공포할 수 있는 위원회에 개인청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아프리카, 미주, 유럽에서는 법정이 국가를 강제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거나 보상금을 수여할 수도 있다. 이런 모든 절차는 국가들로부터의 청원 역시 가능케 하지만 실제로는 잘 이용되지 않는다. 미주지역(OAS)과 아프리카 지역(AU) 체제에서는 각각 1997년과 2004년에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제도를 도입했다.

보편적 차원에서 보면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같은 "헌장중심의" 절차 또한 준비되어 있다. 보고관은 매년 UN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에 세계의 표현의 자유 실태에 대해서 보고한다. 이들은 국가를 방문하고, (최종)견해, 권고 그리고 인권 요소에 대한 해설을 제출한다. 실제로 프랭크 라뤼[Frank La Rue]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2011년 자신의 연례보고서에서 인터넷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그는 국가에 의해 인터넷이 차단되고 검열되는 형식의 권리침해가 증가하는 현상을 발견했으며, 국가가 합법적 표현도 범죄화하며 사용자를 단절시키

고 자료와 사생활에 대한 적절한 보호책을 마련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보고관은 인터넷 접속을 허용해야 하는 필요성을 교육권과 같은 "다른 인권의 조력자"라는 말로써 강조했다.
☞ 프라이버시권, 교육권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의 56개 회원국은 1997년 언론자유대표 제도를 도입했다. 대표에게는 참여국의 언론분야 발전을 추적해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다원주의적 언론을 촉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는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와 책임 있는 정부체계 (수립)를 위해 결정적이다. 이 제도는 1975년 헬싱키최종의정서(Helsinki Fianl Act)에 의거해 개최된 후속회의와 전문가 회의에서 채택된 OSCE 기준과 국제법적 의무를 기초로 한다.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4가지 국제체제는 1999년부터 매년 **"2011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공동선언"**과 같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http://www.osce.org/form/78309 참고)

2001년에 유럽평의회 의원회의(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는 또한 언론자유 상임보고관을 위촉했다.

전문가 조직 및 NGO의 역할
국제기자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 국제언론인협회(International Press Institute, IPI), 국제펜클럽(P.E.N International), 국제출판협회(International Publishers Association, IPA) 등과 같은 전문직협회는 전 세계 여러 국가와 지역의 언론의 자유 상태에 대한 포괄적 정보를 수집하고 회원들을 규제로부터 보호한다. 이들은 이런 자유가 침해되는 곳에 관심을 유도하고 규제를 비난하며 긴급구제 운동이나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들은 또한 언론집중화현상, 부패, 정보의 자유 규정에 따른 국가기밀 및 투명성에 대한 특별보도를 준비한다. 이런 활동을 통해 협회는 Article 19, 국경없는기자회와 같은 언론·출판의 자유 보호에 특화된 NGO와 더불어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국제인권정책이사회(Inter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 Policy) 등과 같은 보편적 인권 관련 NGO로부터 지지를 얻는다. 더 나아가 협회는 정부 간 기구나 산하의 특별기관 즉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나 OSCE 언론자유대표와 협력하기도 한다. 국내적 차원에서는 제도권 내 감시기구, 예를 들어 독립적인 언론위원회나 보도심의회 같은 전문직 협회들과 NGO들이 인권침해 의심 사례와 비판적 언론인을 침묵시키게 할 만한 과도한 명예훼손법이나 관습을 방지하고자 활동한다. 더하여 이들은 해당 분야의 직업윤리강령의 준수를 감시한다.

4. 문화적 관점 차이

문화 차이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이행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유럽 및 다른 국가는 한 집단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증오발언과 관련해 미국과는 상이한 태도를 취한다. 유럽은 민족적, 인종적 혹은 종교적 혐오(특히 반유대주의), 나치 선전, 홀로코스트 부정, 기타 극우적 행위에 대한 옹호를 용납하지 않는다. 반면에 미국의 1차 수정 헌법은 적어도 그런 행위의 표현을 일부 허용한다. 실례로 2006년 오스트리아에서 홀로코스트 부정 혐의로 3년 형을 선고받은 영국 작가 David Irving 사건에 대해, 미국 유대인 작가들은 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비판한 적 있다. 이들에 따르면 "우리가 혐오하는 생각에 대한 자유" 역시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는 것이다.(Jeff Jacoby. The Boston Globe. 3 March 2006)
유럽인권재판소의 Jerslid 대 덴마크 정부의 사건은 이러한 미묘한 차이를 실례로 보여준다. 재판소는 인종차별적 표현을 한 젊은이와의 인터뷰를 방송한 언론인에 대한 처벌이 유럽인권보호조약[(ECHR) 제10조에 명시된 정보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지만 그 발언 당사자는 동법 동항에 의해 보호받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의 재량 원칙"에 따르면 유럽 각 국가 간 차이를 인정할 여지가 존재한다. 이는 음란물로 분류될 만한 발언, 문학 또는 영상물과 특히 관련이 있다. 품위, 미성년 보호, 유해물에 대한 문제는 국가가 결정할 사안으로 남아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보통 독립적 기관을 통해 언론에 지침을 제공한다.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긴 하지만, 침묵을 지키는 것은 위험하다"

Proverb from Mali

정치인이나 종교단체에 대한 공개비난에 대해서도 역시 서로 다른 기준이 존재한다. 예로, 누군가에게는 **예술의 자유**일 수 있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신성모독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매우 신중을 요하는 권리이다. 이들 권리는 선을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국가나 영향력 있는 인물이 그들에게 비판적인 사람들을 침묵시키려는 경향에 맞서 보호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2005년 덴마크 신문에 처음 실린 후 여러 유럽 국가에서 재발행된 예언자 마호메트에 대한 풍자만화는 이슬람 국가의 격분적 반응은 물론이고 덴마크 상품 불매운동까지 촉발한 바 있다. 이에 덴마크 정부는 사과를 해야만 했다. 이 사건은 출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종교의 자유 일부로서의 종교적 감정을 존중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 토론은 단지 국내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세계적 차원의 관련성을 얻게 되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무책임한 보도”로 인해 발생할 정치적 갈등으로부터 국가안정성을 유지한다는 근거 아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오랫동안 정당화되어 왔다. 그런데 2000년에 열린 아시아-유럽회의(ASEM)에서 아시아 정부들이 과잉 반응하여 필요이상으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집중화현상이나 언론인의 독립성 결여 등의 공통적 문제의 심각성은 지역적 차이로 인한 정도를 훨씬 넘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논쟁이 있을 경우, 독립적 사법부가 표현 및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국가의 안정성 및 정당화 되지 않은 언론 보도의 대상이 되는 한 개인의 도덕적 완결성을 위한 합법적 규제 사이를 명확히 구별할 책임을 지닌다. 일례로 보스니아 헤르체코비아의 바냐루카에서는 종전 몇 년 후에 전쟁범죄 혐의자 명단이 발표된 적 있다. 이 보도는 당국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제재 받았는데, 왜냐하면 아직 공식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들마저 개인적 복수의 대상이 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헌법적 권리 기획사업단(Constitutional Rights Project), 시민적 자유권 기구(Civil Liberties Organization), 언론권리의제(Media Rights Agenda) 대 나이지리아 정부의 사건에서, 아프리카인민인권위원회(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는 나이지리아의 군부정권의 행정명령에 의해 폐지된 신문의 사건을 다뤄야 했다. 이 명령은 반대진영을 견제하기 위한 군부정권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위원회는 “이러한 행정명령은 정부가 공중에게 알리고 싶지 않을 법한 정보를 수집할 공중의 권리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한다. 정보를 획득할 권리는 중요하다. 아프리카 인권헌장 제9조는 대상이 되는 정보 혹은 의견이 무엇이든지 그리고 한 국가의 정치적 상황이 어떻든지에 상관없이, 법적인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원회는 신문의 폐지 조치는 아프리카 인권헌장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

감비아 쿠데타 이후 언론인에 대한 통제 수단에 관해서 위원회는 “발행된 기사 혹은 제기된 질문을 이유로 언론인을 협박, 체포 또는 구금하는 것은 단지 언론인이 그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유포시킬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중의 정보권을 박탈하는 조치이다. 이러한 조치는 아프리카 인권헌장 제9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출처: 아프리카인민인권위원회. 2000. 제13차 아프리카인민인권위원회 행동보고서 1999-2000, 부록 5, 38절, 65절)

2002년 반줄(Banjul)에서 위원회는 “아프리카 표현의 자유 원칙선언(Declaration of Principles on Freedom of Expression in Africa)”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각 당국이 반송 및 전자통신 규제기구의 다양성과 독립성을 증진시키는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정보란 민주주의의 산소이다."

Article 19 – 자유로운 표현을 위한 지구촌 운동(Global Campaign for Free Expression)

"언론인은 민주주의의 수호자이다."

Maud de Boer-buquicco. 유럽평의회 부사무총장. 2002.

2004년 11월 24일 "아프리카 및 아랍 지역 내 정보사회에서의 언론의 역할과 지위(The Role and Place of the Media in the Information Society in Africa and the Arab Region)" 회의에서 채택된 마라케시 선언(Marrakesh Declaration)은 "표현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는 아프리카와 아랍 지역 내의,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정보사회 구성의 핵심에 있다."고 재확인했다.(출처: Soul Beat Africa – communication for Change. www.comminit.com/en/node/215350/print 참고)

5. 연혁

1948 세계인권선언문 제19조

1966 UN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9조

1978 유네스코 평화와 국제이해의 강화, 인권의 증진, 그리고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정책 및 전쟁선동의 억제에 대한 매스미디어의 공헌에 관한 기본원칙 선언(언론에 관한 선언)

1983 자유권규약 제19조에 대한 UN자유권조약위원회 일반논평

1993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증진과 보호에 관한 UN특별보고관

1997 OSCE 언론자유대표

1997 OAS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1999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결의안 (1999/36)

2001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협약과 추가의정서

2003 제네바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1부, 원칙과 행동계획 선언

2004 아프리카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2005 튀니지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2부, 정보사회를 위한 튀니지 합의문과 실천의제

2006 아테네 1차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

2011 (케냐) 나이로비 6차 IGF

2011 자유권규약 제19조에 관한 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일반논평 제34호

"언론은 민주주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는 수사를 받거나 고소당하거나 억압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없이
공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공적 업무 운영을 검토하는 것이다."

Kevin Boyle. 2000.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저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생각을 표현할 당신의 권리를 위해서라면 제 생명을 걸 수도 있습니다."

볼테르. 1694-1778.

알면 좋은 내용

1.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자유언론의 역할

언론다원주의는 다원적 민주주의에서 불가분의 요소이다. 사법부·행정부·입법부 외에 **제4의 권력**이라고 불리는 언론이 하는 역할의 중요성은 자유를 행사하면서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언론인과 언론사주의 각별한 관심과 책임을 요구한다. ☞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

한 사회의 자유는 출판·언론의 자유가 결정한다. 권위주의 정부나 독재정권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조치가 바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폐지하는 일이다. 전쟁이나 분쟁 이후 민주주의 사회를 복구하고 재건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용인하며, 혐오와 폭력 선동을 억제하는 다원주의적 언론체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공영미디어의 독립성과 사적 미디어의 다원성 확보를 보장할 적절한 법적 틀이 필요하다.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품위있는 기준에 따른 감시가 요구된다.

"전쟁이 발발하면 진실이 그 첫 번째 희생양이 된다."

Arthur Ponsonby, 영국 정치인, 작가, 1928.

"말(words)이 먼저 살해를 하고, 총알은 그 다음이다."

Adam Mihnik, 폴란드 작가.

2011년 UN인권이사회는 "종교와 신념을 기초로 한 개인에 대한 불관용, 고정관념, 낙인, 차별, 폭력선동 및 폭력에의 대항"을 위한 결의안 16/18에서 의사·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자유 행사가 민주주의 강화와 종교적 불관용과의 싸움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인권이사회는 이슬람혐오와 같은 종교단체를 경멸적인 편견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도 종교에 대한 명예훼손 방지 대책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시민사회와 일부 정부는 그러한 대책이 표현의 자유에 가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걱정했다. 하지만 "사상에 관한 종파와 문화를 초월한 공개토론이 종교적 불관용으로부터의 보호수단 중 최고"임을 인식했다. ☞ 종교의 자유

2. 언론과 소수자

사회적 소수자는 종종 언론에의 접근과 자신들의 언어로 언론을 접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를 맞닥뜨린다. 유럽에서는 1995년 유럽평의회의 **유럽 소수자보호 기본협약**(European Framework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Minorities) 제9조와 같은 구체적 기준이 소수민족에 속하는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 있다. 공권력은 국경을 초월하여 소수언어로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획득하며 전달할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정부는 소수민족에 속하는 개인이 언론에의 접근–당연히 용이해야 할–에 관해 차별을 받지 않게 보장해야 한다. 법적 한도 내에서 인쇄매체는 물론이고 전자언론매체 설립에 대한 이들의 권리가 방해받아서도 안 된다. OSCE의 틀 내에는 더 많은 기준이 구비되어 있다.
그렇지만 국제적 이민 흐름속에서 기원한 일명 "새로운 소수자"들에 관해서라면 상황이 종종 더 복잡해진다. 국가적 혹은 "오래된" 소수자와는 반대로 이들은 언론접근권을 확보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의 표현가능성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종종 기존 언론매체들이 이들을 외국인혐오적으로 묘사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특히 우려스럽다.

유럽평의회의 **지역어 및 소수언어를 위한 유럽헌장**(European Charter for Regional and Minority Languages) 제11조는 협약당사국이 지역 언어 혹은 소수언어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적어도 1개의 지역·소수언어로 된 TV, 라디오 채널의 설립을 장려하고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언론의 자유와 경제적 발전

언론의 자유와 경제발전 간의 연관성은 공포로부터의 자유 및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와 경제발전 사이의 연관성만큼이나 강하다. 모든 인권은 서로 상호의존적이며 불가분적이기 때문에 보편적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권의 특성은 표현·언론의 자유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으로 드러난다. 표현·언론의 자유는 경제발전, 빈곤 완화, 시민들의 기본적 사회·경제적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관한 언론 보도가 없다면, 우리는 자원의 재분배 혹은 자원에의 접근성 결여 문제나 부패를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4. 전쟁 선전과 혐오 옹호

자유권규약 제20조 제1항에 따라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한편, 동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적·인종적·종교적 **혐오 감정을 옹호하여 차별·적의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일**은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언론은 전 유고슬라비아 전쟁에서 일부 책임을 져야함이 밝혀졌다, 전쟁을 선전하고 혐오 감정과 인종청소를 부추겼기 때문이다. 밀리 콜린스 라디오 송신은 약 천 만명이 사망한 1994년 르완다 집단학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바퀴벌레를 총으로 죽이지 말라. 칼로 잘게 조각내버려라." 이 방송구호는 후투 족(Hutus)에게 투티시 족(Tutsis)과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는 후투 족을 학살하라고 요구하는 말이었다. 이 라디오 방송국은 후투 족 Habyarimana 가족 일원이 세웠는데, 그의 죽음이 대량학살 발생 이유 중 하나였다. 이 라디오의 책임은 탄자니아 아루샤에 설치된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규명되었다.

5. 모범 사례

- 유네스코는 3월 3일을 세계언론자유의 날로 지정하고 세계언론자유의 상을 시상하고 있다.
- 국경없는 기자회는 2008년 3월 12일을 세계사이버검열반대의 날로 지정하였다.
- 2012년 새로이 OSCE의 의장국이 된 아일랜드는 주요목표 중 하나로 인터넷 자유 증진을 공표하였다.
- 전쟁범죄기획사업단(Crimes of War Project)은 언론인, 법률가, 학자를 모아 언론, 정부, 인권·인도주의 NGO 내에서 전쟁범죄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자 했다.
- 코소보의 경우 독립적 언론위원회(Independent Media commission, IMC)와 보도심의회가 설립되어 언론관련 규정과 법률에 담긴 기준의 이행을 감시했다.
- 국제PEN클럽은 1999년 "망명작가네트워크(Writers in Exile Network)"을 도입해 협력 도시들의 도움과 함께 추방된 작가와 언론인에게 임시 피난처를 제공했다. 예를 들어, 튀니지 작가 Sihem Bensedrine은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그녀가 고향에 귀국할 수 있을 때까지 가자와 바르셀로나에서 머물도록 초청받았다.
- 예멘의 언론인이자 인권운동가 Tawakkol Karman은 2011년 최연소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되었다. 그녀는 아랍의 봄 당시 예멘에서 "사슬없는 여성언론인(Women's Journalists without Chains) 단체를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 SEEMO는 2000년에 설립된 지역언론네트워크이다. 이 네트워크의 주요 활동은 유럽 서남부의 언론인과 매스컴을 보호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SEEMO는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국가로 사절단을 보내 정부 관료, 외교관, NGO와 면담하도록 한다. 또한 SEEMO는 법적 소송에 법률대리인과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연합 의장직을 맡게 된 헝가리에 새로운 언

론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르면, 외국 언론은 새로운 등록요건을 통해 엄격히 통제를 받으며, 새로이 설립된 보도심의회는 언론사에 "편파적 보도"에 대한 벌금부여권을 지니게 된다. 위원회는 외국 언론에 대한 통제가능성과 보도심의회의 독립성에 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헝가리 정부는 이 법률 중 오직 일부만 수정하기로 동의했다. 하지만 2011년 12월 헝가리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이유로 해당 법률 일부를 보류시켰다.

- 어린이를 위한 인터넷 안전 증진을 위해서는, EU는 유럽연합네트워크 "ins@fe"를 지원한다. 이 네트워크 온라인상 안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조정한다.

6. 언론의 자유와 인권교육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이 언론계에서 심각하게 부족하다. 많은 정치인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언론인들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 및 체제에 생소하다. 종종 이들은 인권법과 전쟁법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인권을 분쟁보도하고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종종 잘 못 간주하곤 한다.<출처: 국제인권이사회(International Council of Human Rights). 2002. Journalism, Media and the challenge of human Rights Reporting>

7. 동향

인터넷과 표현/정보의 자유

"지식사회로의 전진(Towards Knowledge Societies)"이라는 유네스코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은 지난 세월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 1995년 1천 6백만 명이던 이용자가 2004년에는 5천억 명이 되었다. 대략적으로 2007년 10억 명이었고 2011년에 2십억 3천만 명이었다. 2015년 경에는 WSIS의 목표대로, 전 세계 인구 절반이 인터넷에 연결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50억 명 이상의 인구가 인터넷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1‰도 채 못 미치는 인구만이 인터넷을 사용한다. 이는 **"정보격차"**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며 **"디지털연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소셜 미디어, 시민기자들의 성장은 기존 언론매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다양한 새로운 선택지들은 언론인과 일반 시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글을 게재하고, 그 글을 읽는 일이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블로그의 예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이제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언론기업이라도 전 세계의 대중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특정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권을 봉쇄함으로써 인터넷을 통제, 검열하고 있다. 2005년, 야후나 구글 같은 검색엔진들은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를 추적하는 일에 조력했으며, 이로 인해 NGO들의 비난을 받았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제사면위원회는

www.irrespressible.info를 통해 온라인상 억압에 항거하는 운동을 시작했다. 한편, 구글은 중국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중국 본토에서의 사업을 일부 중단했다. 구글은 또한 투명성보고서를 통해 정부로부터 받은 봉쇄나 차단 요구의 수를 발표하고 있다.

2011년판 **인터넷 상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Freedom of the Net 2011)에 따르면 콘텐츠 차단과 체제 비판자에 대한 사이버공격, 검열 등으로 인해 인터넷 자유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미국, 독일, 호주에서는 이러한 개입이 가장 적게 보고된 반면, 이란, 쿠바, 중국(PRC)에서는 그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참고: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Freedom on the Net, www.freedomhouse.org/freedomonthenet2011>

위키리크스(WikiLeaks)는 아시아, 전 소련권 지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동의 폭압적 체제를 고발함으로써 중요한 소식과 정보를 대중에게 알리는 데에 헌신하는 국제 비영리 언론단체이다. 가장 최근에는 미국 군사정보에서 얻은 기밀자료를 공개하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 단체는 스스로를 "추적 불가능한 막대한 양의 문서 유출을 위한 검열 불가능한 체계"라고 묘사하고 있다. 2009년 이 단체는 국제사면위원회로부터 영국미디어상을 수여받았다. 국가들의 일부 부정적 반응에 대해 UN인권최고대표는 이 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전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단체는 경제적 금수조치에 직면했다. <참고: 위키리크스. wikileaks.org 참고 ; UN공보실(UN News Centre). 2010. UN human rights chief voices concern at reported 'cyber war' against WikiLeaks. 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37009&Cr=leaked&Cr1>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인터넷 침해가 발생하는 **베네수엘라**의 유고 차베스(Hugo Chavez) 대통령은 2009년 공공부문에서의 인터넷은 사치품이며 과잉소비를 부추긴다고 선언했다. 그 이후, 정치적 목적에 기인한 인터넷 통제 경향이 나타났다.<참고: 글로벌정보학회감시기구(Global Information Society Watch). www.giswatch.org/>

2007년 출범한 국제운동네트워크 **"아바즈(Avaaz)"**('목소리'를 의미)는 인터넷을 통해 인권문제, 환경문제, 반부패·탈빈곤·반전을 위한 진정서에 대해 지지를 받기 위해 사람들의 관심을 동원하려 하였다. 2011년, 이 네트워크는 이미 1천만 명의 회원을 모집했고, 다수의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조직해냈다.<참조: Avaaz. www.avaaz.org>

2004년 시작한 **페이스북**은 2011년에 7억 5천만 명의 가입자를 달성했다. 페이스북은 2011년 한 비엔나의 학생의 청원으로 유럽에서의 사생활과 자료 보호정책을 변경해야만 했다.

유럽평의회는 인권을 인터넷에 적용시키기 위한 선언 및 가이드라인을 정교화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2005년의 "인권과 인터넷 선언(Declaration on Human Rights and the Internet)" 또는 2011년 12월의 "민간이 운영하는 인터넷 플랫폼과 온라인 서비스 공급업체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보호를 위한 선언(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with regard to privately operated Internet platforms and online service providers)" 등이 그 예다. 검색엔진과 소셜네트워크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도 곧 채택될 예정이다.

유럽연합 정의·기본권집행위원(European Commissioner for Justice and the Fundamental Rights)은 2011년에 열린 국제토론회에서 새로 도입되는 EU의 전반적 자료보호관련 규정이 **"잊혀질 권리"** 또한 포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는 인터넷 이용자가 더 좋은 개인정보 통제권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

정보사회에서 **지식사회**로의 전환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효용성 증가에 기초한다. 표현의 자유의 맥락에서 국가는 국민들이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적극적 의무를 가진다. 정보기술에의 접근은 지식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보기술에의 접근은 개발도상국과는 특히 관련이 있다. 2013년 WSIS는 **공동체다중매체센터(Community Multimedia Centers, CMCs)**를 통해 아직 정보기술 접근성에서 배제된 공동체의 정보격차를 좁히기 위한 계획에 착수하였다. 이 계획을 위해 채택된 방법은 정보기술에의 접근, 정보기술에 대한 학습, 신구 기술 결합 등의 과제를 연결한 것이었다. 지역 라디오시설과 공동체 통신기반시설(예를 들어 인터넷·이메일·전화기능·팩스기능·복사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을 결합한 것이다. 이 방법의 목적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신 기술을 정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전 세계의 이용가능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유네스코. 2005. Towards Knowledge>

"민주적 형태의 정부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언론이 있는 국가는
극심한 기근을 절대 겪지 않았다."

Amartya Sen.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1999.

추천 활동

활동 I : 당신은 어떤 모자를 쓰고 있는가?

PART I : 소개

이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은 책임 있는 자세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게다가, 이 활동은 모든 당사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복잡한 주제나 까다로운 진술문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뤄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PART II : 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활동유형 : 토의

목적과 목표 :

-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을 용이하게 함
- 책임 있는 태도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함

대상그룹 : 청소년, 성인

그룹크기 : 18~30명

소요시간 : 약 90분

준비사항 : 총회를 위한 원형탁자와 의자

준비물 : 6가지 다른 색의 모자(백색, 적색, 흑색, 황색, 녹색, 청색: 종이나 두꺼운 도화지로도 만들 수 있다.)

관련 기술 : 의사소통 기술, 창의적·분석적·비판적 사고력

PART III :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까다로운 진술문 : 우리는 자유국가에서 살고 있으며 모두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왜 인종차별주의 혹은 증오 발언을 검열해야만 하는가?

도우미는 토의 참가자들에게 진술문을 소개한다. 그 후, 참가자들은 "생각모자"를 통해 가능한 모든 관점에서 주장에 대해 심사숙고해 본다. 모자를 가진 사람만이 발언을 할 수 있고, 발언을 마친 참가자는 옆 참가자에게 모자를 넘긴다. 각 색깔은 서로 다른 접근법을 상징한다.

- **백색모**는 정보를 의미한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순수하게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무엇이 사실인지만을 고려한다.

- **적색모**는 감정을 의미한다. 주관적인 관점에서 (아무 정당화나 용납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적 주장이나 직관적 반응을 이야기한다.
- **흑색모**는 부정적 측면을 의미한다. 부조화, 한계, 결점을 파악하는 데에 적용되는 논리를 말한다.
- **황색모**는 긍정적 측면을 의미한다. 이익을 파악하고 조화로운 방법을 찾는 데에 적용되는 논리를 말한다.
- **녹색모**는 창의성을 의미한다. 개선과 대안을 위한 변화, 생각이 향하는 지점을 관찰한다.
- **청색모**는 사고와 활성화를 의미한다. 중재업무, 토론과 종합, 대책에 대해 말한다.

참가자는 차례차례 진술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첫 차례는 오로지 백색모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데 사용되고, 마지막은 청색모를 사용한다. 나머지 모자의 경우 크게 순서에 상관없다.

피드백 :
토론이 종료된 후에 참가자들이 본인의 감정과 생각에 대해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을 한다. 문제해결법은 새로웠는지, 비슷한 접근법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묻는다.

방법론적 힌트 :
도우미는 참가자들이 자신이 쓰고 있는 혹은 손에 든 모자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약 참가자가 황색모를 갖고 있다면 어떤 부정적 측면이나 감정도 진술해선 안 된다. 이 방법의 장점은 발언자가 주제에서 이탈해서 배회하지 않고, 참가자 각자에게 적절한 비율의 발언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방법은 쉬운 해결책이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복잡한 주제나 문제에 적합하다.
까다로운 진술문은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에 쉽게 적용된다.

관련 권리/추가적 탐구영역 : 비차별, 평등
<출처: Edward de Bono. 1990. Six Thinking Hats에서 각색>

활동 II : 인터넷의 영향

PART I : 소개
이 활동은 인터넷의 사용이 가진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의 매체에 대한 도전이 가진 함의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분석하는 전원회의 토론과 소규모 집단활동을 포함한다.

PART II : **토론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활동유형 : 토의

목적과 목표 :

– 인터넷의 함의와 전 세계적 정보접근권에 대한 인식 높이기

– 인권에 미치는 인터넷의 영향 평가

– 인터넷 관련 현상의 탐구

대상그룹: 청년 및 성인

그룹크기: 무관

소요시간: 약 45분

준비물: 플립차트, 보드마커.

관련기술: 분석기술, 주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 팀워크

PART III : **토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주제에 대한 소개 : 기초지식을 제공하면서 활동을 소개한다. 본 장에 제시된 대로 인터넷에 대한 정보를 준다. 다음으로 참가자들이 짝을 지어 인터넷에 대한 경험과 인터넷의 사용 및 비사용의 장단점을 질문하게 한다. 여기에 약 10분을 할애한다.

이후에 참가자들을 회의 시간에 불러 모아 인터넷의 장단점 등의 영향에 대해 토의하도록 요구한다. 다음 질문을 활용한다.

- 인터넷을 통한 인권침해를 알고 있는가?(예: 아동음란물, 사이버범죄)
- 왜 이러한 인권침해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가?
- 어떤 범위까지의 규칙이 있어야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가?
- 인터넷 거버넌스를 국가적 혹은 국제적 규정, 자발적 약속이나 모든 행위자에 대한 행동강령, 공동규제의 방식 중 어떤 수단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은가?

한 두 명의 참가자에게 핵심요점을 플립차트에 적도록 한다.

피드백 : 토의를 통해 참가자들은 무엇을 배웠는가? 플립차트에 쓴 메모를 보고 주제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 인터넷 사용의 장점이 단점을 압도하는가? 이러한 단점을 상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방법론적 힌트 :

활동 전에 참가자들이 인터넷에 얼마나 친숙한지를 평가하여 토의 수준과 전반적 접근법을 정하라.

PART IV : **후속활동**

참가자들이 인권단체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인터넷을 통한 인권단체의 활동과 홍보를 비교하게 권장하라. 이후 이를 통해 얻은 지식에 기반하여 참가자들이 다음의 행동을 할 수 있다.

- 가능한 인터넷 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에서 인권주제에 대한 인식 높이기
- 자신만의 웹사이트, 페이스북 계정, 블로그 혹은 이와 유사한 것을 생성하고, 이를 다른 단체와 연결시켜 공동체에서 특히 위험에 빠진 인권을 위해 투쟁하기

관련 권리 및 더욱 탐색할 영역 : 언론매체, 세계화

<출처: 유럽평의회. 2002. Compass: A Manual on Human Rights Education with young people에서 각색>

참고자료

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2000. *Thirteenth Activity Report of the 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1999–2000.* Available at: www.chr.up.ac.za/hr_docs/documents/13th_Annual_Activity_Report-_AHG.pdf.

Asia Medi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entre. 2008. *Free Markets, Free Media?* Singapore: AMIC.

Barendt, Eric. 2005. *Freedom of Speech.* 2nd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Benedek, Wolfgang and Matthias C. Kettemann. 2012.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Internet.*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Benedek, Wolfgang. 2008. *Internet Governance and Human Rights.* In: Benedek, Wolfgang, Veronika Bauer and Matthias C. Ketteman (eds.). Internet Governance and the Information

Society, Global Perspectives and European Dimensions. Utrecht: Eleven International Publishing, pp. 31-49.

Benedek, Wolfgang. 2007. *Der Schutz der Meinungsaeusserungs- und der Medienfreiheit i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In: Benedek, Wolfgang und Catrin Pekari (Hg.). Menschenrechte i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Stuttgart: Boorberg, pp. 125-146.

Bono, Edward de. 1990. *Six Thinking Hats.* London: Penguin.

Boyle, Kevin. 2000. *Restrictions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Asia-Europe Foundation (ASEF). The Third Informal ASEM Seminar on Human Rights. Singapore, pp. 27-37.

Byerly, Carolyn M. and Karen Ross. 2006. *Women and Media: A Critical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

Chrétien, Jean-Pierre et al. 1995. *Rwanda - Les Médias du Génocide.* Paris: Karthala.

Council of Europe. 2009. *Legal Instruments for Combating Racism on the Internet.*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Council of Europe. 2007. *Freedom of Expression in Europe. Case-Law concerning Article 10 of the ECHR.*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Council of Europe. 2005. *Political Debate and the Role of the Media - The Fragility of Free Speech.*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Council of Europe. 2002. *Compass: A Manual on Human Rights Education with young people.*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Cucereanu, Dragos. 2008. *Aspects of Regulating Freedom on the Internet.* Antwerpen: Intersentia.

European Union. 2008.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8/913/JHA of 28 November 2008 on combating certain forms and expressions of racism and xenophobia by means of criminal law.* Available at: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2008F0913:EN:NOT.

Fallows, James. 1997. *Breaking the News - How the Media Undermined American Democracy.* New York: Vintage.

Frau-Meigs, Divina. 2011. *Media matters in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the "information society" - Towards a human rights-based governance.*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Golash, Deirdre (ed.). 2010. *Freedom of Expression in a Diverse World.* Dordrecht/Heidelberg /London/New York: Springer.

Grabenwarter, Christoph. 2009. *Europaeische Menschenrechtskonvention.* 4. Aufl. Muenchen:

C.H. Beck, § 23.

Hammond, Philip and Edward Herman (eds.). 2000. *Degraded Capability - The Media and the Kosovo Crisis.* London: Pluto Press.

Hare, Ivan and James Weinstein (eds.). 2009. *Extreme Speech and Democra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ess.

Heyns, Christof. 2008.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the African Charter*. In: Evans, Malcolm D. and Rachel Murray. The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The System in Practice. 1986-200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ill, Michael W. 2005. *The Impact of Information on Society*. 2nd edition. London: Bowker Saur.

Inter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 Policy. 2002. *Journalism, Media and the Challenge of Human Rights Reporting.* Available at: www.protectionline.org/IMG/pdf/journalism_media.pdf.

International Freedom of Expression Exchange (IFEX). 2005. *Campaining for Freedom of Expression. A Handbook for Advocates.* Toronto. Available at: www.amarc.org/documents/manuals/IFEX_Handbook_English.pdf.

Inter-Parliamentary Union (ed.). 2006. *Freedom of Expression, Parliament and the Promotion of Tolerant Societies.* Geneva: Inter-Parliamentary Union.

Jorgensen, Rikke F. (ed.). 2006. *Human Rights in the Global Information Society.* Cambridge: MIT Press.

Kettemann, Matthias C. 2011. *Ensuring Human Rights Online: Selected Council of Europe Initiatives in the Information Society Sector in 2010.* In: Benedek, Wolfgang et. al. (eds.), European Yearbook on Human Rights 2011. Vienna, Antwerp: Neuer Wissenschaftlicher Verlag, Intersentia, pp. 461-482.

Kleinwaechter, Wolfgang (ed.). 2007. *The Power of Ideas. Internet Governance in a Global Multi-Stakeholder Environment.* Berlin: Marketing für Deutschland GmbH.

Lenkova, Mariana (ed.). 1998. *Hate Speech in the Balkans*. Athens: International Helsinki Federation.

Mansell, Robin. 2005. *The fragility of knowledge societies: ambiguity, cost reduction and access in developing countries.* In: Milward-Oliver, G. (ed.). *Maitland+20 - Fixing the Missing Link*. Bradford: The Anima Centre, pp. 83-97.

McRae, Rob. 2001. *Human Security, Connectivity, and the New Global Civil Society*. In: McRae, Rob and Don Hubert (eds.). Human Security and the New Diplomacy. Montreal: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pp. 236-249.

Mill, John Stuart. 1859. *On Liberty.*

Milo, Dario. 2008. *Defamation and Freedom of Speec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Moeller, Susan D. 1999. *Compassion Fatigue - How the Media Sell Disease, Famine, War and Death.* New York: Routledge.

Moeller, Christian and Arnaud Amouroux (eds.). 2007. *Governing the Internet - Freedom and Regulation in the OSCE Region.* Vienna: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Nowak, Manfred. 2005. *Commentary on the U.N.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2nd edition. Kehl am Rhein: N. P. Engel.

Oesterreische Juristenkommision (Hg.). 2005. *Caroline und die Folgen: Medienfreiheit am Wendepunkt.* Wien, Graz: Neuer Wissenschaftlicher Verlag.

Pritchard, David (ed.). 2000. *Holding the Media Accountable - Citizens, Ethics and the Law.*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Rantanen, Terhi. 2005. *The Media and Globalization.* London: Sage.

Reporters without Borders. 2011. *International Community Urged to React as Situation of Free Expression Worsens in Egypt.* Available at: http://en.rsf.org/egypte-international-community-urged-to-17-11-2011,41407.html.

Reporters without Borders. 2010. *2010 World Press Freedom Index.* Paris: Reporters without Borders. Available at: http://en.rstf.org/press-freedom-index-20101034.htlml.

Rothberg, Robert I. and Thomas G. Weiss. 1996. *From Massacres to Genocide - The Media, Public Policy, and Humanitarian Crises*.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Press.

SEEMO. 2011. *SEEMO Condemns New Death Threats against Croatian Journalist Drago Hedl.* Available at: www.seemo.org/activities/pressfreedom/11/press1190.html.

Spencer, Graham. 2005. *The Media and Peace. From Vietnam to the 'War on Terror'.* Basingstoke: Palgrave-Macmillan.

South African Human Rights Commission. 2000. *Faultlines - Inquiry into Racism in the Media*. Johannesburg: South African Human Rights Commission.

Todorovic, Mirjana. 2003.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to Dignity and Reputation*. In: Todorovic, M. (ed.). Culture of Human Rights. Belgrade Human Rights Centre, pp. 161-175.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2003.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formation and Education. Implementation of the Plan of Action of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995-2004.* Available at: www.unhchr.ch

/Huridocda/Huridoca.nsf/0/4a13d09cd91c4ebbc1256cd200509750/$FILE/G0310042.pdf.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2005. *UNESCO World Report. Towards Knowledge Societies*. Available online at: www.unesdoc.unesco.org /images/0014/001418/141843e.pdf.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2011.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nnual Report by Frank La Rue with a focus on the Internet and freedom of expression; UNGA Doc. A/HRC/17/27 of 26 April 2011.*

Verpeaux, Michel. 2010. *Freedom of Expression.*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Voltaire (François Marie Arouet). 1764. *Liberty of the Press*. In: Philosophical Dictionary. Reprint edition 1984. London: Penguin Classics.

Von Dohnanyi, Johannes and Christian Möller. 2003. *The Impact of Media Concentration on Professional Journalism.* Vienna: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Weber, Anne. 2009. *Manual on Hate Speech.*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White, Aidan. 2002. *Journalism, Civil Liberties and the War on Terrorism. Final Report on the Aftermath of September 11 and the Implications for Journalism and Civil Liberties*. Brussels: 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

추가정보원

Amnesty International: www.amnesty.org/

Article 19: www.article19.org

Asia Medi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entre: www.amic.org.sg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APC): www.apc.org

Crimes of War Project: www.crimesofwar.org

Communication Regulation Agency (CRA) of Bosnia-Herzegovina: www.cra.ba/eng/

Council of Europe - Media Division: www.coe.int/t/e/human_rights/media

Dynamic Coalition on Internet Rights and Principles: www.internetrightsandprinciples.org

Freedom House: Freedom of the Press 2011: http://freedomhouse.org/report/freedom-press /freedom-press-2011

Freedom House: Freedom on the Net 2011: www.freedomhouse.org/report/freedom-net /freedom-net-2011

Global Information Society Watch (GISWatch): www.giswatch.org/

Ins@fe: www.saferinternet.org

Independent Media Commission (Kosovo): www.kpm-ks.org/?gjuha=3

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 www.ifj.org

International Freedom of Expression Exchange: www.ifex.org

International Publishers Association (IPA): www.internationalpublishers.org/

Media Foundation for West Africa: www.mediafound.org/

OSCE Representative on Freedom of the Media: www.osce.org/fom

PEN International: www.pen-international.org/

Soul Beat Africa - Communication for Change: www.comminit.com/africa

South East Europe Media Organisation (SEEMO): www.seemo.org

UNESCO Advisory Group for Press Freedom: www.unesco.org/webworld/wpfd/group.html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

RIGHT TO DEMOCRACY

표현과 참여

다원주의 및 통합

인간의 존엄과 자유

» 모든 사람에게는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해 자국의 정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자국에서 동등한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 국민의 의지가 정부 권력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지는 보통 선거권과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 투표나 그에 상응하는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의해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참된 선거를 통해 표현된다. «

세계 인권 선언 제21조, 1948

사례

민주적 변혁 : 투쟁의 종결 후 혁명의 유산이 왜곡되다.

2011년의 아랍 혁명으로 아랍 세계에서의 민주적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상식이 파괴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튀니지, 이집트와 같이 이미 해방된 다른 나라들이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사회 건설에 있어 난관에 직면해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 투쟁의 종결 후 아랍의 봄의 유산이 왜곡될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이러한 도전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몰락하는 정부에서 민주화 기틀을 다져낸 다른 지역에서의 상황으로부터 용기를 얻어야 한다. 발트 국가들과 독재정부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예가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남부 코카서스의 조지아 공화국은 더 최근의 예이다. 문화와 구체적 상황이 다를 수는 있으나 이러한 성공적 전환의 사례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교훈은 변혁의 가능성에 대하여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일 것이다. 변혁은 우리가 일반적 통념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빨리 일어날 수 있다. 조지아 정부는 강건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또한 조지아의 경우에서 우리는–무엇보다도–혁명적인 순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순간은 대중의 폭넓은 상상력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가치들이 정치의 기반이 되며, 자신들 스스로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다른 이들을 과소평가하는 실책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결국 국제사회가 아랍의 봄을 전혀 예견하지 못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집트, 튀니지와 그 밖의 나라들이 (문화적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어떻게도 그러한 '봄'을 겪을 수 없다고 확신했었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또다시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많은 전문가들은 2003년 시기의 조지아에서의 혁명을 기대하지 않았다. 중대한 정치적 격변에 의해 혼란을 맞은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조지아 정부는 폐허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백지 상태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저주라기보다는 축복이었다.

북아프리카의 독재 정권과는 달리, 소련에서는 통제와 부패가 핵심이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장미 혁명 직후 조지아는 국가 지상주의 시대에 대해 분명한 종지부를 찍었다. 우리의 첫 번째 전면적 개혁–법집행 기관들의 완전한 변혁–이 특히 이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우리는 교통경찰 전체를 해고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무척 오랜 기간 동안 경찰은 부패와 공갈의 핵심에 있어 왔다. 조지아인들은 3달 동안 교통경찰 없이 생활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기간 동안의 범죄율은 70%까지 떨어졌다. 왜일까? 누군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혁명의 성과가 조지아인들 자신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한다.

부패와의 싸움은 실제 변혁이 지속되게 하는 모든 노력에 있어 밑거름이 되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개혁도 이에 기초해야 한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쉽게 다시 시민이 무력화되는 위기에 놓일 것이다. 부패는 무엇보다 이념을 초월한다.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 장악되어 관행적으로 시민들로부터 뇌물을 탈취하여 온, '독직'과의 싸움은 정부기관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조지아인들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오로지 개혁에 대한 정부 전체의, 그리고 사회 전체의 접근만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사법부, 경찰, 국세청과 세관, 정치 계급, 선거법 또는 교육 시스템은 개별적이 아닌 종합적인 사회적 정치적 변혁의 일부로 구현되어야 한다. 물론, 특히 인력과 자원이 제한된 상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는 단독으로 분리되어서는 불가능하다.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적 요구가 아무리 아름답고 감동적이라 할지라도, 실제 혁명은 그에 뒤따르는 장기간의 지난한 변혁 과정을 포함한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자신의 경험-성공과 실패-를 이제 막 스스로 자유화된 국가들과 공유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학습 경험이라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적응하고 개선하여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출처 : Temuri Yakobashvili. 2011. *Arab Spring, Act II. Analysis by Georgia's Ambassador in Washington.*)

토론할 내용

1. 1989년 이후 동유럽과 구소련연합에서의 민주주의 혁명과 2011년 아랍 혁명은 유사한가? 이 사안들은 민주주의의 거대한 역사에 단순한 한 장일 뿐인가?

2. 당신은 민주주의 투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국가를 알고 있는가?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3.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 특별히 포함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주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4. 어떻게 적극적인 시민들이 자국의 민주화 과정에 기여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제안해 봅시다.

알아야 하는 내용 ☺!?

1. 확산되고 있는 민주주의?

참여의 권리는 인권의 심장부에 있는 권리로, 인간안보 네트워크에 반영된 원칙, 비전, 가치의 기틀이다. 회원국들이 추구하고 있는 인간안보의 발전이라는, 정치적 아젠다에 있어서는 참여와 민주주의 모두가 중요하다.

민주주의는 보통 인민에 의한 통치라고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사실 매우 종합적 개념이다. 민주주의란 일종의 정부 형태를 의미하기도 하고, 국가의 사회정치적 조직 혹은 법적 조직에 강조를 둔 신념이기도 하다. 또한 민주주의를 사상으로 볼 수도 있는데, 민주주의 사상은 현실과 이론 모두에 있어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모두가 수없이 많은 서로 다른 의미를 포함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민주주의는 인권의 원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인간의 존엄에 대한 완전한 존중과 보호를 보장하지 않고는 민주주의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것이다. **참여** 및 **표현**과 별개로, 민주주의는 **통합**(하나의 공동체, 지역, 국가의 시민적 삶에 완전히 포함될 권리)에 대한 것이다.

완전히 개별적인 시민이 어떻게 이 통합될 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는 시민 자신의 재량이기는 하나, 그 권리가 부정될 수는 없다. 통합과 마찬가지로 다원주의의 개념은 민주적 통치의 핵심이다. **다원주의**는 다름에 대한 극복과 서로 다른 인간적 경험을 지닌 사람들이 법치주의 하에서 함께 존엄히 살 수 있음에 대한 인정을 의미한다. 이 때 존엄은 힘과 회복력의 근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본질적으로, 시민권을 지니고 있으며 합법적 거주를 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그 누구든 통합과 인간 존엄성이 부정될 수 없다. 이는 바로 민주주의의 척도로 기능한다.

비민주적 구조와 인권 침해 간에는 명백한 관련성이 있다. 한편 확립된 민주주의일지라도 만약 인권의 부정이 용납된다면 약해질 수 있다. 인권 침해는 특정한 부분에 대한 폭력이다. 하지만, 진정한 **통합**과 다원주의에 대한 거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인권에 대한 부정은 사회적이며 체계적인 문제이다. 예를 들어, 심지어 유엔의 인간개발지수에 있어 영속적인 리더라 할 수 있는 캐나다와 같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토착 원주민 건으로 완전한 통합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과 영향력에 있어서의 완전한 여성 통합이 계속해서 거부당하고 있다. 미국은 종종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경우라 불리는데, 이는 소수 주민과 성소수자에 대한 통합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통합과 다원주의 실현의 실패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2005년 프랑스의 대규모 소요사태[20]가 그 예이다. 현재까지 민주주의가 인권과 인간안보를 보장하기에 가장 도움이 되는 시스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다원주의와 통합 이 두 가지 도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는 민주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있어 필수적이다.

민주주의는 수혜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 정보를 지니고 지식에 접근하는 것은 민주적 시스템에 대한 의미 있는 참여의 전제조건이다. 오직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20)

기본적 이해와 민주사회의 구조와 제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그에 기여하고 그로 인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의 전달은 책임 있는 시민들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주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

다음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표로, 민주주의는 명백히 한번 달성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과 책임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민주주의 지수 2010 (체제 유형에 따른)			
	국가 수	국가 비율	세계 인구 수
온전한 민주주의	26	15.6	12.3
불안정한 민주주의	53	31.7	37.2
혼합 체제	33	19.8	14.0
권위주의 정권	55	32.9	36.5
(Sourc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0. *Democracy Index 2010.*)			

세계적인 민주화 과정	세계적 추세
1980년 이후 세계 모든 지역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중요한 단계를 수행하였다. 수많은 군사 정권이나 권위주의 체제가 민간정부로 대체되었다.	스스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모든 국가가 실제로 완전하게 민주적인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 과도기를 겪고 있는 국가, 다시 권위주의로 회귀하는 국가 또는 충돌의 상황에 있는 국가가 많다.
세계 200여 국가 중 현재 다당제 선거를 하고 있는 국가는 144개국인데, 이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것이다.	오직 26 개국만이 완전한 민주주의로 간주 될 수 있을 것이고, 53개 국가는 "불완전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약 55개의 권위주의 체제와 30개 이상의 " hybrid regimes(혼합정치체제)" 여전히 있다.
133개국의 나라, 세계 인구의 67%가 자유로운 언론 또는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언론을 누리고 있다.	63개 국가들, 세계 인구의 32%가 여전히 언론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1990년 이후 6가지 주요 인권 규약과 협약 당사국 의 수는 크게 증가했다. 사회권규약과 자유권규약 의 비준한 국가의 수는, 90개국에서 각각 160, 167개국으로 성장했다.	많은 국가는 여전히 중요한 시민적 및 정치적 자유를 제한한다. 25개국이 자유권 규약을 비준 또는 체결하지 않았고, 32개국이 ICESCR을 비준 또는 체결하지 않았다.
26개국에서 국회의원의 30% 이상이 여성이다.	전 세계적으로 국회의원의 단지 19%만이 여성이며, 한 명의 여성 국회의원조차 없는 국가는 9개국이다.
(source: Freedom house. 2011. *Freedom in the World 2011.;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0.* *Democracy Index 2010.; Inter-Parliamentary Union (IPU). 2011. Parline database on women in parliament.*)	

민주주의와 인간안보

인간안보 의제는 사람들의 정치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삶이나 생활에 만연한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달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인간안보를 보호하고 증진함에 있어 인간 개발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인권과 민주적 자유에 대한 존중이 불가결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된다.

인권의 발전, 인간 개발, 인간 안보-혁신적 세계질서를 위한 비전의 핵심에 위치한, 세 가지의 중첩된, 상호 연관된 개념-은 민주적 가치가 선포될 뿐만 아니라 실천되는 사회에서만 뿌리 내릴 수 있다.

인권에 대한 존중은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협박이나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인간 개발은 인간의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자원과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인간안보는 모두를 위한 기회가 평등한 사회, 정의와 연대의 사회에 장애가 되는 기아, 전쟁, 생태학적 재해, 부패 정부 등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한다. 결국, 국가 또는 공동체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생활에 대한 동등하고 자유로우며, 민주적인 참여만이 인간 안보를 증진시킬 수 있다. 인권, 참여적 거버넌스, 법의 지배, 지속가능한 개발, 자원에 대한 동등한 접근에 대한 충분한 보장만이, '인간 안보'가 단지 새로운 외교적 표어가 아닌 민주적 의사 결정과 국제 협력의 토대로 널리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한다.

2. 정의와 설명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민주주의란 국가권력이 민중으로부터 나오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민주주의(democracy)는 고대 그리스어의 "사람"(demos)을 의미하는 데모스와 "힘"을 의미하는 크라토스(kratos)에 기원한다. 현대 민주주의는 지역사회에서 종교적 생각뿐만 아니라 정치적 생각을 공유하고 지지하기 시작했던, 특히 스코틀랜드, 영국과 네덜란드 등지에서의 17세기 칼빈주의 종교운동으로부터 점차 발전되어 왔다. 모두를 위한 자유와 평등의 철학이 등장했고 이는 계몽주의 시기 동안 향상되었다. 이 철학은 점점 민주주의의 개념의 핵심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프랑스가 프랑스혁명에 의하여 최초로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국가였다면, 최초의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미국에 설립되었다. 1945년 이후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자유민주주의[21]가 확산

되었다. 종종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권위주의 정부를 대체하기도 하였다. 파시스트 정부의 몰락 이후, 20세기 전반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민주주의의 위기는 극복된 것처럼 보였다.

어느 정도까지, 민주주의는 탈식민화의 길고도 험난한 과정에서 강조되었다. 이 과정은 모든 민족에게 법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민족자결권에 대한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이로 인해–적어도 초기에는–탈식민국가에서 다양한 형태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립이 이루어졌다.

또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권위주의 체제는 모두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민주주의로 전환되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중앙 및 동부 유럽에서 공산주의의 붕괴로 인해 민주주의가 결국 진정한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정부 형태로 민주주의를 이론적으로 보증하는 모든 나라가 실제로 민주주의의 원칙이나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완전하게 존중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오히려 역설적인 상황은 민주주의와 민주화에 중요한 토론을 유지하는 것이 여전히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요소

한 사회가 얼마나 민주적인지를 측정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모든 민주 사회의 기초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수많은 핵심 요소가 있다.

- **평등 :** 평등의 원리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동등하고 따라서 법 앞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정치 생활에서의 균등한 기회와 참여를 누릴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 여성인권, 비차별
- **참여** : 민주주의는 참여 없이는 무의미하다. 지역사회와 정치적 문제에 대한 참여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민주주의는 참여를 요구하는데, 이 때 참여란 정치적인 의미 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보다 광대한 개념이다. 그러나 참여는 그 자체만으로는 민주주의의 존재나 지속을 확보할 수 없다.
- **다수결 원칙과 소수자의 권리** : 민주주의는 정의상으로는 '인민에 의한 통치'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사실 다수에 의한 통치이다. 이는 또한 다수에게는 소수자의 권리와 요구들을 인정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 의무의 충족 정도는 그 사회의 민주적 가치의 향상 가능성에 대한 지표이다.
  ☞ 소수자 권리, 비차별
- **법의 지배와 공정한 재판 :** 민주주의는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의 지배는, 법 앞에 평등을 보장하고, 공권력을 제한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는 국가의 자율적 법질서를 보장한다.
  ☞ 법의 지배와 공정한 재판

21)

- **인권에 대한 책무** : “모든 인간은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고 자유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제대로 기능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 토대다. 제대로 기능하는 민주주의 사회는 시민들이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인권을 존중, 보호, 충족을 보증한다.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집회, 언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와 같은 시민 참여에 중요한 인권이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럼에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자체만으로는 평화와 인간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 기본적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요구가 마찬가지로 고려될 경우에만 민주주의를 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 **정치적 다원주의** : 전통적으로, 정당은 사상과 의견의 다양성을 통합하고 공개 토론에서 그 사상들과 의견들을 대표해야 한다. 정치적 다원주의는 변화하는 요구에 적응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한 구조를 확보하는 동시에,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안정적인 토대가 될 수도 있다. 한편 정치적 자유는 혐오를 선동하거나 폭력을 자극해 민주사회와 민주질서에 위협이 되는 사상을 확산하는 데에 악용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의 일반 원칙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인 사회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민주적으로 이러한 경향을 처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 민주주의도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이는 종종 "투쟁적 민주주의" 의 원리로 지칭된다).
  ☞ 언론과 표현의 자유
-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 선거는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이고 고유한 특성으로 볼 수 있다. 그 어떠한 다른 유형의 정권도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결정을 정부 시스템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 인민들에게 맡기지 않는다. 선거를 통해, 그들은 현재의 정책에 대한 동의뿐만 아니라 정책 변화에 대한 욕구를 표현할 수 있고 지속적인 평가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정확히 참여할 권리를 누가 가져야 할지에 대한 답이 자명하지 않다는 것은 역사적 기록을 통하여 확인된다. 선거 과정에 미성년자의 참여를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없는 반면, 특정의 (심각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참여가 제한(많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한)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선거의 참여에서 제외되었다. (민주적 시스템이 매우 발달한 것으로 잘 알려진) 스위스의 아펜첼이너로덴에서조차 여성은 1990년대 초반에서야 선거권을 획득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선거권이 불합리한 제한 없이 보장되고, 자유, 평등, 비밀, 직접, 보통 선거에 입각하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 **권력 분립** : 권력 분립은 존 로크 (1690 "통치론")에 의해 도입된 이후 샤를 몽테스키외 (1748 "법의 정신")에 의해 발전된 개념으로, 원래 절대 국가의 모든 포괄 권력을 겨냥한 것이었다. 오늘날 권력 분립은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국가 권력은 입법, 행정, 사법부로 나누어져,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며, 상호간 그리고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이 시스템의 견제 기능과 균형 기능은 적절한 통제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국가 권력의 남용 등을 방지한다.

민주주의의 원리

민주주의 현실의 휘황찬란한 복잡성으로 인해 엄청난 수의 민주주의의 이론과 모델이 양산되었다. 1863년 게츠벅에서의 링컨의 연설에서 따르면, 민주주의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로 정의될 수 있다. 물론 이 말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민주주의 정체성 이론과 민주주의 경쟁이론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의 정체성 모델은 통치자와 피치자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정당한 정치적 차이의 존재를 부정하고 장 자크 루소의 "일반의지"가 무엇인지를 찾아 이를 입법의 과정에 상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반면 경쟁 모델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정당한 의견이 서로 경쟁하고, 일반적으로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합의에 이르는 것을 인정한다.

또 하나의–더 현대적인–구별은 민주주의 이론 담론에서 종종 거론되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별이다. 이 논쟁은 민주적 절차(예를 들어, 선거)와 제도(예를 들어, 선출된 합법적 기구) 또는 인간 복지, 안보, 사회적 평등, 평화적 분쟁 해결을 증진하는 널리 유익한 정책이 체제의 민주성(혹은 반민주성) 평가와 관련이 있는지에 중점을 둔다.

민주주의의 형태

현대 민주주의는 그 형태와 구조에 있어 매우 다양하다. 자유 민주주의와 관련한 전통적인 구분은 **직접 민주주의 모델**과 **대의 민주주의의 모델** 간 구분이다.

직접 민주주의는 시민 전체가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정부 형태다. 이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작용한다. 그러나 직접민주주의는 작은 공동체에서만 실현 가능하다. 따라서 거의 모두 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를 갖추고 있지만, 현대 민주주의 시스템에 순수한 직접 민주주의는 없다. 직접 민주주의의 제도로는 국민의회, 주민 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이 있다.

두 번째 기본적인 정부의 형태는 **대의민주주의**이다. 이는 시민들이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직접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책임 있는 대표자들을 선출하여, 이들을 통해 그 권리를 행사하는 형태이다. 간접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는 통치자와 피치자 간의 구분과 정기적인 선거라는 피치자의 통치자 통제수단이다.

간접민주주의는 정부의 다음의 두 가지 기본적인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다.

- **의원내각제** : 이 정부형태에서는 의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행정부는 수상이나 연립내각의 수장이 이끌며 의회의 신뢰에 의존한다. 국가원수는 행정권을 거의 또는 아예 가지지 않으며 상징적 기능만 한다.
- **대통령제 :** 행정부는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가원수가 이끌며, 의회의 신뢰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모델의 비교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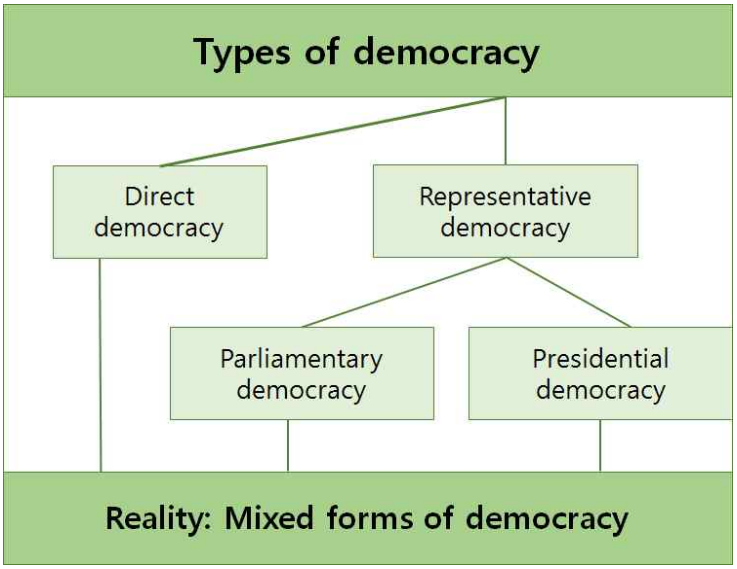

(출처: International UNESCO Education Server for Civic, Peace and Human Rights Education: www.dadalos.org/)

- 대통령제에서는 정부와 의회에 대해 각각의 선거가 행해지는 반면, 의원내각제에서는 한 번의 선거로 정부와 의회를 모두 결정한다(그럼에도 국가수반에 대한 선거가 따로 행해질 수 있다).
- 의원내각제에서 정부는 의회에 의하여 승인받으며, 문제가 있을 경우 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는 대통령제의 의회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대통령제의 의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
- 또 한편으로 의원내각제에서의 국가원수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경우에 한해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
- 의원내각제에서는 의회의 의원이 정부의 요인이 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 의원내각제에서는 보통 의회와 정부가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반면 대통령제에서는 그 권력이 명백히 분리된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종종 국가원수와 내각 수장이 행정권 자체를 분리하여 소유하기도 한다.
- 의원내각제에서의 입법발의는 거의 정부의 몫이다.
- 정당, 특히 야당은 의원내각제에서 더 강력한 역할을 수행한다.

현실에서의 민주주의 형태

기존의 대부분의 민주주의는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의 이상적인 조합의 형태이다. 이 셀 수 없이 많은 복합적 모델 중 오늘날 가장 보편적인 것은 국가원수의 역할이 강화된 형태의 의원내각제이다.

위에서 설명한 차이는 보통 전세계 민주주의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민주주의가 반드시 "

자유"민주주의의 개념과 일반적으로 관련된 모든 전통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

예시 : 의원내각제는 영국과 대부분의 서유럽의 국가들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모델이다. 반면, 미국은 대표적인 대통령제 국가이다. 그러나 서유럽에도 스위스(직접민주주의에 중점을 두는 합의민주주의)와 프랑스(이원집정부제) 등 다양하고 독특한 모델들이 있다.

3. 문화 간 관점과 쟁점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다양한 모습으로 출현하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는 그 문화에 따라 다르게 이해된다. 어떤 민주주의는 권력의 분립과 법의 지배를 강조하는 반면, 어떤 민주주의는 주로 참여의 개념에 기반을 둔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대부분의 정치사상, 이론과 실천과 관련된 "유럽 중심주의"가 많은 비판을 받는다. 민주주의의 관행 자체는 다양하다. “유럽중심”과는 거리가 먼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와 같이 매우 가난하고 과밀한 국가의 경우, 더 권위적인 정부형태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고수한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외부에서 도입된 것이 아닌 토착적, 유기적인 것이다.

동양에서든 서양에서든 “완벽한 민주주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 몇 가지 민주주의의 구성요소에 대하여는 전 세계적인 동의가 이루어졌기는 하나, 이러한 요소들에 부여되는 중요성과 그의 구체적 실현 형식은 종종 문화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서구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개인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이 때의 개인이란, 전반적으로 자유로운 자유주의 사회에서 최대의 자유와 발언권을 획득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 모델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하는데, 이는 일부 다른 나라에서는 문제가 된다.

“아시아적 가치” 논쟁

중국은 집단권과 사회복지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 사회 정치적 모델의 선도적인 지지자이다. 이는 개인권에 기반을 둔 서구 민주주의 개념과 크게 다르다. 중국의 모델은 개인의 최대 자유보다는 공동체 지향 의식과 가부장적 리더십의 전통적인 개념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민주주의는 규제받지 않는 개인의 자유의 극단과 질서가 잘 확립된 사회의 통치 사이의 극단 사이 그 어딘가에 존재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에 기초한 반면, 캐나다는 "평화, 질서와 좋은 정부"를 헌법상 "주목적"으로 명시한다.

아시아 모델이 반드시 참여와 민주주의와 반드시 모순이 될 필요는 없다. 싱가폴, 말레이시아—이들

보다는 그 정도가 조금 덜 하지만 한국과 일본도—와 같은 동아시아 모델은 유교의 기본적 가르침에서 영감을 도출해 내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도덕적, 합리적 지배 엘리트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공자는 "대학"에서 조화로운 개인이 조화로운 가정을 낳고, 조화로운 가정이 조화로운 사회를 낳고, 또 조화로운 사회가 질서가 잘 확립된 정치를 낳으며, 이러한 정치는 결국 조화로운 국가를 낳는다고 하였다. 소위 민주주의의 가치와 개념에 대한 “아시아”와 “서구”의 충돌은 대부분 참여의 실질적 의미와 개인적 복지 대 공동의 복지 간의 경쟁의 실질적 의미에 대한 해석 차이의 문제이다. 그러한 개념적 문제를 거부하는 대신, 아시아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은 종종 미국을 비롯한 몇몇 서방 국가의 특정한 사회적, 문화적 질서에 관한 것이다.

이슬람세계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이슬람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은 무슬림과 비무슬림에 모두에게 문제가 되어 왔다. 몇몇 평론가들은 이슬람과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하나님이 유일신이며, 신자 공동체의 모든 규율은 그의 신성한 계율로부터 비롯된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회교도들의 해석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권력의 분할이 이슬람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인식은 지나치게 단순한 것이다. 많은 수의 이슬람교 국가들에서 이슬람과 민주주의가 공존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고, 그 종교적인 표징들 또한 서양 헌법 질서와 친숙한 것이다. 정교분리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스스로를 "하나님 아래의 하나의 국가"로 선언하며, 이는 그 기초 정신의 한 부분이다. 마찬가지로 캐나다 권리과 자유 헌장의 서문, 즉 캐나다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장전은 "캐나다는 하나님의 우월성을 인정하며 법에 의한 통치의 원칙을 기초로 설립되었으며 ... "라는 말로 시작된다.

이슬람 국가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및 접근에 있어서 서로 매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적어도 최근까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 중동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주류 이슬람 운동의 지도자들과 많은 학자들이 이슬람과 민주주의가 양립할 수 없으며, 인간의 사회구조보다 신성 구조가 우위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을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에게 선전한다고 주장한다. 국민 주권의 개념이 이슬람의 기본 교리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정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 그들은 기본 입법 구조는 알라에 의해 제공되었고 이는 수정될 수 없다고 믿는다. 단지 그의 대리인들만이 그의 법률을 해석하고 구현할 수 있다. 이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접근은 개방성, 다원주의와 권력의 분리와 같은 기본적인 민주적 가치와 모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양한 이슬람 민주 국가의 사례를 볼 수 있다. 실제로, 가장 인구가 많은 이슬람 국가 중 일부는 선거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통합과 다원주의에 기반해 설립된 신생 민주주의 국가이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슬람 인구가 많은 국가인 인도는 1947년 이후 부분적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세 번째로 큰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은 2008년 민주적 통치로 돌아섰다. 또한 2005년에는, 이전에 전통적, 근본적으로 보수적인 탈레반의 통치하에 있었던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거에 의해 민주적 의회가 들어섰다.

실제로 글을 쓰는 시점인 2011년 초, 세계의 이슬람교도 대부분은 민주주의 사회 또는 민주주의로의 전환의 과정에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만 하더라도 인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디브를 포함하여 5억 명 이상의 이슬람교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가진 국가에 살고 있다. 오랫동안, 민주주의가 자리 잡지 못한 것이 분명히 보이는 지역은 오히려 아시아보다 훨씬 적은 이슬람 인구가 살고 있는 중동이었다.

그러나 최근 아랍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발생한 민주적 봉기와 같이, 이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2010년 12월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과 함께 시작해, 그 이후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예멘 등의 국가의 정치적 격변을 촉발시킨 이른바 '아랍의 봄 '은 중대한 과정(확실히 장기간이긴 하지만)이다. 이는 결국 이슬람과 민주주의의 불편한 관계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 *종교의 자유*

토론할 쟁점

-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른 개념의 민주주의를 지니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가?
- 민주주의의 다른 해석이 불가피하고 이러한 해석들을 허용할 수 있다면, 그 한계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국가가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하는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
- 서로 다른 문화에서 민주주의의 개념을 형성해 감에 있어 미디어의 역할은 무엇인가?
- 현대의 정보 기술(인터넷, 전자 메일, 위성 방송 등)은 지리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나?

몇 가지 추가적 고민 사항

- **다수와 소수의 관계** 특히 정치적, 민족적, 종교적 및 / 또는 언어적 소수자의 보호는 중요한 문제다. 다수결 투표에 기초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개최는, 소수가 종종 정치적 의사 결정에서 제외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소수는 다수의 결정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소수자들의 권리에 대한 존중과 그들의 정치적 의사에 대한 공정한 고려를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 *소수자 권리*
- **시민사회**가 민주주의 실행에 대한 논의에서 핵심주제 중 하나가 되었다.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능동적일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구성원을 원한다. 베르톨트 브레히트는 역설적으로 정부가 국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국민을 해산하고 새로 국민을 뽑아야 한다고 제안한 적이 있다. 자유롭고 능동적인 시민들은 그들의 정부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선거 공약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모든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기둥이 된다. 근래 정보의 수단에 대한 통제는 민주주의의 의사 결정에 대한 통제와 거의 동의어이다. 신문, TV, 라디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물론 인터넷까지 매체는 민주주의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 사회 및 국가는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유권자의 의사 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시민들은 선출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목표와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또 하나의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대한 인권이다. *☞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 **민주주의와 인권은** 분리될 수 없다 – 이 둘은 서로 상호작용하기도 하고, 서로의 정체성이 되어주기도 한다. 이 둘의 관계는 이토록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인권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민주주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많은 국가의 법적 체계는 시민권과 인권 사이에 차이를 둔다. 이는 시민에게만 일부 권리, 특히 특정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나머지 권리는 모든 인간에게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시민권과 인권은 구별된다. 제대로 기능하는 민주주의 안에서만, 그리고 이를 통해서만 인권이 보장될 수 있지만, 형식적인 민주주의만으로는 인권과 인간 안보가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권의 실현은 민주주의의 활성의 지표이다.

4. 이행과 모니터링

완벽한 민주주의라는 것은 존재한 적도 없고 오늘날 존재하지도 않는다. 현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모든 핵심요소들을 어느 정도 평등, 차별철폐와 사회 정의를 목표로 하는 "좋은 정부"를 위한 일반적 요구사항의 일부로 통합한다. 민주주의는 지속적인 상호작용, 완성 및 조정의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의 기본적인 욕구와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구조를 고려해야 한다.

지역적 수준에서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보호하는 다양한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유럽인권협약은 상설적인 유럽인권재판소를 설립하도록 하였고, 협약 위반에 대해 회원국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주주의는 협약에서 고려한 유일한 정부 형태이기 때문에(협약의 초안 작성을 시작한 조직인 **유럽평의회의** 헌장에서도 그렇다), 민주주의만이 협약의 적용이 유용한 유일한 정부형태이기도 하다. 1967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은 가혹한 군사 정권에 의해 장악된 그리스를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그리스 정부의 협약에 대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소송은 진행되었고, 결국 그리스가 유예 판정을 막기 위해 유럽위원회를 탈퇴함으로 종결되었다. 1974년 민주정부의 재구축과 함께, 그리스는 협약에 다시 가입했고 군사 정권의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지급해야 했다.

분명히, 모든 메커니즘이 유럽위원회에 의해 구축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주의의 보호를 위해 애쓰고 있는 다양한 조직들이 있다. 1990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회원국들이 민주적 제도를 구축, 강화,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민주제도인권사무소(ODIHR)를 바르샤바에 설립했다. 이 사무소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회원국에서 민주주의 원칙이 존중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국의 총선거를 감시한다. 미주기구(OAS), 아프리카 연합과 여러 가지 지역 간 정부기구 및 협정 등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정부의 헌법파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메커니즘들이 최근 소개되고 있다.

세계적 수준에서는, **국제의원연맹(IPU)**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IPU는 회원국의 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세계의 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해 사람들 간의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 기구는 1889년에 설립되었으며, 오늘날까지 나라 간 의회의 연결을 수월히 하고, 민주주의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2002년의 인간개발보고서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측정하는 수많은 객관적인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

- 가장 최근의 선거날짜
- 투표율
- 투표 가능한 여성의 연간 수치
- 의회에서의 여성 의석 수
- 직장 노조
- NGO의 수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비준
- ILO 단체결사와 단체교섭의 자유 협약 비준

또한, 민주적 정부에 대한 유용한 평가에는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권리, 언론의 자유와 책임, 정치적 안정과 폭력의 추방, 법치주의 및 부패 인식 지수 등의 많은 주관적 지표가 활용될 수 있다. 이 모든 지표는 민주적 상호작용을 형성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시키는 핵심 요소의 성취 정도를 반영한다. 이러한 지표들은 민주주의 정권과 다른 정권에 대한 비교와 민주주의를 향한 과정에 대한 기반이 된다. 또한 그 국가의 민주주의의 향상 수준 또는 그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위협에 대한 정량적 및 정성적 평가를 위해 활용된다.

모든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전국적, 지역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반 투표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미디어**와 **깨어 있는 시민 사회**를 수반하는 강력한 모니터링 메커니즘이다. 선거는 정부의 의제 및 권력 보유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선거는 또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들의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위에 명시된 모든 민주적 기준이 보편적으로 합의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권에 관한 기준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정치 참여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인권 보장은 민주주의 보장에 있어 결정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인권에 대한 제도적 보장은 사실은 민주주의에 대한 보장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전 세계적 구현은 각각의 모든 개인과 국가, 그리고 민주주의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권위주의적인 발전을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기구에 달려 있다. 선거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정치적 삶과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능동적인 시민 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민주주의에 도움이 된다. 의미 있는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지식을 가지게 한다는 점에서, 교육은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는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를 더욱 향상시켜야 한다. 교육은 민주주의 구축에 필요한 풀뿌리 요소이기 때문이다. 교육은 민주주의를 번영시키고, 민주주의가 모두를 위한 결과, 즉 평등하고 공정한 결과를 낳도록 한다.

알아두면 좋은 내용

1. 모범 사례

민주주의로 가는 길에

1990년 2월, 역사적인 연설에서, 프레데릭 데 클레르크가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의 퇴진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했다. 국민 투표에서 그의 정책을 백인 인구의 70 %가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민주적 선거는 1994년 4월 치러졌고, 1994년 5월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 되었다. 이로써 국가 발전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중앙 및 동부 유럽 : 1989년 이후 몇 년 동안, 이전의 공산권 국가들은 민주화의 물결을 경험했다. 폴란드, 불가리아, 체코 공화국, 동독,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전 소련 공화국들에서 새로운 자유롭고 민주적인 정당들이 창당되었다. 그리고 평화롭고 민주적인 변화가 국가의 정치적 풍토를 바꾸기 시작했다. 그 후, 다당주의 체제에 기반하여 정기적인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중앙 및 동부 유럽의 민주화는 유럽 연합(EU)의 정책에 의해 상당히 발전되었다. 특히, 이른바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존중, 인권 및 소수자권리와 법치주의를 포함한)"코펜하겐 기준"은, (대부분은 그 사이에 유럽 연합(EU)에 완전하게 회원으로 가입한)해당 국가의 민주개혁의 속도와 지속 가능성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유럽 연합(EU) 회원국의 전망은 다른 무엇보다 이 코펜하겐 기준에 달려 있다.

칠레 : 다른 남미 국가와는 달리, 칠레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가진 150년의 입헌 공화국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장군에 의한 17년간의 군사정권 이후, 1990년 칠레의 민주주의의 재건은 민주적 대화와 지역적, 국제적 협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오늘날, 칠레 공화국은 민주주의를 통합하고 적극적으로 해당 지역에서의 인권과 인간 안보를 증진시켜 나가고 있다.

이집트 : 2011년 2월 중순, 2주 이상의 시위가 이어진 후, 이집트의 장기 집권자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사임에 동의하면서 그의 30년 철권통치가 종료되었다. 군 최고위원회에 권력이 이양되었는데, 민주적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6개월 동안 군 최고위원회가 통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전 총리를 포함한 이전의 내각은, 새로운 정부가 형성될 때까지 선거 관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의 헌법을 검토하는 작업과 함께, 이집트는 고유의 민주적 형태의 정부를 출범시키려 하고 있다.

2. 동향

민주주의의 성장

'인간안보 보고서 2010'에 따르면, 세계 대전 이후 전쟁과 내전의 감소세는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상승세과 일치한다. 1946년에는 전 세계의 28%의 정부만이 민주주의였다. 2008년까지 그 비율은 두 배까지 상승했다.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서로 전쟁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내전도 드물게 일어난다는, 소위 "민주적 평화" 라는 명제가 사실인 듯하다. 그러나 "독재 정권" 또는 "반자유주의 민주주의"(완전히 민주주의도 독재도 아닌 정권)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가 된다.

(출처: human security report project. 2011. Human Security Report 2009/2010: The Causes of Peace and the Shrinking Costs of War.)

여성의 정치적 참여

여성은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정치 생활에서의 여성의 참여는 여전히 남성과 비교해 매우 불균형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민주적으로 간주되는 수많은 국가 기관에서의 성비의 불균형은 이 명백한 불균형을 잘 보여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생활, 특히 국회에서 종종 할당제를 도입하여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키려 한다.

토론할 거리

- 정치적 삶에서 남성과 여성의 두드러지는 차이를 줄이기 위한 다른 효과적인 우대책이나 도구를 생각해 낼 수 있는가?

의회에서의 여성

- 의회를 지닌 주권 국가의 수는 1945년 이래로 7배 증가했다.
- 지난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여성 하원의원의 비율은 40퍼센트 이상 증가하였다.
- 현재의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40년 이전에 모든 의회에서 성별의 비율적인 평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 여성 의원이 10% 미만인 의회의 수는 1995년에는 63%였으나, 오늘날에는 37%로 크게 감소하였다.
- 스웨덴은 의회에서의 여성 비율이 45.3%로, 가장 높은 여성 대표성을 나타낸다 (2005년 10월 기준).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가 그 뒤를 잇는다. 반면, 아랍국가들은 여전히 여성 의원들이 가장 적게 선출되는 지역이다. 하원의원에서의 여성 비율의 지역적 평균은 10%이하다.

(source: inter-parliamentary Union. 2006. Women in Politics: 60 Years in Retrospect.)

여성의 정치 참여						
	여성이 선거권을 부여받은 년도	여성이 피선거권을 부여받은 년도	첫 여성의원이 선출된 해	정부 내각의 여성 비율	2011년 여성 하원의원 수	2011년 여성 상원의원 수
호주	1902, 1962	1902, 1962	1943	24.0	24.7	35.5
오스트리아	1918	1918	1919	38.0	27.9	29.5
브르키나 파소	1958	1958	1978	14.0	15.3	
중국	1949	1949	1954	9.0	21.3	
쿠바	1934	1934	1940	19.0	43.2	
조지아	1918, 1921	1918, 1921	1992	18.0	6.5	
독일	1918	1918	1919	33.0	32.8	21.7
인디아	1950	1950	1952	10.0	10.8	10.3
말리	1956	1956	1959	23.0	10.2	
스웨덴	1862, 1921	1862, 1921	1921	48.0	45.0	
영국	1918, 1928	1918, 1928	1918	23.0	22.0	20.1
미국	1920, 1965	1788*	1917	24.0	16.8	17.0
짐바브웨	1919, 1957	1919, 1978	1980	16.0	15.0	24.2
모든 여성의 피선거권 보장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다. 헌법은 이 권리와 관련하여 성을 언급하지 않는다.						
(sources: Undp. 2005. Human Development Report 2005.; Undp. 2009. Human Development Report 2009.; inter-parliamentary Union. 2012.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1945-2011 여성의 의회 진출									
년도	1945	1955	1965	1975	1985	1995	2000	2005	2012
의원 수									
여성 비율(하원)									
여성 비율(상원)									
(sources: inter-parliamentary Union. 2006. Women in Politics: 60 Years in Retrospect.; inter-parliamentary Union. 2012.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 여성인권

온라인 민주주의

1990년대 중반 인터넷 사용이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일부는 모두가 온라인 통신을 이용하여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세계, 즉 전보다 그리스의 원형 민주주의에 더 가까워지는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환상이 실현되지 않았다.

인터넷의 가용성은 민주적 구조를 대신하지 않으며 그 자체로는 정치적 인식을 낳지도 않는다 – 그럼에도 인터넷은 여전히 이점이 있다. 실시간으로, 전 세계적으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점은, 비공식적 조직 구조를 만드는 데 정보를 교환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예로 들어보자. 일부 주(소위 "swing states" – 역자 주 : 미국에서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지 않아 표심이 고정되지 않은 경합주)에서의 선거의 결과는 전혀 확정적이지 않았다. 녹색 정당의 후보 랄프 네이더의 득표수가 결정적 요소였다. 네이더 자신은 대통령 선출될 가능성이 없었다. 그런데, 나중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네이더에게 투표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공화당의 조지 부시 대통령보다 민주당 후보 앨 고어를 선호했다. 모든 swing states에서, 네이더의 유권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조지 부시의 당선 가능성을 높인 이상한 상황이 되었다. 계속되는 선거에서 이러한 효과를 피하기 위해, 일부 사람들은 놀라운 아이디어를 추진했다. 그 아이디어란 시민들이 자신의 표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드는 것이었다. swing state에서 네이더를 지지하는 유권자는 Bush state에 살고 있는 고어를 지지하는 유권자와 자신의 표를 교환할 수 있다. 네이더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고어가 승리할 수도 있어 보이는 주에 사는 경우, 그 유권자는 고어에 투표할 것이다. 반면, 고어에 대한 투표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주의 고어를 지지하는 유권자는 네이더에 투표할 것이다. 아마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투표 스와핑"의 아이디어는 비공식적인 시민 조직이 그 새로운 민주적 잠재력을 보여준 좋은 예이다.

이 사례가 결코 유일한 예는 아니다. 전 세계의 운동간 연계를 구축하는 온라인 통신의 영향으로, 전 세계의 시민 단체의 활동이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경을 넘어 새로운 형식의 이슈지향적인 협력을 동원함으로써, 캠페인은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다. 전체주의 정권은 온라인상 "혁명"적 생각의 교환을 금지하기 위해, 그 교환 수단을 제한할 수 있을 뿐이었다. 개인은 보다 쉽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이를 광범위하게 퍼뜨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잠재력이 있는 반면, 새로운 위험도 있다.

현재, 전 세계 약 13억명이 인터넷의 사용에 익숙한 반면, 거의 50억은 인터넷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뿐만 아니라 선진국 내에서도 도시와 농촌 간)의 소위 **디지털 격차**는 인터넷의 민주적 잠재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인구의 대부분이 컴퓨터 문맹인 경우, 온라인 활동에의 참여는 쉽지 않거나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은 접근성의 보장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 기반을 둔 극심한 인종차별주의 단체인 쿠–클럭스–클랜은 그 온라인상의 존재 때문에 구성원의 수가 상당히 증가했다고 주장한다. 프랑스에서 인터넷 포털 '야후!'는 자사의 경매 사이트가 네오 나치 기념품을 제공하는 데 이용되었지만–이는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 아닌 미국에서 행해졌다. 이후에 "야후!"는 자발적으로 기꺼이 이러한 활동을 모니터하고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주의는 복잡한 과정이다. 인터넷은 통신을 용이하게 하는 매체가 될 수 있지만, 오프라인 세계에서와 같은 적극적인 참여나 개인적 책임성은 절대로 기대할 수 없다.

☞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세계화와 민주주의

전통적으로 정치 참여에는 국경이라는 경계선이 있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특정 지역과 관련하여 만들어진다.

세계화의 시대에는, 많은 결정과 그 결과는 국경을 넘어 영향을 미친다. 또한 나아가 다국적 기업과 국제기구 등의 세계무대의 새로운 주역들도 우리 세계의 광범위한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한 책임이 있다.

세계화로 인해 종종 초국적 경제 세력이나 강력한 비민주적 제도에 의하여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광범위한 국제 사회 운동의 하나인 반세계화 운동이 일어났다. 세계화에 대한 반대는 환경 보호, 부채 탕감, 동물권, 아동의 보호, 반 자본주의, 평화, 인권을 포함한 다양한 목적에서 비롯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세계화로 인해 민주적 포럼이 손상된다고 느끼고 있다.

핵심적인 운동 방법은 대중 시위이다. 십만 명의 시위대가 1999년 시애틀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의 세 번째 각료 회의 개막식을 막자 초기에 국제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그 후, 유사한 시위가 다양한 도시에서의 유럽 연합(EU) 및 G8 정상회담에서 뿐만 아니라 다보스(스위스)에서의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워싱턴 DC에서의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회의에서 발생했다.

대부분의 시위대가 비폭력적인 반면, 적극적으로 폭력을 선동하는 등 시위를 오용하는 과격한 시위대도 있다. 이러한 시위대들은 언론이 운동의 의제가 아닌 폭력에 주목하게 만든다.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이에 활동가들은 폭발적인 대중 시위에 대한 대안을 위해 2001년 2월, 브라질 porto alegre에서 1차 **세계사회포럼(WSF)**을 조직했다. 그 이후 이 포럼은 매년 열렸는데, 스스로를 "분산 토론, 의견 반영, 제안 구성, 경험 교환 및 보다 연대적, 민주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향한 구체적 행동에 참여하는 운동 및 조직 간의 제휴를 촉진하는 열린 공간 및 프로세스– 그 수가 많으며, 다양한 형태이고, 비정부적이고, 비당파적일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다양한 배경의 시민들과 비정부 조직이 이에 관심을 가지고 집회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민주적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공개 토론, 국제 경제 관계의 "인간화"와 국제기구에의 시민 사회의 참여가 촉발되었다. 이러한 운동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중요성의 폄하해 인권의 기반을 훼손하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지속적인 위험에 대해 주목하도록 한다.

국제 의사 결정이 복잡하고 장기적인 과정이 되는 등의 환경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계무대의 주역들은 증가하는 대중의 관심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한다. 그리고 이들은 새로운 방법의 민주적 대표성, 투명성, 책임성에 스스로 구속되어야 한다.
☞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 노동권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및 비정부기구에서의 민주적 결핍

국가, 지역 및 세계적 수준에서 국가의 역할은 변화하고 있다.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및 비정부기구(NGO)가 정치에 있어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했다. 그들의 결정 및 의제는 국가의 정책과 수백만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다음은 대답해야 할 주요 질문 중 하나이다. 이 (비 국가) 행위자들은 얼마나 민주적/ 반민주적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는 것은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과 비정부기구의 관행 및 정책뿐만 아니라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탐구하고 주요 민주주의의 원칙 –책임, 정당성, 참여, 대표성과 투명성–이 충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자들을 민주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 세계시민 총회 건설, 세계 무역기구 (WTO) 및 국제통화기금 (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의 더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사 결정 시스템, 비정부기구 및 다국적 기업의 윤리 행동 강령 및 규정 소개 등과 같은 방안들이 그 예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와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mahatma Gandhi. 1948.

추천 활동

활동 Ⅰ 예, 아니오, 또는 그 사이 어떤 것?

Part Ⅰ : 소개

이 활동 참가자들은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정당화되었으며 인정받은 의견들이 민주주의에 존재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다.

Part Ⅱ : 일반적 정보

활동 유형: 사회적 위치 설정

목적: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관용과 존중을 함양하기

대상 그룹: 젊은 성인, 성인

그룹 규모: 상관없음

시간: 60분

교구: 종이, 컬러펜, ...

준비: '찬성'과 '반대' 두 개의 카드를 만들고, 이 두 카드를 테이프로 긴 벽이나 바닥 양쪽 끝에 붙인다. 두 개의 의자를 방 중앙에 놓고 그 주위를 사람이 움직일 수 있게 주변에 공간을 둔다.

관련된 기술: 소통, 협력, 쟁점에 대한 의견의 차이점 표현하기, 다른 의견 존중하기

Part Ⅲ :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소개 : 벽 / 바닥의 양쪽 끝에 있는 두 개의 표지판을 지적하고, 참가자들의 동의에 정도의 차이가 있는 문장을 읽으려고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참가자들이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두 기호 사이의 벽을 따라 해당하는 위치에 서라고 말해 준다. 아래 목록의 첫 번째 문장을 읽어준다.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를 잡았을 때, 이들이 동료의 위치와 관련하여 자신의 위치를 성찰해보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선택한 위치에 선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참가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논쟁에 의해 설득되면 자신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지만, 집중적인 논의는 피드백 세션 때까지 보류해야 한다. 목록에 있는 다른 문장에 대해 같은 절차를 반복한다.

피드백 : 그룹을 피드백 세션을 위한 총회로 다시 복귀시킨다. 특히 극단적인 위치를 선택했거나 자신의 위치를 변경한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참가자들에게 활동 중 느꼈던 감정에 대해 말하도록 부탁한다. 그 다음에는 더 높은 가치인 다원주의 사회에 대해 성찰하도록 한다. 서로 다른 의견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우리는 반대의견을 수용해야 하는가? 사람들은 왜 다른 의견을 가지는가?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용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는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견해가 인정되어야 하는가? 어떤 견해를 극단주의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변형을 위한 팁 : "다원주의" 또는 표현의 자유가 민주 사회에서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종주의 또는 민족주의 시위는 허용되어야 하는가? 민주주의에 대한 허용될 수 있는, 허용될 수 없는 사이의 선을 어디에 어떻게 그릴 수 있는가? 이러한 맥락에서 "관용"의 의미와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을 수 있다.

Part Ⅳ : **후속활동**

현재 논의되는 추천활동과 관계된, 논쟁적 이슈를 보여주는 신문과 잡지 등의 사진을 선택한다. 특정 그룹(어린이, 여성, 이민자, 종교 집단,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환경오염, 실업, 빈곤, 국가에 의한 탄압과 일반적 인권 침해 등의 주제를 다루도록 노력한다.

사진을 잘라 참가자들에게 보인다. 각자에게 항상 용인할 수 있는 한 장과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한 장을 선택하도록 한다. 참가자들은 토론 시작 전에 그 사진을 선택한 이유를 제시하도록 한다. 각 참가자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 토론에 사용될 수 있는 문장은 다음과 같다.

- 우리는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 우리는 모든 법을 지켜야 한다. 심지어 부당한 법일지라도 말이다.
- 민주주의에서 권력은 오로지 정치인들만 가진다.
- 사람들은 그들 자신에게 걸맞은 지도자를 얻는다.
- "민주주의에서 모든 사람은-심지어 얼간이도 선거권을 가진다"(Chris patten, 영국 정치인이자 홍콩 주지사)
- 국민의 51 %가 전체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소수 민족을 억제하고도 여전히 민주적일 수 있다.
- "시민은 항상 자신의 입이 열려 있도록 하여야 한다." (günter grass, 작가 및 노벨상 수상자)
- "평범한 유권자들과 5분만 얘기해도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이유를 들 수 있다" (Winston Churchill, 영국 정치인 및 작가)
- 노트: 당신은 문장들이 어떤 다른 인권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문장은 다른 의견의 표출을 자극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관련 권리 / 더 탐색할 영역: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sources: adapted from: Council of europe. 2002. Compass - A Manual on Human Rights Education with Young People.; susanne Ulrich. 2000. Achtung (+) Toleranz - Wege demokratischer Konfliktlösung.)

활동 Ⅱ : 우리 공동체의 미나렛(역자 주 : 회교사원의 뾰족탑)

Part Ⅰ: 소개

이 활동은 지역 사회 또는 가상의 작은 마을에서의 공개 총회를 가상으로 실시해 보는 것이다. 시나리오 상 다양한 이해 관계와 다른 사회 및 정치 운동의 관심사가 소위 "핫 토픽"을 놓고 서로 충돌한다. 언론이 참석해 회의를 기록한다.

Part Ⅱ: 일반적 정보

활동 유형: 가상 게임

목적 및 주제: 지역사회에서의 의논 과정 경험하기, 정치적 상황과 메커니즘을 식별하고 이를 이해하기, 다른 견해를 고민하고 제출하기, 민주적이고 양식 있는 행동의 한계를 식별하기, 분쟁 당사자 모두의 입장에 대한 공감능력을 키우는 과정에 대해 경험하기

대상 그룹: 청장년 및 성인

그룹 규모: 15~30명

시간: 120~180분

준비물: 이름표 종이, 플립차트와 종이, 시장용종과 시계

관련된 기술: 소통, 협력, 사안에 대한 다른 초점과 견해 표현, 다른 견해에 대한 존중

Part Ⅲ :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소개: 모둠이 참여할 가상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활동에 대한 소개를 시작한다. 미나렛의 의도된 구조는 공동체를 움직이고 있다. 짧은 시간 안에, 지역 사회 공개 총회는 그 자체의 전체 높이가 교회의 첨탑보다 더 높은 미나렛을 구축하자는 이슬람 사회의 주장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위해 소집된다.

참가자들에게 할당할 역할들이 플립차트 목록에 있다. 나머지 사람들은 공개 협의회의 역할을 맡는다.

- 의장을 맡을 지역사회의 시장
- 서로 다른 당을 대표하는 마을 총회 구성원(3-5명)
- “제노포비아 없는 하나의 세계” 실무자(3-6명)
- 시민행동위원회 “사랑스런 우리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 회원(3-5명)
- 이슬람 지역사회 구성원(3-5명)

- 언론: 정치적 입장이 다른 지역신문 기자(각 1-2명)
- 협의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시민들(활동 참가자가 넉넉할 경우)

당신이 더 다양한 등장인물을 설명할수록 시뮬레이션이 더 효과적이게 된다. 그리고 원한다면 플립 차트에 다양한 사람들의 특성을 적어도 된다. 더 좋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게 대조되는 다양한 역할로 구성된 한 세트를 만들도록 하라.

이제 시간표를 짠다. 실제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개성을 개발하고 그것을 키워드로 적을 것이다(약 15분). 모든 참가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자신의 입장을 완화해야 한다.

시뮬레이션:

1단계: 준비(20분)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선택한 그룹에 모이도록 한다. 가능하다면 모두 교실을 나가서 그들만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다.

서로를 소개하고 공개 총회에 대한 전략을 준비하고 결정하도록 한다. 언론은 신문 편집을 시작하고 첫 번째 인터뷰를 한다. 이 단계 동안 교실을 회의공간으로 만든다. 그룹은 네 개의 다른 테이블에 배치되도록 한다. 테이블마다 명패를 놓는다. 시장은 종과 시계를 가지고 상석에 위치해야 한다. 시장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별도로 회의 절차의 규칙을 설명한다.

2단계: 공개 총회(45분)

총회의 리더 및 의장으로서 시장은 이번 회의 의제를 소개하고 참가자들을 맞이하는 인사로 회의를 연다. 시장의 주 임무는 회의의 중재이다. 그룹들에게 차례로 그들의 의견과 목적을 이야기하도록 요청한다. 준비된 역할도가 그들에게 지침이 된다. 그런 다음 시장은 이슬람 공동체에게 완전한 크기의 미나렛의 건설을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요청한다.

3단계: 피드백(45분)

토론을 할 수 있는 원으로 참가자들을 모으고, 돌아가며 피드백을 한다. 이 때 실제 이름을 불러야 한다. 참가자들이 수행하던 역할을 포기하고 본래 자신으로 행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것이다.

참가자들에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묻는다:

-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당신이 맡은 역할의 목적을 반영하는가?

- (당신의 역할에서) 당신은 그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 다른 사람과의 상호 작용이 당신의 전략상의 변화가 필요하도록 하였나?

시뮬레이션을 추적하는 것은 피하고 성찰 내용 자체에 집중하도록 한다.

현실의 공개 총회와 비교하여 이 시뮬레이션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자신의 역할을 규정짓는 것이 쉬웠는지, 어려웠는지
- 현실의 상황과 얼마나 가까웠는지

방법론적 힌트:

각 단계의 활동을 조정하면서 동시에 질문에 대해 답변할 수 있도록 하라. 이를 위해서 가능하면 이 활동을 다른 트레이너와 함께 진행하도록 한다. 역할 할당에 있어서 시장은 시뮬레이션 과정의 구조화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시뮬레이션 전에 시장 역할 참가자와 함께 그 임무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이 활동을 주도하는 사람은 당신이며, 참가자가 서로를 경멸하기 시작하면 시뮬레이션의 과정에 개입해야 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시뮬레이션이 통제를 벗어날 경우 (새로운 사실의 발견, 주제의 변화) 이를 중단한다. 공개 총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는 실제 생활에서의 결과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이 활동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음을 정리해 준다.

변형을 위한 팁:

지역 사회의 상황에 따라, 사안을 미나렛 대신 "불교 사원"이나 "교회"로 변경할 수 있다.

Part Ⅳ 후속활동:

가능하다면, 언론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공개 총회를 기록하거나 촬영하여 이를 이후 토론과 그 규칙에 대한 기초 분석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의 지역 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참가자들은 자신의 주변을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발견하여 이를 기록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document them. their results could be displayed in a map or a small exhibition.

관련 권리/더 탐색할 영역:

차별 철폐,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source:adapted from: susanne Ulrich. 2000. Achtung (+) Toleranz-Wege demokratischer Konfliktlösung.)

참고자료

Archibugi, Daniele, Mathias Koenig-Archibugi and Raffaele Marchetti. 2011. *Global Democracy. Normative and Empirical Perspectiv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eetham, David (ed.). 2006. *Parliament and Democracy in the Twenty-First Century. A Guide to Good Practice.* Geneva: Inter-Parliamentary Union.

Beetham, David. 2003. *Democracy and Human Rights.* Malden: Blackwell Publishers Ltd.

Boutros, Boutros-Ghali. 2002. *The Interaction between Democracy and Development.* Paris: UNESCO.

Cotran, Eugene and Adel Omar Sherif (eds.). 1999. *Democracy, the Rule of Law and Islam.* London/The Hague/Boston: Kluwer.

Council of Europe. 2002. *Compass - A Manual on Human Rights Education with Young People.*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0. *Democracy Index 2010.* Available at: http://graphics.eiu.com/PDF/Democracy_Index_2010_web.pdf

Eichengreen, Barry and David Leblang. 2006. *Democracy and Globalisation*. BIS Working Papers No 219. Basel: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Available at: www.bis.org /publ/work219.htm

European Inter-University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mocratisation (EIUC) and Deutsche Gesellschaft für Technische Zusammenarbeit (GTZ) (eds.). 2006. *Promoting Sustainable Democracy: Concepts, Experiences, Trends.* Venice: EIUC and GTZ.

Godwill-Gill, Guy. 2006. *Free and Fair Elections.* Geneva: Inter-Parliamentary Union.

Gould, Carol C. 2004. *Globalizing Democracy and Human Righ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eld, David. 1995. *Democracy and the Global Order: From the Modern State to*

Cosmopolitan Governance. Oxford: Polity Press.

Hobsbawm, Eric. 2007. *Globalisation, Democracy and Terrorism*. London: Little, Brown Book Group.

Human Security Report Project. 2010. *Human Security Report 2009/2010: The Causes of Peace and the Shrinking Costs of War*. Vancouver: HSRP. Available at: www.hsrgroup.org/human-security-reports/20092010/text.aspx

Inoguchi, Takashi, Edward Newman and John Keane. 1998. *The Changing Nature of Democracy*. Tokyo: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Inter-Parliamentary Union (IPU). 2012.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Available at: www.ipu.org/wmn-e/world.htm.

Inter-Parliamentary Union (IPU). 2006. *Freedom of Expression, Parliament and the Promotion of Tolerant Societies.* Geneva: Inter-Parliamentary Union.

Inter-Parliamentary Union (IPU). 2006. *Women in Politics: 60 Years in Retrospect.* Available at: www.ipu.org/english/surveys.htm

Jenkins, Henry and David Thorburn. 2003. *Democracy and New Media. Massachusettes: MIT Press.*

Keohane, Robert O. 2002. *Global Governance and Democratic Accountability*. Durham: Duke University. Available at: http://unpan1.un.org/intradoc/groups/public/documents/ apcity/unpan034133.pdf

Locke, John. 1690. *Two Treatises of Government.*

Montesquieu, Charles de. 1748. *De l'esprit des lois.*

Newman, Edward and Roland Rich. 2004. *The UN Role in Promoting Democracy: Between Ideals and Reality.* Tokyo: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Nye, Joseph S. 2001. *Globalization's Democratic Deficit: How to Make International Institutions More Accountable*. In: Foreign Affairs (Volume 80. Issue 4. July/August 2001).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O'Shea, Karen. 2003.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Policies and Regulatory Frameworks*.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ippan, Christian. 2010. *International Law, Domestic Political Orders, and the "Democratic Imperative": Has Democracy Finally Emerged as a Global Legal Entitlement?* Jean Monnet Working Paper No. 02/10,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Available at: http://centers.law.nyu.edu/jeanmonnet/papers/10/100201.pdf

Saikal, Amin and Albrecht Schnabel (eds.). 2003. *Democratization in the Middle East: Experiences, Struggles, Challenges.* Tokyo: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Scholte, Jan Aart. 2002. *Civil Society and Democracy in Global Governance*. In:

Global Governance. Vol. 8. Issue 3.
Susanne Ulrich. 2000. *Achtung (+) Toleranz – Wege demokratischer Konfliktlösung.* Gütersloh: Verlag Bertelsmann Stiftung.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2009. *Human Development Repor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Available at: http://hdr.undp.org/reports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2005. *Human Development Repor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Available at: http://hdr.undp.org/reports
Yakobashvili, Temuri. 2011. *Arab Spring, Act II. Analysis by Georgia's Ambassador in Washington.* Available at: www.globalpost.com/dispatch/news/opinion/110519/arab- spring-democracy-georgia
Zacharia, Fareed. 2004. *The Future of Freedom. Illiberal Democracy at Home and Abroad.* New York: WW Norton.

추가정보원

Bretton Woods Project: www.brettonwoodsproject.org
Council of Europe,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www.coe.int/edc
Democracy Coalition Project: www.demcoalition.org
Foreign Policy in Focus: www.foreignpolicy-infocus.org
Freedom House: www.freedomhouse.org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IDEA): www.idea.int
International Network "Education for Democracy, Human Rights and Tolerance": www.tolerance-net.org
Inspection Panel of the World Bank: www.inspectionpanel.org
Inter-Parliamentary Union: www.ipu.org
One World Trust: www.oneworldtrust.org
Open Society Foundation: www.soros.org **United Nations:** www.un.org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www.undp.org
World Bank: www.worldbank.org
World Trade Organization: www.wto.org

소수자 권리

MINORITY

RIGHTS

소수자와 선주민의 권리

개인권과 집단권

비차별과 적극적 우대조치

자율과 통합

인종 다양성과 다원성

>> 민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그러한 소수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은—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 그들 자신의 종교를 신봉하고 그 종교의식을 행할 권리, 혹은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

199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7조

사례

D.H. 외 v. 체코 공화국 판례는 2000년, 체코 오스트라바 지역에 위치한 정신적, 육체적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다니는 특수 학교에 보내진 18명의 로마족 학생들이 유럽인권재판소에 체코 공화국을 제소한 사건이다. 이들을 대변한 지역 변호사들과 유럽 로마족 인권 센터 (European Roma Rights Centre) 변호사들은 로마 소수민족이라는 것 이외에는 이 학생들을 그 학교에 보낼 어떠한 객관적인 정당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오스트라바 지역뿐만 아니라 체코 전역에서 로마족 아이들을 정신적, 육체적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가는 특수 학교에 배정하는 일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났다. 심지어 로마족 아이들이 정신적, 육체적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가는 특수학교에 다닐 확률은 로마족이 아닌 학생들보다 27배나 높았다. 따라서 이들은 유럽인권재판소에 로마족 아이들이 불균형적으로 높게 “특수학교”에 배정받는 것이 유럽인권협약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07년, 유럽인권재판소 대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역사적인 이 판결에 따르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로마족 학생들이 유난히 많이 배정되는 것은 유럽인권협약 제14조와 제1의정서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권과 차별 금지에 대한 조항을 위배하는 것이다. 유럽인권재판소가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차별의 경향성을 고려했으며 처음으로 간접적인 차별에 대해 명시했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매우 중요하다. 게다가 유럽인권재판소는 체코 공화국 내 약 70%의 로마족 아이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에서 배우고 있다는 자문위원회(예. 소수민족 보호를 위한 기본협약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통계 자료를 고려했으며 체코 정부는 이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유럽인권재판소는 해당 사건에 있어서 체코 정부가 유럽인권협약의 조항들을 위배했다고 판결했다. (출처: 유럽인권재판소, 2007, D.H.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2007년 11월 13일, 사건번호 57325/00 (대재판부), Jennifer Devroye, 2009, The Case of D. H.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JIHR vol. 7/1)

토론할 거리

1. 어떤 인권이 침해되었나요?
2. 왜 유럽인권재판소는 체코 정부가 유럽인권규약을 위배했다고 판결했나요?
3. 로마족 학생들은 어떠한 점 때문에 차별을 받았나요?
4. 소수자 권리 전반에 있어 이 판결은 왜 중요한가요?

"한 나라는 소수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평가받아야 한다"

마하트마 간디

알아야 하는 내용 ☺!?

1. 소수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투쟁 : 역사적 발전

어떤 사람은 소수자와 관련된 인권 문제들이 최근에서야 불거진 문제이거나 아니면 유럽만의 주요한 이슈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제법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애초에 소수자 문제는 종교의 자유와 깊은 연관이 있었다.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은 특정 종교 소수자들에게 권리를 부여했다. 종교 집단의 교육의 자유는 조약에 서명한 국가들이 동의한 종교의 자유와 연결되어 있었다. 17세기 "소수자 보호"는 종교적 소수자들을 특히 중요하게 다뤘지만 이는 후에 소수 인종 문제 혹은 소수 민족 문제로 초점이 옮겨지게 되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은 오토만 제국과 다양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해체로 이어졌다. 이후 중앙 유럽에서는 민족자결권 문제가 대두되었고 새로운 소수자 관련 법규들이 탄생했다. 나아가 다자간 그리고 양자간 맺어진 평화 협정들은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정한 규정들을 포함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국제 연맹(League of Nations)에게는 소수자 집단이 보호받는 정도를 감독할 임무가 주어졌다. 나아가 핀란드,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들은 각각 1921년과 1923년에 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조약들은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에서 소수자들이 그들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었고 비차별에 대한 조항 또한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인권 프레임도 사용되지 않았으며 집단권에 대한 개념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수자 보호는 비차별과 평등의 원칙 하에 개인의 인권과 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 논의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중앙 유럽에서의 소수자 관련 제도의 종식을 의미했다. 이러한 제도가 노동자 국가의 단결이라는 공산주의 이념으로 대체된 것이다. 소수자들은 공산주의 국가의 이념적 문화에 적응할 것을 강요받았다. 1989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과 소비에트 제국의 몰락 이후 민족과 인종의 동화와 귀속은 중요해졌다. 어떤 경우에는, 국가적 정체성 및 민족적 소속감은 새로운 국가의 설

립이나 국가의 독립을 주장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에 소수자들에 대한 보호와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정치적 의제로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소수자 권리에 대한 보호는 유럽 평의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자격 중 하나가 되었다. 유럽 연합은 새롭게 설립된 국가들과 유럽 연합 사이의 외교적 관계의 전제 조건으로 소수자 보호를 요구했다.

20세기가 끝나갈 무렵, 여러 야심찬 국제 조약들이 인권 의제에 있어서의 소수자 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관점은 소수자의 이익을 법치의 차원에서 보호할 것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 유럽안보협력기구 문서를 포함해 유럽 지역어 및 소수언어 헌장, 유럽 소수민족 보호를 위한 기본협약과 같은 다양한 문서들이 법 다원주의를 강조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소수자 권리 보호가 포함된 것은 인권적 시각으로 소수자 문제를 바라본 예이다.

오늘날, 소수자 권리는 국제법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소수자들의 문화와 전통을 보호하고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항들이 그 기반이 된다. 로마족, 선주민을 비롯해 다른 소수자들 및 소수자 집단과 관련된 최근의 관심은 소수자 문제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Theodore Orli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러한 관심과 함께, 인권법과 인권정책의 활용에 대한 새로운 책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권법과 인권정책은 지난 몇 세기 동안 소수자들에 대해 부여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줄 것이다.”

로마족 학생들에게 제한된 교육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소수자 권리가 소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특정 인종에 속하거나 특정 언어를 사용하거나 특정 종교를 가진 소수자들의 주요한 권리가 여전히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으며 심지어 몇몇 국가들은 그들의 땅에 소수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소수자들을 억압하고 차별하거나 그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무시하는 것은 다수자들과 소수자들간의 갈등 혹은 다양한 소수자 그룹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역사적으로도 빈번하게 있어왔다. 유엔인권최고대표부는 인종 청소, 축출, 집단학살은 모두 소수자들에 대한 억압과 차별의 결과라고 말한다. 유엔 소수자 보호와 차별 금지를 위한 소위원회가 밝히듯이 “집단간의 갈등은 종종 선동을 불러일으키고 인종적 우월성이나 문화의 불화합성과 같은 개념에 기반해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집단을 출현시킨다”. 나아가 유럽 평의회가 다양성과 화합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에서 결론 내리듯이 몇몇 국가들은 여전히 공공연하게 동화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소수자 멸종으로 이어져 문화적으로 국가를 궁핍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 차별철폐 / 아동 권리

2. 정의와 설명

“소수자”와 “소수자 권리”의 개념

정확하게 어떤 것이 “소수자"인가는 명확하지 않다. 현재 ‘소수자’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는 없다. 이는 소수자라고 규정될 수 있는 사례들이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기 때문이다. 어떤 소수자들은 지정된 거주 지역에 살고 있는 반면 다른 소수자들은 전국적으로 혹은 심지어 여러 국가에 흩어져서 거주한다. 어떤 소수자들은 역사적 사건에 기반한 집단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소수자들은 그들의 공통 유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어떤 소수자들은 높은 자치권을 갖고 있지만 다른 소수자들은 자치권이라 부를만한 것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의 특성과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욕망도 소수자들에 따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소수자”의 정의를 각기 다르게 내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유엔 특별보고관인 Francesco Capotorti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소수자’에 대한 정의를 아래와 같이 내렸다. “국가의 다른 집단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하며 기득권을 갖고 있지 않고 해당 국가의 국민으로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종교적, 인종적, 언어적 특성을 보이며 암암리에 그들의 문화, 전통, 종교 혹은 언어를 지키기 위한 연대감을 갖고 있는 집단”. 물론 모든 국가들이 이 정의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수자들은 **기득권층이 아닌** 개인들의 집단이라는 점, **대다수 사람들과는 다른**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특성을 공유**하며 이러한 특징을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집단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공통점으로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수자 권리는 국가 내 민족적 소수자들을 보호하고 이와 같은 특정 집단을 위해 추가적인 권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소수자들에게 부여된 특정한 권리는 그들의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 소수자 권리는 학생들이 소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권리와 공공장소에서, 그리고 행정 업무를 볼 때 소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소수 언어로 이름과 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소수 문화를 유지할 권리, 그리고 정치에 참여할 권리 등을 포함한다. (출처: Francesco Capotorti, 1979, Study on the Rights of Persons Belonging to Ethnic, Religious and Linguistic Minorities;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OHCHR). 1998. Fact Sheet No. 18 (Rev. 1), Minority Rights).

선주민과 선주민 권리

선주민들은 소수자들 중에서도 특별한 집단이다. 소수자와 마찬가지로 현대 인권법에서 ‘선주민’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몇몇 국가에서는 “원주민” 혹은 “첫 번째 국민”이라는 말이 더 선호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제정된 두 개의 인권 문서 – 1989년 **선주민과 부족민에 대한 ILO 조약과 유엔 선주민 권리 선언** – 은 “선주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이 두 문서에서의 “선주민”이라는 단어의 활용은 다른 지배적인 인종 집단의 존재를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집단은 국가의 미지의 영토 내에 존재할 수도 있고, 선주민들이 전통적으로 살아온 지역에 존재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인종 집단이 해당 국가나 지역에 첫 번째 거주민이었는지 여부로는 선주민으로 규정짓기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선주민'이라는 법적 의미를 충족시키려면 반드시 권력관계에 있는 다른 인종 집단이 있어야 한다.

개념에 관한 도전 – 개인권과 집단권

소수자 권리는 인권의 중요한 부분이다. 인권은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권리이며, 주로 개인 단위의 권리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렇듯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소수자 권리의 목적(특별한 보호 조치를 필요로 하는 집단을 확인하고, 소수자 집단이나 선주민 집단의 권리의 향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규범을 제공하는 것 등이 이 목적에 포함된다)과 어긋난다. (출처: Kenya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Centre for Minority Rights Development (ed.). 2006. Report of the Round Table Meeting of Experts on Minorities and Indigenous People in Kenya).

소수자 및 선주민 보호는 **여러 분야에 걸친** 삶의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소수자들은 노동 시장이나 언론 매체에서 동등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육 시스템 속에서도 모국어로 교육받을 권리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 분야에 있어서도 효과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제 분야에서는 사회적 편의 및 경제적 부를 동등하게 분배받지 못하고 있고, 행정 기관이나 법원에서 모국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 분야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국가의 사회, 경제적 안정성의 확보에 기여한다.

국가적, 민족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자에 속하는 인민의 권리에 관한 헌장. 1992.

소수자 권리와 인간 안보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는 인간 안보의 주요한 목표다. 소수자 권리 관련 정책은 공포와 결핍을 극복한다는 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인권 시스템과 양립가능하다. 이 정책은 주로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기타 취약성과도 연관되어 있다. 소수자들이 그들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내리든지 혹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던지 간에, 소수자들은 공포와 결핍을 겪을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대부분의 경우, 더 강력한 다수 집단이나 정부에 대항하여 그들의 목적을 이루거나 권리를 누리는 데에 있어서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지역적 단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분쟁은 인종적, 문화적 혹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발생한다. 많은 경우, 이러한 분쟁은 박해, 심지어는 대량 학살로까지 이어진다. 소수자에 대한 박해가 항상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인 것은 아니지만, 정부 기관은 종종 비정부 행위자들에 의해 가해지는 이러한 위법 행위를 묵인 하며, 심지어는 이를 장려하기도 한다. 정부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박해받는 소수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갈등이나 분쟁을 방지하고 이에 맞서는 것은 "공포로부터의 자유" 개념에 기반을 둔 인간 안보의 관점에서 중요한 정책이다.

소수자들은 종종 이러한 공포와 관련이 있는 "결핍", 혹은 공포와 무관한 "결핍"에 노출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공포는 소수자들이 건강, 교육,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여, 적절한 수입을 벌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또한 기후변화나 무제한적인 개발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자들을 빈곤하게 만든다. 이처럼 소수자들의 결핍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난다.

자치구는 위에 언급한 문제들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유럽 평의회 산하 유럽 의회가 채택한 결의안 1334와 권고 1609는 2003년 유럽 내 갈등 해결에 있어서의 자치구가 했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자치나 지역자치정부는 중앙 정부의 권력과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역 권력 간의 국내 파트너쉽이다. 자치구나 지역자치정부는 하나 이상의 언어 집단 혹은 인종 집단이 사는 지역에서의 분쟁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출처: Thomas Benedikter. 2006. Minorities in Europe. Legal Instruments of Minority Protection in Europe – An Overview)

☞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 망명권

☞ 법치주의

자치와 자결권

자결권의 개념은 "인민은 스스로를 통치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의 정치적 상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한다는 견해를 표명한다. 그러나 "인민"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 나아가 자결권에 대한 인정은 영토 단위를 제한하게 될 수도 있고 국가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

다. 또한 자결권은 분리 독립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현존하는 국가가 소수자들의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유엔 헌장은 자결권을 원칙으로 언급하며 유엔의 목적 중 하나는 민족 자결권의 원칙에 기초해 국가들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 헌장 제2조와 55조는 **"민족자결권의 원칙"**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 하에서는 여전히 "민족"과 "자결권"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1984년 유엔인권이사회는 자결권에 대해 "이 권리가 악용되었을 경우 국제 평화를 위험에 빠트리고 영토 보전에 위협을 가한다는 인상을 주어 해당 국가의 안보에도 위협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의를 내리기에 가장 어려운 개념 중 하나"라고 밝혔다. 사실 이 개념은 분리 **독립의 권리**를 내포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심각한 국내 및 국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다뤄져야 한다.

1994년, 유럽소수민족연방조합(Federalist Union of European National Minorities, FUEN)은 유럽 **인종 집단의 자치권**과 관련한 협약 초안을 제시했다. FUEN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자치권이란 소수 민족 혹은 소수 인종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가 될 것이다. 협약당사국들은 영토 보전에 대한 선입견 없이, **가장 높은 수준의 내부적 자결권**을 보장해야 하며, 이는 동시에 **소수 민족의 의존도를 최소화**할 것이다."* FUEN은 또한 자치권의 세 가지 유형을 소개한다. 1) 소수자들이 다수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영토적 자치권** 2) 소수자들이 다수 인구를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전통적으로 정착하고 있던 곳에서의 **문화적 자치권** 3) 고립된 정착지처럼 단일화된 행정 지역이지만 소수자들이 다수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곳에서의 **지역적 자치권**.

첫 번째 개념은 소수자의 언어, 종교, 관습을 보호하고 증진할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주로 영토 내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문화적 자치권은 해당 소수자가 자치권을 위해 주요 기관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삶을 누릴 수 있게 해 준다. 소수자들이 상대적으로 밀집된 정착지에 거주할 경우에는 자주적인 행정권에 대한 권리와 동시에 특정 영토에 대한 최소한의 입법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영토적 자치권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이러한 자치권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자들에게 그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만, 이것이 곧 **국가 주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Thomas Benedikter, 2006. Minorities in Europe. Legal Instruments of Minority Protection in Europe – An Overview ; Jan Klabbers. 2009. Self-Determination; Gabriel Toggenburg, Gunther Rautz. 2010 ABC des Minderheitenschutzes in Europa)

정부의 의무 : 비차별, 통합, 그리고 적극적 우대조치의 원칙

소수자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곤 한다.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로

같은 상황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 우대받지 못한다. 소수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종종 불이익을 받곤 한다. 예를 들면, 교육을 받을 때, 직장이나 거주지를 찾을 때, 술집이나 식당에 갔을 때 혹은 건강관리를 받는 경우에도 그들은 불이익을 받는다. **차별**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혹은 경제적 분야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부정적인 방향으로 소수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국가는 비차별의 원칙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비차별 조항은 모든 국제 인권 문서를 비롯해 유럽인권협약, 유럽사회헌장, 소수 민족 보호를 위한 기본 협약(유럽 평의회), 인간적 차원에 관한 코펜하겐 회의 문서(유럽안보협력기구), 미주인권협약, 그리고 인간과 인민회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등과 같은 수많은 지역 인권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 기본권에 대한 유럽연합 헌장은 "소수 민족"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2009년에 유럽연합 기본권기구가 작성한 유럽연합 소수자와 차별 조사(MIDIS) 보고서에 따르면 **인종주의에 기반한 차별과 범죄**가 여전히 유럽 내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교육과 고용이 사회통합의 주요한 분야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우려스럽다. 보고서의 결과에서 더욱 우려할만한 것은 차별의 부정적인 경험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협박이나 폭행과 같은 피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취약계층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사 결과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차별을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차별금지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의 높낮음, 재산의 많고 적음, 혈통이나 가문, 그 밖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모든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 **세계인권선언 제2조 1호**
>
>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민족에의 소속,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의 향유가 확보되어야 한다.
> **유럽인권협약 제14조**
>
> 성, 인종, 피부색, 민족 혹은 사회 출신, 유전적 특성, 언어, 종교 혹은 믿음, 정치적 혹은 다른 견해, 소수민족 소속, 재산, 출생, 장애, 나이 혹은 성적지향에 기반한 어떠한 차별도 금지한다.
>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21조**

*"모든 국가는 **평등과 비차별이라는 공통의 영역**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는 불가피하게도 어느 수준*

까지의 ***통합****을 내포하고 있다. 통합은 평등에 바탕을 둔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각자의 가치와 문화를 지니고 그들 스스로의 공통된 영역을 만들어나가는 것에 기반하여 이뤄져야 한다."*
유엔은 1993년에 위와 같이 지적했다. 이민 정책으로서 통합의 개념은 **동화**와 분리의 대안적인 선택지로 발전했다. 동화란 일방적으로 주 사회의 생활양식과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의되며 결과적으로 주도적인 문화가 우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필요조건을 수반한다. **통합 정책**은 소수자와 이민자들에게도 동등한 기회와 참여를 보장할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관점에서는 노동 시장, 교육, 문화를 포함하는 사회적 통합의 모든 분야 뿐 아니라 법적 통합까지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한다. 다른 중요한 측면은 시민의 권리와 시민의 의무에 따라 공적인 삶에 참여하는 것이다. (출처: UN. 1993. Possible ways and means of facilitating the peaceful and constructive solution of problems involving minorities)

소수자들이 역사적으로 받아온 차별을 보전하고 그들과 그들 고유의 문화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소수자 보호는 차별으로부터의 보호와 동화로부터의 보호 모두를 포함한다"

John Humphries.

본래 비차별 원칙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게 되면 소수자 권리에 관한 특별한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곧 **차별로부터의 개인의 보호**는 소수자들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있어 **충분한 조치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소수자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우대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특별한" 권리들은 특권이 아니라 소수자들이 다수자들과 같은 생활 조건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나아가 소수자 권리는 소수자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도 보장해야 한다. 이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입장이기도 하다. "특정 집단이나 해당 집단에 속한 개인들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전체 공동체의 복지와 효과적인 평등을 증진시키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차별 철폐 조처들은 사회 내에서 소수 집단이 다수 집단과 같은 입장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

☞ 차별금지

소수자 보호를 위한 국제 인권 문서들:

다양한 국제적 그리고 지역적 인권 문서들은 소수자에 속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한 주요 국제법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7조(이하 자유권규약)이며 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민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그러한 소수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은-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 그들 자신의 종교를 신봉하고 그 종교의식을 행할 권리, 혹은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소수자들에게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혹은 언어적 정체성을 가질 권리(혹은 이러한 권리들의 조합)와 그들이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싶어 하는 특성을 보존할 권리를 보장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부가 밝혔듯이 중요한 것은 국가의 소수자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은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 의무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 비록 국가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자유권규약을 비준한 국가들은 반드시 그들의 관할권 안에 있는 모든 개인들이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조항은 선주민들에 대한 보호도 포함하고 있는가? 유엔인권이사회의 일반논평과 권고는 "소수자 보호"에서의 "인민"의 의미는 수적으로 열세한 집단이나 자유권 규약 제27조에 명시된 "민족적" 혹은 "언어적" 소수자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미족 권리의 판례에서 보듯이, 위원회는 이 조항에 국가의 다수에 의해 위협받는 선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보호의 근거를 두고 있다. Lovelace v. Canada, Lubicon Lake Band v. Canada, Kitok v. Sweden과 같은 판례들이 인권위원회의 이러한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다. 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인권 교육자들에게 어떻게 인권법이 상충하는 이익을 다룰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상충하는 이익이란, 소수자들과 자유권규약 당사국 간의 갈등과 관련되어 있다. 국가는 자유권규약의 의무를 다해야 함과 동시에, 소수자의 권리와 충돌할 수 있는 경제적, 행정적 및 기타 이익을 수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출처: Theodore Orlin. 2009. Minorities and Human Rights Education. Human Rights Law as a Paradigm for the Protection and Advancement of Minority Education in Europe.)

국가적, 민족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집단의 권리에 관한 UN 선언은 1992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 문서는 독립적인 유엔 문서로 소수자들의 특별한 권리에 대해 말하고 있는 유일한 문서다. 이 문서는 소수자 집단에 속한 사람의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결사의 권리와 사회 내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 선언은 또한 국가로 하여금 소수자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는 소수자들이 그들의 문화, 언어, 종교를 배우고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경제

적 발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소수자들이 해당 국가의 복지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국가는 이 권리를 존중하는 데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

소수자 보호를 위한 지역별 인권 문서들:

위에서 언급한 국제적 수준의 문서들 말고도 아래와 같은 **지역 인권 조약 및 문서**들도 있다.

- 유럽 인권 협약
- 유럽 사회 헌장
-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 인간적 차원에 관한 코펜하겐 회의 문서(유럽안보협력기구)
- 미주인권협약
-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국가는 소수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차별 없이 법 앞에 평등하게 완전하고도 효과적으로 그들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적, 민족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자에 속하는 인민의 권리에 관한 헌장 제 4조 1항.1992.

위에 언급한 모든 지역 인권 조약들은 인권을 보호하고 소수자들의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소수자 관련 분쟁은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적 장치들은 국제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장치들은 소수자들의 정체성과 존재를 부각시키고 소수자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1993년에 채택된 회원국 기준**(코펜하겐 기준)**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이는 전제조건으로 소수자 권리에 대한 기준을 이행할 것을 포함시켰다. 2007년, 소수자들에 대한 보호는 **리스본 협약**에 명시적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유럽연합협약과 유럽 공동체를 설립한 협약들을 개정했다.

로마족을 받아들이기 위한 10년

2004년 유럽연합이 확대된 이후 로마족은 유럽에서 가장 대규모이자 가장 가난한 소수민족이다. 유럽 내 로마족 인구는 약 7백만에서 1300만에 이른다. 이는 유럽연합 전체 인구의 약 2%에 해당한다.

로마족 인구의 대부분은 젊은 사람들이며 15세 이하인 사람들의 비율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젊은 인구 분포도 때문에 로마족은 중앙 유럽과 동유럽 많은 국가들의 미래를 보여준다. 따라서 해당 국가들은 그들의 잠재력과 문화, 역사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로마족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은 유럽연합 국가들이나 유럽연합 전체, 그 중에서도 특히 중앙 유럽과 유럽 국가들에서의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다.

이 소수 민족에게 있어서 가난은 낮은 교육 수준부터 시작해 불편한 주거환경, 나쁜 건강 실태, 실업률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예외는 아니다. 다른 집단에 비해 로마족들은 훨씬 더 가난한데, 이는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서 나타난 결과다. 역사, 전통, 사회로부터의 지속적인 배제, 교육 및 공공 서비스, 고용, 주거, 건강 보험 등에의 접근성 부족으로 인한 결과, 그들의 가난을 영구화 시키는 차별과 의존성에 관한 정책 등이 관련 요소들이다.

로마족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 개선을 가속화하기 위해 **로마족을 받아들이기 위한 10년 (2005~2015)**이 소개되었다. 이 10년 계획은 새천년개발목표와 유럽연합 사회 포용 정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계획은 특히 교육, 고용, 건강 그리고 주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로마족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12개 유럽 국가들이 이 10년 계획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국가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내 10년 이행 계획을 개발했다.

- 로마족들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명확하고 측정가능한 국내 목표를 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것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 이행계획을 준비할 것
-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특별한 필요에 맞춰 이행계획을 수정할 것

(출처: Mabera Kamberi, 2005. Decade of Roma Inclusion 2005-2015)

3. 문화적 관점 차이와 논쟁적 이슈

"기존의" 그리고 "새로운" 소수자들, 시민권의 기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무엇이 소수자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동의는 없다. 이러한 정의에 관해서는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눠서 이야기 해 볼 수 있다. 먼저 소수자들을 그들이 사는 국가의 시민으로만 규정하는 정의가 있다. 이는 해당 국가와 소수자들이 역사적으로 오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다. 이 경우의 소수자들은 소위 "오래된" 혹은 "역사적인" 소수자라고 볼 수 있다. 다른 정의에 따르면 시민권은 소수자를 규정짓는 전제조건이 아니다. 이 경우 소수자들은 소위 "새로운 소수자"다. 이러한 정의의 차이는 실질적인 차원에서의 상당한 차이로 이어진다. 소수자를 양산하는 주된 이유가 전쟁, 박해, 경제적 어려움, 최근의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이주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동은 강제적인 이동일수도 있고, 자발적인 이동일 수도 있지만 이유가 어찌되었든 모두 대규모의 (새로운) 소수자를 양산한다.

자유권규약 제27조에 대한 일반논평 23을 읽어보면 시민이 아닌 자도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명확해진다. "제27조에 사용된 용어들을 보면 보호받아야 하는 개인들은 집단이나 공통의 문화, 종교 혹은 언어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이다. 이 용어들은 또한 보호받아야 하는 개인들이 한 국가의 시민일 필요가 없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당사국은 제25조처럼 특별히 시민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예외 조항이 아닌 이상, 한 국가의 영토 안에 살고 관할권 아래 거주하는 모든 개인들에게 해당 규약 아래 보호받는 권리들을 보장해야 한다. 그렇기에 국가는 제27조에 해당하는 권리를 시민들에게만 보장해서는 안 된다." 2005년 소수자에 대한 유엔 실무그룹에 의해 채택된 1992년의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집단의 권리에 관한 UN 선언에 대한 논평은 명시적으로 유엔인권이사회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시민이 (아직) 아닌 개인들도 해당 국가의 소수자라고 볼 수 있다."

위의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으로 소수자에 속하는 개인들은 인권과 소수자 권리를 누리기 위해 시민권을 가질 필요가 없다. 한 가지 주요한 예외사항은 정치적 권리에 해당하는데 이는 국내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선거에 나갈 권리를 포함한다. 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국가 내 시민으로만 구성된 집단만이 지역적 차원에서의 "소수민족"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럽 모든 국가들이 비준한 유엔의 소수자에 대한 기준이 더 넓기 때문에 이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 아니다. 그들의 입장을 개선하라는 압력이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유럽 평의회, 유럽안보협력기구와 같은 국가 간 기구이자 기준을 만들어내는 기구들에게 가해지고 있다.

유럽 평의회는 이민으로 인해 많은 유럽 국가 내에 공통의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몇몇 국가들에게 이 집단은 새로운 소수 인종 혹은 눈에 띄는 소수자로 일컬어지며, 종종 외래 소수자로 알려져 있다. 유럽 평의회에 따르면, 외래 소수자들은 "그들 스스로를 민족 혹은 국적, 문화, 언어, 종교, 혹은 피부색을 바탕으로 사회 내 주요 집단 혹은 지배자 집단과 구분짓는다"는 점에서 토착 소수자들 및 선주민들과 공통점이 있다.

이주민들과 소수자들은 대부분 다른 배경을 갖고 있다. 역사적 소수자들은 종종 최근에 이주한 역사는 없지만, 국가 내에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공동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언어, 특정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인정을 주장할 수 있다. 선주민의 경우는 토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들이 떠나온 국가의 문화에 여전히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는 이주 집단에게는 문화와 언어 문제가 부여된 권리라기보다는 정책적 문제로 여겨질 수 있다. 유럽 평의회에 따르면 이주민들은 주류 기관에 참여할 방안을 모색하지만, 소수민족들이 갖고 있는 특정 정치 대표성이나 선주민들이 가질 수 있는 토지권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이주민들과 (국가 내) 소수자들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그들과 관련된 정책은 종종 비슷한 문제를 다뤄진다. 소수자들은 이주의 경험을 갖고 있을 수 있으며 소수자 권리 침해는 강제 이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서 가질 수 있는 의문은 역사적으로 그들이 정착한 땅에 속해있다고 보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야 "새로운" (외래) 소수자들이 "오래된" (토착) 소수 집단이 되는 것인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시민권과 최소한 3세대 이상 특정 영토에서 거주한 소수자 집단에의 소속 여부다. 소수자 개념의 요소를 규정짓는 시민권은 논란이 되는 소위 "오래된" 그리고 "새로운" 소수자를 구분 짓는 기준이다. (출처: Council of Europe (ed.) 2000. Diversity and Cohesion. New Challenges for the Integration of Immigrants and Minorities: Gabriel Toggenburg, Gunther RAutz. 2010. ABC des Minderheitenschutzes in Europa)

유럽에서의 다원화된 사회 건설에 있어 근본적인 어려움은
소수자가 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소수자가 권력에의 접근에 제한을 받거나, 권력 행사로부터 배제된다면,
이는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에 대한 위반이며 민족적 지배와 종속에 기반을 둔 사회를 낳는다.

유럽인종차별위원회. 2001.

실질적인 이민 국가가 되는 데에도, 정부가 이민자를 융합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에도, 시간이 좀 걸린다. 유럽 평의회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합 정책이 이행되었으며 어떻게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얻었다. 모든 국가에서 법적 주거권을 보장하거나 동등한 고용, 주거, 교육과 정치적 의사결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 차별, 인종주의, 외국인혐오증에 맞서려는 노력 등과 같은 비슷한 메커니즘들이 도입되었다. 통합 정책은 종종 다양한 정치 철학

과 오래된 이민 국가들의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받아들이는 사회의 변화되는 상황에 맞춰 정기적으로 조정된다. 정책 분석은 종종 통합의 문제점들과 통합에의 장벽을 없애기 위한 메커니즘을 고안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민자들과 소수자들의 사회에의 기여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분석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사람들이 다양한 배경으로부터 왔으며 다수의,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가치를 두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는 소수자 집단의 발전에 있어서의 역동적인 요소들이 종종 무시되곤 한다.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이 민족적 기원을 공유하고 있지만 일부 구성원들은 귀화한 반면 어떤 구성원들은 그렇지 않다. 또한 일부 구성원들은 최근에 이주한 사람들인 반면 일부는 2세대 혹은 3세대로 해당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일부 사람들은 그들의 원래 소속되어 있던 사회와 강한 유대를 갖고 있지만 그러한 관계를 거의 잃은 사람들도 있다.

토론할 거리

1. 만약 모든 개인의 권리들이 보호된다고 하더라도 집단권이 여전히 필요한가요?
2. 왜 소수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적합한 (법적) 정의를 찾는 일이 그렇게나 어려울까요?
3. 국제 인권법에서 소수자들과 선주민들을 다르게 다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4. "새로운" 그리고 "오래된" 소수자들은 어떻게 다른가요?
5. 소수자 집단의 구성원들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활용하는 적극적 우대조치들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떤 조건 하에서 "적극적 우대조치"가 필요하고, 또 어떤 조건 하에서 이러한 종류의 차별이 받아들여지거나 받아들여지지 못할까요?

4. 이행과 모니터링

유엔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것과 같이 (특히) 소수자 권리의 이행을 감시하는 다양한 인권조약기구들이 있다. 그들은 정부가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국내법이나 행정 절차 및 법적 절차가 이러한 의무와 일치하는지를 감시한다.

소수자 권리 이행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위원회들은 아래와 같다.

- **인권위원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이행여부 감시)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이행여부 감시)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 협약 이행여부 감시)
- **아동권리위원회** (아동권리협약 이행여부 감시)

나아가 **조기경보 메커니즘**은 갈등이 고조될 때, 무엇보다도 민족적, 종교적 이유로, 혹은 인종주의에 의해서 발생한 갈등이 분쟁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다. 소수자와 관련된 조기경보 메커니즘과 관련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목적은 중재와 외교, 대화 촉구를 통해 인권침해가 지속되는 것을 막는 데에 있으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조기경보 메커니즘은 높은 수준의 인종 차별이 있을 때 직접 주의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럽안전보장협력기구 (OSCE):

헬싱키 합의와 그 이후 1990 코펜하겐 회의 문서, 1990 새로운 유럽을 위한 파리 헌장, 1991 모스코 회의 문서를 포함한 유럽안보협력기구의 문서들로 인해 민주주의, 다원주의, 그리고 법치주의가 유럽의 규범적 원칙이 되었다. 이와 같은 문서들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유럽안보협력기구 회원국들이 소수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부 간 합의를 만들었다. 1990 코펜하겐 회의 문서는 종종 "소수자들을 위한 유럽 헌장"으로 불리는데, 해당 문서 내 조항에서 명백한 정치적 합의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민족주의적인 의제를 촉구하는 정치적 경향은 소수자 보호에 있어서 여전히 우려사항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안보협력기구의 문서들은 유럽안보협력기구 회원국들 사이의 관계와 지속적으로 관련이 있다.

(출처: Theodore Orlin. 2009. Minorities and Human Rights Education. Human Rights Law as a Paradigm for the Protection and Advancement of Minority Education in Europe).

소수민족에 관한 유럽안보협력기구최고대표는 몇몇 소수자 분쟁을 성공적으로 다룬 바 있다. 비록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분쟁 당사자들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최고대표의 임무는 '공정', '은밀성', 그리고 '협력'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하고 있으며, 주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해 활동한다. 최고대표의 중심적 역할은 "조기 경보"를 울리는 것인데, 필요한 경우 소수자와 관련된 갈등이 있으면 "조기 행동"을 취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대표는 **안보 기반 접근**을 취한다. 최고대표의 권고사항은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구속력이 없다. 권고

의 영향력은 오직 기관 및 개인의 권위와 참여국 및 국제기구의 지원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그녀의 임무의 일환으로, 최고대표는 관련 집단, 언론,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출처로부터 소수자에 대한 정보를 받고 수집한다. 나아가 최고대표는 어떤 참여국이든 방문할 수 있으며 정보를 수집하고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집단들과 소통할 수 있다. 최고대표는 또한 대화를 촉진하고 당사자들 사이의 협력과 상호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다.

유럽 평의회 (CoE):

지역 언어 혹은 소수 언어를 위한 유럽 헌장과 **소수민족 보호를 위한 기본협약**은 유럽 평의회의 원조 아래 작성된 두 개의 법적 구속력 있는 지역 조약이다. 1992년 만들어진 **지역 언어 혹은 소수 언어를 위한 유럽 헌장**은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에서 소수 언어의 사용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중요한 문서다. 이 역동적인 조약은 이를 비준한 국가들을 감시하기 위해 보고 제도를 만들었다. 전문가 위원회는 주기적으로 국가 보고서를 검토한다. Theodore Orlin은 지역 언어 혹은 소수 언어를 위한 유럽 헌장의 영향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조약에서 드러난 법치주의를 통해,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복합성은, 다시 한 번 소수자 문화의 주요 요소를 보호하고 소수자 문화에 의해 전통 언어를 보호하도록 장려한다." 다른 학자들도 이 헌장이 애초에 기대했던 것 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처음에 지역 언어 혹은 소수 언어를 위한 유럽 헌장이 만들어질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가능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내 정치인들과 관료들,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느리고 어려운 과정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국제 다자 조약과 법적 의무는 소수자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 더 나은 기준을 만들어내는 것에 기여했다. 국가들은 국제법이 부여한 의무를 따라야 했으며, 의무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행동을 정당화해야만 했다. 나아가 정부에게 내리는 구체적인 권고사항들, 소수민족에 관한 유럽안보협력기구최고대표의 성명서, 민족 간 갈등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의 워크숍과 프로젝트, 그리고 일반 권고들과 같은 일련의 문서들이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교육에 있어서의 소수자들의 권리를 다룬 “헤이그 권고”, 소수자들의 언어에 대한 권리를 다룬 "오슬로 권고", 그리고 공공의 삶에 있어서 소수자들의 효과적인 참여에 대한 “룬트 권고”).

영토적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국가는 그러한 소수자에 속하는 이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이들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국가는 이들에게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향유를 위한 완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 영역에 대해 이들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유럽안보협력회의, 헬싱키 최종의정서. 1975.

1995년에 만들어진 **소수민족 보호를 위한 기본협약**은 소수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가장 최근의 노력의 결과다. 이 야심찬 조약은 소수자들이 살고 있는 사회와 국가 내에서의 동화, 민족주의, 인종 중심주의로부터 소수자들을 보호하려 한다. 이 문서는 소수민족 보호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첫 번째 다자 간 조약이다. 지역 언어 혹은 소수 언어를 위한 유럽헌장과 마찬가지로 소수민족 보호를 위한 기본협약은 유럽 평의회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에게도 열려 있다. 그러나 협약은 "소수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으며 국가들 스스로 소수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도록 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유럽평의회의 이 두 문서 덕분에 유럽 평의회의 감시 위원회와 국내 정부 관계자, 비정부기구, 소수자들과 그들의 대표들 사이에 **"깨어지지 않는 다자간 대화"**가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공동체 간 관계에서는 사회 내의 서로 다른 공동체와 영역들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중요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과 **공통의 분모를 찾으려고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평의회에 따르면, 대안적 보고서, 정부들 간의 협의, 방문 회의, 국가 논평과 감시 과정에서의 후속 회의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모두 도움이 된다. (출처: Theodore Orlin. 2009. Minorities and Human Rights Education. Human Rights Law as a Paradigm for the Protection and Advancement of Minority Education in Europe; Patrick Thornberry, Maria Estebanez. 2004. Minority rights in Europe. A review of the work and standards of the Council of Europe).

유럽에서 **유럽인권재판소**의 관할권은 소수자들과 관련이 있다. 유럽인권협약이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담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기준과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소수자 권리 및 소수자 문제와 관련이 있다. 법원은 최근에서야 소수자 차별에 있어서 인권 조약들이 갖는 영향력을 명확히 하는 판결들을 내리기 시작했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의 (과도한) 사용과 비차별의 권리와 같은 충돌하는 권리를 조율해야만 하며 이는 소수자들의 내재된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소수자 집단이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해 국내 법적 구제 절차를 완료하는 데에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아프리카 연합 (AU):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위원회는 소수자 권리를 포함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감시하는 아프리카 지역기구다. 위원회는 1986년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이 채택된 이후 활동을 시작했다. 아프리카 인권헌장("반줄 헌장")은 전문에 "현실과 인민의 권리에 대한 존중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헌장은 소수자 보호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을 담고 있지 않다. 2006년부터 **아프리카인권재판소**는 반줄 헌장 관련 판결을 내리는 사법 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미주기구 (OAS):

미주인권재판소와 **미주인권위원회**는 미주인권협약을 강제하고 협약의 내용들을 해석하기 위해 **미주인권기구**의 인권 보호 시스템을 만들었다. 비록 협약 자체가 소수자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래에 제시한 사례들은 소수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어서의 법원 판결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Saramaka족 : 그들의 땅을 사용할 권리에 대해 법적 정체성을 인정받음

2007년, 역사적인 "Saramaka족 v. Suriname" 판례에서 미주인권재판소는 처음으로 자결권을 포함해, 인민들의 집단권을 언급한다. Saramaka 족을 개인들의 집단이나 공동체로 인식하는 대신, 법원은 Saramaka족이 공동의 법적 정체성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고 판결했다. 미주인권재판소는 처음으로 Suriname주가 Saramaka족의 땅과 자원에 가한 환경적 피해에 대해 선주민 혹은 부족 사람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20세기에, Suriname 주는 Saramaka족이 300년 넘게 생존의 터전으로 삼아온 땅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Saramaka족은 이러한 위협에 맞서 대응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 말, Saramaka족은 그들의 땅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고 미주인권위원회에 그들의 사건을 다뤄달라고 청원했다. 이 청원에 기반해 위원회는 Suriname주정부에게 주장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모든 벌목과 광산 채굴을 멈추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사전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미주인권재판소로 넘겨졌다. 재판부는 Saramaka족에 대해 "선주민들과 공통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가의 다른 공동체들과는 다른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인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특히 그들이 선조들의 땅과 맺고 있는 관계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를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들 자체의 규범, 전통 혹은 관습에 의해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나아가 법원은 "정부는 명시된 영토에 대한 Saramaka족 구성원들의 공동 재산권을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며,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채택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또한 숲이나 강과 같이 전통적으로 Saramaka족들이 사용해 온 천연 자원들은 집단으로서 그들의 신체적 그리고 문화적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러한 천연 자원들은 미주헌장이 보호 범위 내에 속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들

의 소유권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2007년, 그들의 권리를 위해 싸운 지 10년이 지난 후에야 Saramaka족은 정의를 되찾을 수 있었다.

(출처: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2007. Case of the Saramaka People vs. Suriname of 28 November 2007. Richard Price. 2009. Contested Territory: The Victory of the Saramaka People vs. Suriname)

국제적인 압력 : 정부 간 기구와 비정부기구, 그리고 언론의 역할

유엔, 유럽평의회와 같은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로부터 가해지는 국제적인 압력은 소수자 권리 이행을 촉구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이익 집단의 압력, 국제법 체계, 조약 그리고 권고들은 의사 결정자들이 민감성을 지니도록 만들고, 이는 이러한 법적 조치와 인권 기준에 대한 이행으로 이어진다. 비정부기구들은 이주민들과 소수자들의 통합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럽 평의회는 비정부기구들이 직접적으로 혹은 그들의 국내 연대체를 통해 갈등 상황과 분쟁의 원인에 가까이 접근해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비정부기구들은 중재 과정에 참여하고, 소수자들의 권리가 무시되거나 침해되었을 때에 국제 및 국내 여론이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하였다. 비정부기구들은 연구 활동, 보고서 발행, 그리고 소수자 집단을 위한 채널 및 플랫폼으로 활동하는 한편 동시에 소수자 관련한 상황에 대해서 정부 및 정부 간 기구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수자 보호 분야에 있어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이들의 역할은 유엔 인권최고대표부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부는 이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비정부기구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소수자들의 보호를 증진시킨다:

- 관련 국제 문서의 조항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국내 정책을 마련하도록 촉구
-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서 소수자와 관련된 국제 결의안과 협약을 이행하도록 하는데 기여
- 다양한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소수자 권리 침해 사례와 관련된 정보 제공 (예. 인권위원회와 소수자 보호와 차별 금지에 대한 소위원회)
- 소수자 상황에 대해 자세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소수자들의 발전과 유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 제시
- 소수자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과정이나 정부 보고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기여
- 심각한 침해 사례에 대해 조약 기구가 주목하도록 하며 위원회들의 결정이나 권고 이행에 기여함 (출처: Claudia Mahler. 2009. Is Human Rights Education a Means of Supporting

Minorities?)”

☞ 모범 사례

위에 언급한 행위자들 외에도, **언론** 또한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함으로써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언론은 소수자들의 필요에 대해 다수 사회 구성원들과 정치적 의사 결정권자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은 또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만들어내거나 장려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으며 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거나 선정적인 이야기들을 퍼트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자들이 그들 스스로의 언론을 경영할 기회나 주류 언론에 적절하게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는 것은 중요하다.

☞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인권 교육은 인권에 대한 존중, 인권 지식, 그리고 인권을 이행하는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이다. 인권 교육은 교육권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따라서 모든 교육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인권 교육의 실질적 측면은 지식의 전달, 의식 제고, 기술 구축, 그리고 인권이 이해받고 존중받으며 보호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소수자에 속한 개인들이 다수에 속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정체성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다. 각각의 정체성은 소중하며 소수자에 속한 사람들과 다수자에 속한 사람들 모두 그들의 특정한 인종, 종교, 그리고 언어적 특성을 보유하고 발전시킬 권리가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에 대해 배우고, 이에 관한 편견을 없애는 것이다. 소수자와 다수자의 정체성과 언어적, 인종적,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존중은 중요한 자산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문화에 익숙해지고 많은 언어를 아는 것이 한 사회에게도 가치 있는 일이며, 개인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인권 교육의 다른 측면은 인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사람들이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강제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소수자 권리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에 대해 알려야 한다. 차별 사건들과 관련하여, 우리는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정부 관계자를 알아야 하고 어떻게 이러한 인권 침해, 특히 소수자 권리에 대한 침해를 알릴 수 있을지 알아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소수자 권리 침해에 대한 내

용을 언론, 유능한 국내 및 국제 법원과 당국에 알리거나 유엔 혹은 관련된 비정부기구를 통해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다. 우리는 소수자 권리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인권 교육과 모든 개개인의 헌신은 소수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된다.

Theodore Orli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수사적인 국제인권법을 실질적인 현실로 만들어나가야만 한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관계가 인권 장치들과 국제 조약들이 오랫동안 보호하고자 해 온 존엄성을 위해 인권법을 활용해야 할 때 그러하다."

무엇보다도 인권 교육자들은 인권과 소수자 권리에 대한 교육을 대중들과 정부 관계자들 뿐 아니라 소수자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수자들은 그들의 정당한 주장에 무감각한 다수자들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출처: Claudia Mahler, Anja Mihr, Reetta Touvanen (eds.) 2009.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and the Inclusion of National Minorities; Theodore Orlin. 2009. Minorities and Human Rights Education. Human Rights Law as a Paradigm for the Protection and Advancement of Minority Education in Europe).

☞ 교육권

알면 좋은 내용

1. 모범 사례

국제 소수자 옹호 그룹 (Minority Rights Group International, MRG)

MRG는 소수자 보호 분야에서 독보적인 비정부기구다. 이 단체는 전 세계에 있는 선주민들과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MRG는 특히 소수자 공동체와 함께 활동하며 그들의 권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과 트레이닝을 제공한다. 또한 소수자들을 위해 정부와 유엔에 로비 활동도 펼치며 소수자 이슈에 대한 보고서도 발행한다. 이를 통해 MRG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소수자들과 선주민들의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고군분투한다. 캠페인을 통해 MRG는 소수자나 선주민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를 없애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MRG의 사법 프로그램은 소수자 권리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방법이다. MRG의 내부 설명에 따르면 단체의 이러한 활동은 "소수자 공동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강력하고 결합력 높은 사회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한다고 한다. MRG는 또한 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MRG는 60개국의 150개가 넘는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으며 평화로운 공존과 지속가능한 사회 변화를 증진시키는 것과 관련해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트레이닝과 교육, 사법 케이스, 출판, 그리고 언론을 통해 MRG는 소수자들과 선주민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대한 권리,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권리, 교육과 고용에의 동등한 기회 그리고 공적인 삶에 전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다. MRG는 중앙 아프리카의 바트와족, 유럽의 로마족, 이라크의 기독교인들과 같은 다양한 소수자 공동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 MRG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협의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위원회의 옵저버 자격을 갖고 있다.

유럽 로마족 권리 센터 (European Roma Rights Centre, ERRC)

이 센터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제 비정부기구다. ERRC는 유럽 내 로마족 실태를 모니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ERRC는 인권침해를 당한 로마족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럽 각국에서 온 변호사들을 위한 워크숍을 조직하며 참가자들에게 관련 법적 메커니즘을 익숙하게 느끼도록 한다. 이 모든 것들은 로마족들과 그들의 변호사들로 하여금 그들의 인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하기 위함이다.

저사용 언어 유럽 사무국 (European Bureau for Lesser Used Languages, EBLUL)

EBLUL은 유럽 의회와 몇몇 소수자 단체 대표들에 의해 1982년 더블린에 설립된 비정부기구다. EBLUL은 유럽의 언어와 언어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EBLUL은 유럽 위원회, 지역과 지방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유럽 의회, 유럽 평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EBLUL는 유럽 내 소수 언어 및 지역 언어를 증진시키고 로비하는 활동을 통해 많은 중요한 업적을 이뤄냈다. EBLUL의 활동 덕분에 저사용 언어 사용자들 사이의 협력과 조율이 발전할 수 있었다. 학교 프로젝트인 "유로스쿨" 덕분에 10개 언어 공동체로부터 온 400명 이상의 십대들이 다양한 학교 프로젝트를 통해 다른 십대 학생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다. 나아가 EBLUL은 소수자들과 소수 언어에 대한 이미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캠페인도 진행했으며 "Eurolang"이라는 언론사를 설립해 소수자들에 대한 기사를 다양한 언어로 출판하고 있다. 나아가 소수자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도 구축했다. EBLUL은 지역 혹은 소수 언어를 위한 유럽 헌장의 초안과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 초안을 작성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EBLUL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유네스

코 그리고 유럽 평의회 옵저버 자격을 갖고 있다.

남아프리카 의회 내 소수자 대표

한 국가의 정치적 공간에서의 소수자들의 효과적인 참여는 소수자 보호와 분쟁 방지를 위한 주요한 요소다. MRG가 지적한 바와 같이, 소수자들의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삶에의 적극적인 참여는 소수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노력들을 지지해줄 수 있다. 또한 소수자들의 이러한 참여는 공동체들 간의 의견 불일치가 폭력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을 경우에, 안전장치로 작동할 수도 있다. 비정부기구에 따르면 남아프리카의 소수자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차기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 정책은 남아프리카 의회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중 가장 다양한 인종들이 참여하고 있는 의회로 만들어 놓았다. 입법부 내 소수자 대표성 랭킹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MRG의 세계 소수자 현황에 관한 2007년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높은 순위의 남아프리카를 시작으로 남비아와 탄자니아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은 인종에 기반한 권력 배분과 의회에서의 인종 대표성에 관해서는 가장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 “세계에서 소수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20개국 중 반”이 아프리카 국가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놀라운 현상이다. MRG에 따르면, “아프리카 국가들 중 세 곳이 서양의 잘 발달되었다는 민주주의 국가들을 제치고 소수자들의 정치 대표성을 세계에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2. 동향

“기존의” 그리고 “새로운” 소수자들, 그리고 “새로운” 소수자에 대한 소수자 보호 시스템의 적용

이주민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비록 그들이 주류 사회와는 다른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언어적 특징을 보인다고 해도 전통적으로 정의된 소수자의 개념에서는 벗어난다. 소수민족 보호를 위한 기본협약에 대한 자문위원회(FCNM)은 소수민족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는 대신, 협약이 적용되어야 할 집단이 어떤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협약의 당사자들이 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전체 인구에서 비시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는 이를 “협약의 조항별로 해당 협약이 적용되어야 하는 집단에 소속된 개인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정부는 향후 적절한 시기에 관련된 사람들과 이에 대한 협의과정을 거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자문위원회는 역사적인 소수 민족들에게 조항들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이는 협약의 정신에 따른 소수자 보호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새로운” 소수자에 속하는 사람들도 교육권,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같이 협약에 명시된 기본권은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양성과 화합

다양성, 화합, 시민권, 그리고 참여의 개념이 국내 사회 및 국제 사회에서 정책적인 논의에 사용되면서, 이러한 개념들이 점차 새로운 의미를 얻고 있다. 예를 들어 다양성의 개념은 유럽 정책과 법 적용에 있어서 점차 많이 사용되고 있고 주목도 많이 받고 있다. 평등은 통합 정책과 소수자 보호의 기본적인 바탕을 구성한다. 다양성의 개념은 인구 개발에 의해 만들어진 통합 정책 내에서 소개되어왔다. 또한 이는 점차적으로 다원화 되어가는 사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할 과정으로 이해되었다. 다문화주의는 한 사회에 대한 묘사나 권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반드시 다문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서 그 개념이 사용되었다. 현재는, 다양성은 사회를 형성하는 다양한 가치, 생활 방식, 문화, 종교, 언어에 대한 의미로 논의되고 있다. 유럽 평의회는 다양성의 개념에 대한 6개의 다른 설명 혹은 적용을 제안하였다. 첫째로, 다양성은 일반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이주자들이나 정착한 소수자 공동체의 부산물로만 사용되지는 않는다. 둘째, 해당 단어가 이주자들이나 소수자들에게 적용될 때는 차이로 인한 문제점이 아닌 가치를 강조해야 한다. 셋째, 다양성은 문화적 균질화(글로벌 문화)와 다양화(국내적, 지역적 문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인지한다. 넷째, 다양성은 사람들이 보통(그리고 점점 더) 다양한 정체성, 소속 집단, 문화적 소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다섯째, 다양성은 미리 정해진 소속이라기보다는 자발적인 소속감에 대한 것이다. 여섯째, 다양성은 보편적 가치와 특정한 가치, 보편적 문화와 특정한 문화로 나누는 이분법에 창의적으로 대응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가치들은 다양한 사회의 개념을 지지한다. 화합이라는 단어는 고용, 사회복지 그리고 빈곤의 맥락 속에서 나왔다. (사회적) 화합은 사회 붕괴, 사회적 배제 그리고 특정 집단의 소외에 대항하는 정책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들은 기본적인 사회권의 보호와 증진, 사회적 보호와 복지의 제공, 주거에 대한 보편적 접근, 위험에 처한 특정 집단의 구체적인 요구에 대한 대응, 교육, 트레이닝, 평생 교육을 통한 고용 시장에의 진입 확장을 포함한다. 따라서 사회 화합 정책은 사회적 분열 과정을 상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Council of Europe. 2000. Diversity and Cohesion, New Challenges for the Integration of Immigrants and MInorities)

소수자 권리와 관련한 오랜 투쟁과 소수자 권리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와 증진에 관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인권법의 발전 단계에 있어서 소수자들의 권리와 이를 위한 노력이 중요한 단계에 와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 소수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는 것은 중요하다. 성공과 실패는 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방향으로 회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민족주의와 자민족 중심주의를 배제하고 인권법 패러다임 속

에서 논의되는 것은 중요하다.

3. 연혁

1920 국제연맹

1965 인종차별철폐협약

1966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1966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1989 아동권리협약

1990 인간적 차원에 관한 코펜하겐 회의 문서(유럽안보협력기구)

1992 지역 혹은 소수 언어를 위한 유럽 헌장

1992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집단의 권리에 관한 UN 선언에

1995 유럽 평의회 소수 민족 보호를 위한 기본 협약

1994 유엔인권이사회 소수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일반논평 No.23

2000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 기준에 대한 권리 일반논평 No.14

2005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집단의 권리에 관한 UN 선언에 대한 소수자 실무그룹 논평

200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유네스코 협약

2007 인권이사회의 소수자 문제 포럼 (결의안 6/15)

추천 활동

활동 I. 편견과 차별에 맞서기

PART I : 소개

편견, 차별,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그리고 인종중심주의를 찾아내는 것은 인권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형태의 도덕적 배제는 인간 존엄성을 부인하는 문제의 근본적인 징후이며 다양한 종류의 차별, 특히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로 나타난다. 차별로 인해 고통받는 집단에는 소수 인종, 소수 언어, 소수 종교를 비롯해 다양한 소수자들이 포함된다. 편견과 무지는 소수 인종의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차례차례 다른 형태의 차별도 장려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PART II : 일반적인 정보

활동유형: 그룹 토의

목적과 목표: 차별의 특징과 과정을 돌아보고 차별의 바탕이 되는 편견을 살펴보기. 편견, 차별과 관련된 소수자 집단의 문제를 파악하기. 국내 및 국제 인권기준에 따라 소수 인종 소속의 사람들이 차별을 당했을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을 권고하기.

대상그룹: 청년과 성인

그룹크기: 8~25명. 작은 그룹 토의와 전체 토의

소요시간: 60분

준비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전문, 칠판

관련기술: 의사소통, 협력, 다른 입장을 검토하기

PART III :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지시사항

촉진자는 차별과 편견의 차이를 설명하고 참가자들이 그 관계를 이해하게 하는 데에 있어서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 이 주제는 많은 이들에게 매우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표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촉진자는 입장들을 "고치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1. 참가자들에게 그들 국가에 존재하는 소수 인종에 대해 물어본다. 그 중 그들에게 익숙한 집단이 어떤 것인지 묻고 해당 집단이 편견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지 설명하게 한다. 소수자를 찾은 후 (예. 베트남 족) 이를 칠판에 적는다.

촉진자의 조언: 차별과 편견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편견이 차별로 이어진다는 것을 설명한다. 편견은 믿음, 감정 그리고 태도를 수반한다. 편견의 감정은 어떤 사람들이 열세하며 따라서 존엄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뤄지거나 심지어 경멸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믿음이나 태도로부터 나온다. 편견은 습관, 관습, 그리고 태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조직적인 억압의 형태로 자라난다. 편견과 악감정은 종종 여성을 상대로 나타나지만 난민, 실향민, 다양한 종교, 인종, 언어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타난다. 편견은 이치에 맞는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사회, 무지가 타인에 대한 도덕적 배제 및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공정한 처우를 받을 권리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지는 사회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배제와 부정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지한 것이다. 편견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사람들이 소수자들을 열등한 집단이라는 뜻을 담아 나쁜 단어로 부르거나 고정관념을 사용할 때 명백하게 드러난다. 차별은 공평하지 않은 규칙에 기반한 행동을 수반한다. 차별의 행위는 한 지배적인 집단이 다른 집단의 기본권과 다른 집단이 사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차별은 차별받는 대상의 공평한 권리와 인간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차별 행위는 인간의 평등성을 부정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특권과 이익을 부여하는 동시에 다른 집단에게는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안겨주기 때문이다. 편견이 차별을 낳고, 차별이 착취와 탄압을 낳는다. 관습과 전통이 착취와 탄압을 강화할 때, 평등을 위한 투쟁은 더욱 어려워진다.

2. 참가자들에게 편견과 차별의 개념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청한다.

3. 위에서 선정한 소수자들의 이름이 적힌 칠판을 본다. 참가자들에게 해당 소수자들에 대한 전형적인 고정관념에 대해 묻는다. 이러한 편견들이 어떻게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지 설명한다.

4. 참가자들이 차별 행위를 구별하도록 한다. 교육이나 고용 분야에서의 배제와 부정 등이 그 예다.

5. 참가자들을 소그룹으로 나눈 후 각각 다른 소수 인종을 다루게 한다. 각 그룹은 다음과 같은 두 사람을 지정한다. 1. 해당 소수자 집단에 대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과 태도에 대해 보고하는 사람 (여기에는 해당되는 사람들의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나쁜 이름이나 고정관념이 포함된다). 2. 해당 소수자 집단에 대한 배제, 착취, 억압 행위나 차별의 문제점에 대해 보고하는 사람. 두 명의 보고관들은 그룹 토의의 결과를 전체 그룹에게 발표한다. 참가자들이 편견을 담당하는 보고관에게 편견이 어떻게 차별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하도록 한다. 참가자들이 차별을 담당하는 보고관에게 편견이 어떻게 차별의 근거가 되는지 설명하게 한다. 이 과정은 상대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촉진자는 그룹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제대로 토의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촉진자의 조언: 참가자들에게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사회적으로 어떤 집단을 열등하게 여기거나 그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설명할 것. 인권법은 존중과 존엄을 가지고 소수자들을 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어떠한 형태의 차별이나 불관용은 존중과 존엄을 침해하는 것임.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심각하게 다뤄져야 함.

후속활동 :

소수자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정의를 찾을 수 있음을 논의함.

- 법원에 제소
- 인권 침해를 경찰에 보고
- 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 지원 기구와 상담
-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할 능력이 있는 인권 비정부기구에게 알림
- 뉴스,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언론에 알림
-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에게 알림
- 해당 혐의에 대해 행동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이웃 집단에 알림
- 지방 공동체를 위해 인권 교육 세미나를 조직함

참가자들에게 위에 언급된 방법들을 염두에 두고 어떤 구제 절차를 권고할 것인지 다시 논의하도록 요청한다. 그들의 권고에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아래와 같은 조항을 염두에 둘 것을 요청한다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6조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 이 점에서, 법은 모든 차별을 금지해야 하고 모든 인간에게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신앙, 종교적 기타의 견해, 출신국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이유로 행해지는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동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보증해야 한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7조

민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그러한 소수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은-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 그들 자신의 종교를 신봉하고 그 종교의식을 행할 권리, 혹은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출처: George J. Andreopoulos, Richard Pierre Claude. 1997. Human Rights Education for the Twenty-First Centry)

활동 II. 소수자를 다루는 다섯 가지 방법

PART I: 소개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를 일상의 다양한 상황들을 경험하는 소수자 집단의 일원이라고 가정한다. 우리가 소수자 혹은 다수자로서의 변화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 각기 다른 상황에서 각각 다른 집단의 소속인 것은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 어떻게 제한된 권리와 자유에 대한 문제를 다룰 수 있을까?

제기된 문제들: 다수-소수 관계, 권력과 권위, 평등한 권리, 다수의 결정 - 소수의 권리 존중

PART II: 일반적인 정보

활동유형 : 그룹 작업과 토의

목적과 목표: 한 개인이 소수자의 입장에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타인에 대한 차별적 행동을 구별하기,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는 것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 경험하는 딜레마를 경험해보기, 일상에서 소수자들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에 대해 배우기.

대상그룹: 청소년과 성인

그룹크기: 상관없음. 5~6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그룹으로 나눔.

소요시간: 90분~150분

준비물: 소수자들을 다루는 다섯 가지 방법 문서, 플립차트, 소규모 그룹과 전체 토의를 위한 방

관련기술: 믿음, 자기 평가, 자아 인식. 초급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음!

PART II: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지시사항

"소수자들을 다루는 다섯 가지 방법" 문서를 배포하고 이에 따라 지침을 알려준다. 소규모 그룹으로 나눈다.

상황을 분석한다(5분~10분).

그룹이 결정을 내린 후에 참가자들은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다. 토론 과정에서 결정 과정과 결정 내용에 관해 논의해볼 수 있다.

촉진자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과 결정을 조정하고 작업할 사례들을 제안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다.

문서 : 소수자들을 다루는 다섯 가지 방법

당신이 소수자 입장인 경우 맞닥뜨리게 될 1~3가지 정도의 일상의 상황에 관해 생각해보고, 메모를 한다. 해당 상황이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고 당신이 가정한 상황을 그룹 구성원들과 나눈다.

그룹 멤버들은 당신에 반하는 다수자의 입장에 설 것이다. 그들은 아래 다섯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 해당 상황을 묘사해야 한다.

- 소수자를 그룹에서 배제할 것
- 소수자들에게 다수자들의 의견을 설득시킬 것
- 소수자를 무시할 것
- 소수자들이 그들 스스로 행동하고/결정하게 할 것
- 소수자들에게 다수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다른 그룹 멤버들은 모두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 당신은 이 경우 다수자의 입장에 설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위에 언급된 대안들 중 하나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설명해서는 안 되고 결정된 내용만 공개해야 한다.

응용, 시나리오들:

다수의 결정: 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관해 토론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어떻게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을까?

미결정: 다수자들은 위의 5가지 중 한 가지 방법을 결정하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보고 및 평가

보고 및 평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소수자의 감정적 지각

- 선택된 결정의 특성

- 의사 결정 과정

(출처: Ulrich Maroshek-Klarmann, Oswald Henschel. 1997. Miteinander - Erfahrungen mit Betzavta)

참고자료

Alfredsson, Gudmundur. 2007. *Citizenship and the definition of the term 'minority'*, In: Jørgensen, Rikke and Klaus Slavensky. Implementing Human Rights - Essays in Honour of Morten Kjærum. Copenhagen: 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pp. 363-371.

Andreopoulos, George J. and Richard Pierre Claude. 1997. *Human Rights Education for the Twenty-first Century.*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Baldwin, Clive, Chris Chapman and Zoe Gray. 2007. *Minority Rights: The Key to Conflict Prevention.* London: Minority Rights Group International. Available at: www.minorityrights.org/download.php?id=174.

Benedikter, Thomas. 2006. *Minorities in Europe. Legal Instruments of Minority Protection in Europe - An Overview.* Bozen/Bolzano: Society for Threatened Peoples. Available at:

www.gfbv.it /3dossier/eu-min/autonomy-eu.html.

Brander, Patricia, Ellie Keen and Marie-Laure Lemineur. 2002. COMPASS, A Manual on Human Rights Education with Young People.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Brunner, Lisl. 2008. *The Rise of Peoples' Rights in the Americas: The Saramaka People Decision of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apotorti, Francesco. 1979. *Study on the Rights of Persons Belonging to Ethnic, Religious and Linguistic Minorities, UN Doc. E/CN4/Sub2/384/Rev 1.* New York: United Nations.

Council of Europe (ed.). 2004. *Mechanisms for the Implementation of Minority Rights.*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Council of Europe (ed.). 2000. *Diversity and Cohesion. New Challenges for the Integration of Immigrants and Minorities.*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Daes, Erica-Irene. 2000. *Protection of the World's Indigenous Peoples and Human Rights.* In: Symonides, Janusz (ed.) Human Rights: Concept and Standards. Ashgate: UNESCO Publishing, pp. 301-325.

Devroye, Jennifer. 2009. *The Case of D.H.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In: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vol. 7/1, pp. 81-101. Available at: www.law.northwestern.edu /journals/jihr/v7/n1/3/Devroye.pdf.

De Varennes, Fernand. 2004. *Using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o Protect the Rights of Minorities.* In: Council of Europe (ed.). Mechanisms for the Implementation of Minority Rights.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pp. 83-105.

EURACResearch (ed.). 2003. *LISI - Legal Indicators for Social Inclusion of New Minorities generated by Immigration.* Bozen/Bolzano: EURAC.

European Commission (ed.). 2004. *The Situation of Roma in an Enlarged European Union.* Luxembourg: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European Commission against Racism and Intolerance (ed.). 2001. *Practical Examples in Combating Racism and Intolerance Against Roma/Gypsies.* CRI (2001) 28.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2007. *D.H.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No. 57325/00 of 13 November 2007.*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ed.). 2009. *EU-MIDIS - European Union Minorities and Discrimination Survey. Main Results Report.* Available at: http://fra.europa.eu/fraWebsite /attachments/eumidis_mainreport_conference-edition_en_.pdf.

Farkas, Lilla. 2008. *The Scene After Battle: What is the Victory in D.H. Worth and Where to Go from Here?.* In: Roma Rights Journal, 1/2008, pp. 51-65.

Hannum, Hurst. 1996. *Autonomy, Sovereignty, and Self-Determination. The Accomodation of Conflicting Right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2007. *Case of the Saramaka People v. Suriname of 28 November 2007, petition No. 12.338.* Available at: www.forestpeoples.org/sites/fpp/files/publication/2010/09/surinameiachrsaramakajudgmentnov07eng.pdf.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02. *A Handbook for Minorities and Indigenous Peoples.* London: MRG International. Available at: www.minorityrights.org/download.php?id=59.

Kamberi, Mabera. 2005. *Decade of Roma Inclusion 2005-2015.* In: Kleppmann, Ulrich, Eben Friedman and Ljupka Siljanoska (eds.). Minorities in Democracy. Flensburg: Konrad Adenauer Foundation/European Centre for Minority Issues.

Kenya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Centre for Minority Rights Development (eds.) 2006. *Report of the Round Table Meeting of Experts on Minorities and Indigenous People in Kenya.* Available at: www.chr.up.ac.za/chr_old/indigenous/documents/Kenya/Report/Minorities%20Report.pdf.

Klabbers, Jan. 2009. *Self-Determination.* In: Forsythe, David (ed.). Encyclopedia of Human Rights. Vol. 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418-427.

Li-ann, Thio. 2000. *Resurgent Nationalism and the Minorities Problem: The United Na\-tions & Post Cold War Developments.* In: Singa\-pore Journal of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2000/4, pp. 300-361.

Mahler, Claudia. 2009. *Is Human Rights Ed\-ucation a Means of Supporting Minorities?.* In: Mahler, Claudia, Anja Mihr and Reetta Toivanen (eds.).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and the Inclusion of National Minorities. Frankfurt/Main (et al.): Peter Lang, pp. 187-201.

Malloy, Tove. 2009. *Minority Rights - Overview.* In: Forsythe, David (ed.). Encyclopedia of Human Rights. Vol.3. Oxford: University Press, pp. 512-521.

Maroshek-Klarmann, Ulrich and Oswald Henschel. 1997. *Miteinander - Erfahrungen mit Betzavta.* Jerusalem/Gütersloh: ADAM Institut.

Minority Rights Group International (ed.). 2008. *African States are the most dangerous in the world for minorities, but South Africa comes top in a global list of best ethnic political representation - new report, 20 March 2007.* London: MRG International. Available at:

www.minorityrights.org/684/press-releases/african-states-are-the-most-dangerous-in-the-world-for-minorities-but-south-africa-comes-top-in-a-global-list-of-best-ethnic-political-representation-new-report.html.

Minority Rights Group International (ed.). 2007. *State of the World's Minorities 2007.* London: MRG International. Available at: www.minorityrights.org/684/press-releases/african-states-are-the-most-dangerous-in-the-world-for-minorities-but-south-africa-comes-top-in-a-global-list-of-best-ethnic-political-representation-new-report.html.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ed.). 2008. *OSCE High Commissioner on National Minorities - Factsheet.* Available at: www.osce.org/hcnm/75482.

Orlin, Theodore. 2009. *Minorities and Human Rights Education. Human Rights Law as a Paradigm for the Protection and Advancement of Minority Education in Europe.* In: Mahler, Claudia, Anja Mihr and Reetta Toivanen (eds.).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and the Inclu\-sion of National Minorities. Frankfurt/Main (et al.): Peter Lang, pp. 155-169.

Phillips, Alan. 2004. *The Framework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Minorities (FCNM).* In: Council of Europe (ed.). Mechanisms for the Implementation of Minority Rights.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pp. 109-127.

Price, Richard. 2009. *Contested Territory: The Victory of the Saramaka People vs. Suriname.* Available at: www.richandsally.net/files/Victory_of_Saramakas_vs_Suriname.pdf.

Thornberry, Patrick and María Estébanez. 2004. *Minority Rights in Europe. A Review of the Work and Standards of the Council of Europe.*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Toggenburg, Gabriel and Günther Rautz. 2010. *ABC des Minderheitenschutzes in Europa.* [ABC of the Minority Protection in Europe]. Vienna/Köln/Weimar: Böhlau/UTB.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1992.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Belonging to National or Ethnic, Religious and Linguistic Minorities, Resolution 47/135 of 18 December 1992.*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1985. *Kitok v. Sweden, case no. 197/1985 of 10 August 1988.*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1984. *Lubicon Lake Band v. Canada, case no. 167/1984 of 26 March 1990.*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1977. *Lovelace v. Canada, case no. 24/1977 of 30 July 1981.*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1998. *Fact Sheet No.18 (Rev.1), Minority Rights.* Geneva: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1993. *Possible ways and means of facilitating the peaceful and constructive solution of problems involving minorities. Final report submitted by Mr. Asbjørn Eide, UN Doc. E/CN.4/Sub.2/1993/34/Add.4 of 19 July 1993.* Available at: http://daccess-dds-ny.un.org /doc/UNDOC /GEN/G93/142/92/PDF/G9314292.pdf?OpenElement.

추가정보원

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www.achpr.org/

African Union: www.au.int/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www.humanrights.asia/

Decade of Roma Inclusion 2005-2015: www.romadecade.org

European Bureau for Lesser Used Languages (EBLUL): www.eblul.org

European Centre for Minority Issues: www.ecmi.de/

European Commission against Racism and Intolerance: www.coe.int/t/dghl/monitoring /ecri/default_en.asp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www.echr.coe.int/echr/

European Roma Rights Centre (ERRC): www.errc.org/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www.cidh.oas.org/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www.corteidh.or.cr/

Inter-American Institute for Human Rights: www.iidh.ed.cr/multic/defaultIIDHEn.aspx?Portal=IIDHen

Minority Rights Group International (MRG): www.minorityrights.org/

Open Society Foundations: ww.soros.org/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www.osce.org/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www.oas.org

OSCE High Commissioner on National Minorities: www.osce.org/hcnm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www.ohchr.org/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Basic facts about the UPR: www.ohchr.org/EN/HRBodies/UPR/Pages/BasicFacts.aspx

비호권

RIGHT TO ASYLUM

비호를 구할 권리

박해로부터 보호

강제송환금지원칙

>>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거나 비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14조 제1항

사례

"난민의 눈을 통해서"

"내 이름은 ZamZam M. Deg Ahmed이다. 나는 38살이고, 고향에서 쫓겨났다. 나는 소말리아 모가디슈에서 도망쳤다. 나는 여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모가디슈의 소말리아 여성들은...그들의 남편이나 아들들은 살해당하거나 쫓겨나 가족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남편을 본 것이 12개월 전이었다. 얼굴에 복면을 한 사람들이 우리가 자는 동안 집에 침입해서는 남편을 찾았다. 그들은 남편을 발견하지 못했다. 남편은 침대 아래에 숨어있었다. 그들이 떠난 후에, 남편은 집 밖으로 걸어나갔다. 그것이 내가 남편을 마지막으로 본 때이다. 우리는 기도 후에 아침 일찍 도망쳤다. 길에서 복면을 한 남자들이 우리에게 총질을 하기 시작했고, 트럭을 세우고 덤불 속으로 우리를 데려갔다. 그들은 우리에게 모든 걸 두고 나가라고 하였다. 나는 딸이 걱정되었다. 그 아이는 14살이고, 그 아이가 강간을 당할까 두려웠다. 나는 정말로 무서웠고, 아이들은 울었다.

이제 우리는 평화로운 곳에 도착했고, 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일자리를 찾고 싶다. 나는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서 자기를 돌보고 나를 지원할지,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된다. 자려고 할 때면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많은 일들, 엄청난 일들, 나라를 잃고, 불안하고, 여성들이 마주하는 문제들, 도망치고 쫓겨나고.. 그런 일들을 기억한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괴로울 것이다. 소말리아의 문제들, 그것들 때문에 나는 극한 분노를 느꼈다.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는가?"

38세의 ZamZam M. Deg Ahmed는 소말리아 모가디슈에서 온 10명의 아이의 엄마로, 가족 부양을 위해 큰 시장에서 건조 식품을 팔았다. 남편은 2010년 민병대의 살해시도 후에 도시를 떠났다. 그녀는 11월 아이들과 같이 트럭을 타고 도망쳐, 도중에 납치의 위험에서 살아남았다. 지금은 갈카요라는 북쪽 도시 교외 샹티타운에 살고 있다.(출처: UNHCR. 2011. Story Telling: Through the Eyes of Refugees)

"내 이름은 Lucy Juah이고, 케냐에 살고 있는 난민이다. 나는 1992년에 케냐에 왔는데, 지난 21년간 계속된 내전 때문에 수단에서 도망쳤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때는 우리가 쥬바에 있을 때, 수단에서 우리가 반군이라고 부르는 SPLM 사람들이 마을을 폭격하고 있을 때이다. 폭탄이 떨어질 때 주변의 모든 것들을 잘라내는 것 같았다. 나는 폭탄에 임산부 한 명의 몸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았다.

어디로 향할지 몰랐기 때문에 고국을 떠나는 것은 참 힘들었다. 정말 목적지를 몰랐다. 그냥... 그냥 피난 행렬에 끼어 걷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그래도 무언가를 떠나고 있다는 생각에 좋았다. 무언가, 아주 끔찍한 곳을 떠나 더 안전한 곳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언어를 모르는 곳에서 정착하기란 정말 어려웠다. 예를 들면 수단에서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도 아침인사를 하지 않는다. 그게 수단의 문화이기 때문이다. 수단에서는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 그런데 케냐에 도착하니 달랐다. 우리는 실내에 있었고, 문은 항상 닫혀있어서 아무도 볼 수 없다.

수단이 독립된 날 나는 우리 삶이 좀 달라질 것이라고 느꼈다. 나는 수단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고,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매월 집세를 지불하면서 괴로웠다. 이것이 제일 처음 든 생각이었다. 우리는 그냥 놀고 있는 땅을 갖고 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수단 여성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수단으로 돌아가고 싶다. 실제 실행하기는 아주 어려울 것이라는 것도 안다. 그래도 수단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한다. 다른 수단 여성들과, 내가 떠나온 다른 여성들과 생각을 나누고 싶다. 우리가 함께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것이다.

케냐에서 요즘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때문에 아이들을 케냐에 두고 수단으로 가는 것은 사실 좀 두렵다. 요즘 어른들도 납치되고, 아이들, 심지어 6살도 안된 아이들도 강간을 당한다. 항상 아이들이 안전하게 있는지, 아이들에 대해 염려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된다.

남편에게 편지를 썼다. 평화가 왔으니까, 어느 날 당신이 큰 나무 아래 앉아서, 손주들이 뛰놀고 있는 곳을 바라보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한다고. 우리가 지은 집에서.. 그리고 나는 그 아주 큰 나무 아래에 남편과 같이 앉아서 또 손주들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나는 내 삶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39살인 Lucy Juah는 1992년 수단의 내전을 피해 케냐로 가서 작은 기업을 운영하며 5명의 아이를 기르고 있다. 2011년 7월 남수단 독립 선거에 이어, 그녀는 남편과 함께 고향인 쥬바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아이들은 가장 큰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돌보며 모두 교육을 마칠 때까지 나이로비에 남기로 했다. (출처: UNHCR. 2011. Story Telling: Through the Eyes of Refugees)

"남편이 죽고 소말리아에서의 우리 삶의 방식이 파괴되어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느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은 주거지, 물과 안전이다."

Sara, 57세, 소말리아 시르코에서 온 난민이 2011년 "국경없는 의사회"와의 인터뷰에서

토론할 거리

1. 왜 ZamZam과 Lucy는 고향을 떠났는가? 그들이 자발적으로 고향을 떠났는가?

2. 그들과 그 가족들이 도망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3. 전시에는 어떤 인권이 위반될 것으로 보이는가?

알아야 하는 내용 😐!?

1. 소개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있어 세계는 여전히 불안한 곳이다. 현재 약 4천2백5십만 명의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의 지속적인 분쟁 혹은 새로운 분쟁의 결과로 강제적으로 쫓겨났다. UNHCR의 2011년 말 통계치에 따르면 이 사람들 중 천 5백 2십만 명은 난민, 8십 9만 5천명은 난민신청자, 2천6백4십만명은 국내피난민이다. 2011년 말, 2천5백 9십만 명– 천 사십만 명의 난민과 천 오백 오십만 명의 국내피난민–은 UNHCR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다.[22] 여기에다 4백 8십만의 팔레스타인 난민은 중동의 60여개 난민캠프에서 보호되고 있다. 난민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50% 이상의 난민이 아시아에, 20% 가량은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대부분의 난민(약 4/5)은 개발도상국이 보호하고 있다. (출처: UNHCR. 2012. Global Trends 2011) ☞ 무력 분쟁 상황에서의 인권

역사적 발전

난민의 존재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난민 또는 비호를 구할 권리가 문헌에서 확인되는 사례는 서기 6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히, 성소(聖所)에서 비호를 구할 권리는 켄트의 에델베르트왕이 처음으로 성문화하였다.

1951년 제네바난민협약과 1967년 의정서는 국제난민보호에 있어 근본적인 교리이며 난민과 비호신청인의 권리장전으로 여겨진다. 난민협약은 난민의 정의에 관련된 원칙, 난민으로 인정된 자의 권리, 또 예를 들면 누가 난민지위를 부여받아서는 안 되는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동 협약은 1951년에 서명되어 1954년에 발효되었다. 애초에 협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난민 보호에 관해서만 규정하였으나, 이러한 지리적 제한은 1967년 의정서에 의해 없어지게 되었다. 2012년 6월 기준, 동 협약에는 145개국, 의정서에는 146개국의 당사국이 있다.

22) 유엔난민기구 2014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선진산업국가에 제출된 신규 난민지위 신청은 86만6000건으로 2013년의 59만6600건보다 45%나 증가했다.

비호와 인권

비호를 구할 권리는 인권이다. 한 사람이 자신의 출신국가에서 도망쳐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신청할 때, 이 사람에 대한 처우는 수용 국가의 재량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과 상호 의무에 따라 규율된다.

인권의 하나로서 비호권은, 제네바난민협약 외에, 세계인권선언 등 다수의 국제법 문서에 담겨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4조는 “제1항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거나 비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항 이러한 권리는 진실로 비정치적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경우에는 주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나아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6조 생명권, 제7조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의 금지 규정은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가 발전시킨 정의에 따른 강제송환금지원칙의 틀을 잡았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의 금지에 관한 협약” 제3조 또한 강제송환금지원칙을 공식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원칙에 따르면, 어느 누구도 고문을 당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 추방 또는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 ☞ 고문금지

비호와 인간안보

비호권은 인간안보와 불가분으로 연결되어 있다. 출신 국가에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공포나 결핍으로부터 자유롭게 그 곳에서 살 수 없다. 따라서 박해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고 그들의 삶과 신체적 완전성을 보호하는 것은 인간 안보의 핵심이다. 다른 나라에서 박해를 피해 비호를 구하고 향유할 권리와 박해를 당할 국가로 송환되지 않을 권리는 생존권, 고문이나 그 밖의 잔혹한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로부터의 자유, 박해로부터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 및 안전 등을 포함한 인권을 모든 사람이 향유하도록 보호하고 보장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서약을 반영한다.

2. 정의와 설명

국제법의 정의에 따른 난민

제네바난민협약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또는 상주 국가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 또는 상주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

적국이나 상주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결과적으로, 여기 언급되지 않은 사유로 비호를 신청하는 사람은 제네바난민협약의 메커니즘에 의해서는 보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듯 제한된 보호의 범위가 수백만의 사람들이 경제적 사유로 고국을 떠나 수용국가에 난민신청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비호신청자

난민과 비호신청인(난민신청자)의 용어 차이에 대해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비호신청인은 자신이 난민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난민절차에서 그 주장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 국가 난민시스템은 난민신청인이 실제 어떠한 경우에 국제적 보호 대상인지, 즉, 누가 비호를 부여받을 자격이 있는지, 이에 따라 제네바난민협약 상 난민으로 인정되는지를 결정하는 책임을 부여받았다.

난민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은 난민신청인은 출신국가로 송환될 수 있으나, 이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이나 여타 국제적 보호 메커니즘(보충적 보호)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나는 다른 여섯 명의 가족과 함께 15일 전에 여기 도착했다. 이 새로운 도착지에 조그만 땅이 있지만 집을 지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플라스틱이나 텐트도 없다. 등록카드가 있지만 여태껏 식품 배급을 받지 못했다. 여기는 안전하지 않다. 밤에는 야생동물이 아이들을 먹을 것이고, 지역 주민들은 이 땅이 자신들의 것이라며 폭력을 행사하려고 들었다. 안전하지 않은 곳에는 생명도 없다."
>
> 파티마, 34세, 케냐로 도망친 소말리아 모가디슈 출신의 난민, 2011년 국경없는 의사회와의 인터뷰에서

사실상 난민(prima-facie refugees)

분쟁이나 일상화된 폭력으로 인해 종종 난민의 대량 이동이 발생한다. 개인에 대한 박해와는 달리, 그러한 대량 이동이 일어나면 인근 수용 국가로 국경을 넘어 피신한 개개인의 난민에 대한 개별난민면접은 불가능하다. 보통 그와 같은 피난을 유발한 상황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면접은 필요치 않다. 이러한 난민은 일반적으로 '사실상 난민(prima facie refugee)'으로 불린다. (출처: UNHCR. Asylum-Seekers)

대안적 국내피신

비호신청인이 그가 살던 지역에서 충분한 근거가 있는 박해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또한 국내

에서 재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대안적 국내피신)이 있을 수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난민은 자신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박해를 받을 것이며, 출신국가의 다른 곳에 이주하더라도 이 박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 사실, 박해의 공포는 특정 국가의 전 영토에서 존재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비호신청인이 출신국가의 다른 지역에 이주함으로써 박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비호가 거부 받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출신국가 내 다른 지역에 이주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출처: UNHRC. 2011. Handbook and Guidelines on Procedures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Refugee Status under the 1951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Immigration Advisory Service. 2009. Internal Flight Alternative)

무국적자

다양한 이유로 인해 어떤 개인은 특정 국가의 시민권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국적보유에 따른 기본적 안전망을 갖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무국적자로 불린다. 국가의 시민권이 없이는 자신의 신분과 혈통을 부여하는 법적 문서를 얻는 것이 아주 어렵다. 이에 따라 무국적자들은 주거와 일자리를 얻는데 문제를 겪고, 차별을 당하고 때로 사회 주변부에서 위태로운 삶을 산다. 전 세계의 무국적자의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UNHCR 보고서는 그 수를 약 1천 2백만명으로 추산한다. (출처: UNHCR. 2011. Global Report 2011)

이주민

(난민)보호의 사유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주민들은 난민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네바 난민협약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히 난민협약은 경제적 사유로 고국을 떠나게 된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난민협약상 열거된 5개의 근거에 따른 박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주민들은 비호를 부여받을 권리를 갖지 못하였지만, 수용한 국가에서 그들에게 거주할 권리를 줄 수는 있다.

추방과 가족 결합

어느 사람이 (난민협약에 근거한 난민의 범주를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호를 부여받지 못하거나/ 다른 형태의 국제적 보호를 받지 못할 때, 국가는 그 사람이 출신국가로 추방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난민협약상 사적인 삶과 가족의 삶에 대해 존중을 받을 권리에 따라 그 사람의 추방은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될 수 있다.

자발적 귀환과 강제추방

추방이 용인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자발적으로 출신국가로 돌아가게 하거나 강제로 추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난민이나 다른 형태의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하고, 추방이 용인될 수 있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 나라를 떠난다. 국가는 자발적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출신 국가로 강제로 돌려보낼 수 있다.

강제송환금지원칙과 보충적 보호 조치

추방이나 강제송환으로부터 보호될 난민의 권리는 난민협약 제33조,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에 규정되어 있다.

이 원칙이 국제관습법의 한 부분이므로, 난민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도 이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 원칙은 비호신청인이 난민협약에 따라 완전한 난민지위를 받지 않았을 때에 그들이 출신국가로 송환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비호신청인과 난민의 안전과 행복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 고문금지

난민지위 박탈

세계인권선언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비호를 구하고 향유할 권리는 신청인이 비정치적 범죄나 국제연합의 원칙과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는 주장할 수 없다. 난민협약은 개인이 난민지위를 받을 기회로부터 배제되는 특정 기준을 열거하고 있다.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범죄, 평화에 반한 범죄를 범한 자는 비호를 받는 데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나아가, 심각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23]도 배제된다. 이것이 난민으로서 특정 국가에 입국하기 전에, 그 나라 밖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명백히 적용되는 난민협약의 유일한 조항이다.

특히 취약한 집단

- **장애인**

2백5십만에서 3백5십만명의 난민이 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집단은 특히 난민 중에서도 특히 더 취약한데, 이들이 난민캠프에서 잊혀지고 외면당한 채 살아가며, 그들의 장애에 부응하는 적절한 시설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비호절차에

23) 수용하는 국가에서 그 국가의 기준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므로 자국에서의 판결 등의 요건을 요하거나 하지 않음.

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접근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도 한다. 장애를 가진 난민의 권리는 2006년 채택, 서명과 비준이 폭넓게 이루어진 UN 장애인권리협약에 포함된다.

● **질병에 영향을 받은 사람과 노인**

UNHCR에 따르면, 난민은 의존성, 사회적 분열과 부정적인 사회도태의 3가지 주요 문제에 직면한다. 이러한 문제는 고령 난민을 다루는 경우에 종종 더욱 심각해진다. 2000년 UNHCR의 '고령 난민에 관한 정책'에서, 고령 난민의 욕구를 UNHCR의 일상 업무에 통합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아동**

전 세계 수백만의 난민, 국내피난민, 무국적자 가운데 거의 절반이 아동이다. 1990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UNHCR의 난민아동에 관한 업무의 기본적 체계를 세웠다. 특히 UNHCR은 아동의 기본적 필요, 즉 식수, 식량, 보건 지원, 교육을 보장하고, 가족 간의 재결합 지원, 직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 및 필요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 **여성**

난민캠프나 난민커뮤니티에 거주하는 이들 중 약 50%는 여성이다. 최근, UNHCR은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정상감각을 증진시키고 익숙한 삶의 방식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나아가, UNHCR이 특히 중점을 두는 것은 성폭력과 여성 할례에 대한 인식 제고이다.(출처: UNHCR. 2000. Children.;UNHCR. 2000. UNHCR's Policy on Older Refugees. ; UNHCR. Women.; Women's Commission for Refugee Women and Children. 2008. Disabilities among Refugees and Conflict-Affected Populations)

☞ 아동인권 / 여성인권

유엔난민기구 (UNHCR)

UNHCR은 기본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수백만 명의 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1951년 설립되었다. 그러나, 최고대표부의 기원은 1921년 국제연맹이라는 국제기구의 한 기구로서, 프리드쇼프 난센이 첫 번째 유엔난민최고대표로 임명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네바에 본부를 구성·설립된 이래로, UNHCR은 수천만 명의 난민과 국내피난민들이 거주지를 찾는 문제에 대해 지속되고 안정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을 지원하였다. 오늘날 UNHCR의 업무는 120개 국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국경을 넘어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고국에서 피신한 사람들인 국내피난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난민협약과 그 의정서는 당사국

이 UNHCR의 기능을 수행하고, 난민협약 및 의정서의 이행을 감독하는 것에 긴밀히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출처: UNHCR. Refugee Figures.; UNHCR 2011. World Refugee Day: UNHCR report finds 80 per cent of world's refugees in developing countries.)

3. 문화적 관점 차이와 논쟁적 이슈

빈곤으로 인한 난민

국제법은 난민과 다양한 범주의 이주민을 명확히 구별한다. 예를 들어, 난민협약은 경제적 우려와 불안정으로 촉발된 피난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비호를 구하거나 출신 국가를 떠나는 근거가 되는 사유를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실업이나 빈약한 건강지원 등 극심한 빈곤이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고국을 떠난 사람들은 협약에 따른 난민지위를 부여받을 자격이 없다. 이러한 점은 많은 사람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비호를 신청하는 것을 막지는 못하는데, 특히 몇몇 유럽 국가에서는 난민지위가 노동 시장에 접근하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목적지 국가에서 거주권을 신청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특정 국가에서 **인권을 완전히 향유하지 못할 경우** 더 낫다고 인지되는 국가로 이주가 이어진다. 예를 들어, 출신국가에서 박해와 극심한 경제적 상황을 벗어나 좀 더 나은 타국에서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 이주민과 난민들이 개도국으로부터 유럽으로 이주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여정은 위험한 일이다. 지난 수년간, 수천의 난민과 이주민들이 지중해에서 '유럽장벽'에 도달하려 애쓰는 가운데 사망하였다. 동시에 유럽연합은 법률적·사실적 조치를 통해 이주민과 비호신청인들이 그 영토에 입국하는 것을 더욱 더 어렵게 하고 있다. ☞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난민절차

한 개인이 **난민이 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는가** 또는 여타 국제적 보호를 부여하는 비호절차를 필요로 하는가를 판단하는 절차는 신속하고 공정하며 효과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난민인정률은 국가에 따라 상당한 정도로 다르다. 상당수의 경우에, 신청인이 난민지위나 다른 형태의 보호를 부여받는지 아니면 돌아가야 하는지를 알기까지 수년이 소요된다. 이는 상당한 수의 사람들과 그 가족이 노동허가나 다른 전망이 없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불확실한 상태로 살게 한다. 또 다른 심각한 관행은 **송환대기 구금**으로서, 이는 난민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난민이나 다른 형태의 보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송환되도록 하기 위해서 적용되고 있다. 단지 국경을 넘었다는 이유로 수개월 동안 사람을 구금하는 것은 기본적 인권 보장에 반하는 것이다.

만일 비호와 난민신청 처리체계가 신속하고 공정하다면, 이미 자기가 난민이나 비호 지위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러한 신청을 제출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수용국가와 처리절차가 작동되어야 하는 진정한 난민과 비호신청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경제적 난민'이 비호절차를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이주민에 관한 문제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런 문제를 다루는 더욱 실질적인 방법은 경제적 이주민들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적어도 부분적 거주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수용국의 이민 요건과 절차를 변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

☞ 법의 지배와 공정한 재판

유럽공통의 비호 체계

유럽연합 내에 최소한의 수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난민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2005년 난민절차에 관한 지침은 절차적 보장, 결정절차의 최소 수준, 난민절차에서 부정적 결정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 특정 개념과 관행의 적용에 대한 공통된 기준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해준다. 유럽공통의 비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서, 2011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난민과 충적 보호 지위 결정의 단일 절차, 신청검토과정의 효율성 증대, 검토절차에 대한 접근성 촉진, 비호결정의 질과 비호신청자들이 이의제기권 강화를 위하여 2005년 지침의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 안은 2012년 현재 유럽의회 및 이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4. 이행과 모니터링

비호신청권은 난민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난민의 지위를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따라서, 난민절차는 난민으로 인정받을 권리의 근거인 난민협약 상 보호 사유 중 하나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것이다.

여타 유엔 협약과 달리, 난민협약은 국가보고나 개인진정 등 구체적 이행 메커니즘을 규정하지 않는다. 난민협약과 1967년 의정서의 실행과 적용은 유엔난민기구(UNHCR)가 감독한다. 난민협약 제35조 및 제36조는 당사국과 UNHCR 간에 관련 협약의 내용과 적용에 관한 정보와 통계 제공 등 상호 협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난민협약의 당사국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협약의 적절한 적용을 확보하기 위해 채택한 법과 규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협약 제36조). 난민협약과 의정서는 이를 위해 **당사국이**

UNHCR과 협력하고, **UNHCR의 협약 규정의 이행 감독을 돕도록** 정하고 있다. 게다가, 당사국은 UNHCR이 다음에 관한 정보와 통계를 요청할 시 이를 제공해야 한다.

난민의 상황

난민협약과 의정서의 이행

난민에 관하여 시행되고 있거나 이행예정인 법률, 명령이나 규칙

결과적으로, UNHCR의 협약 이행은 특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

유엔 자유권규약은 비호권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규약 제6조 및 제7조는 강제송환금지원칙과 관련되어 적용된다. 그러므로 비호권에 관련된 이 규정의 위반은 자유권규약의 이행 메커니즘의 대상이 된다.

지역적 문서

난민 협약 외에 난민 보호에 관한 지역적 문서가 있다. 예를 들어, 1966년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위원회가 채택한 '난민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방콕 원칙', 1969년 아프리카기구연합(OAU)의 '아프리카 내 난민문제의 특정 측면에 관한 협약', 남미국가그룹이 채택한 1984년 '카르타헤나 선언' 등이다.

유럽인권재판소의 역할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평의회 인권보호체계의 법원이다. 재판소는 비호신청인의 인권보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첫째, 유럽인권협약 제3조(고문 및 비인도적·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의 금지)의 송환절차와 강제송환금지원칙에 관한 적용을 결정한다. 한 사람이 출신국가에서 고문을 당할 가능성이 있으면, 송환은 금지된다. 이에 관한 주요한 판결은 1989년 Soering vs. U.K. 사건이다.

나아가, 제8조(프라이버시와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는 비호신청인에게 매우 중요한 조문이다. 비호신청인들은, 그들의 가족생활이 난민지위나 계류 중인 송환에 관한 결정으로 인해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 조항에 근거한 주장을 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모든 국내구제절차가 완료된 후, 그리고 국내 최종 결정이 있은 뒤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해야만 사건을 다룰 수 있다.

유럽연합이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할 계획이므로, 유럽사법재판소 등 유럽연합의 기구 또한 유럽인권

협약 규정과 유럽인권재판소의 해석에 구속된다. 개인은 유럽연합 기구가 자신의 협약 상 권리를 침해했을 때 유럽인권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은 더욱 일관된 인권기준의 적용과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인권의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알면 좋은 내용

1. 모범 사례

가족 결합 계획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국내 적십자 및 적신월사와 함께 수행하는 주요 기능 중 하나는 분쟁이나 자연 재해 발생에 따라 분리된 가족의 재결합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가족들은 잠시 헤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수년간 헤어지기도 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가족구성원을 찾고, 그들을 찾으면 가족간의 의사교환 과정을 중개하고, 최종적인 재결합을 지원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중앙추적기구(Central Tracing Agency)는 무력분쟁 당사국들이 분쟁으로 인해 분리된 가족구성원을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하도록 한 국제인도법상의 의무를 충족하도록 지원한다. 이 의무는 강제실종금지에 관한 권리와 실종된 가족구성원의 운명에 관해 알 권리라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권리에서 찾을 수 있다.

☞ 무력 분쟁 상황에서의 인권

RefWorld

RefWorld는 난민지위에 관해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정보원이다. RefWorld는 출신국가 상황, 정책 입장과 관련 문서, 국제적·국내법적 체계에 관한 방대한 보고서를 수집하고 있다. UNHCR과 그 현장사무소, 정부와 NGO, 학계와 사법부가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난민해방(Refugee Emancipation)

난민해방 프로젝트는 독일의 난민신청자들이 제안한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인터넷을 통해 난민들을 그들의 출신 국가나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시켜, 난민들의 고립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는 세미나와 강의를 조직하고, 난민옹호 활동 정보를 제공한다. 온라인 채팅 포럼 외에도, 상당한 난민 개개인의 이야기가 웹사이트에 공개되었다. 유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타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독일 내 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2. 동향

국내피난민(IDPs)

난민 지위를 요구하는 개인은 그 출신국가의 밖에 있어야 한다. 즉, 국가 간의 경계를 건넜다는 사실이 난민의 통상적 정의에 있어서는 핵심적 요건 중의 하나이다. 난민과 달리, 자신의 국가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쫓겨난 사람들을 국내피난민이라고 한다. 난민들처럼 그들은 분쟁과 일상화된 폭력과 인권침해 때문에 강제로 고향을 떠나게 되었지만, 난민과는 달리 그들의 국적국가나 상거소국 내에서 살고 있다. 약 4천2백5십만의 지속되거나 새로운 분쟁의 결과로 전 세계에서 강제로 이산된 사람들 중에서 2천6백4십만은 국내피난민이다. UNHCR의 원래 임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UNHCR은 수백만의 국내피난민을 수년간 지원하였으며, 최근에는 국내피난민의 보호와 거주에 관한 필요 및 캠프의 조정과 운영을 감독하고 있다. (출처: UNHCR. Internally Displaced People Figures.)

해상을 통한 불법 이주

출신 국가를 도망쳐 타지에서 비호를 구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대양이나 바다를 건너온다. 이는 대부분은 밀입국을 위한 조직들이 이러한 해상 이주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극도로 위험한 과정이 될 수 있다. 배는 항해에는 부적합한 상태이고,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으며 위험할 정도로 초과인원을 승선시킨다. 밀입국시키는 사람들은 또한 정부 당국이 개입하도록 하기 위해 배를 파괴하는 등, 구출을 강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종종 갑작스런 폭발을 일으키고 상당한 인명 손실을 유발한다. 예를 들어 2009년 호주에서는 배에 불을 붙이는 시도로 배가 폭발하여 5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하였다. UNHCR이 지적하듯이 “매년 지중해, 아덴만, 카리브해, 인도양과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수천명의 사망에 대한 주된 책임이 무자비한 밀입국시키는 자들에게 있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UNHCR은 2007년에 지중해를 건너는 중에 약 500명 이상이 사망했고, 스페인 당국은 아프리카에서 카나리아 제도로 건너려는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런 숫자들은 사망자 수의 정확한 범위를 드러내지 못하는데, 이주 과정 자체가 등록되지 않았고, 항해 중에 많은 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불법 해상 이주는 유럽에서만 발생하는 일은 아니다. 매년, 수만명의 소말리아인과 에티오피아인이 난민지위를 인정받고 더 나은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예멘으로 가기 위해 아덴만을 건넌다. 2007년, 약 27,000명의 이주민이 예멘 해안에 도착하였고, 1,200명이 사망 도는 실종으로 보고되어, 이 여정의 사망률은 약 5%에 달한다. 유사하게 호주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불법 해상 이주의 주요 목적지인데, 주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스리랑카에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경유하여 호

주로 가고 있다. 2010년 호주는 6,555명의 불법 해상 이주민들을 받았으나 많은 이들은 호주 대륙에 닿지 못하고 군대에 의해 연안처리센터에 구금되었다. 2010년 50명이 호주국경인 크리스마스섬의 바위와 그들이 탄 배가 충돌하여 사망하였다.

(출처: Navi Pillay. 2009. Migrants at sea are not toxic cargo; UNHCR. 2009. Irregular Migration by Sea: Frequently Asked Questions)

Dadaab, 세계에서 가장 큰 난민 캠프

케냐의 Dadaab 난민 캠프는 20년 전에 소말리아에서 폭력과 내전을 피해온 난민에게 쉼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분쟁이 계속되어, Dadaab은 50만명에게 집을 제공해주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난민 캠프가 되었다. 이는 약 9만명의 사람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캠프 내와 인근 사막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 식수, 위생, 교육과 보호 등 필수적 공급 가용성은 현저히 악화되었다. "Dadaab에서의 삶은 아주 어려워요. 우리는 UNHCR에 모든 것을 기대고 있어요. 여기 식량은 부족하고, 물도 부족해서 누구도 충분한 물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루에 한 가족 당 4개의 제리 캔이 할당되고, 이것으로 목욕하고, 빨래하고, 설거지를 하고, 요리하고 식수로도 사용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얻지 못하는 지원을 더 필요로 하고 있어요."라고 소말리아 키스마요에서 와 6살 이후로 Dadaab에서 살아온 지금 25살이 된 난민, Anfi는 말했다. 폭력과 어려운 상황에다가 긴 우기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사람들의 주거와 음식 공급이 파괴되었다. 39살의 소말리아 시르코에서 온 난민 Hassan은 "어제 도착했어요. 어머니, 부인, 5명의 아이들과 함께 왔습니다. 입고 있는 옷 외에는 가져온 것이 없고, 이미 8명의 가족들이 있는 여동생의 쉼터에 우리가 살 곳을 구할 때까지 머물 겁니다. 지금은 내 여동생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어요. 여동생 가족들이 배급받은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어 먹을 수 있습니다." 국경없는 의사회 소속 간호사는 "이들은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것도 안 되는 것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출처: Medicins Sans Frontieres(국경없는 의사회). 2011. No way in. The biggest refugee camp in the world is full)

이주민, 난민과 비호신청인을 향한 인종주의와 인종혐오

이주민과 유사하게 많은 수용국가에서 난민과 비호신청인은 인종주의, 인종혐오와 비호에 관한 권리를 '오용'한다는 의혹을 받는다. 미디어가 이러한 사회내의 인종혐오적이고 편집증적인 태도를 강화하고 있고, 대중영합적인 지도자들이나 인종주의적 정치인들은 이를 활용한다. 그 결과 더욱 엄격한 이주와 난민에 관한 법과 정책, 그리고 박해로부터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는 국제인권법상 의무와 서약에 대한 무시나 위반이 초래되었다. ☞ 인종차별금지와 차별금지

공평한 책임분담

UNHCR 보고서는 강제로 쫓겨난 사람들에 대한 국제적 지원에서 매우 큰 불균형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전 세계 난민의 4/5는 개발도상국에서 보호를 받는다. 세계의 극빈 국가들이 엄청난 난민 인구를 보호하고 있다. 파키스탄, 이란, 시리아는 각기 1백9십만, 1백십만, 1백만의 난민을 보호하고 있다. 이렇듯 부담의 분배가 불공정한데도 불구하고, 선진국 내에서 편집증적인 반 난민 정서는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오늘날 세계에는 난민운동과 국제적 보호 패러다임에 관한 우려스러운 오해가 존재한다. 선진국의 소위 난민의 홍수에 대한 공포는 상당히 과장되거나 이주의 문제와 잘못 섞여 버렸다. 그 와중에 부담을 지는 것은 더 가난한 나라들이다."라고 유엔난민기구의 Antonio Guterres는 지적하였다. 그는 "세계는 이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고향의 불안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그들의 삶을 무기한 중단한 채로 살아가게 내버려두었다. 개발도상국은 이 부담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고, 선진국이 이 불평등을 다루어야만 한다." 따라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공정한 부담의 분배가 현재의 4천2백5십만의 피난민들을 문제를 다루는데 필수적인 사안이다. 이는 미래에 합법적이고 품위 있는 방식으로 난민의 문제를 다루는데 핵심이 될 것이다. (출처: UNHCR. 2011. World Refugee Day: UNHCR report finds 80 per cent of world's refugees in developing countries.)

3. 연혁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50년 유럽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협약(유럽평의회)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네바난민협약)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1961년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년 난민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방콕원칙(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1969년 아프리카 난민문제의 특정 측면에 관한 협약(아프리카연합기구)

1984년 난민에 관한 카르타헤나 선언(중미, 멕시코, 파나마 내 난민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콜로키엄에서 채택)

1985년 거주국가의 국민이 아닌 개인의 인권에 관한 유엔총회 선언

1992년 국내피난민에 관한 특별보고관

1998년 국내이산에 관한 지도원칙

2000년 유엔초국가조직범죄에 관한 협약의 육상, 해상, 항공에 의한 이주민 밀입국에 관한 보충의정서

2003년 UNHCR 보호의제

2006년 유엔 모든 사람의 강제실종으로부터 보호에 관한 협약

추천 활동

활동 I : 비호신청하기

Part 1 : 소개 이 활동은 난민의 현실에 관한 감정적 요소를 경험한다.

Part II : 일반적인 정보

활동유형: 역할놀이

목적과 목표: 난민신청절차에서의 차별에 관한 인식 제고

대상그룹: 청소년, 성인

그룹크기: 어느 규모나

소요시간: 약 15분

준비물: 유인물(아래), 연필

준비사항: 유인물과 연필을 준비하고, 형식상의 절차를 위한 책상 뒤에 당신이 앉을 수 있도록 방을 정리한다.

Part III: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지시사항: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들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로 방이 꽉 차도록 한다.

예정된 시작의 수 분 후, 크레올언어로 씌어진 난민신청서를 줘라. “이 서식을 채우는데 5분 드립니다.”라는 말만 한다. 이는 다른 어느 외국어로 해도 좋다. 질문과 항의를 차가운 태도로 무시하라.

퉁명스런 투로 늦은 사람에게 말하라.(예를 들어 “늦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서식을 단 ___ 분 안에 작성하세요”)

웃음이나 개인적인 접촉 없이 서식을 모두 거두어들인다.

완성된 서식에 기재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앞으로 나오도록 한다. 서식을 보면서 “여기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하였으므로 난민신청은 거부됩니다.”라고 말하라. 이 절차를 수차례 반복한다.

이제 당신의 역할에서 나와라. 참가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서식을 채우면서 어떻게 느꼈는지 물어본다. 참가자들에게 이 활동에서 느낀 난민으로서의 경험을 물어본다.

피드백:

피드백 시간에, 참가자들에게 그들의 경험을 요약하도록 한다:

이것이 난민신청자들의 실제 상황이었을까?

당신은 난민신청자들이 신청절차에서 공정한 처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가?

난민신청이 거부당한 사람이 직면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관련 권리 및 더욱 탐색할 영역:

민족, 언어 또는 종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유인물 내용

Application for Asylum (난민신청서)	
Appellido	
2. Primer Nombre	
3. Fecha de Nacimiento	
4. Pais, Ciudad de residencia	
5. Ou genyen fanmi ne etazini?	
6. Kisa yo ye pou wou	
7. Ki papye imagrasyon fanmi ou yo genyen isit?	
8. Eske ou ansent?	
9. Eske ou gen avoka?	
10. Ou jam al nahoken jyman	

(출처: Daviod Donahue, Nanct Flower. 1995. The Uprooted: 난민과 미국.)

활동 II : 짐 싸서 도망가기

Part I : 소개

이 활동은 난민이 직면하게 되는 감정적이며 실질적 결정과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경험해본다.

Part II : 일반적인 정보

활동유형: 역할놀이

목표와 목적: 난민과 그들의 권리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발전 시키고, 갑자기 자신의 고향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과의 연대를 증진한다.

대상그룹: 청소년, 성인

그룹크기: 어느 규모나

소요시간: 10여분

Part III :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지시사항 : 다음 시나리오를 읽거나 설명하시오:

당신은 ___지역의 선생님이다. 당신의 남편/부인이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되었다가 살해된 채 발견되었다. 당신의 이름은 체제전복 용의자로 신문 뉴스에 게재되었고, 이후에 당신의 정치적 활동으로 당신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하는 편지를 받다. 당신은 도망쳐야겠다고 결정한다.

짐을 싸라: 당신은 다섯 개 종목의 물품만, 당신이 들고 갈 수 있는 것만 가져갈 수 있다. 무엇을 가져갈지 목록을 작성하라.

몇 분 후에, 참가자들을 불러 그 목록을 크게 읽도록 하라. 거의 모든 목록(보통 약 95%)은 자기 이름이 나온 뉴스나 협박편지를 포함하지 않았을 것이다. “난민신청은 거부되었습니다!”라고 말하라.

난민의 법률적 정의를 읽어라. 이 정의가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될지, 왜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난민 지위를 충족시키기 위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이 거부되었는지를 토론하라.

압박 하에 결정을 내리는 것, 개인적 선택의 이유, 결정과정에서 떠오른 감정에 대해 논의하라. 이 활동의 목적을 설명함으로써 마쳐라.

피드백 : 피드백 시간에 참가자들에게 그들의 경험을 요약해 보도록 하라:

- 난민들에 대한 처우는 얼마나 공정하였는가?
- 국가는 난민을 쫓아낼 권리를 가져야 하는가?
- 난민은 보호에 대한 인권을 가진다. 이 난민들은 보호에 관한 권리가 부여되었는지? 왜/ 왜 아닌가?
- 당신의 국가에 피신한 사람들이 지금 있는가?
- 사람들이 애초에 난민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관련 권리 및 더욱 탐색할 영역 : 강제송환금지, 차별금지

(출처: Daviod Donahue, Nanct Flower. 1995. The Uprooted: 난민과 미국.)

참고자료

Austrian Red Cross and European Training and Research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ETC) (eds.). 2004. R*esearching Country of Origin Information – A Training Manual. Part I and II*. Vienna: Austrian Red Cross.

De Vinuesa, Belén García. 2003. *Building a rights-based asylum system for Europe: A UNHCR perspective*. In: David Turton and Julia González (eds.). Immigration in Europe: Issues, Policies and Case Studies. Bilbao: University of Deusto, pp. 41-47.

Donahue, David and Nancy Flowers. 1995. *The Uprooted: Refugees and the United States.* Alameda, CA: Hunter House Publishers.

European Union. 2005. Council Directive 2005/85/EC of 1 December 2005 on minimum standards on procedures in Member States for granting and withdrawing refugee status. Available at: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5:326:0013:0034:EN:PDF

Goodwin-Gill, Mc Adam. 2009. *The Refugee in International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Immigration Advisory Service (ed.) 2009. *Internal Flight Alternative.* London: Research, Information & Policy Unit Immigration Advisory Service. Available at: www.iasuk.org/media/364678/internal_flight_alternative.pdf

Médecins Sans Frontières (MSF). 2011. *No way in. The biggest refugee camp in the world is full.*

Kenya: MSF. Available at: www.msf.ie/sites/www.msf.ie/files/no_way_in_focus_on_dadaab_msf_report.pdf

Pillay, Navi. 2009. *Migrants at sea are not toxic cargo.* In: UNews, Monthly Newsletter of the UN Information Centre, New Delhi, September 2009, Vol. 64, No. 9. Available at: www.unic.org.in/items/Newsletter_Sep2009.pdf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2012. *Global Trends 2011.* Available at: www.unhcr.org/4fd6f87f9.html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2011. *Global Report 2011.* Geneva: UNHCR. Available at: www.unhcr.org/gr11/index.xml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2011. *Handbook and Guidelines on Procedures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Refugee Status under the 1951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HCR/1P/4/ENG/REV. 3.* Geneva: UNHCR. Available at: www.unhcr.org/refworld/docid/4f33c8d92.html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2011. *Story Telling: Through the Eyes of Refugees.* Available at: www.youtube.com/watch?v=82_BfCostw8 and www.youtube.com/watch?v=nqQFRum2krQ&feature=relmfu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2011. *World Refugee Day: UNHCR report finds 80 per cent of world's refugees in developing countries.* Available at: www.unhcr.org/4dfb66ef9.html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2009. *Irregular Migration by Sea: Frequently Asked Questions.* Available at: www.unhcr.org/4a1e48f66.html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2000. *UNHCR's Policy on Older Refugees. EC/50/SC/CRP.13, Annex II.* Geneva: UNHCR. Available at: www.unhcr.org/refworld/docid/47036b502.html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Asylum-Seekers.* Available at: www.unhcr.org/pages/49c3646c137.html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Children.* Available at: www.unhcr.org/pages/49c3646c1e8.html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Internally Displaced People Figures.* Available at: www.unhcr.org/pages/49c3646c23.html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RefWorld.* Available at: www.unhcr.org/cgi-bin/texis/vtx/refworld/rwmain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Women.* Available at:

www.unhcr.org/pages/49c3646c1d9.html

Women's Commission for Refugee Women and Children. 2008. *Disabilities among Refugees and Conflict-Affected Populations. Resource Kit for Fieldworkers.* New York: Women's Commission for Refugee Women and Children. Available at: womensrefugeecommission.org /docs/disab_res_kit.pdf

추가정보원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www2.ohchr.org/english/law/refugees.htm

Council of Europe: www.coe.int

European Commission, Asylum: http://ec.europa.eu/dgs/home-affairs/what-we-do/policies/asylum /index_en.htm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www.icrc.org

ICRC, Reuniting Families: www.icrc.org/eng/what-we-do/reuniting-families/index.jsp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www.iom.int

Médecins Sans Frontières (MSF): www.msf.org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www.ohchr.org

Refugees Emancipation: www.refugeesemancipation.com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CAT): www2.ohchr.org/english/bodies/cat/index.htm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www.unhcr.org

UNHCR, Refugee Figures: www.unhcr.org/pages/49c3646c1d.html

UNHCR, RefWorld: www.unhcr.org/cgi-bin/texis/vtx/refworld/rwmain

UN Human Rights Committee: www2.ohchr.org/english/bodies/hrc/index.htm

Women's Commission for Refugee Women and Children: womensrefugeecommission.org

III. 추가 자료

ADDITIONAL RESOURCES

인권교육방법론

연혁

인권 관련 문헌

인권교육 관련 자료

세계인권선언

UN인권교육훈련선언

용어해설

≫ 1. 모든 사람은 자신이 향유할 수 있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한 정보를 알고 추구하며 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인권교육훈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 인권교육훈련은 인권의 보편성, 개별성, 상호의존성 등의 인권원칙에 따라, 모든 이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의 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다. […] ≪

UN 인권교육훈련선언 **(2012)** 제**1**조

A. 인권교육방법론

1. 인권교육방법론 기초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지식, 기술과 가치**를 개발하는 모든 과정이다. 인권교육은 성별, 나이, 장애, 인종, 국적, 언어 또는 믿음에 따른 구별 없이 모든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개인 모두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른 교육 분야와 마찬가지로, 인권교육은 각각의 교육적 접근의 의도들을 반영하는 일련의 교육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인간 권리와 존엄성의 실현이 인권교육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교육적 접근은 인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인권교육 훈련과 워크숍은 참가자의 관심과 필요를 따라야 한다. 또한 인권적 기술의 개발과 태도의 형성에 지적 도전을 결합하여야 한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를 위해서는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인권교육을 진행할 때에는 참가자의 개인적, 직업적 경험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이란 단지 세계인권선언을 암기하여 배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권교육훈련이나 워크숍을 구상할 때에,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인권교육 강사(혹은 기획자)는 적절한 활동을 선택하기 전에, 일반적 훈련 프로그램 및 계획된 특별 훈련 프로그램에서의 훈련 상황을 결정짓는 모든 요소와 변수를 명확히 해야 한다. 주요 결정 요소는 네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이는 **내용, 방법론, 조직적 구조와 참여자 및 교육자의 태도**이다.

- **내용 :** 각 인권교육훈련 프로그램이나 워크숍은 교육 대상 그룹의 관심과 필요를 고려해야 하며, 이들의 직업적 환경과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변수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이 조정되어야 한다. 물론, 인권의 원칙 및 보호, 인권의 내용에 관한 기본 지식을 함양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지만, 인권교육훈련은 항상 대상 그룹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에 맞추어져야 한다. 다양성 관점이나 젠더 관점과 같은 내용이 훈련 세션의 주제로 구성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들은 교차 이슈로서 다루어져야만 한다. 건강, 종교적 자유, 노동법이나 각자의 업무 환경 차원에서의 인권과 같은, 다른 맥락들과 질문들 내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 **방법론 :** 교육 방법론은 교육자와 참여자들의 집단 크기/사회적 조직/활동, 학습 단계와 매체와 같은 구성 요소의 특정 조합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의존적인 요소를 설명하는 방법은 참여, 상호작용, 반영과 예측이라는 방법론적 기본원칙을 강조하는 PIRA(역자 주: 물리학 교육자료 협회 Physics Institutional Resource Assosication) 다중방법론적 접근이다. "**참여**" 와 "**상호작용**"에 관해 말하자면, 인권교육은 "전문가" 나 "학습소재" 보다는 학습자에 집중해야 한다. 학습

자가 교육자의 (개인적 교육적, 직업적 경험들에 기초한) 전문적 지식, 태도와 기술을 공유하게 되면, 교육자는 주도적 지위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학습자들의 성별이나 교육적, 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그들 각각의 상호작용, 의사소통, 능력에 내재되어 있기 마련인 다양한 방법론적, 교훈적 요소의 여지가 생긴다. "**반영**" 은 새로운 사실, 생각, 관점을 반복적으로 평가할 필요성,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새로운 사실과 색다른 관점에 비춰보고 이에 대해 질문을 제기해 볼 필요성을 의미한다. "예측" 와 공감은 그룹 내의 역동성을 이해하고 이를 이끄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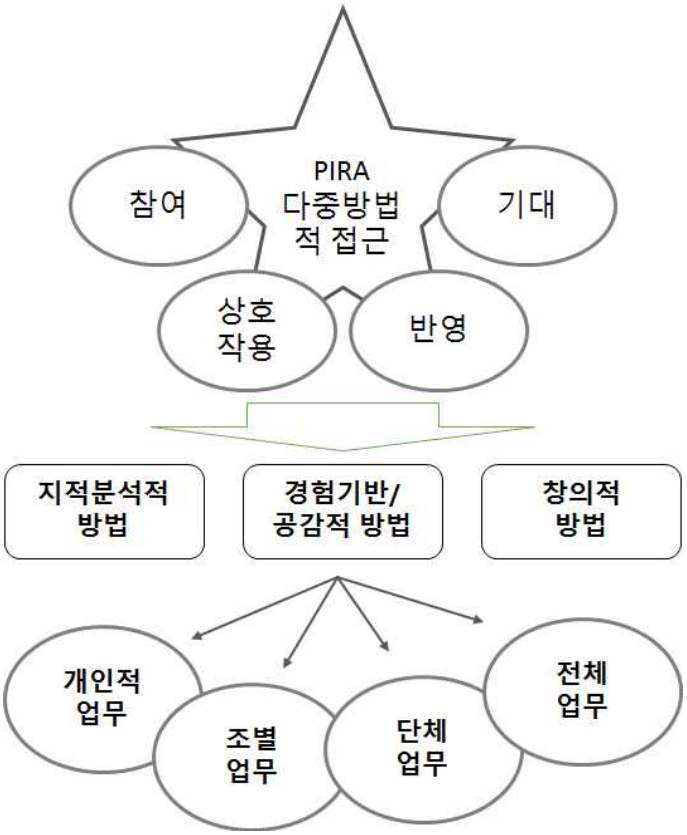

(자료원: Vedrana Spajić-Vrkaš. et al. 2004. *권리와 자유에 대하여. 학교수업용 연습 - 초등학교 교사용 안내서.* (*Poučavanje prava i sloboda. Priručnik za učitelje osnovne škole s vježbama za razrednu nastavu.*) 자그레브, 크로아티아, FFpress, 212.)

교육자는 훈련 상황을 결정하는 모든 요소와 변수를 자유롭게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자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의 배치와 조정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적절한 사회적 조직, 활동과 매체를 선택함으로써, 교육자는 교실에서의 교육 프로세스와 사회적 상호관계 및 소통을 지도하고 학습자 그룹을 무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교육구성 체계 :** 인권교육훈련 활동이나 워크숍 등을 처음 기획할 때 교육에서의 인권적 측면을 결정하는 다음의 "4A"를 명심해야 한다.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수용성**(acceptability), **적응성**(adaptability)이 그것이다. 인권교육의 **역량강화적** 측면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모든 이들에게 인권교육훈련이나 워크숍에 참여할 기회가 제공되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교육의 시간 관리와 장소뿐만 아니라 가능한 적극적 우대조치에도 영향을 준다. 교육자는 가용성과 접근성에 대해서는 항상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학습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교실에서의 수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학습 과정을 맞추는 것은 교육자의 역할이다.

- **교육자와 참여자의 태도:**

  인권 교육은 지식의 전달 그 이상이어야 하므로, 인권 교육자는 다음의 몇 가지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

  전문성 역량 (서로 다른 직업적, 사회적 환경에서의 인권 및 인권 보호, 인권의 구현에 관한 지식);

  방법론 및 교수법 역량 (일반 교육과 인권 교육에서의 교육과 학습 과정에 대한 지식과 이러한 지식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전문적 기술);

  소통 역량 ;

  정서나 감정 이입능력(공감 역량) (자신의 실존적 방향을 반영하고 학생과 동료들과 공감적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 그리고

  문화와 젠더 역량 (문화와 젠더 특성에 따른 행동 패턴, 사회적 상황과 맥락에 대한 지식, "사고방식" , 차별 등에 대한 자신의 결정을 반영하는 능력)

이러한 표준과 더불어, 여러 유형의 학습자에게 다가가기 위해 서로 다른 성별/민족으로 구성된 한 쌍의 공동 트레이너가 인권교육훈련이나 워크숍을 진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문화적 관점과 젠더적 관점이 논의되며, 각각의 관점에 따른 기술과 태도가 훈련되어야 하는 경우에 그렇다. 이 외에도, 서로 다른 개성(예를 들면, 내용중심 대 과정중심)의 공동 트레이너간의 협력으로, 보다 효과적인 수업을 만들 수 있다.

2. 인권교육프로그램 기획

인권 교육에서의 훈련이나 워크숍의 질은 각 단계에 대한 철저한 계획에 달려있다. 이러한 준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아래에 대략적으로 정리해본다.

- **학습 목표**

인권교육의 전반적 목표는 인권 시스템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의 중요하고도 합당한 부분으로서 인권을 받아들이며, 일상 업무에서 인권원칙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권교육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학습목표를 아주 명확하게 그려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는 참여자들의 특정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맞추어진다. 인권교육훈련은 참여자들의 직업적, 사회적 역량에서의 증진을 이끌어야 한다. 이러한 역량중심 접근방식은 훈련과 워크숍의 특징이다.

다음의 세 가지 중요한 목표를 일반적인 인권교육의 기반 및 훈련과 워크숍에서의 줄기로 삼아야 한다.

- **지식과 정보의 전달** (인권, 인권 표준, 인권 보호란 무엇인지, 참여자들의 일상적인 삶과 업무에서의 인권의 의미는 무엇인지)
- **기술 개발** (인권을 존중하고 실현하면서 생활하고 일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참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요소들. 소통, 적극적 듣기, 논쟁과 토론, 비판적 분석 등이 이에 속한다)
- **태도 형성** (가치 정립, 부정적 태도 찾아내 수정하고, 새로운 태도 수용하기, 자기 자신의 문화적 · 젠더적 역할의 상대성을 반영하기); 그리고
- **행동하기** (일상생활과 업무에서 인권의 적극적 전달과 구현 그리고 인식).

인권 표준을 배우고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학습자가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이는 인권 구현의 전제조건으로서 필요한 기술의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인권교육은 항상, 처음부터 체계를 가지고 시작하고 과정 마지막에는 평가한다는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 과정에 들어가기 이전에 "학습자가 습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을 제기하고, 교육 과정동안 이러한 관점을 결코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구두 또는 서면 시험과 피드백은 학습 과정 평가를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다.

- **대상 그룹**

인권 교육이 구성될 때마다, 대상 그룹의 **구성**을 사전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각 직업적 대상 그룹은 (예를 들면, 행정가, 경찰관, 판사, 법률가, 사회/복지/의료 서비스 종사가, 학생, 교

사, 군인 등) 그들의 업무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기에, "혼합" 그룹은 업무에 관련된 사전 교육이나 직무 교육에서 가능한 피해야 한다. 전체 조직이나 조직단위에 대한 교육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칙의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관점과 시각이 학습 과정을 풍요롭게 하고, 조직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대상 그룹의 특정한 필요는 기획 단계에서 반영되어야 한다. 교육은 필요에 따라 각각의 직업 그룹에게 중요한 기준, 내용에 대한 방향, 기술 개발이나 태도 형성, 인식 증가 등의 다양한 측면으로 그 초점이 맞추어질 수 있다. 교육 방법론과 활동은 주로 성인 학습자들의 실용적인 태도를 반영해야 한다. 아이디어와 개념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자들의 업무 상황에서의 실제 문제와 사례를 다루며, 참여자들의 업무 경험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인권 학습자는 자기 자신의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교육을 마치고 난 뒤에 학습자가 해야 할 실제 과제가 시작된다. 획득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이 일상생활과 업무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다.

특정 필요와 별개로 특정 조직적 조건들이 학습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다. (적절한 공간, 장비와 물품, 교육 시작시의 개관, 교육 마지막의 정리, 충분한 휴식을 포함한 시간 계획, 가능하다면 다과들).

- **참여**

학습에서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는 "실천으로 배우기" 라는 원칙이 있다. 따라서 인권교육에 있어서 참여와 경험기반 접근방식을 도입할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교육적 참여는 상호작용적 프로세스, 유연성, 그리고 방법과 사회적 조직의 다양성, 이슈와 자료의 관련성 등의 요소로 특징지어진다. 적극적, 효과적인 교육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 항목과 기준의 제시

특정 주제에 대한 인권 교육을 준비할 때에는, 이 특별한 영역에서의 전문가를 초대하는 것을 권장한다. 일반적으로 지역 프로젝트, 대학, 행정가들을 통해 전문가 pool에 접근할 수 있다. 학문적이고 과학적인 전문가로만 이루어진 패널보다는, 과학자와 실무자들이 섞인 패널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패널이 토론을 촉진하고 실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

더불어, 교육에서는 관련 인권 표준과 기구들을 제시해야 한다. 촉진자는 대상 그룹과 관련해 이러한 표준들을 논의하고, 참여자 일상생활에서의 인권 표준의 실용적 활용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상호작용적 접근

학습자, 특히 성인 학습자는 자신의 모든 능력 및 개인적, 직업적 전문성과 함께 교육 과정에 통합되어야 한다. 상호작용적 교육 프로세스에서, 교육자의 역할 모델은 전통적 교사의 우월적 위치로부터 촉진자나 중재자의 위치로 이동하고 있다. 트레이너는 내용과 지식에 대한 질문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그룹 프로세스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프레임을 구성하고 자료를 준비함으로써, 그룹을 구성하고 전문적 방법론적 지원(예를 들며, 교수/학습 테크닉)을 함으로써 태도와 기술의 습득을 촉진해야 한다.

촉진자로서의 트레이너의 새로운 역할은, 전통적인 교사가 아닌 이들에게는 닫혀 있었던 문을 여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학교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거나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단점 대신에 개인적 전문성을 강조하는 참여적 접근 방식으로 북돋아주어야 한다.

- 실용적 접근

인권이 일상생활의 핵심 요소이거나 최소한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대중화하는 것이 인권교육의 목표이다. 이러한 면에서 인권교육은 인권의 추상적 개념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켜 줄 뿐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 사적, 업무적 환경에서의 인권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제공한다. 인권 기준 내에서 어떻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인권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데에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

따라서 인권교육가는 그들의 프로그램에 실용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직업 규약에 관련한 문헌, 자료와 사례를 준비해야 한다. 트레이너가 자신의 대상 그룹의 업무 환경에 대한 개인적 경험이 없다면, 보통 해당 대상 그룹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팀티칭으로 경험을 쌓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 인식 형성과 기술 개발

지식 전달, 태도 형성, 역량 강화라는 세 가지 기둥에 기반을 두지 않는 인권교육은 항상 미완성의 그림 작품과 같다. 지식 전달 없는 태도 형성과 역량 강화는 정보의 기초가 부족한 것이다. 지식 전달과 태도 형성은 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역량 없이는 의미가 없다. 마지막으로, 태도 형성이 배제된 지식 전달과 역량 강화는 오히려 인권에 반하는 활동에 사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보를 제공하고 역량에 대해 훈련시키면서, 참여자들이 그 스스로가 인권을 옹호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을 민감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인권교육의 과제이다.

- 피드백

교육과 워크숍의 평가는 일방적인 방식일 수 없으며, 상호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영속적인 과정이어야 한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피드백은 다음 세 가지 규칙을 지켜야 한다:

항상 긍정적인 평가와 환호를 먼저 할 것!

구체적인 행동이나 설명에 초점을 맞출 것.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자신의 관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것.

- 유연성

인권교육은 각각의 문화적, 교육적 필요와 경험에 따른 다양한 상황 및 대상 그룹, 환경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하나의 교육과정 내에 다른 대상 그룹이 있거나 대상 그룹 내 다른 전제조건이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해서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인권교육가는 대상 그룹의 구체적인 필요를 반영하지 않은 "기성품" 을 사용할 때에는 매우 주의해야만 한다. 활용 가능한 자료를 적용하거나 이를 수정하고, 새로운 데이터나 사례 등을 검색해야만 한다. 이는 "인권의 이해" 라는 본 매뉴얼을 사용하는 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는 이 자료도 완성이 아닌 "진행 중"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진행의 기술적 수단은 ETC의 웹사이트이다. 이 웹사이트는 추가적인 재료, 업데이트, 활동 등을 제공하고 학습공동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제별 지역별 개정판을 만들도록 모든 사용자를 독려하고 있다.

철저한 자료의 선택과 준비는 교육과정을 진행하기 매우 수월하게 하며, 자료와 활동의 폭넓은 선택 가능성은 학급에서의 훈련자의 유연성에 기여하고, 그룹의 필요와 복잡성에 보다 신속하게 반응하게 된다. 또 하나의 도움이 되는 기술은 이 책에 소개된 장들로 주제를 구성하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이 주제들은 유연하게 조정되고 재구성될 수 있다.

참여자들에게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트레이너는 너무 엄격하게 이를 고수해서는 안 된다. 참여자들 사이에서의 좌절과 무관심을 피하기 위해서다. 교육자는 참여자들의 물리적 조건(휴식, 다과, 주변 공간 등)과 지적 욕구 사이에서의 최상의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 평가

평가도구로서의 테스트 질문은 세 가지 주요기능을 가지며, 이는 사용되는 시점에 따라 다르다. 시작 단계에서는, 트레이너에게 학습자들의 필요, 태도와 사전 지식의 수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데, 이는 교육과정에서의 모든 진행과 성과에 대한 기초가 된다는 의미이다. 과정 중에서는, 프로그램의 조정에 대해 교육자에게 도움을 준다. 최종 시험은 교육성취도를 보여주며 나아가 교육 과정과 교육 자료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활용된다.

- 지속가능성/ 후속활동/ 행동

또한 교육 결과에 대한 질문도 훈련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계획되고 구조화된 후

속 활동의 요소에는 정기 모임, 현장 방문, 전문가 면담, 교육 후 학습자 활동(성과와 문제) 보고, 정보의 전문적 교환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구성 등이 있다.

3. 연습과 활동

책자의 모든 장에 열거된 활동들은 학습자들의 주요 인권원칙에 대한 이해, 소통 기술, 비판적 사고와 분석 능력, 창의력과 설득 기술 등을 증진시키는 데에 도움을 준다. 이는 모두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기술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정의와 존엄성을 위한 전 세계적 투쟁에 대해 다문화적, 사회경제적, 역사적 관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정신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참여시키는 것이다. 또한 다른 학습자들이 인권이 그들 개인에게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해보도록 하며, 이러한 이해가 특정 주제에 대한 지식에 기반한 비폭력적인 행동으로 변화하도록 북돋는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활동들은 다양한 교육 방법을 통해서 복잡한 인권 문제를 편견 없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누구든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누구든지 모든 이의 인권, 정의와 존엄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매뉴얼에서 선정한 활동들은 인권교육의 방법론적 프레임에 맞추어져 있다.

<table>
<tr><td>워밍업과
긴장완화 방법</td><td>체험 기반 방법</td><td>참여/대화형 방법</td><td>갈등 해결 방법</td></tr>
<tr><td>프리젠테이션 방법</td><td colspan="2" rowspan="2">인권교육 방법</td><td>분석 및 해석 방법</td></tr>
<tr><td>창조적 방법</td><td>행동 방법</td></tr>
<tr><td>자료 수집 방법</td><td>분석/연구 방법</td><td>IT기반
소셜미디어 방법</td><td>결론 방법</td></tr>
</table>

(자료원: Vedrana Spajic-Vrkas. et al. 2004. *권리와 자유에 대하여. 학교수업용 연습 - 초등학교 교사용 안내서.* (*Poucavanje prava i sloboda. Prirucnik za ucitelje osnovne skole s vjezbama za razrednu nastavu.*) 자그레브, 크로아티아, FFpress, 157.)

각 방법의 주요 특징은 아래에 정리하고, 방법에 대한 다른 유용한 힌트를 명기한다. 이는 촉진자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각 활동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 **워밍업/ 아이스브레이킹/ 긴장완화 방법**

  교육이나 워크숍을 시작하기 위해, 사람들이 자기 소개를 하도록 하라. 이때, 그들이 환영받는다고 느끼도록 하라. 필요하다면, "아이스브레이킹" 이라고 불리는 활동을 사용하는데, 이는 참여자들이 서로에 대해 배우고 그룹 내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데에 편안해지도록 한다.

  그룹 정물(화) : 교육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집에서 의미 있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그룹 줄서기 : 사람들을 키나 나이, 태어난 달, 신발 크기 등의 순으로 줄을 세운다.

  인터뷰 : 각 사람들이 짝이 이루어 서로 몇 가지 질문으로 인터뷰를 하도록 한다. 그리고 전체 그룹을 대상으로 상대를 소개한다.

  나도! : 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다른 이가 말하는 이와 공통되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중간이 끼어들어서,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자신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한다. 그룹 내 모든 이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을 소개하도록 진행한다.

  의자 뺏기 놀이 : 둥그런 원으로 의자를 배치하고 참여자들에게 앉으라고 한다. 원 중간에 서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에 대해서 무언가를 말한다. 그런 후, 당신의 말에 참에 해당하는 모든 이는 자신의 앉은 위치를 바꾸어야만 한다(예를 들면, 나는 여성이고 두 명의 아이가 있어요. 나는 여성이고 쥐를 싫어해요 등). 이 때, 당신은 비어있는 의자에 앉으며, 의자를 찾지 못한 이가 당신이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다른 참여자와 자신이 공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을 이야기한다.

  인간 매듭 : 모든 사람들이 어깨를 맞대어 원형으로 서게 한다. 그리고 팔을 앞으로 뻗어 교차하여 옆 건너편 사람의 손을 잡게 한다. 어느 누구도 바로 옆 사람의 손을 잡으면 안 된다. 이제 모든 참여자들이 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로 매듭을 풀도록 한다.

  그룹 규칙 : 사람들이 서로를 알게 된 후, 교육자는 교육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전체 그룹에게 몇 가지 사항을 밝혀두어야 한다. 각 활동과 전체 교육에서 설정된 시간표 등이 그 예다. 교육자와 학습자는 시작과 마치는 시간을 정확히 함으로써 시간표를 따라야 한다. 학습자 중 한 명이 시간기록원으로서 역할을 맡을 수도 있는데, 특히 소규모 활동에서 이 역할이 필요하다. 교육자는 교육의 범위를 설명하고 참여자들의 기대를 말하도록 요청한다. 이를 칠판이나 플립차트에 쓴다. 교육자는 이 목록을 보면서 목록에 적힌 기대를 이번 세션에서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정직하게 평가해본다. 마찬가지로 그룹이 원하지 않는 것을 목록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은 그룹에서의 기본적 규칙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 좋은 기초를 제공한다. 교육자와 학습자가 함께 구성한 기본적 규칙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고, 존중할 수 있고 안전

하며 유용한 상호작용을 만들어낸다.

- **체험 기반 방법**

역할극 : 역할극에서는, 참여자들이 가상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촉진자는 역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고 단지 간단한 정보만 제공하고 참여자가 자신의 역할을 구성하도록 할 수도 있다. 역할극에서의 배우들은 가상 상황에서 다른 누군가인 것처럼 행세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으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극 시작 초기에 관객과 배우들이 이를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너무 길어지거나 너무 정교하지는 않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할극은 종종 열린 결말로 마무리되는데, 이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고 토론을 자극하기 위해서이다. 반면 마무리에서의 주의 깊은 질문과 성찰은 참여자들이 자신이 실제 경험과 상황 간의 관계를 그려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촉진자는 할당된 상황에 대해 어떤 이들이 불편하게 느끼거나 불안해할 수 있고 심지어 무력해질 수도 있다는 점에 민감해야만 한다.

또 다른 체험 기반 방법은 스토리텔링, 시뮬레이션, 모의 법정 등이 있다.

- **참여/대화형 방법**

토론은 성찰, 분석과 비판적 사고를 장려한다. 그리고 수평적이고, 민주적이며, 협동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며, 참여자들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도록 돕는다. 토론에 대한 집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몇 가지 핵심 질문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룹이 커질수록, 특정 참여자들이 주도권을 쥐고 나머지 참여자들은 말을 아끼게 되는 경우가 더 빈번해질 수 있다. 모두에게 발언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전체 그룹을 소그룹으로 나누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토론을 마쳤을 때, 주요 쟁점을 구두로, 서면으로 요약한다. 촉진자는 토론의 목표를 명심해야 한다. 또한 참여와 분석을 북돋기 위해 질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정(*"~하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사색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정의(*"당신은 이 생각이 어떻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줄 수 있나요?"*), 탐색(*"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확인/요약 (*"당신이 생각하는 바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뢰와 상호 존중의 환경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토론 규칙" 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토론자는 학습자들에게 모든 이들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토론 원칙을 생각해 보라고 요청한다. 그 뒤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모든 제안을 적고, 필요하다면 이를 합치거나 단순화시켜라. 아래에 제시된 규칙이 제안되지 않았다면, 토론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다음 사항들을 추가하라:

✓ 말하는 이에게 귀 기울여라.

✓ 한 번에 한 사람만 이야기 한다.

- ✓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알리는 눈에 띄는 신호를 정한다.
- ✓ 다른 이가 말하는 중에 끼어들지 않는다.
- ✓ 누군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누군가의 의견을 비판하는 것과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의 사이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여 이야기한다.
- ✓ 농담이 아닌 한, 누군가 이야기할 때 웃지 않는다.
- ✓ 모든 이가 참여하도록 북돋는다.
- ✓ 규칙의 목록을 복사하여 모두가 참고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곳에 두며, 필요할 때마다 규칙을 추가하거나 수정한다.
- ✓ 다른 참여/대화형 방법으로 **강의, 보고하기** 등이 있다.

- **창조적 방법**

  창조적 방법은 에세이 쓰기, 그림그리기, 점토 등의 작업, 사진이나 동영상 작업 등이 있다.

- **갈등 해결 방법**

  갈등 해결 방법에는 조정/중재, 협상, 중재인 역할하기 등이 있다.

- **자료 수집 방법**

  브레인스토밍은 창의성을 북돋우며,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아이디어를 빨리 만들어 내도록 장려한다. 이는 특정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적 방법을 찾아내고, 질문에 답하고, 새로운 주제를 소개하고, 흥미를 유발하며 지식과 태도에 대해 조사 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브레인스토밍 세션은 다음의 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질문, 문제, 주제에 대한 소개(글이나 말로),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와 제안을 하도록 참여자들을 독려하기(이상적으로는 하나의 단어나 짧은 문장으로 제시), 플립차트에 기록하기 (가장 창의적이거나 독특한 제안이 곧 가장 유용하고 흥미로운 제안인 경우가 매우 자주 나타난다는 것을 명심하라), 결과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분석하며 범주화하기 등이다.

  브레인스토밍 세션은 유용한 아이스브레이킹이다. 또한 이는 다른 주제들을 소개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브레인스토밍 세션은 놀이나 활동의 촉진하는 역할로 사용될 수도 있다.

- **분석/연구 방법**

  사례 연구는 분석,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기획 능력, 협력과 팀워크 형성 등에 도움이 된다. 이는 효과적인 토론(예를 들면, 한 이슈에 대해 정해진 입장에서 논쟁하도록 토론 그룹을

형성 등)이 되도록 하고 비교(예를 들면, 사례에 제시된 문제에서의 여러 분석이나 해결 방안 등)하는 데에 사용되곤 한다. 우리가 선택하는 사례는 역사적 사건이나 현재 일어난 **실제 사례**일 수도 있고, 특정 주제나 워크숍 주제에 맞춘 **가상적 혹은 가설적 사례**일 수 있다. 가상적 사례는 관련된 특정 개인, 조직, 사회적 그룹이나 특정 지역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지역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다루는 데에 종종 활용된다. **현지조사 사례**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지역사회 내의 문제에 대해 반응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이끄는 데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다른 연구 방법으로는 인터뷰, 중점 대상자 연구, 프로젝트나 현지 연구 등이 있다.

- **분석 및 해석 방법**

  분석 및 해석방법이란 (가상적) 문서나 사진 등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 **행동 방법**

  행동 방법은 (주로) 캠페인하기, 지지하는 글쓰기, 플래시 몹 조직하기, 시위하기, 자원봉사자 활동하기 와 같은 후속 활동을 말한다.

- **IT기반 소셜미디어 방법**

  IT기반 소셜미디어 방법에는 온라인 조사, 네트워킹, 블로깅, 소셜미디어 포럼을 통한 논쟁 등이 있다.

- **결론 방법**

  훈련이나 워크숍을 제대로 된 요약으로 마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참여자들은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자신이 배웠던 것을 요약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을 결론짓는 방법은 활동의 목적과 취지에 크게 달려 있다. 결론 방법의 예를 정리하면:

  공 던지기 (참여자들이 공을 서로에게 전달한다. 공을 잡은 사람은 그가 이 세션에서 배웠던 점 하나를 발표한다);

  함께 요약하기 (참여자들이 요약하는 질문이나 열린 질문에 대해 돌아가면서 답변한다.);

  슬라이드 쇼 (촉진자는 세션에서의 사진들을 보여준다. 활동에 대한 성찰으로서, 참여자들은 세션 전, 세션 중, 세션 이후의 자신의 느낌이나 자신이 기여한 점 등에 대해 각자 간략히 발표한다.).

피드백은 전체 훈련이나 워크숍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피드백을 구하고 참여자들에게 이를 제공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그래서 촉진자는 다음의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사람들이 이 활동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 해당 활동은 처음 상상했던 것에 비해 더 어려웠는가, 쉬웠는가? 이 활동에 대해 가장 어려운 측면은 무엇이고, 표현하기 가장 까다로웠던 측면은 무엇이었는가?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 새로이 배웠나? 그룹들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인권이라는 개념에 대해 근본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가? 왜 그런가?

피드백을 제공할 때,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그들이 말하거나 행동한 것에 초점을 두고, 당신의 관점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당신은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다음의 방법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 의견함 : 각각의 참여자들은 종이에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적어 박스에 넣는다. 그리고 모든 참여자가 각각 쪽지 하나씩 뽑아서 큰소리로 읽는다. 그리고 이 의견에 대해 전체가 토론한다.
- 계속해 경청하고 : 각각의 참여자가 활동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모두에게 말하는 시간을 5분씩 가진다.
- 사람 머신 : 모든 참여자가 손을 잡고 하나의 원을 만든다. 여기서 한 사람이 자신이 좋았거나 싫었던 점을 말하기 시작한다. 다음 사람이 이러한 의견을 반복하고, 이 의견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한다. 그리고 다른 무언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 기상 보고관 : 참여자들은 기상 보고관처럼 활동에 대해 느낀 바를 표현한다.
- 손가락 : 학습자는 검토되어야 할 5가지 이슈를 기억하기 위해 손가락을 이용하여 구두로 피드백을 제공한다. 엄지는 좋았던 것, 검지는 지적하고자 하는 것, 중지는 싫었던 것, 약지는 감동받은 것, 새끼손가락은 그들이 놓친 것을 나타낸다.
- 신호등 : 학습자는 초록, 노랑, 빨강색 카드를 이용하여 피드백을 하고 자신이 선택한 색을 고른 이유를 설명한다.
- 다트 : 교육자는 플립 차트에 타겟을 그리고, 학습자들이 워크숍에 대한 평가를 타겟에 대한 위치로 표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준다.
-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 : 참가자 각자는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데, 교육 과정의 결과에 대한 정리와 자신의 삶이나 업무에서 인권에 기여할 것이라는 굳은 약속이 편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교육자는 이 편지 모두를 모아서, 2달 후에 참여자들에게 보낸다.

4. 왜 인권교육을 하는가?

인권교육과 학습은 **민주적이고 다원적 사회에서 시민성을 키우는 데** 핵심이다. 역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민은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하고, 도덕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슈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지닐 수 있어야 하며, 행동에 대한 민주적인 과정을 고안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을 이해하는 인간만이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고 방어할 줄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이 필수적이다. 효과적인 인권교육은 다음 두 가지 필수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다: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과 인권을 위해 배우는 것이다.** 인권에 대한 배움은 권리에 대한 역사, 관련 문서와 이행 체계 등에 대한 인지이다. 인권을 위한 배움은 인간 평등과 존엄성의 원칙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포용, 모든 이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이다. 인권은 매우 영감적이고 동시에 매우 실용적이다. 인권은 대부분의 인간의 희망과 이념을 구체화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희망과 이념을 성취할 수 있도록 북돋아준다. 인권 교육은 이러한 영감적이면서 실용적인 면을 공유하고 있다. 인권교육은 인권에 관한 기준을 만들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온다.

인권교육은

- 가치와 태도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 사회 정의를 촉진할 수 있다.
- 다양한 이슈와 지역공동체, 국가를 아우르는 연대감을 발전시킬 수 있다.
- 지식과 분석적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참여형 교육을 장려할 수 있다.

이 "인권의 이해" 라는 매뉴얼은 내용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 모두에서 현재의 인권교육 논쟁에 기여하고 **전 세계에 진정한 인권문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우리는 학습자들이 지식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획득하도록 돕고자 한다. 인권교육은 인권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인권교육이 많은 이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많은 이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는다. 자기 자신의 삶에서의 인권의 원칙을 존중하는 것만이 공동의 공존과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의 기반이 될 수 있다.

B. 인권을 위한 지속적인 세계적 노력 - 연혁

투쟁 및 역사적 사건	회의 문서 및 선언	기관
17세기까지		
많은 종교적 문서들은 평등, 존엄성과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한 책임감을 강조한다. 3000년도 더 전 힌두교의 베다와 아함경, 우파니샤드와 유대교의 성서와 율법이 나타나다 2500년 전 불교 삼장과 증지니가야 그리고 유교의 선집, 중용과 박학의 교리가 등장하다 2000년 전 기독교 신약 성서, 그로부터 600년 후 이슬람의 쿠란이 나오다	행동 강령 : 메네스, 아쇼카, 함무라비, 드레이코, 키러스, 모세, 솔로, 마누 1215 마그나 카르타가 서명되었고, 군주조차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다 1625 네덜란드 법학자인 휴고 그로티우스가 국제법을 만들다 1690 존 로크가 정부의 시민정부 이론에서 자연권에 대한 생각을 발전시키다 1776 버지니아 권리 장전 1789 권리 장전 : 미국 헌법 수정조항 9항	
18세기와 19세기		
1789 프랑스 혁명과 프랑스 인권선언 1815 라틴 아메리카와 프랑스에서 노예 혁명 1830s 사회적·경제적 권리를 위한 운동 - 인도의 라마 크리시나, 서구의 종교 운동 1840 아일랜드의 차티스트 운동이 보통 선거권과 노동자와 빈곤한 자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다. 1847 라이베리아의 혁명 1861 러시아에서 농노 해방	1792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의 여성의 권리옹호 1860년대 이란에서의 미르자 파스 알리 아쿤자데, 그리고 중국에서 성평등을 위한 담사동의 논쟁 1860년대 로사 게라의 라틴 아메리카를 통틀어서의 여성의 평등에 대한 "La camelia" 라는 이름의 정기 간행물 1860년대 일본에서 토시코 키시다의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나의 동료 자매들이여' 라는 수필 1860-80 노예 무역 폐지에 대한 모든 종교에서의 50개 이상의 쌍무적인 조약	**1809 스웨덴에서 옴부즈맨 기관이 설립됨** 1815 비엔나회의에서의 국제 노예 무역 이슈에 대한 협의회 1839 1860년대에 브라질의 노예 폐지 연합으로 이어진 영국의 노예 폐지 연합 1863 국제 적십자 위원회 1864 국제 노동자 동맹 **1898 드레퓌스 사건으로 인해 비정부기관인 인권 연맹이 생기다**

1900-1929		
1900-15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식민지 국민들이 제국주의에 대해 봉기하다 1905 유럽, 인도, 미국에서의 노동 운동. 모스크바에서는 30만명의 노동자가 시위에 참여하다 1910 멕시코에서 농민들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위해 움직이다 1914-18 제 1차 세계대전 1914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서의 계속되는 독립 운동과 반란 1915 터키인들에 의한 아르메니아인 학살 1917 러시아 혁명 1919 인종의 평등을 배제한 국제 연맹 규약에 대한 광범위한 항의 1920s 엘런 케이, 마가렛 생어, 시쥬 이시모토에 의한 피임 정보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위한 캠페인 **1920s 산업화된 세계에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일반적인 파업과 무장 갈등**	1900 런던에서의 첫 번째 범 아프리카 회의 1906 노동하는 여성의 야간 노동을 금지한 국제 회의 1907 중앙아메리카평화회의가 외국인 체류자에게 그들이 거주하는 법정에 항소할 권리를 주다 1916 레닌의 제국주의론에서 민족자결권이 언급되다 1918 윌슨의 14개조 평화원칙에서 민족자결권이 언급되다 1919 베르사유 조약이 민족자결권과 소수자 권리를 강조하다 1919 범 아프리카 회의가 식민지에서의 민족자결권을 요구하다 1923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열린 미 공화국의 다섯 번째 회의 1924 아동 권리에 대한 제네바 선언 1924 미국 의회가 원주민에게 완전한 시민권을 보장하는 Snyder 법률을 승인하다. **1926 제네바 협정이 노예제도 협약을 채택하다**	1902 선거권과 동등한 시민권을 위한 국제 동맹 1905 무역 연합이 국제 연합을 형성하다 1910 의류 노동 여성 국제 연합 1919 국제 연맹과 국제 사법 재판소 1919 노동법에 구체화된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국제 노동 기구 1919 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 국제 동맹 1919 여성권리를 위한 비정부기관들이 아동권리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하다 ; Save the Children(영국) 1920년대 아크라에서의 영국령 서아프리카인들의 민족자결권을 위한 국민 회의 1922 14개의 국가 인권 동맹이 인권 동맹 국제 연합을 형성하다 1925 8개 개발도상국 대표가 유색인종 연합이 인종 차별을 끝내도록 하다 1928 미주여성위원회가 여성의 시민권과 정치권의 인정을 보장하다
1930-1949		
1930 인도에서 간디가 소금세에 반대하는 수백 명의 행진을 이끌다 1939-45 히틀러의 나치 체제가 600만명의 유대인을 죽이고 강제 수용소에 감금하다. 그리고 집시, 공산주의자, 노동 조합원, 정치적 반체제 인사, 장애인, 동성애자 등을 살해하다. 1942 프랑스의 르네 카생이 전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국제 법정의 창설을 촉구하다 1942 제 2차 세계대전에서 12만명의	1930 강제노역에 대한 국제노동조약 1933 성인 여성 매매 금지조약 1941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가 4개의 필수적 자유(언론과 종교의 자유, 궁핍과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확인하다. 1945 인권을 강조한 UN 헌장 1948 세계인권선언 1948 집단 학살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 **1948 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	1933 난민 기구 1935-36 수감자의 기본권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 형법 및 형무 회의 1945 뉘른베르크와 도쿄 재판 1945 국제 연합 1946 UN 인권위원회 1948 미주기구 1949 유럽회의 1949 전쟁포로의 대우에 대한 제네바협약 1949 전시에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일본계 미국인들을 억류하다 1942-45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의 반파시즘 운동 1949 중국 혁명		대한 제네바협약 1949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및 최종의정서 **1949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국제 노동기구 협약**
1950-1959		
1950년대 아시아에서의 민족해방 전쟁과 반란, 몇 개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을 얻다 **1955 미국의 정치권과 시민권 운동;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을 이끌다(381일)**	1950 유럽인권조약 1951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1951 동등한 처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1954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1957 강제 노동의 폐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1958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의 차별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1950 노동조합권 침해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사실조사위원회 1951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 1954 유럽인권위원회 **1959 유럽인권재판소**
1960-1969		
1960년대 아프리카의 17개 국가와 다른 대륙의 몇몇 국가들처럼 민족자결권을 지키다. 1962 전국농장노동자들(미국농장 노동자 조합) 이 미국 내 이주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하다1960년대-70년대 여성 운동이 평등을 요구하다	1960 UN교육과학문화기구의 교육차별철폐협약 1961 무국적의 감소에 관한 협약 1965 UN 인종차별철폐협약 1966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 UN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선택의정서 1966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1968 테헤란에서의 인권에 관한 제1차 세계 회의**	1960 미주인권위원회가 첫 번째 회의를 갖다 1961 국제사면위원회 1963 아프리카 통일 기구 1965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1966 UN 인권위원회 1967 정의 평화 위원회
1970-1979		
1970년대 남아프리카의 아파르트헤이트, 점령지에서의 팔레스타인인 대우, 칠레에서의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고문, 아르헨티나의 ' 더러운 전쟁 ', 캄보디아의 집단 학살 등의 인권	1973 UN 아파르트헤이트범죄의 진압 및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 1973 국제노동기구의 최저연령협약 1974 비상 상황 및 무장 갈등 상황에서 여성과 아동 보호 선언 1974 로마 세계식량회의	1970 파라과이와 브라질에서의 정의와 평화에 관한 첫 번째 위원회 1978 헬싱키 감시단(인권감시기구) 1979 미주인권위원회 **1979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1977 '1949년 8월 12일자

문제가 사람들의 주의를 사로잡다 1970년대 사람들이 아랍-이스라엘 갈등, 베트남 전쟁과 나이지리아 시민전쟁에 반대하다 **1976 국제사면위원회가 노벨상을 수상하다**	1975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선언 1977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보호에 관한 의정서(제1의정서) 1977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보호에 관한 의정서(제2의정서) 1978 UNESCO 인종과 인종적 편견에 관한 선언 **1979 UN 여성차별철폐선언**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보호에 관한 의정서(제1의정서) 1977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보호에 관한 의정서(제2의정서
1980-1989		
1980년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독재가 끝나다 1986 필리핀에서 평화로운 민중의 힘이 마르코스의 독재를 타도하다 1989 천안문 광장 시위 **1989 베를린 장벽의 붕괴**	1981 아프리카 인권 헌장 1984 UN 고문방지협약 1986 UN 발전할 권리에 관한 선언 1989 UN 아동권리협약 1989 사형의 폐지를 목표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2선택의정서 **1989 원주민과 부족민에 관한 협약**	1983 아랍인권기구 1984 UN 고문반대위원회 1985 UN 경제적'사회적'시민적 권리 위원회 1985 UN 고문방지에 관한 특별 조사위원 1988 아프리카 인권 위원회 1989 UN 아동권리위원회
1990-1999		
1990년대 민주주의는 아프리카에 퍼지다. 넬슨 만델라는 감옥에서 석방되었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1990s 이전 유고슬라비아에서의 민족 청소, 르완다에서의 대학살과 인권에 대한 큰 침해 1998 칠레의 피노체트 장군에 반하여 범인 인도 절차에 착수하다 **1999 국경 없는 의사회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다**	1990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1993 비엔나 선언과 행동계획 1993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선언 1990-96 아동, 교육, 환경과 개발, 거주지의 문제에 관한 UN 회의와 정상 회담 1998 국제 형사 재판소를 창설한 로마규정 1999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1999 아동 노동의 가장 심각한 형태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1990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 위원회 1992 유럽안보협력기구 소수민족문제담당 특별대표 1993 비엔나 세계 인권 회의에서 첫 UN 인권 고등판무관이 임명되다 1993-94 이전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를 위한 국제형사재판소 1994 여성에 대한 폭력과 그 원인, 결과에 관한 UN 특별보고관 1995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 1995-99 10개국이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적 행동 계획에 착수하다 1999 인간안보네트워크가 설립되다

2000-2012		
2000 세네갈 법정이 이전 차드인 독재자 이센 아브르를 고문과 야만성으로 기소하다 2000 2000년 이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 폭력이 확대되다(알 아크사 인티파다) 2001 UN과 코피 아난이 평화상을 공동 수여하다 2001 테러리스트들이 세계무역센터와 미 국방성을 공격하였고, 부시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의 '테러리스트 기반시설'을 목표로 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다 2002 쿠바의 관타나모 만에 해군 기지의 구치소 2003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다 2004테러리스트들이 마드리드와 베슬란을 공격하다. 미군의 포로 학대를 상세히 묘사한 사진들이 게재되다 2005 테러리스트들이 런던을 공격하다 2006 사담 후세인 처형, 토마스 루방가(콩고)가 국제 형사 재판소에서 처음으로 기소되다 2007 크메르 루주 재판소가 일을 시작하다 - 카잉 구엑 에아브가 처음으로 기소되다 2008 코소보가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하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하머스에 대하여 캐스트 리드 작전에 착수하다. 라도반 카라지치는 체포되어 구유고슬라비아형사재판소에 서다. 2010 카잉 구엑 에아브는 크메르 루주 재판소에 의해 35년 징역형을 선고받다. 아랍의 봄으로 사람들이 아랍 국가의 권위주의적 체제에	2000 무력 분쟁에서의 아동의 관여의 권리에 관한 규약선택의정서 2000 아동의 매매, 성매매 및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2000 국제연합의 밀레니엄 선언 2001 더반에서의 유엔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 더반 선언과 행동계획 2002 고문방지조약 선택의정서 2004 아랍 인권 헌장 2005인신매매 반대 행동협약에 관한 유럽회의 2005 여성 권리에 관한 "Beijing+10" 회의 2006 장애인권리협약 2006 강제실종협약 2006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2007 테러로부터의 보호 협약에 관한 유럽 회의 2007 원주민 권리 선언 2007 리스본조약과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 2008 경제적'사회적'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선택의정서 2008 확산탄금지협약 2010 캄팔라구 회의에서 침략범죄의 정의에 대한 합의를 하다 2011 UN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결의안에서 처음으로 보호책임을 언급하다 2011 UN 인권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선언	2003 국제형사재판소가 1월 1일에 일을 시작하다 2005 테러리즘에 맞서는 중의 인권 증진과 보호에 관한 UN 특별보고관 2006 UN 인권이사회 2006 장애인권리위원회 2007 비엔나에 기반을 둔 기본권을 위한 유럽 연합 2008 아프리카 사법 재판소가 아프리카 인권과 국민권 재판소와 합병하여 아프리카 인권 사법 재판소가 되다 2008 나바네템 필레이가 UN 인권 고등판무관으로 임명받다. 2009 ASEAN 인권위원회가 설립되다 2011 2008년에 설립된 인간 존엄에 관한 패널이 "존엄성 지키기 : 인권에 관한 의제" 보고서를 발표하다. 2011유엔사무총장의 특별대리인이 "사업과 인권에 관한 원칙 안내"를 발표하다 2012 나바네템 필레이가 UN 인권 고등판무관으로 재임명되다

반발하다. 2011 믈라디치는 체포되어 구유고슬라비아 형사재판소에 서다. 오사마 빈 라덴이 살해당하다. 리비아에 대한 인도주의적 개입이 있다. 무하마르 카다피가 살해당하다.		

C. 인권관련 추천 문헌

추천 책자

국제관계와 인권 Human Righ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저자/편집자: David P. Forsythe

출판지: New York

출판사: Cambridge University Press

출판년도: 2012

ISBN: 978-1-107-62984-4

내용: 이 교과서는 국제 정치에서의 인권의 위치에 대해 권위 있는 개요를 제공한다. 다음과 같은 주요 역설이 인권의 발전을 요약해 보여준다 : 국제법에서 인권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히 확립된 반면, 인권의 실제적 보호는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 책은 다음의 네 가지 주요 주제에 주목하고 있다. : 인권 규범의 회복력, isofti law의 중요성, 비정부기구의 중요한 역할 그리고 국가 주권의 변화하는 본질. 인권 표준은 세계적, 지역적, 국가적 분석 수준에 따라 검증되며, 다국적 기업에 관해서도 별개의 장에서 다루고 있다. 이 3판은 최근의 사건을 반영하기 위해 갱신되었다. 특히 호전적인 이슬람교도들과 강력한 대테러 정책의 지속성, 중국의 증가하는 국력과 많은 인권에 전적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다른 국가들, 그리고 인권에 대한 관심과 관련된 비용을 강조하는 다양한 경제적 문제들을 반영하였다.

UN인권조약체계 (UN Human Rights Treaty Bodies – Law and Legitimacy)

저자/편집자: Hellen Keller, Geir Ulfstein

출판지: New York

출판사: Cambridge University Press

출판년도: 2012

ISBN: 978-1-107-00654-6

내용: 국가의 법에 있어서 인권 조약 의무의 효과적인 이행은 관심의 대상이다. 국제적 수준에서의

국가의 이행에 관한 국제적 감시의 주된 책임은 UN 인권 협약 기구에 일임되어 있다. 이러한 기구들은 각각의 인권 협회에 의해 설립되었고,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이러한 기구들의 세 가지 면을 검증한다. 기구의 구조・기능・결의의 법률적인 측면, 인권 의무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는 데에 있어서의 기구의 효율성,이러한 기구들과 기구들의 결의의 타당성이다. 분석은 협약 기구의 전 & 현 구성원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저명한 법률 전문가들의 기여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의 후원 아래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함께 협약 기구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국제 인권 운동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Movement

저자/편집자: Aryeh Neier

출판지: Princeton

출판사: Princeton University Press

출판년도: 2012

ISBN: 9780631135151

내용: 지난 몇 십년간, 국제 인권 운동은 전체주의 정권, 잔혹한 전쟁,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들에 대한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오늘날, 이는 테러에 대한 전쟁,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권력 남용과 씨름하고 있다. 저자는 17세기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 싸운 반대자들과 미국 남북 전쟁 시대 이전에 노예제 폐지론자들을 검토하며, 이러한 운동의 유래를 논의한다. 그는 1970년대 이후의 시기에 특히 주목하고, 헬싱키 조약 이후의 인권 운동의 성장, 미 행정부의 역할, 2011년의 놀라운 아랍혁명에 대해 묘사한다. Neier는 동시대적 인권운동은 기껏해야 냉전에서 뻗어나온 결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그는 어떻게 이것이 국제법, 기구, 권리에서의 강력한 영향이 되었는지 입증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Neier는 국제사면위원회와 국제 인권감시 기구를 포함하여, 주요 인물들, 논쟁, 기구들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도전을 고려한다.

아프리카 국제인권법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Africa

저자/편집자: Frans Viljoen

출판지: Oxford

출판사: Oxford University Press

출판년도: 2012

ISBN: 978-0-19-964559-6

내용: 이 책은 아프리카에서의 인권법에 대해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개요를 제공한다. 이는 UN 시스템, 아프리카 연합, 아프리카내 지역경제공동체에 의한 인권 실현을 위한 제도, 규범, 과정을 검토한다. 또한 아프리카 정부들의 국가적 법적 체계에서의 관계를 탐색한다.

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제에 따라 교차횡단적으로 탐색한다. : 국제인권법의 국가적 시행과 이행, 법을 포함한 다양한 통합, 빈곤 근절에 있어서의 인권의 역할. 이 책은 또한 관련 있는 인권 개념에 대한 소개를 제공한다.

인권과 지역 The Local Relevance of Human Rights

저자/편집자: Koen De Feyter, Stephan Parmentier, Christiane Timmerman, George Ulrich

출판지: Cambridge

출판사: Cambridge University Press

출판년도: 2011

ISBN: 978-1-107-00956-1

내용: 취약 계층이 그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로 지역 수준에서 인권을 간구할 때, 인권이 실제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지역 수준에서 인권을 간구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인권의 지역적 관련성이 증가하도록 하여, 인권의 미래의 발전(국가적 수준 혹은 다른 수준에서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1948년 12월 10일의 UN 인권 선언의 채택 이후, 수많은 국제 문서들이 인권을 전지구적 규범으로 재차 확인하였다. 이 책은 지역 수준으로부터의 인권 호소가 성공적인지, UN 인권 선언이 관련 집단에 의해 현재 정의된 위협들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혹은 동시대적 타당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UN 인권 선언에 포함된 몇 몇의 아이디어들을 고칠 필요가 있는 지 등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검토한다.

인권 : 미신과 오해 Human Rights: Confronting Myths and Misunderstandings

저자/편집자: Andrew Fagan

출판지: Cheltenham

출판사: Edward Elgar Publishing

출판년도: 2011

ISBN: 978-1-84980-982-5

내용: 이 종합적인 책은 동시대의 이론에 서의 영속적인 주제와 쟁점, 그리고 인권의 실천에 대한 소개와 비판적인 분석 모두를 제공한다. 다학제적인 분석을 제공하면서 이 책은 인권 주제에 대한 철학적, 정치적, 사회적 접근을 활용한다.

국제인권조약의 기초 (The Fundamental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Law)

저자/편집자: Betrand G. Ramcharan

출판지: Boston/Leiden

출판사: Martinus Nijhoff Publishers

출판년도: 2011

ISBN: 978-90-04-17608-9

내용: 이 책의 목표는 간단하다. 해당 국가에서 인권 조약 제도를 법제화하고 관행화하는 것을 도울 의무가 있는 국가의 지도자, 공무원 혹은 법률 고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제 인권 조약 법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는 주요한 국제/지역 인권 조약에 규정된 국제법에 관한 책인데, 그들의 감시 기관의 관행과 법리에 의거하고 있다.

1장은 국제 인권법의 본질과 특성에 대해 논의한다. 2장는 만일 인권 조약이 적절하게 이행된다면 작동될 국가적 보호 체계의 개념에 대해 논한다. 3장은 법리와 민주주의와 법규의 기초 문제에 있어서의 조약 기구의 실행을 논한다. 4장은 위기와 비상 상황에서의 인권에 대해 논한다. 5장은 예방적 전략에 대해 논한다. 6장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확실히 해야 할 정부의 의무에 대해 논한다. 7장은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한 보상할 정부의 의무를 논한다. 8장은 보고 체계에 있어서의 감시의 본질을 논한다. 9장는 탄원서의 본질과 진상 조사 과정을 논한다. 10장은 법리와 인권 조약 기구의 이행에서 나온 보편성, 평등성, 정의의 기반 원칙들에 대한 논의로 결론을 짓는다.

국제인권법: 사례, 자료, 쟁점 등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Cases, Materials, Commentary

저자/편집자: Olivier De Schutter

출판지: New York

출판사: Cambridge University Press

출판년도: 2010

ISBN: 978-0-521-74866-7

내용: 어떻게 당신은 학생들의 주제에 대한 인식이 이것의 학문적 연구의 현실과 충돌할 때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겠는가? 국제 인권법은 의문의 여지없이 흥미로운 분야지만 동시에 복잡하고 고된 분야이기도 하다. 이 교과서를 통해 저자는 서로 다른(그러나 관련되어 있는) 권리들의 집합이라기보다 전 지구적 법 체계로서의 국제 인권법에 주목한다. 그는 또한 이 의견에 타당성과 신속성을 부여한다. 다양한 자료에서의 사례와 내용에 의거하여, 이는 어떻게 인권법이 전세계적 빈곤과 종교적 다양성과 같은 동시대의 쟁점을 논하는 도구로서. 사용되는지를 보여준다.

자료들은 주제별로 정렬되며, 이는 독자들로 하여금 서로 다른 법적 조약들과 체계들을 비교하고 연결 짓도록 한다. 학생들은 또한 국내와 국제법 아래에서 어떻게 인권이 보호되는지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법은 철저히 맥락 속에 존재한다. 이는 왜 법이 존재하며, 어떻게 법이 작용하는지에 대해 완전히 이해시킨다.

유럽인권보호조약 (Law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저자/편집자: David Harris, Michael O' Boyle, Colin Warbrick

출판지: New York

출판사: Oxford University Press

출판년도: 2009

ISBN: 978-0-40-690594-9

내용: 이 저서는 유럽법의 역사에서의 주요 이정표인 유럽인권 법정의 50주년과 동시에 출판되었다. 스트라스부르 판례법과 이 기저의 원칙들에 대한 최신의, 그리고 종합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이 책은 이러한 법의 영역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쉽게 만든다. 이것은 체약 국가의 법적 발전에 대한 협약의 영향의 정도를 완전히 탐색하고, 어떻게 그러한 강력한 권위가 성취되고 유지되는지를 정확히 드러낸다. 이는 실질적인 확약이 되는 협약의 각각의 조항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착수한다. 그리고 감시 체계를 검토한다. 현재 47개의 유럽 국가들이 이 협약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협약에 묶인 국가의 범위는 더더욱 확장될 것이다. 협약은 전체 대륙에 대해 일반적인 인권 표준을 제공함으로써, 유럽의 권리에 대한 효과적인 헌법 법안이 되었다. 국가의 의회와 법정은 법률을 제정하고 안건을 의결할 때, 이 협약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지켜야 할 스트라스부르의 판단을 반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거의 모든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해당 국가의 법정에서 직접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 왔다. 나머지 몇몇 국가에 대해서 협약은 권리에 대한 국가적

법안의 모델을 제공한다. 이러한 모든 고려 사항은 이 책이 제공하는 협약 법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의 엄청난 가치를 강조한다.

국제인권보호법 The Law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otection

저자/편집자: Walter Kalin, Jorg Kunzli

출판지: New York

출판사: Oxford University Press

출판년도: 2009

ISBN: 978-0-19-956520-7

내용: 전세계적 수준과 지역적 수준에서 국제 인권 보호에 대해 간결하고 종합적인 개요를 제공함에 있어서, 이 책은 인권 의무의 근원, 법적 본질, 적용 범위를 포함해 국제 인권법의 발상에 대한 소개, 개념적 토대, 교리를 제공한다. 국내, 지역, 그리고 보편적인 수준에서 이행 및 집행의 문제를 탐구하고, 최근에 설립된 유엔 인권 이사회의 영향을 평가한다. 유엔 조약기구 및 관련 지역 법원의 판례에 따라,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포함하는 실질적인 보장이 평가된다. 이 책은 인권이 인권에 의해 보호되는 이들에게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인권에 의해 얽매인 이들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실제 권리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인권 보장 이행을 감시하고 국제적 수준에서의 준사법기구와 인권 법정의 주목을 끈 개별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국제적 공동체에 의해 만들어진 다양한 기제를 살펴본다. 책의 마지막 부분은 생명권, 고문 금지, 비차별, 경제적 권리 등과 같은 인권 보장의 의미에 대한 탐색을 포함한다.

인권관련 – 지역 정책과 국가인권기구
Human Rights Matters – Local Politics and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저자/편집자: Julie A. Mertus

출판지: Stanford

출판사: Stanford University Press

출판년도: 2009

ISBN: 978-8047-6093-5

내용: 인권 옹호자들 가운데에서는 인권 증진과 보호가 국제적 노력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행위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믿음이 지배적이다. 신문에 나는 것은 국제기구일지 몰라도 실제로 해당 지역

의 기대 수준을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인권을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국내 집단이다.

일련의 사례 연구와 국가 인권기구의 관리자 및 유권자들과의 광범위한 인터뷰를 통해, 저자는 이러한 집단들의 일상을 면밀히 들여다본다. 그녀는 어떻게 지역 문화가 인권 증진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묘사하기 위해 보스니아, 체코 공화국, 덴마크, 독일, 북아일랜드 등을 검토하면서 유럽의 독특한 사례들을 소개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관들의 분명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교훈적인 이야기를 한다. 국가 기관이 설계하고 운영하기 매우 어렵고, 이러한 기관들은 단지 국내 정치 및 경제적 요소가 허용하는 만큼만 잘 운영된다. 세계무대에서 인권을 가장 지지하는 국가가 국내에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으로 드러나는 일이 지나치게 자주 눈에 띈다.

국제인권법의 구조: 법, 정책, 도덕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Context: Law, Politics, Morals

저자/편집자: Henry J. Steiner, Philipp Alston, Ryan Goodman

출판지: Oxford

출판사: Oxford University Press

출판년도: 2007

ISBN: 978-0-19927942-5

내용: 이 학제 간의 교재는 광범위한 텍스트, 편집 해설 및 연구 질문과 함께 다양한 범위의 기본 및 보조 재료를 제공한다. 해당 책의 제3판은 철저하게 국제법의 다음과 같은 기본 특성을 다룬다. 인권 운동의 발전, 시민・경제・사회적 권리, 전쟁의 인도주의 법, 세계화, 민족 자결권, 여성의 권리, 보편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정부 간 기관 및 비정부 기관, 이행 및 실행, 인권 규범의 내부 응용 프로그램, 입헌주의의 확산 등이다. 제3판은 테러와 국가 안보에 관련된 인권을 비롯한 새로운 테마와 주제를 포함한다. 인권 침해에 대한 비 국가 행위자의 책임, 국제법의 근본과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최근의 변화, UN 인권기구 내에서 이미 달성된 개혁과 잠재된 개혁, 국제기구에 대한 이론과 이들이 국가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문서 부록을 갖춘 웹 사이트 또한 있다.

국제적 인권보호: 성과와 도전
International Protection of Human Rights: Achievements and Challenges

저자/편집자: Felipe Gomez Isa, Koen de Feyter

출판지: Bilbao

출판사: University of Deusto

출판년도: 2006

ISBN: 84-9830-034-7

내용: 1990년대 초, 인권 공동체 내에서는 이후 10년은 국제 인권 체제가 강화되는 시기일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사실은, 인권 체제는 새로운 상황에 대응해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저자들은 이 매뉴얼에서 성취와 앞으로의 도전 모두를 강조하려 시도해왔다.

Available at: http://krisan.be/drammen/docs/heyns.pdf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

국제엠네스티 보고서 2012: 세계 인권 현황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2012: The State of the World's Human Rights

저자/편집자: Amnesty International (AI)

출판지: London

출판사: Amnesty International

출판년도: 2012

ISBN: 978-0862104726

내용: 2012년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서는 155개국의 2011년 인권 상황을 정리하고 있다.

Available at: www.amnesty.org/en/annualreport/2012 (링크 안됨)

https://www.amnesty.org/en/annual-report-201415 (2015년 연례보고서)

http://amnesty.or.kr/wp-content/uploads/2015/02/2015연례보고서.pdf (한글)

휴먼라이트워치 2012 세계보고서

Human Rights Watch World Report 2012

저자/편집자: Human Rights Watch (HRW)

출판지: New York

출판사: Human Rights Watch

출판년도: 2012

ISBN: 978-1-60980-389-6

내용: 22번째 월드 리포트는 전 세계에 걸쳐 90개 이상의 국가와 영토에서의 2011년의 인권 상황을 요약한다. 이는 인권 감시 기구의 요원들이 그 해 동안 실시한 광범위한 조사를 반영한다. 국내 인권 활동가들과의 긴밀한 협력 또한 큰 몫을 차지한다.

Available at: www.hrw.org/world-report-2012

http://www.hrw.org/sites/default/files/wr2015_web.pdf (2015 세계보고서)

기본권: 도전과 성과(2011)
Fundamental Rights: Challenges and Achievements in 2011

저자/편집자: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FRA)

출판지: Luxembourg

출판사: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출판년도: 2012

ISBN: 978-92-9192-919-1

내용: 이 해의 FRA 연간 리포트는 객관적이고 타당하며 비교할만한 사회 법률의 자료에 의거하여 2011년의 긍정적인 발전과 기본권 분야에서 EU와 가입 국가들이 맞이한 도전을 연대순으로 기록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루며 EU 기본권 헌장 아래에서 EU와 가입 국가들의 권리 의무의 발전을 검토한다. 망명, 이민 및 통합, 국경 통제 및 비자 정책, 정보 사회 및 데이터 보호, 아동의 권리와 아동 보호, 평등과 비차별, 인종주의와 민족 차별, 연합의 민주적 기능에 있어서의 EU 시민의 참여,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정의에 대한 접근, 범죄 피해자의 권리. 올해, 중요 섹션에서는 오늘날 유럽에서 기본적인 권리의 상황을 살펴본다. 이 섹션은 다양한 기관, 권리 및 메커니즘이 EU 내의 모든 사람의 삶에 이러한 권리를 주기 위해 어떻게 협력하는지를 보여준다.

Available at: http://fra.europa.eu/fraWebsite/research/publications/publications_per_year/2012/pub-annual-report-2012_en.htm

http://fra.europa.eu/en/publication/2014/fundamental-rights-challenges-and-achievements-2013-annual-report-2013 (2013년 보고서)

인간개발보고서 2011

Human Development Report 2011. Sustainability and Equity: A Better Future for All

저자/편집자: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출판지: New York

출판사: Palgrave McMillan

출판년도: 2011

ISBN: 978-0230363311

내용: 21세기의 위대한 발전 과제는 오늘날의 세대와 미래의 세대의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2011년 인간 개발 보고서는 이러한 도전에 있어서의 전 지구적 대화에의 중요한 새로운 기여를 제공한다. 이는 지속가능성이 어떻게 형평성, 사회정의와 공정함에 대한 질문, 그리고 더 나은 삶의 질에의 접근성 확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Available at: http://hdr.undp.org/en/

아태지역 인권 Human Rights in Asia and the Pacific

저자/편집자: James T. Lawrence

출판지: Huntington

출판사: Nova Science Pub Inc.

출판년도: 2004

내용: 인권의 존재는 평화를 지키고, 침략을 억제하고, 법규를 증진하며, 범죄와 부패와 맞서 싸우고, 인도주의적 위기를 방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인권은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여성의 권리, 아동의 권리, 소수 민족의 보호를 포함한다. 이 책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국가에 대해 설문 조사하고 있다. 또한 참고문헌과 주제, 제목과 저자에 따른 유용한 색인이 제공된다.

아프리카 인권-아프리카통일기구(OAU)부터 아프리카연합까지

Human Rights in Africa – From the OAU to the African Union

저자/편집자: Rachel Murray

출판지: Cambridge

출판사: Cambridge University Press

출판년도: 2004

내용: 이 책은 아프리카 통일 기구(OAU, 현 아프리카연합의 전신)의 역할과 1963년부터 인권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검토한다. 이는 아프리카 통일 기구와 최근 아프리카 연합으로의 변화 아래에서의 중요 기관들의 역할을 고려한다. 이 책은 여성 인권, 아동 인권, 민주주의의 개념을 포함해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선도적인 인권 학자에 의해 쓰여진 이 책은 아프리카 국가를 위한 행동을 하는 변호사들, 외국 정부와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비정부기관에게 필독서다. 뿐만 아니라, 국제 인권, 비교 인권 학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D. 인권교육 관련 자료[24)]

인권교육에 관한 추천하는 기본적 자료, 배경 정보, 리뷰 및 과학적 담론들

미래를 위한 과거의 발견 : EU에서 홀로코스트와 인권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역사적 장소와 박물관의 역할

Discover the Past for the Future: The Role of Historical Sites and Museums in Holocaust Education and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EU

저자: FRA.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출판지역: 비엔나

출판사: FRA.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출판년도: 2011

내용: 홀로코스트학살에 대한 교육이 60여년이 지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교육은 아주 초기부터 생존자와 목격자의 경험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는데 이제 끝이 보이고 있다. 이유는 단지 그들의 나이 때문이다. 반면 유럽 전역에서의 우익극단주의의 부상은 우리가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한다. 이 책자는 홀로코스트 교육과 인권교육에 대해 제기되는 일반적 주제에 대해 질문하고 인식을 높이고 인종주의와 반유대주의에 대한 인식 증진과 투쟁이라는 목표를 쟁취하기 위한 가능한 협력방안을 다루고 있다.

자료:http://fra.europa.eu/sites/default/files/fra_uploads/1791-FRA-2011-Holocaust-Education-Main-report_EN.pdf

인권교육에서의 최근 이슈들 Contemporary Issues in Human Rights Education

저자: 유네스코

출판지역: 파리

출판사: 유네스코

출판년도: 2011

내용: 이 자료는 인권교육의 역할에 관한 주요 흐름을 정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현에 있어서의 핵심요소를 다루고 있다. 각 흐름들은 현재의 주제와 인권과 문화가 결합되면서 직면하는 도전과제를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평화롭고 즐거운 사회의 기초로서의 인권교육의 통합적 중요성을 보여준다. 각 흐름에서 국가기구에서 연감을 준 예들의 목록을 제안하고 있다. 인권증진에서의 연구의 역

24) 역주) 해당 자료의 원본 링크의 경우, 2015년 2월 기준으로 검색하여 재구성함.

할에 대해서는 인권교육의 역할에 관련된 주요 동향, 사례 및 도전을 다루는 장에서 21세기의 도전과 과제하는 주제로 같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 출판물은 인권교육 60년 대한 개요와 전세계 학습 자료 전시를 첨부하고 있다.

자료: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1/002108/210895e.pdf

아태지역 인권교육 1-4권 Human Rights Education in Asia-Pacific. Vol. 1-4

저자: 아태지역 인권정보센터 (Asia-Pacific Human Rights Information Center)

출판지역: 오사카

출판사: 아태지역 인권정보센터 (Asia-Pacific Human Rights Information Center)

출판년도: 2010-2013

내용: 아시아지역 20여개 국가에서의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에 대한 12년간의 논문집에 이어, 아태지역 인권정보센터는 2010년부터 연간 리뷰를 출판하기 시작했다. 이전의 활동과 같이, 인권교육에서의 풍부한 아태지역에서의 경험들을 문서화하고 이를 개인과 기관들에 보급하는 것이 목표이다.

자료: www.hurights.or.jp/archives/asia-pacific/ (vol. 1 and 2)

인권교육 : 개념적 분석 Human Rights Education: A Conceptual Analysis

저자: 안드레 킷 (Andre Keet)

출판지역: 자브리켄, 독일

출판사: Lambert Academic Publishing

출판연도: 2010

내용: 지난 15년간, 인권교육은 급속하게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 수용에서 기반한 교수법의 통용과 정당성을 기반한 교수법 구성으로 진화하고 있다. 반면 전세계 공식 및 비공식 교육 시스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교육의 확산은 역설적이게도 지속적이고 의미있는 이론 분석과 일치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인권교육은 정치적 이해라는 접근법에 의해 주로 정보를 제공하는 선언중심적이고, 보수적이며, 무비판적이면서 규정 준수에 맞춘 교수법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은 인권교육의 체계적인 개념 분석을 제공하고 떠오르는 인권교육의 새로운 유형에 대한 대안적 개념 원칙을 제안하고 있다. 이 분석과 제안은 인권교육 실무자, 전문가 및 학자들이 이러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 새로운 형태는 비판적이면서 인권의 보편성에 근거하면서, 변화와 휴머니즘 가능성이 무한히 증가할 수 있는 비결정적인 관계에 위치한다.

인권교육 : 정책과 실행에서의 반영 Human Rights Education: Reflections on Policy and Pract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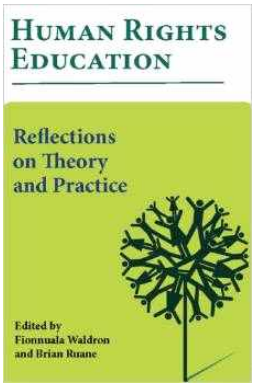

저자: Fionnuala Waldron, Brian Ruane

출판지역: 더블린, 영국

출판사: The Liffey Press

출판년도: 2010

내용: 이 책은 인권교육을 이론과 실천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국내나 국제적 상황에서의 상호 연관되고 발전하고 있는 세 가지 주요 테마를 다루고 있다. 첫 번째 테마는 시민교육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교육에서의 인권교육의 역할을 다루고 있다. 두 번째 테마는 교육에서의 아동원 권리와 '목소리'라는 개념을 다루고 있다. 세 번째 테마는 커리큘럼 설계와 학교에서의 실천이라는 면에서의 인권교육을 다루고 있다. 이 책자는 더불린시의 성패트릭대학의 인권과시민교육센터(the Centre for Human Rights and Citizenship Education)에서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제출된 논문들을 기반하여 다루고 있으며, 인권교육에서의 최근 고민들과 모범 사례에 대래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국제 표준. 지역활동.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15년 후. 국제전문가회의 회의자료, 비엔나, 2008. 8. 28~29.

Global Standards . Local Action. 15 Years Vienna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Conference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Expert Conference held in Vienna on 28 and 29 August 2008.

저자: Wolfgang Benedek et al.

출판 지역: 빈/그라츠

출판사: Neuer Wissenschaftlicher Verlag

출판년도: 2009

내용: 비엔나선언 15년후, 1993년 선언의 국가의 책무 이행 상태를 세 위킹 그룹에서 연구하고 논의하였다. 이 책자는 인권교육에서의 국제적, 국내적 관점과 실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회의내용을 종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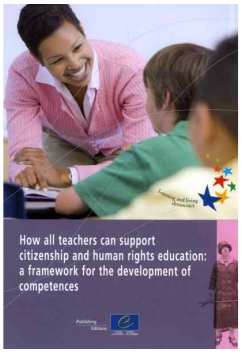

모든 교사들이 시민권과 인권 교육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나 : 역량 개발을 위한 틀

How All teachers Can Support Citizenship and Human Rights Education: A Framework for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s

저자: Peter Brett, Pascale Mompoint-Gaillard, Maria Helena Salema

출판지역: 스트라스부르, 프랑스

출판사: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출판년도: 2009

내용: 이 책자는 양성과정이나 직무교육에서, 교실에서의 실천이나 학교 전반과 보다 넓은 공동체에서의 민주시민권과 인권에 대한, 교사와 교사교육자들에게 핵심 역량을 구성하게 해준다.

약 15개의 역량을 제시하고 있으며, 크게 4개 묶음으로 나누어진다. 각 역량 묶음은 하나의 장을 구성하여, 보다 자세하고 예를 들어 설명된다. 독자는 각 역량에 대해 진행표와 추천 개발 활동을 볼 수 있다. - 진행표는 주제구성, 개발, 구성되고 발전된 연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사와 교사교육자는 그들에게 해당하는 전문적 연습 수준을 결정하고, 그들이 관심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개선을 구별하도록 도와주도록 목표하고 있다.

자료: http://eclipse.lett.unitn.it/download/support.pdf

인권교육 : 이론과 실제 Human Rights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저자: C. Naseema

출판 지역: 뉴델리, 인도

출판사: Shipra Publications

출판년도: 2008

내용: 인권교육은 인권침해를 줄여주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인권은 모든 단계의 교육에서 다루어져야만 한다. 이 책자는 인권에 개한 개요, 구현 및 인권교육의 교육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교사들에게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방법과 활동과 교사의 역할을 다루고 있다. 이책에서 집중하고 있는 인권교육의 교육학적 측면은 여러 차례의 위크숍의 결과물이다.

인권학습 : 민중보고서
Human Rights Learning: A People's Report

저자: Upendra Baxi, Kenny Mann

출판지역: 뉴욕, 미국

출판사: 국제인권교육민중연합 (PDHRE)

출판년도: 2006

내용: 이 보고서는 지난 20년 동안 구성 및 검토, 반영을 통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f서, 이 보고

서는 독자들에게 심지어 인권교육의 아이디어로 드러나지 않고 아직 달성하지 못한 인간 존엄성, 자유와 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결과를 시간 흐름의 결과로 보여준다. 인권교육에서의 과거뿐만아니라 일부 사업들의 현재 모습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이전의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교육 부문과 비교해서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의 인권교육의 아이디어와 이상적인 형태, 학문적 연구, 조직된 NGO 공공적 옹호 활동, 대중 운동 등이다. 여기 정리된 자료들은 인권교육의 다양한 영역들을 보여주며 의미, 가치, 자연과 제안, 인권교육의 미래를 반영하도록 방향잡고 있다.

Available at: www.pdhre.org/report/

교사, 인권과 다양성 : 다문화사회에서의 시민교육

Teachers, Human Rights And Diversity: Educating Citizens in Multicultural Societies

저자: Audrey Osler

출판 지역: 런던, 영국

출판사: Trentham Books

출판년도: 2005

내용: 다문화사회에서의 시민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자료에서는 영국, 북아일랜드, 아일랜드, 미국의 저자들이 이 분야에서의 최근 연구를 보고하고 있으며, 교사, 교사교육자와 학생교육자의 효과들을 고려하고 있다. 사례연구에서는 젊은 시민들이 복잡하고 논쟁적인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 인권과 평등의 원칙을 적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국가인권기구를 위한 핸드북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andbook for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저자: UN

출판지역: 뉴욕/제네바

출판사: UN

출판년도: 2005

내용: 이 핸드북은 국가 인권 기구가 자신의 업무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결합하기 위한 정책, 프로세스와 기능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국가 인권기구가 자신의 관할 범위에서의 해당 권리의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의무를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주며 기구의 기능과 권력이 이러한 측면에서 보다 적절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자료: http://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training12en.pdf

국제적 관점에서의 인권교육 International Perspectives in Human Rights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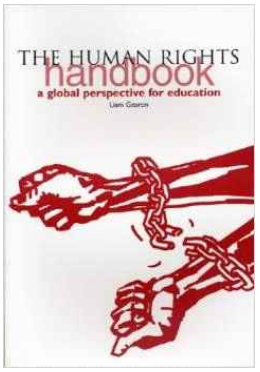

저자: Viola B. Georgi, Michael Seberich

출판지역: 귀터슬로, 독일

출판사: Bertelsmann Foundation

출판년도: 2004

내용: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권리의 기본 세트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에 대해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그래서 세계 각국들은 자신의 방식과 속도로 인권문화를 만들어가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인권운동가, 정치인, 학자들은 인권교육이 강력한 도구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인류의 공통의 언어이고, 문화의 다양성과 편견과 차별을 방지하는 것을 둘 다 강화하는 방식으로의 인권을 공표하는 것이 복잡하고 가끔은 문제를 만들어내며, 종종 긴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문집은 세계의 다양한 부분에서의 인권교육의 여러 가지 실제 모습을 탐구하고, 비교 토론하는 방식과 이론적 개념과 방법론적 분석을 포함하여 접근하고 있다.

자료:www.bertelsmann-stiftung.de/cps/rde/xbcr/SID-72858C5F-1738203E/bst/xcms_bst_dms_14994_14995_2.pdf

인권핸드북 : 전 세계적 관점에서의 교육

The Human Rights Handbook: A Global Perspective for Education

저자: Liam Gearon

출판지역: 런던, 영국

출판사: Trentham Books

출판년도: 2003

내용: 교사, 학생과 연구자들을 위한 권위있는 인권 가이드. 점점 복잡해지는 영역을 직접적이고 접근가능한 방식으로 보여준다. 각 장은 사용자편리성을 고려한 틀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주제별 일반 소개에 이어 각장 요약이 정리되어 있다. 주요 문서 정리에는 국제적 법적 기준을 정리하였다. 인권 관련 단체- UN, 지역별 정부기구, 비정부기구(NGO)- 들이 설명되고 있다.

이 핸드북은 완벽하게 구성되었다고 주장하지 않기에, 매 장은 추가로 읽고 연구할 자료원을 선정하여 실고 있다.

인권교육방법론 Methodologies for Human Rights Education

저자: Richard Pierre Claude

출판지역: 뉴욕, 미국

출판사: 국제인권교육민중연합 (PDHRE)

출판년도: 1998

내용: 인권교육 교수법에 대한 실질적인 소개서. 자신의 권리를 알 권리에 대한 글, 커리큘럼 구성 안내서, 사용자 그룹의 설정 및 증진 방안에 대한 제안, 평가 방법론 등이 다루어진다.

자료: www.pdhre.org/materials/methodologies.html

21세기 인권교육 Human Rights Education for the Twenty-First Centu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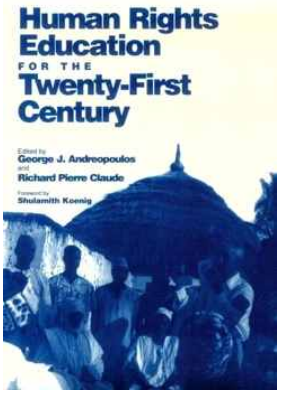

저자: George J. Andreopoulos, Richard Pierre Claude

출판지역: 필라델피아, 미국

출판사: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출판년도: 1997

내용: 자신의 권리에 대해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포함하는 인권교육은 어려운 일이다. 관심 그룹이 이러한 책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념과 실제라는 두 가지 점에서의 문제점과 도전과제를 나타내는 미발표 논문들을 이 책에서 다루고 있다. 이 책자는 실무자에게 유용하도록 설계되었는데, 공식적 교육(학교 교육)과 비공식적 교육(학교밖 교육)에서의 인권교육의 계획와 실행에서의 이론적 지침뿐만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포함하고 있다.

추천하는 매뉴얼과 교육 자료

인권교육 도구상자 The Human Rights Education Toolbox

저자: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출판사: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출판년도: 2011

언어: English

대상 그룹: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인권과 프로그램 개발 실무자, 자문, 기부자 대표)

내용: 이 책자는 인권교육에 대한 소개와 인권기반 학습 환경의 구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디자인 저먼리스트, 기초 조사, 학습 과정의 촉진,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그다음 교육 세션을 계획하고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다음에 대한 확실한 도구와 점검 리스트가 포함된다.: 운송 계획; 참여자/대상 그룹 분석; 기대(수요) 분석; 학습 목표와 지표 정의하기; 커리큘럼 개발; 훈련 방법 개발; 촉진과 학습 환경 조성; 평가 방법; 참여자들의 연습에서 새로운 지식과 방법을 결합하도록 돕기 위한 후속 활동. 또한 사용자들이 여러 가지 유형의 역량구축 활동(워크숍, 컨퍼런스, 강사 훈련)과 다양한 대상 그룹에 도구를 적용하는데 도움을 준다.

자료: http://www.humanrights.dk/files/media/dokumenter/udgivelser/hre_eng.pdf

Compasito– 아동 인권교육 매뉴얼 (2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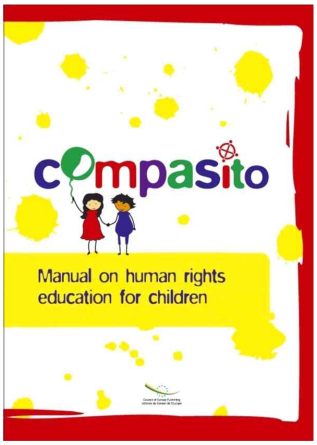

Compasito – Manual on Human Rights Education for Children

저자: Nancy Flowers et al.

출판지역: 부데페스트, 헝가리

출판사: Council of Europe, Directorate of Youth and Sport / European Youth Centre Budapest

출판년도: 2009

언어: English, Albanian, French, Georgian, German, Hungarian, Japanese, Polish, Russian, Turkish

대상 그룹: 아동, 교육자

내용: Compasito는 2002년에 유럽의회에 의해 개발된 “Compass – 젊은이와 함께하는 인권교육 매뉴얼”라는 자료에서 자극을 받았다. Compasito는 “Compass”라는 철학과 교육적 접근방법에 기초하여 구성하였다. “Compass”처럼, 비형식적 교육 방법론과 구조를 사용하여, 매뉴얼의 사용자에게 이론과 실제적 도움을 제공한다. 그러나, “Compass“가 젊은이들 자신에 대해 다루고 있는 반면, Compasito는 아동들과 함께하는 성인 교육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에게 인권 주제에 대한 이론적이면서 방법론적인 정보와 실질적인 토론 내용을 제공한다. 또한 Compasito는 교육자들이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의 실제 삶을 반영하도록 자료들을 적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실제 활동은 아이들과 함께 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활동은 교육 전문가들의 절적한 촉진 활동이 필요하다.

자료: www.eycb.coe.int/compasito/default.htm

유럽, 중앙아시아, 북미 지역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모범 사례 정리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School Systems of Europe, Central Asia and North America: A Compendium of Good Practice

저자: 유럽안보협력기구/민주제및인권사무소(OSCE/ODIHR), 유럽의회, 유네스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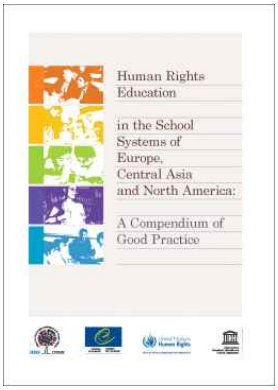

출판지역: 바르샤바, 폴란드

출판사: OSCE/ODIHR

출판년도: 2009

언어: English, Arabic, French, German, Italian, Russian, Spanish

대상 그룹: 초중등교육과정의 교사/교육자

내용: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사 훈련 기관과 기타 교육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교사와 교육 정책가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서 중앙아시아, 유럽 및 북미지역의 101개 사례를 모았다.

성공적인 인권교육에서의 핵심요소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1) 관련 법률, 가이드라인, 표준; 2) 학습 환경; 3) 교수와 학습 도구; 4) 교육자의 전문성 발전; 5) 평가.

자료: http://www.osce.org/odihr/39006

페어플레이! 아동 인권교육 도구 모음 Play it fair! A Human Rights Education Toolkit for Children

저자: Daniel Roy et al.

출판지역: 몬트리올, 캐나다.

출판사: Equitas-International Centre for Human Rights Education

출판년도: 2008

언어: English

대상 그룹: 아동, 교육자

내용: 여름 캠프나 방과후 활동과 같은 아동들의 비공식적 교육 프로그램에서 인권, 차별방지와 평화적 갈등 해결을 증진하도록 도와주는 도구 모음이다.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인간 존엄성과 평등에 대한 기본적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가치들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자료: http://equitas.org/wp-content/uploads/2010/11/2008-Play-it-Fair-Toolkit_En.pdf

아동 권리 탐색 – 기초적 단계에서의 9개 단기 프로젝트
Exploring Children's Rights – Nine short projects for primary level

저자: Rolf Gollob, Peter Krapf

출판지역: 스트라스부르, 프랑스

출판사: 유럽의회 (=EDC/HRE Volume V)

출판년도: 2007

언어: English, French, Russian

대상 그룹: 아동, 교사

내용: 아동은 자신이 가진 권리를 알아야만 할 뿐아니라, 또한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해야 하는지도 배워야만 한다. 이를 이루기위해서는, 학교는 아동 권리 교육에서 폭넓은 범위에서의 학습 활동을 허용해야만 한다. 아이는 학교에서나 일상생활 두 가지면에서 아동 권리를 사용함으로서 이해하고 감사하게 된다. 아이가 그렇게 하도록 북돋기위해, 교사에게 주어진 도전과제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정신에 따라 운영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 매뉴얼은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아동 권리를 가르치는 도구를 찾고자 하는 교사들을 위해 구성되었다.

효과적인 인권교육 설계와 제공. 훈련 매뉴얼
Designing and Delivering Effective Human Rights Education. Training Manual

저자: Vincenza Nazzari et al.

출판지역: 몬트리올, 캐나다

출판사: Equitas–International Centre for Human Rights Education

출판년도: 2007

언어: English

대상 그룹: 인권교육가, 교사, 코치

내용: 이 매뉴얼은 6일짜리 워크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권교육가들에게 효과적인 코치교육 워크숍에 대한 기획, 설계, 진행에 필요한 방안들을 제공한다. 이 매뉴얼은 촉진자와 참여자 둘 다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워크숍은 인권교육개발을 위한 실습과정으로 구성되었다. 그래서 인권교육의 설계, 진행 및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권교육에서의 체계적인 개발을 제공한다. 참여자들은 효과적인 인권교육 설계에 대해 배울 뿐만 아니라, 자기의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 훈련과정을 위한 실제 모델을 준비함으로서 실행의 연습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 매뉴얼의 기대 목표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조직의 활동의 틀에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모델로 사용되는 것이다.

자료: http://equitas.org/wp-content/uploads/2010/11/Equitas_Generic_TOT_2007.pdf

우리의 세계, 우리의 권리 Our World. Our Rights

저자: 국제앰네스티

출판지역: 런던, 영국

출판사: Educators in Human Rights Network

출판년도: 2006

언어: English

대상 그룹: 아동

내용: 초등학교 교실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소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잘 구성된 교사의 입문자료이다. 이 워크북은 학교에서의 인권의 역할에 대해 사려 깊게 소개하는 장을 시작으로, 다른 주제 분야와 역사나 지리학에서 영어로 이르는 다양한 교과 과정에서, 시험해본 강의 계획, 제안, 활동, 놀이, 퀴즈와 사례 연구들이 가득하다.

자료: http://www.amnestyusa.org/pdfs/OurWorldOurRights.pdf

도미노-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 반유대주의 및 불관용과 싸우는 수단으로서의 또래집단교육 사용 매뉴얼
DOmino - A Manual to Use Peer Group Education as a Means to Fight Racism, Xenophobia, Anti-semitism and Intolerance

저자: Antje Rothemund et al.

출판지역: 스트라스부르, 프랑스

출판사: 유럽의회

출판년도: 2005 (3판)

언어: English, French

대상 그룹: 청소년

내용: 도미노(DOmino)는 청소년 또래집단교육 프로젝트로 함께 일하거나 기획하고 있는 이들을 지원하고자 한다. 도미노는 또래집단교육에서의 몇 가지 이론적 배경뿐만 아니라 다른 몇 가지 프로젝트 설명, 방법, 청소년의 인용과 이야기들도 포함한다. 이 책자의 끝에 여기에 사용된 자료에 대한 참고들이 정리되어 있다.

자료: http://eycb.coe.int/domino/

교육패키지-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비형식적 다문화교육에서의 아이디어, 자료, 방법과 활동
Education Pack - Ideas, Resources, Methods and Activities for Informal Intercultural Education

with Young People and Adults

저자: Mark Taylor, Pat Brander, Carmen Cardenas, Rui Gomes, Juan de Vincente Abad

출판지역: 스트라스부르, 프랑스

출판사: 유럽의회 (All Different All Equal campaign)

출판년도: 2005

언어: English, French

대상 그룹: 청소년

내용: 오늘날 유럽 사회는 소수민족에 대한 인종차별적 적대감과 불관용의 증대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지속적인 다문화 청소년 작업에 대한 필요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패키지의 유용성은 제안된 방법론의 다양성과 창의성에 있다. 이 참고 문서에서 제안하는 역할극, 가상 연습, 사례연구, 협업 모임 활동으로 다문화교육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많은 청소년 활동가, 코치, 교사와 기타 사람들이 영감을 얻을 것이다.

이 교육패키지는 비형식적 교육 세팅에 사용하도록 구성되어있지만, 활동들은 교실에서도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자는 두 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다문화교육의 핵심 개념을 다루고 있으며, 두 번째는 활동, 방법과 자료를 제안하고 있다.

자료: http://www.eycb.coe.int/edupack/

왜 사람들은 인권을 학대를 하는가? Why Do People Abuse Human Rights?

저자: Alison Brownlie

출판지역: 런던, 영국

출판사: Hodder Wayland

출판년도: 2004

언어: English

대상 그룹: Children

내용: 이 책은 인권이 어떻게 침해받고 왜 침해받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여러 부문의 사회에서 이들의 권리가 박해를 받을 수 있게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아동이나 노동자의 경우를 다루며, 전쟁이나 분쟁상황에서 인권이 침해받는 경우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가 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캠페인을 가져야하며, 교육을 통해 이를 수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전 세계 사례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다.

인권 가르치기 ABC : 초중등학교에서의 실용 활동

ABC Teaching Human Rights: Practical Activities for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저자: OHCHR

출판지역: 뉴욕/제네바

출판사: UN 출판국

출판년도: 2004

언어: English, Arabic, Chinese, French, Russian, Spanish

대상 그룹: 아동

내용: “인권 가르치기 ABC”는 인권교육에 있어 사용자가 편리한 도구 역할을 하고자 하며, 여러 가지 기본적 인권 영역을 보호하는 무지개색 우산이 되고자 한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인권에 대한 인식과 활동을 진행하고자 하는 교사나 교육활동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여기에는 학습 활동을 개발하는 데에 대한 제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이미 과부하된 커리큘럼에 추가의 부담을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미리 다루고 있는 주제에 인권 내용을 결합하는 것을 지원한다.

자료: www.ohchr.org/en/publicationsresources/pages/trainingeducation.aspx

나침반–청소년인권교육지침서
Compass – A Manual on Human Rights Education with Young People

저자: Rui Gomes et al.

출판지역: 스트라스부르, 프랑스

출판사: 유럽의회

출판년도: 2003 (2판), 2012 (3판)

언어: English, Arabic, Croatian, Hungarian, Romanian, Dutch, Italian, Slovenian, Bosnian, Bulgarian, Spanish, German, Armenian, Azerbaijani, Georgian, Polish, Macedonian language, Czech, Portuguese, Japanese, Serbian, Slovak, Turkish, Russian, Slovenian, French

대상 그룹: 청소년, 성인

내용: 인권, 민주주의, 시민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누구라도 광범위한 주제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이 안내서는 49개의 온전한 연습 활동 시트를 제공하는데,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세한 활동 틀을 제안하며 관련 문서들도 함께 제공한다.

자료: http://eycb.coe.int/compass/
한글판: 청소년인권교육지침서 나침반 (2판, 200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편역

첫 발걸음: 인권교육시작 매뉴얼 First Steps: A Manual for Starting Human Rights Education

저자: 국제 앰네스티 / 출판지역: 런던, 영국

출판사: 국제 앰네스티

출판년도: 2002

언어: English, Albanian

대상 그룹: 아동/ 또래 교육

내용: 이 매뉴얼은 1996년에 특별히 중.동유럽에서 사용하기 위해 국제 앰네스티가 처음 만들어졌다. 이 매뉴얼은 이 지역의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다. "첫 발걸음"은 교사들에게 학습 도구로서 제공될 뿐 아니라 교육 세팅에서 활동 구성을 위한 자료로도 사용된다. 아동(12세 이하)용 27개 과정과 고학년 아동을 위한 18개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2002년판에서는 또래교육을 적용하였다.

자료: www.amnesty.org/en/library/info/POL32/002/2002/en

인권 커리큘럼 : 역사 Human Rights in the Curriculum: History

저자: Margot Brown, Sarah Slater

출판지역: 런던, 영국

출판소: 국제 앰네스티/ Education in Human Rights Network

출판년도: 2002

언어: English

대상 그룹: 교사 (중등)

내용: 이 책자에는 역사교사를 위한 흥미로운 활동과 수업 아이디어가 있다. 새롭고 생각을 자극하는 방식의 커리큘럼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준다.

학생들이 노예제, 아동 노동, 여권신장 투쟁, 홀로코스트를 인권의 관점에서 보도록 북돋을 뿐만 아니라, 또한 라스 카사스[25] 에서부터 엘리너 루즈벨트까지의 영감을 주는 역사적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역사로부터 주요 단계를 다루면서, 학생들은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권 증진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게 될 것이다.

---

25) 역주) Bartolome de las Casas: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 유럽 최초 반식민주의자. 대다수 유럽인이 원주민 착취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당시, 일평생을 원주민 인권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 라스 카사스였다. 그 역시 젊은 시절에는 수십 명의 원주민을 노예로 부리던 사람이었으나, 마음을 고쳐먹은 이후에는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원주민들을 해방하고자 노력했다. 당대에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그의 주장은 식민주의 반대하는 각종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훗날 남아메리카의 독립 영웅 시몬 볼리바르(Simon Bolivar, 1783~1830)는 그를 "아메리카의 선지자이자, 우리의 영웅" 이라며 존경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심지어 볼리바르는 자신이 세운 독립국가의 수도를 "라스 카사스" 라 부르자 제안할 정도였으니 그 영향력을 짐작할 만하다. (출처: 지식스닷컴, 김성준)

인권의 시대: 9세~13세 아동을 위한 시민권과 PSHE[26] 활동

Time for Rights: Activities for Citizenship and PSHE for 9.13 Year Olds

저자: Pam Fenney, Heather Jarvis, Elaine Nipper

출판지역: 제네바, 스위스

출판사: UNICEF

출판년도: 2002

언어: English

대상 그룹: 아동

내용: UN아동권리협약에 관련된 시민권과 권리를 탐구한다. 역할극, 카툰, 이야기, 시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 책은 가족, 학교, 공동체에서의 아동 개인에게 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가르쳐준다.

존엄으로 가는 여권 Passport to Dig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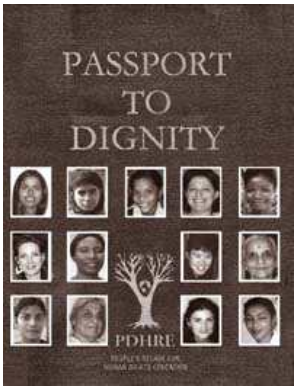

저자: PDHRE

출판지역: 뉴욕, 미국

출판사: PDHRE

출판년도: 2002

언어: English

대상 그룹: 성인, 인권 활동가

내용: 이 워크북은 여성의 인권 실현을 위한 사회경제적 전환 활동에 대해 영감과 정보, 촉진을 위해 구성되었다. 이 책은 인권의 통합적인 본질을 보여주고 여성들이 차별을 극복하고, 온전한 평등을 쟁취하고, 복지와 그들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의 참여를 구하는 강력한 도구로서 베이징행동계획(BPFA)의 포괄적인 틀을 사용하고 있다. 다양한 여성 이슈에서 젠더적 관점을 가진 시스템 분석 도구로서 인권 플레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경험과 반성을 제공하며, 경제사회적 전환을 위한 활동의 경험과 가이드를 나눈다.

BPFA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핵심적 영역은 인권교육을 위한 자료와 여성인권을 주장하고 실현하는데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을 모두 제공한다.

자료: www.pdhre.org/passport.html

---

26) PSHE (Personal, Social, Health and Economic Education) : 개인, 사회, 보건 및 견제 교육

정의에 대한 요청 - 자료집 A Call for Justice – Resource Packet

저자: PDHRE

출판지역: 뉴욕, 미국

출판사: PDHRE

출판년도: 2002

언어: English

대상 그룹: 성인, 인권 활동가

내용: 이 자료집은 NGO 와 공동체 활동가들에게 인권에 대한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저의에 대한 요청(A Call for Justice)”는 두 개의 큰 분류로 나누어 구성되는데, “그룹”과 “이슈”이다. “그룹”분류는 침해받는 이들의 그룹에 따른 인권 이슈를 정리하고 있는데,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원주민, 이주노동자, 소수자, 소수인종, 난민, 여성으로 나누고 있다. “이수” 분류는 발전 이슈에 따라 인권 이슈를 정리하고 있는데, 발전, 차별, 교육, 환경, 건강, 주거, 생계/토지, 참여, 평화/비무장, 빈곤, “인종”, 종교, 성적지향, 노동으로 나누고 있다. 이 자료집은 존엄으로 가는 여권(Passport to Dignity)라는 연계된 자료로서, 베이징행동계획의 원칙에 기초한 훈련 가이드북이다.

자료: www.pdhre.org/justice.html

자유! 인권교육 패키지 Freedom! Human Rights Education P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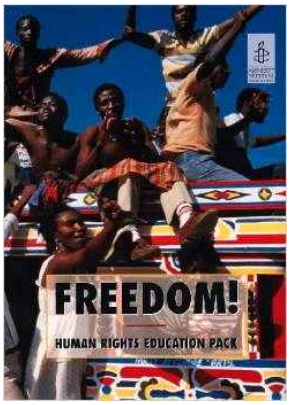

저자: 국제 앰네스티

출판지역: 런던, 영국

출판사: 국제 앰네스티

출판년도: 2001

언어: English

대상 그룹: 청소년

내용: 우리의 인권이 무엇이고 어떻게 발전되고, 거부되고, 도전받아 왔는지에 대한 흥미 있는 조사이다. 이 패키지는 14세에서 19세 사이의 학생 수준에 적당하다.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점은 이 패키지가 교사들에게 정보, 제안, 지도안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케이스 연구, 활동, 연구 프로젝트, 사례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시민교육, 종교 교육, 일반 교과, 지리학, 역사, 영어, PSHE, 미디어학, 희곡, 법학, 사회학에 결합된 훌륭한 코스를 제공한다.

너의 권리를 위해 일어서라 Stand Up For Your Rights

저자: Paul Atgwa, Jasper Bakyayita, Damien Boltauzer et al.

출판지역: 런던, 영국

출판사: Two-Can Publishing

출판년도: 2001

언어: English

대상 그룹: 아동

내용: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쓰고 구성한 이 책자는 여러 인권 이슈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가 서로 어떻게 대했으면 하는 바램과 두려움을 표현하는 이야기, 시, 개인적 회상이 적혀있다. 인권의 발전으로 우리가 도달한 점에 대해 축복하고, 앞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정의의 탐구로 이어진다.

인권에 대한 대중 교육 – 촉진자와 교사를 위하 24개 참여형 훈련 프로그램
Popular Education for Human Rights. 24 Participatory Exercises for Facilitators and Teachers

저자: Richard Pierre Claude

출판지역: 암스테르담,네덜란드/캠브리지,영국

출판사: Human Rights Education Associates

출판년도: 2000

언어: English, Chinese, Spanish, Dutch, French, Russian

대상 그룹: 성인, 교육자

내용: 비정규 민중 교육으로 구성된 훈련 프로그램 매뉴얼로서, 다음과 같은 가치를 강조한다. 여성과 아동 이슈, 존엄성과 공정성에 대한 존중, 인권과 책무성과의 관계, 시민사회형성, 선입관 직면하기, “역량강화의 정보”와 같은 특정 가치.

이 매뉴얼의 높은 참여형 방법들은 다양한 교육 환경과 문화에 적용가능하며, 대중 교육으로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 교육의 프로그램으로도 성공적으로 사용되었다.

자료: http://www.intergroupresources.com/rc/Popular Education for Human Rights.pdf

성소수자 권리 : 인권적 관점으로 보기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Rights: A Human Rights Perspective

(The Human Rights Education Series중 Topic Book 3)

저자: Dave Donahue

출판지역: 미니아폴리스, 미국

출판사: Human Rights Resource Center

출판년도: 2000

언어: English

대상 그룹: 청소년, 성인

내용: 이 교육과정은 인권의 보다 폭 넓은 맥락에서 성소수자(LGBT) 이슈에 대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보다 사려깊은 검토와 책임있는 행동을 키우도록 구성되었다. 이 교육과정에 있는 활동들은 반성과 토론에 더해 적절한 행동을 촉진한다. 학생들에게 인권침해문제를 야기하는 동성애혐오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받는다. 이 동성애혐오는 그들 학교에서 동성애 학생들에 대한 괴롭힘이나 폭력의 형태도 나타날 수 있으며, 국민투표기간에 지역사회에서 동성애자의 동등한 권리를 거부하는 형태가 될 수 있으며, 전 세계에서 동성성인간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 대한 투옥, 고문, 처벌받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교육과정은 이러한 도전에 대해 의미있는 방식으로 대응하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킨다. 여기서의 활동들은 각기 개별적으로나 전체가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일반적인 교실에서 인권에 대한 참구활동이 결합될수록, 이러한 결합이 학생들이 성수수자를 보다 인권적 측면애소 명확히 바라보도록 한다.

자료: www1.umn.edu/humanrts/edumat/

인권교육 핸드북 : 학습, 행동, 변화를 위한 효과적인 실천

The Human Rights Education Handbook: Effective Practices for Learning, Action and Change

(The Human Rights Education Series중 Topic Book 4)

저자: Nancy Flowers et al.

출판지역: 미니아폴리스, 미국

출판사: Human Rights Resource Center

출판년도: 2000

내용: 이 매뉴얼은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효과적인 교육자가 되어 그들의 열정과 지식

을 나누도록 한다. 모든 다양한 형태에서의 인권교육이 나아가기위해, “인권교육 핸드북”은 (5W1H) 기초를 구성한다. 많은 교육자와 조직의 경험에 기초하여 구성되었으며, 효과적인 실천를 보여주며, 축척된 통찰력을 추출해준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와 도구로 사용되도록 구성되었는데, 읽기 쉽고, 사용하기 쉽고, 복사하기 쉽게 되어 있다. 각 장은 개별적으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읽고 사용할 수 있다.

자료: www1.umn.edu/humanrts/edumat/hreduseries/hrhandbook/toc.html

SINIKO – 아프리카의 인권문화를 위해서 Siniko – Towards a Human Rights Culture in Africa

저자: 국제 앰네스티

출판지역: 런던, 영국

출판사: 국제 앰네스티

출판년도: 1999

언어: 영어, 불어, 스와힐리어

대상 그룹: 아동, 교사

내용: 이 매뉴얼은 아프리카에서 정규 과정이나 비정규과정에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교육자나 교사로 활동하는 이들이 교육과정에 인권을 소개할 때 사용되도록 구성되었으며, 기초적인 소개로 구성되었다. 여기에 방법론에 대한 안내, 저학년과 고학년 아동을 위한 활동, 행동 아이디어 등을 정리했다.

자료: http://www.amnesty.org/en/library/info/AFR01/003/1999/en

근본, 권리와 책임감으로 아이들 키우기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축복하면서
Raising Children with Roots, Rights & Responsibilities. Celebrating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저자: Lori Dupont, Joanne Foley, Annette Gagliardi

출판지역: 미니아나폴리스, 미국

출판사: Human Rights Resource Center

출판년도: 1999

언어: 영어

대상 그룹: 아동, 교사, 교육자

내용: 이 책자는 세계인권선언 전문에 규정된 바에 대한 책임을 충족시키고자 하며, 각개 개인과 각 사회조직에게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도록 가르치고 교육하도록 노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가이드는 부모-자식 관계의 힘에 기초한 12주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Available at: www1.umn.edu/humanrts/edumat/

경제, 사회 정의 - 인권적 측면에서

Economic and Social Justice - A Human Rights Perspective

저자: David A. Shiman

출판지역: 미니아나폴리스

출판사: Human Rights Resource Center

출판년도: 1999

언어: 영어

대상 그룹: 청소년, 성인

내용: 이 책자는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인권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할 행동하기와 상호작용 활동에 대한 배경 정보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노숙자, 빈곤, 기아, 불적절한 의료서비스과 같은 이슈를 “사회,경제적 문제”로서 뿐만 아니라, 인권의 도전과제로서도 정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간략한 역사 소개로 시작하는데, 질의응답식의 에세이를 통해 이러한 권리를 소개하고 있다. 문화적 권리가 경제,사회적 권리와 상호 연관되어있고 동등하게 중요하지만, 이 책은 기본적으로 경제,사회적 권리 부문을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다. 2부에서는 사회,경제적 권리에 대해 보다 더 찾아보고 학습하기 위한 9개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자료: http://www1.umn.edu/humanrts/edumat/pdf/TB1.pdf

관용 - 평화로 가는 입구

Vol. 1 : 교사용 - 훈련 자료

Vol. 2. : 초등학교용 자료

Vol. 3. : 중고등학교용 자료

Tolerance - the Threshold of Peace:

Teacher-Training Resource Unit (vol. 1).

Primary School Resource Unit (vol. 2).

Secondary School Resource Unit (vol. 3)

저자: Betty A. Reardon

출판지역: 파리, 프랑스

출판사: UNESCO Publishing

출판년도: 1998

언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대상 그룹: 성인, 교육자, 교사

내용: 여러 분야에서 사용된 예시적인 프로그램, 학습 계획, 교안들이 있다. 학교에서 관용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접근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아직 학교가 가르쳐야 할 사회적 분위기임을 말하고 있다. 교실에서 교사, 교사 교육자, 지역사회 지도자, 부모, 청소년/사회 활동가들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이 자료들은 소개자료로 사용되며, 관용 교육에서 관계된 것과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조직, 모임, 중등교육이상의 정규 교실에서도 제기되는 이슈나 규명된 문제들을 탐색할 수 있다. UNESCO의 평화, 인권,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통합적 틀(Integrated Framework of Action on Education for Peace, Human Rights and Democracy)과 연결되어 구성되어 있다.

자료: (웹 준비 버전) http://unesdoc.unesco.org/images/0009/000981/098178e.pdf

자립형 인권교육 핸드북 Self-Help Human Rights Education Handbook

저자: J. Paul Martin

출판지역: 뉴욕, 미국

출판사: Center for the Study of Human Rights, Columbia University

출판년도: 1996

언어: 영어

대상 그룹: 교육자, 코치

내용: 온라인 핸드북으로 경험있고 성장하는 인권 교육자를 양성하고, 인권 프로그램에서 교육 목표를 명확하게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키우고, 가능한 대부분의 자료원을 만

들 뿐만 아니라 필요하거나 가능할 때 그들 자신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자료: www.hrea.or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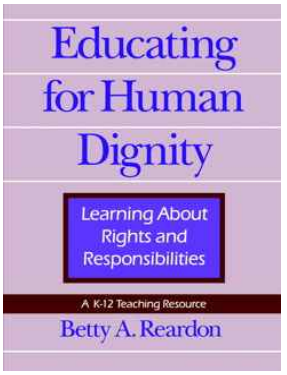

인간존엄성교육 : 권리와 책임에 대해 배우기

Educating for Human Dignity: Learning abou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저자: Betty A. Reardon

출판지역: 필라델피아, 미국

출판사: Pennsylvania Studies in Human Rights

출판년도: 1995

언어: 영어

대상 그룹: 아동

내용: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용 인권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책중에 하나이다. 교사와 교사 교육자 둘 다를 위해 쓰였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안내와 자료를 제공하는 첫 번째 책자였다. 전세계적 상호관계성이라는 문맥에서의 제기되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인권교육에 통합적 접근방식의 가능성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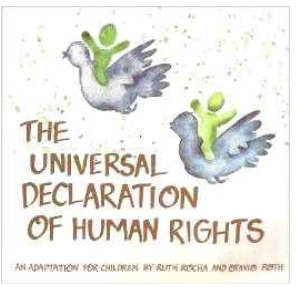

세계인권선언 – 아동용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 Adaptation for Children

저자: Ruth Rocha, Otavio Roth

출판지역: 뉴욕, 미국

출판사: United Nations Publications

출판년도: 1990

언어: English

대상 그룹: 아동 (그림책)

내용: 교육적이면서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이 아름다움 그림책은 모두가 읽을 수 있으며, 특별히 아동들에게 맞추어져 있다. 세계적 명성의 아동 작가인 루스 로싸 여사가 글을 쓰고, 브라질 예술가인 오타비오 로쓰가 그린 생생한 그림은 인권의 중요성을 보다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인터넷상의 인권교육 자료

온라인 도서관, 데이터베이스와 자료원

Addis Ababa University Center for Human Rights: www.aau.edu.et/humanrights/

Amnesty International USA . Human Rights Education: www.amnestyusa.org/education

Council of Europe: www.coe.int

CRIN – Child Rights Information Network: www.crin.org

Dadalos – International UNESCO Server for Democracy, Peace and Human Rights Education: www.dadalos.org

Derechos Humanos – Human Rights: www.derechos.org

Discover Human Rights Institute. A project of The Advocates for Human Rights: www.discoverhumanrights.org/

Equitas – International Centre for Human Rights Education: http://equitas.org/

ETC Graz . European Training and Research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www.etc-graz.at, http://kennedeinerechte.at, www.das-boot-ist-voll.at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Portal: www.echr.coe.int/ECHR/Homepage_EN

DARE – Democracy and Human Rights Education in Europe: www.dare-network.eu/

FRA .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http://fra.europa.eu/fraWebsite/your_rights/about-rights/about-rights_en.htm

HRDC – Human Rights & Documentation Centre (University of Namibia): www.unam.na/centres/hrdc/hrdc_index.html

HREA – Human Rights Education Associates: www.hrea.org/index.php?base_id=101&language_id=1

HRI – Human Rights Internet: www.hri.ca

HRRC – The Human Rights Resource Center: www.hrusa.org

HURIDOCS – Human Rights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Systems: www.hurisearch.org

HURIGHTS OSAKA – Asia-Pacific Human Rights Information Center: www.hurights.or.jp

IIDH – Instituto Interamericano de Derechos Humanos: www.iidh.ed.cr/

I have a right to… . BBC World Service: www.bbc.co.uk/worldservice/people/features/

ihavearightto/index.shtml

Netherlands Institute of Human Rights Documentation Site: http://sim.law.uu.nl/SIM/Dochome.nsf?Open

OHCHR – Database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http://hre.ohchr.org/hret/intro.aspx

OHCHR – Publications: www.ohchr.org/EN/PublicationsResources/Pages/TrainingEducation.aspx

PDHRE . The People's Movement for Human Rights Learning: www.pdhre.org

Project DIANA Online Human Rights Archive: http://avalon.law.yale.edu/subject_

menus/diana.asp

TeachUNICEF: http://teachunicef.org/

The European Wergeland Centre: www.theewc.org

United Nations Cyber School Bus: www.cyberschoolbus.un.org

United Nations Online Databases: www.un.org/en/databases/

University of Minnesota Human Rights Library: www.umn.edu/humanrts

E.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전문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를 결과하였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세계의 도래가 일반인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었으며,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지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의 친선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 긴요하며,

국제연합의 여러 국민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더욱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개선을 촉진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의 증진을 달성할 것을 서약하였으며,

이들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러한 서약의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따라서 이제 국제연합 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세계인권선언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한 채, 교육과 학업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점진적인 국내적 및 국제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 및 회원국 관할하의 영토의 국민들 양자 모두에게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인정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힘쓰도록, 모든 국민들과 국가에 대한 공통의 기준으로서 본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나아가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는 그 밖의 다른 주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든, 그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Article 3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나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담당 국가법원에 의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의 혐의를 결정함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편견 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개적인 심문을 전적으로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형사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장치를 갖춘 공개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과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출국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비정치적인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만으로 인하여 제기된 소추의 경우에는 활용될 수 없다.

제15조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그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혼인 기간 중 및 그 해소시 혼인에 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결혼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도 완전한 합의에 의하여만 성립된다.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구성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는 물론 타인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20조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소속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21조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국의 공무에 취임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민의 의사는 정부의 권위의 기초가 된다. 이 의사는 보통 및 평등 선거권에 의거하며, 또한 비밀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를 통하여 표현된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모든 사람은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근로자는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필요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의 수단에 의하여 보완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일을 포함한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부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향유한다.

제26조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진다.

제27조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에서의 도덕심, 공공질서, 일반의 복지를 위하여 정당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만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다.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될 수 없다.

제30조

이 선언의 그 어떠한 조항도 특정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할 목적의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행위를 행할 어떠한 권리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번역문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F. 세계인권선언 (요약)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SUMMARY)

제1조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인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나 예속된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한 인간' 으로 인정받을 인권을 가진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동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인권을 가진다.

제8조 모든 사람은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구제받을 인권을 가진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구금, 추방되지 않는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인권을 가진다.

제11조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될 인권을 가진다.

제12조 모든 사람은 개인의 사생활과 가정의 삶에 대한 인권을 가진다.

제13조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안에서 이동과 거주의 자유에 대한 인권이 있으며, 또한 자신의 나를 떠나고 다시 돌아올 인권을 가진다.

제14조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망명할 인권을 가진다.

제15조 모든 사람이 국적을 가질 인권을 가진다.

제16조 모든 성인은 결혼하고 가족을 구성할 인권을 가진다. 여성과 남성은 결혼, 결혼 생활과 이혼에서 동등한 인권을 가진다.

제17조 모든 사람은 자기 재산을 소유할 인권을 가진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인권을 가진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인권을 가진다.

제20조 모든 사람은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인권을 가진다.

제21조 모든 사람은 직접으로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자기 국가의 정부에 참여하며, 공직에

참여할 인권을 가진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보장을 받을 인권을 가지고, 존엄성의 훼손없이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누린다.

제23조 모든 사람은 일할 인권, 직업조건을 선택할 인권, 실업상태에서의 보호,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을 받을 인권, 자신과 자기 가족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보수를 받을 인권, 노동조합에 가입할 인권을 가진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휴식과 여가를 즐길 인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서비스 및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를 포함하는 건강과 웰빙에 대해 적합한 삶의 조건을 누릴 인권을 가진다.

제26조 모든 사람은 무상의 의무적인 초등교육과 인권교육을 포함하는 교육을 받을 인권을 가진다.

제27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예술적, 문학적이거나 과학적인 창조 활동을 보호받으며, 문화적 삶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과학적 진보의 결과를 공유할 인권을 가진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러한 권리가 온전히 충족될 수 있는 사회적이고 국제적인 질서에서 살 권리가 있다.

제29조 모든 사람은 공동체에 대해 의무를 가진다.

제30조 이 선언에서의 인권 중 어느 것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될 수 없다.

추천 활동:

세계인권선언 요약문을 크게 읽는다. 그리고 모둠별로 각 조항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때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연결성과 상호연관성의 원칙을 명심한다.

(자료원: 국제인권교육민중연합 (PDHRE), www.pdhre.org/conventionsum/udhr.html)

G. 인권교육 및 훈련에 대한 UN 선언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United Nations A/RES/66/137

General Assembly

배포: 일반
2012. 1. 16

제66차 세션
안건번호 : 64

총회 채택 결의안

[3차 위원회 보고(A/66/457)]

66/137.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유엔 총회는,

인권이사회(the Human Rights Council)이 지난 2011.3.23. 16/1 결의문으로 채택한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을 환영하며,

"본 총회는,

2011. 3. 23. 인권이사회(the Human Rights Council)는 16/1 결의문[27]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의 채택을 환영하며,

27) See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Sixty-sixth Session, Supplement No. 53 (A/66/53), chap. I.

1. 본 결의문에 담고 있는 바대로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을 붙임 과 같이 채택하고자 한다 ;

2. 당사국, 유엔의 전 기관과 조직, 정부 간 기구, 비정부기구 등은 본 선언의 보급, 본 선언에 관한 보편적 존중과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유엔 사무총장은 "인권 : 국제조약 편찬집(Human Rights: A Compilation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차기 발간호에 본 선언문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89차 본회

2011. 12. 19.

부록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유엔 총회는,

인종, 성별, 언어, 종교 등의 사항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영역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존중과 증진 및 개선에 대한 유엔 헌장(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의 본 취지와 원칙을 재천명하며,

또한 모든 개인과 사회 조직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증진시키고자 학습과 교육에 노력을 기우릴 것을 재천명하고,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며 교육은 인격과 존엄성에 대한 온전한 발전을 지향해야 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은 자유로운 사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모든 국가, 인종, 민족. 종교 집단 간의 이해, 관용, 우애 나아가 평화, 안보 유지, 및 개발,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한 유엔 활동을 증진시킬 것을 재천명하며,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기타 인권조약 등에 규정된 바대로 국가는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 함에 책임을 갖고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을 재천명하며,

인권교육훈련이 인권 증진과 보호 그리고 효과적 실현에 이바지함으로써 인권교육훈련의 근본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국가 제도, 법령 등에 인권, 인도주의법,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라는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28] 의 요청을 재확인하고 인권에 대한 보편적 책무성 강화를 기대하며 공동의 이해와 인식을 성취시키

28) A/CONF.157/24 (Part I), chap. II, para. 79.

고자 인권교육에 평화, 민주주의, 개발, 사회정의 등의 사항 뿐 아니라 향후 국제적, 지역적 인권제도에 관한 사항 또한 포함돼야 함을 명시하며,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World Program on Human Rights Education)의 이행사항 등을 포함하여 국가와 정부의 지도부는 국정 입안, 실행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인권교육과 학습의 증진을 지원하고 이러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을 개발해 줄 것을 모든 국가에 권고한 바 있는 2005년 세계정상회의(2005 World Summit)의 결과[29]를 상기하며,

모든 이해당사자의 집결된 책임에서 인권교육훈련의 모든 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세계 인류공동체에게 강력히 강조하고 싶은 바램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제 1 조

1. 모든 사람은 자신이 향유할 수 있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한 정보를 알고 청구하고 인정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인권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 인권교육훈련은 인권의 보편성, 개별성, 상호의존성 등의 인권원칙에 따라 모든 이의 인권의 보편적 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수호의 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다.

3. 모든 권리의 효과적 향유, 교육권과 정보 접근권은 인권교육훈련에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제 2 조

1. 인권교육훈련은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의 증진과 수호를 목표로 하는 교육, 훈련 정보, 인식개선, 학습 활동을 포괄하고 있다. 그 중 인권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인권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를 이해하여 인권친화적 행동의 발달을 통하여 인권침해와 학대를 예방하고 보편적 인권문화를 구축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이다.

2. 인권교육훈련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a) **인권에 관한 교육(Education About Human Rights),** 인권에 관한 지식 제공, 인권 기준 및 원칙의 이해, 인권보호의 토대가 되는 가치관과 인권보호체계 등에 관한 사항

(b) **인권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 인권 교육은 교육자와 학습자 양자 모두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이어야 하며 이런 방식의 교육과 학습 등에 관한 사항

(c) **인권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Human Rights),** 모든 인권교육훈련의 궁극적 목적은 인권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인권을 지향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인권교육은 자신의 권리를 실천하고 향유해야 하며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역량강화를 지향해야 한다.

---

29)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0/1.

제 3 조

1. 인권교육훈련은 전 연령층을 포괄하는 평생교육과정으로 구성돼야 한다.

2. 인권교육훈련은 전 사회분야에서 고려돼야 한다. 학령기전, 초중고등 등을 포함하여 학문의 자유가 허용되고 적용할 수 있다면 공교육이던 사교육이던 형식적이던 비형식적이던 비정규이던 상관없이 모든 교육과정에서의 모든 형태의 인권교육, 훈련, 학습 등을 포함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직업훈련, 특히 교육자, 교원, 국가공무원, 평생교육, 시민교육, 공공정보, 감수성 훈련 활동 등 모든 영역의 교육훈련현장에서 인권교육훈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3. 인권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대상 집단의 개별적 욕구와 여건을 고려하고 해당 집단에게 익숙하고 적절한 언어와 교수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한다.

제 4 조

인권교육훈련은 세계인권선언과 관련 국제인권조약 및 문서 등의 인권원칙을 토대로 하여 아래와 같은 관점을 갖고 있어야 한다 :

(a) 인권에 관한 보편적 기준과 원칙 더 나아가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수준에서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보장할 것

(b) 모든 사람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자유와 평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구성원 간의 화합과 개인의 발전을 함양시킬 수 있는 보편적 인권 문화를 발전시킬 것

(c) 모든 인권의 효과적 실현 추구 및 관용, 반차별, 평등을 진작시킬 것

(d) 어떤 차별도 받지 않으며 양질의 인권교육훈련을 제공함으로서 동등한 인권교육훈련 기회를 보장할 것

(e) 인권교육훈련은 인권침해와 학대 예방에 이바지하고 모든 유형의 차별, 인종주의, 편견과 집단적 혐오를 자극하거나 선동하는 행위 및 이 모든 사항에 기반이 되는 유해한 태도와 편견 등과 싸워 근절시킴에 기여할 것 ;

제 5 조

1. 인권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이 공공 행위자이든 민간행위자이든 평등, 존엄, 화합 및 반차별 등과 같은 원칙에 기반을 둬야 하며 특히, 소녀와 소년, 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은 중요하다.

2. 인권교육훈련은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과 활용이 가능해야 하고 배제 또는 소외 등의 근원적인 원인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고 역량강화와 인간적 발달을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포함하여 취약하고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개인과 집단이 직면하고 있는 개별적이고 특

수한 어려움과 장해물 및 욕구와 기대를 고려해야 한다.

3. 인권교육훈련은 인권의 보편성을 반영해야 하듯이 서로 다른 국가의 문명, 종교, 문화, 전통 등이 갖고 있는 다양성에서 영감을 얻을 뿐 아니라 이러한 다양성을 포용하고 풍부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4. 인권교육훈련은 모든 이의 인권의 성취라는 공동 목표에 대한 소유의식 고취를 위하여 지역사회내의 인권교육훈련 사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상이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제 6 조

1. 인권교육훈련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을 위하여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뿐만 아니라 대중매체 등을 이용하고 활용해야 한다.

2. 예술 등은 인권분야에서의 훈련과 인식증진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제 7 조

1. 국가 및 해당 관련 정부기관은 참여, 통합, 책임의식 속에서 인권교육훈련의 개발, 실행, 증진, 보장의 일차적 책임을 갖는다.

2. 국가는 해당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이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완전히 보호될 수 있는 인권교육훈련에 시민사회, 민간부문 및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위하여 안전하고 합법화된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3. 국가는 입법적, 행정적 수단 및 정책의 적용을 포함한 적절한 수단에 의해 진보적 인권교육훈련 수행을 최대한으로 가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자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내적 혹은 국제적 지원 및 협력 등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

4. 국가 및 해당 관련 정부기관은 관료, 공무원, 판사, 법집행관, 군대 내의 전 군인 등에게 적합한 인권훈련과 적절할 경우 국제 인도주의법, 국제형사법 등의 교육을 보장해야 할 뿐 아니라 교사, 훈련담당자, 기타 교육자 및 국가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현장 활동가 등을 위한 적절한 인권교육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8 조

1. 국가는 적절한 수준에서 인권교육훈련의 전략 및 정책을 개발하거나 이러한 개발을 진작해야 하고 적절할 경우 학교교육 과정에 인권교육훈련 내용 통합 등을 통하여 인권교육훈련이 이행될 수 있는 행동계획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거나 개발을 권장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과 해당 당사국 및 지역적 욕구와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이러한 전략, 행동계획, 정책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계획, 실행, 평가 및 사후관리 등에는 민간영역,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기구 등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가 참여해야 한다. 적절한 경우 다수의 이해당사자의 사업추진 증진을 통하여 이러한 작업들이 가능하다.

제 9 조

국가는 국가인권기구가 필요할 경우 조정의 역할을 포함하여 인권의식 고취를 통하여 인권교육훈련을 증진하고 관련 공공 및 민간 활동가를 동원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파리원칙(the Paris Principles)을 준수하여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설립과 발전, 강화에 노력한다.

제 10 조

1. 다양한 사회 활동가들 중 특히, 비정부기구, 인권옹호자, 민간 부문 등을 포함한 교육기관, 대중매체, 가족, 지역공동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은 인권교육훈련을 증진하고 제공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갖는다.

2. 시민사회기구, 민간영역 및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는 해당 기관 소속 직원과 간부들에게 적절한 인권교육훈련을 보장할 것을 장려한다,

제 11 조

유엔과 국제 및 지역기구들은 임명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 군인, 경찰 등에게 인권교육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제 12 조

1. 모든 수준에서의 국제협력은 인권교육훈련을 이행하고자 지원하고 국가적 노력을 강화하고 적절할 경우 지역적 수준에서의 지원과 노력의 강화 또한 가능해야 한다.

2.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그리고 지자체의 수준에서 상호보완적이고 통합된 노력은 인권교육훈련의 효과적 수행에 공헌할 수 있다.

3. 인권교육훈련 분야의 연구계획 및 사업을 위한 자발적인 재원조달은 권장되는 바이다.

제 13 조

1. 국제 및 지역 인권기구는 해당 기구에 위임된 범위 안에서 인권교육훈련을 자체 업무로서 고려해야 한다.

2. 적절할 경우, 국가는 관련 인권기구에 제출할 보고서에 본 당사국이 인권교육훈련 분야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제 14 조

국가는 본 선언의 효과적인 이행 및 사후관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자원을 가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H. 용어 해설

절대주의 국가 또는 절대국가 (Absolutist State): 이 용어는 절대국가의 유일한 정당한 권력자는 군주임을 뜻한다. 특히 이러한 국가의 통치자는 군주와 경쟁할 수 있는 귀족 계급과 교회의 권력을 빼앗기 위해 애썼지만 완전히 그렇게 되지는 못했다. 이 용어가 군주가 일상생활에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통제를 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적극적 (우대)조치 (Affirmative Action): 어떤 분야에서의 온전한 참여나 접근이 거부되었던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교육과 고용의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해 취해지는 일련의 명시적활동이나 프로그램.

침략 (Aggression): 침략은 다른 나라의 주권,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치거나 UN헌장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국가에 의한 무력의 사용이다.

반유대주의 (Anti-Semitism):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의 형태로 나타나는 증오, 편견, 억압 및 폭력. 반유대주의는 인종차별의 특정 형태이다. 이러한 반유대주의는 나찌 사상을 넘어 전 세계에 널리 퍼져있다.

아파르트헤이트 (Apartheid): 아파르트헤이트는 1948년에서 94년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체계적이고 법제화된 차별정책을 일컫는 아프리칸어이다. 1950년의 인구등록법에 따라, 국민들이 종족별로 분류되고 교육, 주거 및 종족내 결혼이 규정되었다. 1994년 넬슨만델라 대통령의 선출과 함께, 법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배교 (Apostasy): 종종 경멸적으로 고용에서 자신의 종교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표현.

무력 분쟁 (Armed Conflict): 국제적으로나 국내에서 두 개 이상의 그룹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한 상황. 두 국가 간 의견차이가 나타나고 여기에 무장 세력의 개입이 일어나면, 한 국가가 전쟁에 대해 부인하더라도 무력분쟁이라고 본다.

생명윤리 (Bioethics): 생명윤리 분야는 과학 실험에서 제기되는 도덕적 이슈뿐 만아니라 가치의 측면에서의 철학적 질문과 공공 정책의 이슈에서의 조사까지를 포함한다.

아동 노동 (Child Labour): 아동 노동은 아동으로부터 어린 시절과 자신의 잠재력과 존엄성을 빼앗는 짓이며, 아동들의 육체적 정신적 발달에 해롭다. 1989년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경제적 착취와 복지나 교육의 기회를 위협할 수 있고, 또는 건강, 육체, 정신, 영성, 도덕이나 사회적 발달에 해로운 노동에 대해서"보호를 요청한다.

아동 포르노그라피 또는 아동음란물 (Child Pornography):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에 만 18세 이하

이거나, 이하로 보이는 아동이 시각적 묘사되는 것을 말한다.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에 다소라도 관여하는 형식의 시각적 노출을 포함하는 시각적 묘사는 광고, 홍보나 상품에 의한"자극 전달"로서 아동 포르노를 구성할 수 있다. 아동 포르노는 비디오테이프, 사진, 현상하지 않은 필름, 컴퓨터 파일 등에 들어있을 수 있다.

아동 난민 (Child Refugee): 아동 난민이나 추방된 아동은 만 18세 미만으로 난민 지위나 다른 국제적 보호, 국제나 국내법이나 절차에 따른 난민으로의 대우 등을 찾고 있는 모두를 말한다. 월경이 강제되기도 하며 예를 들면, 결과적으로 전쟁이나 내전 혹은 일반적 폭력상황이 여기에 속한다), 자신의 부모나 다른 어른이 동반여부와 별개이다.

아동 (Child): 1989년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아동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시민 사회 (Civil Society): 시민사회는 국가, 기업, 가족 사이에 위치한 기구나 조직, 행위를 하는 집합체이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종류의 자발적이고 비영리 조직인데, 자전 기구, 사회정치적 운동, 또 다른 형태의 사회참여와 연대, 그리고 이에 연관된 가치와 문화적 양상 등이 포함된다. (London School of Economics 정의)

민간 표적 (Civilian Object): 군사적 표적이 아닌 표적.

민간인 (Civilian): 전투원이 아닌 사람.

부수적 피해 (Collateral Damage): 민간인의 살상이나 부상을 주거나 민간 시설에 공격하지 않기 위해, 사전에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에 의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손상이나 손실.

전투원 (Combatant): 적대 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람이거나 무력분쟁에 관여한 국가의 군대나 조직의 구성원.

통보(Communication): 인권에 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 관련 조약 기구에 불만을 제기하는 개인이나 집단적인 제기. "신청", "불만접수", "청원" 등으로도 불린다.

진정인(Complaint): 인권에 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 관련 조약 기구에 불만을 제기하는 개인이나 집단.

기밀성 (Confidentiality): 어떤 비밀을 지킬 능력을 의미한다. 비밀성은 국제적십자사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보호하기 위해 당국과 효과적인 소통방식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표준 작업 방식으로 선택되었다.

협약 (Convention): 국제법에 따라 참여한 모든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다자간 조약. 또한, ICCPR(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와 ICESCR(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경우에는 "규약(Covenant)"으로 불린다.

인도주의 범죄(로마규정 용어)(Crimes against Humanity): 민간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광범위하거나 제도적 공격의 일부로서 자행되는 살인, 절멸, 노예화, 추방, 투옥이나 고문.

평화에 반한 죄 (Crimes against Peace): 침략전쟁에 대한 계획, 준비, 개시 및 진행이나 국제 조약을 위반하는 전쟁.

문화적 권리 또는 문화권(문맥상 줄임말이 나은 경우에만) (Cultural Rights): 자기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즐기고 성장할 권리.

선언 (Declaration):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장사항을 포함한 정식 문건. 선언은 의무의 해석을 통해 개별 국가들에 의해 성명서가 될 수도 있다.

유예(Derogation): 공공적 비상사태과 같은 명확하게 규정된 상황에서 인권에 관한 책무의 정지.

억류자 (Detainee): 무력분쟁동안 범죄자로 체포되거나 포로상태로 있는 민간인.

직접 차별 (Direct Discrimination): 동일한 위치에 있는 다른 사람이나 그룹에 비해 성별, 나이, 국적이나 민족, 종교, 언어, 장애여부, 성정체성 등의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이 받게 되는 비우호적인 대우.

차별 (Discrimination): 동등한 권리나 보호에 대한 거부 또는 거절로 인해 생기는 구별, 배제, 제한이나 선호는 차별로 간주한다.

적법 절차 (Due Process): 사법체계에서 진행되는 정규적인 행정 절차를 규정하는 법. 적접 절차에 대한 보장은 모든 사람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요구한다.

경제적 권리(Economic Rights): 생활 필수품의 생산, 개발 및 재료의 관리에 관계된 인권.

교육 (Education): 사회화의 다양한 비공식적인 과정(예를 들면, 가정 교육 등)과는 구별되는 학교나 학교 같은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로 교육과 학습의 방법에 관련된 훈련.

초등 교육 (Elementary Education): 또한 기본 교육이라고도 불린다. 전형적인 교육시스템에서 관례적으로는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며, 주로 만 5~7세에서 시작하여 약 11~13세까지 진행된다.

풍토병 (Endemic Disease): 특정 지역에서 어떤 질병이나 감염인자가 계속 존재하는 상태로서 그 지역 내에 특정 질병이 일반적으로 만연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계몽주의 (Enlightenment): 17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사상운동으로, 전통적인 신앙과 교리에 대한 지적 회의에 기반한다. 중세시대의 어둡고 미신적인 특성에 대비되는 "계몽"을 나타낸다. 시초부터 계몽사상은 인간의 합리성의 힘과 장점에 방점을 두고 있다.

등록 (Enrolment): 코스나 학교 등에 공식적으로 가입하는 행동.

전염병 (Epidemic Disease): 한 지역사회나 지역에서 동시에 많은 이들이 공격받거나 영향을 받는

질환.

평등 (Equity): 동일한 경우에 동일한 방식으로 다루어지는 불편부당한, 공정한 처우.

인종 청소 (Ethnic Cleansing): 다른 민족의 정체성과 힘을 주장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특정 민족을 강제로 이주시키거나 제거하는 것.

유럽중심주의 (Eurocentrism): 다른 문화를 희생시키고 유럽(그리고 일반적으로 서구)의 사상과 아이디어 등에 중점을 두는 과정. 이 정의에 암시되어 있는 것은 서구의 개념들이 다른 문화나 문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모순적이면서도 그만치 중요한 함의는 서구 개념이 보편적이라는 가정이다.

신념 (Faith): 종교 또는 종교적 신념으로 인식되는 공동체

여성 할례 또는 여성성기절단 (Female Genital Mutilation (FGM) /Female Genital Cutting (FGC)): FGM은 문화나 기타 비치료적 이유로 여성의 외부생식기의 전부나 일부의 제거하여 여성 생식기에 상처를 입히는 모든 과정을 함축하여 의미한다 (WHO의 정의, 1995).

강제 임신 (Forced Pregnancy): 특정 인구의 민족 구성에 영향을 주거나 여타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을 행하기 위한 의도로 강제 임신한 여성을 불법적으로 감금하는 것. 이러한 정의는 임신에 관한 국내법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강제 성매매 (Forced Prostitution): 성매매를 강제하는 것으로, 무력 분쟁에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자유무역지대 (Free-Trade Zone): 국내에 있는 산업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외국기업은 생산을 위한 재료 수입과 생산물의 수출에 있어서의 세금이나 관세(정부에 대한 수수료)를 거의 지불하지 않는다. 자유무역지대는 해당 기업의 생산비용을 줄여준다.

젠더 (Gender): 여성과 남성에 따라 부여되는 사회적 지위.

성전환 (Genetic Modification): 성기의 교체에 의한 성 전환뿐만 아니라, 성기 자체의 제거, 변화나 이동을 말한다. 또한 기존의 성기의 변형이나 새로운 성기의 구성과 다른 조직과의 결합을 의미하기도 한다.

집단살해(Genocide): 특정 인종, 종교, 문화적 그룹의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파괴를 말하며, 살인, 상해, 생활조건의 악화, 출산 방지나 아동 약탈 등으로 이루어진다.

전투능력을 잃은 전투원 (Hors de Combat): 체포되거나 부상을 입거나 병이나 난파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전투력이 없는 전투병.

인간빈곤 지수 (Human Poverty Index): 단순한 소득 분배를 넘어 빈곤 정도를 특정하기 위해

UNDP에 의해 개발되었다. 빈곤에 대한 5가지 실생활 요소로 구성되며, 여기에는 문맹, 아동들의 영양실조, 조기 사망, 낮은 건강관리, 안전한 식수 확보의 어려움으로 구성된다.

인간성 (휴머니티, Humanity): 국적, 피부색, 종교적 신념, 사회 계급, 정치적 견해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와 명예.

문맹 (Illiteracy): 읽거나 쓸 수 없음.

공정성 불편부당성 (Impartiality): 단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사결정하는 것으로, 국적, 피부색, 종교적 신념, 사회 계급, 정치적 견해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간접차별 (Indirect Discrimination): "중립적"이거나 "공정한"것으로 보이지만 특정 집단의 다수 구성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관행을 포함한다. 심지어 차별을 하려는 의도가 없는 경우라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종교간 대화 (Interfaith Dialogue): 다른 종교의 사람들 사이의 대화, 협력과 이해를 시작하려는 시도.

국내실향민 (Internally Displaced Person, IDPs): 나라를 떠나지는 않지만, 자신의 집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로서, 박해의 두려움, 무력 분쟁이나 폭력, 인권의 침해나 자연재해나 인재로부터의 피난이 원인이다.

국제인도주의법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무력분쟁에 관한 법 (Laws of Armed Conflict): 무력분쟁중의 폭력의 사용에 대한 제한을 두려는 원칙이나 규칙으로, 적대행위에 직접적 관여하지 않는 사람들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쟁의 목적의 필요조건에 한정하도록 (심지어 "전투원"이라고 하더라도) 폭력의 효과를 제한하고자 한다.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ffice, ILO): 1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평화조약의 일부로서 1919년에 설립되었으며, 노동조건의 개선과 사회정의 증진을 위해 만들어졌다; ILO는 1946년에 UN 전문기구가 되었다.

피억류자 (Internee): 범죄혐의는 없으나 예방적 안보 조치로서 무력분쟁기간동안 포로가 된 민간이나 전투원.

불관용 (Intolerance): 다른 이의 믿음이나 관행에 대해 용인하거나 존중할 맘이 없음.

이슬람 혐오 (Islamophobia): 이슬람 종교와 그 지지자들에 대한 두려움과 이에 동반되는 적대감.

정당성 (Legitimacy):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정부의 절차가 사람들에게 수용되는 정도. 정당한 시스템은 법적이어야 하며, 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그 시스템의 적정성을 신뢰하고 그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당성은 거버넌스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Legitimacy is closely tied to governance): 법률과 규제에 대한 자발적 준수는 강제나 개인적 충성에 의존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낳는다.

중재 (Mediation): 분쟁당사자들이 만족스러운 협상 결과를 이르도록 제삼자가 당사자들과 함께 일하는 문제해결협상과정이다. 중재자는 당사자들 간의 분쟁에 대해 결정권한이 없는 대신, 당사자들은 그들 간의 문제를 푸는 것을 돕기 위해 중재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군사적 표적 (Military Objectives): 군사적 행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성격, 위치, 목적이나 용도가 정해진 물체로서, 이의 파괴는 명확하게 군사적 이점을 제공한다.

소수자 (Minority): "국가내 나머지 인구에 비해 적은 수의 집단이며, 지배적 위치에 있지 않다. 해당 국가에 속하면서도 나머지 인구들과는 민족, 종교, 언어 등의 면에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암묵적이기도 하나, 자신의 문화, 전통, 종교 및 언어를 보존하고자 하는 연대의식을 보인다." (프란체스코 카포토리, 전 UN 특별보고관)

비정부 기구 (Non-governmental organisation, NGO): 지역이나 국가, 국제적 단위에서 비영리로 운영되며,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기초로 구성된 조직.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임무 중심으로 운영한다. NGO는 다양한 서비스와 인도적 기능을 수행하며, 시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와 모니터링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정보의 제공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도록 북돋는다.

초종교적인 (Non-Religious): 각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의 양심에 대한 궁극적인 믿음과 원칙에 결합된 인간사고 범주에서의 자연주의적 세계관과 신념.

옴브즈맨 (Ombudsperson): 일반 시민들이 정보나 공공 기관에 대해 제기한 민원을 조사하고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로 일반적으로 정부 공무원이 맡는다.

장애인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기간 육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나 감각불균형을 가진 사람들로, 다른 이들과 동등하게 사회에서의 온전하고 효과적인 참여를 방해하는 다양한 장벽이 있다.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빈곤 (Poverty): 빈곤은 인권침해중 하나이다. "생활과 다른 기본적인 시민, 경제, 정치, 사회적 권리에 대한 적정한 표준을 위해 필요한 자원, 능력, 선택, 안전과 권력에 대한 지속적이거나 만성적인 박탈상태로 특징 지워지는 인간의 조건" (UN인권최고대표).

편견 (Prejudice): 부정적인 시각으로 개인이나 그룹을 미리 판단하려는 경향을 가진 마음가짐. 이러한 부정적인 판단은 일반적으로 충분한 근거도 없이 이루어진다. "[…] 편견은 잘못되고 유연하지 못한 일반화에 기초한 반감이다; 이러한 반감이 느껴지거나 표현되기도 하며, 특정 그룹이나 그룹내 개인에게 향하게 된다." (고든 알포트).

전쟁 포로 (Prisoner of War): 국가간 무력분쟁에서 체포된 전투원. 특정 조건을 갖춘 전투원만이 포로가 될 수 있다(주로 군대의 구성원).

전향 /개종 (Proselytism): 일반적으로 종교적 맥락에서,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려는 시도.

강제, 협박, 공공 교육시스템의 위계,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나 다른 물질적 제공의 접근권 제한, 고용 조건과 같은 부적절한 수단으로 개종을 유도하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인종"(Race): 이 용어는 사람을 허상의 분류체계에 기초하여 나누고자 사용되는 가상의 구분을 말한다. 현대과학에서 인류에게 적용하기에는 "인종"에 대한 생물학적 분류는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인종"이라는 용어 자체가 인종차별주의자의 용어로서, 다른 "인종"이라는 것이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전제하고 붙들고 있다.

인종주의 (Racism): 한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본질적으로 우수하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기인한 잘못된 가정, 의견, 행동 전체를 말한다. 인종주의는 개인이나 집단을 열등하다고 가정하는 사회적 태도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을 배제하는 사회적 구조를 의미한다. 인종주의는 개인의 태도나 행동뿐만 아니라, 조직과 제도적 구조와 프로그램에 잇을 수 있다.

비준 (Ratification): 경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조약 준수를 법적으로 선언하는 국가의 행위.

난민 (Refugee):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 소속이나 정치적 견해 등의 이유로 명백히 박해를 받을 것으로 보여, 자신의 국적이나 거소를 떠난 사람. 다시 돌아갔을 때, 국가로부터의 보호가 가능하지 않거나 그럴 의사가 없어서 박해의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

유보 (Reservation): 어떤 조약의 비준 시에 그 조약의 특정 조항이 당사국에 미치는 법적 효력을 배제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당사국이 행하는 선언

법의 지배 (Rule of Law): 유엔에서는 법의 지배란 모든 사람, 제도, 기관,, 국가 그 자체를 포함하여, 공적이든 사적이든, 공포되고, 동일하게 집행되며 독립적으로 재판되는 국제인권규범과 기준에 부합한 법률에 의한 책임을 지는 통치의 원칙을 말한다. 또한 법의 지배를 위해서는 법의 최고성, 법앞의 평등, 법에 대한 책임성, 법적용의 공정성, 권력 분립,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법적 안정성, 자의금지 및 절차적·법적 투명성에 대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세속적인 (Secular): 세속주의로 표시됨; 종교에 관련되는 것으로부터 구분되어지는 지상에 관련된 것. 세속주의는 종교와 교회에 관한 일들이 국가의 기능에 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특히 공교육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폭행 (Sexual Violence): 젠더에 기초하여 일어나는 특정인에 대한 상해나 살인을 하려는 의도로 일어나는 폭력.

노예(제) (Slavery): 다른 사람의 생명, 강제, 이동의 제한 등을 조정하거나 소유권의 요소로 규정되는 것으로, 자유롭게 떠나거나 고용주를 자유롭게 바꿀 수 없는 사실로 나타난다. 현대 노예제는 쉽게 식별하고 근절하기 어렵다. 빚에 의한 노예상태는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경제적 권리 (Social and Economic Rights): 사람들이 사회적, 경제적 안전을 제공받을 권리로서, 종종 안전지향 혹은 2세대 권리라고 언급된다. 예를 들면 식량권, 주거권, 건강권 등이 있다.

독방 감금 (Solitary Confinement): 분리 감금되어 있으면서 다름 사람들의 접촉을 가끔 허용되거나 제한하는 된 죄수를 말하며, 생명을 우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공되지 않는 환경에 처해있게 되는데,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빛, 소리, 음식, 읽을 거리, 운동 및 가끔 온도의 조정 등의 제한이 이루어진다.

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 **특별대표부**(Special Representative): 특정 국가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규보고서를 준비하여 UN인권위원회와 같은 국제나 지역 조직에 보고하도록 임명된 이("국가별 보고관")나 특정 인권 주제에 대해서 보고하는 이("주제별 보고관")이 있다. UN 사무총장이 추천한 경우는 "특별대표부"라고 부르게 된다. 이와 유사한 기능을 "독립 전문가"가 수행할 수도 있다.

구조 조정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s): 대부분의 IMF 대출은 조건이 붙으며, 해당국가가 자금을 지원받기위해서 다양한 요구사항을 해당 국가에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소위 구조 조정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사회 부문의 절감과 시장 개방를 강력하게 유도하며, 종종 비판을 받고 있다.

구조적 인종차별 (Structural Racism): 주요 사회 제도의 의미 있는 참여과정에 특정 민족 범주의 상당수 구성원이 배제되는 시스템적 운용에 기초한 불평등.

여성 참정권론자 (Suffragette): 여성의 권리, 특히 투표권을 위해 싸우는 여성운동가를 지칭하는 영미지역 용어.

장 (Sura): 코란 전체 114장의 각 장을 지칭하는 용어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미래세대가 자신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발전.

고문피해자 재활 (Torture Rehabilitation): 고문 피해자가 역량, 자신감을 회복하고 가능한 삶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법. 재활 센터와 프로그램은 여러 다른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구현한다. 여기에는 개별 고문피해자의 특정 육체적,심리적 니즈에 맞추고, 그들이 처한 문화, 사회, 정치적 환경을 고려한다.

고문 (Torture): 육체나 정신적으로 심각한 통증이나 고통을 우발하는 행위로서, 이를 통해 당사자에게 얻고자 바가 있거나 제삼자의 정보나 자백을 위해 의도적으로 가해하거나, 당사자나 제삼자가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거나, 협박 또는 강요, 어떠한 종류에서든 차별에 기초한 행위들로서, 그러한 통증과 고통이 공권력에 속한 누군가나 공무원이 가해하거나 합의나 묵인 또는 선동에 의하여 일어나게 된다. 여기에는 합법적인 제재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부수적으로 일어

나는 통증이나 고통은 포함하지 않는다.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UN 협약).

노동조합 (Trade Union): 임금과 노동 조건에 대해 고용주와 협상을 함으로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진전시켜나가기 위해 구성된 노동자 조직. 또한 조합은 법적 조언, 재정적 지원, 의료 지원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독립 노조는 고용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지 않고 재정적으로도 고용주에게서 독립되어 있다.

인신 매매 (Trafficking in Human Beings): 사람들을 국내에서나 국경을 넘어 불법적이고 은밀하게 이동키는 것으로, 대부분 일부 개발도상국이나 과도기 국가에서 일어나며, 사람들(주로 여성, 소녀와 아동들)을 성적으로나 경제적 억압하고 착취하는 상황으로 강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중개인, 인신매매범, 범죄 집단이 이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며, 강제 가사 노동이나 인신매매와 관련된 불법적 활동에 연결된다.

위킹푸어 (근로빈곤층) (Working Poor): 직장이 있으나 여전히 생계를 이어가지 힘들어 하는 이들.

외국인 혐오(증) (Xenophobia): 외국인이나 외국에 대한 두려움이나 증오; 또한 지역 공동체, 사회적 혹은 국가적 정체성에 있어 외부인이거나 외국인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사람들을 배제, 거부하거나 비방하는 태도, 편견과 행동의 특징을 가진다.

한국어판 번역 과정 정리

“인권의 이해” 매뉴얼의 번역과정은 인권관련 활동가들의 자원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분들의 열정으로 우리나라 인권교육이 한 발짝 나아갔다고 봅니다. 이를 기록하고자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UN인권교육메뉴얼 번역 일람표		이 름	소 속
1부	인권시스템 소개	김은희 김형완 박근덕	인권정책연구소
2부	고문금지	임소진	법률사무소 가율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백미순	전)한국성폭력상담소
	인종차별금지	김래영	인권정책연구소
	건강권	박근덕	인권정책연구소
	여성인권	이선영	바오밥나무, 전)여성단체연합
	법의 지배와 공정한 재판	오유진	법무부
	종교의 자유	송재영	철학박사
	교육권	정민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아동인권	양정훈	인권교육활동가, 작가
	무력 분쟁 상황에서의 인권	조영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노동권	한영동	인권정책연구소
	프라이버시권	윤채완	국가인권위원회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조규석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	김은희	인권정책연구소
	소수자 권리	백가윤	참여연대
	망명권	오유진	법무부
3부	인권교육방법론	박근덕	인권정책연구소
부록	인권연혁, 인권선언문	노정원	인권정책연구소
	용어해설, 기타	박근덕	인권정책연구소
1차 교열		김은희 노정원	인권정책연구소
법률 용어 검토		오유진	법무부

본 한국어판은 한국사례를 추가하고 국내 법률 용어 검토 등을 한 번 더 진행하여 최종본을 책자와 온라인 파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후원 기다립니다.

(사)인권정책연구소 / www.humanpolicy.com

나가며,

이 매뉴얼은 혁신적인 도구로서 이제 제3판으로, 전 세계 인권교육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10여 년 전에 처음 구성되었으며, 이 때 전 오스트리아 외교부장관이었던 베티나 페레로발드너(Ms. Benita Ferrero-Waldner)의 주도로, 오스트리아 그라츠시에 있는 유럽인권민주주의 교육연구센터(ETC)가 HSN 파트너들과 30여 연구소와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2012년 제3판에서는 전문이 재검토되고 개정되었고, 새롭게 3장이 추가되었다.

이 매뉴얼은 인권교육과 학습을 통해 인권 안보를 강화하는데 필수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인권의 보편성에 기반을 두지만, 역사적, 종교적, 문화적 전통을 고려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전세계 인권 교육자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구성되었으며, 정규나 비정규 교육에서의 인권교육자들을 지원한다. 청소년이나 성인의 인권교육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교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교육자와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비탕으로 함께 구성하고 완성하도록 개방형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혁신적이게도, 이 매뉴얼은 온라인 www.manual.etc-graz.at 에 몇 가지 언어 버전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유럽인권민주주의교육연구센터(ETC: The European Training and Research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는 그라츠시의 지원을 바탕으로 인권교육 및 연구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센터로 2000년에 그라츠시에 설립되었다. ETC는 국제인권교육민중연합(PDHRE)의 유럽파트너이다. 베니스와 사라예보의 '인권과민주주의 유럽석사 프로그램'에 따른 그라츠대학의 참여를 연결하고 있다.

훈련과 연구 프로그램의 구체적 초점은 인권, 인간 안보, 인간 개발과의 관계이다. 또한 ETC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지역 차원과 인권교육의 측면에서, 차별철폐, 법의 지배(법치주의), 좋은 거버넌스,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활동한다. ETC는 기본권연구네트워크(FRANET, Fundamental Rights' Research Network)의 EU사무소의 오스트리아 국가 연락 담당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의 훈련과 연구 활동은 국제자문위원회의 지원을 받고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etc-graz.at

인간안보네트워크(HSN, Human Security Network)는 전세계 지역별 그룹으로 구성되며, 지속적으로 비정부기구와 학술 연구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인간안보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책 비전은 사람들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고 안전과 존엄성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인간 세상이다. 대인지뢰금지조약을 위한 캠페인과정에서 나왔으며, 1999년에 네트워크가 구성되었다. 현재 HSN의 구성원은 오스트리아, 칠레, 코스타리카, 그리스, 아일랜드, 요르단, 말리, 노르웨이, 파나마, 태국, 슬로베니아이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참관국이다.

HSN 의장국으로서, 오스트리아 외교부장관은 인권교육과 무력분쟁에서의 아동보호를 네트워크의 우선 주제로 두고 있다.

ISBN 978-1-78068-057-6 ISBN 978-3-8305-3024-4 ISBN 978-3-7083-0846-3